

正史彙鑑

연주전

正史彙鑑

역주
상

해 제

구순옥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번역 및 교정

김우정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구순옥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김다미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원

김용창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솔잎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원

기 획

유현희 | 수원학연구소 센터장

발행일 2022년 8월 30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Tel. 031-220-8057

편집디자인·제작

산원커뮤니케이션

원문 출처

東京大學 総合圖書館

자료제공

경기도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ISBN 979-11-6819-086-3
979-11-90343-88-6 (세트)



『정사휘감正史彙鑑』역주 上

『정사휘감』해제

- | | |
|------------------------|-----|
| 1. 머리말 | 011 |
| 2. 『정사휘감』의 서지사항 및 선본善本 | 013 |
| 3. 『정사휘감』의 구성과 내용 | 019 |
| 4. 맺음말 | 024 |

正史彙鑑 권1

- | | |
|--------------------------|-----|
| - 정사휘감 서 | 029 |
| - 독성효篤聖孝: 성효를 돈독히 하다 | 031 |
| - 법조종法祖宗: 조종을 본받다 | 046 |
| - 경사천敬事天: 하늘의 뜻을 경건히 받들다 | 055 |
| - 근사전勤祀典: 제사의 예법을 신중히 하다 | 069 |
| - 전성학典聖學: 성학에 힘쓰다 | 078 |

正史彙鑑 권2

- | | |
|-----------------------------|-----|
| - 송유학崇儒學: 유학을 숭상하다 | 089 |
| 부附 좌교左敎: 이단을 배격하다 | 097 |
| - 상검약尙儉約: 검약을 숭상하다 | 106 |
| 부附 척진이斥珍異: 진귀한 것을 멀리하다 | 114 |
| 부附 각공헌却貢獻: 공물을 물리치다 | 117 |
| - 거편사去偏私: 편벽되고 사사로운 마음을 없애다 | 124 |
| - 계총찰戒聰察: 자신의 총명을 경계하다 | 134 |
| - 신사교信辭敎: 말과 전교를 미답게 하다 | 142 |



正史彙鑑 권3

- 정궁위正宮圍: 궁위를 바로잡다 153
부附 공주公主 165
- 어근습馭近習: 근습을 제어하다 171
- 목종친睦宗親: 종친을 보살피다 188
- 대척완待戚畹: 척완을 대하다 201

正史彙鑑 권4

- 임현능任賢能: 현능을 임용하다 219
부附 위임委任 229
- 변간사辨奸邪: 간사를 분별하다 239
- 중전선重銓選: 전형銓衡을 신중히 하다 258
부附 석관방措官方: 관직을 아끼다 266
- 엄과시嚴科試: 과거科擧를 엄중히 하다 272

『정사휘감正史彙鑑』역주 下

正史彙鑑 권5

- 개언로開言路: 언로를 열다 011
- 양사기養士氣: 선비의 기상을 배양하다 034
- 장명절獎名節: 명예와 절의를 장려하다 043
- 여염치勵廉恥: 염치를 장려하다 058

正史彙鑑 권6

- 애민생愛民生: 백성을 사랑하다 069
- 부附 경요부輕徭賦: 요역과 세금을 줄이다 080
- 부附 진제賑濟: 백성을 구휼하다 083
- 근정사勤政事: 정사를 부지런히 하다 088
- 절재용節財用: 재용을 절약하다 102
- 간행행簡行幸: 행행을 삼가다 115

正史彙鑑 권7

- 수법제守法制: 법제를 지키다 129
- 입기강立紀綱: 기강을 세우다 144
- 명상벌明賞罰: 상벌을 분명히 하다 154
- 흘형옥恤刑獄: 형옥을 삼가다 168
- 부附 신사愼赦: 사면을 신중히 하다 180

正史彙鑑 권8

- 예신료禮臣僚: 신료를 예우하다 187
- 변봉당卞朋黨: 봉당을 분별하다 202
- 칙무비飭武備: 군비軍備를 갖추다 215
- 유후곤裕後昆: 후손에게 덕행을 물려주다 226

- 부록 흥봉한 연보年譜 241

일러두기

- 현재 전해지는 총 5종의 『정사휘감』 가운데 도쿄대학 아천문고(阿天文庫)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아, 총 4책 8권을 역주하였다.

| 교감 |

- ‘법조法條’와 ‘계조戒條’는 원전과 비교하는 원교原校를 원칙으로 하여 이본 간의 대교對校도 하였다.
- ‘근안謹按’은 이본 간의 대교를 원칙으로 하였다.
- 전고典故의 순서 오류, 원주原注의 위치 오류 등은 교감주를 달았으며, 원문의 교감 결과는 교감주는 달지 않고 오지誤字, 연자衍字 등은 ()로 표시하고, 수정한 자, 누락된 자는 []로 표시하여 반영하였다.

| 원문정리 |

- ‘근안謹按’으로 시작하는 흥봉한의 문장은 위에 “근안謹按”을 덧붙여 표시하였다.
- 저본의 원주原注는 【 】로 표시하였다.
- 원문에 표점을 병기하였다.

| 사용한 표점과 부호 |

- 종지부호: 마침표 (.), 물음표 (?), 느낌표 (!)
- 휴지부호: 쉼표 (,), 가운뎃점 (·), 쌍점 (:)
- 인용부호 강조: 큰따옴표 (“ ”), 작은따옴표(‘ ’)
- 서명, 편명, 작품 표시: 겹낫표 (『 』), 홑낫표 (「 」)
- 내용 생략 부호: 말줄임표 (…)
- 원주 표시부호: 【 】
- 번역문에 간략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꺾쇠괄호 ([]) 안에 기입하였다.

正史彙鑑

역주
상

正史彙鑑

해제

『정사휘감』 해제¹⁾

1. 머리말

『정사휘감(正史彙鑑)』은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이 외손인 정조(正祖, 1752~1800)의 예학(睿學)을 위해 편찬한 책이다. 1759년(영조 35) 2월, 당시 8살이던 정조가 왕세손에 책봉되고 홍봉한은 세손사(世孫師)에 임명되었다. 이후 1762년 윤5월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8월 정조는 동궁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764년 2월 영조의 요절한 맏아들 효장세자의 후사로 중통(宗統)을 옮기는 갑신처분(甲申處分)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외손이 장차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홍봉한은 『정사휘감』을 편찬하였다.

『정사휘감』을 편찬한 목적과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서(序)」에 잘 나타나 있다. “경(經)은 도(道)를 말하고 사(史)는 일을 기록하는데, 도와 일은 다르지만 그 귀결점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史)를 숙지하는 것은 경(經)을 보완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경(經)은 본래 간결하여 논의할 것이 없지만 사(史)는 권질이 방대하므로 읽는 사람은 요점을 파악하지 못할까 염려하니,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활용이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제왕기는 모든 일이 집중되므로 일을 접할 때는 많고 책을 읽을 시간은 적으니, 더더욱 어떻게 널리 읽고 돌이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런 까닭으로 역대 역사서를 살펴 법으로 삼을 일과 경계로 삼을 일을 모아서 분류하고 요점을 뽑아서 ‘정사휘감’ 이라고

1 해제는 구순옥, 신창호, 「제왕 교육서로서 『정사휘감』의 편찬과 구성상의 특징」, 교육사상연구 30집(2016), 구순옥 「홍봉한의 『정사휘감』 역주 - 권1과 권2를 대상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제목을 붙여, 한가할 때에 살펴보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²라고 취지를 밝혔다.

홍봉한은 『봉주강감회찬鳳洲綱鑑會纂』, 『춘추좌씨전』, 『자치통감』, 『속자치통감』, 『명사강목明史綱目』³ 5종의 책에서⁴ 당우唐虞로부터 명명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들의 전고典故를 살펴서 주제별로 34 조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아래 법으로 삼을 일[法條] 557개의 전고와 경계로 삼을 일[戒條] 308개의 전고로 분류하여 찬집하였다. 이어서 ‘근인謹按’으로 시작하여 ‘염재염재念哉念哉’로 끝나는 자신의 글을 덧붙여 구성하였는데, 이 글에서 찬집한 전고의 주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조선의 선대 임금과 인물들의 전고를 간략히 서술하고 다시 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왕세손에게 거듭 당부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정사취감』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순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순조 9년 1월 17일 기사에 보인다. 홍봉한의 넷째 아들 홍낙윤洪樂倫이 아버지의 신원伸冤을 청하는 상소에서 “신의 아버가 병술년(1766) 모친상을 당했을 적에 『정사취감』 1질을 편성하여 기축년(1769) 정월에 소매에 넣고 가서 동궁께 올렸습니다.”⁵라고 언급하였다. 또 둘째 아들 홍낙신洪樂信의 『홍익정유사洪翼靖遺事』⁶에 “정사正史에서 옛 제왕의 본받을 것과 경계할 것을 뽑아 편집하여 모두 몇 편으로 구성하고 편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8권 4책으로 엮어 ‘정사취감’이라고 제목을 붙여 동궁에게 올려서, 옛사람이 『천추금록千秋金鑑錄』을 올린 법⁷을 본받았다.”⁸라고 하였다. 당시 홍봉한은 1766년(영조 42) 9월 계모 이씨의 상喪

2 『정사취감서正史彙鑑序』 “經言道，史載事，道與事，雖殊，其致一也。治乎史，所以羽翼經者也。然經固簡矣，無可議，若史則卷帙浩汗，讀者，患不能領其要，不領其要，則其用也不切。況帝王家，萬務叢萃，接物之時多，緝書之時少，尤安能由博而反約哉。臣爲是也，謹稽歷代諸乘，粹其可法可戒之事，分部撮要，名曰『正史彙鑑』，以便燕閑之考覽。”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사취감』 奎1140-v.1-4와 奎4860-v.5/6에 대한 해제에서 “각 일화에는 출전을 밝히고 있으니 여기에 인용된 사서史書를 보면 『강감』, 『자치통감』, 『속통감』, 『명사』, 『강목』, 『좌전』 등이다.”라고 했는데, 『명사강목』을 『명사』와 『강목』으로 파악한 것은 오류이다.

4 법조와 계조의 전고 끝에 주석을 달아 『강감』, 『좌전』, 『자치통감』, 『속통감』, 『명사강목』 5종의 책으로 출전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 5종 외에 『사기』, 『속자치통감장편』, 『어비역대통감집람』 등의 글도 보인다.

5 『순조실록』 9년 1월 17일, “臣父丙戌丁憂時，編成正史彙鑑一帙，己丑正月，袖進春宮。”

6 『홍익정유사洪翼靖遺事』 : 홍봉한의 유사遺事로, 1책 18장의 필사본이다. 아들 홍낙신이 편찬하였다. 제작 연도는 미상이다. 홍봉한의 성장 및 수학, 관직생활 등에 대해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홍봉한에 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에 밝아 민생에 힘썼으며 청렴과 절조를 관직 생활의 덕목으로 삼았다고 한 것, 지제 교육에 있어서 검소와 절행을 강조하여 작은 잘못에도 매우 엄하였으며 효제를 근본으로 삼았다고 한 것, 시詩가 정밀하고 운치가 있으며 유창하다고 당대 평해졌다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또한 만년에 경전과 고문에서 약간 편을 뽑아 과송講誦을 위해서 『상유龔綸』를 지었고, 『정사취감』을 엮어 세자를 가르쳤다는 기록도 보인다.

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768년 11월에 상기를 마치고 복귀하였는데, 위의 기록을 통해 이 기간 동안에 『정사휘감』을 찬집하여 1769년 1월 동궁에게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외조부 홍봉한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1772년(영조 48) 1월 홍봉한에게 보낸 예찰睿札에 “『정사휘감』도 보내 드립니다.”⁹라는 짤막한 언급이 보인다. 이 당시 정조는 『송사宋史』를 초록하고 있어서 홍봉한에게 계속해서 초고 작성과 산삭, 윤문을 부탁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 사이에 이러한 언급이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5종의 『정사휘감』을 살펴보면 1769년 1월 이후 최소 두 번의 교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조가 홍봉한에게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2. 『정사휘감』의 서지사항 및 선본善本

1) 『정사휘감』의 서지사항

현재까지 조사된 홍봉한의 『정사휘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2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1종, 도쿄대학 아천문고阿川文庫의 1종, 와세다대학도서관의 1종으로 모두 5종이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990년에 도쿄대학 아천문고 소장본을 영인하여 발행한 것이고, 중국에서 2013년에 발행한 『역외소견중국고사연구자료회편域外所見中國古史研究資料彙編』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이 영인되어 있다.

모두 필사본인 5종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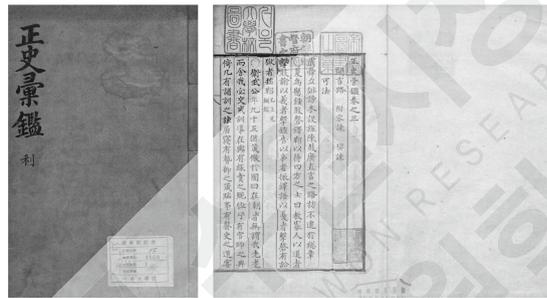
7 당唐에서는 황제의 생일에 신하들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충신과 간신을 명철하게 구분하라는 뜻으로 황제에게 청동거울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당 현종의 생일에 다른 사람들은 관례에 따라 거울을 바쳤는데, 장구령張九齡(678~740)은 거울을 바치는 대신 거울이 될 만한 전대의 사적史蹟을 엮은 『천추금감록千秋金鑑錄』을 지어 바쳤다. (『新唐書』 권126 「張九齡列傳」)

8 『홍익정유사』, “就正史, 抄輯古帝王可鑑戒者, 凡幾段, 每段下附斷論, 編八卷四, 名以『正史彙鑑』, 奉獻于春宮, 以效古人進金鑑之規.”

9 『정조어찰첩 임진예찰壬辰睿札』과 『기미어찰己未御札』,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96쪽, “『彙鑑』亦爲伏呈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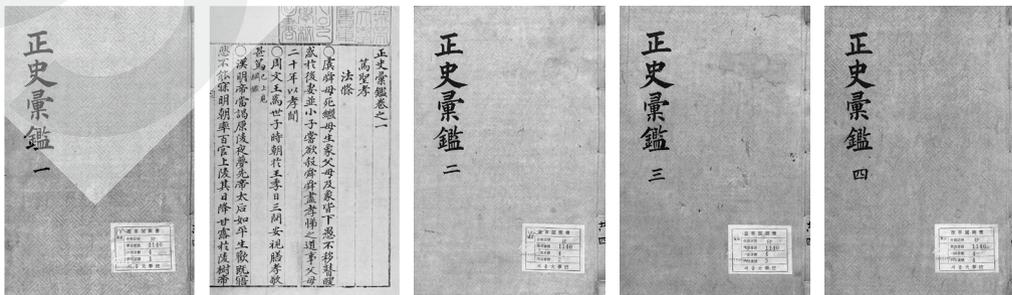
(1)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4860-v.5/6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규4860-v.5/6은 표제가 ‘正史彙鑑 利’로 4책 가운데 세 번째 책만 남아 있는 영본(永本)으로, 필체로 보아 한 사람이 흐트러짐 없이 깨끗이 필사한 책이다. 책의 크기는 33×20.7cm, 반엽광곽의 크기는 23×15.3cm이고, 광곽은 굵은 선 하나와 얇은 선 하나가 둘러진 사주쌍변이고, 9줄의 계선이 있어 행수는 10행이고, 1행의 글자 수는 22자이고, 주(注)는 쌍행이고, 판심의 어미(魚尾)는 상백어미(上白魚尾)이다. 소장인(所藏印)은 ‘群玉圖書之府’,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가 찍혀 있다.



(2)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1140-v.1-4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규1140-v.1-4는 표제가 ‘正史彙鑑 一’, ‘正史彙鑑 二’, ‘正史彙鑑 三’, ‘正史彙鑑 四’로 4책 완질로, 필체로 보아 여러 사람이 필사한 책이다. 책의 크기는 32×22cm, 반엽광곽의 크기는 24.3×17.4cm이고, 광곽은 굵은 선 하나가 둘러진 사주단변이고, 9줄의 계선이 있어 행수는 10행이고, 1행의 글자 수는 20자이고, 주는 쌍행이고, 판심의 어미(魚尾)는 상이엽화문어미(上二葉花紋魚尾)이다. 소장인(所藏印)은 ‘東京帝國大學圖書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가 찍혀 있다.



(3) 도쿄대학 아천문고阿川文庫 G30-284(국립중앙도서관 古2200-17-1-4)

도쿄대학 아천문고 소장본의 표제는 ‘正史彙鑑 春’, ‘正史彙鑑 夏’, ‘正史彙鑑 秋’, ‘正史彙鑑 冬’으로 4책 완질이고 표지에 목록이 쓰여 있다. 필체로 보아 4책 모두 한 사람이 흐트러짐 없이 깨끗이 필사한 책이다. 책의 크기는 24.0×15.4cm, 반엽광곽의 크기는 16.4×13.3cm이고, 광곽은 굵은 선 하나와 얇은 선 하나가 둘러진 사주쌍변이고, 10줄의 계선이 있어 행수는 11행이고, 1행의 글자 수는 20자이고, 주는 쌍행이고, 판심의 어미는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호접장과 같이 판심이 중앙에 위치하고 판심부분을 선장線裝하였다. 소장인은 ‘東京帝國大學圖書印’이 찍혀 있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2200-17-1-4)은 1990년에 해외유출자료영인으로 도쿄대학 아천문고 소장본을 영인하여 발행한 것이다. 소장인은 ‘東京帝國大學圖書印’, ‘국립중앙도서관장서인’이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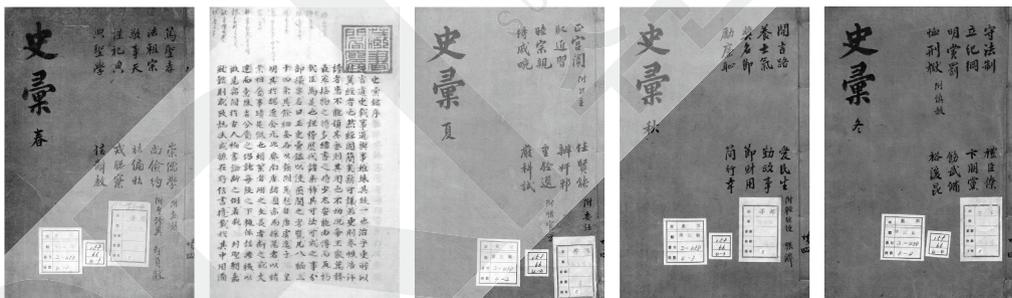
(4) 와세다대학도서관 리08 03106

역사지리학자 요시다 도고吉田東伍(1864~1918)가 소장하다가 현재 와세다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리08 03106은 표제가 ‘正史彙鑑 春’, ‘正史彙鑑 夏’, ‘正史彙鑑 秋’, ‘正史彙鑑 冬’으로 4책 완질로, 표지에 목록이 쓰여 있다. 필체로 보아 한 사람이 필사한 책은 아니다. 책의 크기는 34×22.6cm, 반엽광곽의 크기는 24.7×17.4cm이고, 광곽은 굵은 선 하나가 둘러진 사주단변이고, 9줄의 계선이 있어 행수는 10행이고, 1행의 글자 수는 20자이고, 주는 쌍행이고, 판심의 어미는 상이엽화문어미上二葉花紋魚尾이다. 소장인은 ‘早稻田大學圖書’가 찍혀 있다.



(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458

장서각 소장 k2-458는 표제는 ‘史彙 春’, ‘史彙 夏’, ‘史彙 秋’, ‘史彙 冬’으로 되어 있고 목록에는 ‘정사후감’으로 되어 있다. 4책 완질로, 표지에 목록이 쓰여 있다. 필체로 보아 여러 사람이 필사한 책이다. 책의 크기는 34.5×22.5cm, 반엽광곽과 계선이 없이 행수는 13행이고, 1행의 글자 수는 20자이고, 주는 쌍행이다. 소장인은 ‘藏書閣印’이 찍혀 있다.



〈표1〉 『정사휘감』 5종의 서지사항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4860-v.5/6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140-v.1-4	東京大學 阿川文庫 G30-284 (국립중앙도서관 古2200-17-1-4)	와세다대학 도서관 リ08 0310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458
표제	正史彙鑑 利	正史彙鑑 一 正史彙鑑 二 正史彙鑑 三 正史彙鑑 四	正史彙鑑 春 正史彙鑑 夏 正史彙鑑 秋 正史彙鑑 冬	正史彙鑑 春 正史彙鑑 夏 正史彙鑑 秋 正史彙鑑 冬	史彙 春 史彙 夏 史彙 秋 史彙 冬 內題: 正史彙鑑
판본사항	筆寫本	筆寫本	筆寫本	筆寫本	筆寫本
책권수	1册(零本)	8卷4册	8卷4册	8卷4册	8卷4册
편저자	洪鳳漢	洪鳳漢	洪鳳漢	洪鳳漢	洪鳳漢
裝幀	線裝	線裝	線裝	線裝	線裝
책크기	33×20.7cm	32×22cm	24.0×15.4cm	34×22.6cm	34.5×22.5cm
匡郭	四周雙邊	四周單邊	四周雙邊	四周單邊	無
半葉匡郭	23×15.3cm	24.3×17.4cm	16.4×13.3cm	24.7×17.4cm	無郭
界線	有界	有界	有界	有界	無
行과 字	10行 22字	10行 20字	12行 20字	10行 20字	13行 20字
版心	上白魚尾	上二葉花紋魚尾	上下內向二葉 花紋魚尾	上二葉花紋魚尾	無
注	雙行	雙行	雙行	雙行	雙行
印記	· 群玉圖書之府 · 帝室圖書之章 · 朝鮮總督府 圖書之印 · 서울大學校圖書	· 東京帝國大學 圖書章 · 朝鮮總督府 圖書之印 · 서울大學校圖書	· 東京帝國大學 圖書印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인	早稻田大學圖書	藏書閣印
필사자	未詳	未詳	未詳	未詳	未詳
필사시기	未詳	未詳	未詳	未詳	未詳
기타	卷5-6(合1册)外 缺	錯簡本 4책 모두 落張本			

2) 『정사휘감』의 선본善本

5종의 『정사휘감』은 모두 필사본으로 필사자나 필사시기에 관한 정보가 없어 선후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위의 서지사항, 구성과 문장의 차이점 등에 관한 교감을 바탕으로 선본을 추정하고자 한다.

규장각 규4860은 제3책만 남아 있으므로 다른 4종의 제3책과 비교해보니, 4종과 전체 형식상 다른 점과 편집한 전고의 수가 많은 점과 주제마다 남은 공간을 그대로 비워둔 점과 문장의 차이 등으로 볼 때, 초고本初稿本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규장각 규1140은 규장각 규4860을 제외한 3종과 형식이 같은 점과 편집한 전고의 수가 규장각 규4860보다 적고 나머지 3종보다는 많은 점과 주제마다 남은 공간을 그대로 비워 둔 점과 문장의 차이 등으로 볼 때, 개편本改編本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쿄대학 소장본은 규장각 규4860과 규장각 규1140에 비하여 편집한 전고의 수가 적은 점과 문장이 변화된 점과 권卷이 끝나는 경우만 남은 지면을 남겨둔 점과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과 글자의 약간의 출입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선본 또는 정본定本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정본은 고本稿本의 개념을 넘어 전래본 중 표준이 될 만한 본문이 수록된 책을 의미한다.¹⁰ 다만 8개의 오류가 보이나 이는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보인다.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은 도쿄대학 소장본과 본문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본은 7개의 오류가 동일하게 보이고 장서각 소장본은 8개의 오류가 동일하게 보이며, 여기에 전고의 누락 등 몇 개의 오류가 더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전사本傳寫本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사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는 오자誤字도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쿄대학 소장본, 와세다대학 소장본, 장서각 소장본에는 「독성효」 ‘계조’에 “魯哀公薨”으로 되어 있는데, 규장각 소장본에는 ‘襄公’으로 되어 있다. 이 전고는 양공이 죽었을 때의 전고이므로 ‘哀’는 오자이다. 그리고 도쿄대학 소장본, 와세다대학 소장본, 장서각 소장본에는 「근사전」 ‘법조’에 “朕之于神 惟恐誠敬未盡 何敢殫勞”로 되어 있는데, 규장각 소장본에는 ‘殫’이 ‘憚’으로 되어 있고 원전인 『명사강

10 천혜봉, 『한국 서지학』, 민음사, 2007, 120~125쪽 참조.

목』¹¹도 ‘懍’으로 되어 있다. 또 도쿄대학 소장본, 와세다대학 소장본, 장서각 소장본에는 「계충찰」 ‘법조’의 “大事當奏聞 郎吏卑帙 乃一一以煩朕耶”로 되어 있는데, 규장각 소장본에는 ‘帙’이 ‘秩’로 되어 있고 원전인 『자치통감』은 ‘秩’로 되어 있다.¹²

서지사항과 문장 비교를 통하여 도쿄대학 소장본을 『정사휘감』의 선본 또는 정본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도쿄대학 소장본을 기준으로 구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역주의 저본으로 삼았다.

3. 『정사휘감』의 구성과 내용

홍봉한은 『정사휘감』의 구성 방법에 대해 「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삼국 역대의 사서를 상고하여 모범으로 삼을 일[법조]과 경계로 삼을 일[계조]을 모아 분류하고 요점을 뽑아서 ‘정사휘감’이라고 제목을 붙여, 공무 중 한가한 때에 살펴보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모두 8편 34조목이고 나머지 자잘한 조목은 종류에 따라 첨부하였습니다. 당우 唐虞로부터 명명에 이르고 위, 요, 금, 원, 북제, 남당 등 여타 나라에서도 채록한 것은 서업 緒業이 서로 이어져 사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다한 것은 자르고 장황한 것은 끊었으며 혹 문장은 이어져 있지만 의미가 다른 것은 나누어 붙였습니다. 이어서 매 단락 아래에 ‘근안 謹按’을 달아 미천한 생각을 붙였으니, 옛사람이 글을 편집할 때 논단하던 선례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 열성조의 훌륭한 계책과 아름다운 법은 지장 誌狀을 살피기도 하고 재야의 믿을 만한 글을 모으기도 하여 그 속에 함께 실어서 선조의 뜻을 계승하는 도리를 갖추었습니다.¹³

11 『명사강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산금2255-14로 교감 자료로 삼았다.

12 이러한 예는 몇몇 곳에서 더 발견되는데, 두 가지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좌교左敎」 ‘법조法條’의 “堯舜得壽 不假靈于天丹也”에서 도쿄대학 소장본, 와세다대학 소장본, 장서각 소장본에는 ‘天丹’으로 되어 있고 규장각 소장본에는 ‘大丹’로 되어 있는데, 원전인 『속자치통감』은 ‘大丹’으로 되어 있다. 「상검약尙儉約」 ‘계조戒條’의 “於華林園貧兒村 帝自衣襦褸之服 行乞其間以爲樂”에서 도쿄대학 소장본, 와세다대학 소장본, 장서각 소장본에는 ‘貧兒村’ 앞에 ‘立’이 없는데, 규장각 소장본과 원전인 『자치통감』에는 ‘立’이 있다.

13 『정사휘감』 「정사휘감서」, “臣爲是也, 謹稽歷代諸乘, 粹其可法可戒之事, 分部撮要, 名曰正史彙鑑, 以便燕閑之考覽, 凡八編三十四條, 其餘細條, 各以類附焉. 起自唐虞, 迄于皇明, 其於魏遼金元北齊南唐諸國, 亦爲採蒐者, 以緒業相屬, 事蹟足徵也, 煩絮者刪之, 支長者斷之, 或文連而意殊者, 分屬之, 仍就每段之下, 輒係謹按, 綴以微見, 竊附於古人編書論斷之例, 若我列聖朝嘉猷懿則, 或攷誌狀, 或摭在野信書, 攬載於其中, 用備繼述之道”

위의 글을 정리하면, 첫째, 역대 여러 전고典故 가운데 법으로 삼을 일과 경계로 삼을 일을 모아 분류하여 8편 34조목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작은 조목은 각각 유사한 부분에 붙인다. 둘째, 당우로부터 명까지의 전고 이외에 위나라를 비롯한 여타의 전고도 수록한다. 셋째, 번다한 것은 자르고 장황한 것은 끊는다. 넷째, 원전의 문장은 이어져 있지만 의미가 다른 것은 나누어 붙인다. 다섯째, 옛사람이 글을 편집할 때 논단하던 선례를 따라 조목마다 ‘근안’을 붙여 우리나라의 전고를 논한다. 이런 저술의 구성 방법은 상당한 이유와 논리적 맥락을 갖추고 있고, 제왕에 대한 사상 교육서인 만큼 교육적 의도가 짙게 배어 있다.

『정사취감』의 권별 주제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권1은 『정사취감』의 강령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임금이 행해야 할 효를 정성스럽게 행하며, 조종祖宗의 법도를 본받으며, 하늘의 뜻을 공경히 받들며, 제사의 예법을 지키되 백성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게 하며, 시종 일관 학문에 뜻을 두라는 내용으로, 임금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 바탕이 되는 도리를 논하였다.

권2는 유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척하며, 검약을 숭상하고 진기한 물건을 멀리하고 신하와 백성이 바치는 공물을 물리치며, 편벽되고 사사로운 마음을 없애며, 자신의 총명을 믿어 자신의 뜻만을 중시하지 말며, 명을 내리거나 어떠한 일에 대해 언급하면 실행하여 백성의 신뢰를 얻으라는 내용으로, 실제 정사를 행하는 데 신하와 백성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본 덕목에 대해 논하였다.

권3은 궁실 여인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공주가 아녀자로서의 도리를 지키게 하며, 측근의 총애하는 신하나 인척이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제재하며, 종친을 존중하여 화목하게 하며, 내척과 외척에 대한 예우는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왕실의 종친, 인척을 지나치게 예우하거나 신하나 여인을 총애하여 그들이 정사에 관여하여 나라에 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군왕의 제가齊家에 대하여 논하였다.

권4는 현명한 자와 능력 있는 자를 가려내어 등용하고 일단 일을 위임하면 의심하지 말며, 관리의 간사한 행위를 분별하며, 관리 선발 전형에 오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함부로 관직을 주지 말며, 과거시험을 엄격하게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인재 선발과 관리 임용에 대하여 논하였다.

권5는 관리와 재야의 선비가 자유로이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언로를 열며, 학교를 세워 효제孝悌, 인의仁義를 가르쳐 선비의 기상을 배양하며, 훌륭한 행실과 덕망이 있는 자를

높여서 백성에게 명예와 절조를 장려하며, 염치를 알게 하라는 내용으로 도덕적·정신적 교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논하였다.

권6은 갓난아이를 아끼듯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여 부역과 세금을 경감하고 빈곤한 백성을 구휼하며, 백성의 곤궁함을 알고 정책을 시행하며, 평상시 재물을 절약하여 재난에 대비하며, 임금의 행차 의식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여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라는 내용으로, 부역과 세금을 경감하고 구휼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며 임금과 관청이 재용을 아껴 국가 재정을 풍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 정책에 대하여 논하였다.

권7은 법령을 세우면 조변석개하지 말고 차별을 두지 말아야 백성이 지켜나가며, 현자와 소인배를 분별하여 공명정대하게 등용하거나 배척하여야 상하의 기강을 세울 수 있고 공과 죄를 공명정대하게 구분하여야 상벌의 기강을 세울 수 있으며, 관직을 주거나 상을 내리고 형벌을 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여겨야 효험이 있고 평상시에 함부로 시행하지 않고 신상필벌을 보여야 위난이 닥쳤을 때 나라를 위하여 백성이 희생하는 것이며, 효제, 충신, 예의, 염치를 가르친 이후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부득이 형률을 시행하고 경중을 따져 합당한 벌을 가하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두어 가혹하게 시행하지 말며, 사면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불가피한 법률 집행에 대하여 논하였다.

권8은 신료에게 예모를 갖추어 존중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시행하여 체모를 무너뜨리지 말며, 봉당에 관계없이 공정한 마음으로 현우賢愚, 선악을 분별하고 등용하여 간악한 자들이 올바른 자들은 해치지 못하도록 하며, 평안한 때에 군사 시설과 장비를 정비하여 불시에 닥쳐올 위난을 대비하라는 내용을 논하였다. 마지막 34번째 조목의 ‘근안’ 끝에 “아! 위에서 진언한 30여 조목은 모두 임금의 도리와 크게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고 경계할 만한 것은 경계하여 하나하나 몸소 실천하여 종이의 진부한 말이 되지 않게 하신다면, 모든 조목에서 논한 것이 모두 후손에게 훌륭한 덕행을 남길 근본이니, 더욱이 억만 년 동안 영원할 기틀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위에서 논한 모든 조목을 살피 실천하여 후손에게 훌륭한 규범을 남기라고 강조하였다. 권별 주제와 장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2〉 『정사회감』의 구성 및 주제

책수	권수	조목		장수		
1책	1권	篤聖孝	성효聖孝를 돈독히 하다	法條 13장 戒條 12장 謹按	法條 63장 戒條 35장	
		法祖宗	조종祖宗을 본받다	法條 11장 戒條 4장 謹按		
		敬事天	하늘의 뜻을 경건히 받들다	法條 17장 戒條 10장 謹按		
		勤祀典	제사의 예법을 신중히 하다	法條 8장 戒條 5장 謹按		
		典聖學	성학聖學에 힘쓰다	法條 14장 戒條 4장 謹按		
	2권	崇儒學 附 左教	유학儒學을 숭상하다 부록: 이단을 배격하다	法條 17장 戒條 5장 法條 6장 戒條 7장 謹按	法條 80장 戒條 44장	
		崇儉約 附 斥珍異 附 却貢獻	검약을 숭상하다 부록: 진기한 것을 멀리하다 부록: 공물貢物을 물리치다	法條 16장 戒條 10장 法條 5장 戒條 2장 法條 8장 戒條 3장 謹按		
		去偏私	편벽되고 사사로운 마음을 없애다	法條 14장 戒條 4장 謹按		
		戒聰察	자신의 총명을 경계하다	法條 5장 戒條 7장 謹按		
		信辭教	말과 전교를 미덥게 하다	法條 9장 戒條 6장 謹按		
	2책	3권	正宮闈 附 公主	궁위宮闈를 바로잡다 부록: 공주公主	法條 18장 戒條 11장 法條 3장 戒條 2장 謹按	法條 59장 戒條 47장
			馭近習	근습近習을 제어하다	法條 11장 戒條 17장 謹按	
			睦宗親	종친을 보살피다	法條 11장 戒條 11장 謹按	
			待戚畹	척안戚畹을 대하다	法條 16장 戒條 6장 謹按	
4권		任賢能 附 委任	현능賢能을 임용하다 부록: 위임委任	法條 18장 戒條 5장 法條 11장 謹按	法條 78장 戒條 40장	
		辨奸邪	간사姦邪를 분별하다	法條 12장 戒條 23장 謹按		
		重銓選 附 惜官方	전형銓衡을 신중히 하다 부록: 관직 제수를 신중히 하다	法條 14장 戒條 8장 法條 5장 謹按		
		嚴科試	과거科擧를 엄중히 하다	法條 18장 戒條 4장 謹按		

책수	권수	조목		장수		
3책	5권	開言路	언로言路를 열다	法條 30장 戒條 10장 謹按	法條 75장 戒條 20장	
		養士氣	선비의 기상을 배양하다	法條 11장 戒條 4장 謹按		
		獎名節	명예와 절의를 장려하다	法條 18장 戒條 3장 謹按		
		勵廉恥	염치를 장려하다	法條 16장 戒條 3장 謹按		
	6권	愛民生 附 輕徭賦 附 賑濟	민생民生을 사랑하다 부록: 요역徭役을 줄이다 부록: 백성을 구휩하다	法條 22장 戒條 6장 法條9장 法條7장 謹按	法條 71장 戒條 58장	
		勤政事	정사政事を 부지런히 하다	法條 10장 戒條 14장 謹按		
		節財用	재용財用을 줄이다	法條 16장 戒條 15장 謹按		
		簡行幸	행행行幸을 삼가다	法條 7장 戒條 23장 謹按		
	4책	7권	守法制	법제法制를 지키다	法條 27장 戒條 6장 謹按	法條 91장 戒條 32장
			立紀綱	기강을 세우다	法條 16장 戒條 7장 謹按	
明賞罰			상벌을 분명히 하다	法條20장 戒條5장 謹按		
恤刑獄 附 慎赦			형옥을 삼가다 부록: 사면을 신중히 하다	法條 24장 戒條 10장 法條 4장 謹按		
8권		禮臣僚	신료臣僚를 예우하다	法條 17장 戒條 9장 謹按	法條 59장 戒條 36장	
		卞朋黨	붕당을 분별하다	法條 7장 戒條 10장 謹按		
		飭武備	군비軍備를 갖추다	法條 10장 戒條 10장 謹按		
		裕後昆	후손에게 덕행을 물려주다	法條 25장 戒條 7장 謹按		
합계	8권	34조목[부附 포함하면 43조목]		法條 576장, 戒條 312장		

4. 맺음말

『정사회감』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이李珥가 선조宣祖를 위하여 『성학집요』를 지었던 것과 같이, 왕세손이었던 정조 1인을 위하여 편찬한 경세經世 교육서라는 것이다. 홍봉한은 마지막 조목인 「유후곤裕後昆」의 ‘근안’ 말미에서 “아! 위에서 진언한 30여 조목은 모두 임금의 도리와 크게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고 경계할 만한 것은 경계하여 하나하나 몸소 실천하여 종이 위의 진부한 말이 되지 않게 하신다면, 모든 조목에서 논한 것이 모두 후손에게 훌륭한 덕행을 남길 근본이니, 더욱이 억만 년 동안 영원할 기틀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¹⁴라고 하여, 모든 조목을 살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체득하여 성군이 되어 장차 왕위를 계승할 후손에게 규범을 남기라고 하였다.

홍봉한은 1764년(영조 40)에 영조에게 시무時務와 관련하여 납간쟁納諫諍, 석관방惜官方, 신형상慎刑賞, 장명절獎名節, 절재용節財用, 수인재搜人才 6조목으로 나누고 흠민은恤民隱, 정풍속正風俗, 유곤지모裕昆之謨 3조목을 덧붙여 1만자에 이르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를 보통 ‘시무 6조’라고 한다. 이 ‘시무 6조’에 담긴 주장을 더욱 확충하여 왕세손을 위하여 편찬한 것이 『정사회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위하여 『상훈常訓』, 『자성편自省編』, 『심감心鑑』, 『정훈政訓』, 『속자성편續自省編』 등의 교육서를 직접 만들었다. 이 책들에서 영조는 옛 성현들의 말씀과 선대 임금들의 전고를 채록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국왕으로서 느꼈던 감정, 과오에 대한 반성, 자신이 터득한 사실 등을 서술하였다. 이는 아들 사도세자가 자신의 경험을 감계鑑戒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과 같이 홍봉한은 『정사회감』에서 중국의 역대 군주들의 전고를 34가지 조목으로 분류하고 자신이 전하고픈 요지를 덧붙여, 왕위에 올라 나라의 정사를 살필 왕세손이 천명사상, 덕치사상, 민본사상 등 군주로서의 덕성과 소양을 두루 갖추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홍봉한은 주로 영조조와 정조조의 정치적 주요 인물로, 민생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던 관리로, 또는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조명 받아 왔다. 그러나 그의

14 『정사회감』 권8, “嗚呼。上所陳三十餘條。俱是君道之所大關也。可法者法之。可戒者戒之。一一躬踐。俾不爲紙上之陳談。則諸條所論。莫不爲裕後昆之本。而益可鞏億萬斯年之基矣。念哉念哉。”

문장에 대해서는 고찰되지 않은 편이다. 홍봉한의 문장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정조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 자신이 지은 시나 글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기도 하고, 시제詩題나 논제論題를 부탁하기도 하고, 영조에게 올릴 소장疏章의 초안을 부탁하기도 하고, 『송사宋史』를 편찬하면서 초안 작성, 산삭, 운문 등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장이나 문학관에 있어 홍봉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정조는 홍봉한이 남긴 국정 운영에 대한 주의奏議를 모아 『어정홍의정공주고御定洪翼靖公奏藁』를 직접 편찬하고, 이에 대한 서인序引을 직접 작성하였는데, 『홍재전서』에서 3권이나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 또한 정조는 홍봉한이 남긴 글을 모아 유집遺集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홍봉한의 저서는 『정사회감』 외에 『어정홍의정공주고』와 『익익재만록翼翼齋漫錄』이 있고, 서발문序跋文으로 「원암집발泂巖集跋」, 「준천계첩서濬川契帖序」, 「어제영은경희록발御製迎恩慶喜錄跋」, 「궁원식례보편서宮園式禮補編序」, 「식경편서識慶編序」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 남아 있는 저술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사회감』의 ‘근안’을 통해 경經과 사뱃을 아울러 담은 그의 문장을 잘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정사회감』은 정조의 정치관과 문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홍봉한의 문장과 경학, 경세사상, 교육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正史彙鑑

권 1

정사휘감 서

경經은 도道에 대해 말하고, 사史는 지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도道와 일은 다르지만 귀결점은 하나이므로, 사史를 숙지하는 것은 경經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經은 분량이 많지 않아 논할 것이 없지만 사史는 권질이 방대하므로 읽는 사람들이 요점을 파악하지 못할까 염려하니,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딱 맞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제왕가는 온갖 일이 모이는 곳이므로 여러 가지 일을 접할 때는 많고 책을 읽을 시간은 부족하니, 더더욱 어느 겨를에 다양하게 많이 읽고 돌이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러한 이유로 여러 역사서를 살펴 법으로 삼을 일과 경계로 삼을 일을 모아서 분류하고 요점을 뽑아 『정사휘감』이라 제목을 붙여, 한가한 때에 살펴보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모두 8편 34조목으로 구성했는데, 기타 세세한 조목은 내용에 따라 유사한 34조목에 첨부하였습니다. 수록한 시대는 당우唐虞로부터 명명까지인데, 위魏, 요遼, 금金, 원元, 북제北齊, 남당南唐 등의 일도 수록한 까닭은 서로 이어져 있어 일의 연관 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잡다한 내용은 삭제하고 장황한 글은 줄이고 간혹 원전의 문장은 이어져 있지만 주제가 다른 것은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목마다 끝부분에 ‘근안謹按’을 덧붙여 신의 미천한 생각을 담았으니, 옛사람이 글을 편집할 때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선례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 열성조의 훌륭한 계책과 아름다운 법에 대한 것은, 지장誌狀을 살펴기도 하고 재야의 믿을 만한 글을 취하여 ‘근안’에 실어 선조의 뜻을 계승하는 도리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대조大朝영조께서 즉위하신 지 50년으로, 덕행과 공화功化가 사람들의 이목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정사를 보실 때나 일상생활을 하실 때 보고 감동한 바가 이미 절실할 것이니, 어찌 거친 말로 번거롭게 수록하겠습니까. 다만 선대 유학자들

이 의리에 관해 논의한 것 중에 채록할 만한 것이 많지만 수록하지 않은 까닭은, 신이 노둔하여 감히 헤아려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자들이 모두 수집해두어서 증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리라는 것은 선을 행하고 악을 없애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일취월장하는 예학睿學으로 이 책에 눈을 붙이고 마음으로 터득하셔서, 만약 자신의 덕이 옛사람의 아름다운 법도와 들어맞는 점이 있다면 부족한 점이 미루어 넓히시고, 자신의 허물이 옛사람의 부족한 덕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서둘러 고치소서. 그리고 경계해야 할 점은 미리 막고, 규범으로 삼아야 할 점은 힘써 행하소서. 그리하여 만고의 일들이 마음속에 뚜렷이 새겨져 시비의 판단이 분명하고 행하는 조치가 타당하여 몸과 마음으로부터 집안과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일하다면 그것이 의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달리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뜻을 세우지 않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요임금과 순임금이 성인聖人이 되고 걸왕桀王과 도척盜跖이 광인狂人이 된 것은 오직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뜻이 선을 지향한다면 만사에 펼쳐지는 것이 치세治世와 길을 같이할 것이며, 선을 저버린다면 정사에 드러나는 것이 난세亂世와 귀결을 같이할 것입니다. 지금 편찬한 이 책에 더러 경계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 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굳건히 정하지 않고 물려서서 머뭇거리다 보면 한갓 종이 위의 빈말에 불과할 뿐이니,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정자程子가 “임금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옛일을 상고함에 있다.”라고 하였고, 또 “임금의 뜻이 정해져야 천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한¹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천박한 식견을 벌여놓은 것이 참람한 짓임을 매우 잘 압니다. 다만 신은 늙어가고 정력도 날로 쇠하여, 털끝만한 정성도 바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부족한 견해를 감히 문자의 말단에 의탁한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충심을 살피셔서 예학睿學에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실로 나라의 복일 것이니, 어찌 노신老臣의 광영일 뿐이겠습니까.

기축년(1769) 정월 모일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손사 신 흥봉한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서문을 씁니다.

1 정자程子가 … 한: 정호程顯은 「논군도지대論君道之大」에서 “임금의 도가 위대한 것은 옛일을 상고하여 학문을 바로 세우고 선악의 귀결을 밝히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여서 밝게 도의 바른 곳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그러므로 임금의 뜻이 먼저 정해져야 하니, 임금의 뜻이 먼저 정해져야만 천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君道之大 在乎稽古正學 明善惡之歸 辨忠邪之分 曠然趨道之正 故在乎君誌先定 君誌定而天下之治成矣]”라고 하였다.

독성효 篤聖孝

성효를 돈독히 하다

법조 法條

- 순¹의 어머니가 죽고 계모가 상^象을 낳았는데, 부모와 상이 모두 어리석어 간악한 마음을 고치지 못하였다. 아버지 고수^{瞽瞍}가 후처와 작은 아들 상에게 현혹되어 순을 죽이려 했는데도 순은 효제의 도리를 다하여 부모를 모셔, 20세에 효성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 주 문왕²이 세자시절, 아버지 왕계³에게 하루에 세 번 문안을 여쭙고 음식을 삼켰으니, 효성과 공경이 매우 독실하였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⁴』에 보인다.】
- 후한 명제⁵가 원릉⁶에 전할 때가 되었는데, 밤에 선제⁷의 태후⁸가 평소

1 순^舜: 유우씨^{有虞氏}이므로 ‘우순^{虞舜}’ 또는 ‘제순^{帝舜}’으로 불린다. 효자로 이름이 났고, 요^堯가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자 하여 자신의 두 딸을 시집 보내고 여러 임무를 맡겼다. 이후 순에게 섭정을 맡기고 은거한 요가 죽자 요의 아들 단^丹주^朱가 즉위하였는데, 신하들이 여전히 은거한 순을 찾아와 정무를 진행하니 그제야 순이 천명을 거스릴 수 없음을 깨닫고 즉위하였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여 천하를 잘 다스렸고, 치수^{治水}에 큰 공을 세운 우^禹를 후계자로 정하였다. 요와 함께 상고 시대 대표적인 성군^{聖君}으로 추앙받는다.

2 주 문왕^{周文王}: 상^商의 제후국이던 주^周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창^昌이다. 부친 계^季의 서백^{西伯} 작위를 계승하여 ‘서백^{西伯} 창^昌’으로 불린다. 아들인 무왕^{武王}이 상을 멸망시키고 주 왕조를 창건한 뒤, 문왕^{文王}으로 추존되었다. 상 왕조와 평화적 태도를 취하였고 우^禹, 예^桀 두 나라의 분쟁을 중재^{仲裁}하면서 제후들의 신망을 얻어 제후들 가운데 3분의 2가 따르게 되었다. 만년에 강상^{姜尚}의 도움을 받아 덕치에 힘썼다. 유가^{儒家}에서 성왕^{聖王}으로 일컫는다.

3 후한 명제^{後漢明帝}: 28~75. 후한 제2대 황제 유장^{劉莊}으로, 재위 기간은 57년에서 75년이다. 광무제^{光武帝}의 넷째 아들로, 아버지를 이어 한나라 회복 사업을 공고히 하였다. 채음^{蔡愔} 등을 인도에 보내 중국에 불교가 전파되도록 했으며, 빈민 구제와 농업 진흥, 조세 및 형벌 감면에 주력했으며, 황하를 정리하여 옛 모습을 되찾도록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북쪽의 흉노를 평정하고 지배력을 확립했으며 반초^{班超}를 서역에 파견해서 친선을 도모하였다.

4 원릉^{原陵}: 후한 명제의 아버지 광무제와 어머니 음려^{陰麗華}의 능이다.

와 같이 즐거워하는 꿈을 꾸고서 깨어나 비통하여 잠들지 못하였다.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을 거느리고 원릉에 올라갔는데 원릉의 나무에 감로^{甘露}가 떨어지자, 명제가 관리들에게 채취하여 제단에 올리게 하였다. 궁으로 돌아와 명제가 태후의 경대 안에 있는 물건을 보고 감회에 젖어 슬피 우니, 좌우 신하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 진 무제⁶가 아버지 문제^{文帝}의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상복을 벗은 뒤에도 상중과 똑같이 흰 관을 쓰고 거친 밥을 먹으며 슬퍼하였다. 송양릉⁷에 전알하려 할 때, “산릉에 전알할 때 무슨 마음으로 상복을 입지 않겠는가. 최질^{衰絰}을 입고 따를 것을 의논하라.”라고 하였다. 얼마 뒤 신하들이 평상복으로 바꿔 입고 평소와 같이 수라를 드실 것을 청하니, “항상 저승에 계신 분을 생각하면, 머리에 수질^{首絰}을 두르고 허리에 요질^{腰絰}을 두르는 예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애통하다. 그런데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거친 밥과 흰옷으로 삼년을 지냈다. 또한 어머니 문명태후⁸의 장례를 지낼 때, 유사^{有司}가 상복을 벗을 것을 청하자, “종신토록 키워주신 은혜를 입고서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지 않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 북위^{北魏}의 태황태후 풍씨⁹가 세상을 떠나자, 효문제¹⁰가 5일 동안 물 한 모금

5 태후: 후한 명제의 어머니 음려화를 가리킨다. 미모가 뛰어나고 성품도 곱고 검소하여, 광무제가 “아내를 맞으려면 음려화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광무제와 함께 원릉에 합장되었다.

6 진 무제^{晉武帝}: 236~290. 진 제1대 황제 사마염^{司馬炎}으로, 재위 기간은 265년에서 290년이다. 위 원제^{魏元帝} 때 아버지 사마소^{司馬昭}의 뒤를 이어 상국^{相國}과 진왕^{晉王}이 되었는데, 원제에게 선양을 받아 진을 건립하였다. 촉^蜀과 오^吳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후, 새로운 율령을 반포하고 관제를 정비하였으며 점전제^{占田制}를 시행하는 등 치국에 힘썼다. 그러나 만년에 환락에 빠지고 어리석은 사마충^{司馬衷}을 태자로 삼는 등 실정하여 죽은 뒤 ‘팔왕^{八王}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다.

7 송양릉^{宋陽陵}: 진 무제의 아버지 문제의 능이다.

8 문명태후^{文明太后}: 217~268. 진의 태후 왕원희^{王元姬}이다. 위^魏의 학자 왕숙^{王肅}의 딸로, 사마소^{司馬昭}와 혼인하여 무제^{武帝} 사마염^{司馬炎}과 제왕^{齊王} 사마유^{司馬攸}를 낳았다.

9 태황태후 풍씨^{馮氏}: 북위 문성제^{北魏文成帝} 탁발준^{拓跋濬}의 황후인 문명황후^{文明皇后}(442~490)이다. 아들 탁발홍^{拓跋弘}이 즉위하자 섭정하여 황제를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탁발홍이 자신에게 대항하자 폐위시키고 5살의 손자 원광^{元宏}탁발광^{拓跋宏}을 옹립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였다.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여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고 균전제를 실시하여 농민에게 고르게 땅을 배분하였다. 이러한 풍 태후의 정책으로 나라가 강성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폭정을 행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도 먹지 않았다. 이에 중부법조¹⁰ 中部法曹 양춘¹¹ 楊椿이 “폐하께서는 조종¹² 祖宗의 대업과 만국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계시거늘, 어찌 필부의 예법과 똑같이 하여 쓰러져 계십니까.”라고 간언하니, 효문제가 죽을 먹었다. 여러 왕공들이 묘역을 정할 것을 청하니, 효문제가 “조모께서 돌아가시는 재앙을 만난 이후로 줄곧 당혹스러워 어제 일과 같이 느껴지지만, 그나마 재궁¹³ 梓宮을 모시고 있어 곁에 계신 듯하다. 그러니 산릉에 천장¹⁴ 遷葬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마 듣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장례를 치른 뒤, 왕공들이 공제¹⁵ 公除를 거듭 청하니, 효문제가 “성인¹⁶ 聖人이 졸곡의 예를 제정한 것은 차츰차츰 정을 떼게 한 것이거늘 지금 열흘 만에 탈상을 언급하니, 도리를 상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또 영고릉¹⁷ 永固陵에 전알하고서 추억에 잠겨 슬피 울며 하룻밤을 지낸 뒤에 밥을 먹었다. 당시 비가 내리지 않자 유사¹⁸ 有司가 신들에게 기도하기를 청하니, 효문제가 “지금 온 천하가 어머니를 잃어 저승과 이승이 함께 슬퍼하거늘 어찌 급히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는가.”라고 하였다. 예전에 풍 태후가 효문제의 영민함을 싫어하여 폐위시키려고 하였고 매서운 추위에 빈방에 가두고 3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는데도 효문제는 유감으로 여기지 않았다.

■ 북제 숙종¹⁹ 北齊肅宗은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태후의 건강이 좋지 않자 숙종은 신

10 효문제¹⁰ 孝文帝: 467~499. 북위 제6대 군주 원광¹⁰ 元宏[탁발광¹⁰ 拓跋宏]으로, 재위 기간 471년에서 499년이다. 5살에 즉위하여 19년간 조모¹⁰ 祖母 풍 태후¹⁰ 馮太后가 섭정하였다. 친정 기간은 10년이었지만 북위 중흥의 군주로 일컬어진다. 처음으로 관리에게 봉록을 지급하고 율령을 개정하였으며 호적제도를 정비하고 균전제를 실시하여 토지제도를 개혁하였다. 494년 수도를 낙양¹⁰ 洛陽으로 옮기면서 조정에서 한어¹⁰ 漢語를 사용하고 중국식 복장과 성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한화¹⁰ 漢化 정책을 시행하였다. 황족의 씨족명 '탁발¹⁰ 拓跋'을 '원¹⁰ 元'으로 고쳤으나, 극심한 반발이 이어져 북주에 이르러서 다시 복귀되었다.

11 양춘¹¹ 楊椿: 455~531. 자는 연수¹¹ 延壽이다. 중부법조¹¹ 中部法曹가 되어 송사를 매우 공정하게 처리하여 효문제의 신임을 받았다. 관직은 태보¹¹ 太保에 이르렀다.

12 재궁¹² 梓宮: 왕이나 왕후의 관곽을 이르는 말로, 가래나무¹² 梓로 만들기 때문에 재궁이라고 하였다.

13 공제¹³ 公除: 국상을 당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무를 중지하다가 상기가 지난 뒤에 상복을 벗는 것을 이른다.

14 영고릉¹⁴ 永固陵: 효문제의 모친 문명태후의 능이다.

15 북제 숙종¹⁵ 北齊肅宗: 535~561. 북제 제3대 군주 고연¹⁵ 高演으로, 재위 기간은 560년에서 561년이다. 문선제¹⁵ 文宣帝의 아들로, 조카 고은¹⁵ 高殷을 폐위시키고 즉위하였고, 고은이 재기할까 두려워 그를 죽였다. 조세와 부역을 줄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애썼으며, 직접 북벌에 나서 고막해족을 장성 너머로 쫓아냈다. 그러나 말에서 떨어져 27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고연은 어린 아들 고백년¹⁵ 高百年도 숙부들에게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황태자에서 폐위시키고 자신의 동생 고담¹⁵ 高湛이 제위를 잇게 하였다. 그는 고담에게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고담 또한 제위에 오른 뒤 조카 고백년을 죽였다.

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의대를 풀지 않은 것이 거의 40일에 이르렀는데, 문밖에 엎드려 있으면서 음식과 약물을 모두 손수 드렸다. 태후가 가슴 통증이 심하여 견디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숙종은 휘장 앞에 서서 모시면서 통증을 대신하고자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어 피가 흘러 소매에 묻어났다.

■ 당 태종唐太宗¹⁶이 장손무기長孫無忌¹⁷ 등에게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세속에서는 모두들 즐겁다고 하나 짐은 마음이 아프다. 지금 천하에 군림하여 온 세상을 소유했지만 슬하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기쁨은 영영 누릴 수 없으니, 자료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쌀을 짊어지고 다닐 때를 생각하며 슬퍼했던 것¹⁸이다. 어찌 어버이께서 고생하신 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서 두어 줄 눈물을 흘렸다. 【이상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보인다.】

■ 거란 군주 성종聖宗¹⁹이 친정한 지 한 달 뒤에 태후가 세상을 떠나자, 슬퍼하여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고 울면 반드시 피를 토하였다. 신하들이 “산릉山陵의 역사役事가 이미 끝났으니, 연호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진언하니, 성종은 “연호를 바꾸는 것은 길례吉禮이니, 상중에 길례를 행하는 것은 불효다.”라고 하고, 삼년상을 마쳤다.

16 당 태종唐太宗: 600~849. 당 제2대 황제 이세민李世民으로, 재위 기간은 626년에서 649년이다. 고조 이연李淵의 차남으로, 이연을 도와 당의 창건을 주도하였다. 당이 건립된 후, 중원 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626년 형인 태자 이간성, 넷째 아우 이원길 등을 죽이는 ‘현무문玄武門의 정변政變’을 일으켜 태자가 되었고, 얼마 후 선양을 받아 즉위하였다.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치文治에 힘썼고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지방 행정 조직, 재정, 조세 등 모든 제도를 정비하여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루었다.

17 장손무기長孫無忌: 594~659. 자는 기보機輔이다. 수隋의 장손성長孫晟의 아들이며 태종의 황후인 문덕순성황후文德順聖皇后의 오빠이다. 태종이 제위에 오르는 데 협조하여,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사도司徒, 태위太尉 등을 역임하면서 30년간 집정하였다. 태종이 죽은 뒤, 고종이 무씨武氏를 황후로 세우는 것에 반대하여 반역죄의 혐의를 받고 유배되었다가 자살하였다.

18 자료가 …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성공하여 부귀를 누리면서 살더라도, 빈궁한 시절 부모님을 봉양하던 삶만 못함을 말한다. 자료는 집이 몹시 가난하여 백리 밖까지 등짐으로 쌀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부모를 봉양해야 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뒤 벼슬을 하여 살림이 넉넉해졌지만 부모를 위해 고생스럽게 쌀을 지고 다닐 때를 그리워하였다. (『孔子家語』 「致思」)

19 거란 군주 성종聖宗: 971~1031. 요遼 제6대 군주 용서隆緒로, 재위 기간은 982년에서 1031년이다. 정치조직과 군사조직을 정비해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으며, 발해를 정벌하고 티베트계의 탕구트 및 서역의 위구르 등의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했다.

|| 북송 인종北宋仁宗²⁰ 때, 유 태후劉太后²¹가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인종을 사랑하였고 인종 또한 효를 다하여 시종일관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유 태후가 세상을 떠나자, 과거 유 태후가 수렴청정 할 때의 일에 대해 거론하는 사람이 많았다. 범중엄范仲淹²²이 인종에게 “태후가 선제先帝[진종眞宗]의 유명遺命을 받아 폐하를 보살피고 보좌한 지 10여 년이니, 지금 태후의 작은 과실을 감추어 큰 덕을 온전히 해야 합니다.”라고 진언하니, 인종이 “짐은 이런 말조차 차마 들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궁궐 안과 밖에 조서를 내려 유 태후가 수렴청정 할 때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신칙하였다.

|| 북송 영종北宋英宗²³이 병이 나자 좌우의 사람들이 태후를 헐뜯고 이간질하여, 결국 영종과 태후가 서로를 의심하여 멀어졌다. 한기韓琦²⁴가 영종을 뵈고서 “예로부터 순임금을 대효大孝라 일컫습니다. 부모가 자애로우 자식이 효도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므로 말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애롭지 않은데도 자식이 효를 잃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니 태후를 섬기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가를 염려해야 할 뿐입니다. 어찌 자애롭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라고 진언하였다. 이에 영종이 크게 감동하고 깨달아, 영종과 태후의 의심이 순식간에 풀렸다.

20 북송 인종北宋仁宗: 1010~1063. 북송 제4대 황제 조정趙禎로, 재위 기간은 1022년에서 1063년이다. 송 황제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길다. 진종의 여섯째 아들로, 다섯 형이 모두 요절하여 13세에 즉위하였다. 즉위 초 장헌명숙황후章獻明肅皇后가 수렴청정하다가 1033년부터 친정을 시작하였다. 천성이 너그럽고 평소 낮은 옷을 입고 지낼 만큼 매우 검약하였다.

21 유 태후劉太后: 북송 진종北宋眞宗의 황후인 장헌명숙황후章獻明肅皇后 유이劉娥(968~1033)이다. 중국 최초로 수렴청정을 한 태후이며 선인태후宣仁太后 고씨高氏, 측천무후則天武后와 함께 중국의 3대 여주女主로 불리기도 한다. 자신의 공녀인 이신비李宸妃가 인종을 낳자, 인종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겨 사랑으로 길렀다.

22 범중엄范仲淹: 989~1052. 자는 희문希文이다. 인종이 친정하자 부름을 받아 간관諫官이 되었다. 곽 황후郭皇后의 폐륜문을 놓고 여이간몽夷簡 등과 대립하다가 좌천되었다. 서하西夏의 침공을 막아 공을 세운 후 관리제도와 군사제도 등을 개혁했는데, 이를 '경력신정慶曆新政'이라 한다. 그러나 하송夏慄 일파에 의해 좌천되어 지방관을 역임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청렴하고 애국애민에 힘써 사대부의 모범적 인물로 꼽힌다.

23 북송 영종北宋英宗: 1032~1067. 북송 제5대 황제 조서趙曙로, 재위 기간은 1063년에서 1067년이다. 인종의 종형從兄인 조윤양趙允讓의 열셋째 아들인데, 인종이 아들이 없어서 데려와 키워 태자로 삼았다. 인종이 죽은 뒤 제위에 올랐지만 병약하여 조 태후曹太后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1064년 친정을 시작하여, 전쟁 등으로 고갈된 재정을 확보하려고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재위 4년 만에 병사病死하였다.

24 한기韓琦: 1008~1075. 자는 치규稚圭이다. 흥년이 들자 탐관오리를 벌하고 세금과 부역을 줄여 기민을 구제하였으며, 서하西夏의 침입을 물리쳐 공을 세웠다. 이후 재상에 올랐으나 왕안석과 대립하다 관직에서 물러났다.

- || 남송 효종南末孝宗²⁵ 때, 태상황제[고취]가 세상을 떠나 삼년상을 지내는데 신하들이 상기의 달수를 낱수로 바꾸어 지내는 방법²⁶을 누차 청하였으나, 효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 || 원 인종元仁宗²⁷이 몸이 편치 않았는데, 태자 시디발라[碩德八剌]²⁸【영종英宗이다.】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매일 밤 향을 태우고서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예법에 지나치도록 슬퍼하여 소복을 입고 땅바닥에서 자고 하루에 죽 한 그릇만 먹었다.【이상은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에 보인다.】
- || 명 성조明成祖²⁹ 때, 이지강李至剛³⁰이 태조의 기일에 ‘송宋의 제도를 따라 천희사天禧寺 등 다섯 절에서 승려와 도인들에게 독경하도록 명하라’고 주청하였다. 이에 성조가 “인군의 효는 못사람과 다르니, 인군이 된 자는 몸을 삼가고 덕을 닦으며 우러러 하늘의 뜻을 본받으며 제정된 법을 삼가 행하여 나라를 다스림에 원대한 계책을 세워서 종묘와 사직이 안정되고 만민이 즐거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임금의 효이다. 수재修齋³¹하고 독경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명사강목明史綱目』에 보인다.】

25 남송 효종南末孝宗: 1127~1194. 남송 제2대 황제 조신趙昀으로, 재위 기간은 1162년에서 1189년이다. 고종高宗의 양자가 되어 즉위하였다. 고종이 효종에게 양위한 후 24년간 태상황으로서 끊임없이 정사에 관여하였는데, 효종은 행동을 삼가며 고종을 극진히 모셨다. 금순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여 금과 화의를 맺었다. 통치하는 동안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정치, 제도 등이 개혁되었으며 재정이 풍족하였다.

26 달수를 ... 방법: 상례를 빨리 끝내기 위해 달수를 낱수로 바꾸어 치르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삼년상인 경우 한 달을 하루로 환산하여 25일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이다.

27 원 인종元仁宗: 1285~1320. 원 제4대 황제 아유르바르와다[愛育黎拔力八達]로, 재위 기간은 1311년에서 1320년이다. 황제였던 형 카이산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정관정요貞觀政要』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한문 법전 편찬을 시작하였으며, 한인漢人과 비한인非漢人을 불문하고 유학자를 우대하였으며 과거를 부활시켰다.

28 시디발라[碩德八剌]: 1303~1323. 원 제5대 황제 영종英宗으로, 재위 기간은 1320년에서 1323년이다. 인종의 장남으로, 즉위 초기에는 조모祖母인 다기[答里]와 중서우승상 테무데루鐵木進兒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가 1322년 다기와 테무데루가 죽은 뒤 친정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테무데루의 양자 테그시[鐵失]에 의해 암살당했다.

29 명 성조明成祖: 1360~1424. 명 제3대 황제 주체朱棣로, 재위 기간은 1402년에서 1424년이다. 연호를 따라 ‘영락제永樂帝’로 불린다. 조카인 혜종惠宗의 정책에 반발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4년간의 내전 끝에 승리하여 즉위하였다. 대군을 이끌고 몽골을 공격하고, 베트남, 티베트, 남아시아 등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북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동쪽 연안까지 위세를 떨쳤다. 『영락대전永樂大典』을 편찬하는 등 문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재위 기간에 명은 전성기를 누렸으나, 그가 추진한 원정과 대규모의 공사는 나라가 피폐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30 이지강李至剛: 1358~1427. 명의 관리 이동李銅이다. 지강至剛은 자이다. 성조成祖 때 우통정右通政이 되고, 『태조실록太祖實錄』을 편찬하고 예부상서에 올랐다.

31 수재修齋: 불교의 종교의식으로, 승려를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다.

계조 戒條

- || 위 정공衛定公³²이 죽었는데, 태자 간術³³이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부인 강씨姜氏가 보고 서 “이놈은 위衛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미망인인 나에게 무례한 짓을 할 것이다. 아, 하늘이 위衛에 재앙을 내리시는구나.”라고 탄식하였다.

- || 노 양공魯襄公³⁴이 죽자, 아들 조稠³⁵를 후사로 세우려고 하였다. 목숙穆叔³⁶이 반대하여 “이 사람은 상중에도 애통해 하지 않았고 근심해야 하는 중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법도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법도에 맞지 않는 사람이 환란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무자季武子³⁷가 결국 조를 후사로 세웠는데, 조는 장례에 이르러 세 번이나 상복을 바꿔 입었다.

- || 노 소공魯昭公의 모부인 귀씨歸氏가 돌아가셨는데 소공이 슬퍼하지 않았다. 이에 진핍 숙향叔向³⁸이 “임금이 대상大喪 중에 계신데도 나라는 군사 훈련을 멈추지 않고, 삼년상을 치르면서 하루도 슬퍼하지 않는구나. 나라 사람들이 상사喪事를 슬퍼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임금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아마도 나라를 잃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보인다.】

32 위 정공衛定公: 춘추 시대 위의 군주로, 성은 화姬, 이름은 장臧이다.

33 간術: 춘추 시대 위 헌공衛獻公의 이름이다. 경박하고 포악한 성격으로, 대부 손임보孫林父와 영식隴殖이 정변을 일으켜 헌공을 축출하고 헌공의 동생 표쾌상공懿公을 옹립하였다. 헌공은 제齊로 망명하였다가, 대부 영희寧喜가 상공을 죽이자 12년 만에 복위하였다. 후에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영희를 못마땅히 여겨 살해하였다.

34 노 양공魯襄公: 춘추 시대 노의 군주로, 성은 화姬, 이름은 오우이다.

35 조稠: 춘추 시대 노 소공魯昭公의 이름이다. 아버지 양공이 죽고, 뒤를 이은 이복형도 얼마 못 가 죽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당시 소공은 19세였는데도 행실이 어린아이 같았다고 한다. 삼환三桓(중손씨仲孫氏·숙손씨叔孫氏·계손씨季孫氏)의 공격을 받아 제齊로 달아났다.

36 목숙穆叔: 춘추 시대 노의 대부 숙손표叔孫豹로, '목穆'은 시호이다. 숙손목자叔孫穆子라고 불린다.

37 계무자季武子: 춘추 시대 노의 대부 계손숙季孫宿이다. '무武'는 시호이다.

38 숙향叔向: 춘추 시대 진핍의 양설힐부舌肸로, 숙향叔向은 자이다. 자산子產이 형서刑書를 만들어 법치를 단행하자 덕치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당시 제齊의 안영앳, 오욱의 계절季敫, 정鄭의 자산子產과 함께 현자로 일컬어졌다.

|| 전한 창읍왕前漢昌邑王³⁹이 소제昭帝⁴⁰의 상喪에 가다가 국도國都를 바라보고는, “나는 목이 아파서 곡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⁴¹ 이후 창읍왕을 폐위시키려 할 때, 신하들이 황태후에게 “창읍왕이 상례를 주관할 때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 수행하는 관원에게 여자를 약취하여 의거衣車에 싣고 와 객사에 들이게 하였으며 사사로이 닭과 돼지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행大行께서 전전前殿에 안치되어 계신데도 악부樂府의 악기를 꺼내다 놓고서 창읍의 악사들을 불러들여 북을 치고 노래하게 하고 광대놀이판을 벌였으며, 수레를 타고서 북궁과 계궁에서 달리고 짐승들을 싸우게 하였습니다.”⁴² 다섯 가지 형벌의 가운데 불효보다 큰 것이 없으니, 폐위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후한 영제後漢靈帝⁴³ 때, 중랑中郎 사필謝弼⁴⁴이 봉사封事⁴⁵를 올려 “삼가 생각하건대, 황태후⁴⁶께서 궁중에서 정책을 정하여 성상을 옹립하였거늘, 황태후의 부친 두무竇武가 죽임을 당했다⁴⁷고 해서 재앙이 태후에게까지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텅 빈 궁에 유폐되어

39 전한 창읍왕前漢昌邑王: 기원전 92~기원전 59. 전한 제9대 황제 유하劉賀이다. 소제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항락과 음란을 일삼다가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위되었다.

40 소제昭帝: 기원전 94~기원전 74. 전한 제8대 황제 유불릉劉弗陵으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87년에서 기원전 74년이다. 무제武帝의 여섯째 아들로, 무제의 유언에 따라 8살에 즉위하였다. 즉위 후 13년 동안 광광霍光이 정치를 보좌하였다.

41 상喪에 ... 하였다: 분상奔喪할 때 멀리 국도國都가 보이면 곡하는 것이 예법인데, 창읍왕은 목이 아프다는 핑계로 예법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42 짐승들을 싸우게 하였습니다: 원문의 “弄彘鬪虎”를 한자대로 풀이하면 ‘돼지를 가지고 놀고 호랑이를 싸우게 하다.’이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짐승들을 싸우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놀이 등의 명칭인지 알 수 없어 ‘짐승들을 싸우게 하였다.’로 번역하였다.

43 후한 영제後漢靈帝: 156~189. 후한 제12대 황제 유광劉宏으로, 재위 기간은 168년에서 189년이다. 장제 유달劉烜의 현손으로, 환제桓帝가 죽은 뒤에 외척 두무에 의해 옹립되었다. 두무는 이응李膺을 비롯한 청류당清流黨에 속한 사람들을 등용하여 환관 세력을 몰리치고자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환관들에 의해 거센 역습을 받아 실패하게 된다. 이에 두무는 자살하고, 이응, 두밀杜密 등 100여 명이 살해당하였으며, 600여 명이 금고형에 처해져 출사할 수 없게 되면서 환관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십상시十常侍에 의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잇따른 재해와 황건적의 난이 이어지면서 한이 몰락하였다.

44 사필謝弼: 123~173. 자는 보선輔宣이다. 강직하여 관직이 낮음에도 직언을 잘하여 충신으로 일컬어진다. 동군태수東郡太守 조소曹紹의 무함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45 봉사封事: 임금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올리는 글로, 봉주封奏, 봉장封章, 봉소封疏라고도 한다. 특정임무를 맡은 관리가 보고서를 올릴 때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46 황태후: 후한 환제後漢桓帝의 세 번째 황후인 환사황후桓思皇后 두묘竇妙(?~172)를 가리킨다. 대장군 두무의 장녀이다. 환제가 후사가 없어 두무와 함께 장제의 현손인 유광劉宏(영제靈帝)을 후계자로 삼았다. 12세의 어린 유광을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였다.

47 두무竇武가 죽임을 당했다: 두 태후竇太后의 아버지 두무가 환관들을 몰아내려다 탄로가 나서 도리어 환관들에게 죽음을 당한 일을 가리킨다.

있다가 근심하는 마음이 천심(天心)을 감동시켜 안개와 이슬을 맞아 질병이라도 생겨 돌아가신다면, 폐하께서는 무슨 면목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시겠습니까. 효화황제(孝和皇帝)⁴⁸께서 두 태후와 두헌(竇憲)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은 것은 전대에 미담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위로는 순임금이 지극한 효로 끊임없이 교화했던 것⁴⁹을 본받으시고, 아래로는 『시경』 「개풍(凱風)」⁵⁰에서 어머니를 위로한 마음을 생각하소서.”라고 하였다.

- 남조(南朝) 송(宋) 명제(宋明帝)⁵¹가 즉위하자마자 효건(孝建) 연간⁵² 이후에 개정된 제도를 폐지하니, 상서(尙書) 채흥종(蔡興宗)⁵³이 개탄하며 “선제(先帝)⁵⁴께서는 훌륭한 덕을 지닌 군주는 아니었지만, 올바른 도리로 시종일관하셨다. 3년 동안 선친의 법도를 바꾸지 않는 것⁵⁵은 고전(古典)에서 귀하게 여긴 것이다. 지금 빈궁(殯宮)이 막 철거되고 산릉으로 옮겨 모신 것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모든 제도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두 없애 버리니, 시대가 바뀌더라도 이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을 것이다. 세상의 식견이 있는 자는 이러한 행위로서 사람의 내면을 엿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48 효화황제(孝和皇帝): 79~105. 후한 제4대 황제 유조(劉肇)로, 대개 ‘화제(和帝)’로 불린다. 장제(章帝)의 황후인 장덕황후(章德皇后) 두씨가 아들이 없어 귀인(貴人)이 낳은 유조를 아들로 삼아 길렀다. 유조가 9세에 즉위하자 태후가 된 두 황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두 황후의 오빠 두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후 화제는 외척 두씨 일족을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했는데, 이때 자신을 길러주고 즉위하게 해 준 두 황후와 두헌의 은혜를 생각하여 두헌과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

49 순임금이 … 것: 『서경』 「요전(堯典)」에 “아버지는 완악하고 계모는 어리석으며 이복동생 상상은 오만한데도 효성으로 화목하게 하고 정성으로 점차 다스려 간악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父頑母嚚象傲 克諧以孝 烝烝乂 不格姦]”라고 하였다.

50 개풍(凱風): 『시경』 「패풍(邶風)」의 편명으로,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지 못함을 한탄하는 시이다.

51 송(宋) 명제(宋明帝): 439~472. 남조 송 제6대 군주 유욱(劉彧)으로, 재위 기간은 465년에서 472년이다. 효무제 유준(劉駿)의 장남 유자업(劉子業)이 즉위하여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유욱을 비롯한 친족들을 죽이거나 모욕하자, 유자업을 암살하고 즉위하였다. 난을 평정한 후 독재 정치를 펼쳤으며 사치를 일삼고 미신을 좋아해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52 효건(孝建) 연간: 남조 송 효무제 때의 연호로, 454년 1월에서 456년 12월까지 사용하였다.

53 채흥종(蔡興宗): 415~472. 자는 흥종(興宗)이다. 신의가 두텁고 직언을 잘하여 명신으로 이름을 떨쳤다. 명제(明帝) 때 상서(尙書)복야(僕射)가 되었다.

54 선제(先帝): 430~464. 남조 송 제4대 군주 유준(劉駿)을 가리킨다. 재위 기간은 453년에서 464년이다. 문제(文帝)의 셋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기지가 있고 글재주가 뛰어났다. 형인 태자 유소(劉劭)가 문제를 시해하자 병사를 이끌고 토발에 나서 즉위하고 유소를 죽였다. 종실과 귀족을 억눌러 왕권을 강화하였고, 형의 일족을 모두 죽이는 잔악성을 보였다. 사치를 일삼아, 송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55 3년 … 것: 『논어』 「학이(學而)」와 「이인(里仁)」에 보인다. 「학이」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 자식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자식의 행동을 관찰해야 하니,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라고 하였고, 「이인」에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라고 하였다.

- || 남조南朝 송 폐제宋廢帝⁵⁶ 때, 왕 태후⁵⁷가 병이 위독하여 사람을 보내 황제 유자업을 부르자, 황제는 “병든 사람 주변에는 귀신이 많은데, 어떻게 가겠는가.”라고 하고, 가지 않았다. 태후가 노하여 시종에게 “칼을 가지고 와 나의 배를 베어라. 어찌 이런 놈을 낳았는가.”라고 하고, 결국 얼마 뒤 죽었다.
- || 남조南朝 제 명제齊明帝⁵⁸가 세상을 떠나자, 동훈후東昏侯⁵⁹가 즉위하여 명제의 관이 태극전太極殿에 있는 것을 싫어해서 빨리 장례지내고자 하였다. 서효사徐孝嗣⁶⁰가 간곡히 간쟁하여 한 달을 넘길 수 있었는데, 동훈후가 곡할 때마다 번번이 목이 아프다고 하였다. 태중대부 양천羊闓은 대머리인데, 빈전殯殿에 들어와 슬피 울부짖으며 몸을 숙이고 들고 하다가 관모가 벗어져 바닥에 떨어지자, 동훈후가 곡을 멈추고 크게 웃으면서 좌우의 사람들에게 “대머리 무수리⁶¹가 우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 || 남조南朝 제 태손太孫 울림왕鬱林王⁶²이 감정을 숨기고 가식을 부려 사람들을 잘 속였다. 세조世祖⁶³의 병이 점점 위독해지자, 울림왕이 하비何妃⁶⁴와 함께 종이 중앙에 ‘희흙’ 자

56 송 폐제宋廢帝: 464~465. 남조 송 제6대 황제 유자업劉子業으로, 재위 기간은 464년에서 465년으로 1년이다. 흉악하고 잔인무도하여 신하들을 함부로 죽였고 숙부들도 죽였다. 또한 자기의 고모와 이모들을 겁탈하는 등 매우 문란하였다. 결국 숙부 유욱劉彧 등에게 시해되었다.

57 왕 태후: 남조 송 효무제宋孝武帝的 황후이자 폐제 유자업의 어머니인 문목황후文穆皇后 왕헌원王憲嫄(428~464)이다.

58 제 명제齊明帝: 452~498. 남조 제 제5대 군주 소란蕭鸞으로, 재위 기간은 494년에서 498년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어 숙부인 제1대 군주 고제 소도성蕭道成에게 길러졌는데, 고제는 그를 자식처럼 아끼며 키웠다. 고제의 뒤를 이은 무제가 죽은 뒤, 소란은 무제의 아들인 소소업蕭昭業과 소소문蕭昭文을 차례로 폐위, 살해하고 즉위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기 위해 고제와 무제의 아들 20여 명을 살해하였다. 만년에 도교에 빠져 붉은색 옷만 입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였다.

59 동훈후東昏侯: 483~501. 남조 제 제6대 군주 소보권蕭寶卷으로, 재위 기간은 498년에서 501년이다. 명제의 둘째 아들로, 폐위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동훈후로 격하되었다. 세금을 가혹하게 걷고 간신배들을 가까이하면서 서효사徐孝嗣 등의 대신사토를 죽였다. 당시 빈번한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웠는데도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등 사치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국세가 기울고 결국 소여蕭衍에 의해 폐위되었다.

60 서효사徐孝嗣: 453~499. 남조 제의 관리로, 학문을 좋아하고 권력에 연연하지 않아 칭송을 받았다. 동훈후가 폭정을 일삼자 폐위를 도모하다 실패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61 무수리: 황새과의 물새로, 모습은 학과 같이 크고 머리와 목에 털이 없이 살이 드러나 있다.

62 울림왕鬱林王: 473~494. 남조 제 제3대 군주 소소업蕭昭業으로, 재위 기간은 493년에서 494년으로 1년이다. 폐위되었으므로 묘호와 시호가 없고, ‘폐제廢帝’라 부르기도 한다. 무제의 장손으로, 즉위하여 사치를 즐기고 포상을 남발해 1년도 되지 않아 무제가 쌓아 둔 재물을 탕진하였다. 소란(명제에게 폐위되고 살해되었다).

하나를 크게 쓰고 36개의 ‘희’ 자를 빙 둘러 썼다. 그리고서는 세조의 병을 돌보면서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세조는 그가 반드시 대업을 짊어질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물가에 내려놓자 올림왕은 단문⁶⁵ 안에서 작별의 예를 행하고 상여가 아직 단문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궐 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바로 흥노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북과 방울소리가 안팎으로 울려 진동하였다.

■ 북주 선제北周宣帝⁶⁶는 대행大行[무제武帝]의 관이 빈전⁶⁷에 있을 때, 슬피하는 모습 없이 대행에게 매 맞은 흉터를 문지르며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상을 치르고 겨우 한 해가 지나자 번번이 음악을 연주하고, 어룡희⁶⁷ 등의 온갖 놀이를 궁전 앞에서 항상 공연하게 하고, 미인들을 모아 후궁을 가득 채우게 하였다.

■ 당 숙종唐肅宗⁶⁸이 병이 나자, 이보국李輔國⁶⁹이 황제의 교지를 꾸며내어 정예 사수 500명의 기병을 직접 거느리고서 칼날을 드러내고 길을 막고서 상황上皇[현종玄宗]에게 “황제

63 세조世祖: 440~495. 남조 제 2대 군주 소색蕭暕으로, 재위 기간은 482년에서 493년이다. 시호는 무제武帝이다. 제1대 고제의 아들로, 불교를 독실하게 믿고 유희나 사치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문학과 교육을 중시하여 국학國學을 세웠다. 임종 때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64 하비何妃: 남조 제 폐제廢帝 소소업蕭昭業의 황후인 하정영何靖英이다. 양민楊暉이라는 자와 사통하였는데, 소소업은 이를 방관하며 각자 문란한 행실을 이어 나갔다.

65 단문端門: 궁전의 정전正殿 앞에 있는 정문이다.

66 북주 선제北周宣帝: 559~580. 북주 제4대 군주 우문운宇文贇으로, 재위 기간은 578년에서 580년이다. 무제의 맏아들로 태자에 책봉되었는데, 자질을 의심받아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즉위하여 아버지의 신하를 숙청하고 대규모 궁전을 축조하고 사치를 일삼고 주색에 빠져 정무를 외척에게 일임하여 결국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67 어룡희魚龍戲: 중국 전통 놀이로, 큰 물고기가 용으로 변하는 것을 형상화한 대형 환술幻術이자 동물가장가면희이다.

68 당 숙종唐肅宗: 711~762. 당 제7대 황제 이형李亨으로, 재위 기간은 756년에서 762년이다. 현종玄宗의 셋째 아들이다. 안녹산安祿山の 난 때 현종을 따라 피신하다가 환관 이보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대를 정비하여 스스로 황위에 오르고 현종을 태상황으로 삼아 유폐시켰다. 즉위한 뒤, 이보국과 장 황후張皇后의 권력다툼이 치열하였다. 이에 숙종의 둘째 아들 이담李談이 이보국과 장 황후의 죄상을 여러 차례 간언하자, 이보국과 장 황후는 이담을 모함하여 죽였다. 그 뒤 숙종은 중병에 걸려 위독하자, 장 황후는 황태자 이예李豫와 이보국을 죽이고 셋째 아들 이계李係를 황제로 삼으려고 모의하였다. 이보국이 이 사실을 알고 장 황후와 이계를 유폐시키고 숙종에게 양위를 받아 이예를 옹립하였다. 유폐되어 있던 현종이 죽은 지 13일 뒤에 숙종도 죽자, 이보국은 장 황후와 이계를 살해하였다.

69 이보국李輔國: 704~762. 당 숙종 때의 환관으로, 본명은 정충靜忠이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태자였던 숙종을 보필하여 즉위하게 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숙종의 병이 위독하자, 장 황후張皇后가 태자를 밀어내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는 음모를 알아차려 태자代宗宗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장 황후를 죽였다. 권력을 전횡하다가 결국 조정에서 쫓겨나 피살되었다.

께서 흥경궁興慶宮⁷⁰이 낮고 좁으므로 상황께서 황궁으로 옮겨 지내시길 청합니다.”라고 하니, 상황이 놀라 말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서내西內의 감로전甘露殿으로 옮겨 유폐된 이후 상황이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병석에 눕게 되었다. 1년이 지나고 도사 이당이 숙종을 알현하였는데, 어린 딸을 안고 있던 숙종이 이당에게 “짐이 이 딸아이를 아껴서이니, 경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자, 이당이 “태상황께서 폐하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역시 폐하께서 공주를 아끼는 마음과 같으리라 짐작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숙종은 주르륵 눈물을 흘렸으나 장 황후張皇后⁷¹를 두려워해서 상황이 거처하는 서내로 가지 못하였다.

- || 당 목종唐穆宗⁷²은 공제公除가 지나자마자 사냥과 음악과 여색을 일삼았다. 중앙절에 성대한 연회를 베풀려고 하니, 습유拾遺 이각李珣이 상소하여 “선왕께서 돌아가신 뒤, 해가 바뀌지 않아 원릉은 아직도 새로 단장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비록 폐하께서 상기喪期의 달수를 날수로 바꾸는 제도를 택했다고 하더라도 예법에 삼년상의 제도가 있으니, 아직은 심상心喪의 예를 행하셔야 합니다. 조문하러 온 제후들이 도읍을 떠나지 않았고 먼 곳의 이적夷狄에게 부고를 알리려 간 사신이 아직 복명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도록⁷³ 한 금지령을 풀어 주었더라도, 궁궐에서 연회를 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70 흥경궁興慶宮: 당 현종 때 장안 동쪽 끝에 지은 별궁이다. 현종은 안녹산의 난으로 피난했다가 평정된 뒤 도읍으로 돌아와 태상황이 되었는데, 이곳에 유폐되었다.

71 장 황후張皇后: 당 숙종의 황후를 가리킨다. 살해당하여 폐위되었으므로 시호나 묘호가 없고 ‘폐후廢后’로 불리기도 한다. 숙종이 태자일 때 양제良嬪[태자의 첩]로 총애를 받다가 숙종이 즉위한 뒤 숙비淑妃가 되었다. 환관 이보국과 결탁하여 정치에 관여하였다.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이보국에게 피살되었다. 숙종이 그녀를 두려워하여 거스르지 못하였다고 한다.

72 당 목종唐穆宗: 795~824. 당 제12대 황제 이항李恒으로, 재위 기간은 820년에서 824년이다. 현종의 셋째 아들이다. 만형인 태자 이녕李寧이 폐위되자 둘째 형을 제치고 태자가 되었고 환관의 옹립을 받아 즉위하였다. 격구와 음악 등의 향락을 탐닉하면서 정사를 살피지 않아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도교에 빠져 금단金丹을 먹다가 죽었다.

73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도록: 요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이 부모를 잃은 듯이 슬퍼하여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서경』 「순전舜典」에 “요임금이 돌아가시니,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였고 3년 동안 온 세상에 음악소리가 끊어져 고요하였다.[帝乃殂落 百姓如喪考妣 三載 四海遏密八音]”라고 하였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귀천에 관계없이 똑 같습니다. 그러나 제왕의 효는 보통 사람과 달라서 온 세상의 표준이 되고 모든 사람을 흥기시키니, 그 의의가 더욱 크고도 넓습니다. 침소에서 문안을 여쭙고 음식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보위에 올라 예를 행하고 잔을 올려 장수를 기원하여 즐거우시도록 봉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효가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지극함을 논한다면 단지 이 몇 가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만백성을 다스리는 제왕이 혹여 조종(祖宗)이 이룩하신 어렵고도 위대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선왕이 행하신 어질고도 의로운 정사를 실행하지 못하여 시행하는 조치가 도리에 어긋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된다면, 큰 근본이 이미 무너져 버려 세세한 행실로는 보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대대로 전해 온 큰 기틀과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한다면, 이를 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수신제가의 덕을 위에서 잘 닦아 치국평천하의 교화가 아래에 무젓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기뻐하여 만방이 화합하며 만방이 화합해서 천심이 즐거워하여, 종묘의 신들이 흠향하고 자손이 보존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제왕의 달효(達孝)라고 이를 수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왕조의 여러 임금께서 대대로 타고난 효를 도탑게 행하셨으니, 천승지국의 임금으로서 증자(曾子)와 민자건(閔子騫)의 행실을 몸소 행하시고 한 시대를 이끌어 효계(孝繼)의 교화를 돈독히 하시어, 심법(心法)이 전승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도 성대합니다. 성묘(成廟) [성종] 때 유생 이목(李穆)이 벽송정(碧松亭)에서 기도하던 무녀를 때려 내쫓아 정희대비(貞熹大妃)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⁷⁴ 그러므로 문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뜻밖에 가상히 여겨 격려하셨으니, 사기(士氣)가 고무되고 성덕(聖德)이 더욱 드러나 도리어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효를 빛냈습니다. 명묘(明廟) [명종] 때의 처사(處士) 조식(曹植)의 상소⁷⁵가

74 유생 …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종(成宗)이 병이 들자 정희대비가 무녀에게 성균관의 벽송정에서 기도하게 하였다. 이에 유생들은 감히 시비를 논하지 못하였으나 이목이 홀로 정의를 부르짖으며 무당을 몽둥이로 때려 내쫓았다. 무당이 이 사실을 호소하자 정희대비가 크게 노하여 임금에게 이 일을 고했다. 그러자 성종이 겉으로 노한 척하면서 성균관에 명하여 그 유생들을 모두 기록해 올리도록 하였다. 그 뒤 성종은 “그대가 유생들을 잘 이끌어 선비들의 습속이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내가 가상히 여긴다.”라고 하교하고 술을 하사하였다. (『孝宗實錄』 3년 12월 5일)

75 조식(曹植)의 상소: 조식이 1555년에 단성 현감(丹城縣監)을 사직하면서 올린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이다. 상소에서 “자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나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외로운 후사일 뿐이니, 온갖 하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억만 갈래의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시렵니까.”라고 하여, 문정왕후(文定王后)를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지나쳐서 심지어 ‘깊은 궁중의 과부’라는 말을 하였으니, 비록 『송사宋史』에 비슷한 선례⁷⁶가 있다고 하지만 말을 가려 하지 않고 쉽사리 들추어내 비판한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군의 도량이 넓어 예우하여 버리지 않으셨으니, 실로 아버이를 공경하는 효를 손상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경릉⁷⁷과 장릉⁷⁸을 추존하고 종묘에 모시려 할 때에 신하들의 의론이 대부분 법도를 따라야 한다고 반대하였습니다. 성종과 인조 두 임금께서 비록 부모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성이 간절하였으나 번번이 예법을 숭상하는 의론을 가상히 여겨 그들의 의견을 꺾어 버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주셨으니, 이는 참으로 성인聖人의 효일 뿐만 아니라 성대한 덕을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선대의 신하들에게 맺힌 원한을 갚았고, 광해군은 존엄한 모후를 모질게 폐위시켰습니다. 도의에 어긋나고 인륜에 벗어나는 일을 자행하고 돌아보지 않았으며 게다가 낳아 준 어머니를 용승하게 대우한 것은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도리가 될 수 없으니, 결국 위망의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효경』에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모든 나라의 환심을 얻어서 그 선조를 섬기며 백성의 환심을 얻어서 그 아버이를 섬기니, 아버이가 살아계실 때는 편안하시고 제사드릴 때는 흠향하신다.”⁷⁹라고 하였으니, 명철한 임금이 효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이보다 큰 것이

76 송사宋史에 비슷한 선례: 구양수歐陽修가 조 태후曹太后를 ‘한 사람의 부인’이라고 치칭했으나, 태후는 구양수를 벌하지 않은 일을 말한다. 당시 영종이 병이 있어 조 태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때 구양수가 조 태후에게 “인종께서 재위하신지 오래되었고 은택이 사람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붕어하시니, 천하에 사군羈諸를 받들어 추대함에 감히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태후께서는 단지 한 사람의 부인이며 신들은 대어셋의 서생일 뿐입니다. 만약 인종의 유지가 아니었다면 천하의 그 누가 따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태후는 말없이 한참 있다가 조회를 마쳤다. (『宋史』「歐陽修傳」)

77 경릉敬陵: 덕종德宗(1438~1457)을 가리킨다. 덕종은 세조의 아들이며 성종의 아버지로, 1455년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1471년 왕으로 추존되었다. 경릉은 덕종과 덕종의 부인 소혜왕후昭惠王后(1437~1504)의 무덤이다.

78 장릉章陵: 원종元宗(1580~1619)을 가리킨다. 원종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며 인조의 아버지로, 1632년 왕으로 추존되었다. 장릉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仁獻王后(1578~1626)의 무덤이다.

79 천하를 … 흠향하신다: 『효경』 「효치장孝治章」에 보이는 공자의 말을 축약한 것이다. “옛날 현명한 왕이 효로써 천하를 다스려 작은 나라의 신하라도 감히 소홀히 대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공·후·백·자·남·남에게 대해서는 어떠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나라의 환심을 얻어서 자신의 선왕을 섬긴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감히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 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선비와 백성에 대해서는 어떠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의 환심을 얻어 자신의 선군을 섬긴 것이다. 집안을 다스리는 자는 가신과 첩에게 실수하지 않는데, 하물며 처와 자식에게는 어떠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환심을 얻어서 그 아버이를 섬긴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아버이가 편안해 하시고 제사 지내면 귀신이 흠향하여, 천하가 화평하고 재해가 생기지 않고 화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왕이 효로써 천하를 다스림이 이와 같은 것이다. [昔者 明王之以孝治天下也 不敢遺小國之臣 而況於公侯伯子男乎 故得萬國之權心 以事其先王 治國者 不敢侮于鰥寡 而況于士民乎 故得百姓之權心 以事其先君 治家者 不敢失於臣妾 而況于妻子乎 故得人之權心 以事其親 夫然故生則親安之 祭則鬼享之 是以天下和平 災害不生 禍亂不作 故明王之以孝治天下也如此]”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임금은 효를 다하여 50세에도 사모했을⁸⁰ 뿐만이 아니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백성들의 마음에 흠뻑 젖어든⁸¹ 뒤에야 진실로 효도가 커진 것입니다. 주 문왕은 효를 다하여 하루에 세 번 찾아뵈었을 뿐만이 아니나, 은혜로운 정사가 환과고 독에게 두루 베풀어진 뒤에야 진실로 효를 행하는 예가 지극해진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와 아버이를 섬기는 정성은 그 일이 다르지만 그 이치가 같다는 것을 안다면, 위에서 말한 ‘제왕의 달효達孝’를 어찌 다른 데서 찾겠습니까.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80 순임금은 … 사모했을: 『맹자』 「만장萬章」에 “사람이 어려서는 부모를 사랑하다가 여색을 좋아할 줄을 알게 되면 젊고 예쁜 여자를 사랑하고, 처자식을 두게 되면 처자식을 사랑하고, 벼슬을 하게 되면 군주를 사랑하고, 군주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초조하여 열병이 난다. 그렇지만 대호는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니, 50세가 되어서도 부모를 사랑한 자를 나는 대순大舜에게서 보았노라.[人少則慕父母 知好色則慕少艾 有妻子則慕妻子 仕則慕君 不得於君則熱中 大孝終身慕父母 五十而慕者 予於大舜見之矣]”라고 하였다. 또 『맹자』 「고자손子」에 “공자께서 ‘순임금은 지극한 효자이시다. 50세가 되어서도 사모하셨다.’고 하셨다.[孔子曰 舜其至孝矣 五十而慕]”라고 하였다.

81 살리기를 … 젖어든: 『서경』 「대우모大禹謨」의 글이다. 고요龜陶가 “죄가 의심스러운 경우는 벌을 가볍게 하시고 공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상을 후하게 주셨으며, 죄 없는 자를 죽이느니 차라리 법대로 처리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겠다고 하여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민심에 흠뻑합니다.[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 洽于民心]”라고 하였다.

법조종法祖宗

조종을 본반다

법조 法條

- || 주 선왕周宣王¹이 문왕文王, 무왕武王, 성왕成王, 강왕康王의 정치를 본받아 백성들을 덕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깨닫고 은둔한 선비를 등용하니,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우리러보아 제후들이 다시 주를 조종祖宗하였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후한 장제後漢章帝²가 원릉原陵[광무제의 능]과 현절릉顯節陵[명제의 능]이 있는 곳을 현읍縣邑으로 만들려 하니, 동평왕 창東平王蒼³이 상소하여 “광무황제께서는 몸소 검약한 행실을 실천하고 시작과 끝의 연유를 깊이 살펴서 장례 제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효명황제께서는 큰 효를 행하여 어긋남이 없었고 겸덕謙德을 받들어 따르셨습니다. 옛날에 분묘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하물며 곽읍郭邑⁴으로 만들어 위로는 선제先帝의 성심聖心을 저버리고 아래로는 백성을 동요시키겠습니까. 신은 두 황제의 순

1 주 선왕周宣王: 주의 왕 희정姬靜이다. 여왕厲王의 아들로, 정공定公과 소목공召穆公의 보좌를 받아 교화를 크게 이루어 국세가 중흥하였다. 이 시기를 '선왕중흥宣王中興'이라 한다.

2 후한 장제後漢章帝: 56~88. 후한 제3대 황제 유달劉烜로, 재위 기간은 75년에서 88년이다. 명제明帝의 다섯째 아들로, 형들을 제치고 태자가 되고 즉위하였다. 세금을 감면하고 유교를 진흥시키고 문화를 발달시켜 명제 시대와 함께 후한의 번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온건적 정책으로 환관과 호족 세력을 키우고 중앙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3 동평왕 창東平王蒼: ?~83.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의 여덟째 아들이며 명제明帝의 아우인 유창劉蒼이다. 광무제에게 「중흥송中興頌」을 지어 올렸다. 착한 행실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무제가 동평왕 창에게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 가장 즐거우냐?”라고 묻자, 동평왕 창이 “선행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後漢書』「東平憲王蒼傳」)

4 곽읍郭邑: 황제의 능원陵園을 둔 곳을 수호하는 읍지邑地를 가리킨다.

일한 덕을 손상시켜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장제가 곧 중지하였다.

|| 당 예종⁵唐睿宗 때, 우보궐 신채부^{辛替否}가 상소하여 “폐하의 조부이신 태종황제께서는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여 나라의 터를 열어 표준을 세우셨으며 관직을 헛되이 제수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도움을 내리고 바람과 비가 계절에 맞아 곡식과 비단이 가득 차서 넘치고 만이^{蠻夷}가 복종하여, 나라를 향유한 것이 장구하고 명성이 만세에 높았습니다. 폐하께서 어찌 법으로 삼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원 인종^{元仁宗}이 가희전^{嘉禧殿}에 나아가 시신^{侍臣}에게 “짐이 생각하건대, 태조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창업하셨고 세조께서는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셨다. 지금 짐이 이분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이어받아 지키고 있는데, 하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종^{祖宗}의 공적을 계승하지 못하여 만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얻어 즐거이 살게 하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 원 영종^{元英宗}이 태조와 세조가 평소에 입었던 옷이 모두 소박한 흰 비단과 무명으로 만들어졌고 게다가 기워져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한참 있다가, 시신^{侍臣}에게 “조종께서 어려움 속에서 창업하시고 검소한 의복을 입으신 것이 이와 같으니, 짐이 어찌 감히 잊겠는가.”라고 하였다.

|| 원 문종^{元文宗}⁶이 우집^{虞集}⁷에게 “옛날 우리 조종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하여 정치의 도리

5 당 예종^{唐睿宗}: 662~716. 당 제5대 황제 이단^{李旦}으로, 재위 기간은 684년에서 690년, 복위 기간은 710년에서 712년이다. 고종^{高宗}의 여덟째 아들로, 어머니 측천무후^{武则天}가 아들 중종을 폐위시키고 옹립하였다. 그러나 측천무후가 주위를 재현한다는 명분으로 국호를 ‘주’라고 하고 몸소 황제가 되자 다시 태자로 강등되었다. 측천무후가 죽은 이후 다시 왕위에 올랐다.

6 원 문종^{元文宗}: 1304~1332. 원 제8대 황제 투크티무르^{圖帖睦爾}로, 재위 기간은 1328년에서 1329년, 복위 기간은 1330년에서 1332년이다. 무종^{武宗}의 둘째 아들이자 명종^{明宗}의 아우이다. 1328년 엘티무르^{燕鐵木兒} 등의 옹립으로 즉위했으나 1329년 형 명종에게 양위하고 태자가 되었다. 얼마 뒤 엘티무르가 명종을 독살하자 다시 즉위하였다. 학문을 장려하여 규장각을 설치하고, 『경세대전^{經世大典}』을 편찬하였다.

에 대해 배우지 않고도 태어나면서부터 아셨다. 그러나 짐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없으니, 어찌 나랏일에 대해 두루 알겠는가. 그러므로 규장각奎章閣⁸을 건립하고 학자들을 두어 날마다 조종의 밝은 가르침을 앞에서 강설하게 하여 즐거이 듣고자 한 것이다. 경들은 짐의 뜻에 부응할 방도를 생각하라.”라고 유시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성조明成祖가 북쪽 지역을 정벌할 때, 청평진淸平鎭에 머물며 출정한 대신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성조가 내시에게 태조가 지은 사詞 다섯 장章을 노래하게 하고서, “이는 선제께서 창업과 수성守成의 어려움을 깨우쳐 주고 방탕과 음란을 경계시킨 사詞이다. 짐은 군영에 있더라도 이 말씀을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도 하늘을 받들고 조상을 본받고 정사에 힘쓰고 백성을 구휼하는 뜻을 담아 다섯 장을 지었노라.”라고 하고, 내시에게 노래하게 하였다.

■ 명 인종明仁宗⁹이 시신侍臣에게 “조종께서 이루어 놓은 공적을 지키는 군주는 항상 조종을 본받아야 과오가 드물다. 짐은 10여 년간 돌아가신 조부태조를 곁에서 모셔 『황명조훈皇明祖訓』¹⁰을 편찬하시는 것을 보았으니, 모두 수신修身, 제가濟家, 치국治國의 도리를 담은 것이다. 천자이든 변방의 왕이든 간에 일마다 준수한다면 복록을 영원히 누리지 않겠는가.”라고 유시하고, 『황명조훈』을 간행하여 여러 왕에게 반포하라고 명하였다.

7 우집虞集: 1272~1348. 자는 백생伯生, 호는 도원道園, 소암邵庵이다. 한림대제翰林待制, 규장각 시서학사侍書學士 등을 역임했다. 문장으로 이름이 높아 계해사揭傒斯, 유관柳貫, 황진黃潛과 더불어 ‘원유사기元儒四家’로 일컬어지며, 또 시에 능하여 계해사, 범평範梈, 양재楊載와 더불어 ‘원시사가元詩四家’로도 일컬어진다.

8 규장각奎章閣: 1329년 원 문종의 명에 의해 궁중에 만들어졌다. 뒤에 학사원學士院이라 하였다. 진귀한 물건과 서적을 많이 수집하여 보관해 두었고, 저명한 학자와 문사들이 모여 학술과 예술의 전당이 되었다. 1341년 선문각宣文閣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9 명 인종明仁宗: 1378~1425. 명 제4대 황제 주고치株高熾로, 재위 기간은 1424년에서 1425년이다. 연호를 따라 ‘홍희제洪熙帝’로 불린다. 성조의 장남으로, 독서를 좋아하고 행실이 반듯하여 조부인 태조太祖에게 사랑을 받았다. 재위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지만 혜종惠宗과 연관되어 옥살이를 한 신하들을 사면해주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썼다.

10 황명조훈皇明祖訓: 명 태조明太祖가 후손에게 치국의 도리를 전하고자, 자신이 일생동안 완성시킨 제도를 법전 형식으로 편찬한 책이다.

|| 명 선종明宣宗¹¹이 시신에게 “짐은 조종께서 제정한 법을 공경히 받드니, 관청의 관원들은 의심스럽거나 막히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옛 법을 살펴야 한다. 옛사람이 ‘상(商)과 주(周)의 자손이 선왕의 법을 잘 지켰다면 지금까지도 존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정확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선종은 또 『황명조훈』을 보고 “후세의 자손이 선조의 가르침을 지킨다면 과오가 있겠는가. 만약 짐의 한마디 말과 하나의 행실이 혹시라도 『황명조훈』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경들은 곧바로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 명 신종明神宗¹² 때, 장거정張居正¹³이 「황릉비문皇陵碑文」¹⁴과 「고황제어제문집高皇帝御製文集」¹⁵을 기록하여 올렸다. 신종이 다 살펴보고 장거정에게 “짐이 「황릉비문」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니, 장거정이 “조종께서는 하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밝은 공적을 새로이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황상께서는 황조(皇祖)태조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야 위대한 업적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

11 명 선종明宣宗: 1398~1435. 명 제5대 황제 주침기朱瞻基로, 재위 기간은 1425년에서 1435년이다. 연호를 따라 ‘선덕제 宣德帝’로 불린다. 인종의 장남으로, 인재들을 발탁하여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의 통치기간은 아버지 인종의 통치기간과 아울러 ‘인선지치(仁宣之治)’라 일컬어진다. 그러나 환관에게 관직을 주고 내서당內書堂을 설치해 독서를 권장하는 등, 환관이 권력을 천단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12 명 신종明神宗: 1563~1620. 명 제13대 황제 주익균朱翊鈞으로, 재위 기간은 1572년에서 1620년이다. 연호를 따라 ‘만력제 萬曆帝’로 불린다. 목종穆宗의 셋째 아들로, 10세에 즉위하였다. 장거정에게 국정을 맡겨, 군비를 정비하고 토지를 측량하고 조세법으로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시행하는 등 개혁 조치를 시행하여 경제 발전과 민생의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장거정이 죽은 뒤, 국정을 돌보지 않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서 민란이 일어났으며, 태자책봉 문제로 당쟁이 격화되어 나라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13 장거정張居正: 1525~1582. 자는 숙대(叔大)이다. 신종이 즉위하고부터 10년간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의 대부분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행정 정비를 단행하고 궁중의 낭비를 억제하고 황하의 치수 사업을 완수했다. 호구 조사와 토지 측량을 통하여 지주의 부정을 막아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죽었다. 그는 쇠퇴하던 국력을 회복시켰으나,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어 반감을 품은 자도 많았다. 황제의 스승을 자처하여 신종을 이상적인 군주로 만들기 위하여 『사서직해四書直解』, 『통감직해通鑑直解』, 『시경직해詩經直解』, 『제감도설부鑑圖說』, 『모훈유편 謨訓類編』 등을 편찬하였다.

14 황릉비문皇陵碑文: 「명태조어제황릉비문太祖御製皇陵碑文」의 글을 가리킨다. 태조는 부모가 사망하자 순황제淳皇帝, 순황후淳皇后로 추존하고 황릉皇陵에 모셨는데, 그 무렵 형수와 제수, 조카도 사망하였다. 이에 신하들에게 부모와 형수 등을 위해 비문을 지으라고 명하였는데, 지어 올린 비문을 보고 ‘진실한 내용 없이 꾸며댄 글’이라고 하여 비문을 새기지 않은 무자비無字碑를 세웠다. 이후 자신의 일생과 자손들에게 경계하는 내용을 담은 1,000여 자의 비문을 직접 지어 비석을 세웠다.

15 고황제어제문집高皇帝御製文集: 명 태조의 어제 문집으로, 총 20권이다. 권1에서 권18까지는 문장편, 권19와 권20은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그리고서 태조의 즉위하기 전의 일과 즉위해서 근검했던 덕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니, 신종이 슬퍼하며 “짐이 감히 조종을 본받는 데 힘쓰지 않았구나.”라고 하였다.

- || 명 신종 때, 장거정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성상의 마음을 비옥하게 하는 방도는 멀리 옛 가르침을 살피는 것보다 징험할 수 있는 근래의 일을 살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옛날 이윤伊尹¹⁶과 주공周公¹⁷이 계책을 아뢰고 고궐을 지었는데, ‘탕왕湯王이 이룩하신 덕을 분명히 말한다.’¹⁸ ‘문왕과 무왕의 빛나는 공적을 드날리소서.’¹⁹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태조와 성조께서 창업하셨고 여진 황제들께서 업적을 계승하셨으니, 그 훌륭한 문장과 밝은 계책은 『보훈寶訓』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정의 『보훈』과 『실록實錄』을 가지고 유형을 나누고 편집하여 총 40조목으로 『모훈유편謨訓類編』²⁰을 만들었으니, 황상께서 마음을 담아 힘써 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종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16 이윤伊尹: 상 탕왕商湯王을 보좌한 아형阿衡재상으로, 윤尹은 직함이고 이름은 지驂라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이름은 미상未詳이다. 그가 탕왕의 신하가 된 설은 크게 2가지인데, 유신有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탕왕의 초빙에 응했다는 설과 탕왕에게 요리를 바치며 정치에 대해 조언함으로써 등용되었다는 설이 있다. 탕왕 이후로 그의 아들들을 보좌하다가 탕왕의 손자 태갑太甲이 즉위하였으나 방종하였으므로 그를 동궁桐宮으로 추방시키고 섭정하였다. 3년 뒤 태갑이 개심改心하자 그를 복위시키고 보좌하였다.

17 주공周公: 주 문왕周文王의 아들이자 무왕의 아우로, 이름은 단뜨이다. 무왕을 보좌하여 상書を 정벌하는데 공을 세워 노홀에 봉해졌다. 무왕이 죽은 뒤 즉위한 성왕이 너무 어렸으므로, 장남 백금伯禽을 봉지封地인 노에 보내고 자신은 주에 남아 섭정을 하였다. 7년 뒤 성왕이 장성하자 정권을 돌려주고 자신은 경사卿士로 남아 보좌하였다. 예악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서 공자孔子에게 존경을 받았다.

18 탕왕湯王이 … 말한다: 태갑太甲이 제위에 오르자, 이윤이 태갑에게 조부인 탕왕의 덕을 들어 훈계한 것이다. 『서경』 「이훈伊訓」에, “이윤이 이에 성탕成湯이 이룩하신 덕을 분명히 말하여 왕에게 훈계하였다.[伊尹乃明言烈祖之成德 以訓于王]”라고 하였다.

19 문왕과 … 드날리소서: 주공이 성왕에게 조부인 문왕과 부친인 무왕의 공적을 들어 훈계한 것이다. 『서경』 「입정立政」에, “능히 왕의 전투복과 병기를 다스려서 우왕의 옛 자취에 올라 사방 천하에 행해서 해외까지 다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시어, 문왕의 밝은 빛을 보시고, 무왕의 큰 공렬을 드날리소서.[其克詰爾戎兵 以陟禹之迹 方行天下 至于海表 罔有不服 以觀文王之耿光 以揚武王之烈]”라고 하였다.

20 모훈유편謨訓類編: 장거정이 어린 신종을 위해 편찬한 책으로, 창업간난創業艱難, 여정도치勵精圖治, 근학勤學, 경천敬天 등 40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조 戒條

- 위 문제魏文帝²¹ 때의 일이다. 상서尚書 위기衛覲²²가 글을 올려 “무황제武皇帝[조조曹操] 때, 후궁에서 음식은 고기 요리를 한 가지 이상 차리지 않았고, 옷은 수놓은 비단을 입지 않았고, 방석은 가장자리를 꾸미지 않았고, 기물은 붉은 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평정하고 자손에게 복을 남겨 줄 수 있었으니, 이는 모두 폐하게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역工役이 그치지 않고 사치가 날로 심해져 내탕고가 비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성상께서 염려하고 제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남조南朝 송 효무제宋孝武帝가 고조高祖가 거처하던 내실을 허물고 그곳에 옥촉전玉燭殿을 세우려고 신하들과 함께 둘러보았다. 고조의 침상 머리맡에는 흙으로 만든 칸막이가 있고 벽에는 갈포로 짠 등롱과 마로 만든 먼지떨이가 걸려 있었다. 시중侍中 원의袁顥²³가 고조의 검소한 미덕을 칭송하자, 효무제가 응대하지 않고 혼잣말로 “농사짓던 노인네²⁴가 이 정도 얻었으면 충분하지.”라고 중얼거렸다.
- 당 소종唐昭宗²⁵ 때, 악공 이가급李可及²⁶이 새로운 노래를 잘 지어 불렀다. 소종이 이가

21 위 문제魏文帝: 187~226. 삼국시대 위의 군주 조비曹丕로, 재위 기간은 220년에서 226년이다. 조조曹操의 아들로, 위왕魏王의 지위에서 후한 헌제에게 양위 받아 황제가 되었다. 후한 말기부터의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왕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내정에 힘썼다. 관리 선발 제도로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을 시행하고 환관과 외척의 득세를 막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변방을 평정하고 흉노, 강희 등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시와 부에 뛰어나 조조와 조식과 더불어 ‘삼조三曹’로 일컬어진다.

22 위기衛覲: 155~229. 삼국시대 위魏의 관리로, 젊어서부터 재주와 학문이 뛰어나 칭송을 받았다. 조조에게 등용되었으며, 위가 건립되자 시중侍中에 제수되었다. 『위관의魏官儀』를 지었고, 서예에 뛰어나 오전鳥篆과 예서, 초서에 정통했으며, 문장으로도 이름을 날렸다.

23 원의袁顥: 420~466. 남조 송의 관리이다. 효무제가 태자 유지업을 폐위하려고 하자 태자를 칭송하여 폐위를 막았다. 유지업이 즉위하자 이부상서가 되었다. 나중에 명제가 즉위하자 병사를 일으켜 유지훈을 받들어 명제에 대항했는데, 패배하여 피살되었다.

24 농사짓던 노인네: 고조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므로 알잡아 일컬은 말이다.

25 당 소종唐昭宗: 867~904. 당 제19대 황제 이엽李晔으로, 재위 기간은 887년에서 904년이다. 의종의 일곱째 아들로, 환관 세력에 의해 옹립되었다. 일부 환관이 반란을 일으켜 소종을 퇴위시키고 태자 이유헌를 즉위시켰는데, 반대파 세력에 의해 다음해 복위되었다. 이무정李茂貞을 중심으로 하는 반란군이 장안長安을 압박하자 피난 갔다가 주전충朱全忠에게 시해되었다.

급을 좌위위장군左威衛將軍으로 삼으니, 조화曹確²⁷이 “태종께서 문무관 600여 명을 정하고, 방현령房玄齡²⁸에게 ‘짐은 천하의 어진 인사를 우대하니, 장인匠人, 상인, 잡배들은 문무관직에 자리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또 태화太和 연간에 문종께서 악공 율지장尉遲璋²⁹을 왕부솔王府率³⁰로 삼으려고 하자, 습유拾遺 두순직竇洵直이 불가하다고 간언하니, 즉시 광주장사光州長史로 바꾸었습니다. 바라건대 두 임금의 옛일을 살피시어 이가 급에게 다른 벼슬을 제수하십시오.”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소종은 따르지 않았다.

- 성한成漢³¹의 군주 이수李壽³²가 부형父兄 때의 일에 대해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상소하는 자는 선대의 정치와 교화를 말할 수 없었다. 이는 자신이 부형보다 뛰어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26 이기급李可及: 당의 궁중악관으로, 당송시대 유행한 공연인 ‘농참군弄參軍’을 잘했다. 의종의 딸 동창공주가 죽자 이기급이 「탄백년곡嘆百年曲」을 지어 애도했는데, 의종이 이 곡으로 위로받아 그에게 위무장군威衛將軍을 제수하였다. 악관에게 조정의 관직을 준 것은 전례 없었던 일이다.

27 조화曹確: 자는 강중剛中이다. 중서시랑中書侍郎, 감수국사監修國史 등을 역임하였다. 유학에 정통하고 일처리에 신중하였으며, 법도를 준수하였다고 전해진다.

28 방현령房玄齡: 578~648. 이름은 방교房喬이고, 자는 현령玄齡이다. 수隋 때 습성위隰城尉을 지내다가, 당이 일어나자 이세민에게 투항하여 참모가 되었다. 이세민이 즉위한 이후 재상에 임명되었다. 15년 동안 재상 직에 있으면서 성실하고 공평한 태도로 일관하여, 두여화杜如晦와 더불어 현상賢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방현령은 모책을 잘 세웠고 두여화는 결단을 잘 내려 ‘방모두단房謀杜斷’이라 불렸다.

29 율지장尉遲璋: 서역 출신의 악공으로, 생활 연주에 뛰어나고 노래도 잘하여 “한번 소리가 날아오르면 구궁중궐에 깊은 곳까지 이른다.”는 글이 전한다. 문종이 그를 총애하여 오정광주장사五鼎光州長史로 삼았고, 많은 비단을 내려 격려하기도 하였다.

30 왕부솔王府率: 6품 잡관雜官으로 청직淸職이다. 『구당서舊唐書』, 『열전列傳』에 “왕부솔은 6품 잡관으로 청직이다.[王府率是六品雜官 謂之淸秩]”라고 하였고, 『당결사唐闕史』, 『이기급회삼교李可及戲三教』에 “죄승유 두순직이 ‘악관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청질을 더럽히게 하지 마소서.’라고 상소하였다.[左拾遺竇洵直上疏 以爲樂官受賞 不如多予之金 無令浼汗淸秩]”라고 하였다.

31 성한成漢: 오호십육국 중 하나로, 저족氏族 출신 이웅李雄에 의해 306년에 건국된 나라이다. 302년 저족의 추장 이특李特이 진흥의 광한 태수廣漢太守 신염후冉의 부정에 격분하여 공격해서 땅을 빼앗고 ‘익주목도독량익이주제군사益州牧都督梁益二州諸軍事’라고 자칭하였다. 이특은 법삼장法三章을 제정하여 촉족의 토착민들을 귀복시켜 성도成都를 장악하였다가 진흥의 군대에게 패하여 죽고, 그의 아들 이웅이 다시 성도를 탈환하여 304년에 성도왕成都王이라 칭하였다. 306년에 국호를 대성大成이라 하였다. 이웅은 만인蠻과 한인漢人에게 두루 인심을 얻어 평화를 유지하였으나, 그가 죽은 뒤 왕위계승 문제로 내분이 생겨 국세가 쇠퇴하였다. 이수李壽가 즉위하여 국호를 ‘한漢’으로 고쳤는데, 아들 이세李勢 때 동진東晉의 공격을 받아 347년 멸망하였다.

32 이수李壽: 300~343. 성한成漢의 군주로, 재위 기간은 338년에서 343년이다. 초대 군주 이웅李雄의 아들 이기李期가 정변을 일으켜 재위에 오른 뒤, 당시에 명망이 높고 세력이 강한 이수를 두려워하여 제거하려 하였다. 이수는 동생 이유李休가 이기에게 독살되자 군대를 일으켜 도읍인 성도成都를 점령하여 이기를 폐위시키고 즉위하여 국호를 ‘성成’에서 ‘한漢’으로 바꿨다. 궁궐을 웅장하게 개축하고 신하들의 작은 잘못에도 엄격히 처벌해 황제의 위엄을 세우려 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는데, 신하들이 이를 간언하자 받아들이지 않고 죽었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다스림의 요체는 꼭 옛일을 살펴야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를 잘 본받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한 시대에 대업을 일으켜 후손에게 열조烈祖가 된 분들은 수립한 것이 성대하고 통달하며 다스림이 부지런하고 치밀합니다. 이 분들은 환란을 겪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재앙의 작은 기미가 보일 때 엄중히 예방하고, 후세를 염려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법을 제정할 때 두루 완비한 것입니다.

무릇 천지의 조화를 본받아 천하를 다스린 것이 절로 한 왕조의 아름다운 제도가 되어, 더하거나 덜고 그대로 따르거나 바꾼 것이 번번이 때에 따른 조치에 합당하므로, 자손이 대대로 지켜 오래도록 폐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대 유학자가 “요임금과 순임금을 본받고자 하면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한다.”³³고 한 말은 임금이 선조의 공적을 잘 계승하는 요체를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하夏가 우임금³⁴의 가르침을 따라 실추시키지 않고 상商이 탕왕湯王의 제도를 지켜 변란이 없었다면, 서업緒業을 이은 군주가 대대로 안녕을 누렸을 것이니, 어찌 명조鳴條와 목야敔野의 패배³⁵가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주周가 쌓아 온 토대는 덕업의 아름다움과 예악의 성대함이니, 더욱이 만세토록 법으로 삼아야 할 조종입니다. 가령 성왕成王과 강왕康王³⁶ 이후의 군주들이 따르고 지켰다면, 희씨姬氏[주 왕족의 성씨]의 보록寶籙이 어찌 다만 800년에 그쳤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조종의 공덕이 하늘과 같이 크니, 거듭 밝고 대대로 덕에 합치하는 공적으로 후사가 이어받아 발전시켜야 하는 과업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풍성風聲과 교화가 감화시킨 바는 우리 본조本朝보다 가까운 것이 없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33 요임금과 … 한다: 이 말은 송宋의 범조우范祖禹가 신종神宗에게 “신은 폐하께서 요순을 본받고자 하신다면 인종仁宗을 본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종을 본받으면 천덕天德에 이를 수 있습니다.[臣願陛下欲法堯舜 惟法仁宗而已 法仁宗 則可以至天德矣]”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34 우임금: 하夏 제1대 왕으로, ‘대우大禹’ 또는 ‘우임금(우왕禹王)’으로 불린다. 곤絲의 아들로, 치수治水에 큰 공적을 세우고 구주九州 체계를 확립하여 순임금의 후계자가 되었다. 순임금이 죽은 뒤 순임금의 아들 상균商均을 즉위시키고 은거하였다. 그러나 백성과 신하들이 자신을 찾아와 귀의하자 비로소 즉위하였다. 즉위 후 국호를 ‘하후夏后’, 성을 ‘사씨’로 고쳤다. 그의 아들 계량가 우임금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고, 이로부터 제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35 명조鳴條와 목야敔野의 패배: 상 탕왕湯王은 하 걸왕夏桀王을 명조에서 격파하고, 주 무왕周武王은 상 주왕商紂王을 목야에서 격파하고 천하를 얻었다.

36 성왕成王과 강왕康王: 주 제2대 왕 희씨姬誦과 제3대 왕 희씨姬釗이다. 성왕과 강왕은 문왕과 무왕의 업적을 계승하여, 근검절약하고 민생을 살피고 문화를 부흥시켜 나라를 가장 번성하게 하였다. 이 시기를 ‘성강치(치)成康之治’라고 한다.

바는 우리 열조列朝보다 자세한 것이 없습니다. 기업基業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후세에 전해주신 것을 유념해야 하며, 문물文物은 세종과 세조께서 제작하신 것을 따라야 합니다. 위태로운 사직을 안정시키고 텃텃한 황극皇極을 부지한 것은 중종과 인조의 위대한 법³⁷을 거울삼아야 하며, 인재를 배양하고 유현儒賢을 높이는 것은 명종과 선조 두 성군聖君의 훌륭한 법³⁸을 본받아야 합니다. 존주대의尊周大義³⁹를 세상에 주장하여 지사志士와 충신을 모두 감격시킨 것은 바로 효종께서 당시에 뜻을 두었던 일⁴⁰인데, 이 뜻은 현종과 숙종께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의리가 크게 밝혀지고 공렬이 환히 빛나, 뒤를 이은 왕과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잊지 못할 그리움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세손께서 가법家法에 무젓어 계신 것을 우러러 생각해 보면, 또한 아랫사람들이 번거롭게 진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른바 조종을 본받는 것은 반드시 절문節文과 도수度數의 사이에서 소리를 찾고 그림자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덕과 원대한 생각의 사이에서 몸소 체득하고 마음으로 합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일을 거행함에 반드시 조종을 본받고 하나의 정사를 시행함에 반드시 조종을 본받아야 하니, 전전공공하여 항상 조상의 영령이 밝게 오르내려 임하여 위에 계신 듯이 한다면, 어찌 옛 법도가 혹 실추될까 선조의 공렬이 쇠할까 근심하겠습니까. 억만 년 무궁한 아름다움이 진실로 여기에 달려 있으니,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37 중종과 인조의 위대한 법: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을 의미한다. 중종반정은 1506년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이복동생인 진성대군晉城大君, 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고, 인조반정은 1623년 이시李曙, 이귀李貴 등 서인西人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綾陽君인조를 왕으로 옹립한 사건이다.

38 명종과 … 법: 명종과 선조가 인재 등용에 힘쓰고 퇴계와 율곡 등의 유현儒賢을 중용한 것을 가리킨다. 명종은 1545년 12세에 즉위하여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친정하게 된 명종은 선정을 펴려고 노력했으나 34세의 나이로 죽었다. 명종은 국정쇄신을 위해 인재 등용에 힘썼으며 특히 퇴계를 중용하려고 애썼으나 퇴계의 고사로 등용하지 못했다. 1552년 학식이 풍부하고 행실이 고매한 선비를 우대하여 등용하기 위하여 ‘정초旌召’라는 추천제를 시행하였다. 정초는 처음 제수하는 품위는 6품직으로서, 특별히 초치하여 치국의 도리와 학문의 방도를 하문하기도 하고,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내의內醫와 약물을 보내는 등 후대하였다. 선조는 주자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사람을 널리 등용하였으며 스스로 학문에 힘써 이황, 이이, 성혼 등과 경학과 역사를 토론했다.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한 조광조 등의 사람을 신원하였고, 을사사화로 귀양 가 있던 노수신盧守愼, 유희춘柳希春 등을 등용하였다. 그리고 현량과賢良科를 다시 시행하고 유현을 천거하도록 하여 조식曹植, 성운成運 등을 등용했다. 이황을 신뢰하고 그의 정치철학을 적극적으로 따랐고, 이황이 죽은 뒤 이이를 신임하여 정치적으로 지원하였다.

39 존주대의尊周大義: 제후가 천자의 나라를 높이는 의리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에서는 명명을 천자의 나라로 청淸을 이적夷狄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공자가 지은 『춘추』는 주제를 높이고 이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춘추대의春秋大義’라고 한 데서 비롯한 말이다.

40 효종께서 … 일: 효종은 병자호란 이듬해 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淸에 볼모로 잡혀가 8년 동안 머물렀다. 효종은 돌아와 즉위한 후, 정에게 설육하고자 북벌을 계획하여 송시열宋時烈과 이완李沆을 시켜 국력을 양성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경사천 敬事天

하늘의 뜻을 경건히 받들다

법조 法條

- 순임금이 즉위하여 선기옥형 璿璣玉衡으로 천문을 관찰하여 해와 달과 다섯별의 운행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 역법을 정리하였다.
- 상 탕왕 商湯王¹ 때, 큰 가뭄이 7년 동안 계속되었다. 태사가 점을 치고서,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라고 하니, 탕왕이 “내가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만약 사람의 목숨으로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면 나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재계하고 머리카락과 손톱을 자르고 흰 수레와 흰 말을 타고서 목을 흰 띠로 묶고서 희생이 되어 상림 桑林의 들에서 “저 한 사람의 불민함으로 인해 백성의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여섯 가지 일로 자신을 꾸짖으니,² 말이 다 끝나기 전에 큰비가 수천 리에 내렸다.

1 상 탕왕 商湯王: 상 제1대 왕으로, 이름은 이履, 천을 天乙, 태을 太乙이며, 성탕 成湯으로도 불린다. 하 걸왕 夏桀왕이 폭정을 행하자 제후들이 덕망 있는 탕에게 복종하였다. 현상 賢相 이윤 伊尹의 도움을 받아 걸왕을 명조 鳴條에서 격파하고 상을 건국하였다. 유가 儒家에서, 탕이 걸왕을 멸망시킨 일과 주 무왕 周武王이 상 주왕 商紂王을 멸망시킨 일은 ‘의로운 혁명’으로 일컫는다.

2 여섯 … 꾸짖으니: 이른바 ‘육사자책 六事自責’으로, 『십팔사략』, 『설원 說苑』 등에는 탕왕이 “정사가 법도에 맞지 않아서인가? 백성들이 할 일을 잃어서인가? 궁실이 사치스러워서인가? 여인들의 청탁이 심해서인가? 뇌물이 행해졌는가? 참소하는 자가 많아서인가? [政不節歟 民失職歟 宮室崇歟 女譏盛歟 苞苴行歟 讒夫昌歟]”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여섯 가지 질문은 『순자』 『대략 大略』에도 보이는데, 두 번째 질문이 “백성들을 모질게 부려서인가? [使民疾與]”로 되어 있다.

- || 상 태무商太戊³가 즉위하고서 요상한 뿡나무와 닥나무가 조정에 자라났는데 7일 만에 크기가 한 아름이 되었다. 태무가 이척伊陟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이척이 “요사스러운 재앙은 덕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니, 임금의 정사에 부족함이 있는 듯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태무가 선왕의 정사를 본받아 행하여 이른 아침부터 정사를 돌봐 저녁 늦게 마치며 병든 자를 위문하고 죽은 자를 조문하니, 3일 만에 요상한 뿡나무와 닥나무가 말라 죽었다.
- || 상 무정商武丁⁴이 탕왕에게 제사지낼 때, 꿩이 날아와 솔귀에 올라앉아 우는 이변이 일어났다. 무정이 스스로 반성하여 왕도王道에 대하여 생각한 지 3년 만에, 머리카락을 길게 땀은 만이蠻夷 중에 여러 번 통역을 거치고 와서 조회하는 나라가 여섯이었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송 성공宋成公⁵ 때, 홍수가 났다. 노공魯公이 사신을 보내 위로하니, 성공이 “과인이 불경不敬하여 하늘이 재앙을 내렸고 또 그대에게 걱정을 끼쳤습니다. 수고롭게 사람을 보내 위로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장문중臧文仲⁶은 “송은 부흥할 것입니다. 우임금과 탕왕湯王은 자기 자신을 탓하였으므로 그 나라가 한순간에 흥기한 것이고, 걸왕과 주왕은 남을 탓하였으므로 그 나라가 순식간에 망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 송 경공宋景公⁷ 때, 형혹성熒惑星⁸이 심성心星에 머물렀는데, 심성은 송에 해당하는 별자리였다. 경공이 근심하니, 천문을 관찰하는 사성司星 자위子韋가 “재앙을 재상에게 옮길 수

3 상 태무商太戊: 상의 왕 중종中宗이다. 태무가 즉위하였을 때 나라가 크게 쇠퇴하여 일부 제후들은 조회를 하러 오지도 않았다. 태무는 이윤伊尹의 아들 이척伊陟을 재상으로 삼아 국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부흥시켰다.

4 상 무정商武丁: 상의 왕 고종高宗이다. 상의 왕 반경盤庚이 은殷으로 천도한 뒤 국세를 회복했으나 후에 다시 쇠퇴하였으므로, 왕위에 오른 무정은 나라를 부흥시키려 하였지만 보좌해줄 사람을 얻지 못하여 3년 동안 말하지 않고 총재에게 정사를 맡겼다. 그러던 어느 날 무정은 꿈에서 본 부열傳說을 찾아내어 재상으로 삼고 정치를 맡겨 나라를 부흥시켰다. (『史記』「殷本紀」)

5 송 성공宋成公: 춘추 시대 송의 군주로, 성은 자기, 이름은 왕신王申이다. 성공 3년에 초楚를 배반하고 진晉과 맹약을 맺자, 다음 해 초가 송을 공격하였고 송은 진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진은 구원병을 보내 초를 맹주로 삼기는 위衛와 조虢를 공격하여 송의 포위를 풀게 하고, 초와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이 일을 계기로 진이 패자覇者가 되었다. (『史記』「宋微子世家」)

6 장문중臧文仲: 춘추 시대 노魯의 대부 장손신臧孫辰이다. 장공莊公, 민공閔公, 희공僖公, 문공文公 4대 동안 집정하였다.

7 송 경공宋景公: 춘추 시대 송의 군주로, 성은 자기, 이름은 두만頭曼이다. 조虢를 공격하여 병탄하였다.

8 형혹성熒惑星: 화성火星을 가리키는 말로, 불을 담당하며 재화나 병란의 징조를 나타내는 별로 여겨졌다.

있습니다.” 하니, 경공이 “재상은 나의 팔과 다리이다.”라고 하였다. 자위가 “그렇다면 백성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니, 경공이 “임금은 백성에게 의지한다.”라고 하였다. 자위가 “그러면 한 해의 농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경공이 “흉년이 들면 백성이 곤궁하니, 내 누구와 더불어 임금 노릇을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자위가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낮은 곳의 소리를 듣습니다. 임금께서 임금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 좋은 말을 하셨으니, 마땅히 형혹성이 움직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기다리니, 과연 1도를 옮겨 갔다.

■ 제 경공齊景公⁹ 때, 혜성이 나타나니, 경공이 기양제祈禳祭를 지내 재앙을 물리치게 하였다. 그러자 안자晏子¹⁰가 “하늘의 도는 간사하지 않으며 하늘의 명은 두 가지가 아니거늘, 어찌 기양제를 지내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혜성이 나타난 것은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임금에게 더러운 덕이 없다면 어찌 기양제를 지내겠습니까. 『시경』에 ‘상제上帝를 밝게 섬겨 사방의 나라를 받으셨다.’¹¹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에게 어긋난 덕이 없다면 사방의 나라가 장차 섬길 것이니, 어찌 혜성을 염려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전한 원제前漢元帝¹²가 광형匡衡¹³에게 일식과 지진이 일어난 변고에 대해 물으니, 광형이 상소하여 “신이 듣건대, 하늘과 사람 사이에 정기精氣와 요기妖氣가 움직이고 있으며 선

9 제 경공齊景公: 춘추 시대 제의 군주로, 성은 강(姜), 씨는 여(呂), 이름은 저구(杵臼)이다. 장공莊公의 이복동생이다. 장공이 최자崔杼에게 시해된 뒤 옹립되었다. 즉위 초기에는 사치가 심하여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형벌을 가혹하게 시행하여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후 안영(晏嬰)을 재상으로 삼고 사마양저(司馬穰苴)를 등용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져, 제는 환공桓公 시절에 다음가는 번영을 누렸다.

10 안자晏子: 춘추 시대 제齊의 대부 안영(晏嬰)이다. 영공靈公, 장공莊公, 경공景公 3대에 걸쳐 57년 동안 군주를 보좌하였다. 검소하고 청렴하였으며 오랫동안 재상으로서 국정과 외교를 잘 다스려 칭송을 받았다. 『논어』에 그에 대한 기록이 일부 보인다.

11 상제上帝를 … 받으셨다: 『시경』 「문명大明」에 “문왕은 삼가고 힘쓰시어 상제를 밝게 섬겨 많은 복을 누리신다. 그 덕이 어긋나지 않아서 사방의 나라를 받으셨다. [惟此文王 小心翼翼 昭事上帝 聿懷多福 厥德不回 以受方國]” 라고 하였다.

12 전한 원제前漢元帝: 기원전 75~기원전 33. 전한 제11대 황제 유석(劉奭)으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49년에서 기원전 33년이다. 현명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유학(儒學)을 좋아하였다. 즉위한 후에 유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지나치게 유교에 심취하여 현실주의자였던 아버지 선제(宣帝)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관과 외척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하게 하는 등 국정을 혼란하게 하였다.

13 광형匡衡: 자는 치구(稚圭)이다. 원제 때, 승상이 되고 낙안후(樂安侯)에 봉해졌다. 경학에 밝고 특히 시에 뛰어났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시에 대해 말하지 말라. 광형이 울 것이다. 광형이 와서 해설하면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할 것이다. [無說詩 匡鼎來 匡說詩 解人口]” 라고 하였다. (『漢書』 「匡衡傳」)

과 악이 서로 밀어내고 있어, 아래에서 일이 일어나면 위에서 형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충성스럽고 올바른 사람을 가까이하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 큰 교화가 흥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원제가 그의 간언을 좋아하였다.

■ 남조南朝 제 무제齊武帝¹⁴ 때, 천문이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기양제祈禳祭를 지내 재앙을 물리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무제가 “하늘에 응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형식적인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육을 이기고 치도治道를 구하며 나라의 융성을 생각하고 정사에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만약 재앙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기양제가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이 시신侍臣에게 “천자는 지존이므로 두려워하거나 꺼릴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짐은 그렇지 않다. 위로는 황천皇天이 굽어 살펴보는 것이 두렵고 아래로는 신하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 무서워 전전공공하니, 천심에 부합하지 못할까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니, 위징魏徵¹⁵이 “이는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있는 요체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신중히 하신다면,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¹⁶ 때, 큰비에 황하가 범람하였다. 태조가 조한曹翰¹⁷에게 “짐이 이틀 밤을

14 제 무제齊武帝: 남조 제의 제2대 군주 소색蕭武帝를 가리킨다. 묘호는 세조世祖이다. 「독성효篤聖孝」 계조戒條 63번 각주 참조.

15 위징魏徵: 580~643. 자는 현성玄成이다. 수隋 말기에 이밀李密的 휘하에 있다가 당 고조에게 귀순하여 태자 이견성李建成을 보좌하였다. 이견성이 아우 이세민李世民에게 패한 뒤, 이세민에게 부름을 받아 간의대부 등을 역임한 후 재상으로 등용되었다. 태종 이세민에게 2백여 차례 직언을 올리면서 보좌하여,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루는 데 공헌하였다. 태종과의 문답은 대부분 『정관정요』에 실려 있으며, 「간태종십사소諫太宗十思疏」가 유명하다.

16 송 태조宋太祖: 927~976. 북송 제1대 황제 조광윤趙匡胤으로, 재위 기간은 960년에서 976년이다. 후주後周의 세종 수하의 장군으로, 신임을 받아 금군禁軍을 통솔하였다. 이후 금군에게 추대되어 즉위하고 국호를 송으로 고쳤다. 후촉後蜀, 남한南漢, 남당南唐 등을 멸망시키고, 번진의 병권을 빼앗고 문치에 의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과거제도科擧制度를 정비하고 황제가 직접 실시하는 전시殿試를 시행하였다.

17 조한曹翰: 924~992. 송宋의 관리로, 후주後周에서 벼슬하다가 송 태조와 태종을 도와 천하 통일에 공을 세웠다. 조한이 죽고 30년이 못 되어 그의 자손이 모두 걸인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그가 강주江州를 공략하면서 오래도록 함락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함락한 후 강주 사람들을 모두 도륙한 것에 대해 벌을 받은 것이라 여겼다.

머무른 뒤에 향을 태우고 ‘만약 하늘의 재앙이 내린다면 짐의 몸에 내려지고 백성에게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 고 하늘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니, 조한이 절하고서 “송 경공宋景公이 한번 선한 말을 했는데도 재앙이 물러났습니다.¹⁸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이와 같이 백성을 염려하시니, 반드시 재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북송 태종北宋太宗¹⁹이 혜성이 나타나자 정전正殿에서 거처하지 않고 상식常食의 반찬 수를 줄였다. 그리고 대사면령을 내리니, 이날 저녁 혜성이 사라졌다. 또 심한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자, 태종이 “짐은 스스로 몸을 불태워 하늘의 견책에 답하겠다.”라고 하니, 다음 날 큰비가 내리고 메뚜기 떼가 다 죽었다.

■ 북송 신종北宋神宗²⁰ 때, 큰 기근이 들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고 가는 유민들이 길에 가득하였다. 안상감문安上監門 정협鄭俠²¹이 이 참혹한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 상소하여, “신이 안상문에서 날마다 바라본 광경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폐하께서 보신다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의 그림을 보고 신이 올린 말씀대로 행하셨는데도 열흘 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신을 베어 군주를 속인 죄를 바로잡으소서.”라고 하였다. 상소를 아뢰니, 신종이 반복하여 그림을 보고 서너 번 길게 탄식하고 소매에 넣어 안으로 들어가서 잠들지 못하였다. 다음 날 왕안석의 신법新法 가운데 18조목을 폐지하라고 명하니, 과연 큰비가 내렸다.

18 송 경공宋景公이 … 물러났습니다: 춘추 시대 송 경공 때 형혹성熒惑星이 심성心星 자리를 침범하자 경공은 그 화禍를 자기 가 받아야 한다고 하니, 형혹성이 자리를 옮긴 일화를 가리킨다. 「경사천敬事天」 법조 기사에 보인다.

19 북송 태종北宋太宗: 939~997. 북송 제2대 황제 조경趙匡胤으로, 재위 기간은 976년에서 997년이다. 태조 조광윤의 동생으로, 형과 함께 송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즉위하여 당시 할거하고 있던 정권들을 격파하고 오월의 항복을 받고 북한北漢을 멸망시켰다. 승세를 타고 요遼를 공격했지만 실패하였다. 절도사의 권한을 억제하여 각 주를 중앙에 직속시켜 번진 체제를 종식하고 중앙집권제를 확립하였다. 과거제도를 확대하여 문신을 채용하여 문치를 이루었다.

20 북송 신종北宋神宗: 1048~1085. 북송 제6대 황제 조욱趙頊으로, 재위 기간은 1067년에서 1085년이다. 즉위하여 나라를 개혁하고자 왕안석을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왕안석은 서하西夏와의 전쟁으로 인한 국가재정난, 관료제로 인한 폐해, 지나친 문치주의로 인한 군사력 약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신법新法을 단행하였다. 신종은 왕안석의 신법을 지지하여 시행하였으나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보수 관료들이 반발하여 그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신종의 정치는 실패한 것도 많았으나 나라의 체제를 바로잡고 국가 권력의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21 정협鄭俠: 1041~1119. 자는 개부介夫, 호는 대경거사大慶居士이다. 신종 때, 여러 차례 왕안석에게 서찰을 보내 신법新法이 백성들에게 해를 입힌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상감문으로 있을 때, 유민들의 참혹한 모습을 그려 바치고 왕안석의 신법의 폐지를 청하니, 신종은 이튿날 신법 가운데 18가지를 폐지하였다. 이후 직간으로 유배되었다가, 휘종이 즉위하면서 사면을 받고 복직되었지만 곧 벼슬에서 물러났다.

- || 남송 효종南末孝宗이 재상에게 “짐이 『상서尙書』에 실려 있는 경천敬天에 관계된 일을 두 폭의 그림으로 그려 아침저녁으로 살펴보면서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는데, 이 그림에 ‘경천도敬天圖’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니, 우윤문虞允文²²이 “폐하께서 몸소 실천하시어 경외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으시니, 반드시 뚜렷하고 큰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태조明太祖²³가 남교南郊에서 천지신명께 큰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기운이 청명하였다. 시신侍臣이 “이렇게 청명한 것은 폐하의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이 불러온 것입니다.”라고 하니, 태조가 “이른바 하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예법을 엄중히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백성을 자식과 같이 보호할 소임을 인군에게 맡겼으니, 하늘을 섬기는 실상은 바로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다. 천지신명에게 제사하는 것은 나 자신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 || 명 태조가 태자소부太子少傅 당탁唐鐸²⁴에게 “제왕의 정치가 천도天道를 체득하고 인심을 따른다면, 나라의 기업基業이 오래도록 편안할 것이다. 만약 짐이 하늘을 섬김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즉시 말하여 경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 명 태조가 심한 가뭄을 근심하여 몸소 기우제를 지내고 궁중 사람들을 신칙하여 모두 검소한 의복을 입고 소박한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리고 교단郊壇으로 나아가 거적을 깔

22 우윤문虞允文: 1110~1174. 자는 빈보彬甫이며 문신文臣이자 장수將帥로서 공을 세웠다. 금군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채석산采石山 아래 진을 치고 장강長江 이남으로 도강하려 하자, 소수의 패전병을 수습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이후로도 출장입상出將入相의 활약을 보였으며 벼슬은 좌승상에 이르렀고 옹국공雍國公에 봉해졌다.

23 명 태조明太祖: 1328~1398. 명 제1대 황제 주원장朱元璋으로, 재위 기간은 1368년에서 1398년이다. 연호를 따라 ‘홍무제洪武帝’로 불린다.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승려가 되었다가 환속하였다. 괘자흥郭子興의 홍건군紅巾軍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괘자흥의 양녀를 아내로 맞았다. 괘자흥의 군대가 분열되자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각지의 군웅들을 굴복시키고, 명을 세워 원을 몰아내고 중국의 통일을 이루었다. 한족 왕조를 회복하고 몽골의 풍속을 금지했으며, 조세와 부역을 공평히 시행하였고 중앙집권적 독재체제의 확립을 도모하였다. 그는 아들에게 확고한 통수권을 물려주기 위해 측근들 대부분을 숙청하였는데, 2만 명에 가까운 측근을 숙청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장남이 급사하여 어린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자 숙청은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만년에 고독하게 살다가 병사하였고, 죽은 이후 아들들 사이에는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

24 당탁唐鐸: 명의 관리로, 자는 진지振之이다. 주원장이 병사를 일으켰을 때 보좌하였고 명이 건립된 후 형부상서, 병부상서, 태자태보 등을 역임하였다. 주원장은 그에 대하여 “벗일 때부터 신하로 나를 섬기는 30년 동안, 사람과 사물에 얼굴색을 바꾸지 않았고 또한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고 앉아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쬐고 밤에는 의대를 풀지 않았다. 황후와 비, 빈이 몹소 볏을 지피고 마, 보리, 콩, 조를 섞어 농가에서 먹는 밥처럼 짓고, 황태자와 여러 왕들이 재계하는 곳에 이르러 공경히 음식을 올렸다. 3일이 지나고 큰비가 내려 사방 들판이 흠뻑 젖었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상 무을商武乙²⁵이 무도하여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어 놓고 천신天神이라 하고서, 사람들에게 천신과 내기 바둑을 두게 하여 천신이 이기지 못하면 심하게 욕하였다. 또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 피를 담아 매달고 올려다보며 활을 쏘면서 ‘하늘을 쏘아 맞힌다.’ 고 하였다. 재위 4년에 하수河水와 위수渭水 사이로 사냥 갔다가 갑자기 치는 벼락에 맞아 죽었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초 영왕楚靈王²⁶이 거북점을 치며 “나는 천하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짐 패가 불길하게 나오자 점치던 거북이 배딱지를 던지고 하늘에 대고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 조그만 천하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스스로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백성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영왕에게 고통을 받았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자 집으로 돌아가듯이 반란군을 따랐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전한 애제前漢哀帝²⁷ 때, 포선鮑宣²⁸이 상소하여 “폐하께서는 하늘을 아버지로 여기고 땅을 어머니로 여기며 백성을 자식처럼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즉위하신 이후로 하늘은

25 상 무을商武乙: 상의 제27대 왕이다. 제26대 왕 경정庚丁의 아들로, 즉위하여 하북河北으로 도읍을 옮겼다. 『후한서』에 “무을 때 상이 쇠퇴하니, 동이東夷가 강성해지면서 회수淮水와 대산岱山 일대로 옮겨오더니 차츰 중원을 차지하게 되었다. [武乙衰敝 東夷寢盛 遂分遷淮岱 漸居中土]”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기』에 “무을이 하늘을 업신여기고 도리에 어긋난 일을 자주 저질렀다. [武乙帝庚丁之子無道]”라고 기록되어 있다. 재위 4년에 사냥을 갔다가 천둥 번개가 쳐서 죽었다고 한다.

26 초 영왕楚靈王: 춘추 시대 초의 군주로, 성씨는 미부, 씨씨는 웅熊이며, 이름은 건虔이다. 강왕康王의 동생으로, 강왕의 아들 겹오郟敖가 즉위하자 영윤승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누리다가 조카 겹오를 시해하고 즉위하였다. 초로 온 채 영후蔡靈侯를 살해하여 채를 멸망시키고 서徐를 포위하여 오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 사치와 폭정으로 민심이 이반되자, 동생들이 반대파를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고 이에 자결하였다.

밝은 빛을 잃고 땅은 진동하고 백성은 거짓말을 하여 지금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일어났으니, 참으로 두려워할 만합니다. 시중侍中 동현董賢²⁹은 단지 교언영색으로 벼슬자리를 구했을 뿐인데, 폐하께서는 한도 없이 상을 내리시고 집 3채까지 하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작다고 여겨서 또 폭실暴室³⁰을 허물고 천자의 사자들을 부러 집을 증축하려고 하여, 세상의 모든 공물貢物이 동현의 집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겠습니까. 마땅히 하늘과 땅에 잘못을 고하고 태평성대의 단서를 일으키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후한 영제後漢靈帝 때, 푸른 무지개가 옥당전玉堂殿 안에 나타났다. 광록대부光祿大夫 양사楊賜³¹가 『춘추참春秋讖』에 하늘이 기이한 무지개를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온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시첩과 환관들이 함께 조정에서 전횡을 부리며 해와 달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도문鴻都門³² 아래에 불러 모은 소인배들이 글을 지어내어, 요순의 도를 주장하는 군자들을 산골짜기에 버려져 벼슬에

- 27 전한 애제前漢哀帝: 기원전 26~기원전 1. 전한 제12대 황제 유흔劉欣으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7년에서 기원전 1년이다. 성제成帝의 조카로, 성제가 병사한 후 즉위하였다. 자연재해가 지속되어 민생이 어려웠는데도, 미소년 동현董賢을 총애하여 그에게 광대한 토지 등을 하사하고 정사에 해이하여 나라를 쇠락하게 하였다.
- 28 포선鮑宣: 한·한의 관리로,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애제 때 간대부諫大夫에 임명되었다. 학문이 깊고 인품이 고매하며 직간을 잘하였다. ‘칠망七亡’과 ‘칠사七死’을 거론하여 “백성들이 일곱 가지 잃는 것은 있어도 한 가지 얻는 것도 없으니 나라가 편하기를 원해도 참으로 어렵고, 백성들이 일곱 가지 죽을 길은 있어도 한 가지 살길도 없으니 형벌을 쓸 일이 없기를 기대하더라도 진실로 어렵습니다.[民有七亡而無一得 欲望國安 誠難 民有七死而無一生 欲望刑措 誠難]”라고 하여 시정時政을 비판한 상소가 알려져 있다. 평제平帝 때 왕망王莽이 집정관 뒤 모함을 받아 투옥되자 자살하였다.
- 29 동현董賢: 기원전 22~기원전 1. 외모가 아름다워 전한 애제의 사랑을 받았다. 고안후高安侯에 봉해져 식읍 3천호를 하사 받았으며, 22세에 대사마大司馬에 임명되어 삼공三公과 동등한 권세를 누렸다. 애제가 죽자 왕망王莽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어 자살하였다. 애제가 자신의 옷소매를 갈고 잠든 동현을 차마 깨울 수 없어 옷소매를 잘라버린 적이 있는데, 남성색을 의미하는 ‘단수斷袖’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漢書』「董賢傳」)
- 30 폭실暴室: 한·한 황궁의 액정궁掖庭宮 안에 있던 방이다. 주로 옷감을 짜고 염색하는 일을 했는데, 질병에 걸린 궁중의 여인이나 죄를 지은 황후, 귀인 등을 머물게 하였다.
- 31 양사楊賜: ?~185. 후한의 관리로, 자는 백헌伯欽인데, 자가 백흠伯欽 또는 자헌子獻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구양상서학학·양상서學의 대가 양진揚震의 손자로, 가학을 이어 박사하였다. 은거하여 후진을 양성하다가, 환제桓帝 때 시중侍中에 제수되었다. 『서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천거되어 영제에게 시강侍講하면서 사공司空에 오르고 뒤에 광록대부에 제수되었다. 여러 차례 직언하였는데, 황제의 사부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였다.
- 32 홍도문鴻都門: 후한 영제가 황궁의 홍도문 안에 설치한 ‘홍도문학鴻都門學’이라는 학교를 이른다. 지방 수령이나 삼공의 추천을 받아 척독尺牘, 사부辭賦 및 전서篆書 등에 능한 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학업을 마친 후에는 벼슬을 주었다. 경학이 아닌 문예를 좋아하는 영제가 이들을 총애하여, 선발된 지 열흘이나 한 달 만에 수령이나 상서尚書, 시중侍中에 임명된 자도 있으며, 심지어 제후에 봉해진 자도 있었다. 그중 권력자에게 빌붙어 선발된 자들이 많았으므로 당시 선비들이 이들을 ‘홍도군소鴻都群小’라 부르면서 어울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나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아첨하는 신하들을 물리치고 은둔한 선비들을 속히 부르셔서, 하늘이 위엄을 되돌려 많은 변고가 멈추기를 바라소서.”라고 하였다.

- 후한 영제 2년에 푸른 뱀이 어좌 위에 나타나고, 거센 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져 큰 나무가 뽑혔다. 대사농大司農 장환張奐이 상소하여 “옛날 주공周公의 장례가 예법에 맞지 않으니, 하늘이 진동하여 위엄을 보이셨습니다.³³ 지금 두무竇武와 진번陳蕃의 충정³⁴이 분명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요사스러운 재앙이 생긴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속히 개장改葬하여 가족에게 돌려보내시고 연좌되어 금고형에 처해진 자들을 모두 사면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영제는 따르지 않았다.
- 당 중종唐中宗³⁵ 때, 홍수가 났다. 우위기조참군右衛騎曹參軍 송무광宋務光³⁶이 상소하여 “수덕水德은 신첩臣妾과 관계되는 상징입니다. 아마도 후궁에 조정의 정사에 간섭하는 자가 있는 듯하니, 애초에 그 싹을 없애야 합니다.”라고 아뢰었으나, 중종은 살피지 않았다.
- 당 덕종唐德宗³⁷이 이필李泌³⁸에게 “건중建中 연간에 난³⁹이 일어나 봉천으로 피난 갔는데, 이에 앞서 술사들이 봉천에 성을 쌓으라고 청했으니, 이는 천명天命이었다.”라고 하자,

33 옛날 … 보이셨습니다: 『서경』에, “주공周公이 병들어 ‘내가 죽거든 반드시 성주成周에서 장례 지내 성왕의 신하임을 천하에 보이라’고 말하였다. 주공이 죽자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 비가 다 쓰러지고 큰 나무가 뽑혔다.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니, 성왕成王이 대부와 금등金騰의 글을 열어 보고 글을 잡고 울면서 ‘주공께서 왕가를 위해 애쓰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성주에서 장례 지내지 않고 필畢에서 장례 지내 주공을 신하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천하에 보였다.[周公疾曰 吾死必葬於成周 示天下臣於成王也 周公死 天乃雷雨以風 禾盡偃 大木斯拔 國恐 王與大夫開金騰之書 執書以泣曰 周公勤勞王家 予幼人弗及知 乃不葬於成周 而葬之於畢 示天下不敢臣]”라고 하였다. 그런데 하늘에서 재이災異가 발생하여 성왕이 금등을 열어 본 일은 주공이 살아 있을 때의 일로, 흥병한이 이처럼 생전의 일과 사후의 일을 뒤섞어 서술한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34 두무竇武와 진번陳蕃의 충정: 후한後漢의 환제桓帝와 영제靈帝 때 환관들이 내정에 간섭하고 관직을 매매하는 등 횡포가 심했다. 이에 두무, 진번, 이응李膺 등이 환관 세력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여 도리어 환관들에게 진번과 이응 등 100여 명이 피살되고 700여 명이 금고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을 ‘당고지화黨錮之禍’라고 한다.

35 당 중종唐中宗: 656~710. 당 제4대 황제 이현李顯으로, 재위 기간은 683년에서 684년, 복위 기간은 705년에서 710년이다. 고종高宗의 일곱째 아들로, 어머니는 측천무후則天武后이다. 중종은 고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2개월 만에 측천무후에 의해 폐위되었다. 측천무후는 여덟째 아들 예종을 옹립하였다가 얼마 뒤 폐위시키고 자신이 제위에 올라 국호를 주周二로 고쳤다. 측천무후가 죽은 뒤 중종은 제위와 국호를 회복하였으나 황후 위씨가 실권을 장악하였고, 위 황후와 딸 안락공주가 중종을 독살하기에 이르렀다.

36 송무광宋務光: 자는 자양子昂이다. 우위기조참군右衛騎曹參軍, 전중어사殿中禦史, 우대右臺 등을 역임하였다. 국정과 민생 등에 대한 직간을 잘하였다. (『新唐書』「宋務光傳」)

이필이 “천명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은 모두 입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명을 만드는 자이거늘, 천명을 구실 삼아 말한다면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은 모두 쓸모없어 집니다. 상 주왕商紂王이 ‘나의 삶은 하늘에 명이 달려 있지 않은가.’⁴⁰”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상이 망한 까닭입니다.”라고 하였다.

- 후당 장종後唐莊宗⁴¹이 행궁行宮⁴²의 뜰에 격구장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장헌張憲⁴³이 “폐하께서 이곳에서 즉위하셨으니, 그 즉위하셨던 단壇을 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종은 결국 즉위하였던 단을 헐어버렸다. 장헌이 광송도郭崇韜⁴⁴에게 사담으로 “이 단은 주상께서 상제에게 예를 올리고 처음 천명天命을 받은 곳이거늘 어찌 헐어버릴 수 있는가. 하늘을 잇고 근본을 저버렸으니, 상서롭지 못한 것이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37 당 덕종唐德宗: 742~805. 당 제9대 황제 이괄李适로, 재위 기간은 779년에서 805년이다. 대종代宗의 장남으로, 즉위하여 환관들의 정치 관여를 금하고 조세법을 개혁하는 등 중흥을 도모하였다. 빈진 세력을 진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비 확보를 위한 각종 세금으로 인해 백성의 원성을 불러일으켰다. 또 반란군을 진압하던 토벌군이 도리어 장안을 점거하여, 봉천으로 피난하였다. 이후 환관들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정국이 어지러워졌다.

38 이필李泌: 722~789. 자는 장원長源이다. 어릴 때부터 문장에 능하여 당대의 문호文豪 장구령張九齡의 소우小友가 되었다. 당 현종唐玄宗은 태자(숙종)에게 이필과 포의지교布衣之交를 맺게 하고 이필을 선생이라 부르게 하였다. 양국충楊國忠의 시기를 받아 은둔하다가,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숙종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환관 이보국李輔國 등의 무고로 다시 은둔하였다. 대종代宗이 즉위한 뒤 한림학사에 제수되고, 이후 재상이 되었다.

39 건중建中 연간에 난: 당 덕종 건중 4년(783)에 경원 절도사涇原節度使 요영언姚誨言이 태위太尉 주치朱泚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장안을 점거하여, 덕종이 봉천으로 피난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덕종은 반란이 일어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자책 교서를 내렸다.

40 나의 ... 않은가: 『서경』 「서백감려西伯戡黎」의 글로, 주왕紂王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한 말이다.

41 후당 장종後唐莊宗: 885~926. 오대십국 후당 군주 이존욱李存勳으로, 재위 기간은 923년에서 926년이다. 진왕晉王 이극용李克用의 장남으로, 즉위하여 국호를 당唐이라 하고 후량後梁을 멸망시키고 낙양에 도읍하고 이듬해 전촉前蜀도 병합하였다. 뛰어난 무장이었으나 측근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사치에 빠져 부하 광종군에게 시해되었다.

42 행궁行宮: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으로, 이궁離宮 또는 행재소行在所라고도 한다.

43 장헌張憲: ?~926. 오대십국 후당의 관리로, 이존욱(장종莊宗)이 그의 문장을 인정하여 장서기掌書記로 삼았다. 이존욱이 후당을 건국하고 공부시랑, 조용사相康使에 임명하였다. 장종이 반란군에게 피살되고 이사원(명종明宗)이 즉위하여 장종의 동생 이존패를 공격하자, 이존패가 장헌에게 의지하였다. 좌우 사람들이 장헌에게 이존패를 사로잡아 명종의 명을 기다리라고 하자, 장헌은 ‘나는 본래 일개 서생으로 조그마한 공적도 없는데도 장종이 두터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찌 그의 동생을 사로잡아 일을 도모하겠는가.’라고 하여 거절하였다. 결국 이존패와 함께 피살되었다.

44 광송도郭崇韜: ?~926. 오대십국 후당의 명장으로, 자는 안시安時이다. 이존욱이 후당을 건국하고 병부상서, 추밀사에 임명하였다. 이 해에 뛰어난 계책으로 8일 만에 양梁을 멸망시키고 시중侍中이 되었으며, 이존욱의 장남 이계급과 함께 촉蜀을 멸망시켰다. 충간을 하고 전공을 세우며 왕실을 보호했지만, 환관과 이존욱의 신민경황후神隱敬皇后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주위 사람이 아부하기 위해 그와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당의 명장 광자의의 후손일 것이라고 부추겼는데, 이를 사실로 여기고 촉을 정벌하려 가는 길에 광자의의 묘에 들러 절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일이 있다.

|| 북송 신종北宋神宗이 천재지변이 있어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 연주를 중지하였다. 왕안석王安石⁴⁵이 신종에게 “재해와 이번은 모두 하늘의 운수이니, 사람의 잘잘못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또 “홍수와 가뭄은 일상적인 운수라서 요임금⁴⁶이나 탕왕湯王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聖應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부필富弼⁴⁷은 이 말을 듣고 탄식하여 “인군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늘뿐이거늘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라고 하고, 바로 수천 자의 글을 올렸는데, 『춘추』와 『서경』 「홍범洪範」 및 고금의 전기傳記를 섞어 인용하여 왕안석의 말과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 북송 휘종北宋徽宗⁴⁸ 선화宣和 원년 여름에, 큰 개가 걸상에 웅크리고 있어 가까이 가서 보니 용이었다. 병사가 잡아먹었는데 5일이 지나 폭우가 쏟아지더니 7일이 지나서야 그쳤다. 그러자 도읍 밖이 물을 부어놓은 것 같아 물높이가 10여 길이나 되었다. 기거랑起居郎 이강李綱⁴⁹이 “나라가 변泆에 도읍을 정한 지가 150여 년인데 이러한 이번은 없었습

45 왕안석王安石: 1021~1086. 자는 개보介甫, 호는 반산半山이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다. 지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양곡을 대여하면서 제도를 엄수하여 치적을 쌓았다. 1만 자에 이르는 만언서萬言書를 작성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한 변법개혁과 인재의 양성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주장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신종이 즉위한 뒤 중용되어 신법新法을 추진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했지만 반대파의 저항으로 인해 무산되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46 요임금: 도당씨陶唐氏이므로 ‘당요唐堯’ 또는 ‘제요帝堯’로 불린다. 태평성대를 이룩하였고, 효자로 이름난 순舜에게 자신의 두 딸을 시집보내고 여러 임무를 맡겨본 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 순과 함께 상고 시대 대표적인 성군聖君으로 추앙 받는다.

47 부필富弼: 1004~1083. 자는 언국彦國이다. 문언박文彦博, 한기韓琦와 함께 송의 명신으로 일컬어진다. 인종 때, 거란이 침입하여 땅을 요구했는데, 부필이 거란의 군주를 설득하여 땅을 주는 대신 결혼을 성립시켜 전쟁을 막았다. 신종이 즉위한 뒤,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하다가 좌천되었다.

48 북송 휘종北宋徽宗: 1082~1135. 북송 제8대 황제 조길趙佶로, 재위 기간은 1100년에서 1125년이다. 신종神宗의 열한째 아들로, 형인 철종哲宗이 병사한 뒤 신종의 황후인 상 태후向太后的 지지를 받아 즉위하였다. 즉위 초 상 태후의 섭정 아래 신구양법新舊兩法을 절충하여 시행했는데, 이듬해 태후가 죽고 친정을 시작하여 신법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정사를 신하들에게 맡겨버리고 자신은 미술품을 수집하고 서화원書畫院을 설치해서 궁정서화가를 양성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서 호사스럽게 생활하였다. 그는 시문과 서화 등에 뛰어났는데, 특히 그림은 매우 수준이 높아 ‘풍류천자風流天子’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도교를 숭상하여 스스로 ‘교주도군황제敎主道君皇帝’라 일컬었다. 여진족이 요遼의 지배에서 벗어나 금금을 세웠을 때, 금과 동맹하여 요를 공격하고, 옛 영토의 수복을 꾀하였으나, 오히려 금의 침공을 초래하였다. 휘종은 흠종에게 양위하고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으나 재차 침공한 금에 의해 결국 포로로 사로잡히고 북송은 멸망하였다.

49 이강李綱: 1083~1140. 자는 백기伯紀이다. 휘종 때 병부시랑, 추밀사 등을 역임하였다. 금쇼에 항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천도遷都를 반대하였다. 천도한 뒤 고종高宗이 재상으로 삼았다. 시문에 능하고 유학에 정통하였다. 주희朱熹는 “이강은 임금에 계산 것만 알고 자신의 안위는 알지 못했으며, 천하의 안위만 알고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하였다. 비록 그를 참소하여 배척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했지만 그의 나라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빼앗을 수 없었으니, 한 세상의 위인이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이강을 평하였다.

니다. 변고는 헛되이 생기지 않으니 반드시 감응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직언을 구하여 채용해서 하늘의 경계에 답하십시오.”라고 하니, 휘중은 이강을 좌천시키라고 명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면, 『서경』에 “하늘이 밝혀주고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 백성이 밝혀주고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한다.”⁵⁰라고 하였으니, 두려워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하늘을 공경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망했으니, 하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개 임금이 된 자는 하늘과 사람이 뜻을 같이한다는 이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치는 매우 분명하여, 상서로운 별과 경사스러운 구름, 사나운 바람과 굶은비는 반드시 불러온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미 하늘과 다르다면 경외하는 마음과 부응하는 정성이 어디에서 생길겠습니까. 보통 이하의 임금은 하늘의 이치는 필연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하늘의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고 여겨, 비록 하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경고하는 때를 만나더라도 예사로 보아 점점 더 거만하게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그 더러운 마음을 싫어해서 재앙을 내려 상 주왕商紂王과 송 강왕宋康王⁵¹의 패망이 앞뒤로 이어진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열성조계서는 모두 하늘에 짝하는 덕으로 끝없는 아름다움을 크게 이루셨습니다. 태조계서는 준엄한 명에 크게 응하여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시니, 사관史官이

50 하늘이 … 한다: 하늘과 백성의 마음이 통하므로 민심이 곧 천심이니, 임금이 이를 공경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서경』 「고요묘阜陶謨」에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하며, 하늘이 선한 자를 밝혀 주고 악한 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 백성이 밝혀 주고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한다. 그리하여 상하에 통달하니, 공경할지이다. 땅을 소유한 군주들이여, [天聰明 自我民聰明 天明畏 自我民明威 達于上下 敬哉有土]”라고 하였다.

51 송 강왕宋康王: 전국 시대 송의 마지막 군주로, 성은 자구, 씨는 대戴, 이름은 언懼이다. 『순자』 「왕패편王霸篇」에는 ‘헌왕獻王’으로 기록되고, 『사기』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는 ‘송왕 언懼’으로 기록되어 있다. 형 척성군黜成君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였는데, 이후 제후들이 왕이라 칭하자 그도 왕을 자칭하고 제齊의 속국을 멸망시키는 등 영토를 넓혔다. 주색에 빠져 방탕했고 신하들이 직언하면 무참히 죽이는 등 폭정을 행하였으므로, 폭군 걸왕과 같다고 하여 ‘걸송桀宋’이라 불렀다. 제齊가 초楚, 위魏와 연합하여 ‘송 강왕이 주왕紂王의 소행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주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기치 아래 강왕을 죽이고 송을 멸망시켰다.

“천심天心에 합당하셨다.”⁵²라고 칭송하였으며, 태종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거듭 밝히고 시종일관 두려워하시니, 명명이 “하늘의 도를 공경히 받든다.”⁵³라고 찬미하였습니다. 세조께서는 백성의 기근을 진휼할 때, 자신을 책하여 “어찌다 한번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고, 가뭄을 염려하여 신하들에게 직언을 구할 때 “꺼리지 말고 직언하여 하늘을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에 부응하라.”⁵⁴라고 하셨습니다. 세조께서는 어제시御製詩에서 “하늘을 공경하면 하늘이 보전하게 하리라.”⁵⁵라고 하셨고, 또 “인군人君과 모든 관리는 다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니, 마땅히 천심에 맞지 않을까 염려해야 한다.”⁵⁶라고 하교하셨습니다. 현종조에 거센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치는 이변이 일어나자 궁가宮家의 면세전결免稅田結에 몰래 등록된 민결民結을 혁파하였으며,⁵⁷ 숙종조에 혜성이 나타나는 재앙을 만나자 자전慈殿을 위해 헌수하는 의례를 정지하였습니다.⁵⁸ 이는

52 천심天心에 합당하셨다: 『서경』 「함유일덕咸有一德」에 보이는 말로, “나 이윤이 몸소 당왕과 더불어 모두 순일한 덕을 소유하여 능히 천심에 합당할 수 있었습니다.[惟尹躬覽湯 咸有一德 克享天心]”라고 하였다. 권근이 지은 비문에 “우리 태조께서 하늘을 두려워하신 정성과 전하께서 그 뜻을 이어받든 효성이 전후에 서로 이어지니, 천심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太宗實錄』 9년 윤4월 13일)

53 하늘의 도를 공경히 받든다: 변계량이 지은 태종의 신도비문에 “칙서에 대략 ‘그대의 아버 태종이 돈독하고 노성하여 천도를 삼가 공경하고, 충순의 정성은 더욱 오래 갈수록 변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太宗實錄』 18년 11월 8일)

54 꺼리지 … 부응하라: 세종이 가뭄을 걱정하여 내린 하교에 “대소신료들은 제각기 힘써 하늘의 경계를 생각하여, 위로는 나의 잘못과 정령政令의 허물에 대하여, 아래로는 전리田里의 휴전休戢과 백성의 이롭고 병 되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마음껏 직언하여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생각에 부응하라.”라고 하였다. (『世宗實錄』 5년 4월 25일)

55 하늘을 … 하리라: 세조가 신하들에게 화답한 시에 “욕심이 적으면 욕심을 채울 수가 있고, 일이 간략하면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공경하면 하늘이 보전할 것이며, 백성에게 힘쓰면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하찮은 기예에 생각을 쓰지 말고 큰 정사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世祖實錄』 3년 11월 1일)

56 인군人君과 … 한다: 세조가 각 도의 수령에게 내린 유시諭示에 “그러므로 임금과 모든 관리는 똑같이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니, 날마다 종일 신중해야 하고 항상 천심에 합하지 않을까 염려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世祖實錄』 4년 11월 5일)

57 거센 … 혁파하였으며: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크게 휘몰아치면서 천둥 번개가 치자 현종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초야에 있는 유신儒臣에게 실봉實封을 갖추어 아뢰고 풍정연豊稔畷을 이듬해 봄으로 미루어 행하라고 명하고, 중외의 관리에게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도록 거듭 당부하였으며 왕실의 면세전결免稅田結에 몰래 등록된 민결民結을 일체 혁파하였다. (『顯宗實錄』 「顯宗大王 行狀」)

58 혜성이 … 정지하였습니다: 『숙종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혜성이 조짐을 보이다가 두 달 만에 사라졌다. 이에 앞서 왕이 ‘옛사람 말에 ‘천하를 가지고 그 어버이에게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근래에 해마다 언어어 흉년이 들어서, 풍성한 예물과 성대한 예식을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하여 내 마음이 편치 않다. 다시 어찌 해야 하는가. 올해 농사 또한 풍년이 들지 않은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처럼 나라가 조금이나마 평안한 때에 위로 두 분 자전慈殿을 받들고 새해에 장수를 비는 축원을 올린다면, 이것이 태평하여 백성이 즐거워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이는 오직 자식으로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지극한 정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풍성한 예물의 절목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때 하교하기를, ‘진연進宴의 절목은 자전의 하교에 따라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지금 하늘이 경계를 보여 재앙이 이와 같으니, 정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肅宗實錄』 8년 10월 6일; 『肅宗實錄』 「肅宗大王 行狀」)

우리나라의 하늘을 섬기는 가법家法이 ‘밝혀주고 두렵게 하는[明畏] 『서경』의 가르침과 진실로 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宋의 유학자 장식張栻⁵⁹이 “폐하께서는 저 푸른 것을 하늘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⁶⁰라고 했으니, 이 말은 하늘은 높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몸속에 있는 마음이 순연히 모두 바름에서 나와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함이 지극히 진실하여 속임이 없어 오랫동안 그치지 않는다면, 나에게 있는 하늘이 바로 저 위에 있는 하늘입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전전궁궁 삼가고 남이 모르는 곳에서 성찰하여 하나의 생각도 나타하지 않고 하나의 일도 안일하지 않다면, 장식이 ‘푸른 하늘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한 말과 『주역』에서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천시天時를 받들어 행한다.”⁶¹고 한 말에 또한 가까울 것입니다. 게다가 하늘과 백성은 하나의 기운일 뿐이니, 백성이 근심하면 하늘이 그들을 위해 근심하고 백성이 기뻐하면 하늘이 그들을 위해 화답합니다. 비록 지극히 어리석고 지극히 미천한 자일지라도 보고 듣는 것은 위로 하늘과 함께하니, 민생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이 진실로 하늘을 공경하는 근본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59 장식張栻: 1133~1180. 자는 경부敬夫이고 호는 남헌南軒이다. 호평의 학문을 전수받아 호상학파湖湘學派의 영수가 되었다. 주희, 여조겸과 더불어 ‘동남삼현東南三賢’으로 일컬어진다. 맹자의 성선설을 공고히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60 폐하께서는 … 됩니다: 남송 효종南宋孝宗이 천공天公에 대하여 물으니, 장식이 “푸른 것을 하늘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의 생각이라도 옳다면 상제가 살피시어 상제가 당신에게 임하니 선택은 임금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이라도 옳지 않다면 상제가 진노합니다.”라고 하였다. (『宋名臣言行錄』)

61 하늘보다 … 행한다: 언제나 하늘의 뜻과 어긋나지 않고 합치함을 말한다. 『주역』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에 “하늘보다 먼저 하여도 하늘이 어기지 않으며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천시를 받드나니, 하늘도 어기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으며 귀신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라고 하였다.

근사전勤祀典

제사의 예법을 신중히 하다

법조 法條

- 전한 문제前漢文帝¹가 제단과 제터를 넓히고 제물을 늘리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또 “내가 듣건대, 제관祭官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기원하는 것은 모두 짐의 몸에 복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이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니, 짐은 너무나도 부끄럽다. 부덕하면서 복을 독차지하고 백성은 함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의 부덕을 더하는 것이다. 제관에게 나를 위해 기원하지 말라고 하라.”라고 하였다.
- 당 현종唐玄宗²이 종묘에 친신薦新하는 제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의논하였다. 병부시랑 장균張均³과 직방낭중職方郎中 위술韋述⁴이 “사람의 기호는 본래 일정한 기준이 없고 평소

1 전한 문제前漢文帝: 기원전 202~기원전 157. 전한 제5대 황제 유황劉恒으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180년에서 기원전 157년이다. 공신功臣을 중용하고 가의賈誼와 조조晁錯 등의 인재를 등용하여 봉건제도를 바로잡고, 요역과 세금을 경감하며 농업을 장려하여 민생 안정과 국력 신장에 힘을 기울였다. 뒤를 이은 경제의 치세와 더불어 ‘문경지치文景之治’로 불린다.

2 당 현종唐玄宗: 685~762. 당 제6대 황제 이융기李隆基로, 재위 기간은 712년에서 756년이다. 백부伯父인 중종이 재위할 때, 황후 위씨가 딸 안락공주와 짜고 중종을 독살하고 현종의 아버지까지도 해치려 하자, 현종이 위 황후와 안락공주를 주살한 후 아버지를 황제로 옹립하고 자신은 태자가 되어 실권을 잡았다. 아버지의 양위로 즉위하여, 기강을 바로잡고 선정을 베풀어, 문화, 경제, 교역 등이 모두 융성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 통치 시기를 ‘개원지치開元之治’라고 한다. 그러나 만년에 정사를 등한시하고 도교에 심취하였으며 양귀비를 총애하여 국정을 어지럽혔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피난 갔다가 다음 해에 아들 숙종肅宗에게 양위하였다.

3 장균張均: 당 현종 때 요주 자사隴州刺史, 소주 자사蘇州刺史, 형부상서 등을 역임하였다. 안사安史의 난 때 안록산安祿山에게 항복하여 중서령이 되었고 재상을 해쳤다. 난이 평정된 후 사로잡혀 사형에 처하게 되었으나, 숙종이 옛정을 생각하여 사형을 감하여 유배 보냈다.

4 위술韋述: ?~757. 40여 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사관의 직임을 20년 동안 맡았는데, 학문과 저술을 좋아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당직의唐職儀』, 『고종실록高宗實錄』, 『어사대기御史臺記』, 『양경신기兩京新記』 등의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국사國史』는 일이 간략하면서도 기록이 상세하여 당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편안히 지낼 때의 음식은 때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성인은 모두 옛것에서 기준을 찾았습니다. 초나라 굴도屈到는 평소 마름을 좋아했으나 그의 아들 굴건屈建은 마름을 제수로 올리지 않았습니다.⁵ 만약 지금의 진귀한 음식과 평소에 익숙한 것으로 제수를 올려도 무방하다면 어찌 굳이 옛것에 얽매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보궤籩⁶와 같은 제기祭器는 없애고 평소에 사용하는 소반, 사발, 잔, 밥상을 자리에 두어야 하며, 순임금의 음악인 소韶와 탕왕湯王의 음악인 호護는 연주하지 않고 공후箜篌⁷와 아쟁, 피리로 연주해야 합니다. 이미 올바른 기물이 아니라면 후손이 무엇을 보겠습니까?”라고 아뢰니, 현종은 이들의 의견을 따랐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신종北宋神宗 때, 사농시司農寺⁸에서 백성에게 사당을 팔았는데, 응천부의 알백關伯⁹과 미자微子의 사당이 판매 목록에 있었다. 판부判府 장방평張方平¹⁰이 “알백은 상구商丘로 가서 대화성大火星¹¹의 제사를 주관하였는데, 불은 나라의 성덕盛德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자微子は 송宋에 처음으로 봉해진 임금이니, 우리나라 건국의 시조입니다. 또 당나라 장순張巡과 허원許遠¹²은 목숨을 바쳐 반란군과 싸워 환란과 재앙을 막은 자들입니다. 그러하니 이 세 사당을 보존하여 나라 사람들이 숭상하고 받드는 뜻을 살피 주

5 초나라 … 앓았습니다: 춘추 시대 초나라 굴도가 마름을 좋아했는데, 병이 들자 집안 어른을 불러 “내가 죽거든 제사에 꼭 마름을 쓰도록 하세요.”라고 부탁하였다. 굴도가 죽고 소상小祥을 지낼 때 집안 어른이 마름을 올리려고 하자, 아들 굴건이 치우라고 명하고서 “국군은 소를 제수로 올리고, 대부는 양을 제수로 올리고, 사또는 돼지나 개를 제수로 올리고, 서인은 어적魚炙을 제수로 올립니다. 변두邊豆와 포해脯醢는 상하가 똑같이 사용하지만 진귀한 음식을 올리지 않고 많은 제물을 차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국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끝내 마름을 쓰지 않았다. (『國語』「楚語」)

6 보궤籩: 보는 쌀과 기장을 담은 음陰에 속하는 제기다. ‘땅은 모지다地方’라는 뜻을 담아 사각형으로 만들었으며 몸체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다. 궤는 메기장과 찰기장을 담은 양陽에 속하는 제기이다. ‘하늘은 둥글다天圓’라는 뜻을 담아 둥글게 만들었다. 몸체 양쪽에 손잡이가 있으며 몸체의 윗부분에 물결무늬를 돌렸다.

7 공후箜篌: 동양의 고대 현악기. 21개의 줄을 매어 세워 놓고 뜯는 수공후擊箜篌, 13개의 줄을 매어 눕혀 놓고 뜯는 외공후臥箜篌가 있고, 크기에 따라 소공후小箜篌, 대공후大箜篌가 있다.

8 사농시司農寺: 적전籍田의 경작과 전곡錢穀 및 제사에 쓰는 곡식, 술, 희생을 진설하는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사이다.

9 알백關伯: 전설 속의 인물로, 제곡帝嚳 고신씨高辛氏의 아들로 전한다. 상구商丘에서 불씨를 관리하는 화정火正에 임명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화조火祖로 추앙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낸다. (『春秋左氏傳』昭公元年)

10 장방평張方平: 1007~1091. 자는 안도安道, 호는 낙전거시樂全居士이다. 신종 때,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제수되어 왕안석의 동응을 반대하고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하였다. 그가 죽었을 때 소식蘇軾이 매우 슬퍼했다고 한다.

11 대화성大火星: 심수心宿, 심화心火, 상성商星이라고도 하는데, 28수宿의 하나로 창룡蒼龍 일곱 별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 하는 큰 별이다.

시길 바랍니다.”라고 아뢰니, 신종이 “신神을 업신여기고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당이 판매 금지되었다.

❑ 원 영종元英宗이 곤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태종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자 신하들에게 “한 해에 네 번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게 한다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듯이 섬기는 정성을 다할 수 없으니, 실로 온당치 않다. 해마다 반드시 친히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 때의 일이다. 중서예부中書禮部에서 각종 제사의 의절儀節에 대하여 아뢰고 정할 때, “사전祀典에 실려 있지 않은 제사는 모두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태조가 윤허하였다. 그리고 “서민의 지전紙錢과 오이 향기도 모두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는 물건이 보잘것없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창고에 쌓여 있는 재물은 백성들의 고혈인데, 이것을 제단祭壇에 가득 채워 올리고 사사로이 나 자신을 위해 복을 기원한다면 신이 속겠는가. 오직 백성을 위해 홍수, 가뭄, 질병, 전쟁과 같은 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유시하였다.

❑ 명 태조가 크고 작은 제사의 재계 기일을 의논할 때, 한림학사 주승朱升¹³ 등이 “대제大祭는 7일간 재계하고 중제中祭는 5일간 재계합니다.”라고 하니, 태조가 “사람의 마음은 시일이 길어지면 소홀하고 나태해지며 나태한 마음이 한번 싹트면 도리어 불경하게 되니, 3일간 재계하는 것이 좋겠다. 무릇 천지, 사직, 종묘, 산천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온 천하의 백성을 위해 복을 기원하는 것이니, 모든 관리에게 다 재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12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당 현종 때의 충신들이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른 성들은 모두 함락되었으나 장순과 허원은 안녹산의 군대에 맞서 싸웠다. 2년을 버티다가 고립되었는데 구원병이 오지 않아 결국 성은 함락되고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장순은 전투 중에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눈을 부릅뜨서 눈자위가 찢어져 피가 흘렀고 이를 악물어 이가 부서져 남아있는 이가 서너 개뿐이었다. 장순은 죽으면서 적을 향해 “나는 군부君父를 위해 의리로 죽지만 너희들은 역적에게 붙었으니 개대지만 못하다. 어찌 오래가겠느냐.”라고 하였다.

13 주승朱升: 1299~1370. 자는 윤승允升이다. 원말명초元末明初 난리를 피해 은거했는데, 학자들이 풍림선생楓林先生이라 불렀다. 주원장이 불러 시무時務를 묻자 주승이 “담을 쌓고 식량을 비축하면 천천히 왕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 주원장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장기간의 전투 끝에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다고 한다. 명이 건국되고 한림학사에 임명되었다. 주원장은 그를 “나라의 계책에 있어서 짝할 이가 없고 한림의 문장도 일인자이다.”라고 칭하였다.

|| 명 태조 때, 처음으로 태세太歲,¹⁴ 바람, 구름, 우레, 비를 다 천신天神으로 삼고, 진산鎭山, 바다, 강, 산, 내, 성황城隍을 다 지신地神으로 삼아 각각 제단을 만들고 몸소 예를 행하였다. 예관禮官이 “축문 중에 제帝를 신臣이라 칭한 경우는 친히 서명하시고 제를 여余라고 칭한 경우는 예관에게 대신 서명하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태조가 “친구 간의 편지에 서명할 때도 직접 성명을 쓰는데, 하물며 천지신명에게 있어서는 어떠하겠는가. 반드시 다 직접 서명하겠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제단에 오르자, 태상사승太常司丞이 태조가 힘에 부칠까 염려하여 제수를 올리고 절하는 의례를 간략히 하니, 태조가 “짐은 신에게 정성과 공경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이니, 어찌 수고로움을 꺼리겠는가.”라고 하였다.

|| 명 태조가 유신儒臣들에게 옛사람이 제사에 임하여 재계하는 것 등에 대한 절목을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하라고 명하고 제목을 ‘존심록存心錄’이라 하였다. 그리고 “짐이 듣건대, 어진 군주는 신을 섬김에 공경하고 엄숙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신령이 복을 주고 아름다운 징조가 부류에 따라 응하며¹⁵ 세상을 쇠락하게 한 군주는 신을 업신여겨 화를 자초한다고 하니, 나는 이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므로 경들에게 이 책을 편집하라고 명한 것이니, 자손들에게 본보기로 삼게 하겠다.”라고 유시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노 환공魯桓公 때, ‘가을에 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 것은 기우제를 지낼 시기가 아닌데 지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무릇 제사는 벌레가 땅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월에 지내는 교제郊祭가 있고, 용성龍星이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4월에 지내는 기우제가 있

14 태세太歲: 고대 가상의 별 세성歲星으로, 목성木星의 별칭이기도 하다. 이 별이 12년에 하늘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간지干支와 맞으므로 역수曆數를 따지는 별이라 부른다.

15 아름다운 … 응하며: 『서경』 「홍범洪範」에 “아름다운 징조는 임금이 엄숙하면 제때에 비가 내리며, 조리가 있으면 제때에 날이 개며, 지혜로우면 제때에 날이 따뜻하며, 헤아리면 제때에 날이 추우며, 성스러우면 제때에 바람이 부는 것이다. [日休徵 日暘 時雨若 日乂 時暘若 日晝 時煥若 日謀 時寒若 日聖 時風若]”라고 하였다. 그 주注에 “하늘에 있어서는 오행五行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사五事が 되니, 오사를 잘 닦으면 아름다운 징조가 각기 부류에 따라 응하며 오사를 닦지 못하면 나쁜 징조가 각기 부류에 따라 응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在天爲五行 在人爲五事 五事修則休徵各以類應之 五事失則咎徵各以類應之 自然之理也]”라고 하였다.

고, 속살肅殺의 기운이 비롯되는 8월에 지내는 상제嘗祭가 있고, 벌레가 땅속에서 동면을 하는 10월에 지내는 증제烝祭가 있다. 시기가 지나 제사를 지내면 그것을 기록하여 태만을 기롱하였다.

■ 주 혜왕周惠王 때, 신神이 신莘 땅에 내려왔다.¹⁶ 곽공虢公이 대축大祝 응應과 대중大宗 구區와 태사太史 은噩으로 하여금 그 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니, 신이 토지를 내려 주겠다고 하였다.¹⁷ 이에 태사 은이 “괘은 망할 것이다. 내 듣건대 나라가 흥하려면 백성을 따르며 망하려면 신을 따르다고 한다. 괘은 박덕薄德하니, 어떻게 땅을 얻을 수 있겠는가.”¹⁸ 라고 말하였다.

■ 노 문공魯文公 때, 희공僖公의 신주神主를 민공閔公의 신주 위에 올려 모셨으니, 이는 역사逆祀이다. 【희공은 민공의 서형庶兄으로 신하의 위치에 있었으니, 응당 그의 신위가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민공의 위에 자리했다. 그러므로 ‘역사’ 라고 한 것이다.】 이때에 하보불기夏父弗忌가 종백宗伯이 되어 희공을 민공보다 높인 것이다.¹⁹ 이것에 대해 군자가 ‘제사는 나라의 중대한 행사인데 거꾸로 하였으니, 예법에 맞다 할 수 있겠는가. 아들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의 음식을 먹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전한 성제前漢成帝²⁰가 오랫동안 후사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귀신과 신선술 등을 매우 좋아하게 되어 제사 비용을 많이 썼다. 이에 곡영곡永²¹이 “신이 들으니, 천지天地의 성성에 대해 밝게 알면 신기하거나 괴이한 것에 미혹되지 않으며, 만물의 실정에 대하여 잘 알면 그릇된 것에 속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사 지내는 방식을 성대하게 하거나 복을 내

16 신神이 신莘 땅에 내려왔다: 곽공의 신음幸邑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강신降神 현상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 이에 주 혜왕이 사람과 제물을 갖추고 태재太宰 기보르父를 시켜 곽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春秋左氏傳』 莊公 32年)

17 곽공虢公이 … 하였다: 신이 내려온 지 180일이 되는 날 곽공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토지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신이 토지를 내려 주겠다고答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莊公 32年)

18 괘은 … 있겠는가: 당시 곽공은 백성을 수탈하며 인정仁政을 베풀지 않았다. 이로부터 몇 년 뒤 진 한공晉獻公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19 하보불기夏父弗忌가 … 것이다: 하보불기가 예법과 제사를 주관하면서 노 문공魯文公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내가 보기에 신귀新鬼는 크고 고귀故鬼는 작으니, 큰 분을 앞에 모시고 작은 분을 뒤에 모시는 것이 순리이고 성현을 위로 올리는 것이 밝음이니 밝음과 순리가 예이다.[夏父弗忌爲宗伯 尊僖公 且明見曰 吾見新鬼大 故鬼小 先大後小順也 躋聖賢明也 明順禮也]” 라고 하여 민공의 아버지인 희공僖公의 신주를 민공閔公의 신주보다 높은 곳으로 올려 모신 것을 말한다.

리지 못하는 사당에 보답을 구하는 것은 모두 간악한 이들이 좌도左道를 끼고서 군주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또렷이 귓전에 맴돌아 이루어질 듯하지만, 막상 그것을 구하면 바람과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허황되어 결국 이를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려 간악한 자들이 조정을 엿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신종明神宗 때, 보신輔臣 왕석작王錫爵²²이 상소하여 “성상께서 오랫동안 정섭靜攝 중에 계시지만, 종묘의 제향은 사안이 막중하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제郊祭는 하늘이 존엄하지만 그래도 못사람의 공동의 부모가 되므로 사람마다 공경을 다하여 지낼 수 있고 감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성조와 같은 경우는, 성씨가 다른 사람은 기맥과 정신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을 올리고 정성을 다하여 엄숙하게 지내더라도 어찌 감통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종묘의 제향에 친림하시면 아마도 신神은 흠향하고 제사 드린 이는 복을 받으리니, 신臣들 역시 그 남은 경사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신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20 전한 성제前漢成帝: 기원전 51~기원전 7. 전한 제12대 황제 유오劉寵이다. 어려서는 경서를 즐겨 읽고 관대하고 신중하여 촉망받았다고 하나, 즉위한 후에는 조회에도 나오지 않고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조비연趙飛燕, 조합덕趙合德 자매의 미모와 가무에 빠졌으며, 조비연을 황후로 삼았다.

21 곡영승永: 전한의 관리로, 자는 자운子云이다. 젊어서 경서를 두루 익혔고 천문과 주역에 정통하였다. 원제 때 태상승太常丞, 대사농大司農이 되었다. 재이災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40여 회 상소하였다. 그의 글에 대하여, 왕충王充의 『논형論衡』에 “정성이 속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의 글과 말이 사람을 깊이 감동시켰다.[精誠由中 故其文語感動人深]”라고 평하였다.

22 왕석작王錫爵: 1534~1614. 자는 원어元叟, 호는 형석荊石이다. 회시會試에서 1등으로 급제하고 정시廷試에서 2등으로 급제하여 국자감좌주, 예부상서, 내각수보 등을 역임하였다. 아들 왕형王衡도 정시에서 2등으로 급제하여 사람들이 “부자가 모두 2등으로 급제했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일본과의 전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왕석작은 일본이 조선을 발판으로 명을 침략하려는 목적을 간파하고 일본과의 전쟁을 강력 주장하였다. 저서에 『왕문숙집王文肅集』, 『문숙주조文肅奏草』 등이 있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제사의 의미는 큼니다. 성인이 예법을 제정한 것은 유명(幽明)의 이치를 알고 사람들의 덕을 두터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묘의 제사는 조종(祖宗)을 근본으로 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내는 것이며, 사직(社稷)의 제사는 땅에서 살면서 곡식을 먹기 때문에 지내는 것입니다. 신성(先聖)에게 석전제(釋奠祭)를 올리는 것은 옛 선현을 계승하고 후학을 개도(開導)하여 백성에게 가르침을 세워 주었기 때문이며, 산천을 멀리서 바라보며 차례로 제사 지내는 것은 재앙과 근심을 막아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바람, 구름, 우레, 비와 아래로는 성곽, 해자, 중류(中霤),²³ 부엌의 신(神)이 각각 본래 보답이 있어 사전(祀典)에 없는 것까지도 차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모두 교화의 근본입니다. 『중용』에 “교(郊)제사와 사(社)제사의 예법과 체(禘)제사와 상(嘗)제사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 놓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나라의 큰일은 제사만한 것이 없으며 제사 지내는 도리는 정성과 공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어진 임금과 명철한 왕은 길일을 택하여 향기로운 서직(黍稷)을 정갈하게 마련하고 종고(鐘鼓)가 울리는 가운데 엄숙하게 제사를 지냈으니, 제물의 향기가 퍼지면 신들이 감통하여 위아래에 밝게 나타납니다. 교제사를 지내면 하늘의 신이 흠향하고 종묘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이르니, 강과 언덕과 같이 무강한 복을 받아 종묘가 편안하고 자손이 번창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임금이 육종(六宗)에 인(禋)제사를 지내고 오악(五嶽)에 시(柴)제사를 지내²⁴ 사해(四海)에 이르는 가르침을 크게 펼친 것이며, 문왕(文王)이 상제(上帝)에게 유(類)제사를 지내고 사직(社稷)에 의(宜)제사를 지내²⁵ 여러 나

23 중류(中霤): 집의 한가운데 있는 방이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지게문(戶), 부엌(竈), 집 가운데 방(中霤), 대문(門), 길(行)의 다섯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오사(五祀)라고 한다.

24 순임금이 … 지내: 『서경』 「순전(舜典)」에 “드디어 상제(上帝)께 유(黍稷) 제사를 지내고, 육종(六宗)에게 인(禋) 제사를 지내고, 산천에 망(望) 제사를 지내고, 여러 신에게 두루 제사를 지냈다. 다섯 서옥을 거두시니 달이 다 하거늘 날마다 사악과 군목을 만나보시고 서옥을 군후에게 나누어 돌려주었다. 해 이월(二月)에 동으로 순수(巡守)하여 대중에 이르시어 시(詩) 제사를 지내시며, 산과 천을 바라보고서 차례로 제사를 지내시고, 마침내 동쪽 제후를 만나보셨다. 사시(四時)와 달을 맞추고 날자를 바로잡으며 악(樂)과 도량(度量)을 통일하셨고, 다섯 예를 닦으셨다. 다섯 가지 옥과 세 가지 비단과 두 가지 산(山) 희생(犧)과 한 가지 죽은 희생(雉)이 폐백이었다. [肆類于上帝 禋于六宗 望于山川 徧于羣 輯五瑞 既月乃日 覲四岳羣牧 班瑞于羣后 歲二月 東巡守 至于岱宗 柴 望秩于山川 肆覲東后 協時月正日 同律度量衡 脩五禮 五玉三帛二生一死贊]”라고 하였다. 여기서 ‘육종’은 옛날 임금이 제사 올렸던 여섯 신(神)으로, 그 해석이 다양하다. 하늘, 땅,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물, 불, 천둥, 바람, 산, 연못 또는 천제(天帝)와 오제(五帝)를 칭하기도 한다.

25 문왕(文王)이 … 지내: 『서경』 「태사(泰誓)」에 “나 소자는 밤낮으로 공경하며 두려워하여 우리 돌아가신 문왕에게 명을 받아 상제(上帝)께 류(類) 제사를 지내고 종토(宗土)에 의(宜) 제사를 지내고서, 너희 무리로서 하늘의 벌을 이루노라. [予小子 夙夜祗懼 受命文考 類于上帝 宜于冢土 以爾有衆 底天之罰]”라고 하였다. 『서경』의 이 내용은 무왕(武王)이 한 말인데, ‘근안’에서는 문왕에게 접목시켰다.

라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이 크게 응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군주는 이와 반대로 하여 조 상에게 보답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신을 섬기는 것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벌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대를 끊는 지경에 이르니, 이 어찌 크게 경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열성조께서는 선조에게 제향하는 효를 돈독히 행하고 항상 신을 예우하는 정성을 다하여, 크고 작은 제향에 한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서 극진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제향의 품식品式은 세종조에 재정되고 의절儀節은 성종조에 간행되고 악장은 선조조에 증수되고 변두籩豆는 숙종조에 개수改修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묘에 친히 올리는 제사는 절로 왕가의 법도가 되었고 사직단에 올리는 기곡제는 대행하게 한 일이 드물었습니다. 고려 태조와 일곱 왕의 위패를 모신 송의전崇義殿²⁶에 지내는 제향은 전 왕조를 배려하는 예법으로 기자의 위패를 모신 송인전崇仁殿²⁷에 똑같이 행하였으며,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묘大聖廟에 배알하는 것은 유교를 중시하는 뜻으로 계성사啓聖祠²⁸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단皇壇²⁹의 대제大祭는 바로 효종, 숙종, 영조께서 명명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낸 것이니, 천하에 뚜렷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열성조께서 제사의 성대한 의절儀節을 중시하여 사당에 이른 신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여 경사와 복이 가득하니, 천만 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향의 절문節文, 도수度數와 관복冠服, 제기祭器 같은 것이 혹여 옛 법도에 어긋나는데도 아직까지 고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는 유사有司가 담당할 일이니, 질종秩宗³⁰의 직임을 맡은 신하가 스스로 참작하여 덜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과 감통하고 교화를 돕는 방도는 또한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역』 취괘萃卦 단사彖辭에 “왕이 사당을 둔 것에 지극하다’는 것은 효도로 제향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의 제향과 취괘의 뜻은 반드시 물고기가 물로 가듯 짐승이 들판으로 달려가듯 못 백성

26 송의전崇義殿: 1397년(태조 6)에 태조의 명으로 세워진 사당으로, 고려 태조와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선종, 목종, 현종의 제사를 지냈다.

27 송인전崇仁殿: 1325년(고려 충숙왕 12)에 기자箕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서 처음 세워진 뒤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28 계성사啓聖祠: 1669년(현종 10)에 세워진 사당으로, 공자, 안자, 자사, 증자, 맹자의 각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냈다.

29 황단皇壇: 임진왜란 때 명 신종明神宗이 원병을 보내 조선을 도와준 공을 생각하여 1704년(숙종 30)에 창덕궁 안에 세운 제단으로, 대보단大報壇이라고도 한다. 1749년(영조 25)에 명 태조明太祖와 명의 마지막 임금인 의종毅宗도 합사合祀하였다.

30 질종秩宗: 천신天神, 지기地祇, 인귀人鬼를 섬기는 제사나 예악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예관禮官, 예부禮部, 예조판서 등을 지칭한다.

의 마음이 우리의 동서남북에서 모여 따르지 않을 생각이 없게 한 뒤에 우리의 선조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천지신명을 감동하게 하여 밝은 덕으로 강림하게 하는 정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제왕이 향사^{享祀}를 중시하는 요체는 백성의 마음을 먼저 모으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전성학典聖學

성학에 힘쓰다

법조 法條

- 전한 무제前漢武帝¹가 수많은 학파를 물리치고 유학의 육경六經을 드러내 밝히니, 문장이 환하게 밝혀져 찬술할 수 있게 되었다.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²가 날마다 조회를 보는데 날이 저문 뒤에야 조회를 파하고, 공경公卿과 낭장郎將들을 자주 불러서 경서의 의리에 대해 강론하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침소에 들었다. 임금이 쉬지 않고 일에 매진하는 것을 황태자가 보고 틈을 타서 “폐하께서는 우임금과 탕왕湯王의 현명함을 가지고 계시나 황제黃帝와 노자老子가 양생한 복은 잃어버리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정신을 보양하고 아끼어 유유자적하여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광무제가 “나 스스로 이것을 즐기니, 피로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1 전한 무제前漢武帝: 기원전 156~기원전 87. 전한 제7대 황제 유철劉徹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141년에서 기원전 87년이다. 권신을 내쫓고 인재를 등용하였고 유학을 중시하여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었다. 제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전국을 13주로 나누고 자사刺史를 파견하여 중앙집권화를 이루었다. 흉노를 격파하고 서역과의 실크로드를 확보하는 등 영토를 확장시켰으나, 막대한 군비를 소모하였으며, 화려한 궁전을 짓고 불로장생을 믿어 방사方士를 모아 봉선封禪 의식을 행하여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인 출신을 등용하여 국가가 상인의 역할을 대행하여 재정 확대를 꾀했지만 상인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이후 여 태자廢太子 유거劉據가 난을 일으키는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고 무제가 사망한 뒤 한은 급격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2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기원전 6~57. 후한 제1대 황제 유수劉秀로, 재위 기간은 25년에서 57년이다. 고조 유방의 9세손이다. 왕망王莽의 신莽 말년에 농민들이 봉기하고 군웅들이 할거하자, 형 유적劉縯과 거병하여 왕망의 군사를 대파하고 농민군들을 병합하여 제위에 올라 한漢을 재건하였다. 즉위하여 10년 동안 군웅 세력을 진압하고 전국을 통일하였다. 노비와 죄수를 평민으로 복귀시켰고 조세와 요역을 경감하였으며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유학을 장려하고 선비를 우대하고 명분과 절의를 존중하여 예교주의禮教主義를 정치 이념으로 확립하였다.

- || 당 태종唐太宗이 “짐이 좋아하는 것은 오직 요임금, 순임금, 주공周公,³ 공자孔子의 도이다. 마치 새에게 날개가 있고 물고기에게 물이 있어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과 같이,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송 태조宋太祖는 성품이 근엄하고 과묵했는데, 독서를 몹시 즐겨 군중軍中에 있더라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 || 북송 태종北宋太宗이 비서감 이지李至⁴에게 “임금은 담박하여 욕심이 없어야 하니, 좋아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 간악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들어올 길이 없다. 짐은 달리 좋아하는 것이 없고 다만 독서를 즐겨 옛날과 지금의 성공과 실패의 전고를 많이 보아 좋은 점은 따르고 나쁜 점을 고칠 뿐이다.”라고 하였다.
- || 북송 태종이 부지런히 책을 읽어, 사시巳時[오전 9시~11시]에 시작하여 신시申時[오후 3시~5시]가 되어야 책을 내려놓았다. 사관史館에서 편수한 『태평어람太平御覽』 1,000권을 날마다 세 권씩 올리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송기宋琪⁵가 지나치게 책을 읽어 몸이 상할까 염려된다고 간언하니, 태종이 “책을 펴면 보탬이 있어 피로를 느끼지 못한다. 짐은 한 해 동안 이 책을 모두 읽으려 한다.”라고 하였다.
- || 남송 고종南宋高宗⁶ 때, 호안국胡安國⁷이 『춘추전春秋傳』을 올리니, 고종이 “성인聖人の 뜻을 깊이 알 수 있으니, 자리 곁에 두고 24일 동안 모두 읽겠다.”라고 하였다. 또 “짐

3 주공周公: 「법조종法祖宗」 법조 17번 각주 참조.

4 이지李至: 947~1001. 자는 언기言幾이다. 간의대부, 비서감 등을 역임하였다. 강직하고 엄중하며, 옛것을 좋아하고 박학다식하여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宋史』 「李至傳」)

5 송기宋琪: ?~996. 자는 숙보叔寶이다. 동평장사同平章事, 이부상서吏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태종太宗이 잠저潛邸로 있을 때부터 보좌하였다.

6 남송 고종南宋高宗: 1107~1187. 남송 제1대 황제 조구趙構로, 재위 기간은 1127년에서 1162년이다. 휘종의 아홉째 아들로, 금군의 군대가 휘종과 흥종을 포로로 잡아가지 뒤를 이어 즉위하게 되었다. 금에 항쟁하지는 주장을 물리치고 남쪽으로 천도하여 남송을 건국하였다. 1162년 금과 화평을 맺고 아들에게 양위하여 자신은 태상황이 되었다. 시가와 서예에 뛰어났다.

7 호안국胡安國: 1074~1138. 자는 강후康侯이다. 태학박사, 성도학사城都學事 등을 역임했는데, 강직하였으며 명예와 이익을 도외시하였다. 고종이 즉위하자 「시정론時政論」 21편을 올려 국세를 회복할 대책을 제시하였다. 시독관으로서 『춘추』를 강론하였고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 30권을 저술하였다. 아들 호인胡寅, 호광胡宏도 송의 대유大儒로 꼽힌다.

이 글 배우는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일을 폐하는 데에 이르지 않는 다.”라고 하였다.

■ 금 세종金世宗 宗雍⁸이 시신侍臣에게 “짐은 어릴 적에 놀기만 하고 호협한 것을 좋아하여 학문에 뜻을 두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깊이 후회가 된다.”라고 하고, 이때부터 밤늦게까지 『서경』, 『논어』, 역사서를 읽었다.

■ 남송 효종南宋孝宗 때, 유공劉珙⁹이 한림학사가 되어 효종에게 “한 고조漢高祖가 좋아하지 않던 것은 부패한 유자儒者의 속된 학문이었을 뿐입니다. 가령 당시 유사儒士들 중에 성왕聖王의 학문으로서 아된 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공경과 믿음으로 받아들여 공렬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을 신은 압니다. 대개 천하의 일은 끝이 없지만 만사에 응하는 기강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옛 성왕은 배우지 않음이 없었으며 배움에 반드시 많이 듣기를 구했고 반드시 옛 가르침을 본받았습니다. 이는 이치를 밝히고 마음을 바꾸어 만사의 기강을 세운 것입니다.”라고 아뢰니, 효종이 좋은 말이라 칭찬하였다.

■ 원 인종元仁宗 때,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올린 자가 있었다. 인종이 왕약王約¹⁰ 등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이 책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8 금 세종金世宗 宗雍: 1123~1189. 금 제5대 군주 완안왕完顔雍으로, 재위 기간은 1161년에서 1189년이다. 희종을 암살하고 즉위한 해릉양왕海陵場王이 폭정을 일삼고 무리하게 송사를 공격하자,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해릉양왕을 죽이고 완안왕을 옹립하였다. 완안왕은 즉위하여 송과 화의를 맺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내정에 힘써 변역을 이루어, ‘소요순小堯舜’이라고 일컬어졌다.

9 유공劉珙: 1122~1178. 자는 공보共父이다. 이금李金과 다판茶販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안무사安撫使를 맡았을 때 선정을 베풀고 치적이 있었다. 주희朱熹는 부친 주송朱松의 친구이자 유공의 부친인 유자우劉子羽에게 사사師事하였다. 유공은 주희와 절친으로, 학문적,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이 많았는데, 병이 위독해지자 장식張栻과 주희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의 치욕을 설욕하지 못한 한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10 왕약王約: 1252~1333. 자는 언박彦博이다. 성종에게 글을 올려 시정을 논했는데 모두 시행되었으며, 옥사의 판결이 공정하였다. 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 성종이 태자첨사승太子詹事丞에 기용하여 보좌하도록 하였다. 인종이 즉위하자 많은 부분을 개혁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대원통제大元通制』를 편찬하였다.

- || 명 태조明太祖가 태학사 오침吳沈¹¹ 등에게 “옛 성현이 남기신 가르침이 경전에 흠어져 있어 요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대들이 분야별로 편집하여 살펴보기 편리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정성록精誠錄』이라는 서명을 내려 주었다. 간의대부 당탁唐鐸¹²이 “삼대三代 이후로 포의布衣의 신분에서 일어나 천하를 소유한 사람으로 한 고조漢高祖와 폐하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한 고조는 시서詩書를 익히지 않았고 폐하께서는 성학聖學에 마음을 두셨으니, 어찌 한 고조가 폐하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 명 성조明成祖가 날마다 강관講官과 경전의 뜻을 강론하였는데, 항상 『대학』의 정심장正心章을 보고 풀이하여 “인군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흘러가 돌아오지 못하면 인욕人慾이 반드시 천리天理를 이기게 되니, 짐은 항상 조정에서 물러나와 이 마음을 단속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 || 명 효종明孝宗¹³ 때, 구준丘濬¹⁴이 서산 진씨西山眞氏의 『대학연의大學衍義』는 치도治道에 도움이 되나 치국과 평천하에 관계된 일에는 미흡하다고 여겨, 경전과 주해서, 제자백가의 글, 역사서에서 치국과 평천하에 관계된 일들을 모아 분야별로 편집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라고 제목을 붙였다. 책이 완성되자 효종이 살펴보고 매우 기뻐하여 예부禮部에 간행하라고 명하였다.

11 오침吳沈: 자는 준중濬仲이다. 원에서 국자박사 등을 역임했고 학문으로 이름이 알려져, 명이 세워진 이후 태조가 경서와 역사서를 진강하게 하였다. 그는 ‘공자를 왕으로 봉한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이 발단이 되어 이후 사전祀典을 개정하여 공자를 ‘지성선자至聖先師’라고 일컬었다.

12 당탁唐鐸: 「경사천敬事天」 법조 24번 각주 참조.

13 명 효종明孝宗: 1470~1505. 명 제9대 황제 주우탕朱祐樞으로, 재위 기간은 1487년에서 1505년이다. 연호를 따라 ‘홍치제弘治帝’로 불린다. 명 중흥의 영주英主로 꼽히며, 그의 치세 시기를 ‘홍치중흥弘治中興’이라고 한다. 방사方士 이자성李致省, 태감太監 양방梁芳 등 간신을 축출하고 유건劉建, 왕서王恕, 마문승馬文升 등 현신을 등용하였다. 『대명률大明律』을 개정하여 『문형조례문刑條例』를 반포하였고, 『대명회전大明會典』을 개편하는 등 법규를 정비하였고 황실과 권문세족의 토지 검병을 금지하고 조세를 탕감해주어 백성을 구휼하여 내치를 이루었다. 대외 관계에서도 치적을 쌓았다. 말년에 환관 이광李廣을 총애하는 과오를 범하였으나 곧 바로잡았다. 당시 대학사大學士 주국정朱國禎은 “삼대 이후 현군이라고 할 임금은 전한 문제와 북송 인종, 명 효종이다.”라고 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14 구준丘濬: 1421~1495. 자는 중심仲深이다. ‘경산 구씨瓊山丘氏’라고 불린다. 문연각 태학사로 주자학에 정통하였다. 저서는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완한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와 주희의 『가례家禮』를 해설한 『가례의절家禮義節』이 유명하다. 효종은 그를 ‘이학명신理學名臣’이라고 칭하였고, 『명신록名臣錄』에 “나라의 대신으로 자신을 엄격히 다스렸고, 성리학에 정통하고, 저술이 많아 그를 뛰어넘을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었다.

- || 명 효종 때, 장원정張元禎¹⁵이 상소하여 경연經筵에서 『태극도太極圖』, 『서명西銘』 및 성리서性理書를 강론하고 동궁은 『효경孝經』과 『소학小學』을 아울러 강할 것을 권하였다. 효종이 곧바로 『태극도』를 찾아서 살펴보고 “하늘이 이 사람을 세상에 내어 짐을 깨우쳐 이끄는구나.”라고 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진 시황秦始皇이 이사李斯의 말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경』과 『서경』을 군수郡守와 군위郡尉에게 모두 거두게 하여 불태웠다.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북송 철종北宋哲宗¹⁶ 때, 무더위가 심하여 경연經筵을 임시로 정지하였다. 시강 범조우范祖禹가 “폐하께서 지금 배우고 배우지 않는 것은 후일의 치란治亂과 관계됩니다. 만약 폐하께서 배움을 좋아하시면 세상의 군자들이 흠모하여 조정에서 서서 올바른 도리로 폐하를 섬겨 덕업을 보좌하여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반면에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소인들이 모두 마음이 동요되어 속이고 아첨하는 데 힘써 부귀만을 구할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배움의 진전이 어릴 때보다 빠른 때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군의 자질이 날로 성장하지만 몇 년 뒤에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전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삼가 폐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라고 상소하였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신종明神宗이 붓글씨에 마음을 두어 큰 글씨를 쓰기 좋아하였다. 이에 장거정張居正이 “제왕의 학문은 마땅히 대업에 힘써야 하니, 한낱 기예를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 성

15 장원정張元禎: 1437~1506. 자는 정상廷祥이다. 5살 때 시에 능하여 영정왕寧靖王이 불러서 보고 원징元徵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관직에 나아갔으나 집정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병을 핑계로 물러나 20년간 학문에 매진하였다. 이후 이부 좌시랑, 한림원학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시문은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다는 평을 받았다.

16 북송 철종北宋哲宗: 1077~1100. 북송 제7대 황제 조후趙煦로, 재위 기간은 1085년에서 1100년이다. 즉위한 후 고 태후高太后가 수렴청정하였고 사마광, 여공저, 문언박이 재상의 직임을 맡았다. 이때 장돈, 채확 등 신당新黨을 축출했는데, 태후가 죽고 친정을 시작하자 장돈을 재상으로 삼으면서 사마광, 여대방, 소식, 소철 등의 구당파舊黨派를 파직하고 신종 때의 신법新法을 부활시켰다.

제漢成帝는 음률을 알아 통소를 불고 곡조를 만들었고, 양 무제梁武帝, 진 후주陳後主, 수 양제隋煬帝, 송 휘종宋徽宗은 모두 문장에 능하고 서화에 뛰어났지만 환란과 패망에서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위대한 군주의 덕으로 어찌 한낱 기예에 연연하겠습니까.” 라고 간언하였다.

- || 명 신종은 일 년에 겨우 한 차례 경연經筵을 열었다. 신시행申時行¹⁷이 신종에게 부지런히 경연에 납시어 성학聖學을 밝히라고 청하였다. 또 명 태조와 세종이 학문에 힘썼던 옛 일을 진술하고 신종이 우러러 본받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신종은 따르지 않았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에 “시종일관 배움에 뜻을 둔다.”¹⁸라고 하였습니다. 무정武丁은 성군이고 부열傳說은 현신이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하는 사이에 정녕 깨우쳐 인도하는 것은 배움에 달려 있을 뿐이니, 배움이 인군에게 있어 의미가 큼니다. 인군은 많은 중요한 일에 임하여 여러 정사를 총괄하는데, 스스로 성의정심誠意正心과 격물치지格物致知的 공부를 익혀 가까운 곳에서 이치의 근원을 찾지 않는다면 의리는 밝히기 어렵고 정교政教는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러하다면 어떻게 일을 분명히 하고 공적을 드러내며 백성에게 인을 베풀고 만물에 은택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시군時君과 세주世主¹⁹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배움에 근본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명령과 조치가 이치를 따르지 않고 단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맡기며 정의構誼를 바로잡지 않고 한갓 이익만을 도모하니, 이와 같은 자들은 물론 논할 것이 못 됩니다. 간혹 총명과 재주, 식견이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17 신시행申時行: 1535~1614. 자는 여목汝黻이다. 이부상서, 수보首輔를 역임하였다. 장거정張居正이 시행한 고성법考成法을 폐지하는 등 관대한 정치를 펴 태평재상太平宰相이라 불렸다. 저서에 『서경강의회면書經講義會編』과 『사한당집賜閑堂集』 등이 있다.

18 시종일관 배움에 뜻을 둔다: 『서경』 「열명說命」에 보인다. 부열傳說이 고종高宗에게 “시종일관 학문에 뜻을 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덕이 닦여질 것입니다.[念終始 典于學 厥德修 罔覺]” 라고 하였다.

19 시군時君과 세주世主: 당시 또는 당대의 군주를 뜻하는데, 보통 요임금, 순임금과 같이 길이 성군聖君으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한때 군주의 지리에 있었던 임금이나 명절하지 못한 임금을 지칭한다.

이라도 나은 자가 있으면, 대변에 자신의 재주는 만물을 두루 포용하기에 충분하고 자신의 식견은 한 시대의 규범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옛 경전의 밝은 가르침을 시의時宜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명현名賢의 훌륭한 생각을 죽은 법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문에 마음을 둔 자가 있더라도 역시 조잡한 장구章句와 형식적인 토론에 힘쓰는 것에 불과하니, 근원적인 공부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삼대 이후로 나라를 잘 다스린 자가 없었던 것은 이런 까닭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밝게 드러나는 정사를 숭상하며 찬란하고 성대한 교화를 이루어 거룩하고 신묘한 덕이 계속 이어졌으니, 학문에 항상 힘쓰고 날로 정진하는 성군의 경지에 이르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태조께서는 군중軍中에서 잠시 창을 놓고 쉬는 틈에도 이름난 유학자를 막사에 불러 경서와 역사서를 토론하느라 한밤중이 되도록 잠들지 않았습니다.²⁰ 태종께서는 제왕의 학문이 귀한 것은 정일집중精一執中에 달려 있다고 하여 『중용』을 가장 먼저 강론하였고, 또 학문은 과연 유익하다고 하여 이어서 『대학』을 강론하였습니다.²¹ 세종께서는 어려서부터 배움을 좋아하여 몸이 아파도 공부를 그만두지 않았고, 날마다 경연經筵을 열어 강론하지 않은 서책이 없었습니다. 문종께서는 세자시절부터 항상 깊이 연구하는 공부에 힘썼으며,²² 성종께서는 홍문관의 관원을 불러 자주 성리학에 관한 책을 강론하였습니다.²³ 인종께서 살펴보신 서책은 『자경편自警編』, 『근사록近思錄』, 『서경』 「무일」 등이며,²⁴ 선조께서 도움을 받은 서책은 『성학십도聖學十圖』, 『성학집요聖學輯要』,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등이었습니다. 효종께서는 비바람과 서릿발 같은 재앙 속에서도 더욱

20 태조께서는 … 앉았습니다. 태조는 본래 경학을 중히 여겨, 비록 군중에 있을 때에도 매번 창을 내려놓고 쉬는 틈에는 이름난 선비를 불러다가 경서와 역사서를 토론하였는데, 더러는 밤중이 되도록 잠들지 않았다고 한다. (李廷馨, 『東閣雜記』 「本朝瑣源寶錄」)

21 태종께서는 … 강론하였습니다. 태종이 '정일집중精一執中은 제왕의 학문이니, 『중용』과 『대학』으로부터 옛것을 배우기 시작하겠다.' 고 말한 적이 있다. (『太宗實錄』 3년 9월 22일)

22 문종께서는 … 힘썼으며: 「문종대왕 묘지문文宗大王墓誌文」에 "임금의 학문은 고명하여 고금의 사실을 환하게 살피시고 더욱이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때때로 신하들과 역대 치세와 난세의 기틀과 선대 유학자의 학설의 차이를 논하면서 한결같이 정리正理에 귀착시켜 말은 간결하나 뜻은 밝게 통하였으며, 천문, 역법, 산술, 성운聲韻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묘한 이론을 다 연구하였다. 또 초서와 예서를 잘 쓰고 문사文詞에 전아했지만, 또한 마음을 두지는 않았다." 라고 하였다. (『文宗實錄』 「文宗大王 墓誌文」)

23 성종께서는 … 강론하였습니다. 성종은 총명하고 영민하며 어려서부터 경전과 역사서에 돈독히 뜻을 두었는데, 왕위를 계승한 후에도 강관에게 날마다 글을 세 번 읽게 하고 밤에도 소대감對하여 부지런히 공부했다고 한다. (『成宗實錄』 「成宗大王 行狀」) 실록에는 성종이 『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의 책을 강론한 기록이 여러 번 보인다.

24 인종께서 … 등이었습니다. 인종은 『대학연의』, 『근사록』, 『자경편』 등의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 반우盤盂, 궤장几杖에까지 모두 새겼다고 한다. (『仁宗實錄』 「仁宗大王 墓誌文」)

힘써 선왕의 업적을 이어 밝혔으며,²⁵ 숙종께서는 연로하신 때에 더더욱 강론에 힘쓰셨습니다.

우리 열성조께서는 제왕의 존귀함을 지니고 성명性命의 학문을 계승하여 밝혔으니, 이는 참으로 한, 당, 송, 명에도 있지 않은 훌륭한 절조節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손文孫²⁶께서는 덕성을 타고나시어 현군賢君, 성군聖君이 되기에 어려움이 없으시며, 예학睿學이 일취월장하고 있어 위태로운 인심人心과 은미한 도심道心²⁷을 살필 수 있는 수준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만 올라타기 쉬운 것은 안일한 사심私心이고, 유지하지 어려운 것은 단단히 잡아 보존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 밝기운이 청명한 때²⁸에 외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여, ‘이것이 과연 천리天理인가.’ ‘이것이 과연 인욕人慾인가.’를 일상생활에서 시험해 보고 마음속에서 헤아려 보소서. 그래서 천리라면 확충할 방도를 생각하고 인욕이라면 끊어 버릴 방법을 생각하소서. 천리와 인욕의 미묘한 사이에서 만약 깨달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성인의 경經과 현인의 전傳에서 질정하고, 또 학식과 명망이 높은 유학자와 실력이 뛰어난 선비와 강론하소서. 오늘 하나의 의혹을 풀고 내일 하나의 의심을 해결해서, 참되게 쌓아 가며 오래도록 노력해야 환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 고종商高宗²⁹이 학문에 전념한 것과 아울러 찬미될 수 있고 열성조보다 빛날 것이니, 성학聖學에 항상 힘쓸 것을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25 효종께서는 ... 밝혔으며: 『효종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병자호란 때 인조대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고 왕은 강도江都로 가서 있었는데 밤낮으로 그리워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날을 보냈으며, 여러 차례 결사대를 모집하며 행재소에서 지냈다. 정축년에 소현세자를 따라 볼모로 심양瀋陽에 들어갔을 때 소현세자와 한집에 거처하며 정성과 우애가 두루 지극하였으며, 난리를 만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안팎으로 주선한 것이 모두 매우 적절하였다. 연경燕京으로 들어간 뒤 청나라 사람들이 금옥과 비단을 소현세자와 왕에게 주었으나 왕은 홀로 받지 않으며 포로로 잡혀 온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신 돌려주기를 바란다고 하니 청나라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며 허락하였다.”(『孝宗實錄』 즉위년 5월 8일)

26 문손文孫: 제왕의 자손을 가리키는 말로, 세손을 가리킨다.

27 위태로운 인심人心과 은미한 도심道心: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히 살피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중도를 잡으리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다.

28 밝기운이 청명한 때: 사람이 외물을 접하기 이전인 맑은 밤에 사람의 타고난 착한 마음이 발현된다고 한다. 『맹자』 「고자 쑤구」에 “밤낮으로 길러지는 좋은 기운과 새벽녘의 맑은 기운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같은 점이 드무니, 이는 낮에 한 행동이 양심의 싹을 구속하여 잊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거듭되면 밝기운이 양심을 보존할 수 없고, 밝기운이 양심을 보존할 수 없으면 금수와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者 幾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不足以存 夜氣不足以存 則其達禽獸 不遠矣]”라고 하였다.

29 상 고종商高宗: 상의 왕으로, 이름은 무정武丁이다. 『경사천해事天』 법조 4번 각주 참조.

正史彙鑑

권
2

송유학崇儒學

유학을 숭상하다

법조 法條

- 순임금은 상상上庠과 하상下庠을 세워 나라의 선비들을 가르쳤다.
- 제 선왕齊宣王¹이 문학을 좋아하여 직하학사稷下學士²가 많아져 수백 명에 이르렀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후한 명제後漢明帝가 벽옹辟雍³에 행차하여, 처음으로 노인들을 봉양하는 예를 행하여 이궁李躬을 삼로三老로 삼고 환영桓榮을 오경五更으로 삼았다.⁴ 명제가 삼로와 오경을 태학

1 제 선왕齊宣王: 전국 시대 제 군주 전벽강田辟疆이다. 연燕을 점령했으나 저항이 거세져 철군했으며, 초楚와 연합해 진秦과 한韓, 위魏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지만 패배하였다. 아버지 위왕을 이어 학궁學宮을 설치하여 학자를 초빙하고 강화하도록 했으며, 맹자를 만나 토론하기도 하였다.

2 직하학사稷下學士: 전국 시대 제 위왕齊威王 때 임치臨淄의 남문인 직문稷門 근처에 학자들을 거처하게 하고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선왕 때까지 이어져 학문의 전당이 되었는데, 여기서 배출된 학자들을 직하학사라 불렀다.

3 벽옹辟雍: 주周 때 도성에 설치한 태학으로, 터가 원형이고 물이 돌레를 감싸고 있었다고 한다. 『예기』 「왕제王制」에 “천자가 교육을 명한 이후에 학교를 만들었는데, 소학은 궁궐 남쪽의 왼쪽에 있고 대학은 교외에 있었다. 천자의 태학을 벽옹이라 하고 제후의 태학을 반궁頓宮이라고 하였다.[天子命之教然後爲學 小學在宮南之左 大學在郊 天子曰辟雍 諸侯曰頓宮]”라고 하였다.

4 이궁李躬을 … 삼았다: 천자가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원로를 삼로와 오경으로 삼아 부형과 같이 예우하여 효제의 모범을 보였다. 삼로와 오경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인데, 정현鄭玄은 “삼로와 오경은 각 1명으로, 모두 나이가 많아 관직에서 물러난 자들이다. 천자가 부형으로 봉양하여 세상에 효제를 보인 것이다. ‘삼’, ‘오’로 이름을 붙인 것은 삼진三辰과 오성五星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취한 것이다.[三老五更各一人也 皆年老更事致仕者也 天子以父兄養之 示天下之孝悌也 名以三五者 取象三辰五星 天所因以照明天下者]”라고 하였다. 또 “모두 노인이면서 삼덕과 오사를 아는 자이다.[皆老人更知三德五事者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영달孔穎達은 “삼덕은 직, 강, 유며, 오사는 모, 언, 시, 청, 사이다.[三德謂正直剛柔 五事謂貌言視聽思也]”라고 하였다.

강당에서 맞이하고 친히 소매를 걷어 올리고 고기를 썰어 간장을 잡아 함께 먹게 하고 술잔을 잡아 마시게 하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목이 메지 않도록 축원하고 음식을 먹은 뒤에 체하지 않도록 축원하였다. 예를 마치고 환영과 제자들을 이끌고 당에 올라가, 명제가 직접 강설하자 유생들이 경전을 가지고 그 앞에서 토론하였는데, 교문橋門을 둘러싸고 구경하는 선비와 관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 후한 명제는 유학을 숭상하여 황태자와 왕후들로부터 대신大臣의 자제와 공신功臣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전을 가르쳤다. 또 외척인 번씨, 곽씨, 음씨, 마씨의 자식들을 위해 남궁南宮에 학교를 세우고 ‘사성소후四姓小侯’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경사五經師라는 관직을 설치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여 수업하게 하였다. 기문期門과 우림羽林⁵ 같은 무관들도 모두 『효경장구孝經章句』를 알게 하니, 흥노 또한 자식을 보내 입학시켰다.

|| 후한 장제後漢章帝 때, 교서랑 양종楊終⁶이 “선제宣帝께서는 많은 유학자를 널리 불러서 석거각石渠閣⁷에서 오경五經을 강론하였습니다. 폐하께서도 지금 석거각의 옛일처럼 하셔야 합니다.”라고 건의하니, 장제가 따랐다. 그래서 태상太常에게 “장수, 대부, 박사, 낭관 및 유학자들은 백호관白虎觀에 모여 오경의 차이를 의논하라.”고 명하고, 장제가 친히 임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백호주의白虎奏議』를 편찬하였다.

|| 후한 장제가 옛 노나라 땅에 행차하여 공자孔子의 고향인 쥘리闕里에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씨 집안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장제가 공희孔僖에게 “오늘의 모임이 어찌 경의 가문에 영광일 뿐이겠는가.”라고 하니, 공희가 “제가 듣건대, 명

5 기문期門과 우림羽林: 전한 무제前漢武帝 때 설치한 관직으로, 임금을 시종하여 호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6 양종楊終: 자는 자산子山이다. 장제章帝 때 전한 선제前漢宣帝가 정한 오경五經을 본받을 것, 서역 이오伊耆 지역의 정벌과 누란樓蘭의 주둔병을 철폐할 것 등을 건의하였는데, 장제가 받아들였다. 백호관 회의에 참여하여 오경을 논하였다. 나중에 황명을 받아 『사기』를 산정해 10만여 자로 정리하였다.

7 석거각石渠閣: 서적을 보관하던 곳으로, 전한 선제가 유생들을 이곳에 모아 오경을 비롯하여 여러 책을 강론하게 하였다. 『삼보황도三輔黃圖』 「각閣」에 “석거각은 소하蕭何가 건축하였다. 그 아래에 석판을 덮어 도랑을 만들어 물이 소통하게 하였는데 지금의 어구御溝와 같기 때문에 각의 이름으로 삼았다. 관중으로 들어가 얻은 진책의 서적을 보관하였다. 성제 때에 이르러 또 여기에 비서秘書를 보관하였다.[石渠閣 蕭何造 其下鑿石爲渠以導水 若今御溝 因爲閣名 所藏入關所得秦之圖籍 至於成帝 又於此藏祕書焉]”라고 하였다.

철한 왕과 어진 군주는 스승을 존중하고 도를 귀히 여긴다고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 친히 만승의 존귀한 몸을 낮추어 저희 마을에 찾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선사先師를 높여 예우하고 성덕을 더욱 빛내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워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장제가 크게 웃으며 “성인의 자손이 아니라면 어찌 이러한 말을 하겠는가.”라고 하고, 공희에게 관직을 제수하여 낭중으로 삼았다.

|| 후한 안제後漢安帝⁸ 때, 상서랑 번준樊準이 상소하여 “광무황제께서는 창을 내려놓고 문예를 익히고 군마를 쉬게 하고 도를 논하셨으며, 효명황제께서는 고전을 자세히 익히고 경학에 뜻을 두어 기문과 우림 같은 군관들도 모두 『효경』에 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들은 자리에 기대어 앉아 있을 뿐 강론은 하지 않고, 유자儒者들은 내용 없는 화려한 글만을 다투어 논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명철한 조서를 내려 은둔하고 있는 학자들을 널리 구하고 박학한 유생과 고아한 선비를 총애하고 등용하여 성상께서 강학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등 태후鄧太后가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 진 원제晉元帝⁹ 때, 대막戴邈¹⁰이 상소하여 “전란 이후로 학교가 피폐한데, 의논하는 자들은 평화로운 시절에는 문을 숭상하고 환란을 만나면 무를 숭상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럴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의 도는 심오하여 창졸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천하가 태평해진 이후에 유학을 닦는다면 실추된 것이 너무 오래되어 이루기 어렵습니다. 귀족의 자제가 성년이 되었는데도 도의道義를 익히게 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왕업이 비로소 일어나고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으니, 마땅히 도를 돈독히 하고 유학을 높여서 교화에 힘써야 합니다.”라고 하니, 원제가 그의 말을 따라서 비로소 태학을 세웠다.

8 후한 안제後漢安帝: 94~125. 후한 제6대 황제 유호劉祐로, 재위 기간은 106년에서 125년이다. 화제가 죽은 후, 등 태후鄧太后가 13세였던 화제의 조카 안제를 세우고 섭정하였는데, 등 태후가 죽자 안제가 친정을 시작하여 등씨 일가를 축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관들의 권한이 커졌고, 총애를 받던 신하들이 전횡하면서 나라는 혼란스러워졌다. 후에 황후 염씨의 일가가 중용되면서 외척이 권세를 부렸다. 순행에 나섰다가 32세의 나이로 죽었다.

9 진 원제晉元帝: 276~322. 동진 제1대 황제 사마예司馬睿로, 재위 기간은 317년에서 323년이다. 민제가 즉위하고 승상이 되었는데, 유요劉曜가 장안을 함락하여 민제가 죽고 서진西晉이 망하자 건강建康에서 즉위하여 동진을 세웠다.

10 대막戴邈: 자는 망지望之이다. 젊어서 학문이 뛰어나 천거되어 태자洗馬에 임명된 이후 상서복야尙書僕射에 올랐다.

- 남조南朝 송 문제宋文帝¹¹가 처사處士 뇌차중雷次宗¹²을 불러 건강建康으로 오게 하여, 계룡산에 학관을 열어주고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게 하였다. 문제는 자주 뇌차중의 학관에 행차하여 뇌차중에게 복식을 갖추지 않고 두건과 홉옷만을 입고 강의하게 하였다.
- 북위 태조北魏太祖¹³가 박사 이선李先¹⁴에게 “세상의 어떤 것이 사람의 정신과 지혜에 보탬이 되는가?”라고 묻자, 이선이 “서적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태조는 곧 군현에 명하여 서적을 널리 찾아 모두 평성으로 보내게 하였다.
- 북위 고조北魏高祖가 육예陸叡¹⁵에게 “북방 사람들이 ‘북방의 풍습은 촌스럽고 투박하다.’라고 항상 말하는데, 짐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매우 답답하다. 지금 글을 아는 자가 많지만 어찌 모두 성인이겠는가. 다만 학문에 힘쓰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짐이 천자가 되어 왜 군이 중원에 자리를 잡았겠는가. 바로 경들의 자손이 아름다운 풍속에 점차 물들어 건문을 넓혔으면 해서이다. 만약 영원히 북쪽에서 살면서 게다가 글을 좋아하지 않는 군주를 만난다면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북주 고조北周高祖¹⁶가 학궁을 시찰하고 태부太傅 연국공燕國公 우근于謹¹⁷을 삼로三老로 삼고 연년장延年杖¹⁸을 하사하였다. 고조가 태학에 행차하여 자신을 낮추어 북쪽을 향해

11 송 문제宋文帝: 407~453. 남조 송 제3대 황제 유의릉劉義隆으로, 재위 기간은 424년에서 453년이다. 제1대 무제의 셋째 아들로, 자신의 형인 소제를 폐위시키고 즉위하였다. 중앙집권제를 강화시켰고 학술을 중시하여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다. 이때를 ‘원가元嘉의 치세’라 한다. 그러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북위 토벌에서 참패하여 국력의 피폐를 초래하였고, 결국 태자 유소劉劭에게 시해되었다.

12 뇌차중雷次宗: 386~448. 자는 중윤仲倫이다. 젊어서 여산廬山에 들어가 학문에 전념하여 삼례三禮와 모시毛詩에 밝았다. 계룡산에 학관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13 북위 태조北魏太祖: 371~409. 북위 제1대 황제 탁발규拓跋珪로, 재위 기간은 386년에서 409년이다. 탁발부는 선비족의 하나로, 378년 전진前秦에게 멸망되었다. 이후 전진이 동진東晉에 패하여 약해진 틈을 타서 탁발규가 옛 탁발부의 선비족을 규합하여 위를 세웠다. 관제官制를 정비하고 한인漢人을 임용하고 몽골지역에서 인솔해온 부족을 호적에 편입시키는 등 북위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4 이선李先: 334~429. 북위北魏의 관리로, 탁발규의 건국을 도왔다. 학문과 점술, 상술相術에 뛰어났다. 박사, 비서감 등을 역임하였다. (『魏書』「李先傳」)

15 육예陸叡: 자는 사필思彌이다. 작위를 물려받아 평원왕平原王이 되었다. 대사大使의 직임을 맡아 선을 표창하고 악을 징벌하여 명성을 떨쳤다. 이후 목태穆泰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였다.

서서 도道에 대해 물으니, 우근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는 먹줄을 따라야 곧고 임금은 간언을 따라야 성군이 되니, 명철한 임금은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여서 잘잘못을 압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식량도 버릴 수 있고 군사도 버릴 수 있지만 신의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의를 지켜 잃지 마소서.”¹⁹라고 하고, 또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린다면 선을 행하는 자는 날로 정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날로 자제하는 법입니다.”라고 하고, 또 “세 번 생각한 이후에 말하고 아홉 번 생각한 이후에 행하소서.”라고 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이 국자감에 행차하여 친히 석전제釋奠祭를 행하고 췌주 공영달孔穎達에게 『효경』을 강의하게 하였다. 천하의 저명한 유학자를 초치하여 학관學官으로 삼아 강론하게 하니, 사방의 학자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이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창, 토번의 임금들까지도 자제를 보내 국학에 입학시켜 줄 것을 청하니, 강연講筵에 오른 자가 8,000여 명이었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가 국자감의 사당을 수리하고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의 모습을 소상塑像으로 만들거나 초상화로 그려 스스로 공자와 안연의 자리에 찬미하는 글을 짓고 문신에게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 찬미하는 글을 나누어 짓게 하고 자주 행차하였다. 몇 달 전에 태조가 시신侍臣에게 “짐은 무신들이 모두 책을 읽어 다스리는 방도를 알았으면 한다.”라고 말하니, 이에 신하들이 모두 기꺼이 글공부를 시작하였다.

16 북주 고조北周高祖: 543~578. 북주 제3대 군주 우문옹宇文邕으로, 재위 기간은 560년에서 578년이다. 시호는 무제武帝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촌 우문호宇文護를 주살하고 친정하였다. 선비족의 풍속에서 벗어나 관제를 정리하였으며, 검약하게 생활하며 민생에 관심을 기울여 노비들을 석방하였으며, 불교를 금지하고 승려와 도사들을 환속시키고 사찰을 관청에 귀속시켰다. 이후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나라가 강성하였다.

17 우근于謹: 493~568. 자는 사경思敬이다. 『손자』를 즐겨 읽었고 여러 나라의 언어에 능통했다고 한다. 무제 때 연년장延年杖을 하사받고 삼로三老로 대우받았다.

18 연년장延年杖: 왕이 노신老臣을 우대하는 의미로 하사하는 지팡이이다.

19 식량도 … 마소서: 『논어』 「안연顔淵」에 “자공이 ‘부득이해서 꼭 버려야 한다면 셋 중에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군대를 버려야 한다.’ 라고 하였다. 자공이 ‘부득이해서 꼭 버려야 한다면 둘 중에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양식을 버려야 한다. 자고로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백성이 먼저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라고 하였다.

- || 원 세조元世祖²⁰가 사천택史天澤²¹과 장덕휘張德輝²²를 불러 맞아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나라의 안과 밖이 환하게 일신되었다.
- || 원 무종元武宗이 공자孔子에게 존호를 더하여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공자 이전의 성인은 공자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고 공자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공자가 아니었다면 도통을 전수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아, 부자간의 정과 군신 간의 의리는 성교聖敎의 존엄과 천지의 광대함과 일월의 밝음을 길이 생각하게 하니, 이 어찌 이름으로 다 표현하겠는가. 부디 신묘한 교화에 힘입어 우리 황실에 복이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성조明成祖가 호광胡廣, 양영楊榮, 김유자金幼孜 등에게 “오경五經과 사서四書의 전주傳註 외에, 여러 유학자의 견해 가운데에도 깊은 뜻에 대해 밝게 드러낸 것이 있으니, 그대들이 절실하고 타당한 말들을 채록하여 아래에 덧붙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또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주희 등 여러 학자의 성리학에 관련된 글을 유형별로 모아서 『태극통서太極通書』, 『서명西銘』, 『정몽正蒙』과 같은 책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성리대전性理大全』이라고 하였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20 원 세조元世祖: 1215~1294. 원 제1대 황제 보르지긴 쿠빌라이[孛兒只斤忽必烈]로, 재위 기간은 1271년에서 1294년이다. 1260년 몽골 제국의 칸으로 즉위하여 1271년 국호를 원으로 개칭하였다. 1279년 남송을 정벌하여 중국대륙을 정복하고 금수와 거란족의 잔당을 토벌하였으며, 베트남 북방까지 영토를 확장시키고 중앙집권제를 확립하였다. 인종을 불문하고 실력 위주로 관리를 등용하고, 서역 문화를 중시하였으며, 라마교를 받아들였다.

21 사천택史天澤: 1202~1275. 자는 윤보潤甫이다. 몽골군에게 투항한 사병직史秉直의 아들로, 아버지와 형이 죽은 뒤 세습하여 도원수都元帥가 되었다. 지원至元 연간에 통수統帥가 되어 백안伯顔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송사를 멸망시켰다. 세조가 즉위하자 등용되어 재상이 되었다.

22 장덕휘張德輝: 1195~1275. 자는 요경耀卿이다. 금이 멸망한 이후 대장군 사천택의 경력관經歷官이 되어 지략가로서 전공을 세웠다. 세조가 즉위하기 전에 그를 불러 인재를 등용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눈 이후,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를 불렀다고 한다. 세조가 즉위하여 하남북로선무사河南北路宣撫使로 임명하였는데,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선정을 베풀어 치적이 높았다. 이후 시어사侍御史에 임명되었는데, 사양하고 원유元裕, 이아李治와 함께 봉릉산에 은둔하여 ‘용산삼로龍山三老’라고 불렸다.

계조 戒條

- || 진秦의 후생(侯生)과 노생(盧生)이 시황제를 헐뜯고 비난하였다. 시황제가 그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어사(御史)에게 유생들을 모두 조사하여 신문하게 하였다. 그러자 유생들이 죄를 면제받으려다가 금령을 범하게 된 자가 460여 명에 이르렀는데, 함양에 구덩이를 파서 모두 묻어 버렸다. 시황제의 맏아들 부소가 “유생들은 모두 공자(孔子)의 글을 외우고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나치게 엄한 법으로 다스리면 천하가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간언하였다.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북송 신종(北宋神宗) 때, 정호(鄭顥)가 판무학(判武學)에 제수되었는데 이정(李定)과 하정신(何正臣)이 정호의 학술이 사리에 맞지 않고 실상과 거리가 멀며 취향은 편벽되고 이상하다고 탄핵하여 정호를 파직시켰다. 이에 여공저(呂公著)²³가 “정호가 입신하여 자신의 뜻을 행함에 본디 본말이 있고 때마다 의론을 개진함에 말과 뜻이 충직하고 온후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인배들이 아득바득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길을 막으려는 것입니다.”라고 상소하였다. 그러나 신종은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 북송 철종(北宋哲宗)이 원우(元祐) 연간의 일²⁴에 대하여 언급하며 “정이(程頤)는 망령되어 자신을 높이 평가하여 경연(經筵)에서 불손한 말을 많이 한 자이다.”라고 하자, 신하들이 그 뜻에 영합해서 탄핵하여 관부(官簿)에서 이름을 지워 버리고 부주(涪州)로 귀양보냈다. 그리고 휘종 때에 이르러 정이의 저서를 없애고 학생들을 모두 내쫓고 원우 연간의 학술을 금하였다.
- || 남송 영종(南宋寧宗)²⁵ 때, 한탁주(韓侂胄)²⁶가 조여우(趙汝愚)²⁷와 주희(朱熹)를 미워하였는데, 그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름이 알려진 명사들이었으므로 그들을 모두 없애고자 성

23 여공저(呂公著): 1018~1089. 자는 회숙(晦叔)이다. 상서우복야(尚書右僕射), 중서시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선정을 베풀어 명재상으로 불렸다. 사마광과 함께 왕안석의 신법(新法) 폐지를 주장하였다.

24 원우(元祐) 연간의 일: 북송 철종의 원우 연간(1086~1094)에 일어난 당쟁을 가리킨다. 당시 사마광을 중심으로 한 문언박, 소식, 정이, 황정건 등이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반대하면서 왕안석을 중심으로 한 일파와 심하게 대립하였다. 왕안석의 우익인 채경, 증포 등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구법파(舊法派)를 간당파(奸黨)로 몰아 원우간당비(元祐奸黨碑)를 세우기도 하였다.

리학을 위학(僞學)이라고 하였다. 한탁주가 “탐욕스럽고 방자한 것이 사람의 진정한 마음 이요, 청렴하고 수신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마음이다.”라고 하니, 이로 인하여 선한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지 못하였다. 이후 감찰어사 심계조(沈繼祖)가 “주희는 정이와 장재의 견해를 표절하였으며, 나물을 먹고 마귀를 섬기는 요술로 후학들을 현혹시켰으며, 허황되게 과장하여 사사로이 학문을 평가하고 편차(編次)하였으며, 광신현(廣信縣)의 아호사(鵝湖寺)²⁸로 사방의 무도한 무리들을 불러 모으고 혹은 장사현(長沙縣)의 경간당(敬簡堂)에서 스스로 천거하기도 하면서 그 형체를 감추고 자취를 숨기는 것이 귀신과 같고 도깨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리 채원정(蔡元定)²⁹은 주희를 도와 요사스러운 짓을 합니다.”라고 무함하였다. 이에 영종은 주희를 사록관(祿官)의 직책에서 파직하고 채원정을 도주(道州)에 귀양 보내라고 명하였다.

■ 남송 이종(南宋理宗)³⁰ 때, 간의대부 주단상(朱端常)이 ‘위료옹(魏了翁)³¹은 세상 사람들을 속여

25 남송 영종(南宋寧宗): 1168~1224. 남송 제4대 황제 조확(趙擴)으로, 재위 기간은 1194년에서 1224년이다. 조여우, 한탁주 등이 정신병을 앓던 광종(光宗)을 퇴위시키고 그를 옹립하였다. 당시 조여우와 한탁주 간의 세력 다툼이 심하였는데, 영종은 조여우를 파직하고 한탁주에게 전권을 맡겼다. 한탁주는 성리학을 위학으로 규정하고 조여우와 주희 등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는데, 이를 ‘경원(慶元)의 당금(黨禁)’이라 한다. 1206년 금슈를 공격했으나 결국 실패하여, 한탁주를 원흥으로 지목하여 죽인 후 머리를 보내어 굴욕적인 ‘가정화(嘉定和議)’를 맺었다.

26 한탁주(韓侂胄): 1152~1207. 자는 절부(節夫)이다. 영종(寧宗) 옹립에 공을 세우고 총애를 받아 13년 동안 정권을 잡았다. 조여우와 대립했고 주희와 팽구연을 내쫓고 성리학을 위학으로 규정하여 배척했는데, 이를 ‘경원(慶元)의 당금(黨禁)’이라 한다. 금슈 토벌군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금과 화의를 맺게 되었는데, 금이 전쟁을 주장한 사람을 잡아 보내라고 요구하자 송은 한탁주를 죽여 그의 머리를 보낸 뒤 화의할 수 있었다.

27 조여우(趙汝愚): 1140~1196. 이부상서, 주밀원사 등을 역임하였다. 광종이 정신병을 앓자 광종의 둘째 아들인 영종을 옹립하였다. 우승상이 되어 주희에게 경연(經筵)을 맡도록 하는 등 재야의 인재들을 많이 발탁하였으며 명재상으로 이름을 떨쳤다.

28 아호사(鵝湖寺): 1175년 주희는 아호사에서 당대 저명한 유학자 육구연(陸九淵)과 만나 학문적 토론을 벌였다. 이때 주희와 육구연은 사흘 동안 철학 논쟁을 벌였는데, 주희는 ‘천리에서 부여 받은 본성이 곧 이치(性即理)’라고 주장하였고, 육구연은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라고 주장하였다.

29 채원정(蔡元定): 1135~1198. 자는 계통(季通), 호는 서산(西山)이다.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과 강학에 몰두하였다. 정호, 정이, 소옹, 장재의 학문을 배웠고 나중에 주희에게 수학했는데, 주희가 강우(講友)로 대우하였다. 경원(慶元) 연간에 주희가 탄핵 받을 때 연루되어 귀양 갔다. 주희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되며, 악물(樂律)에 조예가 깊어, 12월에 6개의 변률(變律)을 첨가해서 18악률을 개발하였다. 『서경집전(書經集傳)』을 저술한 채침(蔡沈)이 그의 아들이다.

30 남송 이종(南宋理宗): 1205~1264. 남송 제14대 황제 조윤(趙昀)으로, 재위 기간은 1224년에서 1264년이다. 이종은 태조 조광윤의 10세손으로 본명은 조귀성(趙貴誠)이다. 승상 사미원(史彌遠)의 눈에 들어 영종의 사촌동생의 양자가 되었는데, 영종의 병세가 위독하자 황후 양씨와 처서를 위조하여 태자로 세워졌고 즉위하였다. 사미원이 죽자 친정을 시작하여 이듬해 몽골과 협세하여 금을 멸망시켰다. 이후 몽골이 잠시 북쪽으로 물러난 틈을 타 낙양과 개봉을 차지하였으나 이것이 빌미가 되어 몽골의 침공을 받았다. 이후 정대전과 가사도가 권력을 천단체 국세가 기울었다.

명예를 도둑질하고 진덕수眞德秀³²는 차자를 올려 거짓으로 무함한다.’고 탄핵하였다. 이로 인해서 위료옹은 파직되어 정주靖州에 머물고, 진덕수는 환장각煥章閣의 대제待制로 강등되었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부附 좌교左教 이단을 배격하다

법조 法條

- 전한 무제前漢武帝가 신선神仙을 맞이하는 방사方士를 모두 내쫓고, 매년 신하들을 대하면 스스로 탄식하며 “지난날 어리석고 미혹되어 방사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천하에 어찌 신선이 있겠는가. 모두 요사스럽고 허망한 것일 뿐이다. 음식을 조절하고 약을 먹으면 다소 병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비구와 비구니, 도사와 여도사女道士를 모두 내쫓게 하였다. 그리고 소우蕭瑀³³의 죄를 열거하며 “남조南朝 양 무제梁武帝는 부처에게 마음을

31 위료옹魏了翁: 1178~1237. 자는 화보華父이다. 백학산白鶴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학산선생鶴山先生’이라 불렸다. 공부 사랑 등을 역임하다가 무고를 당해 강등되어 정주에서 머물렀다. 이후 복직하여, 조정의 열 가지 폐단에 대해 상소하는 등 엄정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이로 인해 다른 신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처음에는 주희와 장식을 사숙했지만, 나중에는 육구연의 심학心學을 존중하였다. 진덕수와 함께 성리학이 통치이념으로 확립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32 진덕수眞德秀: 1178~1235. 호는 서산西山이다. 이종 때 예부시랑에 발탁되어 직학사원直學士員이 된 이후 지방관과 호부상서, 한림학사 등을 역임하였다. 강직하기로 명성이 자자하였고, 시정에 대해 자주 건의했는데, 그의 주소奏疏는 수십만 자에 이르렀다. 그가 저술한 『대학연의大學衍義』는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비견된다는 평을 받았다.

33 소우蕭瑀: 575~648. 남조 양 명제梁明帝의 일곱째 아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지극한 효자로 이름을 떨쳤으며 강직하였으며 불교에 정통하였다. 수隋에서 벼슬하다가 당에 귀순하였다. 재상을 역임하였고, 고조의 총애를 받아 송국공宋國公에 봉해졌다. 능연각 24공신 중 한 사람이다.

다하고³⁴ 간문제簡文帝는 법문法門에 마음을 기울여 내탕고의 재물을 쏟아 증들에게 주고 인력을 동원해 탑을 쌓았다가, 결국 후경侯景 등이 반란을 일으켜 삼회三淮는 물결이 치솟고 오령五嶺은 연기가 피어올라³⁵ 곰 발바닥으로 남은 목숨을 구걸하고³⁶ 새끼 참새로 쇠잔한 닛을 연명하다 굶어죽게 되었다.³⁷ 사직社稷이 잠깐 사이에 기울어져 폐허가 되었으니 인과응보가 어찌 어긋나겠는가. 소우는 나라를 망하게 한 유평을 답습하였으니, 소우의 봉작을 거두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 남당 열조南唐烈祖³⁸가 도사 왕서하王栖霞³⁹에게 “어떤 방도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 “왕이 마음과 몸을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아직도 굶주리면 성내고 배부르면 기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면서 무슨 태평성대를 논하십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열조의 왕후인 송 후후宋后⁴⁰가 드리워진 발 안에서 감탄하며 지당한 말이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34 남조南朝 … 다하고: 무제는 처음에는 도교와 불교를 믿다가, 나중에 불교만을 믿어 수백 권의 불서佛書를 편찬하고 불경을 강론하며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고, 동태사同泰寺에서 속신躡身 공양供養을 한다면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수많은 재화를 낭비하다가 결국 후경侯景의 난을 당해 굶어 죽었다. 「송유학崇儒學·부附 좌교左敎」 계조 기사에 보인다.

35 삼회三淮는 … 피어올라: 후경侯景, 소발蕭勃, 원경중元景仲, 난유蘭裕 등의 반란이 계속되어 나라가 어지러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경은 후위後魏의 장수였는데 양 무제에게 항복하여 하남왕河南王이 봉해졌다. 이후 무제가 백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불교에 빠져 정사를 등한시하자 반란을 일으켜 무제를 굶어 죽게 하고 간문제를 옹립하였다가 곧 간문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한제漢帝라 칭하였다. 얼마 후 왕승변王僧辯 등에게 공격을 받아 패배하여 달아나다가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36 곰 발바닥으로 남은 목숨을 구걸하고: 춘추 시대 초 성왕楚成王의 고사이다. 성왕은 자신의 아들 상신商臣의 부하들에게 포위되었는데, 성왕은 ‘곰 발바닥이 익기를 기다렸다가 먹고 죽는다면 한이 없겠다.’ 라고 하자, 상신의 부하가 소리를 지르며 ‘곰 발바닥을 한 번 끓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시간을 끌어서 구원군이 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다. 이에 성왕을 목을 매 자결하였다.

37 새끼 … 되었다: 전국 시대 조 무령왕趙靈王의 고사이다. 무령왕은 폐총嬖寵에게 현혹되어 어린 서자에게 왕위를 전하고 자신은 ‘주부主父’라 자칭하였다. 뒤에 다른 아들의 반란으로 포위되고 굶주려 새끼 참새를 잡아먹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

38 남당 열조南唐烈祖: 888~943. 오대십국 남당 군주 이변李昇으로, 재위 기간은 937년에서 943년이다. 오륙의 건국자 양행밀楊行密의 부장 서온徐溫에게 발탁되어 양자가 되었다. 서온이 오의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얻기 시작하여, 서온이 죽은 뒤 오를 장악하고 즉위하였다. 자신이 당 현종의 여섯째 아들 이낙윤의 후손이라 하여, 이름을 이변으로 고치고 국호를 ‘당唐’이라 하였다.

39 왕서하王栖霞: 882~943. 도사道士이다. 당 소종唐昭宗 때 급제한 이후 전란을 피해 은거하면서 도법을 전수받아 도사가 되었다. 신선술에 빠져 있던 남당 열조의 부름을 받아 금인자수金印紫綬를 하사받고 현박대사玄博大師라 불렸다.

40 송 후후宋后: 남당 열조의 황후인 송복금宋福金(?~945)을 가리킨다. 시호는 ‘원경황후元敬皇后’이다.

|| 원 세조元世祖가 평장사 염희헌廉希憲⁴¹에게 제사帝師인 티베트 승려 팔사파八思巴⁴²의 계戒를 받으라고 명하니, 염희헌이 “저는 이미 공자孔子의 계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세조가 “공자도 계가 있는가?”라고 물으니,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해야 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방사方士가 대단大丹⁴³을 수련할 것을 청하니,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라고 중서中書에 칙서를 내렸다. 그러자 염희헌이 “이전의 인군 중에 방사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임금과 순임금이 장수長壽한 것은 대단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 세조가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성조明成祖 때, 구녕현甌寧縣 사람이 금단金丹과 방서方書를 올렸는데, 성조가 “이 자는 요망한 자이다. 진 시황秦始皇과 전한 무제前漢武帝가 방사方士에게 속았는데, 이 자가 또 짐을 속이려 하는구나. 나에게는 소용없으니, 금단은 그에게 먹게 하고 방서는 즉시 불태워서 다시는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명 선종明宣宗 때, 절을 수리하고 선종의 장수를 축원하겠다고 말하는 중이 있었다. 선종이 그 일을 배척하여 “상 고종商高宗과 주 문왕周文王은 나라를 향유한 기간이 가장 길었다. 그런데 그때 중, 도사, 신선의 말이 있었던가.”라고 말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41 염희헌廉希憲: 1231~1280. 자는 선보善甫이다. 경학과 역사에 능하여 세조가 ‘염맹자廉孟子’라 불렀다. 현종 때, 학교를 세워 인재를 육성할 것과 포로로 잡은 사인士人들을 석방할 것 등을 건의했다. 현종이 죽자 세조에게 즉위를 권유하였다. 중서우승中書右丞,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 등을 역임하며 직간을 잘하였고, 송의 관리들을 채용하는 한편 악탈을 금지하고 기민飢民을 구제하고, 학교를 열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42 팔사파八思巴: 1235~1280. 티베트 승려로, 파스파[Phags-pa]라고도 한다. 티베트 불교 사카파의 조사禪師이다. 원 세조가 즉위한 이후 국사國師가 되어 티베트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그는 세조의 명을 받고 티베트 문자를 개량하여 파스파 문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가 사망한 뒤 국사의 지위와 티베트 통치권이 일문一門에게 이어져 사카왕조가 출현하였다.

43 대단大丹: 도가 용어로, 양생술의 외단外丹에 상대되는 내단內丹을 가리킨다. 오랫동안의 수련과 고행을 통해 몸 안의 정기를 순환시켜 얻어지는 것을 ‘내단’이라 하고, 납이나 수은 등을 써서 단丹을 만드는 것을 ‘외단’이라 한다. 모두 안으로는 육체와 정신을 수련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밖으로 악을 물리치고 재난을 입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계조 戒條

■ 북조北朝 진왕 요흥秦王姚興⁴⁴이 인도 승려 구마라습鳩摩羅什⁴⁵을 국사國師로 삼아 신처럼 섬기고 탑과 절을 대대적으로 건립하였다. 그러자 불가에서 좌선하는 승려가 천여 명에 이르고 공경公卿 이하가 모두 불교 신자가 되었다.

■ 남조南朝 양 무제梁武帝⁴⁶가 동태사同泰寺에 행차하여 중, 비구니, 불법을 믿는 남녀가 모두 참여하는 사부무차대회四部無遮大會⁴⁷를 열고서 어의御衣를 벗고 승복을 입었다. 이로 인해 신하들이 억만금을 바치고 황제보살[무제]을 속죄시키고 궁궐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니, 그제야 허락하였다.

■ 당 대종唐代宗⁴⁸ 때, 원재元載,⁴⁹ 왕진王縉,⁵⁰ 두홍점杜鴻漸⁵¹이 재상이 되었는데 세 사람 모두 부처를 좋아하여, “안녹산과 사사명은 패역을 부리다가 둘 다 자식에게 죽임을 당했고, 복고회은僕固懷恩⁵²은 병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가 군문을 나와 병들어 죽었고,

44 진왕 요흥秦王姚興: 호호십육국 후진 왕 요흥(366~416)으로, 재위 기간은 394년에서 416년이다. 아버지 요장姚萇이 384년 스스로 만년진왕萬年秦王이라 칭하며 후진後秦을 세운 뒤 그를 태자에 봉했다. 즉위하여 진진前秦을 멸망시키고 관중關中의 패권을 장악하고 세력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후 복속했던 세력들이 이탈하고 아들들이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다투면서 국력이 약화되었다. 그는 유학을 중시하면서도 불교를 신봉하여 구마라습鳩摩羅什 등에게 불경을 번역하게 하였다.

45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 인도 승려로, 주로 구자국龜茲國에서 대승교의 포교활동을 벌였는데, 후진後秦 왕 요흥姚興이 장안으로 데려 와서 국빈으로 우대하였다. 『성실론成實論』, 『십송률十誦律』, 『대품반약경大品般若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경전 번역에 힘썼다. 삼론종三論宗의 조사祖師로 불린다.

46 양 무제梁武帝: 464~549. 남조 양 제1대 군주 소연蕭衍으로, 재위 기간은 502년에서 549년이다. 문무를 겸비하여 문학, 음률, 서예 등에 두루 뛰어났다. 남조 제씨의 응주 자사雍州刺史를 지내다가, 동훈후東昏侯가 폭정을 행하자 병사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화제和帝를 옹립하였다. 이후 화제를 폐위하고 제위에 올라 국호를 '양'으로 고쳤다. 유학을 장려하고 공헌貢獻을 폐지하고 호적과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등 선정을 펼쳤다. 그러나 불교를 지나치게 숭상하여 거대하고 화려한 동태사同泰寺를 건축하고 세 번이나 출가하면서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불교는 융성해졌으나 양의 국세는 기울었다. 이후 후경侯景이 반란을 일으켜 수도를 함락하니, 궁 안에 유폐되어 굶어 죽었다.

47 사부무차대회四部無遮大會: 중, 비구니, 불법을 믿는 남녀, 즉 승려, 속인, 남녀노소, 귀천의 차별 없이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8 당 대종唐代宗: 727~779. 당 제8대 황제 이예李豫로, 재위 기간은 762년에서 779년이다. 초명은 숙傲이다. 즉위한 이듬해 7년 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안사의 난이 진압되었다. 그러나 환관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반란은 끊이지 않았고 빈진들이 발호하여 국정이 어지러웠다. 또한 그는 불교에 심취하여 불교 사찰에 많은 토지와 혜택을 주어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

49 원재元載: ?~777. 자는 공보公輔이다. 숙종肅宗 때 이보국에게 불어 동중서문하평장사에 임명되었다. 대종 때, 이보국이 죽자 내시들과 권력을 쥐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충신들을 배척하고 뇌물을 공공연하게 받았다. 악행이 알려져 결국 자살을 명받았다. 불교를 신봉하였다.

회홀과 토변이 대거 침입했다가 싸우지도 않고 물러났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이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부처가 어찌 보응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대종은 이로 인해 부처를 깊이 믿고 항상 쉼내에서 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으며, 적이 쳐들어오면 『인왕경仁王經』을 읽어 물리치도록 하고 적이 물러나면 후하게 상을 내렸다. 그러자 스리랑카 승려 불공不空⁵³은 관작이 경감卿監과 국공國公에 이르러 쉼문을 출입했는데, 그의 권세는 권문귀족을 좌지우지할 정도였다.

- 당 헌종唐憲宗⁵⁴이 만년에 신선술神仙術을 좋아했다. 도사道士 유필柳泌⁵⁵이 헌종에게 “천태산은 신선이 모여 있는 곳으로 불사약이 많습니다. 신이 그곳의 수령이 된다면 불사약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헌종이 유필에게 임시로 태주자사를 맡겼다. 유필은 아전과 백성을 몰아세워 약초를 채취하게 하였지만 1년이 넘도록 찾아내지 못하여 두려워서 산속으로 달아나 버렸는데, 절동 관찰사浙東觀察使가 잡아서 도읍으로 압송하였다. 얼마 후 헌종은 다시 유필이 만든 단약을 먹고서 조갈증이 날로 심해졌다. 이에 기거사인 배린裴潏이 “금석은 매우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오장육부가 견디지 못합니다. 옛날에 임금들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신하에게 먼저 맛보게 하였습니까. 약을 바친 자에게 먼저 1년 동안 먹여 보게 하면 진위 여부가 절로 분명해질 것입니다.”

50 왕진王縉: 700~781. 자는 하경夏卿이다. 동중서문하평장사, 태자빈객 등을 역임하였다. 어릴 때부터 형 왕유王維와 함께 문명문명을 떨쳤으며, 불교를 신봉하여 불교의 계율을 엄격히 지켰으나 탐욕스러워 뇌물을 받았다. 원재元載가 죄를 얻어 죽임을 당하자 평소 원재에게 아부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었다.

51 두홍점杜鴻漸: 709~769. 자는 지손之巽이다. 안녹산安祿山の 난이 일어나자 태자(숙종)에게 즉위할 것을 권하여 숙종이 즉위하자 하서 절도사河西節度使에 임명되었다. 대종 때 원재, 왕진과 함께 재상이 되었는데 모두 불교를 신봉하였다.

52 복고회은僕固懷恩: ?~765. 위구르(維吾爾) 복골(僕骨) 부족의 수령으로,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나자 궤차의를 도와 당을 위해 싸웠다. 대종에게 신임을 얻어 중서령, 하삭부원수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조정에서 자신이 모반을 저지를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여겨, 변경의 여러 부족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얼마 뒤 병으로 죽었다.

53 불공不空: 705~774. 스리랑카(獅子國) 승려 불공금강不空金剛으로, 인도 이름은 Amogha-vajra다. 진언종眞言宗의 불법付法 제6조祖이다. 16세 때 중국에 들어와 현종, 숙종, 대종 3대의 관정국사灌頂國師를 지냈다. 경전 110부 143권을 번역하여 중국 밀교의 기초를 확립하고 불경 번역에 공적을 남겼다.

54 당 헌종唐憲宗: 778~820. 당 제11대 황제 이순李純으로, 재위 기간은 805년에서 820년이다. 병약한 아버지 순종으로부터 양위 받아 즉위하였다. 즉위하여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환관 세력을 누르고자 두황상杜黃裳을 재상으로 등용하고 관제官制를 개혁하였으며 빈진세력을 통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때 당은 일시적으로 중흥기를 맞이하였는데, 이를 ‘원화중흥元和中興’이라 한다. 그러나 태자 이녕李寧이 19세에 요절한 이후, 불교와 도교에 빠져 금단金丹을 남용하여 걸핏하면 화를 내고 환관을 때리는 등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 결국 환관들에게 시해되었다.

55 유필柳泌: 당대唐代的 도사道士이다. 헌종憲宗이 유필을 태주 자사台州刺史로 삼아 단약을 만들고 불사약을 찾게 하였다. 그가 만든 단약을 헌종이 복용하고 정신이 불안한 상태에 빠진 후에 사망하여, 처형되었다.

다.”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현종은 노하여 배린을 강릉령江陵令으로 좌천시켰다.

|| 당 현종이 부처의 사리를 맞이하여 도읍에 이르자 사흘 동안 궁중에 두었다. 이에 한유韓愈가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올려 간곡히 간언하니, 현종은 크게 노하여 조주사사潮州刺史로 좌천시켰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휘종北宋徽宗 때, 방사方士 임영소林靈素⁵⁶가 큰소리로 “하늘에는 신소神霄의 옥청왕玉清王이 있어 장생대제長生大帝라고 불리는데, 땅으로 내려온 그가 바로 폐하이십니다. 또 신계仙界에는 좌원백左元伯과 저혜褚擘 등의 관리가 있는데, 지금 채경蔡京⁵⁷은 좌원백, 왕보王黼는 문화리文華吏, 동관董貫 등은 저혜가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당시 귀비貴妃 유씨劉氏가 총애를 받았는데 임영소가 아부하여 ‘구화옥진안비九華玉真安妃’라고 하니, 휘종이 점차 도교를 믿게 되었다. 그러자 채경이 앞장서서 주성벽월珠星璧月, 과봉승용跨鳳乘龍, 천서운전天書雲篆의 부적을 만들어 휘종의 비위를 맞췄으며, 경용문 안에 상정보록궁을 만들어 놓고 항상 큰 법회를 열어 번번이 수만의 지전紙錢을 써 버리고 도회道會라 이름 하였다. 휘종은 임영소에게 ‘통진달령원묘선생通真達靈元妙先生’이라는 호를 내렸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세종明世宗⁵⁸ 때, 방사方士 도중문陶仲文⁵⁹을 남달리 총애하여 소사少師에 제수하였다. 세종은 스스로 진인真人이라 칭하고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신선술을 하는 기인들을 찾아

56 임영소林靈素: 1075~1119. 송대宋代의 도사道士이다. 휘종徽宗의 신임을 얻어 통진달령원묘선생通真達靈元妙先生이란 호를 받았다.

57 채경蔡京: 1047~1126. 자는 원장태元長이다. 환관 동관童貫을 통해 52세에 재상이 된 뒤 여러 차례 파직과 재기를 반복하여 16년 동안 재상 자리에 있었다. 금수와 동맹하여 요약을 멸망시킨 것은 그의 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휘종에게 사치를 조장하여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고 세금을 증액하여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였다. 흠종이 즉위한 뒤 동관, 왕보, 양사성 등과 결탁하여 사마광 등 구법당을 배척하고 왕안석의 신법을 시행하는 등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육적六賊으로 지목되어 실각하였다.

58 명 세종明世宗: 1507~1567. 명 제11대 황제 주후총朱厚聰으로, 재위 기간은 1521년에서 1567년이다. 제10대 무종의 사촌동생으로, 무종이 후사가 없어 장황태후張皇太后와 양정화楊廷和 등에 의해 옹립되었다. 연호를 따라 ‘가정제嘉靖帝’로 불린다. 즉위한 후 부친인 주무원朱祐杭을 추존할 것을 명하였는데, 3년 동안 의론이 분분하던 끝에 황고皇考라 추존하고 묘호를 예종이라 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법에 맞지 않는다 하여 강력히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투옥된 자가 3백 명이나 되었다. 이를 ‘대례의大禮議 사건’이라 한다. 그는 도교와 연단술에 빠져 궁녀들에게 가혹한 짓을 행했는데, 이로 인해 십여 명의 궁녀들이 그를 교살하려다가 실패한 ‘임안궁변壬寅宮變’이 일어났다. 말년에 재조齋醮에만 골몰하다 금석金石으로 만든 약에 중독되어 죽었다.

비법을 부적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옛 선비란 머리에 장보章甫를 쓰고 소매가 넓은 봉액縫掖을 입은 자를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仁和 의義를 강구하여 닦고 충忠과 신信을 익숙히 익혀야 바로 진정한 선비입니다. 그리고 학자란 장구를 표절하고 훈고만을 전공하는 자를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천명天命과 인리人理를 꿰뚫고 성性和 명命을 드러내 밝혀야 바로 참된 학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조정에서 벼슬하면 경세제민의 은택이 백성에게 이르고, 산골에 은거하면 본보기가 되는 효과가 사람에게 나타나니, 유학이 세도世道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겠습니까.

아! 삼대 이후로 잘 다스려진 날은 적고 혼란스러운 날이 많았던 것은 유학의 교화가 밝혀지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역대 인군들이 다 하찮게 여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찮게 여긴 까닭은 세 가지가 있으니, 알지 못해서이며 믿지 못해서이며 힘쓰지 않아서입니다. 양 혜왕梁惠王이 이례만을 말하고 인仁和 의義를 말하지 않은 것⁶⁰은 알지 못해서이며, 한 고조漢高祖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니, 시서詩書를 익히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것⁶¹은 믿지 못해서이며, 북송 신종北宋神宗이 “요임금과 순임금이 한 일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는가.”라고 한 것⁶²은 힘쓰지 않아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못 되며, 믿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어질다고 여기는 것에 연유하며, 힘쓰지 않는 것은 자포자기를 편안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열과 고하를 말할

59 도중문陶仲文: 1475~1560. 명대明代의 도사道士로, 세종의 신임을 받아 소사少師, 소부少傅, 소보少保에 제수되었다. 명에서 이 세 직책을 아울러 겸한 사람은 도문중 뿐이라고 한다.

60 양 혜왕梁惠王이 … 것: 맹자가 양 혜왕을 만났을 때, 혜왕이 “어르신께서 천 리를 멀다 않고 찾아와 주었으니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라고 묻자, 맹자가 “왕께서는 하필 이례를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라고 대답하여 인의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정치를 펼칠 것을 말하였다. (『孟子』 「梁惠王」)

61 한 고조漢高祖가 … 것: 육가陸賈가 고조에게 시서詩書의 중요성에 말하자, 고조가 “나는 말 위에서 무력으로 천하를 얻었는데, 시서 따위를 익혀 무엇 하겠는가.[迺公居馬上而得之 安事詩書]”라고 매도하였다. (『史記』 「陸賈傳」)

62 북송 신종北宋神宗이 … 것: 정호程顥가 신종에게 치도治道에 대해 극진히 아뢰자, 신종이 “이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일이다. 내가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此堯舜之事 朕何敢當]”라고 답하였다. (『宋名臣言行錄』)

수 있으나 결국 우리 유교의 불행인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악과 제도는 평소 소화小華라 불려 왔습니다. 정몽주는 나라가 멸망하는 때를 만났지만 학문에 참된 근원을 열어 본조本朝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열성조께서 인재를 배양하시어 이름난 현자가 계속 이어져 나왔으니, 김종직은 영남嶺南에서 앞장서서 문교文教를 도왔으며, 김굉필과 정여창은 은사隱士로 예우를 받았으며, 조광조는 임금과 백성을 보도할 책임을 맡고 학문에 밝고 어진 인재를 발탁했으며, 이언적은 경학의 정립을 선도하여 왕도정치를 도왔습니다.⁶³ 이황의 학문은 정자와 주자의 학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명망이 태산과 북두와 같이 높았고, 이이는 여러 유학자의 학설을 집대성하였고, 성혼은 가학을 계승하여 더욱 밝혀, 임금의 은총과 예우가 융숭하였으며 사림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생은 위로는 유종儒宗인 이이의 학통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현자인 송시열이 계승하여 훌륭한 성취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효묘孝廟(효종)께서는 춘추의 의리를 밝히고 빈사賓師를 융숭하게 예우하시니,⁶⁴ 송시열과 송준길 같은 이가 모두 순정한 학문으로 임금의 예지와 합치되어 유도儒道가 크게 밝혀지고 사람의 도리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전 강론의 전승과 의발의 전수는 또한 박세채와 권상하가 있었으니, 아! 성대합니다.

오호라, 열성조께서 여러 유학자가 살아있을 때는 충성스러운 계책을 가납해주거나 고상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며, 유학자가 죽은 뒤에는 문묘에서 흠향하게 하거나 사당에 편액을 내려 주셨으니, 존송하고 장려하는 교화가 이와 같이 융성하고 도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간 세상이 여러 번 변화를 겪었으나 유학의 일맥을 보존하여, 전해진 유풍과 남아있는 공렬이 흥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의지할 바가 있어 스스로 면려하고 불초한 자는 꺼리는 바가 있어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니, 유학의 공은 참으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풍속이 점점 저급해지고 유학의 교화가 점차 쇠하여 재야에는 학문에 힘쓰는 선비가 적고 조정에는 가다듬고 애쓰는 사람이 드무니, 식견이

63 이언적은 … 도왔습니다: 이언적은 『구인록求仁錄』,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봉선잡의奉先雜儀』 등의 저술과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와 「진수팔규進修八規」 등의 상소문을 남겼다. 그는 이러한 글에서 인仁에 집중하여, 천도에 순응하고 인심을 바로잡으며 나라의 근본을 배양해야 한다는 왕도정치의 기본이념을 추구하였다.

64 효묘孝廟께서는 … 예우하시니: 효종은 북벌정책을 치국의 효시로 내세웠는데 사대부의 반대로 위기에 봉착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상헌金尙憲의 제자로 유배 중이던 조석윤趙錫胤을 동지중추부사로 등용하고 재야의 영수인 송시열宋時烈을 이조참의로 증용하였다.

있는 자들은 옛날에 미치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오늘날 마땅히 힘써야 하는 것이 어떠해야 옳겠습니까. 그들의 거처가 암혈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시고 그들의 도가 유술(儒術)이라면 존경하시며, 출사와 은둔에 신중한 자를 세속적인 잣대로 꾸짖지 마시고 번번이 경전을 인용하는 자를 오할한 논의를 한다고 보지 마시며, 그들을 도리에 맞게 맞이하고 정성스럽게 자문하십시오. 그러면 군덕의 성취와 어진 선비들의 규범이 이러한 임금의 예우에 크게 힘입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록 그러나 윗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데 아랫사람이 좋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기』에 “백성을 교화하고 어진 풍속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문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⁶⁵라고 하였습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5 백성을 ... 한다: 『예기』 「학기(學記)」에서 배움의 중요성을 말하여 “사려를 법도에 맞게 하고 선량한 인재를 구하면 작은 명성은 얻을 수 있으나 백성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현자에게 나아가고 소원한 자를 몸소 살피면 백성을 감동시킬 수는 있으나 백성을 교화하지는 못한다. 군자가 백성을 교화하고 어진 풍속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문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옥돌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날에 왕이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릴 때에 가르침과 배움을 우선시하였다.[發慮憲 求善良 足以諷聞 不足以動衆 就賢體遠 足以動衆 未足以化民 君子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乎 玉不琢不成器 人不學不知道 是故古之王者建國君民 教學爲先]”라고 하였다.

상검약尙儉約

검약을 숭상하다

법조 法條

- || 요임금은 즉위하여 황수黃收【면류관의 명칭】를 머리에 쓰고 순의純衣를 입었으며, 붉게 칠한 수레와 흰말을 탔으며, 띠풀로 엮은 지붕은 가지런히 자르지 않고, 기둥은 다듬지 않았으며, 수레는 그림으로 꾸미지 않고, 부들로 짠 방석은 선을 두르지 않았으며, 국은 양념을 하지 않고, 제사에 올리는 쌀은 방아 찧지 않았으며, 흙으로 만든 공기에 밥을 담고 흙으로 만든 대접에 국을 담았으며, 궁은 흰 흙을 바르지 않았다.
- || 순임금은 금은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험준한 산속에 금을 버리고 오호五湖의 늪에 진주를 버려서 사악한 마음을 막고 주재 넘는 아침을 끊어버렸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오왕吳王 합려闔廬¹는 식사 때 두 가지 요리를 먹지 않고, 앉을 때 두터운 방석에 앉지 않았으며, 집에 단을 높이 쌓지 않고, 그릇에 붉은 칠이나 조각을 하지 않았으며, 궁실은 불만한 것이 없고, 배와 수레는 장식하지 않았으며, 의복과 재용은 사치스러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전한 문제前漢文帝는 검정 물을 들인 거친 명주옷을 입었고, 총애하는 신 부인慎夫人도 치맛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문힐 패릉霸陵을 만들 때, 모두 와기

1 오왕吳王 합려闔廬: 춘추 시대 오의 군주로, 성은 희姬, 씨는 고발姑發, 태자 시절 이름은 광光이다. 오자서伍子胥를 재상으로 삼고 손무孫武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월왕越王 구천句踐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瓦器를 사용하고 금, 은, 동, 주석으로 장식하지 말며, 산세山勢를 따르고² 봉분을 높이 쌓지 않도록 하였다.

- 진 무제晉武帝 때의 일이다. 유사有司가 소에 맨 푸른 비단 끈으로 만든 가슴걸이가 끊어졌다고 아뢰자 무제가 푸른 삼끈으로 바꾸라고 하였다. 또 대의太醫 사마정거司馬程據가 꿩의 머리 깃털로 만든 갓옷을 바치자 무제가 궁전 앞에서 불사르고, 궁궐 안팎에 칙명을 내려 신기한 기교로 만든 물건과 기이한 옷을 바치는 자가 있으면 벌하였다.
- 남조南朝 송 고조宋高祖³는 의복과 거처가 평민보다도 검소하였다. 영남嶺南에서 고운 삼베를 대통에 넣어 바쳤는데, 1단⁴이 8장丈이나 되었다. 고조는 곱고 아름다운 삼베를 위해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을 싫어하여 즉시 유사에게 맡겨 태수를 탄핵하고 삼베를 돌려보냈다.
- 북위 세조北魏世祖는 의복과 거마, 음식을 필요한 정도만 사용하였다. 신하들이 도읍의 성곽을 높이 증축하고 궁궐을 수리할 것을 청하였는데, 세조가 “조나라 장수 굴면屈丐이 흙을 써서 성을 견고하게 쌓았으나 짐이 무너뜨렸다. 어찌 성이 중요하겠는가. 지금 천하가 평정되지 않았으니, 백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토목공사는 짐이 할 바가 아니다. 한漢의 소하蕭何가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다.”⁵라고 한 대

2 산세山勢를 따르고: 전한 문제는 “패릉의 산천은 본래 형세를 따르고 바꾸지 말라.[霸陵山川因其故 毋有所改]”라고 유언을 남겼다. 왕이나 왕족의 장례를 ‘인산困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史記』「孝文本紀」)

3 송 고조宋高祖: 363~422. 남조 송 제1대 황제 유유劉裕로, 재위 기간은 420년에서 422년이다. 동진東晉 말 환현桓玄이 안제安帝의 왕위를 찬탈하여 국호를 초楚로 고치자 유유가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고 안제를 다시 옹립하여 나라를 부흥시켰다. 이후 안제를 살해하고 아우 사마덕문司馬德文을 공제恭帝로 옹립하였다. 이듬해 공제에게 선양을 받는 형식으로 즉위하여 국호를 송이라 하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매우 검약하였으며, 전 왕조의 호족세력의 전횡을 교훈 삼아 호족을 탄압하고 한미한 집안 출신의 인재들을 등용하고, 세금과 요역을 경감하고, 가혹한 법령을 폐지하는 등 안전과 부흥을 도모하였으나 즉위 3년 만에 사망하였다.

4 1단端: 일반적으로 단은 베나 비단을 세는 단위이다. 옛날에 베나 비단을 양쪽 끝부터 중심을 향해 말아서 합한 것을 1필匹 또는 1량兩이라 하고, 말려 있는 반쪽을 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1단은 1/2필이다. 필이나 량은 ‘짜’ 또는 ‘돌’이라는 뜻이니, 단이 두 개이기 때문이다.

5 웅장하고 … 없다: 소하가 한 고조漢高祖에게 한 말이다. 고조가 화려한 미양궁을 보고 매우 화를 내자, 소하가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실을 축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천자는 온 천하를 집으로 삼으니,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습니다. 장차 후세 사람들이 더 화려한 궁전을 짓게 하지 마십시오[天下方未定 故可因以就宮室 且夫天子以四海爲家 非壯麗無以重威 且無令後世有加也]”라고 하였다. (『資治通鑑』「漢紀」)

답은 좋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 수 문제隋文帝⁶는 수레와 사용하는 물건이 오래되어 낡으면 명을 내려 수선해서 사용하고 자신은 잔치가 아니면 고기반찬은 한 가지만 먹었으며, 후궁은 모두 옷을 빨아서 입게 하였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교화되어 개황開皇⁷, 인수仁壽⁸ 연간에 사내들은 모두 무늬 없는 검소한 명주옷이나 삼베옷을 입고 무늬가 있는 값비싼 비단옷은 입지 않았으며, 장신구와 의대衣帶는 동, 철, 뼈, 뿔로 만들고 금과 옥으로 장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옷과 음식이 풍족하고 창고가 가득해져서 왕위를 계승한 초기에는 민가가 400만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년에는 890만을 넘었다.
- 당 태종唐太宗이 시신侍臣에게 “옛날 우임금은 산을 깎아 물을 다스리는 큰 공사를 벌였는데도 백성들이 비방하고 원망하는 자가 없었던 것은 사람들과 이로움을 함께했기 때문이며, 진시황은 궁궐을 건축했을 뿐인데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배반하였던 것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신을 이롭게 했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진기한 것은 본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만약 욕심을 부려 절제하지 않는다면 위망危亡이 곧바로 닥쳐 오는 법이다. 짐이 궁전 하나를 건축하고 싶어 재용을 이미 마련했지만 진泰을 거울삼아 그만두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20년간 풍속이 소박하여 나라와 개인이 모두 풍족하였다.
- 당 문종唐文宗⁹이 즉위하여 직무를 담당하지 않은 궁녀를 모두 내보내라고 명하니, 모두

6 수 문제隋文帝: 541~604. 수의 제1대 황제 양견楊堅으로, 재위 기간은 581년에서 604년이다. 남북조 시대 북조 서위西魏와 북주北周의 장군인 수국공隴國公 양견楊堅의 아들이다. 딸이 북주 선제宣帝의 황후가 되고, 선제의 아들 정제靜帝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정권을 장악하고 선양 받아 수를 건국하였다. 이후 후량後梁, 진陳 등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였다. 의심이 많아 황태자 양용楊勇을 폐하고 둘째 아들 양광楊廣을 태자로 세웠는데, 병이 심해지자 양광에게 살해되었다.

7 개황開皇: 수 문제 때의 연호로, 581년 2월부터 600년 12월까지 사용하였다.

8 인수仁壽: 수 문제 때의 연호로, 601년 1월부터 604년 12월까지 사용하였다.

9 당 문종唐文宗: 809~840. 당 제14대 황제 이양李昂으로, 재위 기간은 827년에서 840년이다. 목종穆宗의 둘째 아들이자 경종敬宗의 이복동생으로, 경종이 갑자기 사망하자 환관 왕수징王守澄 등에 의해 옹립되었다. 즉위 초에 조정을 쇠신하고자 궁녀 3,000명을 출궁시키고 오방五坊의 매와 개를 풀어주고 불필요하거나 부패한 관리 1,200명을 파직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환관들은 문종을 아들 취급하고 가짜 외삼촌 3명을 동원하는 등으로 농락하고 전횡하였다. 이에 문종은 이훈과 정주 등과 함께 청사廳송의 석류나무에 감로가 내렸다고 꾸며 환관들을 모살하려고 하였는데, 탄로가 나서 도리어 이훈과 정주가 피살되고 문종은 연금되었다. 이 사건을 ‘감로지변甘露之變’이라 한다. 결국 문종은 환관들에게 독살되었다.

3,000여 명이었다. 오방五坊¹⁰의 매와 개를 원화元和 연간의 일¹¹에 따라 사냥에 필요한 것만을 남겨두고 모두 놓아주었다. 교방敎坊¹²에서 하는 일없이 밥을 축내는 인원 1,200여 명을 줄이고, 향촌의 말 시장¹³과 근래에 별도로 비축한 전곡과 점유했던 산간 지역의 밭을 모두 유사有司에게 귀속시켰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 때의 일이다. 영녕공주永寧公主가 수놓인 옷을 입고 물총새 깃털로 장식한 옷소매를 펼치며 궁에 들어왔다. 이 모습을 본 태조가 “왕가에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으면 궁궐 사람과 인척들이 반드시 본받아 도읍의 물총새 깃털 값이 오를 것이고 힘 없는 백성들은 이문을 쫓아 장사하려고 전전공공하여 민생을 상하게 하는 것이 점차 심해질 것이다. 이는 진실로 너로 인해서이다. 너는 부귀한 왕가에 태어나 성장하였으니, 검소하게 생활하여 타고난 복을 아껴야 한다.”라고 하니, 공주가 부끄러워하며 사죄하였다. 공주가 태조를 모시고 앉아 황후와 함께 “집안이 천자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어찌 황금으로 장식한 수레를 타고 출입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자, 태조가 웃으며 “내가 온 세상의 부를 가졌으니, 궁전을 다 금은으로 꾸미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지켜주기를 염려하고 있으니, 어찌 함부로 써 버리겠는가.”라고 하였다.

■ 금 세종金世宗 완안옹完顔雍이 궁중의 장식은 황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어느 날 재상에게 “집이 여러 해 전부터 평상시 음식을 네다섯 가지로 줄였는데, 그래도 충분히 배부르다.”라고 말하자, 재상이 “천자는 천자에 맞는 법도가 있어 다른 사람들과 다

10 오방五坊: 매와 사냥개 등을 기르면서 사냥에 관한 일을 주관하던 조방雕坊, 요방鶴坊, 골방鶴坊, 응방鷹坊, 구방狗坊 다섯 관서이다.

11 원화元和 연간의 일: 원화는 당 헌종唐憲宗의 연호로, 806년에서 820년까지 15년간 사용되었다. 헌종은 번진 세력을 제어하고 불필요한 재원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 중흥을 이루었는데, 이를 ‘원화중흥元和中興’이라 부른다.

12 교방敎坊: 궁중 음악을 담당하던 관서였는데, 이후 아악 외에도 음악, 춤, 공연 등을 교습하고 연출하던 곳이다.

13 향촌의 말 시장: 원문의 “御馬坊場”을 풀이한 말이다. 방장坊場은 관에서 설치한 향촌의 시장으로, 초시草市라고도 한다. 『송사宋史』 「식화지食貨志」에 “지금 천하의 방장은 관사에서 물건을 사들이고 관에서 판매하여 해마다 거래되는 돈이 무려 수백만이었다.[今天下坊場 官收而官賣之 歲計總錢無慮數百萬 自可足衙前雇募支酬之直]”라고 하였다. ‘어마방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어마御馬는 ‘임금이 타는 말’과 ‘수레를 끌거나 타는 데 사용하는 말’의 의미가 있으므로 ‘어마방장’은 ‘향촌에 설치된 말 시장’의 의미인 듯하다.

룹니다.”라고 아뢰었다. 세종이 “천자도 사람일 뿐인데, 어찌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금으로 장식한 수레와 의복, 사용하는 물건을 구리로 바꾸라고 명하고서 “짐의 부유함은 온 세상을 소유했으니, 어찌 이런 것을 아끼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검약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거느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사천감司天監이 원 순제元順帝¹⁴가 만든 각루刻漏¹⁵를 바쳤는데, 매우 신기하고 정교하여 가운데 설치한 목각인형 두 개가 때가 되면 징과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 주었다. 태조가 “많은 정무를 제쳐 두고 이런 것에 마음을 둔다면, 참으로 무익한 일을 해서 유익한 일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부수도록 명하였다.

■ 명 태조 때의 일이다. 비가 내리는데 두 명의 환관이 가죽신을 신고 가는 모습을 보고는 태조가 그들을 꾸짖어 “신발이 하찮은 물건이기는 하지만 어찌 이리 함부로 사용하는가.”라고 하고, 곤장을 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시신侍臣에게 “원 세조元世祖가 꽃을 수놓은 가죽신을 신은 시신을 보고 ‘네가 훌륭한 가죽으로 이런 신을 만들었으니,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사람을 수고롭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꾸짖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뜻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고, 이어서 모든 관리에게 신칙하여 조정에 들어올 때 눈비가 내리면 우의雨衣를 입게 하였다.

■ 명 선종明宣宗 때의 일이다. 공부工部가 궐내에서 필요한 얇은 모시와 비단이 9,000필이라고 아뢰고 소주와 항주 등의 직조織造¹⁶에게 명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선종이 “마

14 원 순제元順帝: 1320~1370. 원 제11대 마지막 황제 토권테무르[妥權帖睦爾]로, 재위 기간은 1333년에서 1368년이다. 명 종명宗의 맏아들이자 영종寧宗의 형이다. 영종이 병사病死한 뒤 13세에 즉위하였다. 당시 몽골 귀족들의 전횡이 심하여 과도한 조세와 부역으로 백성들이 궁핍해져 각지에서 민란이 이어졌고 결국 1351년 홍건의 난이 일어났으며, 순제와 황태자가 정권을 다투어 내전內戰이 발생하였다. 이후 주원장朱元璋이 남방 지역을 장악하고 북벌을 단행하여 순제는 북경에서 쫓겨나 응창應昌으로 달아났다가 2년 뒤 병사했다. 손재주가 좋아 다양한 기물을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15 각루刻漏: 공루宮漏라고도 한다. 공루는 원래 원 순제가 만든 자동 물시계로, 수정각루水晶刻漏라고 한다. 명명이 건국되고 나서 공루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던 태조 주원장이 당시 수도인 남경 응천부로 이것을 가져오게 하여 보니 호화롭게 장식한 인형들이 때가 되면 종이나 북 등을 울려 시각을 알렸다. 이를 본 대신들이 이런 요사스러운 물건을 두면 백성들이 전조前朝를 섬기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터이니 당장 없애야 한다고 하여 태조는 그 자리에서 부쉬 버리게 하였다고 한다. (남문헌, 『장영실과 자격루』,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300쪽 참조.)

16 직조織造: 관직명으로, 남경, 소주, 항주에 각종 직물을 직조하는 곳을 설립하고 황실에 공급을 담당하게 하였다.

땅히 백성의 노고를 생각해야 하니, 반으로 줄이라.”라고 하였다. 공부가 또 주홍창금용봉기朱紅戩金龍鳳器¹⁷가 부족하다고 아뢰고 민간에서 사들일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신종이 “한 문제漢文帝는 의복과 휘장에 무늬나 수를 놓지 않았는데 짐은 이러한 점을 훌륭하게 여긴다. 의복과 기물은 소박한 것을 써야하니 백성에게 사들일 필요 없이 창고에 있는 것을 가져다 사용하라.”라고 하였다.

- 명 신종明神宗이 재상에게 도포를 보여주며 “이것이 무슨 색이냐?”라고 하니, 장거정張居正이 푸른색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신종이 “아니, 보라색이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다.”라고 하니, 장거정이 “옛 황조皇祖께서는 아름답게 수놓은 옷을 입지 않았고 어의御衣가 많이 남아야 새 옷으로 바꾸셨습니다. 원컨대 황상께서는 황조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한 벌의 옷을 아끼면 수십 명의 백성이 따뜻할 수 있고 한 벌의 옷을 가벼이 여기면 수십 명의 백성이 추위에 떨게 됩니다.”라고 하니, 신종이 그렇다고 깊이 수긍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상 주왕商紂王이 처음 상아 젓가락을 만들자, 기자箕子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저 주왕이 상아 젓가락을 만들었으니, 반드시 질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고 장차 무소뿔이나 옥으로 잔을 만들 것이다. 옥 술잔과 상아 젓가락을 사용하면 반드시 나물국을 먹지 않고 짧은 벵을 입지 않으며 초가지붕 아래에 거처하지 않아 비단옷과 구중궁궐과 높은 누대와 넓은 방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와 걸맞은 것을 구하면 세상의 진귀한 것을 다 써도 부족할 것이다.” 또 주왕이 보물창고 녹대鹿臺를 만들게 하였는데, 옥으로 방과 문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3리, 높이는 1,000장춧이나 되어, 7년이 지나서야 완성하였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17 주홍창금용봉기朱紅戩金龍鳳器: 주홍색 칠을 하고 용과 봉황을 금으로 아로새긴 그릇이다.

- || 노 장공魯莊公이 환공桓公을 모신 사당의 기둥에 붉은 칠을 하고 서까래에 조각을 한 것은 다 예법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어손御孫이 “신은 듣건대, 검약은 공손한 덕이고 사치는 큰 악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선군께서는 공손한 덕을 지니셨는데 지금 군주께서 큰 악으로 몰고 가시니,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간언하였다.
- || 오왕吳王 부차夫差¹⁸는 사흘을 머무를 곳이라도 누대와 연못이 있으며, 하룻밤을 묵어도 왕비와 궁녀가 모시며, 하루를 행차해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따랐으며, 진기한 것을 모으고 유람하며 즐기는 것에 힘쓰며, 백성을 원수와 같이 보아서 날마다 전쟁터로 끌고 다녔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진 시황秦始皇이 아방궁을 지었는데, 그 규모가 동서로 500보步이고 남북으로 50장丈이며 위에는 1만 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에는 5장丈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다. 거기에 두루 쪽 뺨은 각도閣道¹⁹를 만들었는데 궁전 아래로부터 곧바로 남산에 이르며, 또 남산 꼭대기에 궁궐을 짓고 복도複道를 만들었는데 위수를 건너 함양까지 이어졌다. 궐중關中의 궁궐은 300여 채나 되고 관 밖의 궁궐은 400여 채나 되었다.
- || 후한 영제後漢靈帝가 서원西園에 만금당萬金堂을 짓고 사농시司農寺의 돈과 비단을 끌어다가 만금당 안에 가득 채워 두고, 어린 환관과 상시常侍의 집에 각각 수천만의 돈을 맡겨 보관하였다. 그리고 하간河間에 땅과 집을 사들여 저택과 누각을 세웠다.
- || 남조南朝 제 동훈후齊東昏侯가 방락궁芳樂宮과 옥수궁玉壽宮 등 많은 궁전을 짓고 한껏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또 황금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바닥에 붙이고, 애첩인 반비潘妃에게 그 위를 걷게 하고는 ‘걸음마다 연꽃을 피우는구나.’라고 하였다.

18 오왕吳王 부차夫差: 춘추 시대 오의 군주로, 성은 화(華), 씨는 고발(姑發)이다. 아버지 합려(闔閭)가 월왕(越王) 구천(句踐)과의 전쟁으로 사망하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였고 마침내 월과 싸워 대승을 거두고 항복을 받았다. 국위(國威)를 떨쳐 제후들의 회맹을 주도하는 패자(覇者)의 지위에 올랐으나, 항복했던 월왕 구천의 급습을 받아 나라를 잃고 자살하였다.

19 각도閣道: 복도(複道)나 잔도(殘道)를 말한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나 눈이 맞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씌워 만든 통로나 험한 벼랑 같은 곳에 다리를 놓듯이 낸 길을 말한다.

|| 북제北齊 군주 고위高緯²⁰는 세조世祖²¹의 사치하는 나쁜 버릇을 이어받아, 후궁의 치마 하나를 만드는 데 1만 필의 비단을 썼으며, 진양晉陽의 서산西山을 깎아 큰 불상을 만들고²² 하룻밤에 1만 동이의 기름을 낭비하였다. 고위는 스스로 비파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여 「무수곡無愁曲」을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백성들이 그를 ‘근심 없는 천자’라고 불렀다. 또 화림원에 ‘빈아촌貧兒村’이라는 빈민촌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남루한 옷을 입고 그 곳에서 구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일이다. 귀척들이 귀한 음식을 진상하는 것으로 서로 경쟁하여, 현종이 환관 요사예姚思藝²³를 검교진식사檢校進食使로 삼았다. 그러자 수천 개의 쟁반에 산해진미를 올렸는데, 한 쟁반에 담긴 음식 값이 보통 사람 열 집의 재산과 맞먹었다. 또 유사有司에게 안녹산安祿山을 위해 친인방親仁坊²⁴에 저택을 지으라고 하면서 비용을 아끼지 말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하였다. 저택이 완공된 이후 휘장, 방석, 그릇들을 갖추어 집안을 가득 채워 주었다.

|| 당 현종이 화청궁華清宮에 행차할 때, 진부인秦夫人, 곽부인虢夫人, 월부인越夫人이 거마를 수행하여 양국충楊國忠²⁵의 집에 모였는데 거마와 시종들이 여러 방에 가득하고 수놓은 비단과 옥장식이 화려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빼앗았다. 양씨네 남매 다섯 집안이 각

20 고위高緯: 556~578. 북제 제5대 군주 안제安帝로, 재위 기간은 565년에서 577년이다. 아버지 무성제에게 선양 받아 10세에 즉위하였다. ‘삼귀三貴’라 불리던 간신들이 전횡하여 국정이 어지러웠으며, 낭비가 심하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등 폭정이 이어졌다. 국력이 쇠퇴한 상태에서 고장공, 곡률광과 같은 명장들이 간신들의 참언으로 목숨을 잃은 뒤 북제는 급속히 몰락하였다. 진陳과 북주北周에 여러 차례 패하다가 결국 북주의 공격으로 나라는 멸망하고 고위는 피살되었다.

21 세조世祖: 537~568. 북제 제4대 군주 고담高湛으로, 재위 기간은 561년에서 565년이다. 시호는 무성제武成帝이다. 고환高歡의 아홉 번째 아들이다. 형인 효소제孝昭帝 고연高演이 고담을 황태제로 삼기로 하였으나 아들 고백년高百年을 황태자로 삼으면서 형제 사이가 나빠졌다. 효소제가 죽자 고담은 조카 고백년을 죽이고 제위에 올랐고, 화사개和士開에게 국정을 맡긴 후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 이후 8살인 태자 고위高緯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태상황제太上皇帝가 되어 권력을 누리다가 병이 들어 죽었다.

22 진양晉陽의 ... 만들고: 진양서산대불상晉陽西山大佛像을 가리킨다. 중국 산서성山西省 태원시太原市 몽산蒙山에 있는 불상으로, 높이가 대략 46m에 이른다. 서산대불, 몽산대불이라고도 한다.

23 요사예姚思藝: 당 현종 때 환관으로, 원사에袁思藝라고도 한다. 환관 고력사高力士와 함께 총애 받아 내시성 내시감이 되었다. 오만불손해서 사람들이 싫어하였다. 안녹산이 난을 일으키자 현종을 버리고 투항하였다. (『舊唐書』「宦官傳」)

24 친인방親仁坊: 당대唐代 장안에 있던 방坊으로, 친인리親仁里라고도 한다. 장안은 바둑판과 같이 남북으로 일곱 도로와 동서로 다섯 도로가 있어 ‘십이가二街’라고 불렸는데, 친인방에는 왕족, 고관대작들의 이름난 저택이 모여 있었다. 예종睿宗, 장락공주貞樂公主, 곽자의郭子儀, 안녹산, 유충원柳宗元 등의 집이 있었다.

각 한 가지 색깔 옷을 입어 구별하였는데, 다섯 집안이 모두 모이자 구름을 수놓은 비단같이 휘황찬란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목종^{穆宗}이 공부^{工部}에 명하여 궁전에 매달 등^燈과 오산등^{鰲山燈}²⁶을 만들게 하니, 상서^{尙書} 주형^{朱衡}이 “재앙과 이변이 빈번이 이어져 가뭄이 들어 병충해가 생기고 홍수가 범람하고 있으니, 화려한 등을 만드는 일은 그만두고 하늘의 변고에 응해야 합니다. 어느 겨를에 등을 보며 연회를 벌이겠습니까. 지금 등 하나 만드는 비용이 3만여 금^鎊에 이르기, 성군의 검덕^{儉德}에 누가 됩니다.”라고 진언하였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부附 척진이^{斥珍異} 진귀한 것을 멀리하다

법조 法條

- || 당 태종^{唐太宗} 때, 임읍^{林邑}²⁷에서 오색 앵무새를 바치고 신라^{新羅}에서 두 명의 미인을 바쳤다. 이에 태종이 “임읍에서 보낸 앵무새도 춥고 괴롭다고 말하거늘, 친척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여자는 어떠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앵무새와 아울러 각각 사신에게 맡겨 돌려보냈다.

25 양국^{楊國} 楊國忠: ?~756. 당 현종 때의 재상으로, 본명은 쇠^쇠인데, 현종에게 국충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양귀비의 6촌 오빠로 양귀비가 현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감찰^{감찰}어사, 시어사, 우상^{우상}右相 등의 요직을 차지하여 뇌물을 받고 관직을 주고 중양정계를 자신의 일파로 채우고 백성에게 재물을 수탈하는 등 부정과 불법을 일삼았다. 결국 안녹산이 양국충을 주살한다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키자 현종을 따라 달아나다가 살해되었다.

26 오산등^{鰲山燈}: 수천 개의 등을 산처럼 쌓아 자라 모양을 만든 것이다. 정월대보름에 자금성 오문^{오문}午門에 설치하였다. 『황명통기^{皇明通記}』에 “영락 10년 정월대보름 밤에 관리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오문 밖으로 나가 3일 동안 오산등을 구경하였다. 이때부터 연례행사가 되었다.〔永樂十年是元宵節 就送上百場官宴 聽臣民到廬山三天中午大門的出現 從時代起就公之常〕”라고 하였다.

27 임읍^{林邑}: 참파[Champa], 베트남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 인도네시아계인 참족이 후한^{後漢}의 지배에서 독립해 세운 나라이다.

|| 당 헌종唐憲宗 때의 일이다. 회서淮西가 평정되니, 광록소경光祿少卿 양원경楊元卿이 헌종에게 “회서에는 진귀한 보물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 가서 반드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자, 헌종이 “짐이 회서를 토벌한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를 없애고자 한 것이진 귀한 보물을 찾아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 후주 태조後周太祖²⁸가 후한後漢의 궁궐 안에 있던 보옥으로 만든 수십 개의 그릇을 모두 내다 놓고 뜰에서 깨뜨렸다. 그리고 “제왕이 되어 어찌 이러한 그릇을 쓰겠는가. 후한 은제後漢隱帝²⁹가 날마다 총애하는 여인들과 궁중에서 유희를 즐기고 진귀한 것을 항상 곁에 두었었다. 이러한 일이 멀리 있지 않으니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좌우의 신하들에게 지금부터 눈을 즐겁게 하는 진귀한 물건은 궁에 들이지 말라고 경계시켰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가 후촉後蜀의 임금 맹창孟昶³⁰이 바친 보석으로 장식한 요강을 부숩버리라고 명하고 “이런 하찮은 요강을 칠보로 장식했으니,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러하니 망하지 않을 것을 어찌 기대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목종明穆宗이 묘정석貓睛石³¹을 사들이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위시량魏時亮³²이 “은 천하가 가뭄이 들고 오랑캐가 한창 강성한데, 어찌 주옥珠玉을 모으는 것에 급급하여 함부

28 후주 태조後周太祖: 904~954. 오대십국 후주 제1대 군주 곽위郭威로, 재위 기간은 951년에서 954년이다.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에서 벼슬하였는데, 후한 은제가 공신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자, 격분하여 병사를 일으켜 은제를 시해하고 유운劉贇을 임금으로 삼았다. 얼마 뒤 병변을 일으켜 스스로 즉위하여 국호를 주周라고 하였다.

29 후한 은제後漢隱帝: 931~950. 오대십국 후한 제2대 군주 유승우劉承祐로, 재위 기간은 948년에서 950년이다. 은제가 공신들을 믿지 못하여 죽이고 장군들까지 죽이려 하자 곽위郭威가 병사를 일으켰다. 결국 은제는 피살되고 후한도 멸망하였다.

30 맹창孟昶: 919~965. 오대십국 후촉의 제2대 군주로, 재위 기간은 934년에서 965년이다. 농업과 양잠을 발전시키고 문인의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너의 봉록은 백성들의 고혈이다. 아래 백성들을 학대하기 쉬우나 위의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는 글을 반포하여 관리의 기강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치스러워 수도 성도成都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몰두하였다. 성도 여러 곳에 부용화를 심어 부용성芙蓉城으로 불렸다. 송이 건국되자 맹창은 북한北漢과 손을 잡고 송에 대항했으나, 결국 멸망하였다.

31 묘정석貓睛石: 갈면 고양이 눈 같은 백색을 띤 내부 반사광이 있는 보석으로, 묘안석貓眼石[Cat's eye]라고도 한다. 색상은 황록색부터 청색까지 매우 다양하다.

로 돈을 쓰십니까.”라고 아뢰니, 묘정석을 사들이는 것을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당 경종唐敬宗³³ 때, 페르시아 상인 이소사李蘇沙가 침향나무 정자亭子를 만들 목재를 바쳤다. 좌습유 이한李漢이 “이 정자가 옥을 깎아 만든 누대나 궁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고 진언하니, 경종이 분노하였다.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휘종北宋徽宗이 아름다운 꽃과 돌에 마음을 두니, 채경蔡京이 주충朱冲과 공모하여 절중浙中 지역의 진귀한 것들을 몰래 가져와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 배를 화석강花石綱³⁴이라고 불렀다. 소주蘇州에 응봉국應奉局을 설치하고 주충의 아들 주면朱勳³⁵에게 그 일을 총괄하라고 명했다. 민가에 조금이라도 감상할 만한 돌이나 나무가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건장한 군졸을 거느리고 그 집에 곧바로 들어가서 황금색 천으로 덮어 봉하여 표지해서 궁궐의 물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상하기 전에 꽃과 돌을 조금이라도 잘 돌보지 않으면 큰 불경죄로 다스렸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32 위시량魏時亮: ?~1585. 자는 공보工甫이다. 벼슬은 중서사인中書舍人, 남경 대리승南京大理丞 등을 역임하였다. 1567년 목종이 등극하였을 때 병과 급사중兵科給事中으로서 한림 검토훈林檢討 허국許國과 함께 등극 조사齎極詔使로 조선에 왔다. 저서에 『대유학수大儒學粹』 등이 있다.

33 당 경종唐敬宗: 809~826. 당 제13대 황제 이담李湛으로, 재위 기간은 824년에서 826년이다. 아버지 목종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14세에 즉위하여 정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향락을 즐겼다. 즉위한 지 2년 만에 환관 유극명劉克明에게 시해되었다.

34 화석강花石綱: 송 휘종이 진기한 꽃나무와 돌을 좋아하여 이것을 지방으로부터 도읍으로 옮기는 배를 일컫는다. ‘강綱’은 무리지어 화물을 운반하는 조직을 뜻한다.

35 주면朱勳: 1075~1126. 부친 주충朱冲이 채경蔡京과 동관童貫에게 아첨하여 관직을 얻게 되었다. 화초와 암석을 좋아하는 휘종에게 영합하기 위해 진기한 화초 기괴한 수석을 진상하느라 20년 동안 고을에 해를 입히고, 백성을 수탈하여 재산을 축적하여, 방랍方臘의 난이 일어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난이 실패로 돌아간 후 더욱 득세하여 한동안 ‘동남쪽의 작은 조정’이라고 불렸으며, 채경 등과 함께 ‘육적六賊’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흠종 때, 처형되었다.

부附 각공헌却貢獻

공물貢物을 물리치다

법조 法條

- 전한 문제 때, 천리마를 바친 자가 있었다. 문제가 “천자의 깃발을 쫓은 난기거(鸞旗車)가 앞에서 인도하고 시종하는 속거(屬車)³⁶가 뒤에서 따르며, 경사(慶事)로 인한 행차는 하루에 50리, 전쟁으로 인한 행차는 하루에 30리를 간다.³⁷ 그런데 짐이 천리마를 타고 홀로 어디를 먼저 가겠는가.”라고 말하고, 이에 그 말과 가지고 오는 데 쓰인 비용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짐은 진헌하는 물건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방에 명하여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치지 말게 하라.”라고 하였다.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가 “군(郡)과 제(諸)후국에서 진기한 음식을 바치는데, 궁중 음식을 담당하는 태관(太官)에게 다시는 받지 말게 하라.”고 명하였다. 당시 외국에서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명마를 바쳤고 또 백금의 가치를 지닌 보검을 진상했는데 칼은 기사(騎士)에게 하사하고 말은 큰북을 심는 수레를 끌게 하라고 명하였다.

36 속거(屬車): 천자가 행차할 때 따르는 수레이다. 진(秦)·한(漢) 이후 천자가 타는 대가(大駕)의 속거는 81승, 법가(法駕)의 속거는 36승으로 좌·중·우 3열로 나누어 행진하였다.

37 경사(慶事)로 ... 간다: 『한서』 「왕길전(王吉傳)」에 “옛날에 군대는 하루에 30리를 가고 길행은 50리를 간다.[古者師日行三十里 吉行五十里]”라고 하였다. 박세당(朴世堂)의 『서계집(西溪集)』 「소차(疏筈)」에는 “인군의 행차는 만백성이 주시하니 진실로 말과 수레를 천천히 몰아서 화란(和鸞)을 절도에 맞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 길행은 하루에 50리, 군대는 하루에 30리를 간 것은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황급한 기색을 보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니 하루에 힘을 다 소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人君舉動 萬姓屬目 固宜徐行緩驅 節以和鸞 古所謂吉行五十 師行三十者 非但爲觀瞻所係 不欲示輕遽之色而已 蓋亦以萬衆偕動 不可竭其力於一日之間也]”라고 하였다.

- || 후한 화제(後漢和帝) 때의 일이다. 영남 지역에서 예전부터 생 용안(龍眼)과 여지(荔枝)³⁸를 공물로 바쳤는데, 10리마다 역참을 설치하고 5리마다 망루를 세우고 썩기 전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운송하였다. 임무장(臨武長) 당강(唐羌)³⁹이 “교지(交趾)의 일곱 고을에서 생 용안 등을 바치느라 새를 놀라게 하고 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바쁩니다. 게다가 남쪽 고을은 무덥고 악취와 맹수가 도처에 가득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과일을 대궐에 올린다고 하여 수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상소하니, 화제가 “먼 나라의 진기한 음식은 본래 종묘의 제사를 위한 것인데 만약 백성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겠는가. 궁중 음식을 담당하는 태관(太官)에 명하여 다시는 바치는 것을 받지 말게 하라.”라고 하였다.
- || 당 덕종(唐德宗) 때의 일이다. 택주(澤州)에서 상서로운 구름이 그려진 그림을 진상하니, 덕종이 “짐은 시절이 평화롭고 풍년이 드는 것을 아름다운 상서로 여기며 어진 자를 등용하고 충성을 드러내는 것을 훌륭한 경사로 여긴다. 상서로운 구름, 영지버섯, 진귀한 새, 기이한 짐승, 신기한 화초, 특이한 나무가 사람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지금부터 바치지 말라.”라고 하였다. 외국에서 길들인 코끼리를 바치니, 덕종이 “코끼리가 사료를 먹으며 길러지는 것은 타고난 성질에 어긋난다.” 하고, 놓아주라고 명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북송 인종(北宋仁宗)이 주(州)와 군(郡)에 상서로운 물건을 진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지무위(知無爲軍) 여효표(茹孝標)가 영지초 350본을 진상하니, 인종이 “짐은 풍년을 상서로 여기고 어진 신하를 보배로 여기는데, 기이한 화초, 나무, 곤충, 물고기 따위를 어찌 좋아하겠는가. 여효표를 관직에서 해임하라.”라고 하였다.
- || 원 영종(元英宗)이 즉위하자, 칠보대(七寶帶)를 바친 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근신(近臣)이 진상하

38 여지(荔枝): 중국 남부에서는 과일 중의 왕이라고 한다. 『당서』에 의하면, 양귀비가 여지를 좋아하므로 교지(交趾)에서는 해마다 여지를 바치게 되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므로 그것이 썩기 전에 바치느라 교지 지방은 폐허가 막심했다고 한다.

39 당강(唐羌): 자는 백유(伯游)이다. 임무장(臨武長)을 지냈다. 화제(和帝)에게 백성들이 여지를 진상하기 위해 겪는 고초를 알려, 여지의 진상을 그만두게 하였다. 그리고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였다고 한다.

였다. 영종이 “짐이 왕위에 오른 이후, 경이 어진 인재를 천거하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 남을 위해 칠보대나 올리고 있으니, 이는 이욕利慾으로 짐을 유인하는 것이다. 돌려보내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인삼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백성을 고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부터는 반드시 진상할 필요는 없다. 만약 쓸 데가 있으면 사람을 보내어 자체적으로 구할 것이다. 그리고 태원太原에서 해마다 진상하는 포도주도 진상하지 말게 하라.”고 말하였다. 또 “어찌 자신의 입과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남을 힘들게 하겠는가. 옛날 송 태조는 자손에게 먼 지역의 진귀하고 맛난 음식을 취하지 않게 하였으니, 가르침을 남기는 요체를 매우 잘 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명 효종明孝宗 때, 태학사 유건劉健⁴⁰이 먼 남쪽 지방 복건 지역의 자곡鷓鴣, 죽계竹鷄, 흰 화미조畫眉鳥, 붉은 산호조山鵲鳥⁴¹ 등의 희귀한 새를 진헌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명을 내리라고 청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수 양제隋煬帝⁴²가 강도江都에 도착하여, 알현하는 강군江郡과 회군淮郡의 관리들에게 예물 禮物이 많은지 적은지만을 물어보고, 예물이 많으면 관행을 뛰어넘게 승진시키고 예물이 적으면 해면하였다. 이로 인해 군과 현이 경쟁적으로 백성을 핍박하여 진상품을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었다.

40 유건劉健: 1433~1526. 명 영종, 헌종의 명신으로, 문연각대학사, 태자태부, 수보 등을 역임하였다. 재정 악화의 원인이 재초齎醮와 불필요한 관원, 과도한 궁궐 증축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환관 유근 등을 주살할 것을 주청했지만 오히려 간당奸黨의 영수로 지목되어 삭탈관직 되어 평민이 되었다. 유근이 제거된 뒤 복직하였다. 장유張維는 『계곡만필谿谷漫筆』에서 ‘신하로서 수명과 귀함을 누린 재사臣壽貴之極者’로 한漢의 장창과 송의 문언박과 명의 유건을 들었다.

41 산호조山鵲鳥: 산호조珊瑚鳥, 산호조山胡鳥라고 한다. 『속통지續通志』에 “산호조는 화미조보다 크고 싸움을 좋아한다. 영남 지역에서 서식하는데 우는 소리가 교묘한 새이다.〔珊瑚鳥 大於畫眉 好闘 出嶺南 巧聲之鳥也〕”라고 하였고, 『광동신어廣東新語』에 “산호조는 파랗고 자주빛이며, 화미조는 붉고 초록빛인데, 모습과 빛깔은 조금 다르나 성질은 같다.〔山鵲靑紫 畫眉紅綠 形色小異 而情性相同〕”라고 하였다.

- || 당 덕종唐德宗이 봉천奉天으로 달아났다가 환궁한 이후, 변진의 수령들이 대부분 진상품을 올려 임금의 충애를 받으려고 하였다. 모두들 “세금 외에 마련한 것입니다.” 또는 “쓰고도 남은 것입니다.”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통상적인 세금에서 떼어 남겨두거나 백성에게 더 많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채소나 과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사사로이 챙겨서 진상한 것이다. 이겸李兼은 강서江西에 있으면서 매달 진상하고, 위고韋皋는 서천西川에 있으면서 매일 진상하였다. 그 뒤, 상주자사常州刺史 배숙裴肅은 진상품을 많이 올려 관찰사가 되었고, 선흠판관宣歙判官 엄수嚴綬는 관청의 재물을 다 써가며 진상하여 형부원외랑이 되었다.
- || 당 문종唐文宗 때, 염철사鹽鐵使 왕파王播가 회남淮南에서 조정으로 들어가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힘써 수천 개의 은그릇과 수십만의 비단을 진상하니, 왕파를 좌복야로 삼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면, 인주人主의 한 몸을 세상 모든 사람이 받들고 사해四海의 온갖 물건으로 봉양하니, 마음이 구하는 바는 어떤 것이든 부족함 없이 얻을 수 있고 마음이 원하는 바는 어떤 일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옷과 물건, 노리갯감은 아름다움을 다하고 궁실과 거마는 사치스러움을 다하여 그로 인해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국고를 탕진하면서도 살피지 않습니다. 간혹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임금이 있더라도 정치의 요체에 어둡다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히 신칙하더라도 아랫사람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옷을 빨아서 입지만 처첩은 비단 옷자락을 땅

42 수 양제隋煬帝: 569~618. 수 제2대 황제 양광楊廣으로, 재위 기간은 604년에서 618년이다. 문제文帝의 둘째 아들로, 병이 위중해진 문제와 형을 살해하고 제위에 올랐다. 만리장성,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大運河, 서원西苑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정복 사업을 벌였다. 612년,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을지문덕에게 살수에서 대패하였다. 613년 다시 고구려 원정에 나섰는데, 양현감楊玄感의 반란으로 인해 철수하면서 실패하였다. 법령을 정비하고 대운하를 완성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으나, 만년에 극심한 사치와 대규모 원정, 자연 재해 등으로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고 결국 전국에서 군웅이 봉기하였다. 강도江都를 남순南巡하다가 신하 우문화금宇文文化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수의 관료였던 이연李淵이 전국을 재통일하고 당唐을 세웠다.

에 끌고 다니며, 자신은 소박하고 좁은 궁실에 거처하지만 공신과 친척은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용마루 밑에서 살며, 자신은 음식을 절제하고 기이한 물건을 멀리하지만 총애 받는 근신들은 기름진 쌀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진주와 옥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는 모두 사랑에 빠지고 정에 이끌려 엄하게 단속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그들의 사치가 정치와 교화에 누를 끼치는 것은 임금 스스로 사치하는 것과의 거리가 겨우 한 칸 정도일 뿐입니다.

또 이른바 검약을 숭상하는 것이 혹여 천성이 아니라 명예를 드날리고자 하는 사심에서 나왔다면 잠깐밖에 할 수 없으니, 억지로 꾸며대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이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핥의 머리 깃털로 만든 갓옷을 태워버렸던 임금이 도리어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며 즐거움을 탐닉했으며,⁴³ 은그릇을 부숴버렸던 인군이 결국 수령궁(繡嶺宮)에서 호사를 부린 것⁴⁴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송 인종이 공손하고 검약했던 것처럼 40년을 매일같이 계속해야 명예를 좋아한다는 기풍을 면하고 자연히 풍속을 교화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약을 숭상하는 교화는 전대(前代)보다 뛰어납니다. 세종께서는 경회루 동쪽에 버려둔 재목으로 별실을 지으면서 주춧돌을 쓰지 않고 띠를 엮어 지붕을 이었고,⁴⁵ 세조께서는 감색 무명옷과 범을 그린 갓옷을 입고 짚신을 신었으며,⁴⁶ 문종께서는 외지(外地

43 처음에는 … 탐닉했으며: 진 무제 사마염(司馬炎)에 관한 전고이다. 핥의 머리 깃털로 만든 갓옷을 태워버렸던 일은 「상검약(尙儉約)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무제는 즉위하여 검소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물을 평정하고서는 향락에 빠져 정치를 등한시하였다. 무제는 궁녀가 너무 많아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진서(晉書)』 「호귀빈전(胡貴嬪傳)」에 “늘 양이 끄는 작은 수레를 타고서 양이 가는 대로 가서 자고 놀았다. 그러자 궁인들은 문 앞에 덧임을 꿸고 염즙(鹽汁)을 뿌려 무제의 수레를 유인하였다. [常乘羊車 恣其所之 至便寢 宮人乃取竹葉插戶 以鹽汁灑地 而引帝車]” 라고 하였다.

44 은그릇을 … 것: 당 현종에 관한 전고이다. 수령궁(繡嶺宮)은 화청궁(華淸宮)의 별칭으로, 여산(驪山)에 있었는데, 현종은 여기에 별궁을 짓고 양귀비와 함께 온천욕을 하며 즐겼다. 수령궁에 행차한 전고는 「상검약(尙儉約) 계조(戒條) 기사에 보인다. 현종은 즉위하여 수십 년간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다. 714년 현종은 풍속이 사치스럽다는 이유로 사치를 금하라는 명을 내렸다. 『자치통감』에 “금과 은으로 된 완구(玩具)를 녹여서 국가재정에 보태게 하고, 주옥과 수놓은 비단을 궁전 앞에서 태우게 하고, 후비 이하는 주옥과 수놓은 비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乘輿服御金銀器玩 宜令有司銷毀 以供軍國之用 其珠玉·錦繡焚於殿前 后妃以下 皆毋得服珠玉錦繡]” 라고 하였다. 그러나 말년에 정치를 등한시하고 도교에 빠져 막대한 국비를 소비하였으며 양귀비를 궁내로 끌어들이니 뒤 국정을 이임보(李林甫)에게 맡겨버렸다.

45 세종께서는 … 이었고: 세종 때, 창덕궁 궁인 중 병자가 많아 중궁과 함께 경복궁으로 옮겼는데, 임금이 경회루 동쪽에 버려둔 재목으로 별실 두 칸을 짓게 하면서 주춧돌도 쓰지 않고 띠로 지붕을 덮게 하였으며 장식을 모두 친히 명령하여 힘써 검소하게 하였다. (『世宗實錄』 3년 5월 7일)

46 세조께서는 … 신었으며: 『필원잡기(筆苑雜記)』에 “세조는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였다. 내가 일찍이 내전에 들어가 보니, 감색 무명과 범을 그린 갓옷을 입고 푸른 짚신을 신었으며 갓끈은 순 무명으로 하였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었으니, 비록 한 문제가 옷을 빨아서 입은 것도 이와 같이 검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世祖聖性恭儉 嘗入內殿 見御紺色木綿虎裘 穿青草鞋 笠纒用純木 携竹杖 雖漢文澣濯 亦不如是其儉素也]” 라고 하였다.

에서 진상한 흰 까치를 받지 않고,⁴⁷ 성종께서는 정전正殿에 단청을 칠하지 말라고 하였으며,⁴⁸ 선조께서는 속옷을 목면으로 만들어 입었고,⁴⁹ 인조께서는 여름옷은 삼베를 사용하였으며,⁵⁰ 효종께서는 진향進香할 때 채색 비단으로 만든 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계를 남겼고,⁵¹ 현종께서는 평소 낡은 방석을 사용하였으며,⁵² 숙종께서는 임금의 인척인 홍만회洪萬恢가 종려목棕櫚木을 바치지 않은 것을 가상히 여기고 아울러 궁에 심겨져 있던 종려목을 뽑아버렸고,⁵³ 부제학 권해權瑑의 간언을 받아들여 족제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불태우셨습니다.⁵⁴ 비록 열성조의 옹주 집안에 행한 일로 말하더라도 정신옹주貞愼翁主의 상례喪禮에 삼승포三升布⁵⁵로 만든 저고리로 염하였으며⁵⁶ 정숙옹주貞淑翁主의 집은 억새로 만든

47 문종께서는 … 않고: 문종 때, 현릉 직장이 흰 까치를 바치니, 임금이 놓아주라고 명하였다. (『文宗實錄』 1년 1월 6일)

48 성종께서는 … 하였으며: 성종 때,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 이세필李世弼 등이 “선정전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니, 그 단청은 진채眞彩를 써야 합니다.”라고 아뢰니, “예전에 예는 사치한 것보다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다만 복구하고 반드시 화려하게 할 것이 없다.”고 전교하였다. (『成宗實錄』 18년 11월 15일)

49 선조께서는 … 입었고: 『영조실록』 「영조대왕행장」에 “예전에 우리 선조께서는 이불과 바지가 다 목면포였으므로 궁중에서 아름다운 일로 전해진다.[昔我宣祖衾與袴皆木綿布 宮中傳爲美事]”라고 하였다.

50 인조께서는 여름옷은 삼베를 사용하였으며: 『인조실록』 「인조대왕행장」에 “신하들을 대하면 번번이 사치한 버릇의 해독을 말하고 궁중에서 입는 것은 오로지 소박한 것을 숭상하고 법복이 아니면 무늬 있는 비단을 입지 않고 여름철에는 베옷을 입되 또한 고운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對臣僚 每言侈習之害 宮中服用 專尚朴素 非法服則不御文錦 夏月服麻布而亦不取精細]”라고 하였다.

51 효종께서는 … 남겼고: 당시 진향할 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숭상하여 수백 그릇 제수를 올렸고 채색 비단으로 만든 채화採花를 몇 차 높이로 화병에 꽂아 장식하여 제전祭奠의 비용이 막대하였다. 그래서 채화를 엄금해야 한다는 주청이 계속되었고 이에 효종은 윤허하였다. (『孝宗實錄』 즉위년 7월 17일; 『承政院日記』 孝宗 즉위년 7월 26일)

52 현종께서는 … 사용하였으며: 『현종실록』 「현종대왕행장」에 “일찍이 병환이 나 신료들을 대내에서 접견하였는데, 깔고 앉은 자리가 몹시 해졌으나 바꾸지 않아 신료들이 물러나와 감탄하였다.[嘗有疾 引接臣僚于大內 所鋪茵席 弊甚不改 臣僚退而感歎焉]”라고 하였다.

53 궁에 … 뽑아버렸고: 숙종이 후원에 심었던 종려나무를 도로 민가의 주인에게 보내도록 명한 일이 있다. (『肅宗實錄』 18년 10월 30일)

54 부제학 … 불태우셨습니다: 부제학 권해가 임금에게 “다른 나라의 진귀한 물건은 본래 인군이 아끼고 즐길 것이 아닙니다. 외간에 은서피로 어구御裘를 만든다는 말이 있으므로, 신이 개탄했습니다. 진 무제와 당 현종은 평범한 임금이 지나지 않았지만 평의 머리 깃털로 만든 갓옷과 비단에 수를 놓아 만든 휘장을 불살랐기에, 사관이 훌륭하게 여겼었습니다. 명성 하신 전하께서 어찌 두 임금의 행위만 못하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이고 즉시 족제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 2벌을 승정원에 내려 불사르라고 명하였다. (『肅宗實錄』 18년 1월 6일)

55 삼승포三升布: 승관은 베를 짤 때, 날줄의 울을 헤아리는 단위로 80가닥이 1승이다. 삼승은 240가닥으로 짠 직물인데, 중등의 품질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국폐조國幣條에 “국폐는 3등으로 나누어 오승포를 상등으로 하고 삼승포를 중등으로 하고 저화楮貨를 하등으로 한다.[國幣分三等 五升布爲上等 三升布爲中等 楮貨爲下等]”라고 하였다.

56 정신옹주貞愼翁主의 … 염하였으며: 승지 서문중徐文重이 “신의 조모인 정신옹주께서는 바로 선조대왕의 만옹주입니다. 임종할 때, 선조대왕께서 물려주신 의대衣褫로 장례에 사용하였는데, 푸른 물을 들인 삼승의 짧은 적삼과 짧은 바지였습니다. 평소의 복장도 반드시 모두 이와 같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臣祖母貞愼翁主 卽宣祖大王之長翁主也 及其臨終 以宣祖遺衣褫 用於遂終 卽靑染三升短襦衣及三升襦袴也 想必平日所服 皆如是耳 此所當取則者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肅宗實錄』 8년 12월 11일)

발로 문을 가리게 하였으며 숙휘공주淑徽公主는 수놓은 치마를 입지 않게 하였으니,⁵⁷ 또한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먼 곳에 이르게 하는 교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신민臣民이 소리 높여 칭송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인군이 검약을 숭상하게 하는 법은 술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조치를 내릴 때면 반드시 많은 사람의 힘이 동원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하나의 건물이나 성을 쌓을 때 매번 열 집의 재산이 쓰이는 것을 아까워해야 합니다. 먼저 궁에서 새롭고 정교한 복식을 금지하는 것은 부귀한 집안의 혼례 예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먼저 궁에서 진귀하고 기름진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벼슬아치 집안의 잔치 음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낭비를 막는 방도는 일정한 법으로 제재하고 기강을 엄히 세워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한다면 위로는 나라의 재정이 넉넉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재산이 풍족해져서 절로 질박한 풍습으로 세상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옛날 당 문종이 신하들에게 적삼 소매를 들어 보이며 “이 옷은 벌써 세 번 빨아서 입은 것이다.”라고 하니, 학사 유공권이 “폐하께서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며 간언을 받아들이고 상벌을 분명히 하셔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옷을 빨아 입는 것은 말단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 제왕이 검약을 숭상하는 덕이 반드시 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인군이 유공권이 대답한 것을 행할 수 있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고 검약 또한 그 속에 있으니, 유공권의 말은 의도한 바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57 정숙옹주貞淑翁主의 … 하였으니: 좌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순조에게 절검에 대해 아뢰며 “정숙옹주에게 특별히 억새로 만든 발을 내리고 숙휘공주에게 수놓은 비단 치마를 입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성인께서 자애가 극진하여 옳은 방법으로 가르치신 지극한 뜻입니다. 어찌 오늘날 마땅히 거울삼아 본받을 바가 아니겠습니까.[貞淑翁主之特賜藪簾 淑徽公主之不許繡裳 此皆聖人慈愛備盡 教以義方之至意 豈非今日之所當監法者乎]”라고 한 데서 보인다. (『純祖實錄』 34년 2월 10일)

거편사去偏私

편벽되고 사사로운 마음을 없애다

법조 法條

- || 한漢의 제갈량諸葛亮¹이 후주後主 유선劉禪에게 「출사표出師表」를 올렸는데, 그 글에 “궁중과 부중府中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 하니, 잘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잘못된 사람을 벌주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간사한 짓을 하여 법을 범한 사람과 충성스럽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그 일을 맡은 유사有司에게 맡겨 상벌을 의논하여 결정하게 해서 폐하의 공평하고 밝은 다스림을 밝게 드러내시고, 편벽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궁중과 부중에 법을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 ||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 때의 일이다. 중서시랑 한현종韓顯宗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임금은 천하를 자신의 집으로 삼으니 사사로이 여기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고의 재물은 군사와 나라를 위한 재용이니, 공로와 덕행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하사하는 것이 걸핏하면 수천을 헤아립니다. 만약 그것을 늙은 할아버지, 할아버미와 고아, 독거노인에게 나누어준다면 구제받는 자가 실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있는 친한 신하에게만 내려주니, 이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자에게 보태주지는 않는다.’²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하니, 효문제가 매우

1 제갈량諸葛亮: 181~234. 자는 공명孔明이다. 황족이었던 유비劉備의 ‘삼고초려三顧草廬’에 응하여 유비의 책사가 되어 오룻의 손권孫權을 설득하여 동맹을 맺고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조조曹操의 대군을 물리쳤다. 유비가 촉을 건국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유비가 사후에도 그의 아들 유선을 보좌하여 남만南蠻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고 여러 차례 위궤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북벌은 번번이 실패하였고 군중軍中에서 사망하였다. 북벌을 앞두고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出師表」가 유명하다.

2 궁핍한 … 않는다: 『논어』 「옹야雍也」에 “적이 제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갖옷을 입었으니, 내가 듣기에 군자는 궁핍한 이를 도와주고 부한 이는 보태주지 않는다고 하였다.[赤之適齊也 乘肥馬衣輕裘 吾聞之也 君子周急不繼富]”라고 하였다.

좋은 의견이라고 여겼다.

|| 위魏의 고우高佑가 효문제에게 “대대로 공훈이 있는 신하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작위와 상을 내릴 수는 있더라도 지방관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왕은 재물을 남에게 사사로이 줄 수는 있지만 관직을 사사로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아뢰니, 효문제가 좋은 의견이라 여겼다.

|| 당 고조唐高祖³가 사전에 논의 없이 면전에서 훈신勳臣을 정하였다. 그러자 고조의 숙부인 회안왕淮安王 이신통李神通이 “신은 관서에서 병사를 일으켜 제일 먼저 의로운 기치에 호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현령房玄齡⁴과 두여회杜如晦⁵ 등은 고작 붓이나 가지를 놀았을 뿐인데 그들의 공을 신보다 윗자리에 두니, 신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고조가 “두건덕竇建德과 유흑달劉黑闥⁶이 난을 일으켰을 때, 숙부의 전군이 패배했으나 방현령 등이 막사 안에서 계책을 내어 앉아서 사직을 편안히 하였으니, 논공행상에서 이들이 숙부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숙부는 나라의 지친인데 짐이 어찌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사로운 정이 지나쳐 훈신과 똑같이 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3 당 고조唐高祖: 566~635, 당 제1대 황제 이연李淵으로, 재위 기간은 618년에서 626년이다. 당국공唐國公 이병李昉의 아들로, 7세에 작위를 이어받았고 수隋에서 자사, 태수 등을 역임하였다. 수 말기에 관료, 호족과 결탁하고, 아들 이건성李建成, 이세민李世民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장안을 점령했고, 양제가 살해되자 제위에 올라 당을 건국하였다. 이후 이세민의 활약으로 중원中原의 군웅 이밀李密, 두건덕, 왕세충王世充 등을 진압하였다. 626년 자식 간의 다툼으로 현무문玄武門의 변變이 일어나 이세민이 패권을 잡자, 양위하고 상황上皇이 되었다.

4 방현령房玄齡: 「법조종法祖宗」, 계조 28번 각주 참조.

5 두여회杜如晦: 585~630, 자는 극명克明이다. 이세민을 따라 정벌에 나서 참모로 활약했고, 이세민이 즉위한 뒤 우복야 등에 올랐다. 법률, 인사행정 등을 정비하여 방현령과 더불어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루었다. 방현령이 계책을 잘 짜면 그가 과단성 있게 실행하여 ‘방모두단房謀杜斷’이란 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현신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6 두건덕竇建德과 유흑달劉黑闥: 이세민에게 가장 힘든 전투는 왕세충, 두건덕과의 싸움이었다. 왕세충은 수나라 용장으로, 낙양에서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정鄭’이라고 하였다. 두건덕은 하북과 산둥 일대에서 봉기한 농민군의 우두머리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국호를 ‘하夏’라고 하였다. 이세민이 왕세충을 토벌할 때 두건덕은 군사를 이끌고 왕세충을 도왔다. 이후 왕세충과 함께 붙잡혀 참형을 당하였다. 유흑달은 두건덕의 부장이었다가 병사를 일으켜 산둥 지방을 침략했다가 이세민에게 쫓겨났다. 이세민은 즉위한 뒤 자신의 형 이건성과 아우 이원길(李元吉)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부황인 고조에게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왕세충과 두건덕을 위해 원수를 갚아 주려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 때, 진부^{秦府}의 옛사람⁷ 중에 관직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여 “우리들이 임금의 곁에서 일을 봉행한 지 몇 해인가, 지금 관직을 제수하는데, 전^前 동궁과 제부^{齊府}의 사람들보다 뒷전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태종이 “왕은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다. 마땅히 어질고 능력 있는 인재를 가려서 등용해야 하니, 어찌 새로운 사람인지, 예전 사람인지로 선후를 삼겠는가. 만약 새로운 사람이 어질고 예전 사람이 불초하다면, 어찌 새로운 사람을 버리고 예전 사람을 등용하겠는가.”라고 하였다.
- 당 태종 때, 복주자사^{濮州刺史} 방상수^{龐相壽}가 탐오죄^{貪污罪}에 연루되어 해임되었다. 그러자 방상수가 과거 진왕^{秦王}, 태종의 막부에 있을 때의 일을 말하니, 태종이 불쌍히 여겨 이전의 직임을 돌려주려고 하였다. 이에 위징^{魏徵}이 “진부^{秦府}에서 곁에서 돕던 이들이 매우 많은데, 사람마다 모두 사사로운 은혜를 믿을까 염려됩니다.”라고 간언하자 태종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방상수에게 “내가 진왕이었을 때는 한 부의 군주였지만 지금 천자의 자리에 올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었으니, 유독 옛사람에게만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 수는 없다.”라고 하고, 비단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
- 당 선종^{唐宣宗}⁸이 우위대장군^{右衛大將軍} 정광^{鄭光}⁹에게 호현^{鄆縣}과 운양장^{雲陽莊}을 하사하고 아울러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주었다. 그러자 중서문하가 “세금과 부역에 관한 법은 천하가 모두 동일하므로 폐하께서 누차 하명하시어 중앙과 지방에 일률적으로 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광에게만 면제해주시니, 이전의 뜻과는 어긋나는 듯합니다.”라고 아뢰니, 선종이 “집이 정광이 존귀한 큰 외숙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하

7 진부^{秦府}의 옛사람: 당^唐은 진왕부^{秦王府}와 제왕부^{齊王府}를 두었는데, 이세민이 즉위하기 전에 진왕이었다. 이때 이세민을 따르던 이들을 진부의 옛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당 건국 과정에서 일등공신은 이세민이었다. 그러나 적장자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에 밀려 황태자 자리는 이견성에게 돌아갔고, 이세민은 진왕에 봉해지고 아우 이원길^{李元吉}은 제왕에 봉해졌다. 이후 이세민은 현무문의 정변을 일으켜 형인 태자 이견성, 이원길 등을 죽이고 태자가 되었다.

8 당 선종^{唐宣宗}: 810~859. 당 제16대 황제 이침^{李忱}으로, 재위 기간은 847년에서 859년이다. 헌종^{憲宗}의 아들이자 목종^{穆宗}의 이복동생이며 무종^{武宗}의 숙부이다. 어리석은 척하고 출세하여 승려 생활을 하던 중, 환관 마원지^{馬元贄} 등이 그를 조종하기 쉬울 것이라 판단하고 옹립했다. 즉위한 뒤 감추고 있던 총명함을 드러내어 국가 재건에 힘썼다. 중신들의 파벌 싸움과 환관 세력을 억제하면서도 온건 정책을 채용하여 안정을 도모하였다. 티베트, 위구르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군대를 보내 하황^{河湟} 땅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만년에 도교에 심취하여 단약^{丹藥}을 남용해 중독 증상으로 사망하였다.

9 정광^{鄭光}: 당 선종의 생모인 효명황후^{孝明皇后} 정씨의 아우이다.

여 세금을 면제해주려고 하였는데, 이는 애초에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정광은 짐과 인척의 사이이므로 사람들이 거론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들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다면 어찌 이렇게 좋은 말을 해 줄 수 있겠는가. 말한 것을 모두 따르겠다.” 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가 모든 문을 활짝 열고서 “이렇게 활짝 열린 문은 나의 마음과 같으니, 조금이라도 사특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 북송 철종北宋哲宗 때, 채확蔡確¹⁰이 고 태후高太后¹¹에게 아부하려고 고 태후의 백부 고준유高遵裕¹²의 관직을 회복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고 태후가 “고준유는 서하西夏와 영무성靈武城에서 싸워 참패하여 만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또 선제先帝[신종神宗]께서 이로 인해 놀라 실의에 빠져 결국 승하하셨으니, 고준유가 죽임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공의公議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채확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물러났다.
- 북송 철종이 근신을 보내어 양도梁燾¹³에게 인재를 찾게 하였다. 이에 양도가 “다만 옳고 그름을 식별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0 채확蔡確: 1037~1093. 북송 철종 때의 재상으로, 채경, 장둔, 여해경 등과 함께 간신으로 지칭된다. 왕안석을 지지하던 인물로, 신종 때 권력을 누리다가 철종 때 중앙에서 밀려나 지방관으로 전전하였다. 그는 측천무후의 즉위를 반대하다 죽음을 당한 학처준의 충절을 애도하고 대리청정을 하던 선인태후宣仁太后를 측천무후에 비유한 시 10장을 지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유배되었다가 결국 유배지에서 죽었다. 이 일에 대해 주희는 “시諷로 죄안을 삼은 것은 현자들이 도리어 바른 것을 버린 격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11 고 태후高太后: 1032~1093. 남송 영종의 왕후이자 신종의 모후 선인성렬황후宣仁聖烈皇后 고도도高滔滔이다. 손자 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태황태후로서 섭정하였다. 사마광을 재상으로 삼고 문언박에게 나라의 중대사를 맡겼으며 왕안석의 신법을 폐지하였다. 국내외로 안정을 도모하여 ‘원우지치元祐之治’를 이루어 ‘여중요순女中堯舜’이라 불린다.

12 고준유高遵裕: 1027~1086. 북송 신종, 철종 때의 장수로, 고 태후高太后의 백부이다. 음보蔭補로 관직에 나갔는데 책략이 뛰어나 서하西夏에 출병하여 공을 세웠다. 이후 신종의 신임을 얻어 여러 주의 귀복하지 않은 강족羌族을 관리하면서 관용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9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서하와 싸웠는데, 패하여 영무성靈武城을 잃고 수많은 군사를 잃었다. 이후 다시 서하와 싸웠으나 참패하였다. 이때 신종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실권하였다가 철종이 즉위하자 복직하였다.

13 양도梁燾: 1034~1097. 북송 철종 때의 재상으로, 상서우승尙書右丞, 상서좌승尙書左丞 등을 역임하면서 백여 차례 상소를 올려 국가 중대사에 대하여 직언하여 현신으로 일컬어진다. 원우元祐 연간에 장둔, 채경 등의 모함으로 귀양 가서 죽었다.

좌우의 사람들이 좋다느니 싫다느니 하는 말에 이끌려 성상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이는 천하의 큰 행운입니다.”라고 아뢰니, 철종이 옳다고 여겼다.

|| 남송 효종南末孝宗 때, 장식張栻이 상소를 올려 효종을 권면하였다. 이 상소 가운데 “사람을 신임할 때는 자신의 편벽된 마음을 막아야 하며,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때는 세상의 이치에 공정해야 합니다.”라고 한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승傳誦되었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신뢰하는 마음은 충직하고 순후한 데서 항상 생기고, 의심하는 마음은 편벽되고 사사로운 데서 반드시 일어난다. 임금이 신하에 대해서 좋아하여 신뢰하면 참소하는 말이 들어오지 않고, 미워하여 의심하면 참소와 비방이 절로 생겨난다. 만약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처신하고 남을 대한다면 저절로 한 사람만을 신뢰하거나 편벽되게 의심하는 사사로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유학자들에게 「의신론疑信論」을 짓게 하였다.

|| 명 태조가 장사長史 계언량桂彦良¹⁴에게 “짐이 요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에 있어서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계언량이 “인군이 지극히 공평하고 사심이 없어야 좋아하고 미워함이 절로 마땅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¹⁵고 말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조는 그 말을 써서 편전에 걸어두었다.

|| 명 선종明宣宗이 양사기楊士奇¹⁶ 등에게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형權衡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니, “덕이 있는 자에게 명하고 죄지은 자를 벌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

14 계언량桂彦良: 1321~1387. 이름은 덕칭德稱이며, 언량彦良은 자이다.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여 학문에 매진하다가 명 태조에게 부름을 받아 태자정자太子正字에 임명되어 공명사상을 근본으로 태자 이하 학생들을 가르쳤다. 태조가 자주 자문을 구하고 항상 그의 의견을 훌륭히 여겨 편전에 써놓게 하였다. 태조는 “강남의 큰 유학자는 오직 경 한 사람밖에 없다.[江南大儒 惟卿一人]”라고 하였다.

15 오직 … 있다: 『논어』 「이인론仁」에 보인다.

16 양사기楊士奇: 1365~1444. 이름은 우옹이며, 사기士奇는 자이다. 혜제惠帝 건문建文 초에 천거를 받아 한림에 들어가 『태조실록太祖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청렴하고 유능하여 5대에 걸쳐 40여 년을 관직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21년을 수부首輔로 지냈다. 특히 선종을 잘 보필하여 선정을 펼쳤다. 현신이라 일컬어져 양영楊榮, 양부楊溥와 함께 삼양三楊으로 불렸다. 저서에 『동리전집東里全集』, 『문연각서목文淵閣書目』 등이 있다.

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선종이 “이 두 가지는 천하의 공기公器로, 인군이 주관할 뿐이다. 순임금이 십육상+六相¹⁷을 등용하고 사흉四凶¹⁸을 제거하니,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했기 때문이다. 제 위왕齊威王¹⁹이 즉묵卽墨을 다스리는 대부大夫에게 만가萬家를 봉하여 주고 아阿를 다스리는 대부大夫를 팽형烹刑에 처한²⁰ 이후 제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 이것은 좌우의 측근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창과 형벌은 지극히 공평하고 사심이 없어야 세상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상은『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북위 세조北魏世祖 때의 일이다. 태자 탁발황拓跋晃²¹이 감국監國²²이 되어 놀리던 땅을 경작하여 이익을 거두었다. 이에 고윤高允²³이 “나라의 태자는 만방의 본보기이거늘 사전私田을

17 십육상+六相: 요순시대에 있었던 열여섯 부족이라고도 하고 고양씨高陽氏의 여덟 아들과 고신씨高辛氏의 여덟 아들을 합한 16인의 선인善人이라고도 한다. 『춘추좌씨전』 문공文公 18년에 “요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에 천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순임금을 받들어 천자로 삼고는 십육상을 등용하고 사흉을 제거하였다.[是以堯崩而天下如一同心戴舜 以爲天子 以其舉十六相 去四兇也]”라고 하였다.

18 사흉四凶: 순임금이 몰아낸 4명의 악인惡人인 공공共工, 환두驩兜, 삼모三苗, 곤穌이다.

19 제 위왕齊威王: 전국 시대 제의 군주로, 성은 규嬌 씨는 전묘, 이름은 인제因齊 또는 영제嬰齊이다. 즉위 초에 정치를 경대부 卿大夫에게 맡겼다가 후에는 추기鄒忌를 재상, 전기田忌를 장군, 손번孫臏을 군사軍師에 기용하는 등 정사에 힘썼다. 마릉馬陵 전투에서 위魏를 격파하고 난 뒤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 즉묵卽墨을 … 처한: 제 위왕은 즉묵과 이를 다스리는 대부에 대한 평판을 듣고 실상을 살핀 후 공정하게 상벌을 시행하였다. (『史記』 「田敬仲完世家」 「명상별명賞罰」 법조 기사에 보인다.

21 탁발황拓跋晃: 428~451. 북위 태무제의 맏아들로, 태자로서 자주 원정에 나선 아버지 태무제를 대신해 감국監國으로 내정을 살폈다. 농업을 장려하고 전답을 개간하여 식량을 증산시켰고 음주와 잡희, 원적지를 벗어난 상행위를 금지하였다. 당시 태무제는 한화漢化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 귀족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다. 결국 한인 귀족들이 선비족 귀족들에게 숙청되고, 환관의 참언으로 태자궁의 관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탁발황은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권력을 둘러싼 부자 사이의 갈등으로 태무제의 명으로 감금되어 죽었다는 설도 전한다.

22 감국監國: 임금이 연고가 있어 국외로 나가거나 하여 친정하지 못할 때,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국외로 나갔을 때 서울에 남은 태자를 일컫는 말로도 쓰였다.

23 고윤高允: 390~487. 자는 백공伯恭이다. 경사와 천문, 술수에 두루 통달하였다. 문성제文成帝 때 양성후梁城侯로 봉해졌는데, 황제가 그를 매우 신망하여 영공永公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다섯 임금을 섬겼고 50여 년 동안 벼슬하였으며 강직한 신하로 이름이 났다. 저서에 『노전석老傳釋』, 『공양석公羊釋』, 『모시습유毛詩拾遺』 등이 있다. (『魏書』 「高允傳」)

경영하고 닭과 개를 길러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무릇 천하가 폐하의 천하인데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치의 작은 이문을 장사치와 다투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간언하였다.

- 당 중종^{唐中宗} 때, 소지충^{蕭至忠}²⁴이 상소하여 “충애하는 자에게는 그저 재물로 부유하게 하거나 좋은 음식을 하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기^{公器}인 관직을 사사로이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재물이 아닌 관직을 하사하는 은택을 내리니, 근친들이 끝 없이 청탁하여 관직을 팔아 자신을 이롭게 하고 법을 제멋대로 바꾸어 사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사에는 붉은 관복을 입은 고급 관리들이 가득하니, 쓸데없이 관리를 증원하는 것은 현재 정사에 무익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중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철종^{北宋哲宗}이 친정^{親政}하게 되자, 환관 유원^{劉瑗} 등을 내급사^{內給事}로 복직시켰다. 이에 소식^{蘇軾}이 “폐하께서 친히 정사를 다스린 이후로 어진 신하를 한 사람이라도 불렀다는 것은 듣지 못했는데 내시를 먼저 불렀다고 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폐하께서 편한 측근만을 사사로이 대우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간언하였는데, 철종은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남송 이종^{南宋理宗} 때, 예부직학사원 진덕수^{真德秀}가 다음과 같이 진언하였다. “상벌이 공평하면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과 죄가 같은데도 상과 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대하는 것과 같이 심어진 것은 북돋아주고 기울어진 것은 엎어버리되 무심하여 그러한 사이에 털끝만한 사사로운 뜻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24 소지충^{蕭至忠}: ?~713. 당 중종, 예종 때의 재상으로, 감찰어사, 시중, 중서령 등을 역임하였다. 소탈하고 검소한 성품으로 명망이 높았다. 이후 현종을 폐위시키려고 한 태평공주의 모의에 가담하였다가 참수되었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주자朱子가 “사私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근거하여 그 밖의 것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²⁵고 하였습니다. 필부는 자신의 한 몸을 사私로 여겨 자신의 몸 밖의 것과 소통하지 못하며 경대부는 한 가家を 사로 여겨 자신의 가家 밖의 것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군의 경우는 하늘이 덮고 있는 모든 것과 땅이 싹고 있는 모든 것이 안과 밖이 없이 인군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 인군 자신의 소유가 이와 같이 넓고도 크니,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하늘과 땅, 해와 달이 사사로움 없이 베푸는 이치²⁶를 따르는 것에 달려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온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고 만물을 똑같이 인仁으로 대하여, 안과 밖이라는 이유로 차이를 두어 달리 대하지 말며 멀고 가깝다는 이유로 후대하거나 박대하지 마십시오. 가령 자신의 본원이 밝게 빛난다면 외물에 얽매이는 괴로움이 없고 자신의 규모가 광대하다면 강건한 덕이 크게 발휘되어 문채가 이르는 곳과 조치가 미치는 곳이 자연히 넓어져 육합六合의 안과 만물의 밖을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 옛 성왕聖王의 표준을 세우고 중도에 합하는 교화는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마음에 간직한 것이 의義와 이利가 나뉘는 기미를 살피지 못하며 정사에 드러난 것이 외물과 자신의 상대적인 차이를 융화시키지 못한다면, 천리天理는 날마다 사라지고 인욕人慾은 날이 불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아하고 미워함이 편벽되어 그 마음의 사사로움을 알 수 있으며, 위엄과 노여움이 편벽되어 그 혈기의 사사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권모술수가 지나치면 정책과 명령이 바르지 못하고, 사사로운 충애가 지속되면 관리의 등용에 핵심을 잃게 됩니다. 이에 공과 사, 명분과 목적이 나뉘어 각기 다른 영역이 되어 온갖 행위와 모든 일이 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열성조께서는 매우 공평하고 지극히 바른 도리로 다스려 당대에 법도를 세우고

25 사私라는 … 일컫는다: 『회암집晦庵集』 「무신봉사戊申封事」에 보인다.

26 하늘과 … 이치: 『예기』 「공자한거孔子閑居」에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는 것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주는 것이 없고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쳐주는 것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받들어 천하를 다스리니, 이것을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 이라고 한다.[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 泰斯三者以勞天下 此之謂三無私]” 라고 하였다.

후손에게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태종조에 이백은李伯溫이 공의公議를 저버리고 죄를 범하자 지친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으셨으며,²⁷ 세종조에 홍유근洪有勤이 공법公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자 아끼는 궁인의 오라비라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²⁸ 예종조에 임금의 보모에게 청탁하여 죄를 모면하려고 한 자가 있었는데 ‘왕은 사사로움이 없다.’고 하교하고 결국 조사하여 처벌하셨으며,²⁹ 성종조에 궁 안의 사람에게 청탁하여 벼슬자리를 도모한 자가 있었는데 “관직은 공기公器이다.”라고 하교하고 마침내 엄히 물리치셨습니다.³⁰ 안탄대安坦大³¹는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³²의 외조부인데도 선조께서는 옷과 음식만을 넉넉하게 하사하고 낮은 벼슬도 내리지 않으셨으며, 구인중具仁重³³은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³⁴의 친손인데도 인조께서 봉록만을 주고 지방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7 태종조에 … 않으셨으며: 이백은 아버지가 태조의 이복형인 이원계李元桂이다. 왕족으로 원운元尹에 봉해졌고 도총제, 지돈녕부사 등을 지냈다. 그는 형 이조李朝와 함께 종친의 권세를 방지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여 여러 차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태종은 탄핵을 받아들여 해임시키기도 하고 귀양을 보내기도 하고 장형杖刑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주청을 따르지 않고 종친이라는 이유로 감형하였다. (『太宗實錄』 1년 2월 7일; 5년 5월 11일; 5년 11월 1일)

28 세종조에 … 않으셨습니다: 홍유근은 궁인 홍씨의 오라비로, 검 사복兼司僕, 사직司直의 직임을 맡았다. 총애를 받아 매우 교만하여, 세종이 거동할 때 의장용 말을 타는 불경不敬을 저질렀다. 이에 세종은 직첩을 거두고 귀양 보냈다. 그러나 세종은 홍유근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돌려보내어 상을 치르게 하고, 상제를 마치면 다시 귀양지로 내쳐야 한다는 신하들의 주청을 따르지 않았다. (『世宗實錄』 7년 11월 6일; 16년 3월 29일; 16년 3월 30일; 16년 6월 4일)

29 예종조에 … 처벌하셨으며: 예종 때, 죄를 지어 유배에 처해진 대가大賈가 있었는데, 임금의 보모保母에게 청탁하여 죄를 모면하려고 하였다. 임금이 “왕은 사사로움이 없는데, 네가 감히 보모를 방자하여 나라의 법을 굽히려 하고느냐.”라고 하고, 마침내 곤장을 치고 유배시켰다. (『睿宗實錄』 1년 7월 22일; 1년 12월 18일)

30 성종조에 … 물리치셨습니다: 성종 때, 임금의 유모 백씨白氏가 어떤 사람에게 관직을 줄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너는 무슨 물건을 받고 이런 청을 하는가. 관직은 공기公器인데, 내가 나이 어리다고 하여 궁 안의 사람을 통하여 청탁한다고 해서 관직을 준다면, 국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또다시 말한다면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 백씨가 부끄럽고 두려워하면서 물러갔다. (『成宗實錄』 1년 7월 24일)

31 안탄대安坦大: 종종의 장인이며, 창빈昌嬪 안씨安氏의 부친이다. 본관은 안산安山이다. 선조의 진외증조부陳外曾祖父로, 종7품인 적순부위를 지냈다.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딸이 빈이 된 다음부터는 몸가짐을 더욱 조심하였다. 창빈이 아들을 낳은 후에는 처신을 바로하기 위해 문밖출입을 삼갔다. 효종의 명으로 비문을 지으면서도 본관만을 밝히고 그의 선조와 가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 호와 출생일, 사망일은 전해지지 않는다.

32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1530~1559. 선조의 아버지인 이초李祹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경양景仰이다. 종종의 일곱째 아들로, 후궁 창빈 안씨의 소생이다.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이초의 셋째 아들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는데, 곧 선조이다. 1569년 왕의 생부로 대원군에 추존되었다.

33 구인중具仁重: 1597~1628.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 구사맹具思孟의 손자로, 아버지는 구사맹의 셋째 아들 구용具容이다. 공조 정랑, 개성도사를 역임하였다.

34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 1531~1604. 선조 때의 문신 구사맹具思孟으로, 자는 경시景時, 호는 팔곡八谷이다. 추존왕 원종의 장인이자 인현왕후의 부친으로, 능안부원군에 추봉되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왕자를 호종했다. 중추부판사, 지경연사 등을 지내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청렴결백하고 시문에 뛰어났다.

효종께서는 북벌에 뜻을 두어 이미 짓고 있던 공주의 집을 철거하라고 명하셨으며,³⁵ 숙종께서는 지방에 피해를 끼친다고 하여 불법을 저지른 궁노宮奴를 처벌하라고 명하셨습니다.³⁶ 열성조의 공적과 은택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오직 사사로움을 물리친 덕이 하늘과 더불어 똑같이 컸기 때문이니, 더욱이 우리 세손께서 계승할 덕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마음속에 격물치지의 공부를 더하여 일을 직면했을 때 깊이 생각하여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사인지 분명히 분별하여, 만약 공이라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고 사라면 과감하게 끊어내어야 합니다. 한두 가지 일을 번번이 이러한 도리를 따라 실수하지 않는다면 얽매이거나 어지러운 실마리가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동정과 언행이 한결같이 바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범을 세움에 있어서는 왕도王道에 치우침이 없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궁중과 부중府中을 한 몸처럼 대하니 이렇듯 공명정대하여 조금의 하자도 없을 수 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 사를 없애는 요체는 이치를 따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든 일이 이치에 맞는 것을 공이라 하고 일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이는 성인이 사욕을 이겨내는 방도를 지극히 말할 때 반드시 이치를 밝히는 것을 우선시한 까닭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35 효종께서는 … 명하셨으며: 효종은 1653년 셋째 딸 숙명공주를 위하여 인경궁 옛터에 집을 짓게 하였는데, 규모가 크고 사치스러워 비용이 많이 쓰이자 신하들의 상소가 이어졌다. 그래서 효종은 1655년 공주의 제택 중 이미 건축하였는데 제도를 넘은 것은 철거를 허락하고, 아직 짓지 않은 것은 모두 법전을 따라 건축할 것을 명하였다. (『孝宗實錄』 4년 8월 19일; 4년 8월 23일; 5년 1월 15일; 5년 2월 10일; 6년 7월 21일; 6년 7월 21일)

36 숙종께서는 … 명하셨습니다: 숙종 때, 정산洞山 땅에 궁노의 전결田結이 있어 방매放賣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궁차宮差가 이미 방매한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점탈하여, 곤궁한 백성의 생업을 잃게 하였다. 이에 숙종은 궁차를 처벌하였다. (『肅宗實錄』 21년 9월 11일)

계총찰戒聰察

자신의 총명을 경계하다

법조 法條

- || 주 문왕周文王이 여덟 명의 인재¹에게 묻고, 아우 곽중曺仲과 곽숙曺叔에게 자문하고, 핑요闕夭에게 의논하고 채공蔡公과 원공原公에게 논의하고 신갑辛甲과 윤일尹佚에게 질문하고² 주공周公, 소공召公, 필공畢公, 영공榮公³에게 거듭 물어, 많은 신들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였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당 태종唐太宗이 “짐이 천하의 뛰어난 인재를 선발해서 여러 관직에 임명하고, 천하의 모든 일은 재상을 거쳐 온당한지 심사숙고하게 한 뒤에 아뢰게 하였으니,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근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 || 당 현종唐玄宗 때, 요원지姚元之⁴가 재상이 되어 낭관郎官을 차례대로 승차陞差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현종이 정전正殿의 지붕만 쳐다보았다. 요원지가 재차 아뢰었으나 끝내 응

1 여덟 명의 인재: 팔우八虞 또는 팔사八士로, 주周 때 산택을 관리하는 여덟 관원, 또는 여덟 명의 인재라고 한다. 『논어』 「미지微子」에 “주나라에 팔사가 있는데 백달, 백갈, 중돌, 중홀, 숙야, 숙하, 계수, 계와이다. 周有八士 伯達 伯適 仲突 仲忽 叔夜 叔夏 季隨 季騶”라고 하였다.

2 채공蔡公과 … 질문하고: 채공, 원공, 신갑, 윤일은 모두 주나라 태사太史이다. (『國語』 注)

3 주공周公 … 영공榮公: 『서경』 「태서泰誓」에 주 무왕이 “나에게 잘 다스리는 10명의 신하가 있다.[予有亂臣十人]”라고 한 10명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國語』 注)

4 요원지姚元之: 650~721. 이름은 승崇이며, 원지는 그의 자이다. 문장이 뛰어나 촉천무후 때 발탁되어 예종 때 중서령에 올랐다. 현종에게 시정에 관하여 치정십사治政十事를 올렸다. 불필요한 관원을 없애고 제도를 정비했으며 개원開元 연간에 산둥 지역에 발생한 흉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여 개원의 명재상으로 불린다. 당시 불교와 도교가 숭상되던 시기였는데도 ‘승려나 도사를 부르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대하지 않았다. 조회를 마치고 고력사高力士가 “폐하께서는 지금 새로이 모든 정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니, 재상이 면전에서 아뢰면 가부를 결정해주셔야 하거늘 어찌하여 살펴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간언하니, 현종이 “짐이 요원지에게 모든 정사를 맡겼으니 큰 일만 아뢰면 되거늘, 낭관 따위의 낮은 관원의 승차 문제까지 일일이 아뢰어 짐을 번거롭게 하는가.”라고 하였다.

■ 당 현종이 이부吏部の 선발 시험이 공정하지 않을까 의심하여 이부를 나누어 십전제十銓制⁵를 만들었다. 그리고 열 사람으로 선발 시험을 담당하게 하고는 갑자기 궁궐로 불러들여 인사를 결정하니, 이부의 상서尙書와 시랑侍郎이 모두 달가워하지 않았다. 좌서자左庶子 오공吳兢⁶이 “폐하께서 유사有司를 신임하지 않으시니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옛날 진평陳平⁷과 병길丙吉⁸ 같은 한漢의 재상도 오히려 돈이나 곡식 따위의 수량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만승의 나라인 당의 임금님이 되어, 어찌 관원을 선발하는 일에 관여하십니까. 관원을 뽑거나 글씨를 쓰거나 글 짓는 일은 모두 유사에게 맡겨 십전제의 시행을 정지하소서.”라고 아뢰니, 현종이 옛 제도로 되돌렸다.

■ 당 헌종唐憲宗이 재상과 의논하며 “예로부터 제왕이 부지런히 힘썼던 정무는 무엇이며, 점잖게 앉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던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두황상杜黃裳⁹이

5 십전제十銓制: 당唐은 본래 인재선발제도로 삼전제三銓制를 시행하였는데, 호부시랑 우문옹宇文融이 건의하여 십전제를 만들어 예부상서 소정 등에게 나누어 주관하도록 했다. 『구당서舊唐書』에는 “이해 겨울 이부를 나누어 십전으로 만들어, 예부상서 소정, 형부상서 위항, 공부상서 노종원 등에게 나누어 관리 선발을 담당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신당서新唐書』에는 “그 이후에 호부시랑 우문옹이 또 십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예부상서 소정 등에게 나누어 주관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6 오공吳兢: 670~749. 당 중종唐中宗 때 우부궐, 기거랑 등을 역임하고, 현종 때 태자좌서자에 올랐다. 『정관정요』의 저자로, 사관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바르게 서술하였기 때문에, 직필直筆로 유명했던 진홍의 사관 동호董狐와 같다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정관정요』에 보이는 태종의 면모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술했다기보다는 오공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비평도 있다.

7 진평陳平: ?~기원전 178. 한 고조, 혜제, 문제 때의 재상으로, 지략이 뛰어나 유방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한을 건국하였다. 여 태후呂太后가 죽은 뒤 여씨들의 반란을 평정하고 나라를 부흥시켰다.

8 병길丙吉: ?~기원전 55. 한 선제 때의 재상으로, 선제를 보호하여 황제로 옹립하는 데에 공을 세웠으며, 선제가 즉위한 후 승상에 올랐다. 길에서 사람들이 싸워 사상자가 생겼으나 관여하지 않더니, 소가 헐떡이는 것을 보고 ‘소가 헐떡이는 것을 보고 ‘소가 왔느냐’고 물어보며, ‘백성이 서로 싸워서 죽고 상하는 것은 재상이 직접 간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봄이라 크게 더운 철이 아닌데 소가 더위 때문에 헐떡이니 이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재상의 직책이다.’라고 한 고사가 전할 정도로 선정을 베풀었다.

“현명한 군주는 인재를 구함에 힘을 쏟고 인재에게 일을 맡김에는 의심 없이 편안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우임금이 아무 일 하지 않았어도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졌던 이유입니다. 재물의 출납을 기록하거나 송사 또는 시장의 거래와 같이 자질구레한 일은 각각 담당하는 유사⁹가 있으니 군주가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옛날 진시황제는 저울과 추로 서목書目的 무게를 달아 매일 일정량을 결재하였고, 위 명제는 스스로 상서¹⁰가 할 일을 살피고, 수 문제는 식사할 시간도 없어 호위하는 군사에게 식사를 나르게 하며 정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당시 정사에 보탬이 되지 않았고 후세에 비난을 받았으니, 귀와 눈, 정신을 수고롭게 하며 애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힘쓴 바는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현종이 그 말을 옳다고 여겼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계조 戒條

■ 위 사군¹⁰衛嗣君이 자잘한 일이나 숨겨진 사실에 대해 살피는 것을 좋아하였다. 현령 중에 이불 속에 낡은 자리를 깔고 있던 자가 있었는데, 사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자리를 하사하였다. 그러자 현령은 매우 놀라 사군을 신神이라고 여겼다. 또 사람을 보내 관시¹¹關市의 관리에게 들러 돈을 주게 하고는 얼마 뒤에 관시의 관리를 불러 “나그네가 지나가다 너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대는 다시 돌려주었는가?”라고 물으니, 그 관리가 매우 두려워하였다.

■ 위 명제¹¹魏明帝가 갑자기 상서¹²尙書에 찾아갔다. 상서령 진교¹³陳矯가 꿇어앉아 명제에게 “폐하께서는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라고 물으니, 명제가 “문서를 살펴보고자 할 뿐이

9 두황상⁹杜黃裳: 738~808. 당 덕종⁹唐德宗, 순종⁹順宗 때의 재상으로, 관직이 태상경⁹太常卿에 이르렀다. 어질고 강직한 인품으로 임금을 충직하게 보좌하였다.

10 위 사군¹⁰衛嗣君: 전국 시대 위 군주이다. ‘효양후¹⁰孝襄侯’ 혹은 ‘성양후¹⁰成襄侯’라고 한다. 조부 성후¹⁰成侯는 진¹⁰秦이 강성하자 자신을 후¹⁰侯로 낮추어 부용국¹⁰附庸國을 자처하였는데, 사군은 스스로를 다시 낮춰 군공이라 불렀다. 당시 영토는 북양¹⁰滎陽을 겨우 지키는 처지였다.

11 위 명제¹¹魏明帝: 204~239. 삼국 시대 위 제2대 군주 조예¹¹曹宇로, 재위 기간은 226년에서 239년이다. 문제¹¹文帝 조비¹¹曹氏와 문소황후¹¹文昭皇后 견씨¹¹甄氏의 아들로 지는 원중¹¹元仲이다. 문제의 유언으로 조진¹¹曹眞과 조휴¹¹曹休, 사마의¹¹司馬懿, 진군¹¹陳群 등의 보좌를 받았다. 만년에는 토목공사를 크게 벌이는 등 사치에 빠졌고, 그가 죽자 양자로 삼은 제왕¹¹齊王인 방봉을 보좌한 자들의 내분으로, 사마씨¹¹司馬氏가 실권을 쥐었다.

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진교가 “이런 일은 본디 신의 직분이니, 폐하께서 찾아오실 곳이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돌아가소서.”라고 하니, 명제가 부끄러워하며 수레를 돌려 되돌아갔다.

■ 남조南朝 제 명제齊明帝는 직접 여러 가지 정무를 살폈는데, 대강大綱과 세목細目도 세밀하였다. 이에 시랑 종영鍾嶸¹⁴이 “옛날 명철한 임금은 재주를 헤아려 정무를 나누어주고 능력을 따져서 직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공三公은 앉아서 정사의 도道를 논하고 구경九卿은 실행하여 정무를 완성하니, 천자는 몸을 공손히 하여 남면南面할 뿐입니다.”라고 상소하였다. 그러자 명제가 달갑게 여기지 않고 태중대부 고고顧騶에게 “종영은 어떤 자인데 짐의 중요한 정무를 중단시키려 하는가?”라고 하니, 고고가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은 각기 담당하는 유사有司가 있는데 지금 임금께서 총괄하여 직접 처리하고 계시니, 이는 요리사를 대신하여 요리하고¹⁵ 뛰어난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¹⁶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명제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

■ 북제北齊 군주 고연高演이 즉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의 명철함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좁스러움을 기롱하였다. 어느 날 고연이 사인舍人 배택裴澤에게 지방의 인사들은 자신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물어보니, 배택이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제왕의 도량이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고적현안庫狄顯安¹⁷에

12 상서尙書: 전국 시대 때 처음 설치된 관사로, 임금의 곁에서 각종 문서를 살피는 일을 담당하였다. 위진남북조 이후 점차 직무가 중요시되면서 위상이 높아져 사실상 재상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3 진교陳矯: 삼국 시대 위 문제魏文帝 때의 명신으로, 조조의 부름을 받아 관직에 등용되었으며, 문제 때 상서령에 오르고 명제 때 사도司徒에 올랐다.

14 종영鍾嶸: 양梁에서 기실記實 벼슬을 하여 중기실鍾記實이라고도 부른다. 관료들이 공공연히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 등의 폐단에 대해 상소를 올려 폭로하였다. 한漢으로부터 남조 제齊까지의 오언시를 대상으로 상, 중, 하 3품으로 분류하여 논평한 시비평서 『시품詩品』을 저술하였다. 이는 최초의 전문적인 시론으로서 한시비평사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15 요리사를 대신하여 요리하고: 『장자』 「소요유逍遙游」에, “요리사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사장이 요리사의 일을 대신할 순 없다.[庖人雖不治庖 尸祝不越樽俎而代之矣]”라고 하였다. 이는 요임금이 허유許由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찾아갔을 때, 허유가 거절하며 한 말이다.

16 뛰어난 … 것: 『노자』에, “뛰어난 목수를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다면,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드물다.[夫代大匠斲者 希有不傷其手矣]”라고 하였다.

17 고적현안庫狄顯安: 북제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는 북제 고조의 누이이다. 『자치통감』의 주자에, “고적현안의 아버지 고적간이 발해왕 고환의 누이 낙릉장공주樂陵長公主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하였다.

게 물으니, 고적현안이 “폐하께서는 지나치게 꼼꼼해서 마치 아전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수 문제隋文帝 때의 일이다. 시어사 유욱柳彧이 문제가 정무를 처리하는 데 힘쓰는 것을 살펴보니, 대부분 자질구레한 일이었다. 이에 상소하여 “제가 듣건대, 예로부터 어진 임금 가운데 요임금과 순임금보다 뛰어난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세세한 일을 살피지 않았으니, 이를 ‘흠명歛命’¹⁸이라고 합니다. 순임금은 다섯 신하¹⁹에게 정무를 맡기고 요임금은 네 사람²⁰에게 자문하여,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고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졌습니다. 요즘 폐하를 보니, 성 쌓는 일 등의 소소한 일과 출납 같은 경미한 일까지도 번번이 문서를 살펴 몸을 수고롭게 하십니다. 바라건대 신의 지극한 진언을 살피시어 조금이라도 잡다한 일을 줄이소서.”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의견을 따르지 못하였다.

|| 당 덕종唐德宗이 육지陸贄²¹에게 “근래에 산서山西에서 온 관원이 있어 그 자의 동정을 살펴보았는데 염탐하는 것 같다. 경이 생각하기에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으니, 육지가 “한 사람의 시각과 청각으로 우주의 모든 변화를 다 알려고 하고, 한 사람의 방비와 염려로 수많은 간악한 자들을 다 이기려고 한다면, 지혜를 쓰는 것이 더욱 정밀하더라도 도리를 잃음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다른 사람도 따르려고 하지만 속임수로 동물을 부리면 동물도 끝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르면 원수도 심복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골육지친도 원수가 됩니다.”라고 아뢰었다.

18 흠명歛命: 공경하고 밝다는 뜻으로, 요임금의 덕을 형용한 말이다. ‘흠歛’은 위위威儀가 잘 갖추어진 것이고 ‘명명’은 사방을 밝게 살피는 것이다.

19 다섯 신하: 『논어』 「태백泰伯」에 “순임금이 어진 신하 다섯 사람을 두어, 천하가 다스려졌다.[舜有臣五人而天下治]”라고 하였는데, 공안국孔安國은 “다섯 사람은 우, 직, 설, 고요, 백익이다.[五人 禹稷契皋陶伯益]”라고 하였다.

20 네 사람: 사방의 제후를 나누어 맡았던 요임금의 신하 희중羲仲, 희숙羲叔, 화중和仲, 화숙和叔을 이른다.

21 육지陸贄: 754~805. 자는 경여敬輿, 시호는 선공宣公이다. 덕종이 즉위하자마자 그를 한림학사翰林學士로서 불러 측근에 두었다. 번진藩鎮의 반란이 연이어 일어나 봉천奉天으로 파천하게 되면서 덕종을 보필하였고, 내상內相이라고 불리며 국가의 중대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여러 간신의 참소로 여러 차례 폄직을 당하였지만, 한유韓愈, 이강李絳 등의 인재를 선 발하며 용호빙龍虎榜이라는 칭호를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배연령裴延齡의 모함으로 충주별가忠州別駕로 폄직되었다.

|| 후주 세종後周世宗²²은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다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관료들은 위에서 다 처리한 일을 받을 뿐이었다. 이에 하남 추관河南推官 고석高錫이 “넓디넓은 세상의 온갖 정무를 비록 요임금과 순임금이라도 혼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재를 가려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폐하가 총명하고 지혜로워 모든 관리의 임무를 충분히 겸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모두들 폐하께서 편협하고 의심하고 시기해서 신하들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총찰總察은 명철明哲의 폐단입니다. 명철과 총찰은 가까운 듯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멉니다. 명철은 모든 이치를 두루 알고 온갖 일을 포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분별하여 의혹이 없고 어떤 상황에 부딪치면 꿰뚫어 막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온 세상을 다스림에는 감추어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하고 권강權綱을 총괄함에는 한발 물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이 하여 천하의 이목을 모아 그 밝음을 더욱 밝히니, 이것이 옛날에 이른바 ‘밝음을 밝히는 임금’²³입니다. 총찰은 기지를 발휘하는 식견과 총괄하여 다스리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에 어둡고 자잘한 절목에 골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지나치게 밝혀서 편협하게 다스리는 폐해가 생기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심하여 자신의 의견만을 쓰는 습관이 자라납니다. 만승의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필부의 능력을 다투고 혼자서 모든 관리의 일을 도맡고서 오만하게 스스로를 현명하다 여기고 못 신하들

22 후주 세종後周世宗: 921~959. 오대십국 후주 제2대 군주 시영柴榮으로, 재위 기간은 954년에서 959년이다. 아버지는 시수례柴守禮인데, 고모부 곽위郭威의 양자가 되었다. 곽위가 951년 후주를 건국하고 사망하자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세종은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목표 아래 군대를 정비하고 직접 진두 지휘하여 서쪽으로 후촉後蜀을 패퇴시키고 남쪽으로 남당南唐을 꺾고 북쪽으로 요遼를 격파하여 거란에게 잃었던 북방의 많은 땅을 되찾았다. 그러나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 채 병으로 사망하였다.

23 밝음을 밝히는 임금: 『서경』 「태갑太甲」에 보인다. 이윤이 태갑에게 “덕이 있으면 다스려지고 덕이 없으면 어지러워집니다. 옛날에 잘 다스린 자와 도를 똑같이 행하면 흥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옛날에 어지러웠던 자와 일을 똑같이 행하면 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할 바를 신중히 하는 것은 오직 밝음을 밝히는 임금만이 할 수 있습니다.【德惟治 否德亂 與治同道 罔不興 與亂同事 罔不亡 終始慎厥與 惟明明后】” 라고 하였다.

을 경시하니, 임금은 날로 교만해져 충언은 이르지 않고 못사람들의 마음은 날로 해이해져 모든 일들이 절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현명함을 자랑하던 자는 도리어 현명함을 손상시켜 결국 나랏일을 어지럽히게 되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성조의 덕은 광대하고 고명하여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종조에 대간臺諫이 시무時務를 아뢰자 “어찌 대체大體를 살피지 않고 세세한 일에 얽매이는가.”²⁴라고 하교하셨으며, 전관銓官이 전형銓衡을 친히 살필 것을 청하자 “지금 경들에게 위임했는데 어찌 반부班簿²⁵를 직접 살피겠는가.”²⁶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세종조에 관官을 설치하여 직무를 분담시키고 임금이 죄수를 직접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허조許稠²⁷의 의견을 받아들이셨으며,²⁸ “한 선제漢宣帝가 명분과 실상을 종합하여 세세하게 밝힌 것은 재앙이 시작되는 폐단이므로 경계로 삼아야 한다.”²⁹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종께서는 “현명한 임금은 일을 도모할 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절로 하늘의 뜻과 합치되며 어리석은 군주는 자신의 총명만을 믿어서 여러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지 않는다.”³⁰고 하교하

24 태종조에 … 얽매이는가: 태종이 대간을 불러 “근래에 언관이 대체大體는 고려하지 않고 작은 일에만 힘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소원하고 동료가 서로 시기하여 심지어 서로 용납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대들은 맡은 직책을 성실히 이행해서 대체를 세울 수 있도록 힘쓰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과실을 말하지 않거나 관료들의 시비를 논핵하지 않고자 해서가 아니다. 단지 간언은 반드시 정당하게 하고 논핵은 공정하게 할 것을 기억할 뿐이다.”라고 유시한 데서 보인다. (『國朝寶鑑』太宗 2年)

25 반부班簿: 관직 제수의 내력을 적은 관부官簿이다.

26 전관銓官이 … 살피겠는가: 태종 때, 성석린成石璘과 이직李稷이 또 “원컨대, 앞으로는 전주銓注할 즈음에 신들을 어전에 불러 모아 놓고 9품 이상부터 모두 친히 헌부賢咨를 물어서 제수하신다면 외람되게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그 사이에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아뢰니, 임금이 “지금 경들에게 전형銓衡을 맡겼는데, 어찌 반드시 경들과 함께 친히 반부班簿를 잡아야 하겠는가.”라고 한 데서 보인다. (『國朝寶鑑』太宗 12年)

27 허조許稠: 1369~1439. 본관은 하양河陽,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이다. 권근權近의 문인이다. 유교적 윤리관을 보급해야 하는 조선 초기에 태종과 세종을 도와 예약제도를 정비하는 데 공헌하였다.

28 세종조에 … 받아들이셨으며: 세종 때, 허조가 “관을 두어 직무를 분담시켜 각기 맡은 일이 있는데, 만약 임금이 친히 죄수를 심의하고 결단하여 대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법사法司를 두어 무엇 하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世宗實錄』1년 1월 11일)

29 한 선제漢宣帝가 … 한다: 세종이 “한 선제를 세상 사람들이 명분과 실상을 종합한 임금이라고 칭한다. 안으로는 관리들은 맡은 바 직무에 걸맞고 백성들은 생업에 안주하였으며, 밖으로는 흉노가 정성을 다하여 번국藩國이라고 칭하면서 하급 관리로 임명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의논하는 자들은 그를 두고 화禍를 기초한 임금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國朝寶鑑』世宗 7年)

30 문종께서는 … 않는다: 문종이 친히 교서를 지어 “옛날 현명한 군주는 천하의 이목桴目으로 자기의 총명으로 삼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계획은 여러 사람을 따르게 되고 스스로 천심天心에 합하게 되며, 어리석은 군주는 말을 가지고 꺼리게 되어 자기 몸에는 죽음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나라에는 망함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서 스스로 자신의 총명을 믿고 여러 사람에게 묻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재앙이 소홀히 하는 곳에서 발생하여 이미 뉘우쳐도 미칠 수가 없게 되니, 그렇다면 직언을 구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의정부에 내렸다. (『文宗實錄』즉위년 9월 28일)

셨습니다. 인조께서는 세자에게 “인군이 자신의 지략만을 쓰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시기하는 마음까지 있다면 나머지 일은 볼 만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종께서는 명명에 대하여 언급하며 “송정황제崇禎皇帝가 외방外方의 일을 은밀히 염탐한 것은 실로 정도正道가 아니다.”³¹라고 하셨습니다. 현종께서는 항상 궁중에서 명성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셨으며,³² 숙종께서는 선정先正 송시열이 총명을 경계하라고 한 진언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³³ 열성조께서 전수하신 것은 작은 지혜를 경계하고 지나친 살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단정히 팔짱을 끼고서 묵묵히 다스려 정치와 교화를 아름답게 하는 방도입니다.

무릇 총찰을 경계하라는 것은 자신의 덕과 지혜를 숨기고 재주와 기지를 감추어, 시비와 선악의 사이에서 호도하거나 모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중의 차이를 살피고 크고 작은 형세를 헤아려서 무거운 것을 잡고 가벼운 것은 내버려두며 큰 것은 취하고 작은 것은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통과 권병權柄은 윗사람에게 두고 자세히 살피고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맡기면, 임금은 명하고 신하는 실행하여 기강이 확립되고 조목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관大官이 도모하여 힘써 밝히는 것이 바로 임금의 밝음이며 관원들이 이치에 따라 자세히 살피는 것이 바로 임금의 살핌인데, 어찌 반드시 하찮은 문서와 자질구레한 일에 연연하겠습니까. 아! 면류冕旒가 눈을 가리는 것은 임금의 밝음을 간직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게 한 것이고 주광黠纒이 귀를 막는 것은 임금의 총명을 길러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한 것입니다. 옛 성인이 법도를 만든 뜻은 진실로 까닭이 있습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31 효종께서는 … 아니다: 『효종실록』 「효종대왕행장」에 “왕이 탄식하면서 ‘송정황제가 망한 것은 실로 환관에 연유한 것이다. 그들을 주군州郡으로 나누어 파견한 것은 지방관의 선악을 살피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그들이 사사로이 헌납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서이다. 외방의 일을 은밀히 염탐하는 것이 실은 정도正道가 아닌 것인데 더구나 잡류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32 현종께서는 … 꺼리셨으며: 『현종실록』 「현종대왕행장」에 “왕의 성품이 독실함을 좋아하고 명성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궁중에서 행한 일이 훌륭하여 누군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마음으로 매우 싫어하시니 시종하는 신하가 그 뜻을 알고 감히 외부에 퍼뜨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33 숙종께서는 … 받아들였습니다: 숙종 때, 송시열이 “삼가 듣건대, 성상께서 총명하심이 전고에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외방에 전파되어 칭송됩니다. 총명이란 성인의 첫 번째 자질인데, 다만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겨서 아무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진언하니, 숙종이 “『서경』 「채중지명蔡仲之命」에 ‘총명한 체하여 옛 전장典章을 어지럽히지 말라.[無作聰明亂舊章]’ 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두렵게 생각하여야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肅宗實錄』 6년 10월 12일)

신사교 信辭教

말과 전교를 미답게 하다

법조 法條

- 주 성왕周成王¹이 아우 숙우叔虞²와 오동나무 잎을 깎아 규卦를 만들어 장난삼아 “내가 이 규로 너를 봉하노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일史佚³이 봉할 날을 택할 것을 청하니, 성왕이 “내가 아우와 장난했을 뿐이다.”라고 하자, 사일이 “천자에게 장난삼아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가 말하면 사관이 기록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결국 숙우를 당唐에 봉하였다.
- 주 성왕이 사일史佚에게 “어떤 덕을 베풀어야 백성이 윗사람을 가까이하는가?”라고 물으니, “윗사람이 진심으로 대하면 백성은 친애하고 윗사람의 명령이 미더우면 백성은 식언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진 문공晉文公이 주周的 원原⁴을 포위할 때, 3일 만에 함락시키겠다고 장담하고 3일 분의 군량만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원이 항복하지 않자 후퇴하라고 명하였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첩자가 나와서 “원은 항복할 것입니다.”라고 보고하니, 군리軍吏가 “항복

1 주 성왕周成王: 주 제2대 왕 희승姬誦으로, 문왕의 손자이자 무왕의 아들이다. 주공의 섭정 7년과 친정 30년을 합쳐 총 37년 동안 재위했다. 숙부인 주공과 소공의 보좌를 받아 훌륭한 정치를 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2 숙우叔虞: 주 무왕의 아들이자 성왕의 아우 희우姬虞로, 성왕 때 당唐에 봉해져 당 숙우唐叔虞로 불린다.

3 사일史佚: ‘윤일尹逸’, ‘사일史逸’, ‘책일册逸’ 이라고도 불린다. 주 성왕周成王 때 사관史官으로, 성왕을 보좌하여 어진 정치를 펼쳐 주공, 태공, 소공과 함께 사성四聖이라 일컬어진다.

4 원原: 진 문공이 주 양왕周襄王 복위를 돕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땅이다.

할 때를 기다리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문공이 “믿음은 나라의 보배며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원을 빼앗아도 믿음을 잃으면 무엇으로 백성을 지키겠는가.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고서, 30리를 후퇴하자 원이 항복하였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위 문후魏文侯가 우인虞人⁵과 만나 사냥하기로 약속했는데 마침 비가 내렸다. 그럼에도 문후가 멩에를 메우고 들판으로 나갈 준비를 하자 신하들이 만류하였다. 이에 문후가 “우인과 약속했는데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찌 만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 || 당唐의 위징魏徵이 태종太宗에게 “폐하께서 항상 ‘정성과 신의로써 천하를 다스려 신하와 백성이 모두 거짓이 없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즉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신의를 잃은 것이 몇 번이나 됩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놀라며 “짐이 어찌 신의를 잃었는가?”라고 물으니, “폐하께서 ‘오래도록 연체된 관청의 물자를 다 면제한다.’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유사有司들이 진부秦府의 국사國司⁶에 연체된 것은 관청의 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 여전히 징수를 독촉합니다. 또 ‘관중關中의 2년 치 조세를 면제해 주고 관외關外는 1년 치를 면제해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부역을 마쳤거나 세금을 보낸 자는 내년을 면제의 시작점으로 하라.’라고 칙서를 내리고 홀어서 돌려보낸 뒤에 지금 다시 징수하니, 이것이 어찌 정성과 신의로써 다스린다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태종이 기뻐하며 “호령이 미덥지 않으면 백성이 따를 바를 모르니, 천하를 무엇으로 다스리겠는가. 짐의 잘못이 크다.”라고 하였다.
- || 당 태종唐太宗이 “짐이 매번 조회에 나아가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할 때, 세 번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이는 백성에게 해가 될까 염려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5 우인虞人: 산림이나 사냥을 맡아 관리하는 벼슬아치이다.

6 진부秦府의 국사國司에서 연체된 것: 당나라 제도에 황제의 형제나 아들을 왕으로 삼아 국國의 친왕親王으로 봉하였으며, 친왕國親王國에는 국사國司를 두었다. 여기에서는 태종이 즉위하기 전에 진왕秦王으로 있을 때 연체된 물품을 말한 것이다.

- || 후주 세종^{後周世宗} 때, 두엄^{竇儼}⁷이 상소하여 “누차 조서를 내려 백성들에게 많이 파종하고 넓게 경작하여도 예전에 내던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종한 뒤에 유사^{有司}들이 전답을 점검하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전답을 더 개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정치의 급선무는 신의를 돈독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신의가 진실로 드러나면 전답이 넓어지지 않을 수 없고 전답이 넓어지면 수확하는 곡식도 많아지니, 곡식이 많아지면 백성이 저장해 둔 곡식이 관부^{官府}에 저장해 둔 곡식과 같아집니다.”라고 하니, 세종이 그의 의견을 좋게 여겼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인종^{仁宗}이 태자 시절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살피던 때에 어사^{御史} 서중성^{舒仲成}이 어떤 일로 인해 인종의 뜻을 거역하였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잡아다 죄를 다스리라고 명하니, 양사기^{楊士奇}가 상소하여 “예전에 제가 지은 죄를 폐하께서 즉위하신 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중성에 대해서는 지난 죄를 따져 다스리신다면 백성들이 조서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인종이 옳은 말이라고 기뻐하면서 즉시 죄를 다스리지 말라고 명하였다.
- || 명 선종^{宣宗}이 시신^{侍臣}에게 “짐이 조령^{詔命}을 내릴 때마다 반드시 행할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한 뒤에 조령을 내린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백성에게 신의를 잃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진 경공^{景公}⁸이 한천^{韓穿}을 노나라에 보내 문양^{汶陽} 땅을 제나라에 돌려주라고 말하게 하였다. 노나라 계문자^{季文子}⁹가 “귀국^{貴國}은 문양 땅이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전해져 온

7 두엄^{竇儼}: 918~960.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의 관리로, 누차 사관^{史官}에 임명되었고, 북송 때 예부시랑에 임명되었다. 글재주가 뛰어나고 박학다식하여 당시의 사사^{祀事}, 악장, 종묘, 시호 등 제도를 정하였다.

8 진 경공^{景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누^孺. 據이다. 권신을 제압하고 약화했던 군권을 강화하였다. 수도를 강^絳에서 신^新田 땅으로 천도하고, 지명을 '신강^{新絳}'으로 고쳤다.

땅이라 하여 제나라에 군대를 출동시켜 우리나라에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령을 달리하여 ‘제나라에 그 땅을 돌려주라.’라고 하십니다. 『시경』에 ‘남자가 신념이 없어서 그 마음을 두세 번 바꾸는구나.’¹⁰라고 하였는데, 지금 귀국이 7년 중에 한번 주었다가 도로 빼앗으니, 마음을 두세 번 바꾸는 것과 무엇이 더 심합니까.”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위 문제魏文帝가 정남장군 하후상夏侯尚¹¹에게 조서를 내려 “경은 나의 심복과 같은 중신重臣이다. 특별히 임무를 맡길 만하니, 위엄과 복을 행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는데, 하후상이 이 조서를 낭장 장제蔣濟¹²에게 보여주었다. 장제가 부름을 받고 궁궐에 도착하자 문제文帝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장제는 “달리 좋은 것은 없었고 나라를 망치는 말만 보았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문제가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여 그 까닭을 물으니, 장제가 “군주만이 위엄과 복을 행할 수 있다¹³는 것은 『서경』의 밝은 경계이며, 천자는 장난삼아 말하지 않는다¹⁴는 것

9 계문자季文子: 춘추 시대 노의 대부로, 계손행보季孫行父이다. 문공, 선공, 성공, 양공 네 임금을 섬기면서 매우 청렴하고 충직하였다. 재능과 지혜를 겸비하고도 매사에 세 번 생각한 뒤에 실행하여, ‘삼사이행三思而行’이라는 말의 주인공이다.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공자가 계문자에 대하여 “두 번만 생각하는 것이 좋다.[再斯可矣]”고 한 말이 보이는데, 임금의 과오에 대한 그의 우유부단한 대처를 비판한 것이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의심이 생겨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 두 번만 생각해도 그에게는 충분하다는 말이다.

10 남자가 … 바꾸는구나: 『시경』 「맹뎡」에 “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자의 행실이 한결같지 않다네. 남자가 신념이 없어서 그 마음을 이랬다저랬다 한다네.[女也不爽 士貳其行 士也罔極 二三其德]”라고 하였다.

11 하후상夏侯尚: 174~226. 삼국시대 위 문제 때의 무장으로, 하후연夏侯淵의 조카이다. 조비曹丕와 포의지교布衣之交를 맺었다. 그는 계략과 지략에 출중하여 뛰어난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품이 좋지 않아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조조 집안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나 멀리하고 애첩에게 빠져 지내자 조비가 그의 애첩을 죽였다. 하후상은 이 일로 충격을 받아 앓다가 사망하였다.

12 장제蔣濟: ?~249, 삼국시대 위 문제 때의 무장으로, 조조曹操가 단양 태수丹陽太守에 임명하였으며, 문제가 즉위하자 동중낭장東中郎將으로 병사를 통솔하였고 상서尙書에 올랐다. 사마의司馬懿를 위해 조상曹爽이 모반한다는 표문을 올림으로써 사마의의 쿠데타가 성공하는 데 기여했다. 진흙이 침공했을 때, 항전에 실패하자 도망가려는 권유에 “머지않아 나라가 망할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국난을 당하여 어찌 편안히 있겠느냐.”라고 하고 싸우다 전사하였다.

13 군주만이 위엄과 복을 행할 수 있다: 『서경』 「홍범洪範」에 “오직 군주만이 복을 짓고 군주만이 위엄을 짓고 군주만이 진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신하는 위엄을 짓거나 복을 짓거나 진귀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신하가 위엄을 짓거나 복을 짓거나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 너의 집을 해치고 너의 나라를 흉하게 할 것이다.[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 臣無有作福 作威 玉食 臣之有作福作威 玉食 害于而家 凶于而國]”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계가 있는데도 문제가 하후상에게 위엄을 짓거나 복을 지으라고 조서를 내렸으니, 이것이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이다.

14 천자는 장난삼아 말하지 않는다: 주 성왕이 아우 숙우와 오동나무 잎을 꺾아 규초를 만들어 장난삼아 “내가 이 규로 너를 봉하노라.”라고 하였다. 이에 사일이 봉할 날을 택할 것을 청하니, 성왕이 “내가 아우와 장난했을 뿐이다.”라고 하자, 사일이 “천자에게 장난삼아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사관이 기록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숙우를 당唐에 봉하였다. 『신사교信辭敎』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은 옛사람의 경계이니, 폐하께서는 살피소서.”라고 하였다.

■ 당 예종^{唐睿宗} 때, 유탉^{柳澤}이 상소하여 “사봉관^{斜封官}¹⁵은 모두 궁중의 여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한 자들인데, 폐하께서 이들을 모두 축출하시니 세상에 명절하다고 칭송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용^{敍用}하시니,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해서 서로 공격합니다. 어찌 폐하께서는 정령^{政令}을 일관되게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다.

■ 당 소종^{昭宗}이 한악^{韓偓}¹⁶을 불러서 “칙사 중에 악행을 저지른 자가 무수히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한악이 “제가 폐하의 조서를 보니, ‘유계술^{劉季述}¹⁷ 등 네 집안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임금에게 소중한 것은 신의보다 큰 것이 없으니, 이미 이러한 조서를 내렸다면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사람을 죽인다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세종^{明世宗} 때, 전 금의백호^{錦衣百戶} 이전^{李全}, 왕방기^{王邦奇} 등이 상소하여 본래 관직을 회복시켜 줄 것을 청하니, 세종이 허락하였다. 급사중^{給事中} 정자벽^{鄭自璧}¹⁸이 “이전 등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처음에, 분명히 뜻을 밝히셔서 ‘함부로 무함한 자는 멀리 보

15 사봉관^{斜封官}: 왕비나 공주 등이 사사로이 제수한 관직을 뜻한다. 당 중종 때 위후^{韋后} 및 태평공주와 안락공주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인품과 능력을 살피지 않고 뇌물을 받거나 해서 사사로이 관직을 제수하였다. 특히 안락공주는 뇌물을 받으면 목필로 쓴 조칙을 비스듬히 봉해서 관직을 제수했는데, 이로 인해 사봉관이라고 하였다. 안락공주에게 뇌물을 주고 벼슬한 사람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16 한악^{韓偓}: 840~923. 호는 옥산초인^{玉山樵人}이다. 당 소종이 그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 여러 차례 재상에 임명하였지만 사양하였다. 나라에 충절을 다했으나 실권을 잡고 있던 주전충의 미움을 받아 좌천되었다.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은둔하였다. 시를 잘 지었는데, 규방여인의 고운 자태와 애정을 읊은 작품이 많아 그의 시풍은 향렴체^{香艷體}로 불렸다.

17 유계술^{劉季述}: ?~901. 당 희종^{僖宗}, 소종 때의 환관이다. 소종이 술에 취해 환관과 공녀 몇 명을 칼로 쳐 죽이자, 환관 왕중선 등과 함께 ‘훈군을 폐위하고 명군을 세운다.’는 기치 아래 난을 일으켜 소종을 유폐하고 태자를 왕으로 세웠다. 다음 해 환관들의 내분을 틈타 최윤 등이 소종을 복위시키고 난을 일으킨 유계술 등 환관들을 모두 주살하였다.

18 정자벽^{鄭自璧}: 무종^{武宗} 때, 환관들이 백성을 수탈하여 장전^{莊田}을 만드는 폐단을 보고하여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이후 세종에게 덕화^{德化}와 치적에 관계된 일을 모아 책으로 만들 것을 주장하고, 불합리한 관직 제수 등에 대하여 직언을 잘하였다. 이로 인해 권신들에게 미움을 받아 귀양 갔다.

내 변방을 지키게 하겠다.’는 윤음(綸音)을 조정과 민간에 선포하셨습니다. 조서의 맥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복직시키면 곧 허망한 글이 되니, 이전(李)의 관직을 하리(下) 吏로 바꾸소서.”라고 말하였는데, 세종은 회답하지 않았다.

- 명 신종(明神宗)이 마침 몸이 편치 않았는데, 재상을 불러 광세(礦稅)¹⁹를 혁파하고 파면했던 사람들을 다시 등용하고 감금했던 죄수들을 풀어 주는 등의 일을 유시하였다. 다음 날 신종은 몸이 편안해지자 유시했던 일들을 중지시켰다. 이에 환관 전의(田義)²⁰가 “유시가 이미 반포되었으니 다시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신종이 노여워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주역』에 “흠어질 때에 땀이 나듯이 크게 호령한다.”²¹고 하였으니, 인군의 호령은 바람이 물 위에 부는 것 같고 땀이 온몸에 흐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기』에 “왕의 말은 인끈과 같이 가늘어도 나오면 밧줄처럼 굵어진다.”²²고 하였으니, 인군의 말과 명령은 인끈과 같이 가늘게 시작해도 결국 밧줄 같이 굵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약과 정벌이 이렇기 때문에 행해지고 상과 형벌이 이렇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19 광세(礦稅): 명대(明代) 유색금속에 대해 징수하던 특별세로, 지금의 광업세(鑛業稅)의 일종이다. 신종이 정사를 등한시하여, 오랫동안 조화에 나오지 않고 신하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신종은 오로지 환관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 환관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신종은 자신의 향락과 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환관들에게 흠차태감(欵差太監)이란 관직을 주어 전국으로 파견해서 광세, 상세(商稅), 어세(漁稅), 염세(鹽稅) 등 이런저런 명칭을 붙여 세금을 강탈하였다. 이때 환관들은 돈을 거두기 위해 민가를 철거하고 무덤을 파헤치기까지 하며 수탈을 자행했고 반항하는 백성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이를 ‘광세의 화禍’라고 한다.

20 전의(田義): 1534~1605. 명 무종, 세종, 신종 때의 환관으로, 관직이 사례감태감(司禮監太監)에 이르렀다. 그는 진중하고 공정 무사하고 대의(大義)에 밝아 황제들에게 신임을 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신종은 향당(享堂)과 비정(碑亭)을 세워주어 영원히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후 환관들은 전의의 인품과 삶을 흠모하여 그의 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하였다.

21 흠어질 … 호령한다: 『주역』 환괘(渙卦) 구오(九五)에, “흠어질 때에 땀이 나듯이 크게 호령하면, 흠어질 때에 왕의 처신이 합당하여 허물이 없다. [渙 汗其大號 渙 王居 无咎]”라고 하였다. 왕의 호령은 사람의 땀이 온몸에 젖어들듯이 백성들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믿고 따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땀이 한번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왕의 호령은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22 왕의 … 굵어진다: 『예기』 「치의(緇衣)」에, “왕의 말은 명주실 같아도 나오면 인끈같이 굵어지고, 왕의 말은 인끈 같아도 나오면 동아줄처럼 굵어진다. [王言如絲 其出如綸 王言如綸 其出如綯]”라고 하였다.

임금의 한마디 말에 만민의 목숨이 달려 있고 하나의 명령에 온 세상의 형세가 좌우되니, 그 막중함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옛날에 잘 다스린 자는 말이 간략한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간략하면 번다한 문제점이 없어 사람을 이해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말은 신의를 귀하게 여겼으니, 미더우면 뒤바뀔 염려가 없어 아랫사람의 믿음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일에 대해 먼저 자세히 살피고 일이 일어난 뒤에 한 말이 반드시 합치하여, 해와 달과 같이 밝고 쇠와 돌과 같이 단단하였으니, 이렇기 때문에 성인이 모든 나라를 고무시키는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말세의 인군은 도리의 옳고 그름과 일의 잘잘못을 살피지 못하여 명령을 빈번히 내리고 조치를 뒤바꿔 저녁에 시행한 것을 아침에 번복하고 어제 반포한 것을 오늘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고 폐기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당기고 풀어주는 것이 지나치게 빨라서, 아전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고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정령政令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인군 가운데 그 누가 말과 하교를 신중히 살피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감정이 중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감정이 드러나면 쉬이 장난치거나 거만하게 되고, 노여운 감정이 드러나면 갑자기 조급하거나 난폭하게 됩니다. 기뻐해서는 안 되는데 기뻐하면 자연히 정령政令이 떳떳함을 잃었다는 탄식이 생기며, 노여워해서는 안 되는데 노여워하면 자연히 말을 가려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너그럽게 용서해야 하는데 도리어 엄히 다스리고, 엄히 다스려야 하는데 도리어 너그럽게 용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옛 명철한 임금은 반드시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삼가고 돌이켜 근본인 마음을 찾아서, 끌리고 흔들리는 것은 공정한 마음으로 극복하고 치우쳐 기울어진 것은 중화中和로 바로잡았습니다. 마음에 간직한 것이 평정을 얻으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절로 합당하게 되어 소리, 기운, 안색, 말이 편안하고 신중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연석筵席에서 응대하고 크게는 조야朝野에서 호령할 때 먼저 본보기가 될 만한지 살핀 뒤에 말하고 먼저 행할 만한지 헤아린 뒤에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사계절에 내리는 비, 이슬, 서리, 눈이 절로 그 순서를 따르는 것과 같아 한마디 말과 하나의 명령을 내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믿고 먼 후세에 전해져도 폐단이 없는 것입니다.

송宋의 유청지劉淸之²³가 효종孝宗에게 의주擬奏를 올려 “오늘날의 풍속은 이익만 알고 의리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조령詔令이 한번 내려오면 관리는 직위가 올라가는지를 따지고

선비는 과거시험이 시행되는지를 따지고 병사는 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고 백성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지를 따져서, 이익이 있으면 흔쾌히 받들고 이익이 없으면 무시합니다.”²⁴라고 하였습니다. 아! 이는 본래 이익만을 바라는 욕심이 세속을 병들게 한 것이지만 또한 임금의 말과 명령이 명성을 얻기 위해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호령을 반포할 때마다 선왕의 법도와 합치되어, 반드시 백성의 칭송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큰 법으로 삼는다면, 어찌 분수에 벗어난 것을 바라는 습성이 있겠습니까. 뒷날 정치에 이러한 근심이 생기기 쉬우니, 감히 말미에 조심스럽게 아뢰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23 유청지(劉淸之: ?~1190. 자는 자징(子澄)이며 호는 정춘선생(靜春先生)이다. 처음에 형인 유정지(劉靖之)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주희(朱熹)를 만난 뒤 성리학에 뜻을 두었다.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다가 무함을 받아 파직되었다. 귀향하여 고음정사(機陰精舍)를 짓고 강학하였다. 주희(朱熹)와 함께 『소학(小學)』을 편찬하였다.

24 오늘날의 … 무시합니다: 이 글은 『자치통감후편(資治通鑑後編)』,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등에 보인다.

正史彙鑑

권
3

정궁위正宮闈

궁위宮闈를 바로잡다

법조 法條

- || 순임금이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덕으로 감화시켜 이끄니, 두 사람 모두 부인의 도리를 지켰다.
- || 주 선왕周宣王이 잠자리에서 늦게 일어난 적이 있는데, 강후姜后가 비녀와 귀걸이를 빼고 영항永巷¹에서 대죄하면서 부모傅母²를 보내어 왕에게 말을 전했다. “첩이 재주가 없어 군왕께서 색을 즐기고 덕을 잊으며 예모를 잃고 늦게 일어나게 하였으니, 어지러움이 이로부터 일어나는 법입니다.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따져본다면 저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감히 죄를 청합니다.” 선왕이 말하였다. “과인이 부덕하여 실로 스스로 잘못을 한 것이니, 부인의 죄가 아닙니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전한 문제前漢文帝가 총애한 신 부인慎夫人이 황후와 나란히 앉았는데, 원앙袁盎³이 신 부인을 물려 앉히자 신 부인이 노하였고 문제도 노하였다. 원앙이 이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존비尊卑의 질서가 있으면 위아래가 화평해진다.’ 고 하였

1 영항永巷: 궁중의 여인이 대죄待罪하는 곳을 말한다. 본래 궁중에 만들어 놓은 긴 통행로와 후궁들이 거처한 방이 있는 곳을 의미하였는데, 이후 죄 있는 여인들을 유폐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진대秦代에는 궁중 여인들을 관리하던 관서명으로 사용되었고, 전한 무제前漢武帝 때에 액정掖庭으로 이름을 고쳤다.

2 부모傅母: 황족 또는 귀족의 여식을 훈육하는 일을 맡았던 여관女官을 가리킨다.

3 원앙袁盎: ?~기원전 148. 자는 사絲이다. 평소 직간直諫을 잘하였고, 이로 인해 좌천되기도 하였다. 문제가 말을 타고 험한 언덕을 치달리려 하자 ‘귀한 집 이들은 마루 끝에 앉지 않는 법[千金之子 坐不垂堂]’이라고 하면서 만류한 바 있다. 경제가 자신의 친제親弟인 양 효왕梁孝王을 후사로 삼으려 하자 원앙이 저지하였고, 양 효왕이 이에 원한을 품어 원앙을 암살하였다.

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이미 황후를 세우셨으니 신 부인은 곧 첩입니다. 첩과 황후가 어찌 함께 앉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 신 부인을 위하고자 하심은 신 부인에게 화를 입히는 것일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인간돼지[人麩]⁴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제야 문제가 기뻐하였다.

|| 전한 성제前漢成帝가 뒤뜰에서 노닐면서 반 첩여班婕妤⁵와 함께 수레를 타려고 하자 첩여가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옛날 현성한 임금은 모두 명신이 곁에 있었고, 삼대의 말주末主⁶는 폐첩嬖妾이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수레를 타려 하시니 그들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성제가 그 말을 좋다 여겨 그만두었다. 태후가 그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옛날에 번희樊姬⁷가 있었다면 지금은 반 첩여가 있구나.”

|| 전한 성제 때의 일이다. 광형匡衡이 상소하여 말하였다. “왕비를 맞이하는 때는 생민生民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 혼인의 예가 이루어진 뒤에야 만물이 이뤄지고 천명이 온 전해집니다. 공자孔子가 시를 논할 때 「관저關雎」편을 시작으로 삼았으니, 이는 왕의 교화의 시작이요 기강의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덕을 갖춘 여인을 선발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미모를 경계하십시오.” 성제가 그 말을 정중히 받아들였다.

|| 후한 명제後漢明帝가 귀인 마씨馬氏⁸를 황후로 세웠으니, 마원馬援⁹의 딸이었다. 마 황후의 전모前母¹⁰의 조카딸 가씨賈氏도 선발되어 황자 달旭을 낳았는데, 명제는 황후가 아들

4 인간돼지[人麩]: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측실인 척 부인戚夫人을 총애하였고, 척 부인이 낳은 여의如意를 태자로 삼으려 하였다. 여 태후呂太后가 이에 앙심을 품고, 고조가 죽은 뒤에 여의를 독살하고, 척 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불로 지졌으며, 병어리가 되는 약을 먹인 후 변소에 살게 하고 '인간돼지'라 불렀다.

5 반 첩여班婕妤: 기원전 48~2. 전한 성제前漢成帝의 후궁인 반염班婕妤로, 반표班彪의 고모이다. 성제의 총애를 받아 첩여에 책봉되었다가, 조비연趙飛燕 자매가 입궁하면서 총애를 잃고 고초를 겪었다. 여름에 줄곧 사용되던 부채가 가을이 되자 버려진다는 내용의 「원가행怨歌行」이 그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성제 사후 그의 능묘를 지키며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6 삼대의 말주末主: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나라를 망하게 한 세 명의 군주인 하 걸왕夏桀王, 상 주왕商紂王, 주 여왕周厲王을 가리킨다. 걸왕은 말희妹喜, 주왕은 달기妲己, 여왕은 포사褒姒에게 빠져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며 정사를 게을리하였다.

7 번희樊姬: 춘추 시대 초 장왕楚莊王의 부인이다. 장왕이 사냥을 좋아했는데, 번희가 자주 간하여도 듣지 않자 2년 동안 새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다. 장왕은 이에 감동하여 사냥을 그만두고 정사에 매진하였다.

8 귀인 마씨馬氏: 후한 명제後漢明帝의 후비인 명덕황후明德皇后(40~79)를 가리킨다.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의 딸이다. 황후가 된 뒤에도 검소한 복장을 하는 등 부덕婦德이 매우 훌륭하였고 친정 사람들이 조정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다. (『後漢書』「明德馬皇后紀」)

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이미 황후를 세우셨으니 신 부인은 곧 첩입니다. 첩과 황후가 어찌 함께 앉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 신 부인을 위하고자 하심은 신 부인에게 화를 입히는 것일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인간돼지[人麩]⁴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제야 문제가 기뻐하였다.

■ 전한 성제前漢成帝가 뒤뜰에서 노닐면서 반 첩여班婕妤⁵와 함께 수레를 타려고 하자 첩여가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옛날 현성한 임금은 모두 명신이 곁에 있었고, 삼대의 말주末主⁶는 폐첩嬖妾이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수레를 타려 하시니 그들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성제가 그 말을 좋다 여겨 그만두었다. 태후가 그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옛날에 번희樊姬⁷가 있었다면 지금은 반 첩여가 있구나.”

■ 전한 성제 때의 일이다. 광형匡衡이 상소하여 말하였다. “왕비를 맞이하는 때는 생민生民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 혼인의 예가 이루어진 뒤에야 만물이 이뤄지고 천명이 온 전해집니다. 공자孔子가 시를 논할 때 「관저關雎」편을 시작으로 삼았으니, 이는 왕의 교화의 시작이요 기강의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덕을 갖춘 여인을 선발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미모를 경계하십시오.” 성제가 그 말을 정중히 받아들였다.

■ 후한 명제後漢明帝가 귀인 마씨馬氏⁸를 황후로 세웠으니, 마원馬援⁹의 딸이었다. 마 황후의 전모前母¹⁰의 조카딸 가씨賈氏도 선발되어 황자 달烜를 낳았는데, 명제는 황후가 아들

4 인간돼지[人麩]: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측실인 척 부인戚夫人을 총애했고, 척 부인이 낳은 여의如意를 태자로 삼으려 하였다. 여 태후呂太后가 이에 앙심을 품고, 고조가 죽은 뒤에 여의를 독살하고, 척 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불로 지졌으며, 병어리가 되는 약을 먹인 후 변소에 살게 하고 ‘인간돼지’라 불렀다.

5 반 첩여班婕妤: 기원전 48~2. 전한 성제前漢成帝의 후궁인 반염班婕妤로, 반표班彪의 고모이다. 성제의 총애를 받아 첩여에 책봉되었다가, 조비연趙飛燕 자매가 입궁하면서 총애를 잃고 고초를 겪었다. 여름에 줄곧 사용되던 부채가 가을이 되자 버려진다는 내용의 「원가행怨歌行」이 그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성제 사후 그의 능묘를 지키며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6 삼대의 말주末主: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나라를 망하게 한 세 명의 군주인 하 걸왕夏桀王, 상 주왕商紂王, 주 여왕周厲王을 가리킨다. 걸왕은 말희妹喜, 주왕은 달기妲己, 여왕은 포사褒姒에게 빠져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며 정사를 게을리하였다.

7 번희樊姬: 춘추 시대 초 장왕楚莊王의 부인이다. 장왕이 사냥을 좋아했는데, 번희가 자주 간하여도 듣지 않자 2년 동안 새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다. 장왕은 이에 감동하여 사냥을 그만두고 정사에 매진하였다.

8 귀인 마씨馬氏: 후한 명제後漢明帝의 후비인 명덕황후明德皇后(40~79)를 가리킨다.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의 딸이다. 황후가 된 뒤에도 검소한 복장을 하는 등 부덕婦德이 매우 훌륭하였고 친정 사람들이 조정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다. 『後漢書』 『明德馬皇后紀』

이 없었기 때문에 황후에게 기르라고 명했다. 황후는 자신이 낳은 아이보다 더 마음을 다해 길렀다. 늘 황실의 후사가 많지 않다고 여겨 좌우의 여인들을 천거하되 혹여나 부족할까 근심했다. 내전의 위계를 바로잡고 나서도 더욱 스스로 겸손하고 조심하였으며 책 읽기를 좋아하였다. 항상 거친 명주 치마를 입었는데, 초하루와 보름에 여러 후궁과 공주들이 초청朝講하러 갈 때에 황후의 거친 포의袍衣를 멀리서 보고 잔무늬가 있는 고운 비단옷이라 생각했다가 가까이서 보고서야 알아차리고 웃었다. 사사로운 집안일로 정사에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제가 늘 총애하고 존중하였다.

- || 원래 태부太傅 등우鄧禹¹¹의 아들인 호강교위護光校尉 등훈鄧訓¹²에게 딸이 있었는데,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낮에는 부인의 일을 익혔고 밤에는 경전을 외워 집안사람들이 ‘제생諸生’이라고 불렀다. 화제和帝가 선발하여 궁에 들였는데, 공손하고 조심하며 행동에 법도가 있었다. 일찍이 병이 났을 때 화제가 특별히 그녀의 어머니와 형제로 하여금 들어와 친히 의원과 약을 쓰게 하였는데 사양하고 말하였다. “궁금宮禁이 지극히 중하니 외척으로 하여금 궁중에 오래 머물게 하면 위로는 폐하께서 사사로이 총애한다는 비난을 받으시게 되고 아래로는 천첩이 분수를 모른다는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니, 위아래로 손상하는 일은 참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연회에 참석할 때에도 홀로 소박한 차림을 좋아하였고, 그 옷이 음후陰后와 같은 색일 경우 곧장 갈아입었다. 여러 비빈들과 동시에 나아가 화제를 알현할 때면 감히 똑바로 앉지 않았으며 화제가 묻는 것이 있으면 항상 머뭇거리 뒤로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감히 음후보다 먼저 말하지 않았다. 음후가 총애를 잃은 뒤 황제가 찾아올 때마다 등 귀인鄧貴人은 병을 핑계로 사양했다. 황후의 지위에 오른 뒤 화제가 등씨에게 관작을 내리려 할 때마다 황후는 간청하면서 겸손히 사양

9 마원馬援: 기원전 14~49. 자는 문연文淵이다. 광무제光武帝에게 중용되어 농서 태수隴西太守로서 강충 등을 토벌하였고, 북파장군伏波將軍에 임명되어 교지交趾에서 일어난 징족徵側, 징이徵貳 자매의 반란을 토벌하고 신식후新息侯가 되었다. 후에 북방의 흉노匈奴와 오환烏丸을 토벌하였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방 무릉武陵의 만이蠻夷 정벌을 자청하며 말에 뛰어올라 용맹을 보이자, 광무제가 “이 노인네가 참으로 씩씩하기도 하다.[矍鑠哉 是翁也]”라고 찬탄한 고사가 전한다.

10 전모前母: 아버지의 전처前妻를 후처의 자식이 가리키는 말이다.

11 등우鄧禹: 2~58.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를 도와 천하를 평정한 개국 공신이다. 광무제가 즉위하자 대사도大司徒에 임명되고 고밀후高密侯에 봉해졌다.

12 등훈鄧訓: 40~92. 등우鄧禹의 아들이자 화희황후和熹皇后的 부친이다. 호타하摩沱河와 석구하石臼河의 수로水路를 수리하여 곡식을 수송해서 해마다 수천 명을 살리고 많은 비용을 절약한 공이 있다.

하였다. 이 때문에 오라비 등즐鄧騭¹³은 화제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호분증랑장虎賁中郎將에 불과하였다.

|| 위 문제魏文帝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부인이 정사에 간여함은 분란의 뿌리다. 지금 부터 신하들은 태후에게 정사를 아뢰 수 없으며, 태후의 집안사람은 보정輔政의 직임을 맡을 수 없고 봉작封爵¹⁴을 받을 수 없다. 이 조서를 후세에 전하라.”

|| 수 문제隋文帝의 독고 황후獨孤皇后는 집안이 대대로 귀하고 번성하였으나 겸손하였고 평소 독서를 좋아하였으며 말과 행동이 문제의 뜻과 부합하여 궁 안 사람들이 ‘이성제二聖帝’라고 불렀다. 매번 조회할 때 황후가 환관을 시켜 문제를 지켜보게 하였다가 정사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곧바로 바로잡는 간언을 하였다. 유사有司가 “백관의 아내는 황후에게서 명을 받는 법이니, 청컨대 옛 제도를 따르십시오.”라고 아뢰자, 황후가 말하였다. “부인이 정사에 간여함이 혹여 이를 따라 차츰 생겨나게 될 것이니, 그 근원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대도독大都督 최장인崔長仁은 황후의 중외형제中外兄弟¹⁵였는데 법을 어겨 참형에 처해졌어야 했다. 문제가 황후를 생각해서 그 죄를 면해주려 하자 황후가 말하였다. “국가의 일에 어찌 사사로움을 돌보겠습니까.” 최장인은 결국 사사되었다.

|| 당 태종唐太宗이 조회를 마치고 성내면서 말했다. “이놈의 촌뜨기 노인네를 죽여 버려야겠다.” 장손 황후長孫皇后¹⁶가 그게 누구냐고 묻자, 태종이 말했다. “위징魏徵이 매번 조정에서 나를 거스른다오.” 황후가 물러나 조복을 갖춰 입고 뜰에 서니 태종이 놀라 그 이유를 물었다. 황후가 말하였다. “첩이 듣기로 군주가 영명하면 신하가 곧다고 하니,

13 등즐鄧騭: ?~121. 후한 화제後漢和帝의 황후인 화희황후和熹皇后 등씨의 오라비이다. 화제가 죽은 뒤, 안제安帝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대장군이 되어 서강西羌을 평정하였으며, 보정輔政이 되어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부역을 줄이며 현사賢士들을 추천하여 천하를 안정시켰다. (『後漢書』「鄧騭傳」)

14 봉작封爵: 원문의 “茅土之爵”을 풀이한 말이다. ‘모토茅土’는 옛날에 왕이나 제후에게 분봉分封해주면서 해당 방위方位를 상징하는 색의 흙을 흰 띠뿔로 싸서 준 것을 가리킨다.

15 중외형제中外兄弟: 내종사촌과 외종사촌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중표형제中表兄弟라고도 한다.

16 장손 황후長孫皇后: 601~636. 당 태종唐太宗의 황후이자, 고종高宗의 어머니인 문덕순성황후文德順聖皇后를 말한다. 당 태종을 잘 보좌하여 훌륭한 황후로 이름이 나 있다. 장손 황후가 죽자, 당 태종이 “훌륭한 보좌를 잃었다.[失一良佐]”라고 애통해 하였다. (『舊唐書』「太宗文德皇后長孫氏傳」)

지금 위징이 곤은 것은 폐하의 영명하심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첩이 감히 축하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태종이 기뻐하였다. 장손 황후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검소하고 책을 좋아하였다. 황후의 병이 심해지자 태자가 사람들에게 도첩을 주어 황후의 명복(名福)을 빌기를 청하였다. 황후가 말했다. “죽고 사는 건 명운에 달려 있으니 지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선을 행하여 복이 있다면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망령되어 구해 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병이 위독해지자 태종에게 말하였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시며 충간(忠諫)을 받아들여시고 간특한 참소를 물리치시며, 백성들의 부역을 줄이시고 사냥을 그만두신다면, 첩이 구천에서도 참으로 한이 없을 것입니다.” 장손 황후는 예로부터 부인들이 잘잘못을 채록하여 『여칙女則』 30권을 만들었다. 또 한(漢)의 명덕황후(明德皇后)를 논박하는 글을 지어 “외척을 억눌러 물리치지 못하고 조정에서 존귀하고 강성하게 만들어 놓고서, 다만 ‘수레가 물처럼 끊임없이 찾아들고 말들은 용이 헤엄치듯 한다.’¹⁷고 경계하였으니, 이것은 화패(禍敗)의 근원을 열어 놓고서 그 말류만을 막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후가 붕어(崩御)하고 궁사(宮司)가 『여칙』을 함께 상주하자, 태종이 비통해하면서 이를 근신들에게 보여 주고 말하였다. “황후의 이 책은 백세에 모범이 될 만하다. 내궁에 들어가 더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한 명의 훌륭한 보좌를 잃은 셈이다. 이 때문에 황후를 잊을 수가 없다.”

|| 당 태종 때, 상서(尙書)가 아뢰었다. “근래에 궁녀를 선발할 때, 간혹 미천한 가문에서 나와서 예법을 들어보지 못하였거나 형벌을 받은 집안 출신이라 근심과 원한이 쌓여 있는 자도 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모두 양가(良家)에서 재주와 행실이 있는 여인을 선발하여 예로써 불러 충원(充員)하십시오.” 태종이 그 말을 따랐다.

|| 당 목종(唐穆宗)이 위독할 때 태자에게 나라를 살피라고 명하자, 환관들이 꼭 태후(郭太后)에게 국정을 돌볼 것을 청하려고 하였다. 태후가 “태자가 비록 어리나 어진 재상의 보좌

17 외척을 ... 한다: 후한 장제(後漢章帝)가 외척들에게 봉작을 내리려 하자 그의 어머니 명덕황후(明德皇后) 마씨(馬氏)가 이를 사양하고, 외척들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지적하여 “문안하러 오는 외척들을 보면, 따르는 노복들이 많아서 수레가 흐르는 물 같고 말이 헤엄치는 용같았다.[見外家問起居者 車如流水 馬如游龍]”고 말하였다.

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찌 국가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을 근심하겠는가. 예부터 여자가 천하 군주가 되어 요순의 다스림을 이뤄낸 경우가 있었던가.”라고 하고, 제서制書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태후의 오라비 태상경太常卿 곽쇠郭釗가 이러한 논의를 듣고 몰래 전牋¹⁸을 올려 말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의 요청대로 따르신다면, 신은 청컨대 자식들을 데리고 관작을 반납하고 시골로 돌아가겠습니다.” 태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님의 복이 우리 오라버니에게 모였나 봅니다.”¹⁹【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태조明太祖가 학사 주승朱升에게 교유教諭하였다. “후비后妃는 정사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빈장嬪嬙은 수건과 빗을 받들어 모시는데 지나지 않으니, 정사가 안에서부터 나온다면 재앙이 길러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총애받는 여인이 사람을 흘리는 것이 짐독鴆毒²⁰보다 심하니, 경은 여인이 삼가야 할 것과 옛 현비賢妃가 행한 일 중에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을 편찬하여 후세 자손들로 하여금 지켜야 할 도리를 알게 하라.”
- || 명 태조가 원말元末의 문제점을 깊이 경계하여 법전에 써 넣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으니, 황후는 그저 궁중의 빈부嬪婦에 관한 일만 다스릴 수 있었으며, 후비后妃 및 빈시嬪侍, 여사女史는 크고 작은 의식에 관한 모든 비용과 기물의 공급을 모두 상궁을 시켜 감관에게 먼저 아뢰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야 담당 부서에 보내어 수령할 수 있었다. 사사로이 편지를 밖에 보내는 자는 그 벌이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궁빈宮嬪이 병이 들어도 의원이 들어가 볼 수 없었고 그 증세에 따라 약을 처방할 뿐이었다. 또한 공부工部에게 흥패를 만들어 후비에게 경계하는 말을 새겨 넣어 궁중에 걸게 하였다.
- || 마 황후馬皇后²¹는 성품이 공손하고 검약하여 이불이 해저도 차마 바꾸지 못하였고, 옷과 치마를 만들 때마다 자투리 비단을 모아 수건과 속옷을 만들어 여러 왕비와 공주에게

18 전牋: 본래 천자, 태자, 제후, 대신에게 올리는 글을 총칭하였는데, 후대에 이르러 천자에게는 表表, 제후에게는 表表, 황후와 태자에게는 전牋이라 구분하여 불렀다.

19 할아버님의 … 봅니다: 곽 태후郭太后的 조부인 곽자의郭子儀가 훌륭한 손자를 남겼음을 의미한다. 곽자의는 안복산安祿山の 난이 일어나자 많은 공로를 세워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졌다. 오랫동안 중서령中書令의 중임을 맡아 24번이나 관리들의 고과考課를 담당했으며 상보尙父라는 존호를 받았다. 부귀와 공명, 장수를 누렸으며 자손까지 번창하여 ‘곽 분양의 팔자[郭汾陽八字]’라는 말이 생겼다.

20 짐독鴆毒: ‘짐독’이라는 새는 깃에 독이 있는데, 이 깃으로 술을 담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였다.

주면서 말했다. “부귀하게 나고 자랐더라도 뽕잎을 따서 누에를 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태조가 전전前殿에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황후는 반드시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만약 태조가 진노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태조가 궁에 돌아오길 기다려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간언하였다. “임금의 지위는 지극히 높고 또 많은 자손을 두셨으니, 덕 쌓기만을 좋아하셔서야지 함부로 노여워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태조가 그 말을 따라 너그럽게 일을 처리함이 많아졌다. 여름에 가뭄이 들어 태조가 방구方丘²²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이날 밤에 큰 비가 내리자 황후가 관복을 갖춰 입고 하례하여 말하였다. “폐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정성 덕분에 비의 은택이 내려지게 되었으니, 첩이 감히 축하드립니다.”

Ⅱ 명 성조明成祖의 황후 서씨徐氏²³는 서적에 두루 통달하여 여자가 지켜야 할 법도나 경계해야 할 글을 살펴 그 요지를 채록하여 『내훈內訓』 20편을 지었다. 요임금의 다스림은 친족으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자주 말하였고, 또 “인재는 얻기 힘든 법입니다. 오늘날의 어진 인재는 모두 태조께서 이룬 것이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구新舊를 구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성조가 가납하였다.

Ⅱ 명 영종明英宗²⁴ 때의 일이다. 태황태후 장씨張氏는 정사를 돌보라는 청을 물리치고 보신輔臣들에게 모두 맡겼으며, 가장 먼저 경연을 열어 그 근본을 바로잡고, 다음으로 진귀한

21 마 황후馬皇后: 명 태조明太祖의 황후이자 성조明成祖의 모후인 효자고황후孝慈高皇后(1332~1382)를 가리킨다. 홍건군紅巾軍의 장수 곽자흥郭子興의 양녀로, 아담이나 희곡에서 ‘마수영馬秀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명의 개국에 공이 컸으며 여걸이었다고 한다. 황후가 되어서도 몸가짐을 검소하게 하고 내조에 힘썼으며 태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2 방구方丘: 제왕帝가 땅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한편,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은 원구圓丘라 한다.

23 황후 서씨徐氏: 명 성조明成祖의 후비인 인효문황후仁孝文皇后(1362~1407)이다. 명의 개국공신 서달徐達의 딸로, 어려서부터 학식이 있어 ‘여제생女諸生’으로 불렸다. 성조가 동생 서증수徐增壽를 정국공定國公에 봉했을 때, 친정이 득세하는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에 성조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24 명 영종明英宗: 1427~1464. 명 제6대, 8대 황제 주기진朱祁鎮으로, 재위 기간은 1436년에서 1449년, 복위 기간은 1457년에서 1464년이다. 연호를 따라 ‘정통제正統帝’ 혹은 ‘천순제天順帝’로 불린다. 9세에 즉위하였으므로, 즉위 초반에는 태황태후 장씨張氏가 수렴청정을 하고 ‘삼양三楊양사기楊士奇·양영楊榮·양부楊輔’ 이 보좌하였다. 황태후와 원로 대신들이 사망한 뒤, 환관 왕진王振에게 국정을 맡기면서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국정이 파국을 맞게 되었다. 오이라트[瓦剌]가 침입하자, 왕진의 권유로 50만의 군대를 이끌고 친정親征에 나섰다가 패전하여 포로가 되었다. 이를 ‘토목土木의 변’이라고 한다. 명 조정에서는 이복동생 대종代宗(경태景泰帝)를 옹립하였고, 송환된 이후 태상황이 되어 유폐당하였다. 그러나 조정 내에서 대종을 반대하는 일파가 정변을 일으켜 대종을 폐위하고 영종을 복위시켰다.

물건을 즐기는 것을 그치게 하여 옛 폐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으며, 왕진王振²⁵의 간악함을 알아차리고 엄한 말로 꾸짖고 물리쳐서 정사에 간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 || 명 세종明世宗 때의 일이다. 황후에게 병이 생기자 황후의 부친 진만언陳萬言이 그의 처로 하여금 입궁하여 황후를 돌보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세종이 보신輔臣에게 상소문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외척으로서 예로부터 궁에 들어온 자는 있지 않으니, 짐은 감히 제멋대로 외척이 궁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진 헌공晉獻公²⁶이 여희驪姬를 얻어 해제奚齊를 낳았다. 여희가 총애를 받자 그 아들을 태자로 세우고자 하여 궁 밖에 있는 폐신嬖臣 양오梁五와 동관東關의 폐신 오오에게 뇌물을 주어 헌공에게 말하여, 태자를 곡옥曲沃에 살게 하고 중이重耳를 포蒲에 살게 하고 이오夷吾를 굴屈에 살게 하였다. 두 명의 오가 끝내 여희와 함께 여러 공자를 참소하여 해제를 태자로 세우니, 진 사람들이 “두 오가 궁실을 나란히 같이놓았다.”라고 하였다. 태자가 곡옥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지낼 때 쓴 음식을 헌공에게 보냈는데 헌공이 마침 사냥을 나가서 궁궐에 두었다. 헌공이 궁궐에 이르자 여희가 독을 타서 음식을 바쳤는데, 헌공이 땅에 제주祭酒를 붓자 땅이 부풀어 오르고 개에게 주자 개가 쓰러져 죽고 소신小臣에게 주자 소신도 쓰러져 죽었다. 여희가 눈물을 흘리며 “해치려는 음식이 태자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하니, 태자는 신성新城으로 달아났다.

25 왕진王振: ?~1449. 명 영종明英宗을 황태자 시절부터 모신 환관이다. 영종의 신임을 받아 권력을 전횡하였다. 몽골 부족을 통일한 오이라트[瓦剌]가 군사를 거느리고 명을 침입하자, 왕진이 영종을 부추겨 친히 출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영종은 도목보에서 포로가 되고, 왕진은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이로써 영종은 중국 역사상 아전에서 포로로 잡힌 유일한 황제로 기록되었다.

26 진 헌공晉獻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궤제詭諸이다. 무공武公 칭稱의 아들이다. 즉위 후에 방계傍系 공족公族들을 숙청하고 강緯으로 천도하여 권력을 지켰으며, 여옹驪戎, 경耿, 곡霍, 위魏를 복속시키고 순식荀息의 가도멸곡假道滅虢의 계책으로 곡號과 우虞를 병탄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폐첩인 여희驪姬의 참소에 따라 태자를 죽이고 아들 중이重耳와 이오夷吾를 추방한 다음 여희가 낳은 해제奚齊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이러한 후계 문제는 진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 || 제 환공齊桓公²⁷은 내충內寵이 많아 부인처럼 대우받는 자가 여섯 사람이었다. 환공이 죽자 역아易牙가 궁에 들어가 환관 초紹와 함께 총애받던 후궁을 통해 여러 관리들을 죽이고 태자 무휴無虧를 임금으로 세웠다.
- || 노 애공魯哀公²⁸ 때, 공자 형荊의 어머니【애공의 첩이다.】가 총애를 받았는데, 그녀를 부인으로 삼고자 하여 종인宗人²⁹ 혼하鬻夏를 시켜 그 예를 올리게 하니 대답하였다. “그러한 예법은 없습니다. 주공周公과 무공武公은 설薛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혜공惠公은 송宋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환공桓公부터 이후로는 제齊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것이 예법입니다. 첩을 부인으로 삼는 것은 본디 그러한 예법이 없습니다.” 애공이 끝내 그녀를 부인으로 세우고 공자 형을 태자로 삼자, 나라 사람들이 애공을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전한 성제前漢成帝가 미행微行하다가 양아공주陽阿公主【성제의 누이】의 집에 들렀다가, 가무자歌舞者인 조비연趙飛燕에게 반해 궁에 불러들여 몹시 총애하였다. 그녀에게 여동생이 있어 또한 불러들였는데 자태가 더욱 농염하고 아름다웠다. 피향전披香殿의 박사博士【여관女官이다.】탁방성湯方成이 성제의 뒤에서 침을 뱉고 말했다. “이들은 재앙의 물이니, 불을 끌 것³⁰임이 틀림없다.” 성제가 첩여婕妤 조비연을 황후로 세우려 하자, 간대부諫大夫 유보劉輔가 글을 올려 말했다. “속담에 ‘썩은 나무는 기둥이 될 수 없고 좋은 주인이 될 수

27 제 환공齊桓公: 춘추 시대 제의 군주로, 성은 강姜, 씨는 여魯, 이름은 소백小白이다. 형인 양공襄公의 포악함을 피하여 국외로 망명하였는데, 중형從兄 공손무지公孫無知가 양공襄公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다가 대부 옹공雍麇에게 살해당하자, 가장 먼저 귀국하여 즉위하였다. 포숙鮑叔의 추천에 따라 정적이었던 관중管仲을 재상으로 기용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춘추오패春秋五霸 가운데 최초의 패자霸者로, ‘존왕양이尊王攘夷’의 기치 아래 제후들을 규합하고 국위國威를 떨쳤다. 그러나 말년에는 간신을 가까이하여 중용하다가 그들에 의해 유폐되어 굶어 죽었다.

28 노 애공魯哀公: 춘추 시대 노의 군주로, 성은 희희, 이름은 장將이다. 당시 강성했던 삼환三桓중손씨仲孫氏·숙손씨叔孫氏·계손씨季孫氏를 견제하려다가 도리어 삼환의 공격을 받아 위衛로 달아났고, 후에 유산씨有山氏의 집에서 죽었다.

29 종인宗人: 예절과 의식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30 이들은 … 것: 조비연趙飛燕 자체가 한漢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 고조漢高祖는 적룡赤龍의 정감精感을 받아서 태어났다 하여 적제자赤帝子라 불렸고, 기차旗幟 등을 모두 적색으로 하였다. 유방이 정장亭長으로 있을 당시 술에 취해 밤중에 큰 못가를 지나가다가 길을 막고 있던 큰 뱀 한 마리를 죽였으니, 뒤따르던 사람이 그 뱀이 있던 곳에 가 보니 한 노파가 울면서 말하였다. “내 아들은 백제白帝의 아들로 뱀이 되어 길에 있었는데, 지금 적제赤帝의 아들이 배어 죽었다.” 그 사람이 이를 듣고 유방에게 알리자 유방은 내심 기뻐하였고 따르는 이들이 더욱 유방을 경외하였다.(『史記』「高帝本紀」) 여기서 백제의 아들은 금덕金德을 숭상한 진秦을 가리키는데, 오행에서 화가 금을 이기므로, 이는 화운火運을 탄 유방의 한이 진을 멸망시킬 조짐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없다.’라고 합니다. 신은 마음이 아픕니다.” 성제가 사람을 보내어 유보를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다가 사형을 감하고 논의하여 귀신鬼薪³¹의 형벌을 내렸다.

|| 전한 성제 때의 일이다. 경조윤京兆尹 왕장王章이 봉사封事를 올려 아뢰었다. “대장군 왕봉王鳳은 첩의 동생 장미인張美人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었으므로 예법상至尊의 배필이 되기에 마땅하지 않음을 알았는데도, 아이를 잘 낳을 거라는 핑계로 후궁에 들였습니다. 이는 구차하게 그 처제를 사사로이 돌본 것입니다. 강호羌胡도 오히려 부인이 처음 낳은 자식을 죽여 뱃속을 깨끗하게 하고 가계家系를 바로잡거늘,³² 하물며 천자로서 출가했던 여인을 가까이함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 북제北齊의 군주 고위高緯 때의 일이다. 궁비宮婢 육영훤陸令萱³³은 목소의穆昭儀가 황후가 되길 바랐지만, 호 황후胡皇后가 총애를 받고 있어서 그럴 여지가 없었다. 이에 염고厭蠱³⁴의 주술을 쓰자 호 황후가 정신이 흐리멍덩해져서 아무 때나 웃고 말하였다. 후주가 결국 그녀를 싫어하게 되자, 육영훤이 황후의 웃을 목소의에게 입혀 휘장 안에 앉히고 후주에게 말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황후가 되지 않으면 누굴 황후로 삼겠습니까.” 후주가 이에 목소를 우황후로 삼고 호 황후를 좌황후로 삼았다가, 오래지 않아 호 황후를 또 참조하여 서인庶人으로 폐위시켰다.

31 귀신鬼薪: 3년 동안 종묘에 땀나무를 바치는 형벌이다.

32 강호羌胡도 ... 바로잡거늘: 부인이 처음 와서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를 죽이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를 진정한 자신의 혈통으로 인정함을 말한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은 족외혼의 원칙을 중시하였는데, 혼인을 치를 비용이나 지참금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부족의 여인을 납치해오는 납치혼 또는 약탈혼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처음 태어나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아이를 죽이기도 하였다.

33 육영훤陸令萱: 504~576. 북제 후주北齊後主 고위高緯의 유모로, 고위가 황제에 등극하면서 그녀를 여시중女侍中에 봉하였다. 아들 목제파穆提婆와 함께 권세를 장악하여 매관매직과 취렴聚斂을 일삼았고, 황후의 폐립廢立과 대신의 출살黜殺에 관여하였다. 이후 북주北周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자살하였다.

34 염고厭蠱: 사람을 해치기 위한 주술인 염매厭魅와 고독蠱毒을 아울러 말한다. ‘염매’는 저주할 대상의 형상을 그리거나 모형으로 만들어 심장이나 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찌르거나 손발을 묶는 방법이며, ‘매魅’는 귀신에게 기도하는 미신 또는 요술 등을 가리킨다. ‘고독’은 그곳에다 벌레를 여러 마리 넣어두고 서로 잡아먹다가 최후까지 살아남은 벌레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몰래 음식물에 넣어 해칠 대상에게 먹이면 병 들거나 죽는다고 한다. 혹은 ‘고독蠱毒’을 뱀, 지네, 두꺼비 등의 독을 조합하여 만든 독이나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으로 보기도 한다.

- || 당 고종唐高宗³⁵이 왕 황후王皇后를 폐위시키고 무 소의武昭儀³⁶를 세워 황후로 삼으려 하자, 저수량褚遂良³⁷이 대답하였다. “황후께 허물이 있음을 아직 듣지 못하였는데 어찌 가벼이 폐위시킬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 반드시 황후를 바꾸시고자 하신다면 청컨대 천하의 훌륭한 집안에서 가려 뽑으십시오. 하필 무씨입니까? 무씨는 이미 선제先帝를 섬겼으니, 천하 사람들의 이목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무 소의가 주렴 가운데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어찌 이놈을 쳐 죽이지 않는가?”
- || 당 중종唐中宗이 방릉房陵에 있을 때, 위 황후韋皇后와 함께 유폐되어,³⁸ “훗날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된다면, 응당 그대가 바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맹세하였다. 훗날 그녀가 다시 황후가 되자 마침내 정사에 간여하였는데, 고종 시절의 무후武后처럼 굴었다. 이에 환언범桓彦範³⁹이 표表를 올려 말하였다. “폐하께서 조정에 임하실 때면 황후께서 반드시 휘장을 드리우고 정사에 간여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왕 중에 부인과 더불어 정사를 돌보고도 나라를 망가뜨리고 자신을 망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35 당 고종唐高宗: 628~683. 당 제3대 황제 이치李治로, 재위 기간은 649년에서 683년이다. 태종 이세민李世民的 아홉 번째 아들로, 장남과 네 번째 아들이 차례로 태자로 책봉되었다가 폐위된 후, 외척 장손무기長孫無忌의 지지를 받아 태자가 되어 즉위할 수 있었다.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등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고, 당의 율령과 전장 제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말년에는 황후 무씨武氏가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36 무 소의武昭儀: 당 고종唐高宗의 황후인 측천수성황후則天順聖皇后 무조武曌(624~705)를 가리킨다. ‘측천무후則天武后’ 또는 ‘무측천武則天’이라고도 불린다. 태종 때, 14세의 나이로 입궁하였으나 총애를 받지 못하였고, 태종이 붕어한 뒤 감업사感業寺로 출가했다가, 고종의 눈에 들어 소의의 신분으로 재입궁하였다. 이후 노련한 처세술로 황후의 지위에 올랐고, 조정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장남 이홍李弘과 차남 이현李賢을 죽였다. 고종 사후에 즉위한 자신의 삼남 이현李顯중종中宗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자 폐위시킨 후, 사남 이단李玼예종睿宗을 즉위시켰다. 결국 자신이 예종을 폐위시키고 제위에 올라 국호를 ‘주周’로 고치고 1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37 저수량褚遂良: 596~658. 자는 등선홍善이며, 하남군공河南郡公에 봉해졌으므로 ‘저하남褚河南’이라 불리기도 한다. 학문과 서법書法에 뛰어나 태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우세남虞世南, 구양순歐陽詢, 설직薛稷과 함께 ‘초당사대가初唐四大家’로 불렸다. 고종이 무측천을 황후로 삼으려 할 적에 이를 반대하였으나 고종이 듣지 않자, 흠을 궁전 섬돌에 내려놓고 머리를 땅에 짚어 피를 흘리면서 “폐하의 흠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하고 떠났다.

38 당 중종唐中宗이 … 유폐되어: 중종이 즉위 후에 자신의 장인丈人인 위현정韋玄貞을 재상으로 임명하였다가 측천무후와 기존 권신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2달여 만에 측천무후에 의해 폐위당한 후 여릉왕廬陵王으로 강등되어 방릉房陵에 유폐되어 지냈다.

39 환언범桓彦範: 653~706. 자는 사칙士則이다. 적인걸狄仁傑의 추천을 받아 요직에 임명되었고, 적인걸 사후에 측천무후의 위독함을 틈타 중종을 복위시키는 공을 세웠다. 중종이 복위하자 남언納言에 임명되고 상주국上柱國에 봉해졌으며 은정광록대부銀青光祿大夫의 지위에 올랐다.

- || 당 현종唐玄宗 때 양 귀비楊貴妃가 총애를 받아 민간에서 그에 대해 노래하였다.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말고 딸을 낳았다고 슬퍼 말게. 그대 지금 딸을 두었다면 집안을 일으키리라.” 최씨에게 시집간 양 귀비의 언니는 한국부인韓國夫人이 되었고, 배씨에게 시집간 언니는 궐국부인靑國夫人이 되었고, 류씨에게 시집간 언니는 진국부인秦國夫人이 되어 궁역宮掖을 드나들면서 나란히 현종의 사랑을 받았다. 세 언니와 양섬楊錫, 양기楊錡 다섯 집안의 청탁이 제척制勅보다 준엄하여 그들의 집 문 앞에 뇌물이 모여들었으며, 경쟁적으로 저택을 넓혀서 몹시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 || 후당 장종後唐莊宗 때의 일이다. 유 황후劉皇后⁴⁰는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신분이 귀해지자 축재蓄財에 힘써 장작이며 야채, 과일, 숨까지 모조리 매매하였다. 사방의 공물은 모두 둘로 나누어 하나는 천자에게 올라가고 하나는 중궁中宮에 올라갔는데, 재상이 “내탕고는 넉넉한데 병사들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니, 혹 구휼하지 않으면 배반하려는 마음이 생길까 걱정된다.”라고 간언하자, 황후가 말하였다. “우리 부부가 만국萬國에 군림한 것은 비록 무공武功에 힘입은 것이나, 명은 이미 하늘에 달려 있으니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에 장신구와 은반 세 개와 어린 황자皇子 세 명을 밖에 내놓고 말했다. “사람들이 궁 안에 재물이 쌓여 있다고 말하지만 사방에서 바치는 물건은 수시로 나누어 주어 남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를 팔아서 군대에 보태십시오.” 그러자 재상이 두려워하면서 물러났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남송 광종南宋光宗⁴¹ 때의 일이다. 이 황후李皇后⁴²가 가왕嘉王 擴⁴³을 세워 태자로 세웠다고 칭하였으나 수황壽皇⁴⁴이 허락하지 않았다. 황후는 가왕을 데리고 광종에게 눈물

40 유 황후劉皇后: 후당 장종後唐莊宗의 황후인 신민경황후神閔敬皇后(?~937)이다. 뛰어난 미색으로 총애를 받았고, 자신의 친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친아버지를 모른 척하여 매질하여 쫓아낸 적이 있다. 그녀는 각종 뇌물과 가혹하게 거둔 세금 등을 통해 축재를 하며 사치를 일삼았다. 장종의 실정에 불만을 품은 휘하 무장과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장종이 이를 진압하다가 유시流矢에 부상을 당하자 그를 환관에게 맡기고 자신은 재물을 챙겨 달아났다. 그러나 결국 백성들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41 남송 광종南宋光宗: 1147~1200. 남송 제3대 황제 조돈趙惲으로, 재위 기간은 1189년부터 1194년이다. 효종孝宗의 셋째 아들로, 장남 장문태자莊文太子가 요절한 후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그의 나이 마흔이 넘어서야 할아버지 고종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효종이 태상황이 되어 양위함으로써 즉위할 수 있었다. 심약하여 황후 이씨李氏에게 휘둘렸으며, 즉위 후에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제대로 정무를 돌보지 못하였다. 결국 조여우趙汝愚, 한탁주韓侂胄 등에 의해 강제로 퇴위되었다.

을 흘리며 하소연하면서 수황이 폐립廢立할 뜻이 있다고 말하니, 광종이 의심하여 결국 수황에게 문안을 가지 않았다. 하루는 광종이 궁 안에서 손을 씻다가 궁녀의 손이 하얀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였다. 다른 날 황후가 사람을 통해 광종에게 음식을 보내왔는데, 반합을 열어 보니 그 궁녀의 두 손이었다. 황후는 또 황 귀비黃貴妃가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광종이 태묘太廟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재궁齋宮에 머무는 것을 틈타 귀비를 죽였다. 다음 날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과 땅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황단黃壇의 촛불이 꺼지니, 광종이 놀라고 두려워 않던 병이 더 심해졌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부附 공주公主

법조 法條

II 당 헌종唐憲宗 때, 두우杜佑의 손자 사의랑司儀郎 두중杜棕을 기양공주岐陽公主와 짝지어주었는데, 공주는 어진 행질이 있었다. 두씨는 큰 일족이라서 존향尊行⁴⁵이 수십 명이 넘었음에도, 공주는 아침저녁으로 집안의 예법을 똑같이 따르니 20여 년 동안 교만하게 군다고 터럭만큼도 흠 잡히지 않았다. 처음 시집왔을 때 두종과 상의하여 “주상께서 내려 주신 노비는 주청奏請하여 돌려드립니다. 천인을 사서 시켜도 충분합니다.”라 하니, 이로부터 규방이 조용해져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42 이 황후李皇后: 남송 광종南宋光宗의 황후인 자의황후慈懿皇后(1144~1200)를 가리킨다. 시아버지 효종에게 미움받자 광종에게 효종과 대립하도록 부추겼고, 평소 질투가 심하여 다른 후궁을 때려 죽이거나 내쫓았다. 즉위한 광종이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자 그를 대신하여 국정을 전횡하였다.

43 가왕嘉王 曁: 영종寧宗을 가리킨다. 정신질환을 앓던 광종이 조여우, 한탁주에 의해 퇴위당한 후 즉위하였다. 「송유학봉 儒學」 계조 25번 각주 참조.

44 수황壽皇: 정식 명칭은 '지존수황성제至尊壽皇聖帝'로, 광종이 부친 효종에게 선위禪位받은 뒤에 태상황태上皇이 된 부친에게 올린 존호이다.

45 존향尊行: 부모의 향렬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향렬의 어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당 선종唐宣宗의 딸 만수공주萬壽公主는 기거랑起居郎 정호鄭顥와 혼인하였는데, 정호는 정인鄭綱의 손자로, 진사進士에 급제하였고 문아文雅함으로 칭찬이 자자하였다. 공주는 선종이 아끼는 딸이었으므로 정호를 택하여 사위 삼았다. 선종이 “나는 검약으로 천하를 교화하려 한다.”라고 하여 구리로 수레를 꾸미고, 공주에게 부인의 예법을 지키기를 신하들과 똑같이 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남편 집안을 경시하지 말고 시무時務에 간여하지 말라고 경계하며 “진실로 나의 경계를 어기면 반드시 태평공주太平公主⁴⁶와 안락공주安樂公主와 같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호의 아우 정의鄭頤가 위중한 병에 걸렸을 적에 선종이 사자를 보내어 문병하였다. 사자가 돌아오자 공주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사자가 “자은 사慈恩寺에서 연희演戲를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였다. 선종이 노하여 탄식하며 “내가 사대부의 집안이 나와 사돈을 맺지 않으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진실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고, 곧바로 명을 내려 공주를 불러 꾸짖어 말하였다. “어떻게 소랑小郎⁴⁷에게 병이 있는데 가서 살펴보지 않고서 연희를 보았느냐?” 이로 말미암아 선종의 시대가 끝나도록 귀척貴戚들이 조심하여 산둥山東 지역의 사대부⁴⁸와 같이 예법을 지켰다.

|| 당 선종이 교서랑校書郎 우중于琮을 영복공주永福公主에게 장가들게 하려고 했었다가 얼마 후 그만두었다. 재상이 그 이유를 묻자 선종이 말하였다. “짐이 근래에 이 딸과 식사를 하였는데, 짐을 상대로 걸핏하면 수저를 막아섰네. 성정이 이와 같으니 어찌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는가?” 곧 다시 우중에게 명을 내려 광덕공주廣德公主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두 공주 모두 선종의 딸이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46 태평공주太平公主: 665~713. 당 고종唐高宗과 측천무후則天武后的 딸로, 권모술수에 능했고 측천무후의 측근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태평공주는 결국 어머니 측천무후를 퇴위시키고 오라비 중종中宗을 복위시키는 정변에 가담하여 성공하였으며, 중종의 아내였던 위 황후韋皇后가 중종을 독살하자 당시 태자였던 이용기李隆基와 함께 위 황후를 살해하고 상왕上王이었던 예종睿宗을 다시 복위시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47 소랑小郎: 남편의 아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48 산둥山東 지역의 사대부: 예의법절을 잘 지키는 사람을 비유한다. 산둥 지역은 공자와 맹자가 활동한 곳으로, 추로지향鄒魯之鄉으로 불리며 예로부터 예의禮樂이 잘 보전되고 중시되었다.

계조 戒條

- || 당 중종唐中宗 때, 안락공주安樂公主가 제멋대로 전횡하니, 재상을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대부분 그녀를 통해 등용되었다. 한 번은 곤명지昆明池⁴⁹를 달라고 청했는데, 중종이 백성들이 부들과 물고기를 구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공주가 달가워하지 않다가 다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정곤지定昆池를 만들었다. 가로와 세로 길이가 수 리였는데, 돌을 쌓아 화산華山을 본뜨고 물을 끌어들여 천진天津을 본떴으며, 곤명지를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정곤定昆[곤명을 내리 누름]’이라 이름하였다.
- || 당 예종唐睿宗 때, 태평공주太平公主가 태자와 함께 위씨韋氏⁵⁰를 죽였다. 예종이 항상 그녀와 함께 큰 정사를 논의하였으니, 재상이 일을 아될 때마다 예종이 번번이 공주에게 물었다. 태평공주와 의논하여 공주가 하고 싶은 것은 예종이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재상 이하 신하들의 진퇴進退가 그녀의 한 말에 달려 있었고, 그 밖에 천거했던 인사가 갑자기 청현직을 지내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권세가 임금을 압도하여 그녀의 집에 달려가 아부하는 자들이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전하는 말에 “왕의 교화가 시행됨은 규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라에 미친다.”고 합니다. 대개 천하의 만사가 가까운 데서 시작하여 먼 데 미치며, 안에서 이루어 밖에 이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조정을 바로잡고 백관을 바로잡고 만민을 바로잡는 것 중에 무엇인들 다스림의 요체가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반드시 가까운 데서 그 바름을 시행하고 안에서 그 바름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그 먼 데와 밖의 것을 논할 수 있는 법입니다.

49 곤명지昆明池: 장안長安에 있던 인공호수의 이름이다. 전한 무제前漢武帝가 이를 확장하여 수군水軍을 훈련시켰다.

50 위씨韋氏: 당 중종唐中宗의 황후인 순천황후順天皇后(?~710)를 가리킨다. 측천무후의 조카 무삼사武三思와 결탁하여 권력을 장악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자신의 딸 안락공주와 함께 중종을 독살시키기에 이르렀다.

궁위宮闈는 장소가 삼엄하고 일은 은밀하니, 비록 위의를 잃거나 법도를 넘어선 일이 있더라도 보신補臣과 대신臺臣이 무슨 수로 바로 잡겠습니까. 이것이 명군철벽明君哲辟이 반드시 사사로운 때에도 성찰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해야 하는 이유이며, 명신석좌名臣碩佐가 기미가 드러나기 전에 경계하는 바른말을 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저 임금 중에 누군들 그 내치內治의 방도를 극진하게 쓰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사의私意에 이끌려 끊어내지 못하기도 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익숙해져 그들을 면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바르지 못한 작은 일 하나 정도는 나의 정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여겨 덮어 둔 채 지나치다 보니 사사로운 은혜가 쉬이 넘쳐나며, 예법이 아닌 자잘한 관행慣行 하나 정도는 나의 법도를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라 여겨 기강을 흔드는 일이 쌓이다 보니 은밀한 셋길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위계와 위엄이 문란해지고 혼란과 망실亡失이 이어지게 되니, 이전의 역사를 볼 때마다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궁궐 안의 다스림을 엄하게 함이 옛날보다 뛰어났습니다. 태조께서는 외척들이 권세를 빌미로 궁에 출입할까 염려하시어 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외척의 출입을 일절 금하게 하셨습니다.⁵¹ 세종께서는 비빈妃嬪을 대할 때, 그 명분을 엄하게 하여 의장儀章⁵²과 은수恩數⁵³에 모두 차등을 두셨습니다.⁵⁴ 인조께서는 내외의 법을 엄하게 하여 비록 대군이라 하여도 출궁한 뒤에는 나이 어린 궁녀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게 하였으며,⁵⁵ 일찍이 혼조昏朝광해군 때는 폐

51 태조께서는 … 하셨습니다: 사헌부司憲府가 ‘문을 지키는 병사로 하여금 직임職任이 없는 자는 궁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상소를 올리자, 태조가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太祖實錄』 1년 7월 20일)

52 의장儀章: 상하를 구별하고,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일체의 표장標章과 의제儀制를 가리킨다.

53 은수恩數: 임금이 내리는 봉호封號와 등급等級을 가리킨다.

54 세종께서는 … 두셨습니다: 예조에서 당唐의 제도와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의거하여 비교적 부족한 중궁中宮의 의장儀仗을 더할 것을 간언하자 세종이 이를 따랐다. (『世宗實錄』 14년 4월 26일; 22년 2월 22일)

55 인조께서는 … 하였으며: 인조仁祖가 혼인하여 출궁한 대군들에게 “너희들은 비록 나의 아들이지만, 이미 궁을 나갔으니 바깥사람이다. 제왕의 집안에는 예법이 있어왔으니 안팎의 구별을 엄히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어린 궁녀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다. (『鶴巖集』 「長陵遷葬誌文」)

56 일찍이 … 드리웠습니다: 광해군 때, 측근이었던 상궁 김개시金介屎, 이이첨李爾瞻, 박흥구朴弘壽 등이 뇌물을 받고 정사를 농단했고, 인조가 이를 반정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다. (『仁祖實錄』 1년 3월 13일) 인조는 평소에도 늘 광해군 때의 조정을 거울삼아 경계하였고, 세자에게도 “지난 날에 밖에서는 외척과 권간權奸, 안에서는 내시와 궁첩들이 뇌물을 자행하고 서로 의탁하여, 처음에는 사사로이 바쳐 먹여주고 나중에는 두터운 정을 맺어 형벌을 벗어나고 벼슬을 꺾어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이는 다 탐욕이 끝이 없는 어둡고 약한 광해의 성품 때문으로, 마침내 필부가 되려 하여도 될 수 없었다.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그 기미를 힘껏 막으니, 정사에 임하고 일을 처치하는 데에 다시는 뽀매이고 끌리는 것이 없었고 심신心神도 편안함을 깨달았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 친히 보는 것이거니와, 뒷날에도 이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仁祖實錄』 「仁祖大王行狀」)

행驥幸이 뇌물을 받아 정사를 어지럽힌 폐단을 거론하여 후손에게 경계를 드리웠습니다.⁵⁶ 현묘顯廟(현종) 때는 궁금宮禁에 일에 대해 말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만약 내게 사의私意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는가.”⁵⁷라고 하교하시고 더욱 경칙警飭하였습니다. 숙묘肅廟(숙종) 때는 어떤 유현儒賢이 여인이 궁에 출입하는 일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신부信符가 없으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라.”⁵⁸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국사國史에 수록되어 있어 진실로 본보기⁵⁹로 삼을 만합니다. 돌아보건대 이제, 앞의 열조烈祖를 좇아 가법家法을 힘써 따르신다면, 꺾 안의 정사에 대해 신하들이 ‘말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본을 바로잡는 도道가 모두 그 시작에 있으니 이에 신중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궁위가 바르고 엄숙해짐은 반드시 위엄 있는 목소리와 얼굴, 절제된 은혜와 마음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름으로써 이끌고 공변됨으로써 처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극기克己하는 공부를 미루어 궁인들로 하여금 공경하여 따르게 하고 우리의 형가刑家の 교화⁶⁰를 다하여 보고 느끼게 한다면, 상하上下와 준비尊卑가 각자 그 질서를 따라 왕후의 덕은 황상黃裳의 길함⁶¹에 알맞고 시어侍御하는 후궁은 소성小星의 분수⁶²를 편안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엄숙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화기와氣가 가득하고 건강乾綱 아래

57 현묘顯廟 … 하겠는가: 간관諫官이 척속戚屬이나 궁중의 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자, 현종이 “내가 진실로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뜻이 없다면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顯宗實錄』, 「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行狀」)

58 숙묘肅廟 … 하라: 박세채朴世采가 궁 밖의 사람이 제멋대로 궁에 출입할 수 없도록 신부信符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간언하자 숙종이 이를 따랐다. (『肅宗實錄』 9년 4월 8일)

59 본보기: 원문의 “柯檻”을 풀이한 말이다. 맥락상 ‘가’는 『시경』 「벌가伐柯」의 “도끼 자루용 재목을 베나니, 그 기준이 멀리 있지 않다네.[伐柯伐柯 其則不遠]”에서 유래한 ‘법규’, ‘본보기’의 뜻과 같은 것으로 보아, 원문의 ‘檻’을 거울을 의미하는 ‘鑑’의 뜻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60 형가刑家の 교화: 가정이 스스로 모범이 되어 집안을 교화함을 말한다. 『주역』 가인괘家人卦 구오九五 상象에 “지어미는 집안의 모범이 되는 이를 사랑하고, 지아비는 집안의 돕는 이를 사랑한다.[婦愛其刑家 夫愛其內助]”라고 하였다.

61 황상黃裳의 길함: 왕후의 미덕을 말한다. 『주역』 곤괘坤卦 육오六五 효사爻辭에 “그 덕이 황색 치마와 같으니, 크게 선하여 길하다.[黃裳元吉]”라고 하였는데, 이는 여자가 존위尊位에 자리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순한 덕이 내면에 쌓여서 외면에 드러나므로 크게 길하다는 뜻이다.

62 소성小星의 분수: 후궁으로서의 분수를 말한다. 『시경』 「소성小星」에 “희미한 저 작은 별이여, 세 개와 다섯 개가 동쪽에 있다. 조심조심 밤길을 가서 이른 아침과 저녁에 임금의 처소에 있으니 이는 운명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네.[嘒彼小星 三五在東 肅肅宵征 夙夜在公 寔命不同]”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하여 후세에는 첩을 소성이라 하게 되었다. 후궁은 군주를 모실 적에 하룻밤을 독차지하지 못하여 초저녁에 가서 군주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왔다가 새벽이면 다시 군주의 침소에 가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데 그쳤다.

유칙柔則이 따른다면, 육궁六宮의 구빈九嬪 중에 혹여라도 그릇된 도道로 간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어찌 총폐寵嬖와 여알女謁⁶³이 군주의 도道에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자程子가 『주역』 가인 家人卦의 단사象辭에 대해 논하면서 “가인家人의 도는 여자가 바른 데서 이로우니, 여자가 바르면 가도家道가 바르게 된다. ‘여자가 바른 것[女貞]’ 만 말한 것은, 여자가 바르면 남자가 바른 것을 알 수 있어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여자가 바른 것[女貞]’ 은 ‘집안을 다스리는 것[齊家]’ 을 말하며, 남자가 바른 것[男正]’ 은 ‘몸을 닦는 것[修身]’ 을 말합니다. 몸을 닦지 않고서 집을 잘 다스리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학』에서 몸을 닦는 것을 집안을 다스리는 일의 근본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3 여알女謁: 군주의 총애를 받는 여자를 통해 인사나 이익에 관한 일로 청탁하는 것이다.

어근습馭近習

근습¹을 제어하다

법조 法條

||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의 일이다. 태중대부太中大夫 등통鄧通을 총애하여 촉蜀 땅의 동산銅山을 내려 돈을 주조하게 하였고, 상으로 수백만 전을 하사하였다. 승상丞相 신도가申屠嘉가 들어가 조회할 적에, 등통이 문제의 곁에 자리 잡고 방자하게 굴었다. 신도가가 조회가 파하고 승상부丞相府에 앉아서 격문檄文으로 등통을 부르기를 “승상부로 오라. 오지 않으면 장차 목을 베겠다.”라고 하였다. 등통이 들어가 문제에게 말하자, 문제가 “너는 우선 가라. 내가 곧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등통이 승상부에 이르러 맨발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자, 신도가가 꾸짖기를 “등통 너는 소신小臣으로서 대전大殿에서 방자하게 굴었으니, 이는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다. 응당 참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문제는 등통이 이미 승상에게 곤욕을 당했을 시점을 헤아려 사자에게 부절을 가지고 가 등통을 부르고 승상에게 “이 자는 내 놀릿감에 불과할 뿐이니, 그대는 풀어 주라.”라고 하였다. 등통이 돌아와 울면서 “승상이 신을 죽일 뻔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전한 무제前漢武帝가 두 태주竇太主²의 집에 거둥하였는데, 두 태주에게 사랑받던 주옥珠玉을 파는 아이 동언董偃³을 보고 그에게 의관을 하사하고 술시중을 들게 하였다. 이후에

1 근습: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며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환관이나 궁첩宮媵 등을 가리킨다.

2 두 태주竇太主: 전한 문제와 두 황후竇皇后의 딸이자 무제武帝의 고모인 관도장공주館陶長公主 유표劉嫖(?~기원전 116)이다. 당읍후堂邑侯인 진오陳午와 혼인하여 당읍대장공주堂邑大長公主라고 불렸으며, 진오와 낳은 딸인 진아교陳阿嬌가 무제의 황후가 되었다.

3 동언董偃: 어머니와 함께 구슬을 팔아서 먹고살던 자인데, 무제의 고모인 두 태주를 섬기다가 무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漢書』「東方朔傳」)

항상 무제를 시종하여 북궁北宮에서 노닐고, 평락관平樂觀에서 말을 달렸다. 무제가 선실宣室에서 술자리를 베풀 적에 동언을 들이자, 중랑장中郎將 동방삭東方朔이 창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⁴ “동언은 참형에 처해야 될 죄가 세 가지가 있으니, 신하로서 사사로이 공주를 모신 것이 첫 번째 죄요, 혼인의 예를 어지럽힌 것이 두 번째 죄요, 폐하께서 한창 육경六經에 전념하셔야 하는데 동언이 도리어 사치에 힘써 사냥의 즐거움과 이목의 욕심을 다하게 한 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선실은 선제先帝의 정전正殿이니 법도에 맞는 정사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무제가 “좋다.”라고 하고 중지하라는 명을 내리니, 이로부터 동언의 총애가 쇠하였다.

|| 후한 순제後漢順帝⁵가 즉위할 적에 유모 송아宋娥⁶가 그 모의에 참여하였기에 순제가 송아를 산양군山陽君에 봉하였다. 상서령尙書丞 좌웅左雄이 간하기를 “『상서尙書』의 고사에 유모에게 작읍爵邑을 내리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선제先帝[안제安帝] 때에 아모阿母 왕성王聖⁷이 야왕군野王君으로 봉해졌는데, 왕성은 참적讖賊하고 폐립廢立하는 화를 만들었으므로, 살아서는 천하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고 죽어서는 해내海內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 천만 전을 유모에게 지급하길 청합니다.”라고 하자, 순제가 그 말을 따랐다.

|| 당 현종唐玄宗에게 이름이 황편黃輿인 시종드는 난쟁이가 있었는데, 성격이 민첩하고 교활하였다. 현종이 그에게 의지해서 다녔으므로 ‘육귀肉几’라 하였으며, 물품을 매우 후하게 하사하였다. 하루는 늦게 입궁하자 현종이 이를 괴이하게 여겼다. 황편이 “신이 길에서 포도관捕盜官을 만났는데, 그와 길을 다투다가 흔들어서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4 창을 … 말했다: 원문의 “辟戟”을 풀이한 말이다. ‘辟戟’은 ‘버린다[捐]’는 뜻으로, 이때 동방삭東方朔이 전殿 아래에서 무제의 곁에서 창을 들고 시위侍衛하고 있었으므로 아뢰기 전에 우선 창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이다. (『資治通鑑』 「漢紀」)

5 후한 순제後漢順帝: 115~144. 후한 제8대 황제 유보劉保로, 재위 기간 126년에서 144년이다. 안제安帝의 맏아들로 황태자가 되었는데, 엄 황후嚴皇后의 모략으로 폐위되어 제음왕濟陰王으로 강등되었다. 안제가 죽자, 엄 황후가 북향후北鄉侯 유의劉懿를 세우고 수렴청정을 하였다. 얼마 뒤 유의가 죽자, 손정孫程 등 19명의 환관이 순제를 즉위시켰다. 순제는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제후에 봉하고 양자를 통한 세습제를 허용했고, 이로 인해 환관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순제는 양남梁妘을 황후로 삼고 오빠인 양기梁冀를 등용하였는데, 이들이 전권을 휘두르며 조정을 장악하였다. 환관과 외척의 전횡으로 정치는 부패했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6 송아宋娥: 후한 순제의 유모로, 순제가 즉위하는 일에 참여하여 산양군에 봉해졌다. 조정의 정사에 간여하여 나라를 위망危亡에 이르게 하였다.

7 왕성王聖: 후한 안제의 유모로, 등 태후鄧太后로부터 안제를 보호하여 즉위하는 데 공을 세워 야왕군에 봉해졌다. 등 태후가 죽은 뒤 황제의 총애를 받고 방자하였으며, 그의 딸 백영은 궁궐을 출입하며 간사한 짓을 자행하였다. (『後漢書』 「順帝紀」)

이 때문에 늦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계단을 내려가서 머리를 조아렸다. 얼마 후 경조윤京兆尹이 그 실상을 아뢰자, 현종이 즉시 꾸짖어 내쫓고 유사有司에게 넘겨 장살杖殺하였다.⁸

|| 당 선종唐宣宗 때의 일이다. 내원사內園使 이경식李敬寔이 정량鄭耒을 만났는데, 말을 피하지 않았다. 정량이 아뢰자 선종이 이경식을 꾸짖었다. 그러자 이경식이 “공봉관供奉官은 관례상 피하지 않는 법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선종이 “네가 칙명을 받들었다면 길을 가로막더라도 괜찮지만, 어찌 사사로이 외출하면서 재상을 피하지 않는단 말이나.”라고 하고, 그의 품계를 낮추고 남아南牙⁹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태종北宋太宗 때의 일이다. 중서성中書省에서 촉蜀을 토벌한 공으로 왕계은王繼恩¹⁰을 선취사宣徽使에 제수하고자 하였다. 태종이 “짐은 환관이 정사에 간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선취사는 집정執政에 관계된 자리이니, 다른 관직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이부吏部에 유시하기를 “『주례』에 ‘엄시闕寺는 100인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비록 옛날로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지나치게 많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또 시신侍臣에게 “이 무리는 옛날부터 선량한 자가 백에 한 둘이었다. 이목耳目으로 삼으면 이목이 가려지고, 복심腹心으로 삼으면 복심이 병 든다. 이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만 항상 계칙하여 법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니, 법을 두려워하게 되면 검속하게 될 것이다. 내시가 책을 읽는 것을 금하고, 제사諸司로 하여금 내감內監과 이문移文[부서 간에 주고받는 문서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거듭 시신에게 “전대의 임금들은 환시宦寺가 외신外臣과 통교하는 것을 내버려두었으니, 이 때문에 국가가 혼란스러워

8 얼마 … 장살杖殺하였다: 황편이 일개 시종으로서 포도관捕盜官을 말에서 떨어뜨리는 방자한 짓을 하였지만, 현종은 그를 아꼈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고발하는 장주후張가 없으면 용서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실상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으므로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린 것이다. (『資治通鑑』「唐紀」)

9 남아南牙: 궁 남쪽에 있는 관아로 재상들이 업무를 보는 곳이다.

10 왕계은王繼恩: ?~999. 환관으로, 장씨張氏에게서 양육되어 이름을 덕군德鈞이라 했는데, 태조 때에 성을 되찾고 이름을 하사받았다. 태종의 총애를 받아 간사한 짓을 자행하였다. 태종이 죽고 진종眞宗이 계승할 때, 태자인 진종을 제거하고 원엄元儼태종의 8번째 아들을 주대하려고 하다가 축출되었다.

졌다. 내가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미연에 경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 명 영종明英宗 때의 일이다. 태황태후 장씨張氏¹¹가 편전에 거동하여 태감 왕진王振¹²을 불러서 “내가 황제를 모심이 대부분 율법에 어긋나니, 지금 너에게 사형을 내려야겠다.”라고 선유宣諭하니, 여관女官이 왕진의 목에 칼을 대었다. 영종이 그를 위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하자, 태후가 “황제는 나이가 어리니 어찌 이 무리가 국가에 화를 불러일으킬을 알겠소. 내가 일단은 왕진을 용서할 테니, 이후론 국사에 간여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 명 헌종明憲宗¹³ 때의 일이다. 황태자가 출각出閣¹⁴하여 강화할 적에, 내감 담길覃吉¹⁵이 대체大體를 잘 알고 경서經書와 사서史書에 능통하였으며, 행동거지를 모두 바르게 하여 인도하였다. 한가할 때면 천하의 민정民情, 농사, 군무부터 환관이 권세를 장악했을 때의 여러 폐단까지 모두 말하였다. 그는 “내가 늙었으니 어찌 부귀를 바라겠는가. 다만 천하에 어진 군주를 있게 한다면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헌종이 일찍이 동궁에게 황실의 장원莊園을 하사하자, 담길이 받아선 안 되는 이유를 갖춰 말하며 “천하의 산천은 모두 군주의 소유니, 장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라고 하니, 황태자가 결국 사양하였다.

|| 명 세종明世宗이 병부상서兵部尙書 팽택彭澤¹⁶의 의견을 따라 조서를 내려 환관의 아우와 조카가 금의위錦衣衛의 관원이 되기를 청탁하는 것¹⁷을 금지하였다. 또 광동廣東의 주지珠

11 태황태후 장씨張氏: 명 인종明仁宗의 황후이자 선종宣宗의 모친인 성효소황후誠孝昭皇后(1379~1442)이다. 아들 선종이 즉위하면서 황태후가 되었으며, 손자 영종英宗이 즉위한 후 태황태후가 되었다.

12 왕진王振: 「정궁위正宮閹」 법조 25번 각주 참조.

13 명 헌종明憲宗: 1447~1487. 명 제8대 황제 주견심朱見深으로, 재위 기간은 1464년에서 1487년이다. 영종英宗의 아들로, 영종이 오이라트(瓦剌)에게 포로가 됨에 따라 숙부 대종代宗이 즉위하자, 태후의 명에 따라 태자가 되었다. 이후 영종이 복위하게 되자, 영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귀비貴妃 만정아萬貞兒를 지나치게 총애하여 그녀가 환관 왕직汪直, 양방梁芳 등과 결탁하여 권력을 전횡하는 것을 방관하였다. 방술을 지나치게 믿어 방사方士와 승도僧道를 고관으로 임명하고 기존의 사찰기구 동창東廠 외에도 서창西廠까지 추가로 세워 신하들을 감시하고 처형하였다.

14 출각出閣: 황자가 장성하여 사궁私宮을 짓고 나가서 사는 것과 황녀가 하가下嫁하는 것이다.

15 담길覃吉: 명 헌종明憲宗 때 내감관內監官의 태감으로, 당시 황태자였던 효종孝宗의 스승이었다.

16 팽택彭澤: 1459~1530. 자는 제물濟物이다. 관직이 병부상서, 태자태보太子太保에 이르렀다. 병부상서에 기용되어 군정을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池¹⁸와 같은 지방의 일에 내신이 간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II 명 의종¹⁹ 때, 병부주사^{兵部主事} 전원각^{錢元愨}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위충현^{魏忠賢}²⁰에 대해 말하자면, 공덕에 대한 칭송이 천하에 가득함은 왕망^{王莽}이 망령되어 부명^{符命}을 끌어온 일과 거의 같고,²¹ 공공, 후候, 백伯 세 등급의 작위를 짓비린내 나는 아이에게까지 준 것²²은 양기^{梁冀}의 집안 다섯 형제가 후候에 봉해진 일과 거의 같고,²³ 사인^{私人}을 늘어놓아 요진^{要津}에 나누어 배치함은 왕연^{王衍}이 교활하게 잔꾀를 낸 것과 거의 같고,²⁴ 진귀한 보물을 수레에 실어 숙녕^{肅寧}²⁵에 쌓아 둔 것은 동탁^{董卓}이 미오^鄆를 건

17 환관의 … 것: 금의위^{錦衣衛}는 황제의 직속 친위대이자 감찰기구였다. 초기에 명 태조^{明太祖}의 개인 친위대로 창설되었으나, 점차 측근과 공신을 감시하는 역할이 강해졌다. 소속 관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었고 신분 세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금의위의 관원이 되고자 청탁하는 폐단이 생겼다. 환관은 일단 종애를 얻고 나면 처는 봉전^{封典}을 받고 자손은 대대로 관직을 세습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친족들조차도 작위를 받고 관직에 봉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예컨대, 영종^{英宗} 때에 환관 왕진^{王振}의 조카인 왕림^{王林}을 금의위로 삼아 지휘첨사를 세습토록 하고, 전승^{錢僉保}의 조카인 전량^{錢亮}, 고양^{高讓}의 조카인 고옥^{高玉}, 조길상^{曹吉祥}의 아우인 조정^{曹整}, 채충^{蔡忠}의 조카 채영^{蔡英}을 금의위로 삼아 천후에 버금가는 봉지를 세습토록 하였다. (『弇山堂別集』 「中官考」)

18 주지^{朱池}: 광동성 산두시^{汕頭市}에 위치해있으며, 진주가 많이 난다고 하여 주지라 명명하였다. 명대^{明代}에는 황실에서 이곳에 환관을 보내 주지를 감독하고 지키게 하여, 이익을 독점하였다.

19 명 의종^{明毅宗}: 1611~1644. 명 제16대 황제 주유검^{朱由檢}으로, 재위 기간은 1628년에서 1644년이다. 연호를 따라 ‘승정제^{崇禎帝}’로 불리고, 묘호는 의종^{毅宗}(혹은 사중^{思宗}) 또는 희종^{熹宗}이다. 즉위하면서 권력을 전횡하던 환관 위충현^{魏忠賢}을 제거하면서 쇠락한 국세를 만회하려 노력하였으나, 잦은 인사 교체와 정치적 실책으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후금^{後金}의 침입과 민란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자성^{李自成}의 반란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자 자살하였다.

20 위충현^{魏忠賢}: ?~1627. 본명은 이진중^{李進忠}이다. 스스로 거세하여 환관이 되었으며, 희종의 종애를 받아 충현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희종의 유모 객씨^{客氏}와 내통하여 조정을 장악하고, 전권을 휘둘러 공포정치를 행함으로써 명의 멸망을 촉진했다. (『明史』 「魏忠賢傳」)

21 왕망^{王莽}이 … 같고: 전한 평제^{前漢平帝} 때, 맹통^{孟通}이란 자가 우물을 파다가 흰 돌을 얻었는데, 위는 원형이고 아래는 모가 진 것에 “안한공^{安漢公} 왕망으로 황제를 삼을 것을 고한다.”라는 붉은 글자가 쓰여 있었다. 왕망이 이를 빙자하여 한을 찬탈하고 즉위하였다. (『漢書』 「王莽傳」)

22 공공 … 것: 명명은 이전에 공·후·백·자·남 다섯 등급의 관직 제도를 공·후·백 세 등급으로 개혁하였는데, 위충현의 조카 위양경^{魏良卿}은 숙녕^{肅寧}伯, 숙녕^{肅寧}侯, 영국^{寧國}公에 봉해졌고, 위양동^{魏良棟}은 세 살 때 동안^{東安}侯, 위봉익^{魏鳳翼}은 두 살 때 안평^{安平}伯에 봉해진 일을 가리킨다.

23 양기^{梁冀}의 … 같고: 양기(?~159)는 후한 순제^{後漢順帝}의 황후인 순열황후^{順烈皇后}의 오라비이다. 대장군이 되어 권력을 남용하였으며, 질제^{質帝}를 옹립하였으나 자신의 권력 남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독살하고 환제^{桓帝}를 다시 옹립하였다. 집안이 크게 번창하여 한 기문에 다섯 명의 형제가 모두 후候에 봉해져 부귀가 극에 이르렀으나, 결국 환제에게 처단되었다. (『後漢書』 「梁冀傳」)

24 왕연^{王衍}이 … 같고: 왕연(256~311)은 서진^{西晉} 혜제^{惠帝} 때의 문신으로, 경국^{經國}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보신책에만 급급했다. 동생 왕징^{王澄}을 형주 도독^{荊州都督}으로 삼고, 친족 동생 왕돈^{王敦}을 청주 자사^{青州刺史}로 삼고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주는 장강^{長江}과 한수^{漢水}의 견고함이 있고, 청주는 바다를 뒤로 한 험준함이 있소. 경첩들 두 사람은 외방에 있고 나는 중앙에 있으니, 충분히 세 개의 굴로 삼을 만하오.”라고 하였으니, 사람들이 이를 두고 ‘교토삼굴^{狡兔三窟}’이라 하였다. 후에 석륵^{石勒}에게 사로잡혔는데, 그에게 징제^隳할 것을 권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살해되었다. (『晉書』 「王衍傳」)

고하게 한 일과 거의 같으며,²⁶ 무고誣告하는 길을 넓혀 사류士類를 제거한 것은 조절曹節과 왕보王甫가 도당徒黨을 결성하고 여러 사람을 연루시킨 일과 거의 같으며,²⁷ 은밀히 사사死士를 길러 스스로를 호위할 병사를 배치함은 환온桓溫이 벽 뒤에 사람을 둔 것²⁸과 거의 같습니다.” 상소가 올라가자 위충현을 봉양鳳陽에 안치하고 집안 재산을 몰수하도록 명하니, 위충현이 죄를 면치 못할 것을 알고 밤에 스스로 목을 매었다. 당시에 환관의 세력이 매우 성하여 외정外廷이 흉흉하여 다른 변고가 있을까 염려하였으나, 의종은 동요하지 않고 신명神命을 발휘하여 마침내 원흉을 제거하고 다시 사직社稷을 안정시켰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송 평공宋平公²⁹이 졸하였다. 당초에 원공元公³⁰이 시인寺人 류柳를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였는데, 상鬻을 치를 때에 류가 원공의 자리에 숯불을 피워 따뜻하게 데웠다가 원공이 이를 때쯤 치웠다. 그러자 장례가 끝난 뒤에 다시 총애하였다.³¹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25 숙녕肅寧: 위충현의 고향이 하간부河間府 숙녕이었다.

26 동탁董卓이 … 같으며: 후한後漢 초평初平 연간에 동탁이 미현眉縣에 산과 같이 높은 언덕을 쌓고 부르기를 ‘만세오萬歲塢’라 하고, 이곳에 수많은 재물을 축적하였다.

27 조절曹節과 … 같으며: 조절과 왕보는 모두 후한 영제後漢靈帝 때 환관으로, 정권을 농단하여 나라를 망친 자들이다. 영제를 책립한 공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 함께 손발을 맞춰 태부太傅 진번陳蕃과 대장군 두무竇武를 모함하여 죽이고, 발해왕渤海王 회懼의 모반 사건을 꾸며 관련자들을 복주伏誅시켰다. (『後漢書』 「宦者傳」)

28 환온桓溫이 … 것: 환온은 동진東晉 초국護國 용항龍亢 사람이다. 환온이 일찍이 역심逆心을 품고 왕탄지王坦之와 사안謝安과 만났을 적에, 참모인 치초郗超를 시켜 장막 안에 누워서 그들의 말을 엿듣도록 하였다. 마침 바람에 장막이 걸려 탄로가 나자, 사안이 “천자에게 도가 있으면 지킴이 사방 이웃에 있는 것인데, 명공은 어찌하여 굳이 벽 뒤에 사람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天子有道 守在四鄰 明公何須壁後置人]”라고 하였다. (『晉書』 「謝安傳」)

29 송 평공宋平公: 춘추 시대 송의 군주로, 성은 자부, 이름은 성성이다. 공공공公의 아들로, 형인 태자 비肥가 사마탕택司馬蕩에게 살해당한 뒤, 대공戴公의 자손인 화원華元的 옹립으로 군주가 되었다. 시인寺人 혜장이려惠牆伊戾의 참소를 듣고 태자 좌좌를 죽이고 공자 좌좌원공元公을 태자로 책봉했다.

30 원공元公: 춘추 시대 송의 군주로, 성은 자부, 이름은 좌좌이다. 이복형제인 태자 좌좌가 시인寺人 혜장이려惠牆伊戾의 모함을 받아 자살하고 나서 태자가 되었다. 권세를 지닌 화씨華氏, 상씨向氏를 제압하고 공실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31 다시 총애하였다: 송 원공宋元公이 태자 시절에 시인寺人 류柳를 미워하니 화합비華合比가 류를 죽이겠다고 나섰다. 이에 류는 시인寺人 혜장이려惠牆伊戾가 태자 좌좌가 자살하게 만든 방법과 똑같이 불온한 맹약의 글을 위조하여 구덩이에 묻고 평공에게 무고함으로써 화합비를 축출하였다. 원공은 이러한 류를 미워했다가도 자신에게 아첨하는 모습을 보고 총애한 것이다.

|| 전한 원제前漢元帝가 소망지蕭望之³²의 능력을 중히 여겨 그를 의지하여 재상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홍공弘恭과 석현石顯³³ 등이 고변하였다. “망지가 원망하고 있으니, 그를 감옥에 가두어 양심을 품은 마음을 막지 않는다면 성조의 두터운 은혜를 베풀 길이 없습니다.” 원제가 “소 태부太傅는 원래 강직한 사람이니, 어찌 옥리에게 나아가려 하겠는가?” 라고 하자, 석현 등이 “소망지가 죄에 걸린 것은 말로 인한 작은 허물이니, 굳이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원제가 아뢰는 대로 하라고 허락하니, 소망지가 짐독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천자가 놀라 손을 치며 “과연 나의 어진 스승을 죽였구나.”라고 하니, 홍공과 석현이 관을 벗고 사죄한 뒤에야 책망하기를 멈췄다.

|| 전한 애제前漢哀帝가 동현董賢³⁴을 위해 큰 집을 지었는데, 궁궐 방향으로 문을 세우게 하고 궁궐의 수로水路를 끌어 동현의 원지園池에 물을 대며 사람을 보내 집 짓는 것을 감독하게 하니, 종묘宗廟를 다스리는 것보다 심하였다. 애제가 동현에게 2천 호戶를 더 봉해 주는 조서를 내리자, 승상丞相 왕가王嘉³⁵가 조서를 봉함하여 되돌려 보내고서 “고안후高安侯 동현은 아첨하여 총애 받는 신하입니다. 폐하께서 작위를 쏟아주어 귀하게 하고 재화를 몰아주어 부유하게 하고 지존의 것을 덜어 총애하셨기에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발생하며 삼조三朝³⁶에 일식이 있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음陰이 양陽을 침범한 경계警戒입니다.”라고 하였다. 애제가 노하여 왕가를 불러 조서를 내려 하옥시키자 왕가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또 동현을 대사마大司馬 위장군衛將軍으로 삼았는데, 그 책문冊文에 “너를 공공으로 세워 한漢을 보필하는 신하로 삼으니, 가서 네 마음을 다 쏟아 진실로 그 중추를 잡아라.”라고 하였다. 이때 동현의 나이가 22세였다. 중랑장中郎將 소함蕭咸이 왕굉王

32 소망지蕭望之: ?~기원전 47. 자는 장천長倩이다. 농민 출신이었으나, 후창后蒼에게 『제시齊詩』를 배웠고 하후승夏侯勝에게 『논어』와 예복禮服을 배웠으며, 백기백희에게도 수학하는 등 학업을 닦아 장안에서 유명해졌다. 벼슬은 어사대부御史大夫와 태자태부太子太傅 등을 지냈다. 홍공弘恭, 석현石顯 등 환관의 전횡을 막아 제도를 개혁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의 모함에 빠져 자살하였다.

33 홍공弘恭과 석현石顯: 전한 선제前漢宣帝, 원제元帝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농단한 환관으로, 홍공은 선제 때에 중서령中書令이 되고, 석현은 원제 때에 홍공의 뒤를 이어 중서령이 되었다. 이들은 원제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가 원제가 병을 앓게 되자 온갖 정사를 마음대로 하였고, 선제의 유조遺詔를 받아 원제를 보필하던 소망지蕭望之 등을 무함하여 죽였다.

34 동현董賢: 『경사찬敬事天』 계조戒條 29번 각주 참조.

35 왕가王嘉: ?~기원전 2. 자는 공중公仲이다. 간신에게 식음을 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극간極諫하다 애제의 노여움을 사서 하옥되었다.

36 삼조三朝: 년, 월, 일의 시작인 정월 초하루를 말한다.

闊에게 은밀히 말하였다. “대사마의 책문은 바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위한 글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가私家の 자식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 후한 안제後漢安帝 때 내충內寵이 매우 많았는데, 이 중에 아모阿母 왕성王聖과 왕성의 딸 백영伯營이 궁중에 출입하며 간악한 자들의 뇌물을 받았다. 안제가 또 왕성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길이가 몇 리나 이어져 거리를 차지하고 건물을 꾸밈에 있어 온갖 기교를 다 하였다. 주광周廣과 사운謝暉의 무리가 근행近幸에 의탁하여 위엄을 나누어 갖고 권력을 공유하여, 주현州縣에 청탁을 넣고 대신大臣을 경동傾動시켰다.

|| 후한 안제 때의 일이다. 중상시 번풍樊豐³⁷이 거짓으로 조서를 지어내 사농司農의 전곡錢穀과 도형徒刑으로 복역하고 있는 대장大匠들과 재목을 징발하여 가사家舍와 원지園池, 여관廬觀을 지었다. 태위太尉 양진楊震³⁸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경사京師의 땅이 진동하였는데, 토소는 구궁九宮 가운데 중궁中宮³⁹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는 중관中官과 근신이 권력을 잡아 전횡하는 상입니다. 행신倖臣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법도를 넘어 저택을 성대하게 짓고 위복威福을 농단하고 있으니, 폐하께서는 건강乾剛의 덕을 펼쳐 황천皇天의 경계를 받드소서.” 이때 마침 하간河間的 남자男子 조등趙騰이 글을 올려 잘잘못을 지적하자, 그를 옥에 잡아 가두고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진이 간하였으나 듣지 않고, 마침내 조등을 죽여 저자에 시체를 버려두었다. 번풍 등이 양진이 분노하고 원망한다고 참소하니, 책서策書를 내려 양진의 인수印綬를 거두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양진이 짐독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 후한 영제後漢靈帝 때의 일이다. 의랑議郎 채옹蔡邕⁴⁰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지금 무지개가 떨어지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것은 모두 부인이 정사에 관여한 결과입니다. 예

37 번풍樊豐: ?~125. 안제가 친정하자 외척인 경보耿寶에게 붙어 환관 강경江京, 이윤李膺, 유모 왕성王聖과 함께 정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황태자 유보劉保를 폐위하고 제음왕濟陰王으로 만들었다. 안제가 죽은 뒤 외척 염현閔顯에 의해 처형되었다.

38 양진楊震: 54~124. 자는 백기伯起이다. 50세에 처음 출사하여 여러 고을의 군수를 역임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처신하였다. 안제 즉위 후 태복太僕, 사도司徒 등을 거쳐 태위太尉가 되었다. 당시 환관들이 조정을 마음대로 하니 양진이 노하여 누차 간언하였으나 번풍樊豐의 모함을 받고 본군으로 돌아오는 도중 음독하여 죽었다. (『後漢書』「楊震傳」)

39 중궁中宮: 구궁九宮 중에 중앙에 위치한 궁을 가리킨다. 아홉 개의 방위라는 뜻의 구궁은 낙서洛書의 수에 근본을 둔 것으로, 중앙의 수 5는 오행五行의 토소에 해당한다.

전에 유모 조요⁴¹가 천하에 귀중하게 여겨지자 참소하고 아첨하여 교만방자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영락궁^{永樂宮}의 문지기 곽옥^{霍玉}이 여우나 쥐새끼처럼⁴² 권세에 의지하여 또 간사한 짓을 하였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떠들썩하게 말하는 가운데 ‘정 대인^{程大人}⁴³이란 자가 있는데, 떠도는 말을 살펴보니 장차 나라의 환란이 될 것이다.’라고 하니, 응당 철저히 방비하고 금령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영제가 그의 글을 보고서 탄식하였다. 조절^{曹節}⁴⁴이 몰래 훔쳐보고는 사람을 시켜 근거 없는 글로 채옹을 무함하여 기시^{棄市}⁴⁵하려 하였다. 중상시^{中常侍} 여강^{呂強}이 채옹을 위해 힘써 신원^{伸冤}을 청한 덕에 머리가 깎이고 칼이 씌워져 삭방^{朔方}으로 귀양 보내졌다.

|| 후한 영제 때의 일이다. 중상시^{中常侍} 조충^{趙忠}과 장양^{張讓} 등의 십상시^{十常侍}⁴⁶가 총애를 받아 후회에 봉해졌다. 영제가 항상 “장 상시^{張常侍}는 나의 아버지요, 조 상시^{趙常侍}는 나의 어머니이다.”라고 하니, 환관들이 더욱더 교만해져 그들의 집을 궁궐처럼 지었다. 영제가 영안궁^{永安宮}의 후대^{候臺}에 오르려 하였는데, 자신의 거처를 보게 될까 두려워한 환관이 중대부^{中大夫}를 시켜 간하기를 “천자는 높은 곳에 올라선 안 되니, 높은 곳에 오르면 백성들이 흩어집니다.”라고 하였다. 영제가 이때부터 다시는 대사^{臺榭}에 오르지 못하였다.

|| 북제^{北齊}의 군주 고위^{高緯} 때의 일이다. 궁비^{宮婢} 육영^{陸令萱}⁴⁷이 적몰^{籍沒}되어 액정^{掖庭}에 들어왔으며, 그의 아들 제파^{提婆} 또한 적몰되어 노비가 되었다. 고위가 갓난아이였

40 채옹^{蔡邕}: 132~192. 여류 문인 채염^{蔡琰}의 아버지이자 완우^{阮瑀}의 스승이다. 좌중랑장^{左中郎將} 등을 역임하였으며, 비백체^{飛白體}를 창시하고 문장에 뛰어났다. 저서에는 『독단^{獨斷}』, 『채중랑집^{蔡中郎集}』 등이 있다.

41 조요^{趙堯}: 132~167. 후한 영제^{後漢靈帝}의 유모로, 중상시^{中常侍} 조절^{曹節}, 왕보^{王甫} 등과 결탁하여 국정을 농단하였다.

42 여우나 쥐새끼처럼: 원문의 “城社”는 ‘성호사사^{城狐社鼠}’의 준말이다. 성의 여우와 사지의 쥐로, 임금 곁에서 알랑거리는 간신을 비유한다.

43 정 대인^{程大人}: 후한 환제^{後漢桓帝}, 영제^{靈帝} 때의 환관 정형^{程璜}을 가리킨다. 궁중에서 늙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중대인^{中大人}이라고 하였으므로 정 대인이라고 한 것이다.

44 조절^{曹節}: ?~181. 후한 영제^{後漢靈帝}를 책립^{冊立}한 공으로 장안향^{長安鄉侯}에 봉해진 뒤에, 환관 왕보^{王甫} 등과 함께 권력을 전횡하였고 조서를 위조하여 대장군^{大將軍} 두무^{竇武}와 태부^{太傅} 진번^{陳蕃}을 죽였다. 사후에 거기장군^{車騎將軍}에 증직되었다.

45 기시^{棄市}: 죄인을 사형에 처하여 그 시체를 시장에 버리는 일이다.

46 십상시^{十常侍}: 후한 영제^{後漢靈帝} 때 권력을 쥐고 나라를 어지럽힌 열 명의 환관으로, 곧 장양^{張讓}, 조충^{趙忠}, 하운^{夏惲}, 곽승^{郭勝}, 손장^{孫璋}, 필남^{畢嵐}, 울송^{栗嵩}, 단규^{段珪}, 고망^{高望}, 장공^{張恭}, 한화^{韓悺}, 송전^{宋典}을 말한다.

47 육영^{陸令萱}: 『정궁위^{正宮闈}』 계조 33번 각주 참조.

을 때 육영훤이 그를 양육하였으므로 고위가 육영훤을 여시중女侍中⁴⁸으로 삼았다. 육영훤이 제파를 데려와 고위를 모시고 온종일 놀게 하였으므로 누차 승진하여 무위대장군 武衛大將軍이 되었다. 궁인 목사리穆舍利는 곡물 황후斛律皇后的 여종이었는데, 목사리의 양모養母가 된 육영훤이 제파의 성을 목씨穆氏로 바꾸었다.⁴⁹ 육영훤 모자의 세력이 내외를 휩쓸어 관직을 팔아먹고 뇌물을 받아 옥사에 개입했다. 한 번 하사품을 받을 때마다 창고가 가득하였으며, 생사여탈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 당 숙종唐肅宗 때의 일이다. 이보국李輔國⁵⁰이 금군禁軍을 전적으로 관장하여 제칙制勅이 반드시 이보국의 압서押署를 거친 뒤에야 시행되었다. 대리시大理寺의 중죄인도 이보국이 모두 풀어 주었으며, 부府와 현縣의 옥사도 모두 보국에게 먼저 보내어 물은 뒤에 시행하니, 환관들이 감히 그 관직을 바로 부르지 못하고 ‘오랑五郎’⁵¹이라고 하였다. 산둥山東의 갑족甲族인 이규李揆⁵²는 이보국을 보면 자제子弟의 예를 행하여 그를 ‘오보五父’라 하였다. 이보국이 대종代宗에게 “대가大家께서는 다만 금중에 거하시고, 바깥일은 늙은 종의 처분을 따르십시오.”⁵³라고 하니, 대종이 내심 불편하였으나, 그가 금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그를 예우하여 ‘상보尙父’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 당 대종唐代宗 때의 일이다. 어조은魚朝恩⁵⁴이 신책군神策軍을 이끄니, 그 세력이 점차 강성

48 여시중女侍中: 외명부外命婦에 속한 여관女官이다. 3품 여관 중에 가장 높으며 어전에서 칼을 찰 수 있었다. 대체로 공주 등 지위를 가진 종실 여성, 황제의 이모, 황후의 친족, 조정중신의 처나 모친 등의 신분을 가진 여성이 임명되었다.

49 궁인 … 바꾸었다: 목사리는 본래 곡물 황후의 시녀였는데, 미모로 복제 후주後主 고위의 눈에 들어 홍덕부인弘德夫人이 되고, 얼마 후 아들 고향高恒을 낳았다. 육영훤은 목사리에게 아첨하여 그녀를 양녀로 들이고 좌황후左皇后에 앉혔으며, 육영훤의 아들 낙제파駱提婆 또한 목사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의 성을 ‘목穆’으로 바꾸었다.

50 이보국李輔國: 「독성효篤聖孝」, 계조 69번 각주 참조.

51 오랑五郎: ‘낭郎’은 노복이 그 주인을 부르는 말로, 이보국이 이씨 집안 형제 중 항렬이 다섯 번째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듯하다.

52 이규李揆: 711~784. 자는 단경端卿이다. 숙종은 이규의 문벌과 인물, 글이 모두 제일이라 하여 “삼절三絶”이라고 칭송하였다.

53 대가大家께서는 … 따르십시오: ‘대가大家’는 궁중의 근신近臣이나 후비后妃가 황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칭호인데, 환관 이보국이 침람하게 황제를 ‘대가’라 칭한 것이다. 숙종이 봉어하자 이보국이 태자였던 대종을 재상에게 데려가 즉위시켰으므로 자신의 공을 믿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54 어조은魚朝恩: 722~770. 대종의 총애를 받고 천하관군용선위처치사天下觀軍容宣慰處置使가 되어 군권軍權을 잡고 정국公鄭國公에 봉해졌다가, 후에 신임을 잃고 처형되었다. (『舊唐書』 「宦官傳」)

해져 신책군을 좌상左廂과 우상右廂으로 나누었다.⁵⁵ 어조은이 북군北軍에 옥을 설치하고 부잣집을 엮어매어 죄를 지었다고 무고하여 가산을 모조리 빼앗았다. 자신이 간여하지 못한 조정의 일이 있으면 번번이 화를 내며 “천하의 일 가운데 나를 통하지 않는 일이 있던가.”라고 하였다. 어조은의 양자 어영휘魚令徽가 아직 어린데도 내급사內給事⁵⁶가 되어 녹의綠衣를 입었는데, 동렬同列과 다투고선 돌아와 어조은에게 일러바쳤다. 어조은이 대종에게 “신의 자식이 관직이 낮아 동료들에게 능멸을 당했으니, 자의紫衣를 내려주시길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대종이 대답하지 않았는데, 유사有司가 이미 자의를 가지고 와 앞에 두니 어영휘가 그것을 입고 사례하였다.

- II 당 문종唐文宗 때의 일이다. 한약韓約⁵⁷이 “금오청사金吾廳事 뒤의 석류나무에 밤사이 감로甘露가 내렸습니다.”라고 상주하니, 문종이 중위中尉 구사량仇士良⁵⁸과 어지홍魚志弘⁵⁹에게 여러 환관들을 이끌고 가서 보게 하였다. 바람이 불어 장막이 들춰지자 매우 많은 병사들이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구사량이 놀라 달아나자, 이훈李訓의 병력이 전각에 올라 환관을 마구잡이로 공격하였다. 구사량 등이 금군을 이끌고 돌아와 궁문을 닫아 걸고 토벌하니, 죽은 자가 천여 명이었으며 널브러진 시체 사이로 피가 흘렀다. 왕애王涯, 왕번王璠, 서원여舒元興, 가속賈餗, 이효본李孝本과 여러 사람을 잡아다 조리돌리고 요참腰斬하였다. 이훈은 봉상鳳翔으로 달아났다가 사로잡혀 참수당하였고, 정주鄭注도 참수당하였다.⁶⁰

55 신책군을 … 나누었다: 신책군神策軍은 당唐 금군禁軍의 명칭으로, 본래 황제의 북아北衙 금군인 북군北軍의 아래에 있었으나, 어조은魚朝恩이 신책군을 맡아 좌우로 나눈 뒤부터 위상이 높아졌다.

56 내급사內給事: 내급사는 일정한 정원은 없으며 내시성內侍省에 소속된 관직이다. 관품은 없으며 여러 관청에 올리는 물품의 내력을 담당하였다. (『資治通鑑』 「唐紀」)

57 한약韓約: ?~835. 자는 중혁重革이다. 금오대장군金吾大將軍으로, 재상 이훈李訓의 신임을 받아 환관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감로지변甘露之變’을 일으켰다가 환관 구사량仇士良의 역습을 받아 실패하고 살해되었다.

58 구사량仇士良: 781~843. 환관으로, 내외오방사內外五坊使를 역임하고 무종武宗 때에는 관군용사觀軍容使에 올랐다. ‘감로지변甘露之變’ 때, 두 제후왕과 한 왕비, 네 재상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59 어지홍魚志弘: 어홍지魚弘志라고도 한다. 문종 때의 환관으로, 구사량과 함께 ‘감로지변’을 제압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60 당 문종唐文宗 … 참수당하였다: 당 문종唐文宗 때, 재상 이훈李訓, 왕애王涯 등이 환관들을 금오청사金吾廳事로 유인하여 살해하고자 하였다가 발각되어 피살되었으니, 이 일을 ‘감로지변甘露之變’이라고 한다. 그 뒤 환관의 세력이 막강해져 정사가 모두 환관에 의해 결정되었다. (『舊唐書』 「文宗紀」)

- || 당 무종⁶¹唐武宗 때의 일이다. 구사량^{仇士良}이 벼슬을 그만두자, 그 일당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를 전송하였다. 구사량이 권력과 충애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천자는 한가롭게 해서는 안 되니, 사치와 향락으로 그의 이목을 즐겁게 해야 한다. 부디 천자가 책을 읽거나 유생을 가까이하게 하지 마라. 저 천자가 전대^{前代}의 흥망성쇠를 보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우리들이 배척당한다.”라고 하였다. 그 일당이 사례하고 떠났다.
- || 당 희종⁶²唐僖宗이 즉위하고 전영자^{田令孜}⁶³를 추밀사^{樞密使}로 삼고 정사를 일임하여 그를 아보^{阿父}라 불렀다. 전령자가 권력을 독점하여 뇌물을 받으니, 관직을 제수하는 일이 모두 황제를 거치지 않았다. 희종을 설득하여 동시^{東市}와 서시^{西市}의 상인들의 보화^{寶貨}에 세금을 매겨 내고^{內庫}로 모조리 실어 나르도록 하였으며, 억울함을 해소연하는 자가 있으면 경조^{京兆}로 보내 장살^{杖殺}하였다.
- || 후당 장종^{後唐莊宗}이 음률^{音律}을 잘하여 악공과 광대를 매우 좋아하였다. 장종이 때로는 스스로 분장을 하고 뜰에서 연회를 펼쳐 유부인^{劉夫人}을 기쁘게 하였다. 한번은 광대가 되어 스스로를 ‘이천하^{李天下}’라고 부르자, 광대 경신마^{敬新磨}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 장종의 뺨을 후려치니 황제는 실색하고 여인들이 모두 경악하였다. 경신마가 천천히 말하길 “천하를 다스리는^{理天下} 자는 오직 한 사람인데 누구를 부르는 게냐?”라고 하니, 황제가 기뻐하여 후하게 상을 내렸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61 당 무종^{唐武宗}: 862~888. 당 제15대 황제 이염^{李炎}으로, 재위 기간은 873년에서 888이다. 초명은 전^漣이었으나 금단^{金丹} 증독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도시들의 조언에 따라 염^炎으로 개명하였다. 환관 구사량^{仇士良}에 의해 옹립되었으나, 이덕유^{李德裕}를 재상으로 임명하여 국정을 맡기면서 구사량을 축출하였다. 도교를 독실하게 믿어 강력한 폐불^{廢佛} 정책을 펼쳤다. 방술^{方術}에 심취하였으며 결국 단약에 증독되어 사망하였다.

62 당 희종^{唐僖宗}: 862~888. 당 제18대 황제 이현^{李儼}으로, 재위 기간은 873년에서 888년이다. 유흥과 잡기에 빠져 정사를 일체 환관 전영자^{田令孜}에게 맡겼다. 왕선지^{王仙芝}와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나 낙양^{洛陽}과 장안^{長安}이 함락되자, 전영자와 함께 성도^{成都}로 달아났다. 황소의 난이 평정된 후 장안으로 돌아왔지만, 지방은 번진의 절도사 출신 군벌들이 장악하여 지배하면서 중앙 정권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당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63 전영자^{田令孜}: ?~893. 환관으로, 황소의 난 때 태자 현^儼(희종^{僖宗})을 호종하여 그 공으로 희종 즉위 후 좌신책군^{左神策軍} 중위^{中尉}에 발탁되고 아보^{阿父}의 호칭을 얻었으며, 관군용사^{觀軍容使}가 되었다. 소종^{昭宗}이 즉위한 뒤에 양자로 삼았던 왕건^{王建}에게 피살되었다.

- || 남송 광종南宋光宗 초의 일이다. 수황壽皇[효종孝宗]⁶⁴이 환관을 주살하려 하니, 근습近習이 모두 두려워하여 삼궁三宮⁶⁵을 이간할 계획을 꾸몄다. 마침 황제가 심질心疾을 얻자 수황이 좋은 약을 사들여 황제가 궁에 오면 주려고 하였는데, 환관이 황후에게 “태상께서 약재를 합해 큰 알약 하나를 만들어 놓고 궁거宮車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투약하시려 합니다. 만일에 뜻밖에 일이 생긴다면 종사를 어찌 보존하겠습니까.”라고 호소하니, 황후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무종明武宗⁶⁶ 때의 일이다. 태감太監 유근劉瑾⁶⁷이 속으로 황제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겉으로는 제신諸臣들을 책망하여 그들이 자신을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어 감히 진언하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또 온갖 놀이를 가져다 무종을 즐겁게 하고 무종이 한껏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장주章奏를 올려 결재를 청하니, 무종이 “내가 이미 너에게 맡겼는데 어찌 짐을 번거롭게 하는가.”라고 하였다.
- || 명 희종明熹宗⁶⁸ 때의 일이다. 유모 객씨客氏⁶⁹가 태감 위충현과 내통하여 마침내 위충현이 동창東廠⁷⁰을 관장하게 되었다. 또한 희종은 자신을 보호했다는 공으로 객씨를 봉성

64 수황壽皇: 「정궁위正宮闈」 계조 44번 각주 참조.

65 삼궁三宮: 효종孝宗, 광종光宗, 황후 이씨를 가리킨다.

66 명 무종明武宗: 1491~1521. 명 제10대 황제 주후조朱厚照로, 재위 기간은 1505년에서 1521년이다. 연호를 따라 '정덕제正德帝'로 불린다. 주색과 각종 유희에 빠져 사치를 일삼았고, 유근劉瑾 등의 환관을 총애하였으며 라마교를 광신하였다. 한편으로는 능력있는 신하들을 기용하고 유근을 숙청하면서 권력을 유지하였으며, 여러 차례 빈민을 구휼하기도 하였다. 반란군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고 스스로 '주수朱壽'라는 이름의 장군이 되어 변방을 토벌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의 치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67 유근劉瑾: 1451~1510. 환관으로, 원래는 담씨談氏였으나 중궁中宮 유씨劉氏에게 빌붙어 유상劉姓으로 행세하였다. 무종武宗 때 응견鷹犬, 가무歌舞, 각저角觥 등 잡기로 황제의 신임을 얻었으나, 뒤에 반역을 꾀하다가 복주伏誅되었다. (『明史』 「劉瑾傳」)

68 명 희종明熹宗: 1605~1627. 명 제15대 황제 주유교朱由校로, 재위 기간은 1620년에서 1627년이다. 연호를 따라 '천계제天啓帝'로 불린다. 즉위한 후, 환관 위충현魏忠賢과 유모 객씨客氏에게 정사를 내맡기고 자신은 목공예木工藝와 귀뚜라미 싸움에 몰두하였다. 재위 기간 동안 정치 부패와 가혹한 조세 수탈이 이어져 궁핍해진 백성들이 곳곳에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후금後金이 심양瀋陽과 요양遼陽을 함락하고 요하遼河를 건너 광녕廣寧을 격파하였지만 이를 막지 못하였다.

69 유모 객씨客氏: ?~1627. 명 희종明熹宗의 유모로, '객인월객印月' 또는 '객파파객바바'로 불린다. 원래 하북河北 정흥定興 지역의 농부 후파아侯巴兒의 처였다가 1남 1녀를 낳고 18세에 궁중으로 들어가 희종의 유모가 되었다. 희종이 황태손으로 봉해지는 데 큰 역할을 하여 희종 즉위 이후 봉성부인奉聖夫人에 봉하여졌으며, 환관 위충현과 내통하여 권력을 천단하다 장살되었다. (『明史』 「魏忠賢傳」)

70 동창東廠: 명 성조明成祖 때 경사京師의 동안문東安門에 설치했던 관서 이름이다. 환관의 지배 하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백성의 비밀 결사 및 이단자를 감시하고 황제에게 직접 보고했으므로 권력이 금의위錦衣衛보다 높았다.

부인奉聖夫人에 봉하였고, 전田 20경頃을 하사하여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쓰게 하였다. 또 황릉皇陵의 조성을 빌미로 위충현이 자신을 시위한 공을 기록하게 하였다. 후에 객씨가 출궁하였다가 다시 들어오자, 급사중給事中 후진양侯震暘⁷¹이 “황상께서 객씨를 늦게 출궁시킨 것은 괜찮지만, 출궁한 뒤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입니다.”라고 아뢰니, 황제가 진노하여 후진양을 강등시켰다. 일찍이 풍 귀인馮貴人이 희종에게 내조內掾⁷²를 혁파할 것을 권하자 객씨와 위충현이 그를 미워하였고, 광종光宗의 선시選侍 조씨趙氏⁷³는 객씨, 위충현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객씨와 위충현이 교지를 거짓으로 꾸며 모두 사사賜死하였다. 장씨張氏⁷⁴가 임신하여 유비裕妃에 책봉되자 객씨가 희종에게 참소하여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에 유비는 기어서 낙숫물을 받아먹다가 며칠 만에 죽었다. 황후 장씨張氏⁷⁵가 임신하였을 때 요통이 있었는데, 객씨가 몰래 심복을 궁인으로 삼아 유산시켰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면, 근습近習의 폐단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논한 것이 많습니다. 허한許翰⁷⁶은 “인주人主가 법도 있는 집안과 보필하는 선비를 가까이하지 않고 근습近習을 가까이하니, 이에 요염하고 화려한 여색이 임금의 시야를 가리고 아첨하고 음해하는 말이 임금의

71 후진양侯震暘: 1569~1627. 자는 득일得一이고, 호는 계동啓東이다. 위충현과 객씨가 국정을 농단하자, 이부급사중吏部給事에 발탁되어 8개월 동안에 수십 건의 상소를 올려 각신閣臣 심각沈確이 객씨와 환관들과 결탁해 봉당을 조성한 사실을 탄핵했다. 이 때문에 위충현魏忠賢의 미움을 사 유배 갔다.

72 내조內掾: 명대明代에 태감太監을 뽑아 궁중에서 병사를 무장시켜 훈련시키는 것이다.

73 선시選侍 조씨趙氏: 선시는 태자의 첩실 가운데 등급이 제일인 시녀이다. 관품이 재인才人보다는 낮으며 숙녀淑女보다는 높다. 조씨는 광종光宗이 태자 시절에 선시가 되었는데, 희종熹宗은 즉위한 뒤 그녀를 비빈에 봉하지 않았으며, 객씨와 위충현의 농간으로 그녀에게 자결을 명하였다.

74 유비裕妃 장씨張氏: 1606~1623. 명 희종明熹宗의 비로, 순천부順天府 탁주涿州사람이다. 희종에게 간택되어 임신을 한 뒤 유비에 봉해졌다.

75 황후 장씨張氏: 명 희종의 황후인 의안황후懿安皇后 장언張嬪(1606~1644)이다. 자는 조아祖娥이다. 객씨의 농간으로 아이를 잃은 뒤, 다시는 자식을 갖지 못하였다.

76 허한許翰: ?~1133. 북송 철종, 흠종, 고종 때의 관리로, 자는 승로崧老이다. 철종 때,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한림학사와 어사 중승, 동지주밀원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논어해論語解』와 『춘추전春秋傳』, 『양릉집襄陵集』 등이 있다.

귀를 어지럽힌다. 위망危亡을 경계하는 말을 피하고 태평한 일을 꾸며내어 한 번 찌푸리고 한 번 웃는 것이 모두 임금의 마음을 밝게 하거나 그늘지게 할 수 있어 위복威福이 어스레 옮겨가게 한다.”⁷⁷라고 하였습니다. 공문중孔文仲⁷⁸은 “엄인奄人환관은 임금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서 아침저녁으로 심부름을 하고, 또 오랫동안 궁궐에 살면서 구전舊典에 대해 상당히 밝다. 혹 화평한 얼굴과 푸근한 용모 속에 간사한 술수를 품으면, 어리석은 임금은 그를 신임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장구성張九成⁷⁹은 “엄시闕寺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나라의 불상사다. 요순堯舜 때의 환관은 그 이름이 전典과 모謨에 보이지 않고, 삼왕三王[하夏·은殷·주周] 때의 환관도 서훈와 고誥에 보이지 않는다.⁸⁰ 제齊에서는 수조豎刁⁸¹의 이름이 알려지고서 제가 혼란에 빠졌으며, 송宋에서는 이려伊戾⁸²의 이름이 알려지고서 송이 위태로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몇 사람의 논의는 모두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앙을 분명히 진술한 것이지만, 주자가 전후로 올린 「봉사封事」⁸³가 더욱 통렬하고 간절합니다. 그 대략에 “지금 궁중과 조정은 공정하지 못한 자들이 소굴로 삼고 점거하여 폐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일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차츰차츰 나쁜 영향을 끼쳐 폐하께서 선을 좋아하시는 마음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악을 미워하는 뜻이 깊어지지 못하게 하니, 그 폐해를 이루 다 말

77 인주人主 … 가계 한다: 『양릉문집襄陵文集』 「논환관論宦官」에 보인다.

78 공문중孔文仲: 1038~1088. 복승 신종, 철종의 관리로, 자는 경보經父이다. 벼슬이 지공거知真擧에 이르렀으며, 구법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재상 왕안석王安石이 창안한 재정 관리와 군사 훈련하는 법이 옳지 않다고 논한 일로 파직되기도 하였다. 저서에 『청강삼공집淸江三孔集』이 있다.

79 장구성張九成: 1092~1159. 남송 고종 때의 대신으로, 자는 자소子韶이고, 호는 횡포거사橫浦居士 또는 무구거사無垢居士이다. 진사에 급제하고 예부시랑, 태상박사를 지내다가 진희秦檜에게 배척당하여 유배되었다. 후에 진희가 죽자 온주 자사溫州刺史로 복귀되었으나 수개월 만에 병으로 별세하였다. 저서에 『횡포집橫浦集』, 『맹자전孟子傳』 등이 있다.

80 전典과 … 않는다: 본문의 전典, 모謨, 서훈, 고誥는 『서경』을 총칭하는 말이다. 전典은 「요전堯典」과 「순전舜典」이고 모謨는 「대우모大禹謨」와 「고요모皋陶謨」이며, 서훈은 「감서甘誓」와 「탕서湯誓」, 고誥는 「강고康誥」와 「중취지고仲虺之誥」이다.

81 수조豎刁: 춘추 시대 제 환공齊桓公 때의 환관으로, ‘豎刁’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어린 시절부터 종복으로서 환공을 섬겼고, 성장하여서는 궁에 남기 위해 스스로 거세하였다. 환공이 몸져 눕자 궁문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환공을 굶어 죽게 만들었다. 환공이 죽은 뒤 역아易牙, 개방關方 등과 함께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春秋左氏傳』 僖公 18年)

82 이려伊戾: 춘추 시대 송 평공宋平公 때의 환관으로, 성은 혜장惠墻이다. 태자 좌옹의 내사內師가 되었으나 총애를 받지 못하자, 모함하여 태자를 죽게 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 26年)

83 봉사封事: 봉사란 밀봉하여 직접 군주에게 바치는 의견서를 말한다. 주희朱熹가 남송 효종에게 봉사를 올린 것이 세 번이 있는데, 「임오응조봉사壬午應詔封事」(1162), 「경자응조봉사庚子應詔封事」(1180), 「무신봉사戊申封事」(1188)가 그것이다. 이 중 주희가 마지막으로 효종에게 상언한 「무신봉사」가 유명인데, 그 내용은 첫째 태자를 바르게 인도하고, 둘째 대신을 적임자를 선택하며, 셋째 강유綱維를 일으키고, 넷째 풍속을 변화시키며, 다섯째 백성의 힘을 기르고, 여섯째 군정軍政을 바르게 하며, 끝으로 임금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일이 모두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이 무리들은 단지 심부름이나 쓸고 닦는 일을 시켜야지, 권세를 빌려주고 총애하여 그들이 안으로는 아침하고 간교를 부려 임금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밖으로는 파벌을 세우고 권세가를 불러 모아 성교聖教에 누를 끼치게 해서 안 됩니다.”⁸⁴라고 하였습니다. 아! 주부자朱夫子가 고심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세의 폐단을 심각하게 논하면서 오직 이것을 첫 번째 의리로 말하였으니, 후대의 임금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경계할 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열성列聖께서 근습近習을 다스리신 것은 전대前代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태종께서는 “환관이 나를 속여 제멋대로 출입하니 지금부터 승정원에서는 매일 밤마다 점검토록 하라.”⁸⁵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환관의 직임은 오직 등불을 밝히고 청소하는 데 있는데, 벼슬을 제수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명을 전달하였으니, 죄를 다스리게 하라.”⁸⁶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선묘宣廟[선조] 때, 어떤 환관이 수령의 냉대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후하게 대접하였다고 반대로 아뢰었습니다. 선묘께서는 그가 환관에게 아부하였다고 하여 비루하게 여기셨다가 후에 비로소 환관의 무고임을 깨닫고 그 죄를 바로잡으셨습니다.⁸⁷ 효묘孝廟[효종]께서 신료들을 만날 때면, 환관은 걱정하는 기색으로 ‘연신筵臣 중에 우리들의 잘못을 진달하는 이가 없겠는가?’라고 하며 경연이 파한 뒤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현묘顯廟[현종]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 내시가 백방으로 아침하여 총애가 지극하였었는데, 현묘께서 즉위하시고 간사하게 아침한다 하여 배척하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숙묘肅廟[숙종] 때는 환관과 어떤 상신相臣이 사사로이 술자리를 갖자, 그 환관을 환적宦籍에서 삭제하고 상신은 파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엄히 단속하는 규

84 지금 … 됩니다: 주희의 이 말은 『회암집晦庵集』 「무신봉사戊申封事」에 보인다.

85 태종께서 … 하라: 태종이 간밤에 몸이 불편하여 수리를 관장하는 장선掌膳을 불렀으나, 내관內官이 제멋대로 내보내고는 없다고 아뢰었다. 이에 태종은 승정원에서 매일 밤 입직하는 환관과 장선을 검속하도록 명하였다. (『太宗實錄』 17년 12월 4일)

86 세종께서는 … 하라: 환관 김수金壽가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에게 그 부친 김언金彦에게 반당 체아伴尙遞兒 부사정副司正의 직책을 주도록 청하고, 김언이 관직을 받았다는 세종의 물음에도 두 번이나 부정하였다. 또 영평군의 단자를 받고도 계략하지 않고 이미 계하였다고 말하였다가 이 일이 발각되어 의금부에 하옥되었다. 이때부터 일의 대소를 논할 것 없이 모두 대언代言[승지]이 직접 아뢰도록 하였다. (『世宗實錄』 5년 5월 27일; 5월 30일; 6월 2일)

87 선묘宣廟 … 바로잡으셨습니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따르면 선조 때 총애를 받던 환관이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지나는 곳마다 수령들이 후하게 그를 대접했지만 예산 군수만이 홀로 법대로 그를 대우하였다. 환관이 앙심을 품고 돌아가 예산 군수만이 자신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반대로 보고하였고, 예산 군수는 아부했다는 오해를 사게 되어 벼슬길이 막히게 되었으나, 훗날 무고가 밝혀져 혐의를 벗어났다. 『무명자집無名子集』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으나, 성종 때의 일이라 되어있다. 『燃藜室記述別集』 「官職典故」, 宦官; 『無名子集』 「文稿」 井上閑話51)

범이 내시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었기에 비록 나인과 액례掖隸⁸⁸라도 법을 두려워하여 조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또 후궁後宮의 차노差奴가 외지에서 매를 맞고 죽었는데 오직 임금이 알까 두려워하였으며,⁸⁹ 잠저潛邸 시절의 유모가 가마를 타고 궐문으로 들어오자 크게 징계하였습니다.⁹⁰ 중궁전의 자매는 교칙教飭을 두려워하여 외염外閭에서 성명姓名을 밝히지 않았으며, 내의원의 의녀가 음탕하다는 혐의가 있어 그를 내정內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⁹¹ 열성께서 남기신 교화에 힘입어 궁궐이 바르고 엄숙해지니, 임금을 모시는 자들이 각기 그 분수를 지켜 감히 제멋대로 하지 못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무릇 총명한 임금이 아랫사람을 다스림은 일이 드러나기 전에 도모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예방하는 법입니다. 진정 지난날의 잘못된 행적을 지금 환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옛 현인이 우려했던 것을 자기에게 하는 충언이라 여겨서, 미려한 여색을 멀리하고 아첨하는 말을 미워하면, 간사한 술수를 품는 행태가 남몰래 행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공정한 교화를 한결같이 열조의 규범대로 한다면, 좌우가 바루어져서 백관이 바루어질 것이고 백관이 바루어져서 온 백성이 바루어질 것이니, 그 효험이 미치는 범위가 어찌 넓고 크지 않겠습니까.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88 나인과 액례掖隸: 원문의 “紅袖紫衣”를 풀이한 말이다. 홍수紅袖는 여자의 연분홍 소매로, 궁녀를 이르고, 자의紫衣는 붉은색 옷으로, 액정서의 하례下隸를 이른다.

89 후궁後宮의 … 두려워하였으며: 허적許積이 전라 감사로 있을 적에, 인조仁祖의 후궁인 조씨趙氏 집의 차노差奴가 감영監營에 와서 조씨의 세력을 믿고 무리한 요구를 하였는데, 허적이 그를 곤장으로 다스려 죽여버렸다. 조씨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집안사람들을 단속하여,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였다. (『牧民心書』 「奉公六條」 貢納)

90 잠저潛邸 … 징계하였습니다: 선조宣祖 초년, 선조가 잠저에 있을 때의 유모가 옥교屋轎를 타고 입궐하자, 선조가 엄히 꾸짖고, 유모를 걸어서 돌아가게 하였다. (『肅宗實錄』 14년 11월 12일)

91 내의원의 … 하였습니다: 선조宣祖 때 약방 제조 김명원金命元이 내전을 진찰할 의녀로 애종愛鍾을 추천하였는데, 선조가 애종이 뛰어난 의술이 있다고 해도 창기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궐정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宣祖實錄』 33년 6월 25일) 조선 시대에 의녀는 신분이 천인이었기 때문에 창기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목종친睦宗親

종친을 보살피다

법조 法條

- || 진 성공晉成公¹이 즉위한 후, 경卿의 적자에게 벼슬과 토지를 주어 공족公族으로 삼았다. 또 여자餘子²에게 벼슬을 주고 서자庶子는 공행公行으로 삼았으니, 진이 이때부터 공족, 여자, 공행이 있게 되었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한 고조漢高祖³가 처음 종정관宗正官⁴을 두어 구족九族의 위계를 바로 세웠다.
- ||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의 일이다. 오왕吳王 유비劉濞⁵가 거짓으로 병을 핑계 삼아 조회하지 않았다. 문제가 사자使者에게 캐물으니, 사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오왕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황실에서 사자 여럿을 연달아 치죄했기 때문에 오왕이 두려

1 진 성공晉成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화(姬), 이름은 흑둔(黑臀)이다. 영공靈公이 무도한 짓을 일삼자 조천(趙穿)이 영공을 죽이고 그를 주(周)에서 맞아들여 군주로 세웠다. 즉위 후 조천의 종숙(從叔) 조둔(趙盾)에게 정권을 맡겼다.

2 여자餘子: 경대부의 적장자 외의 자식을 가리키는 말로, 이들에게 내리는 관직명이기도 하다.

3 한 고조漢高祖: 기원전 256~기원전 195. 전한前漢 제1대 황제 유방劉邦으로, 재위 기간은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전 195년이다. 진秦 2세 황제 때 각지에서 군웅이 봉기하였는데, 유방도 군사를 일으켜 한왕漢王이 되었다. 초楚 항우項羽를 해하(垓下)에서 격파한 뒤 천하를 통일하고 제위에 올라 한(漢)을 건국하였다. 진의 가혹한 법률을 폐지하고 악법삼장(約法三章)으로 인심을 수습하였다.

4 종정관宗正官: 진대秦代에 처음 설치된 관직으로, 종실을 모두 족보에 등재하여 구족九族의 위계를 바로잡고 적서(嫡庶)를 구분하는 등 종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5 유비劉濞: 기원전 215~기원전 154.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조카이자 문제文帝의 사촌으로, 오왕吳王에 봉해졌다. 이전에 유비의 아들 유현劉賢이 황제를 빌 적에 황태자를 모시고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가 다투었는데, 황태자가 던진 바둑판에 맞아 죽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병을 핑계로 조회에 나가지 않은 것이다. (『資治通鑑』 「漢紀」)

워하여 결국 병을 핑계로 삼은 것입니다. 연못 속의 물고기를 자세하게 살피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니,⁶ 황제께서는 예전 허물을 마음에 담아 두지 않으셔야 함께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문제가 오의 사자를 용서하여 돌려보내고, 오왕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 || 전한 경제前漢景帝 때의 일이다. 양왕梁王이 원앙袁盎을 원망해서⁷ 양승羊勝⁸과 공손궤公孫詭⁹와 모의해 사람을 시켜 원앙을 척살하였다. 경제가 자객을 추적해보니 과연 양왕의 소행이었다. 이에 경제가 전숙田叔¹⁰을 보내 양왕의 일을 안핵按覈하게 하자, 양승과 공손궤 등이 모두 자살하였다. 전숙은 양왕에 관한 기록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와 경제를 알현하여 말하였다. “양왕의 일은 문책하지 마십시오. 양왕이 벌을 받지 않으면 황실의 법도가 행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법대로 처리해서 태후¹¹께서 식사를 하셔도 맛을 느끼지 못하시고 잠자리에 들어도 편히 주무시지 못하신다면, 이것 또한 폐하의 근심거리일 것입니다.” 경제가 이를 옳게 여겨 전숙 등을 보내 태후를 알현하게 하여 “양왕은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을 조작한 것은 행신幸臣인데, 이미 사사되었습니다. 양왕은 무탈합니다.”라고 하니, 태후가 이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고 기운이 회복되었다.

6 연못 … 못하니: 남의 잘못을 세세하게 살피는 것은 상서롭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군주가 신하의 은밀한 일을 모두 알게 되면, 신하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고를 일으켜 화란禍亂이 생기게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韓非子』 「說林」)

7 양왕梁王은 원앙袁盎을 원망해서: 양왕은 두 태후의 후원을 업고 경제의 후사가 되려고 하였는데, 원앙의 반대로 인해 그 논의가 중단되었다. 양왕은 이 일로 원앙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자객을 보내 원앙을 암살하였다. (『史記』 「袁盎晁錯傳」)

8 양승羊勝: ?~기원전 148. 제齊 출신으로, 양왕梁王이 사방의 문사를 초치하면서 양승에 머물렀다. 공손궤公孫詭와 모의하여 양왕을 경제景帝의 후사로 세우려다가 이를 반대하던 원앙袁盎을 암살하였다. 이 일로 양왕이 의심을 받자 양왕의 명령으로 공손궤와 함께 자살하였다.

9 공손궤公孫詭: ?~기원전 148. 제齊 출신으로, 양승羊勝과 함께 초치되어 양왕梁王의 모사가 되었는데, 양왕을 경제의 후사로 삼으려다 실패한 후 자살하였다.

10 전숙田叔: 자는 자경子卿이다. 경제景帝 때 원앙袁盎이 죽임을 당한 사건의 조사관으로 임명되었다.

11 태후: 전한 문제前漢文帝的 황후이자, 경제景帝와 양왕梁王의 친모인 효문제후孝文皇后 두의竇漪(?~기원전 135)를 가리킨다. 맏이들 경제보다 막내인 양왕을 더 아껴서 경제의 후사를 잇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카인 두영왕嬰이 부자상속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두 태후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경제가 죽고, 무제武帝 유철劉徹이 황제가 되자 태황태후가 되었다.

|| 후한 명제(後漢明帝) 때의 일이다. 동평왕(東平王) 유창(劉蒼)¹²이 조회하러 와서 한 달 남짓 머물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명제는 서운해서 사자를 보내 손수 조서를 써서 동평국(東平國) 중부(中傅)에게 주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어진 뒤에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즐겁지 않다. 『시경』을 외다가 「채숙(采菽)에 미치니,¹³ 탄식만이 더해진다. ‘집에서 있을 때에 무슨 일이 가장 즐거운가?’ 라고 물었는데, 동평왕이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매우 훌륭하여 그대의 허리와 배보다 훨씬 컸다. 이제 열후(列侯)의 인(印) 19개를 보내니, 여러 왕자 중에 추배(趨拜)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인을 차게 하라.”

|| 진 무제(晉武帝)가 안평현왕(安平獻王) 사마부(司馬孚)¹⁴를 종친의 웃어른이라 하여 두터이 예우하였다. 설날 아침 조회할 적에 조서를 내려 사마부가 수레를 타고 대궐에 오를 수 있게 하였는데, 무제가 그를 조계(階階)¹⁵에서 맞이해 절하고 자리에 앉은 뒤에 친히 술잔을 받들어 헌수(獻壽)하니, 평범한 집안의 예법과 같이 하였다. 그가 죽자 동원(東園)에서 만든 온명(溫明)과 비기(祕器)¹⁶를 하사하였으며, 그에게 베푼 것들은 모두 한대(漢代)의 동평현왕(東平獻王)의 고사(高事)¹⁷에 따랐다.

|| 당 현종(唐玄宗)은 형제들과 우애가 깊어 처음 즉위했을 때, 큰 이불과 긴 베개를 만들어 송왕(宋王) 이성기(李成器), 신왕(申王) 이성의(李成義), 기왕(岐王) 이범(李範), 설왕(薛王) 이업(李業)과 함께

12 동평왕(東平王) 유창(劉蒼): 「법조종법(法祖宗) 법조 3번 각주 참조.

13 채숙(采菽)에 미치니: 「채숙」은 『시경』의 편명으로, “콩을 채취하고 콩을 채취하여 네모진 광주리에 담고 둥근 광주리에 담는다. 군자가 와서 조회하니, 무엇을 선물로 주어야 하는가[采菽采菽 筐之筐之 君子來朝 何錫予之]” 라고 하였다.

14 사마부(司馬孚): 180~272. 삼국시대 위(魏)의 권신인 사마의(司馬懿)의 아우이자 진 무제(晉武帝)의 숙부로, 시호는 헌(獻)이다. 사마의가 정권을 쥐었는데도 황제를 폐립(廢立)하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무제가 나라를 세우고 위주(魏主) 진류왕(陳留王)이 폐위되자 왕의 손을 잡고서 탄식했다고 한다. 무제의 총애를 받았지만 영예로 여기지 않았으며, 위(魏)의 구신(舊臣)으로 일생을 마쳤다.

15 조계(階階):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는 동쪽 섬돌을 가리킨다.

16 동원(東園)에서 … 비기(祕器): 동원은 진·한(秦漢) 시기에 설치된 관서로, 능이나 묘 내에 들어갈 물품이나 장례에 쓰이는 기구를 제작하거나 이를 공급하였다. 온명(溫明)은 황제와 왕후, 신하와 고급 귀족의 장례를 치를 때 쓰던 물건이며, 비기(祕器)는 관곽을 가리킨다.

17 동평현왕(東平獻王)의 고사(高事): 동평현왕은 유창(劉蒼)을 가리킨다. 후한 장제(後漢章帝)는 그가 죽고 난 뒤, 사자를 보내 상례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사성소후(西姓小侯)로 불리던 외척 번씨(樊氏), 곽씨(郭氏), 음씨(陰氏), 마씨(馬氏)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왕과 공주들을 장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資治通鑑』 「漢紀」)

왔다. 대궐 안에 다섯 개의 장막을 설치하여 여러 왕들과 번갈아 가면서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를 오왕장五王帳이라고 하였다. 이업이 병이 난 적이 있는데, 현종이 직접 약을 달이다가 회오리바람에 날린 불에 수염을 태웠다. 좌우의 신하들이 놀라서 불을 끄자, 현종이 “설왕이 이 약을 마시고 병이 낫기만 한다면 수염을 어찌 아까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흥경궁興慶宮을 지을 적에 이성기 등에게 각각 집을 하사하여 흥경궁을 에워싸게 하였다. 또 궁의 서남쪽에 누각을 세우고 ‘화악상휘지루花萼相輝之樓’¹⁸라 하였다. 현종이 간혹 누각에 올랐다가 왕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을 불러 누각에 오르게 하여 함께 잔치를 벌였다.

- || 당 현종은 왕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분을 맺지 못하도록 단속하였다. 그런데 부마도위 駙馬都尉 배허기 裴虛己가 기왕 岐王 이범 李範과 연회를 즐기자 배허기를 지방으로 쫓아냈다. 만년위 萬年尉 유정기 劉庭琦와 태축 太祝 장악 張諤이 이범과 자주 술을 마시며 시회를 열자 그들을 모두 폄직 貶職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이범을 예전처럼 대하며 “나와 내 형제는 본래 틈이 없으니, 명리 名利를 다투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들러붙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북송 인종 北宋仁宗은 황족들이 도성에 흠어져 살고 있어 간혹 편안하게 모이기 어렵다고 여겨 조서를 내려 옥청궁 玉清宮과 소응궁 昭應宮이 있던 옛터에 목친택 睦親宅을 지어 살게 하였다.
- || 북송 신종 北宋神宗이 “창업수통 創業垂統은 실로 태조로부터 비롯되었거늘, 걸맞게 예우하지 못하였다.”라 하고, 조서를 내려 초 강혜왕 楚康惠王 조덕방 趙德芳의 손자 조종식 趙從式을 안정군왕 安定郡王으로 삼았다. 이듬해 다시 조서를 내려 선조 宣祖, 태조, 태종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씩을 가려 종사 宗嗣로 삼아 대대로 공씨에 봉하도록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18 화악상휘지루花萼相輝之樓: ‘화악상휘’는 형제간에 우애가 좋음을 뜻하는 말이다. 『시경』 「상체 常棣」에 “아가위의 꽃이여, 꽃받침이 화사하지 않은가. 무릇 지금 사람들은, 형제만 한 이가 없느니라.[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고 한 데서 취한 말로, 꽃과 꽃받침은 한 가지에서 나왔으므로 형제를 비유한다. 화악상휘지루는 ‘화악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 명 효종明孝宗 때, 마문승馬文升¹⁹이 상소하기를 “각 왕부王府가 제도를 어지럽히고 규범을 업신여기고 있으니, 국학國學과 향학鄉學의 사유師儒를 선발하여 왕부의 강학을 정비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현의 책을 보아 선을 행하는 길을 열고, 조종의 가르침을 외워 정도를 견지하는 마음을 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으니, 효종이 이를 따랐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진 헌공晉獻公 때의 일이다. 환숙桓叔과 장백莊伯의 족손族孫²⁰이 공실公室을 뒤흔들고, 헌공이 이를 근심하였다. 이에 사위士蒍²¹가 “가장 부강한 자를 제거하면 다른 공자들은 쉽게 도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헌공이 “그렇다면 그대가 한 번 그 일을 해 보라.”라고 하였다. 사위가 공자들과 모의하여 부강한 자를 참소해 제거하고, 또 공자들과 함께 유씨游氏 족손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취읍聚邑에 성을 쌓아 공자들을 이주해 살게 한 후, 헌공이 취읍을 포위하여 공자들을 모두 죽였다.

|| 송 소공宋昭公이 공자들을 제거하려 하였다.²² 악예樂豫²³가 “공족은 공실의 지엽枝葉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거한다면 뿌리를 보호할 그늘이 없어집니다. 칙덩굴도 오히려 그 뿌리를 보호하는데, 하물며 나라의 임금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속담에 이른바 ‘비호를

19 마문승馬文升: 1426~1510. 자는 부도眞圖이며, 하남성河南城 군주鈞州 사람이다. 환관과 무관 등의 착취를 엄단하여 크게 치적을 올리고 병부상서兵部尙書가 되었으며,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영전하고 태자태사太子太師를 겸임했다.

20 환숙桓叔과 장백莊伯의 족손族孫: 환숙은 진 소후晉昭侯의 동생으로, 곡옥曲沃에 봉해졌다. 그의 아들 장백을 거쳐 곡옥 무곡武公 때에 이르러 임금을 시해하고 보물을 바쳐 주 이왕周厲王으로부터 제후에 임명되었다. 이후 환숙의 자손들이 대대로 곡옥을 기반으로 자주 반란을 일으켜 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본문의 유씨游氏 역시 이들의 족손이다.

21 사위士蒍: 진 헌공晉獻公의 모사로, 나라에 위협을 가하던 공자들을 제거하는 계책을 세웠다. 또 헌공이 공자 중이重耳와 이오夷吾를 위해 성을 쌓게 하자 섬으로 대총 성을 쌓고서 “전쟁이 없는데 성을 쌓으면 원수가 반드시 그곳을 차지한다고 했으니, 굳게서는 덕을 닦아 종자宗子를 굳건히 하십시오.”라고 진언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 5年)

22 송 소공宋昭公이 … 하였다: 송 소공은 성공成公의 둘째 아들로, 행동이 무도하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자신을 따르지 않는 공족公族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23 악예樂豫: 춘추 시대 송宋의 관리이다. 소공昭公이 여러 공자를 죽이려고 할 때 이를 만류하였으나 소공이 이를 듣지 않자 사마司馬의 직책을 그만두고 소공의 아우인 공자 양公子伋에게 직책을 양보하였다.

받으면서 함부로 도끼를 대어 찍어낸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소공은 이를 듣지 않았다. 목공穆公과 양공襄公의 족손族孫이 국인國人을 거느리고서 소공을 공격하여 공손고公孫固와 공손정公孫鄭을 궁궁公宮에서 죽였다. 이후 육경六卿이 나서서 이들을 공실과 화해시켰다.

|| 주 양왕周襄王²⁴ 때의 일이다. 부신富辰²⁵이 양왕에게 태숙太叔 희대姬帶²⁶를 부르라고 청하며 “우리 형제 사이가 화목하지 않다면 어찌 제후들이 화목하지 않음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사전』에 보인다.】

|| 진秦 2세 황제²⁷는 조고趙高²⁸의 말을 따라 법률을 변경하여 더욱더 각박하고 혹독하게 하는 데 힘썼다. 이에 공자 12인을 함양咸陽의 저잣거리에서 처형하였으며, 공주 10인을 두杼에서 사지를 찢어 죽였다. 그러자 공자 장려將闞 삼형제는 칼을 뽑아 자살하였고, 공자 고고는 달아나려 하였으나 가족들이 체포당할까 두려워 글을 올려, 선제先帝를 따라 죽을 터이니, 여산驪山の 자락에 묻힐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²⁹ 2세가 이를 허락하였다.

24 주 양왕周襄王: 주周的 왕 희정姬鄭이다. 혜왕惠王의 아들이다. 즉위 초기에 이복동생 대부가 응궤과 적궤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제齊로 달아났다. 제 환공齊桓公의 중재로 귀국하였다. 이후 적 출신의 왕후인 외후隗后가 대와 사통하다가 발각되었고, 대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 양왕을 축출하고 즉위하기에 이르렀다. 양왕은 정鄭으로 달아나 진 문공晉文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를 죽이고 복위할 수 있었다.

25 부신富辰: 주周的 대부로서 양왕襄王에게 제齊로 망명했던 태숙太叔 희대姬帶를 불러들이라고 간언하였다. 이후 희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른 대부들과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전사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 24年)

26 희대姬帶: 주 양왕周襄王의 이복동생으로, 태숙 대太叔帶 또는 폐왕 대廢王帶 등으로 불린다. 두 차례에 걸친 반란으로 양왕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지만, 양왕의 요청에 따라 출정한 진 문공晉文公에게 사로잡히고 처형당하였다.

27 진秦 2세 황제: 진의 제2대 황제로, 성은 영嬴, 씨는 조趙, 이름은 호해胡亥이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209년에서 207년이다. 시황제始皇帝의 막내 아들로, 환관 조고趙高과 승상 이사李斯的 도움을 받아 장남 부소扶蘇를 죽이고 제위에 올랐다. 조고에 의해 정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색에 빠져 지냈다. 가혹한 세금과 형벌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의 반란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발생하면서 진의 멸망이 시작되었다. 유방劉邦의 군대가 관중關中을 점령을 앞둔 시점까지도 조고에 의해 정보가 차단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조고의 강압에 따라 자살했다.

28 조고趙高: 환관으로서 시황제를 따라 여행하던 중 시황제가 병사하자, 승상 이사와 짜고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시황제의 맏아들 부소와 장군 몽염을 자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시황제의 우둔한 막내아들 호해를 2세 황제로 세워 마음대로 조종하였다. 이어 공자公子, 공녀公女 24명을 죽이고, 2세 황제에게 참소하여 이사를 처형시킨 뒤, 승상이 되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었다. 각지에 반란이 일어난 와중에서 유방의 군대가 관중을 점령하려 하자 강압으로 호해를 죽인 후 유방과 밀약을 시도하지만 거절당하였다. 이에 호해의 아들 자영子嬰을 황제로 세우려 그를 만나러 갔다가 자영이 미리 숨겨둔 자객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 위 문제魏文帝 때의 일이다. 제후왕諸侯王들 모두 기지寄地³⁰를 받았는데, 이름만 있었고 실권은 없었다. 문제가 조빙朝聘을 받지 않고 방보防輔와 감국監國³¹을 설치하여 이들을 사찰하니, 제후왕들 모두 필부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동아왕東阿王 조식曹植³²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요임금의 공경하고 밝은 덕을 갖추고 주 문왕周文王의 공경하고 삼가는 인을 체득하시어 그 은혜가 구족九族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인척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형제 사이가 단절되어 길흉의 소식이 막히고 경조慶弔의 예가 행해지지 못하니, 친척 간의 정리情理는 길 가는 사람보다 못하고, 서로의 거리는 호월胡越³³보다 멀어졌습니다. 사계절을 만날 때마다 외로이 홀로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지 않은 적이 없고, 술잔을 마주하면서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 남조南朝 송 영양왕宋營陽王³⁴이 여릉왕廬陵王 유의진劉義真³⁵을 폐위시키자, 길양령吉陽令 장약지張約之³⁶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여릉왕은 어려서는 선황제의 지극한 사랑을

29 선제先帝를 … 청하였다: 선제는 진 시황秦始皇을 가리킨다. 시황제의 아들 공자 고고가 죽음을 앞두고 “선제께서 건재하셨을 때, 신이 입궁하면 음식을 하사하셨고, 궁을 나서면 수레를 타게 하셨습니다. 어부御廚의 의복도 신에게 하사하시어 입었으며, 마구간의 좋은 말까지도 하사하시어 탔습니다. 신은 선제를 따라 죽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으니, 아들된 자로서 불효이고, 신하된 자로서 불충입니다. 충성을 바치지 못한 자는 세상에 나설 명목이 없으므로 신은 선제를 따라 죽고자 하며, 선제의 묘가 있는 여산鄒山의 기슭에 묻히기를 바라옵니다. 오직 폐하께서 저를 가엾게 여겨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라고 간청하였다. (『史記』「李斯傳」)

30 기지寄地: 잠시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지역을 가리킨다.

31 방보防輔와 감국監國: 방보는 제왕諸王의 봉지封地에 거주하면서 제왕의 행동을 감찰하는 관직이고, 감국은 감국알지監國認者로 황실에서 제왕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하는 관직이다. 모두 위 문제 때에 만들어진 관직이다.

32 조식曹植: 192~232. 위 문제魏武帝 조조曹操의 아들이자 문제文帝 조비曹조의 아우이다. 시문을 잘 지었으므로 조조, 조비와 함께 삼조三曹라 불렸다. 어린 나이에 조조의 사랑을 받아 한 차례 황태자로 올리려 했지만, 성격대로 행동하여 총애를 잃고 말았다. 조비가 즉위하자, 그의 재주와 인품을 싫어하고 시기하여 해마다 새 봉지封地에 옮겨 살도록 강요했다. 엄격한 감시 아래 신변의 위험을 느끼며 불우한 나날을 보냈다. 명제明帝 때, 동아왕東阿王이 되었다가 다시 진왕陳王에 봉해졌으니, 마지막 봉지인 진陳에서 죽었다.

33 호월胡越: 중국 북방의 호화와 남방의 월척을 말한다. 서로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매우 소원疏遠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34 송 영양왕宋營陽王: 406~424. 남조南朝 송 문제宋武帝의 아들 유의부劉義符이다. 무제가 죽은 뒤 옹립되어 소제少帝가 되었으나, 서선지徐羨之, 사회謝晦 등이 폐위시켜 영양왕으로 격하시켰다. 얼마 후 영양왕과 동생 여릉왕을 죽이고, 셋째 유의를劉義隆 즉 문제文帝를 옹립하였다.

35 유의진劉義真: 407~424. 영양왕營陽王의 아우로, 여릉왕廬陵王에 봉해졌으며, 무제의 상을 당했을 때 고기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큰 질책을 받았다. (『資治通鑑』「宋紀」)

36 장약지張約之: ?~424. 서선지徐羨之, 사회謝晦 등이 소제少帝[영양왕營陽王]를 폐위시키고 여릉왕廬陵王을 서인으로 격하시켜 유의를劉義隆을 옹립하고자 할 때, 이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곧바로 폄직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피살되었다. (『宋書』「武三王傳」)

받았고 장성해서는 폐하의 우애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의당 잘 보살피고 흠을 가리며 덕의德義로써 가르침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람되어 폐위되어 먼 지역으로 보내졌으니, 선황제의 사랑스러운 자식이자 폐하의 아끼는 동생으로서 그 하나의 작은 실수로 영영 버려지는 지경에 이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남조南朝 제 무제齊武帝³⁷ 때의 일이다. 무릉왕武陵王 소엽蕭曄³⁸이 재주와 기예는 많았지만 구속받기 싫어하고 고집이 세서 황제에게 총애를 받지 못했다. 어느 날 황제를 모시고 잔치를 열었는데 술에 취해 땅에 엎어지면서 모자의 담비 털을 고기 그릇에 빠뜨렸다. 황제가 웃으며 “고기가 담비 털을 더럽혔구나.”라고 하자, “폐하께서는 담비 털은 아끼고 혈육은 소홀히 대하십니다.”라고 대답하니, 무제가 못마땅해 하였다. 소엽은 뒷마당의 산에 ‘수양首陽’³⁹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자신의 빈곤함을 원망하였기 때문이다.

|| 북주 효민제北周孝愍帝⁴⁰ 때의 일이다. 진공晉公 우문호宇文護⁴¹가 유조遺詔를 받들어 정사를 보좌하였는데, 손항孫恒과 하발제賀拔提 등이 함께 황제에게 참소하자 우문호가 울면서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천하에 가장 가까운 친척은 형제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데, 만일 형제간에 서로 의심한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태조께서 폐하의 나이

37 남조南朝 제 무제齊武帝: 남조 제의 제2대 군주 소색蕭顯을 가리킨다. 묘호는 세조世祖이다. 『독성효篤聖孝』 계조戒條 63번 각주 참조.

38 소엽蕭曄: 467~494. 남조南朝 제 고제齊高帝의 다섯째 아들이자 무제齊帝의 이복동생이다. 무릉왕武陵王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소昭이다. 소엽은 4살 때 어머니 태비太妃 나씨羅氏가 사망하였는데, 성인과 같이 애도하여 고제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고제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고, 무제가 즉위하고 난 뒤 소엽을 총애하지 않아 요새 지역 한 곳도 맡긴 적이 없으며, 예장왕豫章王 소익蕭嶷의 동전東田에 행행幸行하여 제후왕에게 연회를 베풀 때에도 그를 부르려 하지 않았다. (『南齊書』 「武陵昭王蕭曄傳」)

39 수양首陽: 고죽국孤竹國의 왕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숨어 지낸 곳이다. 백이와 숙제가 왕위를 사양하고 나라를 떠났는데, 그 무렵 주 무왕周武王이 새 왕조를 세웠다. 두 사람은 무왕의 행위가 인의仁義에 위배된다 하여 그 나라에서 난 곡식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 이 일화를 빌어 수양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40 북주 효민제北周孝愍帝: 542~557. 북주 초대 군주 우문각宇文覺으로, 557년에 즉위하였고 재위 기간은 약 9개월이다. 서위 공제西魏恭帝 원곡元廓으로부터 선양을 받아 제위에 올랐고 북주를 건국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우문호宇文護에 의해 옹립되었으므로, 즉위 후 우문호를 제거하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오히려 우문호에게 폐위되어 약양공略陽公으로 강등되어 유폐되었다.

41 우문호宇文護: 513~572. 북주 태조北周太祖 우문태宇文泰의 조카이다. 우문태의 유언에 따라 후계자인 효민제孝愍帝를 보좌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효민제를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자신이 권력을 휘둘렀다. 이에 중신이었던 조귀趙貴와 독고신獨孤信이 우문호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문호는 이를 미리 알아채 이들을 제거했다. 효민제도 우문호의 전횡이 심하여 숙청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폐위당하였다.

가 어리기 때문에 신에게 뒷일을 맡기셨으니, 신은 집안과 나라를 겸하여 실로 고굉股肱의 정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다만 신을 없앤 뒤 간신배들이 뜻을 얻게 되면, 폐하에게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사직을 뒤엎을 것이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참소하는 이들의 말을 믿고서 골육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 || 북주 선제北周宣帝가 제양왕齊楊王 우문헌宇文憲⁴²이 종친 가운데 신망信望이 두텁다는 이유로 그를 꺼려하였다. 우문효백宇文孝伯⁴³에게 “공공이 짐을 위해 제왕齊王을 도모한다면 응당 그 관직을 그대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자, 우문효백이 머리를 조아리며 “선제先帝 [무제武帝]의 유조遺詔에 골육인 제왕을 함부로 주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폐하의 숙부는 공이 크고 덕망이 높은 사직의 중신重臣입니다. 만일 폐하께서 무고하게 숙부를 해치고 신은 또 폐하의 뜻을 그저 따르기만 한다면 신은 불충한 신하가 되고 폐하께서는 불효한 자식이 됩니다.”라고 하니, 선제가 좋아하지 않았다.
- || 수 양제隋煬帝가 골육을 박대하니, 채왕蔡王 양지적楊智積⁴⁴이 늘 불안하게 여겨 병이 들어도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게 “내 오늘날에야 비로소 머리를 보전하여 땅에서 문힐 것을 알겠구나.”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건문제明建文帝[혜종惠宗]⁴⁵ 때, 어사御史 한옥韓郁⁴⁶이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왕諸王은 친함으로 논하자면 태조太祖의 남은 육신이고, 귀함으로 논하자면 효강황제

42 우문헌宇文憲: 544~578. 자는 비하돌毗賀突이다. 무제武帝의 이복동생이자 선제의 숙부로,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양왕이다. 우문호宇文護의 신뢰를 얻었으며, 우문호가 무제에게 주살된 뒤에도 계속 신임을 받아 실권을 잡았다. 그러나 선제가 즉위한 뒤, 반란을 꾀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43 우문효백宇文孝伯: 544~579. 자는 삼호胡三이며, 선비족 출신이다. 무제武帝에게 신임을 받았으나, 선제宣帝가 즉위하고 나서 우문헌宇文憲을 제거하려 하자 간언하여 반대하였다. 이후 선제가 그를 소홀히 대하였고, 결국 선제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44 양지적楊智積: ?~616. 수 문제隋文帝의 아우 양정楊整의 아들이자 수 양제隋煬帝의 사촌으로, 집안 대대로 채왕蔡王에 봉해졌다. 문제에게 신임을 받았으나, 그의 부모가 문제와 독고 황후獨孤皇后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중하였다. 양제가 즉위하고 동생 양지명楊智明이 황제를 모함한 등왕滕王 양륜楊綸, 위왕衛王 양집楊集 등과 교류하였다는 이유로 폄직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치료도 받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자 한 것이다. (『隋書』「蔡王楊智積傳」)

45 명 건문제明建文帝: 1377~?. 명 제2대 황제 주윤문朱允炆으로, 재위 기간은 1398년에서 1402년이다. 묘호는 혜종惠宗이고, '건문建文'은 그의 재위 기간 연호이다. 태조의 손자로, 황태자 주표朱標가 사망함에 따라 황태손이 되어 즉위하였다. 황자징黃子澄, 방효유方孝孺 조언에 따라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고 숙부인 번왕藩王들의 봉령을 삭감하여 그 세력의 약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정난靖難의 변을 일으킨 연왕燕王 체락에게 패하고 남경이 함락되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孝康皇帝⁴⁷의 수족이며, 높음으로 논하자면 폐하의 숙부입니다. 폐하께서 천자가 되어 태조와 효강황제의 자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영령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건문제는 듣지 않았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생각건대, 『서경』 「우서 虞書」에서 요임금을 찬미하면서 백성을 고루 밝히고 온 나라를 화합하게 한 지극한 덕을 서술하였는데, 반드시 구족 九族을 친애한 데서 근원을 찾았습니다.⁴⁸ 그리고 『중용』에서 구경 九經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먼 지방 사람들을 너그럽이 대하고 제후를 포용하는 지극한 공을 내세웠는데, 반드시 친한 이를 친히 함에 근본을 두었습니다.⁴⁹ 대개 덕을 존송하고 인 仁을 행하는 도는 친한 이를 친히 한 후에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이 경전에서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논한 이유입니다.

아! 사람의 자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같은 조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잎은 하나의 뿌리에 근원하고, 강의 수많은 물줄기는 하나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간다면 나의 형제들이 화합하지 않겠으며, 내 조종을 존송하는 도리를 미루어 간다면 나의 동족들이 돈독히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왕실은 사가 私家와 달라서 분의 分義로 경계를 지우다 보니 정情이 친한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예모 禮貌로 제지하다 보니 왕래가 뜸해지는 데

46 한옥 韓郁: 감찰어사 監察御史를 지낸 인물이다. 건문제 建文帝가 황자징 黃子澄과 방효유 方孝孺 등의 건의에 따라 삭번책削藩策을 실시하자, 고위 高巍와 함께 이를 반대하며 은혜를 베풀 것을 간청하였으나 건문제는 듣지 않았다. 결국 연왕 燕王이 정난 靖難의 변을 일으켜 건문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즉위하였다. (『明史』 「高巍 韓郁傳」)

47 효강황제 孝康皇帝: 1355~1392. 명 태조 明太祖의 장자이자 건문제 建文帝의 아버지로, 이름은 표 標, 묘호는 흥종 興宗이다. 개국과 함께 황태자에 책봉되었으나 성정이 온순한 탓에 태조의 걱정을 샀으며, 몸도 병약하여 젊은 나이로 요절하여 아들인 건문제와 동생인 영락제 永樂帝 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48 서경 虞書에서 … 찾았습니다: 『서경』 「우서」에, “높은 덕을 밝혀 구족을 친하게 하시니 구족이 친하고, 백성을 고루 밝히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온 나라를 화목하게 하시니 백성들이 아, 변하여 온화하게 되었다.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既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 라고 하였다.

49 중용에서 … 두었습니다: 『중용』 20장 章에,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방법 九經을 제시하였는데, 자신을 수양하는 것 修身, 어진 이를 존경하는 것 尊賢, 친한 이를 친히 하는 것 親親, 대인을 존경하는 것 敬大臣, 여러 신하를 내 몸처럼 돌보는 것 體群臣,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 子庶民, 백공을 오게 하는 것 來百工, 먼 지방 사람들을 너그럽이 대하는 것 柔遠人, 제후들을 포용하는 것 懷諸侯이다.

에 이릅니다. 비록 후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 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⁵⁰ 결국 예禮를 앞서 우다 보면 이반하게 됩니다.⁵¹ 성명聖明한 왕은 이를 경계하여 인척과 화목하게 지내는 데 힘썼기에 온 세상이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되는 교화에 하나 되어 다스림이 이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용렬한 군주는 이를 소홀히 하여 시기하고 의심하였기에 가까운 이들마저도 하나 되지 못함을 탄식하여 환란이 이로 인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여 은혜를 베풀기만 하고 예로 가르치지 않고 아껴 주기만 하고 법으로 바로잡지 않아, 은애恩愛를 믿고 예법을 어겨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한다면, 화목하게 하려던 것이 도리어 화목하지 않게 만드는 것과 같아질 것이니, 어찌 심히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삼가 우리나라의 고사를 살펴보건대, 연산군과 광해군 때에는 시기와 의심을 쌓고 살육을 자행하여 왕실의 뛰어난 인재들 가운데 목숨을 보전하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당시의 참혹함을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니, 난망亂亡의 자취를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열성조께서 친족을 돈독히 한 지극한 교화에 대해 말하면, 태조대왕께서는 자애롭고 효성스러우며 친족들과 돈독히 지내셨으니, 단문袒免조차 않는 자⁵²도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서형제庶兄弟까지도 지극히 우애하여 늘 잠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자주 종실의 여러 친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어 즐기셨으며, 오복五服⁵³ 이내의 친족은 재주에 따라 관직을 주고, 재야의 소원한 자는 부역을 면제해 주거나 조세를 감면 하셨으며,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종실의 자제들을 가르치셨습니다.⁵⁴ 문종대왕께서는 여러 백숙伯叔을 공경히 섬기고, 여러 아우를 우애하여 그들의 마음을 더없이 기쁘게 하고, 고

50 후하게 … 아니지만: 『대학』 경經 1장후에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말단이 다스려지는 자는 없으며, 후하게 해야 할 것에 박하게 하면서 박하게 해야 할 것에 후하게 하는 자는 있지 않다.[其本亂而未治者 否矣 其所厚者薄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고 한 데서 온 말이다.

51 예禮를 … 됩니다: 『예기』 「악기樂記」에 “악樂은 똑같이 하는 것이고 예禮는 다르게 하는 것이다. 똑같으면 서로 친하고 달리하면 서로 공경하니, 악이 지나치면 방탕한 데로 흐르고 예가 지나치면 정情이 이반된다.[樂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樂勝則流 禮勝則亂]” 고 한 데서 온 말이다.

52 단문袒免조차 않는 자: 단문도 입지 않는 먼 친척으로, 무복친無服親이라고도 한다. 단문은 상례의 한 가지로 단袒은 옷의 왼쪽 소매를 벗어 초상의 격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문免은 관冠을 벗고서 머리를 묶는 것을 말한다. 9촌이나 10촌이 입는 상복으로, 오복五服에 들어가지 않는다.

53 오복五服: 상례喪禮에서 친소관계에 따라 참치斬衰, 재치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總麻 5등급으로 나누어 정한 상복제도이다.

54 종학宗學을 … 가르치셨습니다: 세종 때 처음으로 종학을 세워 대군 이하 종실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世宗實錄』 세종 10년 7월 12일)

아가 된 조카를 거두어 길렀으니,⁵⁵ 은혜와 사랑이 모두 지극하셨습니다. 인조대왕께서는 여막에 거처하고 있는 인흥군仁興君을 염려해 품록品祿을 하사하여 우대하고,⁵⁶ 집이 없는 능원대군綾原大君을 안타깝게 여겨 인경궁仁慶宮의 행랑채를 하사하여⁵⁷ 총애하였습니다. 효종대왕께서는 소현세자의 아들을 경안군慶安君에 봉작하여 가까운 친족을 별도로 챙기고,⁵⁸ 능원대군의 아들을 영신군靈愼君에 특별히 제수하여 나이 많은 숙부를 위로하였습니다.⁵⁹ 현묘顯廟[현종과 숙묘肅廟[숙종] 때에도 형제들을 극진히 친애하고, 여러 종친에게 꼭 절히 은애恩愛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열성의 인후仁厚한 덕택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효도하고 공손하게 하지 않음이 없으니, 아! 성대합니다.

지금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살펴보니, 연로한 종친들 가운데 근자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아 왕실에는 단문할 친족이 적고, 묘정廟庭에는 소목昭穆의 반열에 들 친족도 드뭅니다. 은우恩遇로 길러야 할 이들을 어찌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노魯, 위衛, 모毛, 담聃에 봉한 것⁶⁰과 보옥寶玉과 대궁大弓을 반사한 것⁶¹은 우리나라가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종친을 규합하는 의리를 밝혀 종친들에게 보이고 인륜을 펼치는 방법을 강구하여 집안사람들을 대해야만, 은애하는 사이에 회목한 기운을 채워 친소가 각기 그 기쁨을 얻게 되고, 가르치고 이끄는 사이에 올바른 가르침을 보여 대소가 모두 두려워할 바를 알게 됩

55 고아가 … 길렀으니: 문종은 자신의 아우 광평대군廣平大君 이여李瑬가 일찍 죽은 것을 애도하였다. 그래서 이여의 아들 이부李溥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여 항상 궁중에 두고 세자와 더불어 벗하여 글을 읽게 하였다. 이부의 나이가 어렸으나 특별히 영순군永順君에 제수하여 작질爵秩이 임금의 여러 조카보다 높게 하였다. (『文宗實錄』 1년 1월 6일)

56 여막에 … 우대하고: 당시 인흥군이 상중喪中에 있으나 왕자 대우하는 도리를 외신外臣과 같게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품록品祿을 지급하고 기복起復하게 하였다. (『仁祖實錄』 5년 1월 3일)

57 인경궁仁慶宮의 행랑채를 하사하여 총애하였습니다: 인경궁은 인조의 아버지 정원대군定遠大君이 살던 곳으로, 인조가 아우인 능원대군綾原大君의 집에 사랑채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인경궁의 행랑채를 떼어 능원대군에게 주도록 하였다. (『仁祖實錄』 22년 3월 3일)

58 경안군慶安君에 … 챙기고: 효종은 즉위 후,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희李禧를 복권하여 경안군에 봉하였다. (『孝宗實錄』 10년 윤3월 4일)

59 영신군靈愼君에 … 위로하였습니다: 효종은 숙부인 능원대군綾原大君을 매우 좋아하여, 그를 위로할 길이 없다면 그의 아들 이형李滢의 자급資級을 올려주었고, 몇 년 뒤에는 그를 영신군에 제수하였다. (『孝宗實錄』 2년 10월 12일; 『承政院日記』 효종 9년 3월 25일)

60 노魯 … 봉한 것: 노魯, 위衛, 모毛, 담聃은 주 문왕周文王의 아들들에게 봉해 준 나라이다. 노는 주공周公 희단姬旦에게, 위는 강숙康叔 희봉姬封에게, 모는 희정姬靜에게, 담은 희재姬載에게 봉해주었다.

61 보옥寶玉과 대궁大弓을 반사한 것: 보옥은 우임금의 서옥瑞玉이고, 대궁은 봉보封父의 활로, 천자의 종묘에 보관되어 있던 보물이다. 주공周公의 아들 백금伯禽에게 이를 하사하여 노魯를 다스리게 하였다. (『春秋左氏傳』 定公 4年)

니다. 그러므로 동평왕東平王이 선을 즐거워하고⁶² 하간왕河間王이 예를 좋아한 것⁶³ 모두 술선수범하는 교화를 보고 감흥이 일었던 것입니다. 또한 생각건대, 의빈儀賓이라는 이름은 비록 외조外朝에 연관되어 있지만 자취는 내종內宗과 같습니다. 임금이 가까이하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예교를 따르는 이가 드물고 재앙을 초래하기 쉬우니, 이들 역시 한편으로는 돌보아서 잘 대우하고 한편으로는 독책督責하고 면려勉勵하여 은애와 의리가 함께 행해져 폐해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명성을 영구히 보전하고 태평성대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2 동평왕東平王이 선을 즐거워하고: 「법조종法祖宗」 법조 3번 각주 참조.

63 하간왕河間王이 예를 좋아한 것: 하간왕은 한 경제漢景帝의 아들 유덕劉德으로, 시호는 헌獻이다. 태학太學을 설치하고 박사를 두어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으며, 예악을 중수하여 무제武帝에게 팔일무八佾舞를 바치기도 했다.

대척완¹待戚畹

척완¹을 대하다

법조 法條

|| 전한 문제前漢文帝的 황후 두씨竇氏²는 청하군清河郡 관진觀津 사람이다. 아우 두광국竇廣國³은 자字가 소군少君으로 어려서 남에게 유괴되어 팔려갔는데, 누이가 황후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글을 올려 스스로를 해명하고 전택과 금전을 하사받아 형 두장군竇長君과 함께 장안長安에 살았다. 강후絳侯와 관 장군灌將軍⁴ 등이 말하길 “우리들의 운명이 이 두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그들을 위해 사부師傅나 빈객賓客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여씨呂氏⁵를 본받는다면 큰일이다.”⁶ 라고 하고, 절도와 행실이 있는 선비를 뽑아 함께 지내게 하니, 두장군과 두광국은 이로 인해 겸양하는 군자가 되었다. 문제는 두광국이 어질고 행실이 있다 하여 그를 승상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천하 사람들이 내가 광국을 사적으로 대한다고 말할까 염려된다.”라고 하여 오래 생각한 끝에 불가하다 하였다.

1 척완: 임금의 외척을 이른다.

2 황후 두씨竇氏: 『목종친睦宗親』 법조法條 11번 각주 참조.

3 두광국竇廣國: ?~기원전 151. 전한 문제前漢文帝的 외척이다. 문제의 황후인 두 황후의 아우이자 경제景帝的 외숙으로, 문제는 그에게 벼슬을 주지 않았으나, 경제는 장무후후武侯에 봉하였다.

4 강후絳侯와 관장군灌將軍: 강후는 주발周勃(?~기원전 169), 관장군은 관영灌嬰(?~기원전 176)이다. 한 고조漢高祖를 도와 천하를 통일한 개국공신으로, 고조가 죽자 여씨呂氏 일족을 처단하고 문제文帝를 세웠다.

5 여씨呂氏: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황후인 여후呂后와 그 일족을 가리킨다. 여후는 고조가 죽은 뒤 여주女主로 집권하여 여씨 일족을 왕으로 봉하였고, 황실을 억압하여 유씨劉氏의 한나라를 위태롭게 하였다. 여후가 죽고 여씨의 난이 일어나자 주발周勃, 진평陳平이 여씨 일족을 멸족하였다.

6 또 … 큰일이다: 원문의 “又復效呂氏大事也”는 “또 다시 여씨가 반란한 것을 본받을 것이다.”와 “또 다시 여씨를 본받는다면 큰일이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후자를 채택하였다.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서는 “大事 謂反也”이라고 하여 ‘大事’를 ‘여씨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았으며, 장순휘張舜徽는 『자치통감전역資治通鑑全譯』에서 “또 다시 여씨를 본받는다면 큰일이다.”로 번역하였다.

- || 장군 박소⁷가 황제의 사자를 죽였는데, 문제가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여 공경^{公卿}과 군신^{群臣}에게 상복을 입고 가서 조문하게 하니, 박소가 결국 자살하였다.
- || 전한 경제^{前漢景帝} 때의 일이다. 두 태후^{太后}⁸가 “황후의 오라비 왕신^{王信}⁹을 후^侯에 봉할 만합니다.”라고 하니, 경제가 “이전에 남피^{南皮}와 장무^{章武}가 후에 봉해지지 못했었는데【남피는 두장군^{竇長君}의 아들 두팽조^{竇彭祖}이며, 장무는 두광국^{竇廣國}이다.】제가 즉위하고 나서야 후에 봉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직 왕신을 후에 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두 태후가 “두장군이 살아있을 때 결국 후에 봉해지지 못했으니, 나는 이것을 깊이 후회합니다.”라고 하니, 경제가 “승상과 의논해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승상 주아부^{周亞夫}¹⁰가 “고황제^{高皇帝}께서 유씨^{劉氏}가 아니거나 공이 있는 자가 아니면 후에 봉할 수 없다고 정하셨으니, 후로 봉할 수 없습니다.¹¹ 지금 왕신이 비록 황후의 오라비이나 공이 없는데 후로 봉하는 것은 고황제의 맹약에 어긋납니다.”라고 하였다. 경제가 잠자코 있다가 그만두었다.
- || 전한 선제^{前漢宣帝}¹² 때의 일이다. 허백^{許伯}¹³이 그 아우 중랑장^{中郎將} 허순^{許舜}으로 하여금 태자의 집을 감호^{監護}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선제가 태자의 태부^{太傅} 소광^{疏廣}¹⁴에게 문

7 박소^{薄昭}: ?~기원전 170. 전한 문제^{前漢文帝}의 어머니인 박 태후^{薄太后}의 아우이다. 대왕^{代王}으로 있던 문제를 황제로 옹립하고 지후^{軹侯}에 봉해졌는데, 태후를 믿고 방자하게 굴었다. 황제의 사자를 죽이기까지 하자, 문제는 그를 직접 처벌하지 못하고 공경들을 시켜서 자살하도록 하였는데, 박소가 자살하지 않았다. 문제가 신하들에게 상복 차림으로 가서 곡하게 하니 결국 자살하였다. (『漢書』「文帝紀」注)

8 두 태후^{竇太后}: 「목종친^{睦宗親}」 법조^{法條} 11번 각주 참조.

9 왕신^{王信}: 전한 경제^{前漢景帝}의 황후인 효경황후^{孝景皇后}의 오라비로, 개후^{蓋侯}에 봉해졌다.

10 주아부^{周亞夫}: 기원전 199~기원전 143.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 세류^{細柳}에서 흉노의 침략을 막아 문제의 총애를 받았다. 경제^{景帝} 때 오목, 조^趙 등 7국^{七國}이 반란을 일으키자, 주아부가 태위^{太尉}로서 명을 받고 정벌하여 승상에 올랐다. 만년에 경제의 의심을 받아 죽었다.

11 고황제^{高皇帝}께서 … 없습니다: 한 고조^{漢高祖}가 조정의 신하들과 여후^{呂后}를 한곳에 모이게 하여 백마를 죽이고 그 피로 맹세하였는데, 유씨^{劉氏}가 아닌 자가 왕이 되면 천하가 함께 그를 공격하고, 만일 공로가 없이 제후에 오르게 되면 천하가 모두 그를 죽인다고 맹약한 것을 말한다. (『史記』「呂太后本紀」)

12 전한 선제^{前漢宣帝}: 기원전 91년~기원전 48년. 전한 제10대 황제 유순^{劉詢}이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73년~기원전 49년이다. 소제^{昭帝}가 죽은 후 광광^{霍光}에 의해 황제로 옹립되었다. 지방행정제도 정비와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고, 처음으로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여 빈민 구제에도 힘썼다. 대외적으로는 오손^{烏孫}과 손잡고 흉노를 분열시키고 서역 36국을 복속시킴으로써 국위를 떨쳤다.

13 허백^{許伯}: ?~기원전 61. 전한 선제^{前漢宣帝}의 황후인 공애황후^{恭哀皇后} 허평군^{許平君}의 부친으로, 허 황후의 아들인 유석^{劉奭}이 황태자가 되자 태자의 외조부로서 평은^{平恩侯}에 봉해졌다.

자, 소광이 “태자는 국저國儲이니, 스승과 벗은 반드시 천하의 영걸英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직 외가外家만을 가까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선제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 || 전한 원제前漢元帝 때의 일이다. 풍봉세馮奉世와 풍야왕馮野王 부자¹⁵가 명성이 있었다. 어사대부 자리가 비자, 원제가 상서尙書에게 중이천석中二千石¹⁶인 자들 가운데 선발하여 차등을 매기게 하였는데, 소의昭儀¹⁷의 오라비인 대홍려大鴻臚 풍야왕의 행실과 능력이 제일이었다. 그러나 원제는 “내가 풍야왕을 삼공三公으로 삼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후궁의 친속을 사사로이 대했다고 하면서 풍야왕을 예로 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때의 일이다. 음 귀인陰貴人의 아우 음취陰就¹⁸를 봉하여 선은후宣恩侯로 삼고, 다시 음취의 형인 시중侍中 음흥陰興¹⁹을 불러서 작위를 봉하려고 하였다. 음흥이 한사코 사양하면서 “신은 아직도 앞장서 적의 진지를 함락하는 공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서 여러 사람이 작위와 토지를 받는다면, 천하 사람들이 원망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광무제가 가상히 여겨 그의 뜻을 꺾지 않았다. 음 귀인이 사양한 까닭을 묻자, 음흥이 “무릇 외척의 집안은 겸손하게 물러날 줄 몰라 딸을 시집보내 후왕侯王의 배필로 삼으려고 하고, 공주를 며느리로 맞이들이려고 결눈질합니다. 부

14 소광疏廣: 자는 중옹仲翁이다. 『춘추』에 정통하여 박사태중대부博士太中大夫가 되었다. 원제元帝가 황태자일 적에 소부少傅와 태부太傅가 되어 5년 동안 황태자를 가르치다 병을 핑계로 사직을 청해 물러났다. 그의 조카인 소수疏受와 함께 양소兩疏라 일컬어진다.

15 풍봉세馮奉世와 풍야왕馮野王 부자: 풍봉세는 전한 원제의 후궁인 풍 소의馮昭儀의 부친으로 선제宣帝 때, 대원大宛과 서강西羌을 정벌하여 관내후關內侯에 봉해졌다. 풍야왕은 풍 소의의 오라비로 아우인 풍립과 함께 상군 태수上郡太守가 되어 청렴하고 겸손한 행실로 대풍군大風君, 소풍군小風君이라고 칭해졌다. (『漢書』「馮奉世傳」)

16 중이천석中二千石: 한대漢代에는 관계官階를 ‘석石’으로 나타냈는데 이천석은 가장 높은 벼슬이고 중이천석은 이에 다음 가는 벼슬이다.

17 소의昭儀: 전한 원제의 후궁인 풍 소의馮昭儀(?~기원전 6)를 가리킨다. 풍 소의는 풍봉세馮奉世의 딸로, 이름은 원媛이다. 원제 때 공으로 들어가 첩여婕妤가 되었다가 뒤에 소의로 올랐으며, 다시 아들이 중산왕中山王에 봉해짐에 따라 중산태후가 되었다. 그 뒤에 부 황후傅皇后의 모함을 받아 자살하였다. (『漢書』「孝元馮昭儀」)

18 음취陰就: ?~59.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의 황후인 광렬황후光烈皇后의 아우이다. 선은후宣恩侯에 봉해졌다가 다시 신양후新陽侯로 봉해졌다.

19 음흥陰興: 9~47. 후한 광무제의 황후인 광렬황후의 아우이다. 무장으로서 광무제를 따라 사방을 정벌하여 깊은 신임을 받았으며, 제후의 작위와 대사마大司馬의 직책을 모두 사양하였다. (『後漢書』「陰興傳」)

귀는 끝이 있으므로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음 귀인이 그의 말에 감동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끝내 종친을 위해 자리를 구하지 않았다.

|| 후한 장제(後漢章帝) 때, 마 태후(馬太后)²⁰가 마씨에게 작위를 봉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장제가 “태후께서 진실로 겸허하다고 하지만, 지금 저에게만 세 외숙²¹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하십니까.”라고 거듭 청하니, 마 태후가 “무릇 지극히 효성스러운 행실은 아버이를 편하게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지금 자주 이변을 만나 밤낮으로 근심하고 있는데 외가 사람들에게 작위를 봉해 주는 일을 먼저 하려 하시니, 자모(慈母)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후한 장제 때의 일이다. 큰 가뭄이 들자 일을 아뢰는 자가 외척에게 작위를 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마 태후가 “내게 아첨하여 복을 구하려는 것일 뿐이다. 옛날 왕씨의 오후(五侯)²²가 한 날 함께 봉해졌을 때, 누런 안개가 사방에 가득했을 뿐 단비가 내렸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선제(先帝[명제明帝])께서 외척의 발호(跋扈)를 방지하여 요직에 두지 않으셨고, 또 ‘내 아들은 선제(先帝[광무제光武帝])의 아들과 같아선 안 된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 유사(有司)는 어찌하여 마씨를 음씨(陰氏)²³에 견주려 하는가. 지난번 탁룡원(濯龍園)의 문을 지날 적에 외가에 문안하러 온 자를 보니, 수레는 흐르는 물처럼 이어져 있고 말은 헤엄치는 용과 같았다. 그리하여 새해 문안을 끊어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였다. 내가 어찌 선제의 뜻을 저버리고 거듭 서경(西京)이 패망한 전철²⁴을 그대로 따르겠는가.”라고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 후한 장제 때의 일이다. 두헌(竇憲)²⁵이 황후의 세력을 믿고서 심수공주(沁水公主)²⁶의 원전(園

20 마 태후(馬太后): 「정궁위(正宮闈)」 법조 8번 각주 참조.

21 세 외숙: 마 태후의 오라비인 마료(馬廖), 마방(馬防), 마광(馬光)을 가리킨다.

22 오후(五侯): 전한 원제(前漢元帝)의 후비인 효원황후(孝元皇后) 왕정군(王政君)의 오라비이자 성제(成帝)의 다섯 외숙을 이른다. 왕담(王譚)은 평야후(平阿侯)에, 왕상(王商)은 성도후(成都侯)에, 왕립(王立)은 홍양후(紅陽侯)에, 왕근(王根)은 곡양후(曲陽侯)에, 왕봉시(王逢時)는 고평후(高平侯)로 한나라(漢)에 후(後)에 봉해졌다. (『前漢書』「元后傳」)

23 음씨(陰氏):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의 황후이자, 명제(明帝)의 모후인 광렬황후(光烈皇后)의 집안을 가리킨다.

24 서경(西京)이 패망한 전철: 서경은 장안(長安)에 수도를 두었던 전한(前漢)을 가리킨다. 전한 때의 외척 여록(呂祿)과 여산(呂產), 두영(杜嬰), 상관걸(上官桀)과 상관안(上官安) 부자, 곽우(霍禹) 등이 정권을 전횡하여 패망에 이르렀다.

田을 헐값에 팔기를 요구하여 빼앗았는데, 공주가 핍박을 받아 두려워서 따지지 못하였다. 후에 이 일이 발각되자 장제가 두헌을 불러 크게 꾸짖어 “공주의 원전을 빼앗을 때 그대가 한 짓이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보다 더하지 않은가.”²⁷ 생각할수록 사람을 놀라고 소름끼치게 하는구나. 귀한 공주도 억울하게 빼앗겼는데, 히물며 힘없는 백성들은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 II 후한 화제後漢和帝 때의 일이다. 하남윤河南尹 장포張酺²⁸가 여러 번 합당한 법으로 두경竇景의 잘못을 바로잡았다.²⁹ 두씨 집안이 몰락하자, 장포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두헌竇憲 등이 한창 충애를 받고 귀할 때에는 모두들 두헌이 이윤伊尹³⁰과 여상呂尚³¹의 충심을 지녔다고 말하더니, 지금 황제의 위엄이 선 이후로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하양후夏陽侯 두괴竇瓌는 충성스럽고 선한 마음을 지녀 한 번도 법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신이 듣기로 왕정王政에서 골육을 다스리는 형벌에는 세 번 용서하는 의리³²가

25 두헌竇憲: ?~92. 후한 장제後漢章帝의 황후인 장덕황후章德皇后 두씨의 오라비로, 정치를 전횡하고, 화제和帝를 죽이려다 발각된 뒤 자살하였다.

26 심수공주沁水公主: 후한 명제後漢明帝의 다섯 번째 딸이다. 개국공신 등우鄧禹의 손자 고밀후高密侯 등건鄧乾에게 시집갔다. 심원沁園이란 정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후세에 공주의 정원이나 처소를 심원이라고 하였다.

27 조고趙高가 … 않은가: 조고는 진秦의 환관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하여 2세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한 일이다. 이때 장제章帝가 심수공주沁水公主의 원전을 지나다가 이를 두헌竇憲에게 물었는데, 두헌이 은밀히 좌우의 사람들을 위협해서 대답하지 못하게 하였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28 장포張酺: ?~104. 자는 맹후孟侯이다. 후한 화제後漢和帝 때 사도司徒를 지냈으며 『서경』에 밝았다.

29 두경竇景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당초 장포가 위군태수魏郡太守로 있을 때, 위군 사람 정거鄭據가 두경을 고소하였다. 두경이 아전 하맹夏猛을 보내어 은밀히 장포에게 청탁하였으나, 장포가 하맹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다. 또 장포가 하남윤이 되었을 적에 시장의 병졸을 공격하여 부상시킨 두경의 집안사람들을 잡아들였고, 두경이 노하여 휘하의 후해侯海를 보내어 시승市丞을 구타하자, 후해의 죄를 다스려 석방으로 귀양 보낸 일이 있다. (『後漢書』 「張酺傳」)

30 이윤伊尹: 「법조종法祖宗」 법조 16번 각주 참조.

31 여상呂尚: 주 문왕周文王의 신하 강상姜尚으로, 여몽은 싸이고, 성은 강姜이다. ‘태공망太公望’ 또는 ‘강태공姜太公’으로도 불린다. 무왕武王을 도와 상 주왕商紂王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그 공으로 제齊에 봉해져 시조가 되었다. 「임현능任賢能」 법조 기사에 보인다.

32 세 번 용서하는 의리: 주대周代에 공족公族이 죄를 범했을 때, 임금이 세 번 용서한 뒤에 형을 가하던 법을 말한다.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 “공족의 옥사가 이루어지면 유사宥司가 공에게 죽을죄이면 ‘아무개의 죄가 대벽大辟[사형死刑]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고, 형벌을 받을 죄이면 ‘아무개의 죄가 소벽小辟에 해당됩니다.’ 라고 한다. 공이 말하기를 ‘용서하라.’ 라고 하면 유사가 또다시 아뢰기를 ‘죄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고, 공이 또다시 ‘용서하라.’ 라고 하면 유사가 또다시 ‘죄에 해당됩니다.’ 라고 아뢰니, 세 번째 용서하라 함에 미쳐서는 유사가 대답하지 않고 달려 나가서 전인甸人에게 형을 집행하게 한다.[公族有罪 獄成 有司獻于公曰 某之罪在大辟 公曰 宥之 有司又曰 在辟 公又曰 宥之 有司又曰 在辟 及三宥 不對 走出 致刑于甸人]”라고 하여, 군왕은 인정을 베풀어야 하고 유사는 원칙에 따라야 함을 말하였다. 여기에서는 군왕의 입장에서 끝까지 은전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있다고 합니다. 응당 용서해 주어 후덕厚德을 높이셔야 합니다.” 화제가 그 말에 감동하니, 이로 인해 두괴 홀로 온전할 수 있었다.

- || 후한 안제後漢安帝 때의 일이다. 등 태후鄧太后³³가 사례교위司隸校尉, 하남윤河南尹, 남양 태수南陽太守에게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전대前代를 보면 매년 외척이 조정을 더럽히고 어지럽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 폐단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태만하여 번번이 그 벌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거기장군車騎將軍 등즐鄧騭³⁴ 등은 비록 경순敬順한 뜻을 품고 있지만, 그 가문이 광대하고 인척이 적지 않고 빈객은 간교하여 조정의 금령을 범하는 일이 많다. 분명히 검속하고 경계하여 서로 용인하거나 비호하지 말라.”
- || 북위 고조北魏高祖가 생존한 외숙³⁵인 이안조李安祖 등 네 사람을 찾아 후侯에 봉하고 “왕자王者는 관직을 설치하여 어질고 능력 있는 이를 대우하니, 외척이라는 이유로 등용하는 것은 말세의 법이다. 경들은 별다른 능력이 없으니, 우선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부터 능력이 없는 외척들은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였다.
- || 당 태종唐太宗 때의 일이다. 장손 황후長孫皇后가 죽음을 앞두고 태종에게 말하였다. “첩의 일가가 가부菽李³⁶이라는 이유로 복록과 지위를 누리게 한 것은 이미 훌륭한 거조가 아니니, 위태로워지기 쉽습니다. 그 자손을 보전하고자 한다면 삼가 권세 있는 요직을 차지하게 하지 말고, 다만 외척으로서 봉조청奉朝請³⁷이면 충분합니다.”【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33 등 태후鄧太后: 후한 화제後漢和帝의 황후인 화희황후和熹皇后(81~121)를 가리킨다. 음후陰后가 폐위된 뒤에 황후로 책봉되었다. 화제가 죽은 뒤에 상제殤帝, 안제安帝를 세우고 태후로서 섭정한 10여 년 동안 덕정德政이 많았다고 평가된다. (『後漢書』「和熹鄧皇后」)

34 등즐鄧騭: 「정궁위正宮闈」 법조 13번 각주 참조.

35 생존한 외숙: 풍 태후馮太后가 효문제孝文帝의 생모인 사 황후思皇后의 아버지 이혜李惠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모함하여 그의 아들들과 형제를 한꺼번에 살육하였다. 이후 이혜의 종제인 이봉李鳳 또한 다른 일에 연루되어 죽었는데, 그의 아들 이안조 등 네 사람만이 도망가 목숨을 부지하였다. (『魏書』「外戚」)

36 가부菽李: 갈대 대롱 속에 있는 얇은 막膜으로, 교분交分이 알거나 먼 친척,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을 비유한다. 여기서는 황제의 인척을 가리킨다.

37 봉조청奉朝請: 고대에 제후가 봄에 천자를 조현朝見하는 것을 조朝, 가을에 조현하는 것을 청請이라 하였다. 퇴직한 고관 대신이나 황실과 외척에게 봉조청의 명의를 주어 조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명 영종明英宗 때의 일이다. 태후³⁸의 중형仲兄을 위해 승진을 요구하는 자가 있었는데, 영종이 이현李賢³⁹에게 “태후께서 외척의 집안을 봉작하였다는 말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으시니, 지금 이 요구를 들으시면 틀림없이 노여워하실 것이다. 불허한다.”라고 하였다. 이때 태후 아우의 집안사람이 점방店房을 사사로이 세워 이익을 독점하니, 영종이 “황친皇親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 하고, 그 점방을 허물고 집안사람을 법대로 처벌하게 하였다.

|| 명 헌종明憲宗 때의 일이다. 주 태후周太后⁴⁰의 아우 주수周壽⁴¹를 경운백慶雲伯에 봉하고 주옥周曷⁴²을 장녕백長寧伯에 봉하였는데, 둘 다 간악한 백성들이 투헌投獻⁴³한 땅을 받아 장전莊田으로 삼게 해달라고 주청하였다.⁴⁴ 또 주옥이 무강현武強縣의 민전을 빼앗으려 하니, 헌종이 형부낭중刑部郎中 팽소彭韶⁴⁵에게 칙서를 내려, 그곳에 가서 토지의 규모를 살피게 하였다. 팽소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무강현은 기내畿內에 가까이 있는 곳이니 이치상 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척리와 공신은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굳이 백성과 먹을 거리와 입을 거리를 다투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성조聖朝의 국운은 끝이 없고 법은 오래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구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면, 또한 감당치 못할까 걱정됩니다. 뒷날 황전荒田까지 청하는 귀척貴戚이 있을 것입니다.” 헌종이 노하여 “집이 조정의 논의를 저버리겠는가.”라고 하였다.

38 태후: 명 선종明宣宗의 계후이자 영종明英宗의 생모인 효강장황후孝恭章皇后 손씨孫氏(1399~1462)를 가리킨다.

39 이현李賢: 1408~1466. 자는 원덕原德이다. 벼슬은 이부상서吏部尙書,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등을 지냈다. 칙명에 따라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편찬하였으며, 저서에 『감고록鑒古錄』, 『천순일록天順日錄』 등이 있다.

40 주 태후周太后: 명 영종明宣宗의 귀비貴妃 주씨周氏(1430~1504)를 가리킨다. 시호는 효숙孝肅이다. 아들 건심見深(헌종憲宗)이 즉위함에 따라 태후로 책봉되었다.

41 주수周壽: ?~1509. 효숙태후孝肅太后的 아우이자, 명 헌종의 외숙이다. 헌종 즉위 후, 경운백에 봉해졌다.

42 주옥周曷: ?~1508. 효숙태후의 아우이자, 명 헌종의 외숙이다. 장녕백에 봉해졌다.

43 투헌投獻: 토지를 바치는 것이다. 명대明代에 강압적인 조세의 압박 아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헌납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하여 세수를 피하였기도 하였으며, 혹은 간민奸民이 백성의 땅을 빼앗아 권력자에게 헌납하기도 하였다.

44 둘 … 주청하였다: 주수周壽는 간민奸民 이정李政 등의 헌납을 받아 경도慶都, 청원淸苑, 청하淸河 3현의 땅 5천 4백 여경을 장전莊田으로 삼게 해달라고 주청하였고, 주옥周曷은 간민 위충魏忠 등의 헌납을 받아 경주景州 동광현東光縣의 땅 1천 9백 여 경을 주청하여 장전으로 삼았다. 본래 장전은 황실에서 ‘관장官莊’이란 명목으로 하사하는 것인데, 두 사람이 사사로이 간민에게 땅을 받고 장전으로 삼게 해달라고 청한 것이다.

45 팽소彭韶: 1430~1495. 자는 봉의鳳儀이다. 홍치弘治 연간에 형부시랑刑部侍郎에서 상서尙書가 되어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조정의 폐단에 대해 극론하였고, 관직에 있는 동안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였으나, 귀척貴戚들의 미움을 받아 사직하였다. 저서에 『정훈政訓』, 『천조일록天曹日錄』, 『팽혜안집彭惠安集』 등이 있다.

|| 명 신종(明神宗) 때의 일이다. 무청백(武淸伯) 이위(李偉)⁴⁶가 무덤을 조성할 비용을 청하자, 공부(工部) 관빈(郭賓)이 전례에 따라 은 2만 냥을 내어주었다. 이에 장거정(張居正)⁴⁷이 “귀척(貴戚)의 집안은 부유하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고 절도를 알지 못함을 걱정하는 법입니다. 부유하면서 법식을 따라야 부유함을 오래 지속할 수 있으니, 분에 넘치는 은혜와 선을 넘는 청은 스스로를 보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신종이 바로 중지하게 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戒條)

|| 전한 성제(前漢成帝) 때의 일이다. 유향(劉向)⁴⁸이 봉사(封事)를 올려 다음과 같이 극간하였다. “봉록의 권한이 공실(公室)을 떠나고 정사가 대부에게서 좌우되는 것은 나라가 위태로워 망할 징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씨(王氏) 중에 붉은 바퀴와 화려한 바퀴통을 단 수레⁴⁹를 탄 자가 23인이요, 푸른 인끈과 자주 인끈을 단 자와 담비 꼬리와 매미 날개로 장식한 관⁵⁰을 쓴 자가 조정을 가득 채워 물고기 비닐처럼 뻣뻣합니다. 대장군이 권세를 잡아 정사를 마음대로 하고, 오후(五侯)⁵¹가 참람하고 왕성하여 함께 위엄과 복을 만들고 있으니, 이는 황태후의 복이 아닙니다. 외척을 쫓아내 멀리하고 정사를 맡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 계책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전씨(田氏)⁵²가 다시 이 세상에 등장할 것이요, 육경(六

46 이위(李偉): 1527~1583, 자는 세기(世奇)이다. 효정태후(孝定太后)의 부친으로 명 목종(穆宗)의 장인이자, 신종(神宗)의 외조부이다.

47 장거정(張居正): 『법조종법(法祖宗)』 법조 13번 각주 참조.

48 유향(劉向): 기원전 77~기원전 6. 한(漢)의 종실로, 한 고조(高祖)의 배다른 동생 유교(劉交)의 4세손이다. 문장에 능하고 경술(經術)에 조예가 깊었으며, 누차 상소하여 시정(時政)을 논함에 그 말이 매우 강직하였고, 외척 왕씨(王氏)를 신랄하게 배척하였다. 저서에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 『열녀전(列女傳)』, 『신서(新序)』, 『설원(說苑)』 등이 있다.

49 붉은 … 수레: 원문의 “朱輪華轂”을 풀이한 말로, 고관대직을 가리킨다. 한대(漢代)에는 고귀한 지위에 오르면 그가 타는 수레바퀴를 붉게 칠하고 속 바퀴를 검은색으로 장식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50 푸른 … 관: 원문의 “靑紫貂蟬”을 풀이한 말로, 고관대직을 이르는 말이다. 한대(漢代)에 구경(九卿)은 푸른 인끈을, 공후(公侯)는 자주색 인끈을 사용하였고, 시중(侍中)과 중상시(中常侍)는 관을 담비 꼬리로 장식하고 매미 모양의 장식을 붙여 꾸몄다.

51 오후(五侯): 『대척(待戚)』 법조 22번 각주 참조.

52 전씨(田氏): 춘추 시대 진(陳)의 공자 완(完)이 제(濟)로 망명하여 경공(景公)에게 중용되었고, 씨를 ‘진(陳)’에서 ‘전(田)’으로 바꾸었다. 이후 가문이 번성하여 전화(田和) 때 이르러 강공(康公)을 내쫓고 제를 차지하였다.

卿⁵³이 반드시 한漢에 일어날 것입니다.” 글이 올려지자, 성제가 그를 불러 만나보고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였으나, 결국 유향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였다.

|| 왕씨 오후⁵⁴가 앞다투어 사치를 부렸다. 성도후⁵⁵成都侯 왕상⁵⁶王商이 더위를 피하고자 성제⁵⁷成帝에게 명광궁⁵⁸明光宮을 빌렸고, 또 장안성⁵⁹長安城을 뚫고 예수⁶⁰灑水의 물을 끌어와 집 안의 큰 연못에 배가 다니도록 하였다. 성제가 왕상의 집에 행차하였다가 성을 뚫어 물을 끌어다 댄 것을 보고는 내심 괘씸하다고 생각했다. 후에 미행하러 나갔다가 곡양후⁶¹曲陽侯 왕근⁶²王根의 집에 들렀는데, 또 정원에서 백호전⁶³白虎殿을 본뜬 토산과 점대⁶⁴漸臺를 보았다. 성제가 노하여 상서⁶⁵尙書에게 조서를 내려 문제⁶⁶文帝 때 박소⁶⁷薄昭를 주벌한 고사⁶⁸를 상주하게 하였다. 성제의 노여움은 한참 뒤에야 풀렸으니, 다만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 실제로 죽이려는 뜻은 없었다.

|| 후한 장제⁶⁹後漢章帝가 거기장군⁷⁰車騎將軍 마방⁷¹馬防⁷²을 보내 소당강⁷³燒當羌⁷⁴을 공격하게 하자, 제오륜⁷⁵第五倫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귀척⁷⁶貴戚은 후회에 봉하여 부유하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찌서이겠습니까? 법으로 다스리면 은혜를 해치고, 친함으로 사사로이 대하면 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삼가 듣기로 마방이 지금 서쪽 정벌을 맡았다고 하니, 신은 은혜롭고 인자하신 태후와 지극히 효성스러우신 폐하께서 돌연히 마방에게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온전히 사

53 육경⁶六卿: 육경은 춘추 시대 진홍의 대부인 범씨⁷范氏, 중행씨⁸中行氏, 지씨⁹知氏, 한씨¹⁰韓氏, 조씨¹¹趙氏, 위씨¹²魏氏이다. 뒤에 지씨와 조씨가 연합하여 범씨와 중행씨를 제거하였고, 또 한씨, 위씨, 조씨가 지씨를 제거한 다음 진을 셋으로 나누어 한, 위, 조, 세 나라를 세웠다.

54 명광궁⁵明光宮: 전한 무제⁶前漢武帝가 건립한 궁전으로, 미양궁⁷未央宮 서편에 있었는데, 금과 옥, 진주 등으로 발을 만들어 밤낮없이 빛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후대에는 임금이 있는 대궐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55 백호전⁵白虎殿: 미양궁 북쪽에 있던 전각으로, 후한 장제⁶後漢章帝가 유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여러 유학자를 모아 오경⁷五經을 연구하게 하였던 곳이다. 즉, 백호전은 황궁에 있는 전각인데, 왕근⁸王根이 주제⁹에게 모방하여 자신의 집에 지었다.

56 박소⁵薄昭를 주벌한 고사: 「대척안⁶待戚覽」 법조 기사에 보인다.

57 마방⁵馬防: ?~101, 자는 강평⁶江平이다. 마원⁷馬援의 아들로, 명제⁸明帝의 후비인 명덕황후⁹明德皇后的 오라비이다. 장제¹⁰章帝 때, 금성¹¹金城과 농서¹²隴西의 강인¹³羌人 반란을 일으키자 행거¹⁴거장군¹⁵行車騎將軍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 진압했다. 돌아와 거기장군이 되고 성문교위¹⁶城門校尉를 겸했으며, 영양후¹⁷鄉陽侯에 봉해졌다.

58 소당강⁵燒當羌: 한대⁶漢代 서강족⁷西羌族의 일종으로, 청해성⁸青海省 동쪽에 있었다.

59 제오륜⁵第五倫: 자는 백어⁶伯魚이다. 벼슬은 회계⁷會稽, 촉군⁸蜀郡의 태수를 지내고 사공⁹司空에 이르렀다. 끈고 사심이 없었다고 평가받는다. (『後漢書』「第五倫傳」)

랑하기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장제는 제오륜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 후한 안제(後漢安帝) 때의 일이다. 엄 황후(嚴皇后)⁶⁰ 형제의 권세가 강성하였다. 상서(尙書) 적포(積) 醜⁶¹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예전에 두씨(竇氏)와 등씨(鄧氏)의 총애가 사방을 뒤흔들었으나, 그 권세가 무너져서는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새끼돼지가 되고자 한들 어찌 가능하겠습니까.⁶² 대개 점진적으로 이론 존귀함이 아니면 반드시 갑작스럽게 잃게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관직이 아니면 반드시 재앙이 빠르게 닥칩니다. 지금 외척이 총애를 받아 정사가 개인의 집안으로 옮겨 갔으니, 예전에 수레가 넘어진 길을 다시 찾아간다면 어찌 부서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글이 올라갔지만, 안제는 살피지 않았다.

|| 후한 환제(後漢桓帝) ⁶³ 때의 일이다. 양기(梁冀)⁶⁴의 한 가문에서 전후로 7명의 후(侯)와 3명의 황후(皇后)⁶⁵와 6명의 귀인과 2명의 대장군이 나왔고, 부인과 딸로서 식음을 받아 군(君)으로 불린 자가 7명이고, 공주와 혼인한 자가 3명이며, 그 나머지 구경(九卿)과 윤(尹)과 중랑장(中郎將)과 여러 교위(校尉)가 57명이었다. 양기의 처 손수(孫壽)는 양성군(襄城君)이 되어 양적(陽翟)을 식읍으로 받아 세입이 5천만이었다. 양기와 손수는 길을 마주하여 집을 지어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켰고 금옥과 진귀한 물건들을 창고에 가득 쌓았으며, 원유(園囿)를 넓게 만들어 흙을 파내고 산을 쌓았다. 하남성(河南城) 서쪽에 토원(兔苑)을 조성하고 살아있는 토끼를 바치

60 엄 황후(嚴皇后): 후한 인제(後漢安帝)의 황후인 안시황후(安思皇后) 엄희(嚴姬(?~126)를 가리킨다. 재주와 미모가 뛰어났으며 질투심이 강하였다.

61 적포(積醜): 자는 자초(子超)이다. 시중(侍中), 상서(尙書), 주천 태수(酒泉太守), 경조윤(京兆尹) 등을 역임했다. 안제(安帝)가 외척을 임용하자 상서하여 간했고, 여러 차례 권귀(權貴)들의 모함을 받았다. 저서에 『효경원신구명해고(孝經援神鉤命解詁)』가 있다.

62 작은 ... 가능하겠습니까: 춘추 시대 초왕(楚王)이 장자(莊子)가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재상으로 초빙하겠다고 하였다. 그때 장자가 사신에게 대답하기를, “천금도 소중하고 장관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대는 저 제사에 희생으로 쓰이는 소를 보지 못했는가. 제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잘 먹고 좋은 옷을 입혀 보살피지만, 결국 제사에 제물로 사용되는 날이 오면 그 소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작은 돼지가 되려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대는 속히 떠나서 나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한 일화가 있다. (『史記』 「老子韓非傳」)

63 후한 환제(後漢桓帝): 132~167. 후한 제11대 황제 유지(劉志)로, 재위 기간은 146년부터 167년이다. 대장군 양기(梁冀)에 의해 옹립되어 제위에 올랐다. 양기를 비롯한 외척들이 횡포를 부리자, 환제는 환관 선초(單超)와 모의하여 양씨를 숙청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환관이 국정을 전횡하게 되었고, 이에 맞서는 이응(李膺) 등의 청류당(淸流黨) 200여 명이 종신토록 출사하지 못하게 되는 당고(黨錮)의 화를 초래하였다.

64 양기(梁冀): 「어근습(駉)近習」 법조 23번 각주 참조.

65 3명의 황후: 장제(章帝)의 황후인 공덕황후(恭懷皇后)는 양송(梁竦)의 딸이고, 순제(順帝)의 황후인 순연황후(順烈皇后)는 양송(梁竦)의 손자인 양상(梁商)의 딸이고, 환제(桓帝)의 황후인 의현황후(懿惠皇后) 또한 양상의 딸이며 양기(梁冀) 또한 양상의 아들이다.

게 하여 그 털을 깎아 표시해 두고, 이 토끼를 해치는 자는 사형으로 처벌하였다. 양기가 감노監奴 진궁秦宮을 아껴 손수의 처소에 출입하게 하니, 진궁의 위세가 크게 떨쳤다. 탁군涿郡의 최기崔琦⁶⁶가 「외척잡外戚箴」과 「백곡부白鶴賦」을 지어 양기를 풍자하자 양기가 노여워하였는데, 환제는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을 뿐 친히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

- || 진 무제晉武帝가 즉위한 뒤, 황후 양씨楊氏의 부친 양준楊駿⁶⁷이 거기장군이 되어 교만하고 득의양양하였다. 이에 호분胡奮⁶⁸이 양준에게 “경은 딸을 믿고 더 호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전 시대를 두루 보면 황실과 혼인을 맺은 집안이 멸문을 당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빠르냐 늦느냐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생각건대, 예부터 척리戚里的 어질고 어리석음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한漢에서는 마씨馬氏와 등씨鄧氏⁶⁹가 겸손하고 삼갔으나 염씨閻氏와 양씨梁氏⁷⁰는 교만하고 방자하였으며, 당唐에서는 장손씨長孫氏⁷¹는 온화하고 어질었으나 무씨武氏와 위씨韋氏⁷²는 나라를

66 최기崔琦: 자는 자위子瑋이다. 문장이 뛰어나 「외척잡外戚箴」, 「백곡부白鶴賦」 등을 지어 외척 양기의 전횡을 풍자하였다가 양기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後漢書』 「崔琦傳」)

67 양준楊駿: ?~291. 진 무제晉武帝의 장인이며, 무도황후武悼皇后의 부친이다. 무제가 죽고 혜제惠帝가 즉위하자, 국정을 도맡아 친당親黨만을 등용하여 정권을 전횡하였다. 후에 가후賈后에게 미움을 받아 삼족三族이 멸족 당했다.

68 호분胡奮: ?~288. 자는 현위玄威이다. 호분의 딸 호방胡芳은 진晉 초대 황제 사마염司馬炎의 후궁 호 귀반胡貴嬪이다.

69 마씨馬氏와 등씨鄧氏: 마씨는 북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의 딸이자 후한 명제後漢明帝의 후비인 명덕황후明德皇后와 그의 오라비 마료馬廖, 마방馬防, 마광馬光 등을, 등씨는 후한 화제後漢和帝의 황후인 화희황후和熹皇后와 오라비 등증鄧騭을 가리킨다. 이들은 겸손하고 후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70 염씨閻氏와 양씨梁氏: 염씨는 후한 안제後漢安帝의 황후인 안사황후安思皇后와 오라비 염현閻顯의 집안이며, 양씨는 후한 순제後漢順帝의 황후인 효순황후孝順皇后와 오라비 양기梁冀의 집안을 가리킨다. 이들은 정권을 전횡하고 난을 일으키는 등 국정을 혼란하게 하였다.

71 장손씨長孫氏: 장손씨는 당 태종唐太宗의 황후이자 고종高宗의 어머니인 문덕순성황후文德順聖皇后의 집안으로, 당 태종을 잘 보좌하여 훌륭한 황후로 평가받았다.

72 무씨武氏와 위씨韋氏: 무씨는 당 고종高宗의 황후이자, 중종中宗의 모후인 축천무후則天武后의 집안이며, 위씨는 중종의 황후 위씨의 집안을 가리킨다. 무후는 중종을 폐위시키고 국호를 당에서 주周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 황후 위씨는 다시 황위에 오른 중종을 독살하고 권력을 농단하다가 현종玄宗의 반정으로 몰락하였다.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송宋과 명明에는 조씨曹氏, 고씨高氏, 마씨馬氏, 서씨徐氏⁷³의 집안이 충성과 근신으로 명성이 있었으나 한탁주韓侂胄⁷⁴와 장학령張鶴齡⁷⁵의 무리는 사치와 전횡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오직 어진 자만이 치도治道를 보좌하고 악한 자는 중국宗國에 화를 끼칩니다. 다만 역대의 서적에 기록된 것을 상고해 보면, 악한 자는 항상 많고 어진 자는 항상 적으니, 인주人主가 엄격하게 방비하고 군자가 힘써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무구閔無咎⁷⁶와 윤사분尹士旻⁷⁷ 이후로 여러 가문이 간혹 한 때에 위세를 떨쳤지만 당세에 추중推重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윤원형尹元衡⁷⁸이 조정을 혼란스럽게 하여 진신播紳들을 장살戕殺하는 데 이르자, 온 세상의 사대부들이 척리를 원수처럼 보고 비루하게 여겨서 침을 뱉고 배척하여 상중하지 않았습니다. 청양군靑陽君 심의겸沈義謙⁷⁹이 앞장서 권간權姦을 배척하고 은밀히 사류士類를 보호하는 데 이르러, 어질기로는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珣⁸⁰ 청렴하기로는 고故 상신相臣 정철鄭澈⁸¹ 같은 이가 서로

73 조씨曹氏 … 서씨徐氏: 조씨는 북송 인종北宋仁宗의 계비 광헌황후光獻皇后, 고씨는 북송 영종北宋英宗의 후비 선인성렬황후 宣仁聖烈皇后, 마씨는 명 태조明太祖의 후비 효자고황후孝慈高皇后, 서씨는 명 태종明太宗의 후비 인효황후仁孝皇后의 집안을 가리킨다. 이들은 근검하고 현덕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74 한탁주韓侂胄: 『송유학崇儒學』 계조戒條 26번 각주 참조.

75 장학령張鶴齡: ?~1538. 명 효종明孝宗의 황후인 효강경황후孝康敬皇后 장씨張氏의 아우로, 수녕후壽寧侯에 봉해졌다.

76 민무구閔無咎: ?~1410.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아우로,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에 책록 되었으나, 이후 동생 민무질閔無疾 등과 어린 세자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유배된 후 사사되었다.

77 윤사분尹士旻: 1401~1471.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오라비로, 문음門蔭으로 벼슬하여 우의정 등을 지냈으며,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78 윤원형尹元衡: 1503~1565. 중종의 계비繼妃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아우이다. 소윤小尹의 영수로서 을사사화乙巳士禍와 정미사화丁未士禍를 일으켜 대윤大尹 등 반대파를 숙청하고 공신에 책록되었다. 국정을 농단하고 뇌물 등을 수수하였으며, 20여 년 동안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가 문정황후가 죽자 실각하였다.

79 심의겸沈義謙: 1535~1587.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방숙方叔, 호는 손암巽菴, 간암艮菴이다.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아우로,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고, 세습으로 청양군靑陽君에 봉해졌다. 자신도 척신이었지만 척신의 전횡을 비판하고 사림을 옹호하였으며, 이조 전랑吏曹銓郞의 추천과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金孝元和 반목하여 동서분당東西分黨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80 이이李珣: 1536~1584.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숙헌叔獻, 호는 울곡栗谷, 석담石潭, 우재愚齋이며,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해동공자海東孔子라 칭해졌으며, 조정에서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역임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동인東人과 서인西人 간의 갈등 해소 노력이 실패하고 개혁안이 시행되지 않자 파주坡州로 낙향하였다. 저서에 『울곡전서栗谷全書』, 『성학집요聖學輯要』, 『경연일기經筵日記』 등이 있다.

81 정철鄭澈: 1536~1593.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서인西人の 영수로 강원도 관찰사, 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우의정에 올랐으나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건의하였다가 선조宣祖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되었다. 이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풀려나 선조를 호종하였으며, 다음 해 사은사謝恩使로 명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동인과의 세력 다툼에 밀려 강화의 송정촌松亭村에 우거寓居하면서 만년을 보냈다. 저서로 『송강집松江集』과 『송강가사松江歌辭』 등이 있고, 시조 작품 70여 수가 전한다.

의지하여 기쁨과 걱정을 함께하니, 그제서야 척완(戚畹)의 집안이 사류와 어긋나지 않아 세도(世道)에 보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⁸²이 혼조(昏朝) 광해(光海)에 화를 당하여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였으나,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⁸³은 희대(熙代) [인조]에 공로를 드러내어 당시 사람들에게 추증을 받았습니다. 근세에는 청풍(淸風) 국구(國舅)⁸⁴의 조카인 고 상신(高上鎭) 김석주(金錫胄)⁸⁵가 그 숙부에게 기탁하여 왕가의 화란을 제거하였습니다. 동시에 광성(光城) 국구(國舅)⁸⁶가 김석주와 협심하여 공업을 성대하게 드러냈고, 또한 여양(驪陽) 국구(國舅)⁸⁷가 우뚝이 충실한 신하가 되어 청론(淸論)을 활짝 여니, 이후로 척완이 된 자가 차츰 스스로를 갈고 닦아 명분과 의리를 숭상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⁸⁸

이를 통해 보건대, 이른바 척리 중에 탐오하고 법을 어겨 세상에 버림받는 자가 한둘이 아니지만, 덕망과 재유(才猷)로 나라에 보탬이 되는 자 또한 많습니다. 지금 만일 그 심

82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 1562~1613. 선조(宣祖)의 계비 인목대비(仁穆大妃)의 부친으로, 1613년(광해군5), 박응서(朴應瑞)가 대북파(大北派) 이이첨(李爾瞻)의 사주를 받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끼고 역모를 하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옥사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창대군(永昌大君)은 강화(江華)로 유배되었고, 김제남이 사사(賜死)되었으며, 소북파(小北派)가 조정에서 숙청되었다. 1616년(광해군8) 폐모론이 일자 부관참시(誅斬屍體)되었으나, 인조반정 뒤 관직이 복구되고,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83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 1557~1627. 인조(仁祖)의 비 인열왕후(仁烈王后)의 부친이다. 선조(宣祖)로부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칠신(遺教七臣)의 한 사람으로, 내외의 여러 요직을 두루 역임하여 호조 판서에 특진되었고, 그 뒤 대사헌, 한성부 판윤 및 평안도와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다.

84 청풍(淸風) 국구(國舅): 현종(顯宗)의 비 명성황후(明聖王后)의 부친인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1619~1675)을 가리킨다.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이정(以定)이다.

85 김석주(金錫胄): 1634~1684.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사백(斯百), 호는 식암(息庵)이다. 조부는 영의정 김육(金瑬)(1580~1658)이고, 부친은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이며, 숙부는 현종(顯宗)의 비 명성황후(明聖王后)의 부친 김우명(金佑明)으로 서인 명문가문 출신이다. 남인(南人)과 영의정 허적(許積)의 아들 견학(堅學)의 역모를 고변하여 그 일당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워, 보사(保社) 공신의 호를 받고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저서로는 『식암집(息庵集)』이 있다.

86 광성(光城) 국구(國舅): 숙종(肅宗)의 비 인경왕후(仁敬王后)의 부친인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1633~1687)를 가리킨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영숙(永叔), 호는 서석(瑞石)이다. 경신(庚申)환국 때 훈련대장으로 공을 세워 보사(保社)공신(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저서로는 『서석집(瑞石集)』이 전한다.

87 여양(驪陽) 국구(國舅): 숙종(肅宗)의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부친인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1630~1687)을 가리킨다.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지숙(持叔), 호는 둔촌(屯村),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숙종이 즉위하면서 남인(南人)이 집권하자, 벼슬을 내놓고 충주에 내려가 지내다가 흥해(興海)로 유배되었다. 이후 경신(庚申)환국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다시 조정에 들어와 공조판서, 호조판서 겸 선혜청(宣惠淸)당상,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며 서인 정권을 주도하였다. 국구(國舅)가 되자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에 봉해지고, 금위영(禁衛營)의 창설을 주도하여 병권과 재정을 모두 관장하였다. 이후 점차 외척으로서 정권을 오로지 한다는 비난이 일어 관직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다가 죽었다. 저서에는 『민문정유중집(閔文貞遺集)』이 있다.

88 근세에는 ... 되었습니다: 서인인 김석주가 허적(許積)의 서자인 허견(堅)이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 복창군(福昌君), 복선군(福善君), 북평군(福平君)과 함께 역모를 꾀한다고 고변하여 경신(庚申)환국(申換局)을 일으켜 남인을 대거 숙청하였다. 그 결과 김석주와 김만기(金萬基)는 경신(庚申)환국을 주도한 공으로 함께 보사(保社)공신(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서인이 집권하자 민유중(閔維重) 또한 조정으로 돌아와 서인 정권을 주도하였다.

적心跡의 본말을 따지지 않고 으레 똑같이 척리로 다스린다면 참으로 편협한 것입니다. 송자경宋子京⁸⁹이 「외척전外戚傳」에서 “척가戚家の 성패는 군주의 덕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⁹⁰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위에서 인도함이 그 올바른 도를 얻는다면 아래가 겸양하고 공손해져 나라가 안전하고, 위에서 인도함이 마땅한 도를 잃는다면 아래가 교만하고 제멋대로 굴어 국가가 패망하게 되는 법이니, 삼가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척리는 옛날과 달라 대부분 명문세족 출신으로 등용되어 직책을 맡은 것이 이미 오래되어 한 번에 전례를 뒤엎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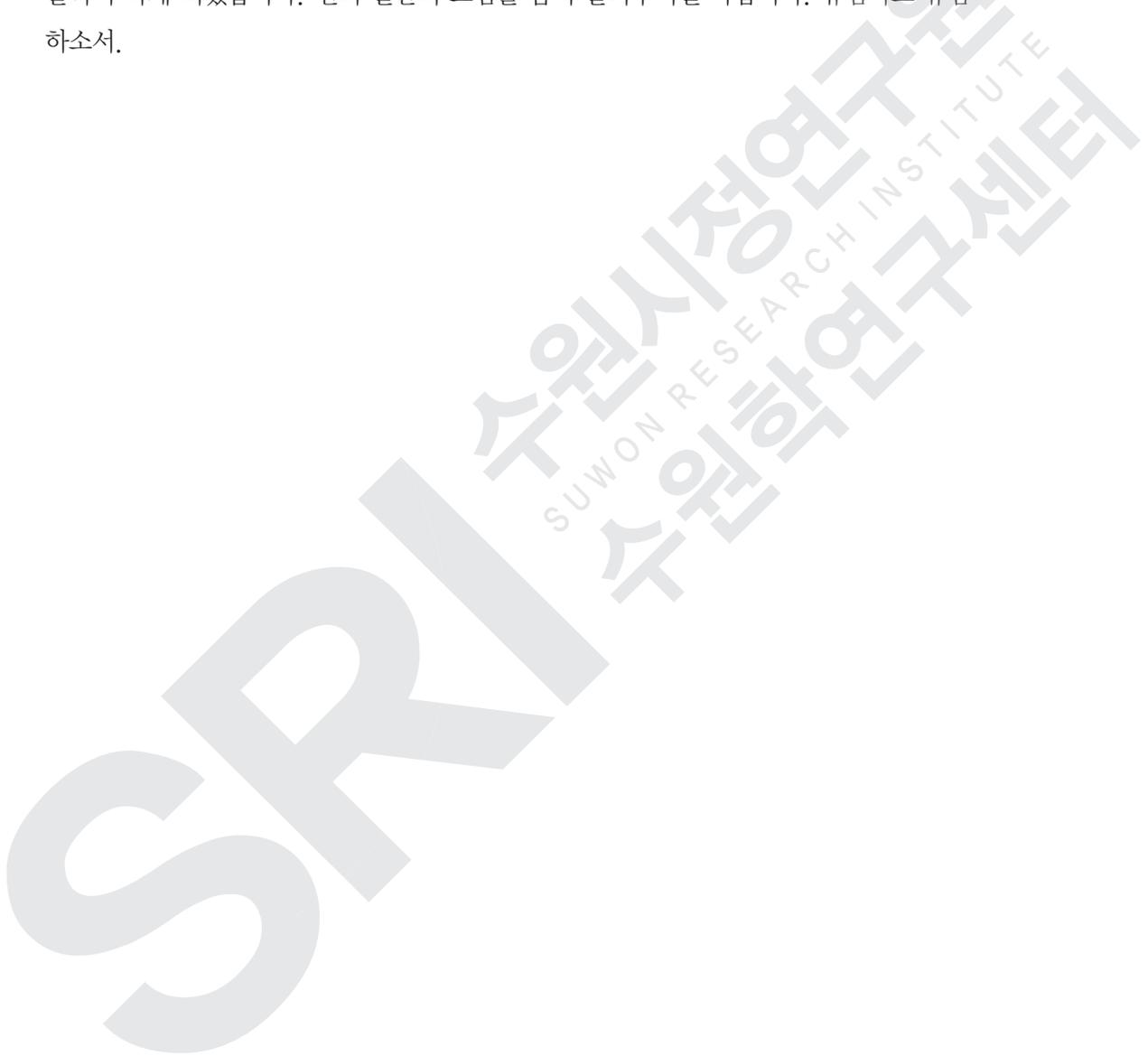
지금을 위한 계책은, 척리를 조정에 있는 제신諸臣들과 균일하게 처우하여, 현능한 이는 쓰고 어리석은 이는 버리기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며,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기를 백관百官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능한 이는 감격하고 신칙하여 의지하고 믿어준 은혜에 부응하기를 도모할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또한 징계되어 두려워하여 스스로 새로워질 방책에 힘쓰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무릇 이처럼 한다면 임금과 신하, 위아래가 지극히 공정한 세상에서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대우하기를 너무 편벽되게 하고 위안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여 남들보다 먼저 작위와 녹봉을 내리고 남들보다 뒤에 죄와 벌을 주어 재주가 없는데도 세력에 빌붙어 외람되게 벼슬을 차지하여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게 하고, 죄가 있는데도 권세에 매달려 요행히 죄를 모면하다가 점차 대죄를 짓게 한다면, 이는 그를 후하게 대하려다 도리어 화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건대 척리의 집안이 처신하는 방도는 또한 본래 규범이 있으니, 조정에 잘못된 정사가 있거든 묵묵히 도와 두루 다스릴 방도를 생각하고 나라에 위태로운 기미가 있거든 깊이 염려하여 없앨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상세하고 신중히 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겸손하고 삼가는 것, 이것이 근밀近密한 위치에 있는 자가 처신하는 도리입니다.

공론空論만 일삼는 시의時議의 장에 발을 담그고 쟁탈을 일삼는 벼슬 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잔물결을 일으켜 커다란 너울을 만들고 세력에 기대 권력을 부린다면 자기

89 송자경宋子京: 998~1061. 자경子京은 북송北宋 송기宋祁의 자이다. 구양수歐陽脩와 함께 「신당서新唐書」를 편찬했다. 시詞를 잘 지었고, 「옥루춘玉樓春」이 유명하다. 저서에 「출휘소집出麾小集」과 「송경문집宋景文集」, 「대악도大樂圖」, 「필기筆記」 등이 있다.

90 척가戚家の … 달려있다: 「난진자癡真子」 「당외척전唐外戚傳」과 「신당서新唐書」 「외척열전外戚列傳」에 보인다.

의 면목을 완전히 망칠 뿐만 아니라 세교世教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자가 또한 깊이 살피고 지그시 억눌러 그 기미를 방지하고 은혜를 온전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아아! 세상 경험이 오래되니 우려 또한 깊어 신의 처지에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일단의 고심을 굽어 살피주시길 바랍니다. 유념하고 유념 하소서.



正史彙鑑

권 4

임현능_{任賢能} 현능을 임용하다

법조 法條

- || 순_舜이 천자의 일을 섭행_{攝行}하였다. 이때 고양씨_{高陽氏}¹에게 재덕을 겸비한 아들 8명이 있어 천하 사람들이 그들을 팔개_{八愷}【'개_愷'는 온화함이다.】라 하였고, 고신씨_{高辛氏}²에게 재덕을 겸비한 아들 8명이 있어 천하 사람들이 그들을 팔원_{八元}【'원_元'은 선량함이다.】이라 하였으니, 대대로 그 미덕을 이루었다. 이에 순이 팔개를 등용하여 후토_{后土}를 주관하게 하였고, 팔원을 등용하여 오교_{五教}를 펼치게 하였으니, 온 천하 사람들이 영명_{英明}한 판단에 순복_{順服}하였다.
- || 순임금이 눈과 귀를 활짝 열어 현능한 이들을 구하여 자신을 돕게 하였으니, 기후_{紀后}를 스승으로 삼고, 포의_{蒲衣}를 등용하였으며, 선권_{善卷}을 가까이하고, 무성_{務成}에게 배웠다.³

1 고양씨_{高陽氏}: 상고시대 전설상의 제왕인 전욱_{顓頊}이다. 전욱은 재덕을 갖춘 여덟 아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팔개_{八愷}라고 하였다. 팔개는 여덟 명의 온화한 이들이라는 뜻으로, 창서_{蒼舒}, 퇴애_{隤猷}, 도연_{陶猷}, 대림_{大臨}, 방강_{彤降}, 정견_{庭堅}, 중웅_{仲容}, 숙달_{叔達}을 가리킨다.

2 고신씨_{高辛氏}: 상고시대 전설상의 제왕인 제곡_{帝嚳}이다. 제곡은 재덕을 갖춘 여덟 아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팔원_{八元}이라고 하였다. 팔원은 여덟 명의 선량한 이들이라는 뜻으로, 백분_{伯奮}, 중감_{仲堪}, 숙헌_{叔獻}, 계중_{季仲}, 백호_{伯虎}, 중웅_{仲熊}, 숙표_{叔豹}, 계리_{季狸}를 가리킨다.

3 기후_{紀后}를 … 배웠다: 『노사_{路史}』에 보인다. 포의_{蒲衣}는 상고시대 전설상의 현인으로, 『장자_{莊子}』 「응제왕_{應帝王}」 성현_{成玄英}의 소_疏에 “8세 때 순임금이 그를 스승으로 삼았고, 그에게 선위_{讓位}하려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年八歲 舜師之 讓位不受]”라고 하였다. 선권_{善卷} 역시 상고시대의 현인으로, 허유_{許由}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으며, 순임금이 그에게 선위_{讓位}하려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무성_{務成}은 『순자_{荀子}』에는 ‘무성_{務成}’이라고 되어 있으니, 역시 상고시대의 현인이다.

- || 상 탕왕商湯王이 제후로 있을 적에 이윤伊尹⁴이 유신有莘⁵의 들에서 농사짓고 있었는데, 탕왕이 사람을 보내 폐백을 주면서 그를 초빙하여 국정을 맡겼다.
- || 상商의 무정武丁[고종高宗]이 제위를 이어받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치도治道를 생각하며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데, “꿈에 상제上帝께서 훌륭히 보필할 재상을 내려 주셨다.”라고 하며 사람을 시켜 초상화를 가지고 온 천하에 널리 찾게 하였다.⁶ 부열傳說이 부암傳岩에서 담을 쌓는 노역을 하고 있었으니, 그를 찾아 재상으로 삼았다.
- || 주 문왕周文王이 서백西伯으로 있을 적에 사냥을 나가면서 짐을 쳤는데, 짐괘에 “얻게 되는 것은 용도 아니고 이무기도 아니며, 곰도 아니고 불곰도 아니며, 패왕을 보필할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위수渭水 북쪽에서 여상呂尚⁷을 만났으니,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크게 기뻐서 “나의 선군이신 태공太公 때부터 그대를 기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라 하고, 태공망太公望이라 불렀다. 수레에 태우고 함께 돌아와 태사太史로 삼았다.
- || 주 성왕周成王은 가운데에 서서 정사를 돌보았는데, 항상 주공周公⁸이 앞쪽에, 태공太公이 왼쪽에, 소공召公⁹이 오른쪽에, 사일史佚¹⁰이 뒤쪽에 서 있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4 이윤伊尹: 「법조종법祖宗」 법조 16번 각주 참조.

5 유신有莘: 중국 고대의 씨족으로, 하왕夏王 계림의 다섯째 아들 무관無觀이 신후에 봉해지면서 유신국有莘國이라고도 칭하였다.

6 공경하는 … 하였다: 무정은 즉위 후, 부친상을 지내는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정사를 주관하지 않았다. 대신들이 정사의 방향을 잃을까 걱정하자, 무정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치도治道를 생각하였는데, 꿈에 상제上帝께서 나에게 훌륭히 보필할 재상을 내려 주셨으니,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말을 해주리라.[恭默思道 夢帝賚予良弼 其代予言]”라고 하였다. 이후 꿈에서 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서 온 천하에 찾게 하니, 그 사람이 바로 부열이다. (『書經』「說命」; 「無逸」)

7 여상呂尚: 「대적완待戚晚」 법조 31번 각주 참조.

8 주공周公: 「법조종법祖宗」 법조 17번 각주 참조.

9 소공召公: 주 문왕周文王의 아들이자 무왕의 아우로, 이름은 석奭이다. 무왕을 보좌하여 상商을 정벌하는데 공을 세워 연燕에 봉해졌다. 무왕이 죽은 뒤 즉위한 성왕이 너무 어렸으므로, 장남 극훅을 봉지封地인 노에 보내고 자신은 주에 남아 정국을 안정시켰다. 남국南國을 순시하다가 팔배나무甘棠 아래서 정무를 살펴주니, 백성들이 그의 공덕을 칭송한 노래가 『시경』에 남아있다. (『詩經』「甘棠」)

10 사일史佚: 「신사교信辭教」 법조 3번 각주 참조.

- || 제 환공齊桓公이 거뜬에서 제齊로 돌아오자, 관중管仲이 포로가 되기를 청하였다.¹¹ 포숙아鮑叔牙¹²가 “관중은 고혜高僎¹³보다 치국治國에 능하니, 재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 환공이 이를 따랐다.
- || 진 도공晉悼公¹⁴이 즉위하여 선발한 육관六官의 우두머리는 모두 백성의 기림을 받는 사람이었다. 등용한 사람은 직분을 잃지 않고, 관원은 상규常規를 바꾸지 않으며, 관작은 그 덕을 넘지 않았으니, 진晉이 다시 패자霸者가 된 이유이다.
- || 정 간공鄭簡公¹⁵ 때의 일이다. 자산子產¹⁶이 정치에 참여하여 현능한 자를 골라 등용하였다. 풍간자馮簡子是 중대한 일을 잘 결단하였고, 자태숙子太叔은 용모容貌가 아름답고 행동거지가 준수하여 문채文采가 있었으며, 공손휘公孫揮는 사망 나라의 정사¹⁷를 알아서 그 대부들의 관직과 작위, 재능의 유무를 분별하고 사령辭命을 잘 지었으며, 비침裨諷은

11 제 환공齊桓公이 … 청하였다: 공손무지公孫無知的 난으로 양공襄公이 살해당한 뒤, 공자 규희와 소백小白[제환공齊桓公]이 군주의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관중은 공자 규를 위하여 소백을 습격하여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소백이 정권을 차지하자 포로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莊公 9年)

12 포숙아鮑叔牙: 제 양공齊襄公 때의 대부로, 공자 소백小白의 사부가 되어 그를 환공桓公으로 옹립하는데 공을 세웠다. 젊어서 관중과 사귀었는데, 관중의 집이 가난하고 어머니가 연로하여 항상 관중을 도와주었다. 후에 환공이 포숙아를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포숙아는 이를 사양하고 투옥된 관중을 석방해 재상에 임명되도록 하였다. 형편이나 이해관계에 상관 없이 친구를 위하여 우정을 일컫는 ‘관포지교管鮑之交’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13 고혜高僎: 제 양공齊襄公 때의 대부로, 포숙아와 함께 난당亂黨을 제거하고 공자 소백小白[제환공齊桓公]을 세웠다.

14 진 도공晉悼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주周이다. 여공厲公의 7촌 조카로, 여공이 시해되자 경대부들에게 의해 14세에 즉위하였다. 어린 나이임에도 영명하고 담대하여 자신을 추대한 경대부들에게 충성의 서약을 받아낸 후, 간신을 처형하고 폐단을 시정하였다. 내치의 안정을 기반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15 정 간공鄭簡公: 춘추 시대 정 의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가嘉이다. 부친 희공僖公이 시해되고 5세의 나이에 즉위하였다. 자사子驪와 자공子孔이 번갈아 권력을 잡고 국정을 어지럽혔지만, 재위 12년에 자공을 죽이고 자산子產을 경鄆에 임명하여 중용하여 나라를 안정시켰다.

16 자산子產: 정鄆의 대부로, 이름은 공손公孫僑이며, 자는 자산 또는 자미子美이다. 40여 년간 국정을 맡아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외교에 능하여 두 강대국인 진鄭과 초楚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 정鄆이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논어』 「공야장공治長」에 “공자가 자산을 두고 군자의 도가 네 가지가 있으니, 몸가짐을 공손히 하며, 뒷사람을 섬김에 공경스러우며, 백성을 기림에 은혜로우며, 백성을 부림에 의로웠다고 평가하였다. [子謂子產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라고 하였다.

17 정사: 원전인 『춘추좌씨전』에는 “公孫揮能知四國之爲”라고 되어있는데, 저본의 원문에는 “公孫揮知四國之爲治”라고 되어있다. 해당 구절의 ‘爲’의 뜻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는데, 『춘추좌씨전정의春秋左傳正義』에서는 ‘하고자 하는 것[所欲爲]’이라 하였고, 『좌씨회전左氏會箋』에서는 ‘전고와 습속과 같은 종류[典故習俗之類]’라 하였고, 양백준楊伯峻은 『춘추좌씨전』 주에서 ‘정령政令’이라고 하였다. 편저자 홍봉한은 ‘爲’를 ‘치국治國’의 의미로 파악하여 뒤에 ‘治’를 덧붙여 의미를 부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편저자의 의도를 따라 저본의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계획을 잘 내었다.¹⁸ 이 때문에 빈객을 응대함에 실패하는 일이 드물었다.

|| 진 경공晉景公이 사회士會¹⁹에게 명하여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태부太傅까지 겸임하게 하니,²⁰ 진핍의 도적이 모두 진秦으로 도망갔다. 양설직羊舌職²¹이 “내가 듣건대 ‘우임금이 선량한 이를 등용하여 나아가게 하자,²² 불선한 자들이 멀어졌다.’라 하니, 바로 이런 경우를 이룬 것이다. 선량한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면 나라 안에 요행을 바라는 백성이 없어진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전한 무제前漢武帝가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짐이 집사에게 엄중히 조서를 내려 효행이 있는 자와 청렴한 이를 등용하고자 하였다. 열 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읍에도 반드시 충성스럽고 진실한 자가 있고,²³ 세 사람이 길을 가도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는 법이다.²⁴ 그런데 지금 혹 모든 군郡에서 한 사람도 천거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선행을 쌓은 군자가 위로 알려지는 길이 막힌 것이다. 또한 현능한 이를 천거한 자는 상등上等의 상을 받고, 현능한 이를 은폐한 자는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법이니, 이천석二千石²⁵으로서 천거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라.” 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비상한 공功이 있으려면 반드시 비상한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

18 풍간자馮簡子是 … 내었다: 네 사람은 모두 정鄭의 대부로, 『논어』 「헌문憲問」에 “정鄭에서는 외교문서를 작성할 적에, 비침裨諱이 초고를 만들고, 세숙世叔자대숙子大叔이 토론을 하고, 행인行人인 자우子羽공손회公孫揮의 자가 수식을 하고, 동리東里에 사는 자산子産이 운색을 하였다.[爲命 裨諱草創之 世叔討論之 行人子羽修飾之 東里子產潤色之]”라고 하였다.

19 사회士會: 진핍의 대부로, 수隨와 범범을 봉지로 받았으므로 수무자隨武子 혹은 범무자范武子라고도 한다. 법제法制을 정비하는 등 큰 치적을 쌓았다.

20 중군中軍을 … 하니: 중군은 제후가 거느릴 수 있는 삼군三軍 가운데 하나로, 군령을 총괄하는 부대이며, 태부太傅는 진핍의 예악과 형벌을 주관하는 관직이다. 진 도공晉悼公 때는 사약탁士渫濁이, 평공平公 때는 양설힐羊舌肸이 중군을 거느리면서 태부를 겸하였다.

21 양설직羊舌職: 진핍의 대부로, 그의 아들 양설적羊舌赤, 양설힐羊舌肸, 양설부羊舌鮒, 양설호羊舌虎는 모두 조정의 요직을 맡아 ‘양설사족羊舌四族’으로 불리었다.

22 우임금이 … 하자: 원전인 『춘추좌씨전』에는 “禹稱善人”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본의 원문에는 “禹稱善人進”이라고 되어있다. 편저자 홍봉한이 다음 구절 “不善人遠”의 ‘遠’과 호응하도록 ‘進’을 뒤에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편저자의 의도를 따라 저본의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23 열 가구밖에 … 있고: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보인다.

24 세 사람이 … 법이다: 『논어』 「술이述而」에 보인다.

25 이천석二千石: 한대漢代에는 관계官階를 ‘석’으로 나타냈는데, 이천석은 가장 높은 벼슬로, 태수太守의 봉록이 이천석이었던 데서 비롯하였다. (『漢書』 「百官公卿表」)

로 길들지 않은 말이 천 리를 달릴 수도 있고, 세속을 등진 선비가 공명을 세우기도 하니, 수레를 뒤엎는 말과 법도에 얽매이지 않는 선비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주새와 군郡에서는 관리와 백성 중에 출중한 재능과 덕행을 소유하여 장수와 재상으로 삼거나 먼 나라에 사신 보낼 만한 자를 살펴 천거하도록 하라.”

|| 북위 태종北魏太宗²⁶이 최호崔浩²⁷에게 시중侍中, 특진特進, 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의 관직을 더해 주어 유연柔然²⁸을 멸망시킬 전략을 세운 공을 치하하였다. 일찍이 투항한 지 얼마 안 된 고거高車²⁹의 우두머리에게 최호를 지목하여 말하였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파리하고 유약하여 활을 당기고 창을 잡지 못할 것 같겠지만, 가슴속에 품은 바는 어떤 병기보다 뛰어나니, 근래의 성공은 모두 이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다.”【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 때의 일이다. 조보趙普³⁰가 재상이 되고 나서 천하를 자신의 책무로 여겼으니, 태조가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였다. 하루는 눈이 쏟아지는 저물녘에, 조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급히 나가 보니, 태조가 눈바람 속

26 북위 태종北魏太宗: 392~423. 북위 제2대 군주 탁발사拓跋嗣로, 재위 기간은 409년에서 423년이다. 시호는 명원제明元帝이다. 아버지 도무제道武帝가 자신의 이복동생 탁발소拓跋紹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탁발소를 토벌해 죽이하였다. 죽이 후 한족漢族 인사들을 중용하였으며, 사전史傳을 읽기 좋아하여 『신집新集』 30편을 편찬하였다. 남조 송 무제宋武帝 유유劉裕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송과의 전쟁에 전념하다가 병사하였다.

27 최호崔浩: ?~450. 북위 태조北魏太祖, 태종太宗, 세조世祖 때의 모신謀臣이다. 북위 건국 초부터 외정外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지략을 발휘하여 황제의 신임을 얻었다. 태종이 혁련창赫連昌을 공격해 궤멸하고 유연柔然을 몰리치면서 북경北京을 차지할 때, 대부분의 전략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 공으로 시중侍中에 오르고 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을 거쳐 당시 신분상의 제약이 있었던 특진特進에 올랐다.

28 유연柔然: 중국 북방의 유목민족으로, ‘연연蠕蠕’, ‘여여茹茹’, ‘예예芮芮’ 등으로도 표기된다. 시조는 목골려木骨闐이며, 그 왕족은 옥구려씨郁久闐氏라고 불렸다. 목골려가 북위北魏의 시조 탁발역미拓跋力微에게 포로로 잡히면서 선비에게 종속되었지만, 선비가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중국을 정복하기 시작한 후 동북아시아 고원에서 세력을 확대하였다. 후에 6 세손 옥구려사루郁久闐社婁이 ‘가한可汗’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유연국을 세우고, 고거高車を 복속시켜 타림분지 일대를 지배하면서 북위와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29 고거高車: 중국 북방의 유목민족으로, 바위가 큰 수레를 사용한 데서 유래하였으며, 북조北朝 사람들이 막북漠北의 일부 유목민족을 일컫는 명칭이다. 남조南朝 사람들은 정령丁零, 막북 사람들은 ‘칙륜敕勒’, ‘철륜鐵勒’, ‘적력狄歷’ 등으로 불렀다. 유연柔然의 가한可汗 옥구려사루郁久闐社婁에 의해 유연에 귀속되었다가 유연柔然이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에게 패하여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복지라阿伏至羅가 십만 호戶의 고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고거국을 세웠다.

30 조보趙普: 922~992. 자는 칠평則平이다. 후주後周 때 조광윤趙匡胤의 막료가 되어 장서기掌書記를 맡았고, 진교병변陳橋兵變을 꾸며 개국을 도왔다. 개국한 뒤 태조는 북방의 태원太原북한北漢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조보는 태원이 거란의 원조를 받고 있어 공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먼저 남방 지역을 평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태조는 남방의 남한南漢, 남당南唐을 차례로 함락시켰으며, 북방 지역의 평정은 태종 때에 가서 이루어졌다.

에 서 있었다. 조보는 황공해하며 배례拜禮하여 맞이하도, 대청에 요를 겹으로 깔고 모신 후 숯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다. 조보의 아내가 차례로 술을 따르자, 태조가 형수라고 부르며 “조보와 함께 태원太原을 정복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 북송 인종北宋仁宗이 범중엄范仲淹³¹을 참지정사參知政事로, 부필富弼³²을 추밀부사樞密副使로 제수하였다. 인종은 한창 태평성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당세의 일에 관해 자주 물었다. 또 천장각天章閣³³을 열어 보신輔臣들을 인견하여 마주하고, 붓과 종이를 주어 하고자 하는 바를 조목별로 서술하게 하였다. 범중엄이 물리나서 10가지 항목³⁴을 올리자, 인종이 모두 받아들였으며, 부필도 시무 10여 조와 변방을 편안히 하는 13가지 계책을 올렸다.

|| 북송 인종이 문언박文彦博³⁵과 부필을 동평장사同平章事에 제수하였다. 조명詔命을 선포할 때, 사대부들이 조정에서 서로 경하하였다. 그러자 인종이 한림학사翰林學士 구양수歐陽脩³⁶에게 “옛날에 재상을 임명할 때, 꿈속에서 얻거나 점을 쳐 얻기도 하였는데,³⁷ 지금

31 범중엄范仲淹: 「독성효篤聖孝」 법조 22번 각주 참조.

32 부필富弼: 「경사천敬事天」 계조 47번 각주 참조.

33 천장각天章閣: 북송 진종北宋眞宗의 장서각 이름이다. 인종仁宗이 즉위한 후 이를 수리하여 진종의 어제문집御製文集과 어서御書만을 보관하고, 학사, 직학사直學士, 대제待制 등의 관리를 두고서 그들을 인견하여 국정의 현황과 득실을 논하기도 하였다. 남송南宋에서는 도적圖籍, 부서符瑞, 보안寶玩, 국사國史, 어옹御容, 잠저정절潛邸旌節을 이곳에만 보관하였다.

34 10가지 항목: 「답수조조진심사소答手詔條陳十事疏」에 열거한 10가지 항목이다. 출척을 분명히 할 것[明黜陟], 요행수를 억제할 것[抑僥幸], 과거제도를 엄정하게 시행할 것[精貢舉], 지방 장관을 잘 선택할 것[擇官長], 공전을 고르게 할 것[均公田], 농업과 누에치기를 중시할 것[厚農桑], 군과 장비를 잘 정돈할 것[修武備], 부역을 줄일 것[減徭役], 조정의 은택과 신의를 널리 펼칠 것[寬恩信], 조정의 명령을 신중하게 하달할 것[重命誨]이다. 인종仁宗은 범중엄의 의견 이외에도 부필, 한기韓琦, 구양수歐陽脩 등의 의견을 대다수 받아들여 신정新政을 펼쳤으니, 이것이 ‘경력신정慶曆新政’이다.

35 문언박文彦博: 1006~1097. 자는 관부寬夫이다. 철종哲宗 즉위 후 정계의 원로로서 중신이 되어 50년에 걸쳐 장상將相의 지위에 있었다. 인종 때, 서하西夏 대책에 공을 세워 추밀부사樞密副使,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임명되었고, 패주貝州 왕척포則의 난을 평정하여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36 구양수歐陽脩: 1007~1072.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 만년에는 육일 거사六逸居士라 하였다.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의 관직을 거쳐 태자소사太子少師가 되었다. 인종 때, 범중엄范仲淹과 한기韓琦를 중심으로 한 신진관료에 속하여 ‘경력신정慶曆新政’에 참여하였다. 후에 지예부공가知禮部貢舉로 임명되어 자신의 시문혁신론詩文革新論을 바탕으로 과거의 유형을 개편하였다. 이때 과거에 지원한 증공曾鞏, 소식蘇軾, 소철蘇轍이 합격하였다. 그에 앞서 소식의 부친인 소손蘇洵을 천거하여 등용하기도 하였다. 신종神宗 때,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에 반대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37 꿈속에서 … 하였는데: 상 고종高宗이 제위에 오른 뒤 “꿈에 상제上帝께서 훌륭히 보필할 재상을 내려 주셨다.”라고 하며 사람을 시켜 초상화를 가지고 천하에 널리 찾게 하여 부열傳說을 얻은 것과 주 문왕周文王이 서백西伯으로 있을 적에 시상을 나가면서 보필할 사람을 얻을 것이란 점괘를 얻고 여상呂尚을 등용한 일화를 가리킨다.

짐이 두 재상을 등용함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어찌 꿈꾸거나 점친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구양수가 머리를 조아리며 경하하였다.

|| 남송 효종南宋孝宗이 장준張浚³⁸을 추밀사樞密使, 도독강회군마都督江淮軍馬에 제수하고, 건강建康에 관서官署를 설치하여 스스로 요속僚屬을 선발할 수 있게 해주었다. 효종이 진준경陳俊卿³⁹에게 장준의 거동과 음식과 안색이 어떠한지 묻고, “짐은 위공魏公을 장성長城처럼 의지하니, 뜬소문이 그의 의지를 흔들어 빼앗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효종이 장준에게 편지를 보내 “오늘날 변경에 관한 일은 모두 경卿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경은 다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전에 처음 일을 거행할 때 짐은 경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 이번에도 경과 함께 끝맺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효종이 근신近臣들에게 말할 때 반드시 ‘위공’ 이라고 불렀으며, 그 이름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었다.

|| 원 세조元世祖 때의 일이다. 유병충劉秉忠⁴⁰은 번저藩邸⁴¹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임을 받았다. 세조가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도와 백성을 보살피는 좋은 법제에 대해 건의하라고 명하였는데, 유병충이 선대의 법제를 조목별로 올리면서 옛 제도 가운데 오늘날에 합당한 것을 덧붙였으니, 세조가 이를 좋게 여겼다. 명을 내린 날, 강령이 갖추어지자 세목이 저절로 밝혀져서 당대의 인재들이 모두 등용되고 예악禮樂과 전장典章이 찬란하

38 장준張浚: 1097~1164. 자는 덕원德遠이고, 세칭 자암선생紫巖先生으로 불리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위국공衛國公에 봉해졌다. 주화파主和派 진회秦檜가 권력을 잡은 후 20여 년 동안 배척당했는데, 효종 즉위 후 금해등왕金海陵王의 완안량完顏亮이 남송南宋 평정을 도모하면서 재차 기용되었다. 장준은 부리符離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조정 대신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도, 효종은 장준을 신임하여 끊임없이 독려하였다.

39 진준경陳俊卿: 1113~1186. 자는 응구應求, 시호는 정헌正獻이다. 진회秦檜가 권력을 잡은 후 한직을 전전하다가, 효종 때 장준張浚의 추천을 받아 선무판관宣撫判官이 되어 장준의 아들 장식張斌과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인재 등용과 군비 강화와 소인 퇴치에 힘썼다.

40 유병충劉秉忠: 1216~1274. 본명은 간胤으로, ‘병충秉忠’은 임관된 뒤에 하사받은 이름이다. 자는 중회仲晦, 호는 장춘산인藏春散人이다. 금사에서 형제 절도사부령사邢台節度使府令史를 지냈다가 사직하고, 무안산武安山에 숨어 승려가 되었다. 해운선사海雲禪師의 추천으로 즉위하기 전부터 세조를 모셨으며, 세조 즉위 후에는 조종祖宗의 옛 제도와 전범을 조목별로 모아 규제를 정비하도록 건의하였다. 이에 세조는 중국식으로 건원建元하여 중통中統이라 하고, 중서성中書省과 선무사宣撫司를 설치하였으며, 유병충을 태보太保로 삼아 중서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元史』 「劉秉忠傳」)

41 번저藩邸: 번왕藩王의 저택으로, 황제가 즉위하기 전에 거쳐했던 곳을 말한다. 원 세조元世祖는 현종憲宗이 남송南宋을 정벌하던 도중 병사하자, 국도國都를 지키고 있던 막내아우 아리불가阿里不哥와의 전투 끝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번저라고 한 것이다.

게 새로워졌다. 유병충은 재상에 제수된 뒤로 천하를 평정하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여겨서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태조明太祖가 이부吏部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홍곡鴻鵠이 멀리 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고, 교룡이 높이 솟구칠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이니, 군주가 치세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현능한 인재를 보신補臣으로 삼기 때문이다. 지금 산림의 은사들 가운데 어찌 덕행이 높고 재주가 많은 인재가 없겠는가. 유사有司로 하여금 그들을 천거하여 예를 갖추어 그들을 남경南京으로 오게 하라. 짐이 장차 그들을 등용할 것이다.”

계조 戒條

- || 당 덕종唐德宗이 이성李晟⁴²의 공로와 명성을 시기하였다. 장연상張延賞⁴³ 등이 이성을 조정에서 마구 헐뜯어 하지 않는 짓이 없었다. 이성이 이를 듣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다 눈에 종기가 생기자 표문表文을 올려 식발하고 승려가 되기를 청했다. 그 뒤에 장연상이 여러 차례 “이성은 병권兵權을 오래도록 잡아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 덕종이 그의 병권을 박탈하였다. 이로 인해 무신들 모두 분노가 들끓고 마음이 이반하여 덕종을 위해 쓰이려고 하지 않았다. 토번吐蕃이 회맹會盟을 깨뜨렸을 적에, 덕종이 대나무가 많은 이성의 대안원大安園으로 피신하려 하였는데,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가 “이성이 대안원에 군사들을 숨겨 놓고 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하니, 이성이 즉시 대나무를 다 베어 버렸다.⁴⁴

42 이성李晟: 727~793. 자는 양기良器,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토번吐蕃의 침략을 막아내고 하삭삼진河朔三鎮과 주자朱泚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특히 주자의 반란을 평정하고 난 뒤 사도司徒에 제수되어 중서령中書令을 겸하였으며, 병마부원수兵馬副元帥, 삼진 절도사三鎮節度使, 행영부원수行營副元帥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장연상張延賞 등의 간언間言으로 태위太尉로서 중서령을 겸하도록 하기로 하고, 남은 병권을 박탈당했다.

43 장연상張延賞: 726~787. 본명은 보부寶符, 자는 연상延賞이다. 관직이 중서시랑中書侍郎,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に 이르렀다. 이성李晟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성이 사돈을 맺자고 청하였으나 거절하였는데, 이성이 장연상에게 “무인은 성격이 호쾌하여 술자리에서 묵은 악감정을 풀면 마침내 기쁘게 화해할 수 있는데, 문사들은 비위를 거스르기 어려워 겉으로는 화목한 척해도 속으로는 노여운 감정을 쌓아 둔다.[武人性快 若釋舊惡於盃酒之間 終歡可解 文士難犯 雖修睦於外而蓄怒於內]”라고 말한 일화가 있다. (『舊唐書』「張延賞傳」)

44 당 덕종唐德宗이 … 버렸다: 이상의 내용은 『자치통감』 권232와 권233에 각각 기록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 당 덕종 때의 일이다. 육지陸贄⁴⁵를 동평장사同平章事로 삼았다. 육지는 덕종의 후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에 일에 불가한 점이 있으면 항상 힘을 다해 간쟁하였다. 육지는 “나는 위로는 천자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배연령裴延齡⁴⁶이 늘 육지를 헐뜯어 덕종이 점차 그것을 믿게 되었는데, 육지가 덕종 앞에서 배연령의 간사함에 대해 극언하자 덕종이 육지를 충주별가忠州別駕로 폄직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흠종北宋欽宗⁴⁷이 종사도種師道⁴⁸를 파직하였다. 어사중승御史中丞 허한許翰⁴⁹이 “종사도는 명장으로 산서山西 지역의 사졸들이 모두 그를 믿고 따르니, 병권을 내려놓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자, 흠종이 “그는 늙어서 기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허한이 “진 시황秦始皇은 왕전王翳이 늙었다는 이유로 이신李信을 기용하여 병사들이 초楚에게 모욕을 당하였고,⁵⁰ 한 선제漢宣帝는 노장 조충국趙充國으로 인해 금성金城의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⁵¹ 여망呂望⁵² 이후로 노장들 가운데 공을 거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 충

45 육지陸贄: 「계종찰戒聽察」 법조 21번 각주 참조.

46 배연령裴延齡: 728~796. 사농소경司農少卿과 탁지度支를 맡으면서 재화를 빼돌려 황제에게 상납하여 총애를 받으려 하였다. 당시 재상 육지陸贄를 모함하여 폄직당하게 하였는데, 덕종이 육지를 대신하여 재상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간의대부諫議大夫 양성陽城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47 북송 흠종北宋欽宗: 1100~1161. 북송 제9대 황제 조환趙桓으로, 재위 기간은 1126년부터 1127년이다. 휘종徽宗의 적장자로, 금군이 침공하자 휘종의 양위로 즉위하였다. 정강靖康 원년에는 금의 군대를 격퇴하기도 하였지만, 여러 차례 굴욕적인 강화를 금에게 요청하고 태원太原·중산中山·하간河間 3진鎭을 금에게 할양해야 하였다. 금의 군대가 재차 침공하여 국도國都 변경汴京을 함락시키자 휘종, 후비后妃 등과 함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고, 북송은 멸망했다. 금의 오국성五國城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48 종사도種師道: 1051~1126. 본명은 건중建中, 자는 이숙彝叔이다. 휘종徽宗 때 서하西夏의 습격을 막으면서 휘종의 신임을 얻었다. 치사致仕하여 물러나 은거하고 있었는데, 금군이 남하하여 송송을 공격하자 휘종의 부름을 받아 검교소보檢校少保, 정난군 절도사靜難軍節度使, 경기하북 제지사京畿河北制置使에 봉해져 항쟁에 임했다. 뒤이어 즉위한 흠종이 금과 화친을 맺자 종사도는 금의 군대가 황하를 건널 때 기습하여 일망타진하자고 건의했으나, 흠종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파직하였다.

49 허한許翰: 「어근습駭近習」 근안謹按 76번 각주 참조.

50 진 시황秦始皇은 … 당하였고: 진왕秦王 영정嬴政이 신하들을 소집하여 초楚를 정벌할 계획을 의논하였는데, 젊은 장수인 이신李信은 20만의 병력이면 정벌할 수 있다고 하였고, 왕전王翳는 60만의 병력이 아니면 어렵다고 했다. 영정은 왕전이 이미 늙었다며 이신과 몽염蒙恬을 장군으로 삼아 20만의 병력으로 초를 공격했다. 이신과 몽염은 초기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항연項燕이 이끈 초군楚軍의 기습을 받아 위기에 빠졌다. 이에 영정은 왕전을 다시 장수로 삼았다.

51 한 선제漢宣帝는 … 있었습니다: 전한 선제 때 서강西羌이 반란을 일으키자, 선제가 조서를 내려 서강을 치게 하였다. 그러자 조충국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출병하지 않고 금성金城 일대에서 둔전을 실시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황제가 다른 장수들을 시켜 서강을 치게 하고, 조충국에게는 둔전을 실시하게 하였는데, 후에 큰 효과가 있었다. (『漢書』「趙充國傳」)

사도는 늙었지만 기용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흠중은 듣지 않았다.

|| 남송 고종南末高宗이 이강李綱⁵³을 우복야右僕射로 삼고, “짐은 경卿의 충의忠義와 지략에 대해 안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였다. 이강이 아뢰는 말은 모두 절실하고 정직하여 고종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후에 황잠선黃潛善⁵⁴과 왕백언汪伯彥⁵⁵의 말에 현혹되어 이강이 아뢰는 바를 궁중에 보류해 두고 회보回報하지 않다가 결국 재상 자리에서 파직하였으며, 이강이 도모한 군정과 백성에 관한 일도 모두 폐지하거나 중단하였으므로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 지 않았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희종明熹宗 때의 일이다. 병부상서兵部尙書 옹정필熊廷弼⁵⁶이 문무를 고루 갖춘 인재라는 이유로 요동 경략遼東經略에 제수되고 상방검함尙方劍을 하사받았다. 요동 순무遼東巡撫 왕화정王化貞⁵⁷이 나아가 싸울 것을 극력 주장하며 요행으로 비상한 공적을 쌓고자 하였는데, 옹정필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왕화정이 대패하여 하옥되고 나서 옹정필과 함께 위충현魏忠賢⁵⁸에게 심문을 받게 되자, 옹정필이 뇌물을 주었다고 무함하였다. 양련楊漣⁵⁹과 좌광두左光斗⁶⁰는 처벌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군자금 17만 냥을 훔쳤다는

52 여망묘望: 여상묘尙을 가리킨다. 「대척완待戚晚」 법조 31번 각주 참조.

53 이강李綱: 「경사찬敬事天」 계조 49번 각주 참조.

54 황잠선黃潛善: 1078~1130. 자는 무화茂和이다. 왕백언汪伯彥과 함께 주전파인 이강李綱을 몰아내고 정권을 농단하여 금과 화의를 맺게 하였으며, 진동陳東과 구양철歐陽澈이 자신을 비판하자 모두 죽였다.

55 왕백언汪伯彥: 1069~1141. 자는 정준廷俊이다. 우복야右僕射로 있으면서 제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다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후에 다시 검교소부檢校少傅와 보신군 절도사保信軍節度使에 임명되었다.

56 옹정필熊廷弼: 1569~1625. 자는 비백飛百, 호는 지강芝岡이다. 후금後金에 맞서 요동遼東 방어에 공을 세웠다. 희종 때 위충현魏忠賢을 위시한 엄당嚴黨과 청의파淸議派 관료들로 이루어진 동림당東林黨 사이에 당쟁이 치열하였는데, 옹정필은 엄당의 모함으로 파면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엄당의 농간에 희생되었다.

57 왕화정王化貞: ?~1632. 자는 초건肖乾이다. 환관 위충현魏忠賢에 의해 요동 순무遼東巡撫에 제수되었는데, 동림당東林黨 쪽 사람인 옹정필熊廷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옹정필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금後金을 공격하였다가 전군이 몰살당하는 패배를 당하였으나, 위충현의 비호 아래 처형을 면하였다.

58 위충현魏忠賢: 「어근습駁近習」 법조 20번 각주 참조.

59 양련楊漣: 1572~1625. 자는 문유文濡, 호는 대홍大洪,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위충현魏忠賢의 전횡이 심해지자 좌광두左光斗와 함께 상소를 올려 환관 위충현魏忠賢의 24가지 대죄를 폭로하였다. 다음 해 위충현의 무고를 입고 투옥되어 고문을 받다가 옥사하였다. 「변간사辨姦邪」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60 좌광두左光斗: 1575~1625. 자는 유직適直, 호는 부구浮丘이다. 동림당東林黨 육군자六君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의종毅宗 때 우도어사右都禦史, 태자소보太子少保에 추증되었다.

누명을 뒤집어쓰고 결국 처형되었으며, 그의 머리는 구변九邊⁶¹에 조리돌림을 당하였다. 또 장물贓物을 추심追尋하러 명하였는데, 응정필의 집이 가난하여 보상할 수 없었으므로 친척, 본가까지 몰수되었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부附 위임委任

법조 法條

|| 진 무왕秦武王⁶²이 감무甘茂⁶³에게 한韓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감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魯 사람 중에 증삼曾參과 성명이 같은 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이가 증삼의 어머니에게 알렸더니, 그의 어머니가 태연자약하게 길쌈을 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더 와서 말을 하자 그 어머니가 북(柶)을 던지고 담을 넘어 도망갔습니다. 신의 현명함이 증삼만 같지 않고 왕께서 신을 믿는 것이 증삼의 어미와 같지 않은데, 신을 의심하는 자는 세 사람뿐만이 아니니, 신은 대왕께서 북을 던질까 염려됩니다. 위 문후魏文侯가 악양樂羊⁶⁴에게 중산中山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3년 만에 함락하였습니다. 문후가 악양을 비방하는 글을 담은 상자 하나를 보여주니, 악양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61 구변九邊: 명대明代에 북방 아홉 곳에 설치한 군사 요충지를 말한다. 요동遼東, 계주薊州, 선부宣府, 대동大同, 산서山西, 연수延綏, 영하寧夏, 고원固原, 감숙甘肅으로, 각각 대군을 두고 대장을 배치했다. (『明史』 「兵志」)

62 진 무왕秦武王: 전국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영嬴, 씨는 조췌, 이름은 탕탕이다. 혜문왕惠文王의 아들로, 힘이 세고 놀이를 좋아해 역사力士인 임비任鄙, 오획烏獲, 맹열孟說 등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다. 맹열과 구정九鼎을 들어 힘겨루기를 하다가 정강이가 부러져 과다출혈로 죽었다.

63 감무甘茂: 소양왕昭襄王 때, 참소를 받아 실각하고 제齊로 달아나 상경上卿이 되었다. 식양息壤에서 무왕과 맹세를 한 뒤 의양陽을 공격하였는데, 5개월이 넘도록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무왕이 군사를 철수시키려 하자, 감무가 식양에서의 맹세를 환기시켜 임금의 마음을 돌리고는 마침내 의양을 함락하였다. (『史記』 「甘茂傳」)

64 악양樂羊: 연燕의 장수 악의樂毅의 선조로, 위 문후魏文侯의 신임을 받았다. 중산中山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중산의 군주가 그의 아들을 삶아 죽이고 국을 그에게 보냈는데, 한 그릇을 다 마셔버렸다는 고사가 있다. 이에 중산을 함락한 공으로 영수靈壽에 봉해졌고, 자손들도 대대로 이곳에 살게 되었다. (『戰國策』 「中山策」)

‘이것은 신의 공이 아니라, 대왕의 공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은 기려지신羈旅之臣⁶⁵이므로, 저리지耒里子⁶⁶와 공손석公孫奭⁶⁷이 한韓을 끼고 비난하면 왕께서는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무왕이 마침내 감무와 식양息壤에서 맹약하였다.

|| 연 소왕燕昭王⁶⁸ 때의 일이다. 어떤 이가 소왕에게 “악의樂毅⁶⁹가 제齊를 정벌하면서 단숨에 제의 7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지금 함락시키지 못한 것은 두 성뿐이니, 그 힘이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군대의 위엄에 의지하여 제인들을 복종시켜 남면南面하여 왕 노릇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참소하였다. 소왕이 이에 술자리를 베풀어 크게 사람들을 모으고, 참소한 자를 끌어내어 크게 꾸짖고는 목을 베었다.

|| 한왕漢王[유방劉邦] 때의 일이다. 주발周勃⁷⁰과 관영灌嬰⁷¹이 “진평陳平⁷²은 집에 있을 때 형수와 사통한 일이 있으며, 지금 호군護軍이 되어서는 여러 장수로부터 금을 받은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한왕이 위무지魏無知⁷³를 불러 꾸짖으니, 위무지가 “신이 말씀드린 것은 진평의 능력이고, 폐하께서 힐문詰問하신 것은 그의 행실입니다. 지금 미생尾生과 효기孝己와 같은 행실⁷⁴이 있더라도 승패의 운수에는 도움이 안 되니, 폐하께서는

65 기려지신羈旅之臣: 나그네처럼 다른 나라에 와서 벼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환공齊桓公 때에 진 여공陳厲公의 아들 전완田完이 제齊로 망명하여 환대를 받았는데, 환공이 그를 경鄒에 임명하자, 전완이 “나그네 같은 신하가 요행히 여기에 있도록 용서를 받았다.〔羈旅之臣 幸若獲宥〕”라는 말에서 발취한 것이다. (『春秋左氏傳』莊公 22年)

66 저리지耒里子: 진 혜문왕秦惠文王의 이복동생으로, 어머니가 한韓 사람이다. 변설에 능하고 지혜가 많아 ‘지낭智囊’으로 불렸으며, 무왕武王 때 감무甘茂와 함께 좌우승상左右丞相이 되었다. (『史記』「耒里子傳」)

67 공손석公孫奭: 진秦의 공자로, 어머니가 한韓 사람이다. (『資治通鑑綱目』朱熹 注)

68 연 소왕燕昭王: 전국 시대 연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직職이다. 왕호는 소양왕昭襄王이고, ‘소왕’은 약칭이다. 연왕 괘의의 아들로, 괘의郭隗, 추연鄒衍, 악의樂毅 등 현자를 초빙하고 기용하여 연을 재건하였다. 악의로 하여금 부왕 때 제齊에게 빼앗긴 지역을 수복하게 하고, 제의 수도 임치臨淄를 함락하여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하였다.

69 악의樂毅: 연燕의 장수로, 위 문후魏文侯 때의 장수 악양樂羊의 손자다. 소왕이 현자를 초빙한다는 말을 듣고 연으로 가아 경야卿이 되었으며, 후에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다. 조趙, 초楚, 한韓, 위, 연의 군사를 이끌고, 제齊를 토벌하여 수도 임치臨淄를 함락시켰다. 그 후 제의 70여 성을 함락시키고, 이들을 모두 군현으로 속하게 하였다.

70 주발周勃: 「대척안待戚晚」 법조 4번 각주 참조.

71 관영灌嬰: 「대척안待戚晚」 법조 4번 각주 참조.

72 진평陳平: 「계총찰戒聰察」 법조 7번 각주 참조.

73 위무지魏無知: 한 고조漢高祖에게 진평陳平을 추천한 사람으로, 뒤에 진평이 호유후戶牖侯에 봉해졌을 때, 이를 사양하고 위무지에게 공을 돌리자 고조가 그에게도 상을 내려 주었다. (『漢書』「陳平傳」)

어느 겨를에 그들을 쓰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한왕이 진평을 호군중위護軍中尉에 제수하여 여러 장수를 모두 감독하게 하니, 여러 장수가 감히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가 이전에 풍이馮異⁷⁵에게 관중關中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 “풍이의 위엄과 권세가 지극히 중하니, 백성들이 마음으로 그를 따라 함양왕咸陽王이라고 부릅니다.”라고 하였다. 광무제가 이 글을 풍이에게 보이자, 풍이가 두려워하며 사죄하니, 조서를 내려 “우리 국가에 있어서 장군은 의리상으로는 군신의 관계이나 은혜로는 부자지간과 같으니, 어찌 혐의하고 의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 촉한 소열제蜀漢昭烈帝⁷⁶가 제갈량諸葛亮과 정의情誼가 깊어져 날로 친밀해지자 관우關羽⁷⁷와 장비張飛⁷⁸가 기뻐하지 않았다. 소열제는 이들에게 해명하기를 “나에게 공명孔明[제갈량諸葛亮의 자]이 있음은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으니, 그대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니, 이에 관우와 장비가 그만두었다.

|| 오왕吳王 손권孫權⁷⁹이 평로장군平虜將軍 주태周泰⁸⁰가 통솔하고 있는 유수濡須에 머물렀다. 주연朱然,⁸¹ 서성徐盛⁸² 등이 주태의 가문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복종하지 않았는데, 손권

74 미생尾生과 효기孝己와 같은 행실: 미생尾生은 춘추 시대 노수 사람으로,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한 어떤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물이 불어나는데도 피신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끝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효기孝己는 상 고종商高宗의 아들로, 효행이 있었는데, 고종의 후처의 참소에 의해 추방당해 죽었다고 한다. (『莊子』「盜跖」; 『外物』成玄英疏)

75 풍이馮異: ?~34. 한 광무제 때의 명장으로, 왕망王莽의 휘하에 있다가 광무제에게 귀순하여 동한東漢의 개국공신이 되었다. 전쟁터에서 다른 장수들이 모여앉아 전공戰功을 따질 때 홀로 나무 아래에 앉아 대책을 공리했기 때문에 ‘대수장군大樹將軍’이란 별호를 얻었다. 광무제가 즉위한 뒤 양후陽夏侯에 봉해졌으며,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을 지냈다.

76 촉한 소열제蜀漢昭烈帝: 161~223. 삼국 시대 촉蜀의 제1대 군주인 유비劉備로, 재위 기간은 221년에서 223년이다. 한의 황족으로서 황실 부흥을 기치로 내세웠으므로, 그가 세운 나라를 ‘촉한’이라고도 부른다. 관우關羽, 장비張飛와 의형제를 맺고 황건적黃巾賊 토벌에 가담하였으며,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통해 책사 제갈량諸葛亮을 맞이하여 적벽대전에서 조조曹操의 대군을 패퇴시키고 촉을 건국하였다. 이에 천하를 삼분三分하여 위衛의 조조, 오吳의 손권孫權과 함께 패권을 다투었다.

77 관우關羽: ?~220. 자는 운장雲長이다. 유비劉備, 장비張飛의 의형제로, 황건적의 난 시기부터 종군하였고,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장비張飛와 함께 조조曹操의 군대를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형주荊州를 수비하다가 손권의 장수 여몽呂蒙에게 형주荊州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였다.

78 장비張飛: ?~221. 자는 익덕益德이다. 유비劉備, 관우關羽의 의형제로, 황건적의 난 시기부터 종군하였고, 유비가 제위에 오른 뒤 거기장군車騎將軍, 사령교위司隸校尉에 임명되었다. 형주荊州에서 죽임을 당한 관우의 복수를 준비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자신의 부하였던 장달張達과 범강范疆에게 암살당하였다.

이 여러 장수를 모은 후 주태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상흔을 가리키며 그의 어깨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경(卿)은 나의 형제인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십 군데 상처를 입어 피부가 마치 그림을 새긴 것 같구나. 내 어찌 경을 골육의 은혜로 대하여 군대의 중책을 맡기지 않겠는가.” 마침내 주태에게 고취(鼓吹)⁸³하며 출병케 하였으니, 그제야 서성 등이 복종하였다.

- || 당 태종(唐太宗)이 진왕(秦王)으로 있을 때, 굴돌통(屈突通)⁸⁴과 은개산(殷開山)⁸⁵이 진왕에게 “울지경덕(尉遲敬德)⁸⁶은 용맹함으로는 비길 데가 없는데, 지금 갇혀 있으니, 분명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둔다면 후환이 될까 염려되니, 죽이느니만 못합니다.”라고 하니, 진왕 이세민(李世民)이 울지경덕을 침실로 데리고 들어와 금을 하사하며 “장부는 의지와 기개로 맺어졌으니, 작은 혐의를 개의치 말라. 내 끝까지 참소하는 말을 믿고서 충성스럽고 어진 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니, 공은 이 점을 체찰(體察)하라. 기어

79 오왕(吳王) 손권(孫權): 182~252, 삼국 시대 오의 군주로, 재위 기간은 222년에서 252년이다. 형 손책(孫策)의 뒤를 이어 강동(江東)을 차지하고, 유비(劉備)와 동맹을 맺고 조조(曹操)의 대군을 적벽(赤壁)에서 패퇴시켰다. 위(魏), 촉(蜀)과 더불어 삼국(三國) 중 하나인 오(吳)를 건국하여 패권을 다투었으나, 말년에 후계자 문제로 황족과 신하들에 대한 잔혹한 숙청을 반복하여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였다.

80 주태(周泰): 자(字)는 유평(幼平)이다. 손권(孫權)의 목숨을 구해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유수(濡須)를 침공한 조조(曹操)의 군대를 물리쳤고, 그 뒤 유수에 주둔하며 평로장군(平虜將軍)에 임명되었다. 후에 한중태수(漢中太守), 분위장군(奮威將軍)을 역임하였으며, 능양후(陵陽侯)에 봉해졌다.

81 주연(周然): 182~249. 자는 의봉(義封)이고, 원래 성은 시(施)씨인데, 주치(朱治)의 양자가 되었다. 서성(徐盛)과 함께 주태(周泰)의 부장이 되었으며, 여몽(呂蒙)을 따라 형주(荊州)를 빼앗고 관우(關羽)를 사로잡았다. 여몽이 죽으면서 그를 천거하여 소무장군(昭武將軍)이 되었으며, 후에 관직이 좌대사(左大司馬), 우군사(右軍師)에 이르렀다.

82 서성(徐盛): 자는 문항(文向)이다. 유비(劉備)와의 전투에서 공적을 쌓아 안동장군(安東將軍)이 되었다.

83 고취(鼓吹): 예전 궁중의 큰 예식이나 임금이 거동할 때, 또는 출정했던 군대가 개설했을 때에 관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던 곡으로, 출병하기 전에는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선창하는 용도로 쓰였다.

84 굴돌통(屈突通): 557~628. 굴들은 복성(伏姓)이며, 선비(鮮卑) 출신으로 자는 탄두발(坦豆拔)이다. 능연(凌煙) 24공신 중 한 사람이다. 수 양제(隋煬帝) 때 장안(長安)을 수비하였는데, 당 고조(高祖)가 공격하자 동관(潼關)에서 막다가 패배하여 투항하였다. 태종(太宗)이 왕세충(王世充)을 평정할 때에 은개산(殷開山)과 함께 큰 공을 세웠으며, 후에 낙주(洛州)도독(都督), 좌광록대부(左光祿大夫)에 제수되었다.

85 은개산(殷開山): ?~622. 이름은 고궤(高軌)이며, 자는 개산(開山)이다. 능연(凌煙) 24공신 중 한 사람으로, 수 양제(隋煬帝) 때 태곡현장(太穀縣長)을 지냈다가 당 고조(高祖)가 거병하자 투항하였다. 후에 이부상서(吏部尚書)에 올랐다.

86 울지경덕(尉遲敬德): 585~658. 경덕은 그의 자이고, 이름은 공궤(또는 용(融))이다. 선비(鮮卑) 출신으로 자가 경덕(敬德)이었기 때문에 흔히 ‘울지경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능연(凌煙) 24공신 중 한 사람이다. 수 양제(隋煬帝) 때 조산대부(朝散大夫)로 있다가 이세민(李世民)이 유무주(劉武周)를 정벌할 때 투항하였다. 현무문(玄武門)의 변에서 공을 세웠으며, 당 고조(高祖)가 이세민을 황태자로 삼고 양위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 떠나고자 한다면 이 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후에 태종이 울지경덕에게 “사람들이 간혹 경卿이 배반하였다고 하는데, 어째서인가?”라고 하자, 울지경덕이 “신은 폐하를 따라 사방을 정벌하면서 몸소 백여 번의 전투를 거쳤으니, 이제 남은 것은 칼끝과 화살촉으로 생긴 상흔뿐입니다. 천하가 안정되고 나니, 신이 배반했다고 의심하십니까?”라고 하고, 옷을 벗어 땅에 던지자 상흔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태종이 눈물을 흘리며 “짐은 한번도 경을 의심치 않기에 경에게 말한 것이니, 무엇을 한스러워하는가.”라고 하였다.

|| 당 태종 때의 일이다. 장손무기長孫無忌⁸⁷의 권세와 충애가 너무 성대하다고 은밀히 표표를 올린 자가 있었다. 태종이 장손무기에게 표를 보여 주며 “짐은 경卿에 대해 명백히 의심할 게 없다.”라고 하였다. 다시 백관百官을 불러 “짐은 이대들이 모두 어려 장손무기를 보면 아들같이 여기니, 다른 사람이 이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 당 덕종唐德宗 때의 일이다. 이필李泌⁸⁸이 덕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성李晟⁸⁹과 마수馬燧⁹⁰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폐하께서 만일 그들을 해치신다면, 금군禁軍의 사병들과 번진藩鎭의 신하들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오래 지나지 않아 안팎에서 변란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두 신하의 공이 크다는 이유로 꺼리지 말아야 하며 두 신하 역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스스로 혐의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리하면 천하는 영원히 무탈할 것입니다.” 덕종이 “짐이 삼가 허리띠에 써두겠다.”라고 하였다.

|| 당 선종唐宣宗이 백민중白敏中⁹¹에게 만수공주萬壽公主를 위해 훌륭한 사윗감을 고르게 하였는데, 백민중은 정호鄭顥⁹²를 추천하였다. 당시에 정호는 이미 노씨盧氏와 혼인하였는

87 장손무기長孫無忌: 「독성효篤聖孝」 법조 17번 각주 참조.

88 이필李泌: 「경사전敬事天」 계조 38번 각주 참조.

89 이성李晟: 「임현능任賢能」 계조 42번 각주 참조.

90 마수馬燧: 726~795. 자는 순미洵美이다. 대종 때부터 번진藩鎭을 제압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덕종 때 이회광李懷光을 평정한 공으로 시중侍中에 올랐다.

91 백민중白敏中: 792~861. 자는 용희用晦이며, 백거이白居易의 종형제다. 선종이 즉위한 뒤 병부시랑兵部侍郎으로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를 겸했으며, 당항黨項의 침입을 평정하였다. 후에 시중侍中, 중서령中書令에 올랐다.

데, 당첩堂帖⁹³을 보내 불러들였으므로 백민중을 심히 원망하였다. 백민중은 빈녕절도사 邠寧節度使로 부임을 앞두고 선종에게 “정호는 공주의 사위가 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기엔 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지금 신이 외직으로 나간다면 정호가 반드시 신을 중상中傷할 것이니, 신은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종은 “짐은 알고 있다.”라고 하고, 궁중에서 좌우에게 작은 합을 가지고 오라고 명하여 백민중에게 주며 “이것이 모두 정호가 경卿을 헐뜯은 서신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Ⅱ 송 태조宋太祖 때의 일이다. 대리시승大理寺丞 뇌덕양雷德驥⁹⁴이 태조를 알현하여 조보趙普⁹⁵가 형벌을 제멋대로 늘리거나 줄인다⁹⁶고 아뢰었다. 태조가 노하여 그를 꾸짖으며 “솔에도 귀가 있는데, 너는 조보가 나의 사직신社稷臣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가.”라고 하고, 관직官籍에서 그의 이름을 삭탈하고 유배보냈다.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생각건대, 제왕은 성스러움이 요임금과 순임금 같더라도 반드시 고요阜陶⁹⁷와 기夔⁹⁸를 기다린 후에 희호熙皞⁹⁹를 이루고, 덕이 상 탕왕과 주 무왕周武王 같더라도 반드시 이윤

92 정호鄭顥: 817~860. 당 선종唐宣宗의 사위이자 만수공주萬壽公主의 남편으로, 자는 봉정奉正이다. 역사상 유일한 장원부 마壯元駙馬로, 부마가 되면 정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마로 추천한 백민중白敏中을 원망하여, 선종이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후에는 선종의 총애를 받아 관직이 병부시랑兵部侍郎, 지공거知貢舉, 검교예부상서檢校禮部尚書에 이르렀다.

93 당첩堂帖: 당대唐代에 재상이 결재하여 하달한 공문서로, 여기에서는 정호鄭顥를 불러들이기 위해 보낸 첩자帖子를 가리킨다.

94 뇌덕양雷德驥: 917~992. 자는 선행善行이다. 태조 때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둔전원외랑屯田員外郎, 대리시승大理寺丞에 제수되었다. 태조에게 관속官屬들이 재상 조보趙普에게 붙여 형벌을 제멋대로 농단하고, 아울러 조보가 시인市人의 집을 강제로 차지하고 뇌물을 거둬들인 일을 고변하였다가 이로 인해 사호참군司戶參軍으로 폄적되고, 영무靈武로 유배되었다.

95 조보趙普: 「임현능任賢能」 법조 30번 각주 참조.

96 형벌을 제멋대로 늘리거나 줄인다: 저본의 원문에는 ‘攬增刑名’이라고 되어있는데, 『속자치통감』에는 ‘攬增減刑名’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97 고요阜陶: 순임금 때의 신하로, 형벌을 관장하는 사사士師가 되어 순임금을 보좌하였다.

과 주공을 만난 후에 질룡¹⁰⁰에 이르니, 어찌 현신^{賢臣}의 보좌 없이 치세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군주가 정성 어린 마음으로 편히 앉지 못하여¹⁰¹ 훌륭한 인재들이 왕정^{王庭}에 가득하여 현명한 자가 제자리에 있고 능력 있는 자가 관직을 받으며, 덕망이 두터운 자가 고굉^{股肱}의 역할을 맡고 의론이 바른 자가 이목^{耳目}의 관직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재능이 절충^{折衝}하는 데 적합하면 중군^{中軍}에서 중책을 맡고, 뜻이 천하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으면 지방에서 직임을 다하게 하여 대소^{大小}와 존비^{尊卑}를 막론하고 모두 기량에 따라 일을 맡게 된다면, 계책이 밝아지고 보필하는 이가 협조^{協調}하여¹⁰² 정치와 제도가 완성되니, 군주는 하는 일 없이 높은 자리에 단정히 앉아 있기만 해도 천하가 절로 희호와 질룡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만일 현능한 이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소홀히 하여 부적격한 자를 쓴다면, 모든 일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모든 제도가 변쇄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저 말세의 용렬하고 우매한 군주는 선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로지 취사^{取舍}에만 뜻을 두어 교묘한 말로 아첨하는 사람을 현명하다 하고 말주변만 좋은 사람을 능력 있다 하니, 관리를 임용함이 마땅함을 잃어 스스로 혼란과 멸망을 취하는 경우는 실로 말할 것도 못 됩니다. 비록 치세를 도모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재를 구하는 데 마음을 두는 경우도 많지만, 명철함이 현명한 이를 알아보기에 부족하고 지혜가 능력 있는 자를 찾아내기에 부족하여 되레 세상에 책임자가 없다고 핑계를 대니, 어찌 정말로 세상에 책임자가 없겠습니까. 하늘은 한 시대의 인재를 내어 한 시대의 일을 이루게 하니, 이를테면 한^漢의 소하^{蕭何}¹⁰³와 조참^{曹參}¹⁰⁴, 당^唐의 방현령^{房玄齡}¹⁰⁵과 두여회^{杜如晦}¹⁰⁶, 송^宋의 한기

98 기龔: 순임금 때의 신하로, 음악을 관장하는 전악^{典樂}이 되어 순임금을 보좌하였다.

99 희희^{熙熙} 皞皞: ‘희희호호^{熙熙皞皞}’의 약칭으로, 태평성대를 비유한다. 『노자』 제20장에 “세속의 중인들은 마치 푸짐한 잔치상을 받은 듯, 따스한 봄날 높은 누대에 올라서 사방을 조망하는 듯 화락하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고 하였고, 『맹자』 「진심^{盡心}」에 “성왕의 백성은 여유롭다.[王者之民 皞皞如也]”라고 한 데서 비롯하였다.

100 질룡^{箕龍}: ‘크게 창성하다’는 뜻으로, 태평성대를 비유한다. 『사기』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에 “주 문왕^{周文王}이 제도를 개혁하자, 주가 이에 크게 응성하고, 대도^{大道}가 행해졌다.[文王改制 爰周鄴隆 大行越成]”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101 편히 앉지 못하여: 『후한서』 「장제기^{章帝紀}」에 “짐이 정직한 선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편히 앉지 못하고 특별한 견해를 듣고자 한다.[朕思遲直士 側席異聞]”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이현^{李賢} 주註에 “편히 앉지 못하는 것이니,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이다.[謂不正坐 所以待賢良也]”라고 하였다.

102 계책이 … 협조^{協調}하여: 『서경』 「고요모^{皋陶謨}」에 “진실로 그 덕을 따르면 신하들의 계책이 밝아지고 보필하는 이들이 협조할 것입니다.[允迪厥德 謨明弼諧]”라고 하였다.

103 소하^{蕭何}: ?~기원전 193. 한 고조^{漢高祖} 때의 재상으로, 한신^{韓信}, 장량^{張良}, 조참^{曹參}과 함께 고조의 개국공신이다. 고조가 즉위할 때에 논공행상에서 으뜸가는 공신이라 하여 찬후^{鄭侯}로 봉해지고 식읍을 하사받았다. 뒤에 한신 등의 반란을 평정하고 상국^{相國}에 제수되었다.

韓琦¹⁰⁷와 범중엄范仲淹¹⁰⁸, 부필富弼¹⁰⁹과 사마광司馬光¹¹⁰과 같은 사람들이 어찌 모두 고요阜陶나 기夔, 이윤과 주공에 필적하겠습니까. 당세에 뛰어난 자들에 불과합니다. 만일 세 군주가 이 사람들을 버려 두고서 쓰지 않고, 고요나 기, 이윤과 주공을 기다린 뒤에야 나라를 다스렸다면, 끝내 구하고자 했던 대상도 얻을 수 없고, 세 군주의 다스림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재가 성대하기는 세종 때만 한 시기가 없으니, 세종대왕께서 몸소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현능한 이들을 구하는 데 마음을 써서 일단 일을 맡겼으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필할 인물을 구함에 황희黃喜¹¹¹와 허조許稠¹¹²가 조정에 나왔고, 문학을 담당할 인물을 구함에 정인지鄭麟趾¹¹³와 이석형李石亨¹¹⁴이 조정에 나왔으며, 국경을 확장할 인물로는 김종서金宗瑞¹¹⁵와 같은 이를 구하고, 외교를 전담할 인물로는 최치운崔致雲¹¹⁶과 같은 이를 구하였으며, 변경의 환란을 제거할 이를 구함에

104 조참曹參: ?~기원전 190. 한 고조漢高祖 때의 재상으로, 고조가 즉위한 후 평양후平陽侯로 책봉되고, 경포의 반란 등을 평정하였다. 고조가 죽은 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상국相國이 되어 혜제惠帝를 보필하였다.

105 방현령房玄齡: 「법조종法祖宗」 계조 28번 각주 참조.

106 두여회杜如晦: 「거편사去偏私」 법조 5번 각주 참조.

107 한기韓琦: 「독성효篤聖孝」 법조 24번 각주 참조.

108 범중엄范仲淹: 「독성효篤聖孝」 법조 22번 각주 참조.

109 부필富弼: 「경사천敬事天」 계조 47번 각주 참조.

110 사마광司馬光: 1019~1086. 북송 신종北宋神宗, 철종哲宗 때의 대신으로, 자는 군실君實, 호는 우부迂夫 또는 우수迂叟,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신종이 즉위한 뒤 한림학사翰林學士, 어사중승御史中丞에 제수되었다. 신종이 왕안석王安石을 발탁하여 신법新法을 단행하자, 이에 반대하여 사퇴하고 지방으로 나가 「자치통감」을 완성하였으며, 철종哲宗이 즉위하고 나서 중앙에 복귀하였다. 저서에 「자치통감」, 「독락원집獨樂園集」, 「서의전가집書儀傳家集」 등이 있다. (『宋史』 「司馬光傳」)

111 황희黃喜: 1363~1452.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龐村, 시호는 익성翼成이다. 세종世宗 때 영의정에 제수되어 18년간 국정을 담당하였으며, 농사의 개량, 예법의 개정, 천천賤賤 소생의 천역賤役 면제, 국방 강화, 4군 6진 개척, 문물제도의 정비 등의 업적을 남겼다.

112 허조許稠: 「계종찰戒聰察」 근안 27번 각주 참조.

113 정인지鄭麟趾: 1396~1478.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자伯晬, 호는 학역재學易齋,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세종世宗 때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을 거쳐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제수되었다. 후에 집현전 대제학으로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를 도왔고, 훈민정음 서문을 찬진撰進하였으며, 이석형李石亨, 김종서金宗瑞 등과 「고려사高麗史」를 개찬改撰하고, 「치평요람治平要覽」을 찬진하였다.

114 이석형李石亨: 1415~1477.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백옥伯玉, 호는 저헌樸軒,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세종世宗 때 집현전교리集賢殿校理를 거쳐 집현전수직제학集賢殿守直提學이 되었다.

115 김종서金宗瑞: 1383~1453.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4군 6진을 설치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장하였다. 후에 수양대군首陽大君에 의해 살해되어 계유정난癸酉靖難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최윤덕崔潤德¹¹⁷을 임명하고, 아악雅樂을 바로잡을 이를 구함에 박연朴堧¹¹⁸을 임명하셨습니다. 한 시대의 현능한 이들이 그 재능을 다하여 정사를 돕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성스러운 임금의 계속 나와 모두 이 방법을 썼습니다. 지금 세상이 열성조보다 못하지만, 현능한 이를 구함에 열조에서 했던 것을 본받는다면 이 시대의 현능한 이들이 절로 조정에 모여들 것이니,¹¹⁹ 또한 열성조에서 인재를 빌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군주라면 누구인들 현능한 이를 찾아 스스로를 돕게 하려하지 않겠습니까만, 현능한 이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이 어렵고, 또 현능한 이를 알아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어려우며, 일단 썼다면 또한 제대로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현능한 이를 찾더라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 진가를 판별할 수 없고, 알아보더라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포부를 시험할 수 없고, 쓰더라도 제대로 맡기지 않으면 공효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진 이를 생각하기를 목마른 듯이 하고 어진 이를 세우는 데 일정한 방소를 두지 않는 것이 바로 현능한 이를 구하는 도이며, 그 사람이 행동하는 이유를 살피고 편안히 여기는 바를 관찰하는 것¹²⁰이 바로 현능한 이를 알아보는 도이며, 재능을 헤아려 관직을 주고 각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현능한 이를 쓰는 도입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예를 갖추어 존중하여 참소와 이간하는 말이 행해지지 않게 한다면, 이른바 현능한 이에게 맡기는 도가 여기에서 다할 것입니다. 맹자孟子께서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신하로 삼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을 신하로 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¹²¹라고 하셨으니, 군주의 병통은 대부분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116 최치운崔致雲: 1390~1440.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백경伯卿, 호는 경호鏡湖 또는 조은鈞隱이다. 세종世宗 때 평안도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 최윤덕崔潤德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야인 정벌에 공을 세웠으며, 계품사計稟使로서 명에 가 야인을 회유하는 등 외교적 공적을 쌓았다.

117 최윤덕崔潤德: 1376~1445. 본관은 통천通川, 자는 여화汝和 또는 백수白修, 호는 임곡霖谷, 시호는 정렬貞烈이다. 세종世宗 때 이종무李從茂와 함께 대마도를 정벌하였으며, 김종서金宗瑞와 함께 여진족들의 침입을 격퇴하고 4군 6진을 설치하였다.

118 박연朴堧: 1378~1458.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탄보坦甫, 호 난계蘭溪 또는 송설당松雪堂,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세종世宗 때 악학별좌樂學別坐에 임명되어 아악雅樂을 완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19 모여들 것이니: 『주역』 태괘泰卦 초구初九에 “띠풀의 영긴 뿌리를 뽑는 격이라 동류들과 함께 나아감이 길하다.[拔茅茹以其彙征 吉]”에서 온 말이다.

120 그 사람이 … 것: 『논어』 「위정爲政」에 보인다.

121 자기가 … 않는다: 『맹자』 「공손주공孫丑」에 보인다.

만 하는 자가 조정에 나오면 현명한 이를 조치할 수 없고, 어리석은 자가 등용되면 능력 있는 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안축顔臯이 왕 앞에서 청한 것¹²²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하는 인사가 기꺼이 저하를 위해 쓰일 것이니,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122 안축顔臯이 … 것: 제 선왕齊宣王이 은사隱士 안축을 접견했을 때, 안축이 선비들을 잘 대우하도록 선왕을 설득한 것을 가리킨다. 이에 공감한 선왕이 안축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최고의 의식과 수레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니, 안축은 이를 사절하면서 “늦게나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을 육식과 맞먹는 것으로 여기고, 느긋하게 걷는 것을 수레와 맞먹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晩食以當肉 安步以當車”라고 한 고사가 있다. (『戰國策』「齊策」)

변간사辨奸邪

간사를 분별하다

법조 法條

|| 순임금 때의 일이다. 제황씨帝鴻氏[황제黃帝]에게 못된 자식이 있었으니 ‘혼돈渾沌’¹이라고 불렸고, 소호씨少昊氏에게 못된 자식이 있었으니 ‘궁기窮奇’²라고 불렸으며, 전옥씨顓頊氏에게 못된 자식이 있었으니 ‘도올橈杓’³이라고 불렸고, 진운씨緡雲氏에게 못된 자식이 있었으니 ‘도철饗饗’⁴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을 일컬어 ‘사흉四凶’이라고 하였다. 순임금이 그들을 모두 사방 끝으로 내쫓으니, 공공共工, 환도驩兜, 곤鯀, 삼묘三苗⁵가 바로 이들이다.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1 혼돈渾沌: 우매하고 사리에 밝지 못하다는 뜻이다. 『춘추좌씨전』에는 ‘혼돈渾敦’으로 표기되어 있다. 혼돈은 의羲를 행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간적奸賊을 숨겨주며, 악행을 좋아하여 악인을 동료로 여기고 덕의德義를 본받지 않는 자, 충신忠信을 말하지 않는 자,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는 자들을 가까이 하였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文公 18年)

2 궁기窮奇: 궁窮은 악을 행한다는 뜻이고 기奇는 기괴함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궁기는 신의信義가 있는 사람을 혈뜰고 충직忠直한 사람을 버렸으며, 부정한 사람을 쓰고 악인을 두둔하였으며, 말을 꾸며내어 참조하는 말을 편히 여기고 성덕盛德이 있는 사람을 무함하였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文公 18年)

3 도올橈杓: 도올은 무지막지하고 흉악하기 짝이 없다는 뜻이다. 도올은 가르치거나 타이를 수 없고 선한 말을 할 줄을 모르며, 덕의德義를 일러주면 따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못된 말만 하며, 덕을 하찮게 여기고 인륜을 어지럽혔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文公 18年)

4 도철饗饗: 도饗는 재물을 탐한다는 뜻이고 철饗는 음식을 탐한다는 뜻이다. 도철은 음식과 재물을 탐하여 뺏으려는 욕심이 많았고, 만족할 줄 몰라 축적한 재물이 가득하였는데도 고아나 과부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곤궁한 사람을 구휼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文公 18年)

5 공공共工 … 삼묘三苗: 『서경』 『순전舜典』에 순임금이 공공을 유주幽州로 유배하고 환도를 송산崇山으로 추방하고 삼묘를 삼위三危로 몰아내고 곤을 우산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벌주자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춘추좌씨전』에는 순이 요임금의 신하로 있으면서 사흉四凶인 혼돈渾敦, 궁기窮奇, 도올橈杓, 도철饗饗를 사방 변두리로 내쫓아 산이나 숲속의 괴물(魍魎)을 막게 하였다고 하였다. 대개 공공, 환도, 곤, 삼묘를 사흉과 동일한 존재로 본다.

|| 전한 소제前漢昭帝 때의 일이다. 상관걸上官桀이 사람을 시켜 연왕燕王이 글을 올린 것처럼 꾸며서⁶ “곽광霍光⁷이 낭관과 우림羽林⁸을 검열하고 혼란시키려 나갔을 때 거리에서 길을 비키라고 외치고⁹, 또 막부幕府에 교위校尉의 수를 제멋대로 늘렸습니다. 그가 권력을 독차지하여 방자하게 구니, 비상사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이 글이 상주上奏되자, 소제가 대장군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곽광이 들어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자 소제가 “장군은 관을 쓰라. 짐은 이 글이 거짓임을 알고 있다. 장군은 죄가 없다.”라고 하였다. 곽광이 “폐하께서는 어떻게 아셨습니까?”라고 묻자 소제가 “장군이 광명정廣明亭에 가서 낭관들을 검열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교위를 선발한 뒤로 열흘이 채 되지 않았으니, 연왕이 무슨 수로 알겠는가? 또 장군이 배반하려 했다면 교위가 더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소제의 나이는 14살이었으니, 상서尙書와 주위의 시종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소제는 결국 상관걸과 그의 아들 상관안上官安 등을 모두 처형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이 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그 나무를 마음에 들어 하니, 전중감殿中監 우문사급宇文士及¹⁰이 덩달아 나무를 칭찬하였다. 그러자 태종이 정색하고 말했다. “위징魏徵이 나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권계하였다.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너인 듯하다.”

6 상관걸上官桀이 … 꾸며서: 후한 소제 때 상관걸이 연왕燕王 유단劉旦과 결탁하여 대장군 곽광을 모함하기 위해 일을 꾸민다. 상관걸의 아들 상관안은 곽광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어린 딸을 궁중에 들여보내 황후가 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관걸과 곽광 사이에 알력이 생겼다. 소제의 이복형이었던 연왕은 소제가 무제의 친자가 아니라는 설을 퍼뜨리고, 당시 대장군 곽광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상관걸, 상홍양桑弘羊, 개장공주蓋長公主와 결탁하여 반란을 꾀하였으나 발각당하여 실패하였다. (『漢書』 「武五子傳」)

7 곽광霍光: 전한 무제前漢武帝의 유조遺詔를 받들어 소제昭帝를 보필한 보정대신輔政大臣으로, 자명子孟, 시호는 선성宣成이다. 박륙후博陸侯에 봉해졌다. 무제는 70세에 얻게 된 어린 아들소제를 태자로 삼고, 주공周公이 어린 성왕成王을 등에 업고 제후들에게 조회를 받는 그림을 화공畫工에게 그리게 하여 대장군 곽광에게 주었다. 무제가 임종할 때 곽광에게 그림을 준 뜻을 이는지 묻고, 그를 대장군과 대사마司馬에 임명하면서 어린 태자를 잘 보좌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漢書』 「霍光傳」)

8 우림羽林: 전한 무제前漢武帝가 설치한 금군禁軍의 이름으로, 호송護送과 보위保衛 등의 임무를 맡았다.

9 거리에서 길을 비키라고 외치고: 원문의 ‘蹕’은 통행을 막는다는 뜻으로, 천자가 출입할 때 길에 행인을 막고 길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벽제辟除를 가리킨다. 천자가 아닌 제후왕諸侯王이나 신하가 벽제를 하는 것은 대개 대단히 교만하거나 역심을 품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 당 목종唐穆宗 때의 일이다. 한림학사 원진元稹¹¹과 지추밀 위홍간魏弘簡¹²이 서로 긴밀히 결탁하여, 배도裴度¹³가 올린 군사軍事의 계획이 이들에 의해 저지되고 무산된 적이 많았다. 배도가 이에 표表¹⁴를 올려 “역적 놈은 난을 일으켜 산둥山東을 뒤흔들고, 간신은 패 거리를 이루어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유주幽州와 진주鎮州의 도적떼¹⁵를 소탕하려 하신다면, 우선 조정을 깨끗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하북河北의 역적은 산둥을 어지럽힐 뿐이지만, 궁 안의 간신은 틀림없이 천하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북은 작은 문제이고, 궁 안이 큰 문제입니다.”라고 하니, 목종이 곧 위홍간과 원진을 해직시켰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태종北宋太宗 때의 일이다. 두칭竇偁¹⁶이 개봉부開封府 판관判官으로 있었는데, 추관推官 가염賈琰이 태종에게 아첨하자, 그 자리에서 “가씨의 자식은 교묘한 말로 낮빛을 꾸미면서도

10 우문사급宇文士及: ?~642. 수隋의 장군 우문술宇文述의 셋째 아들로, 자는 인수仁人, 수 양제隋煬帝의 사위였다. 그의 형 화급化及이 반란을 일으키자 당唐에 투항하였는데, 태종太宗은 그를 받아들이고 중용하여 영국공鄴國公에 봉해지고 전공감에 올랐다. 어느 날, 우문사급이 나무 아래에서 쉬던 태종의 비위를 맞추자 태종이 그의 태도에 대해 정색하면서 질책하였는데, 우문사급이 “신하들이 면전에서 간쟁하여 폐하께서 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지금 신이라도 행여 곁에서 조금이나마 뜻에 맞춰 따르지 않는다면, 비록 천자의 귀한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태종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한다. 우문사급이 병으로 위독하자 태종이 문병을 가서 눈물을 흘렸고, 그가 죽자 ‘공’의 시호를 내리려 하였는데, 황문시랑黃門侍郎 유계劉洵가 “우문사급은 집에서 사치하며 방종하였으니, ‘공’은 안 됩니다.”라 논박하여 결국 ‘중縱’을 시호로 내렸다. (『舊唐書』「宇文士及傳」)

11 원진元稹: 779~831. 자는 미지微之이다. 목종穆宗이 태자 시절부터 원진의 시가를 좋아하여, 즉위 후 그를 중용하였다. 젊을 때 거침없는 성격으로 인해 환관의 비위를 거슬러 말채직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강릉부江陵府로 좌천당하였으나,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는 환관과 결탁하여 중앙 정계로 복귀하였고 재상까지 이르렀다. 후에 변절자로 간주 되었다. 백居易白居易와는 동과급제同科及第하였고 평생의 시우詩友 관계를 맺어 나란히 ‘원백원白’으로 일컬어진다. 원화체元和體의 유행과 신악부新樂府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소설 『앵앵전鶯鶯傳』을 남겼다. (『舊唐書』「元稹傳」)

12 위홍간魏弘簡: 환관으로, 자는 유지裕之이다. 원진元稹과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 배도裴度の 상소로 인해 지추밀知樞密의 직책에서 궁전고사弓箭庫使로 좌천당했지만, 목종穆宗은 변함없이 그를 아꼈다고 한다. (『資治通鑑』「唐紀」)

13 배도裴度: 765~839. 자는 중립中立이다. 절도사를 억압하고 환관에 대해서 강경책을 취하였다. 현종憲宗 때 재상으로 임명되어 채주蔡州에서 반란을 일으킨 오원제吳元濟를 격파하여 사로잡고 하북河北의 변진들을 정부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변진의 할거 국면을 일시 소강상태로 만든 공으로 진국공晉國公에 봉해졌다. 만년에 환관들이 득세하여 정권을 장악하자, 낙양 근교에 녹야당綠野堂을 짓고 백居易白居易, 유우석劉禹錫 등과 함께 시를 지으며 지냈다. (『舊唐書』「裴度傳」)

14 표表: 『전당문소唐文』에 「논원진위홍간간장소論元稹魏弘簡姦狀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5 유주幽州와 진주鎮州의 도적떼: 당 현종唐憲宗의 적극적인 변진 제압 정책에 따라, 갓 제압된 하북河北의 성덕 변진成德藩鎮, 노룡 변진盧龍藩鎮, 위박 변진魏博藩鎮에 대해 한동안 조세를 면제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현종의 뒤를 이은 목종穆宗은 이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사의 정원을 점차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봉급에 의존해 오던 장병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다수의 장병이 군도群盜가 되었다. 결국 노룡 변진의 장병들은 절도사를 감금하기에 이르렀고, 성덕 변진에서는 왕정주王廷湊가 절도사를 죽이고 유후留后를 자칭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조종성, 『穆宗-武宗 시기(820-846) 唐朝의 二元的 藩鎮 制御』, 동양사학회, 『동양사학연구』134집, 2016)

마음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꾸짖은 적이 있었다. 태종이 이로 인해 두칭의 올곧음을 중히 여겨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삼고 말하였다. “경이 가염을 꾸짖은 것에 대한 상이다.”

|| 북송 인종北宋仁宗이 하송夏竦¹⁷을 추밀사樞密使에서 해임시키고 한기韓琦¹⁸, 범중엄范仲淹¹⁹ 등을 기용하였다. 국자감직강國子監直講 석개石介²⁰가 크게 기뻐하며 “이는 성덕盛德의 일이니, 이를 노래로 칭송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 하고 「대력성덕시慶曆聖德詩」를 지었다. 그 내용에 ‘어진 이들이 나아가니 띠를 뽑아 올린 듯하고, 큰 간적奸賊이 제거되니 머느리발톱을 뽑은 듯하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큰 간적’은 하송을 가리킨다.

|| 북송 인종이 보신輔臣에게 “왕흠약王欽若²¹이 오랫동안 정부政府에 있었는데, 그가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자, 왕증王曾²²이 “왕흠약이 정위丁謂²³, 임특林特²⁴, 진팽

16 두칭竇稱: 925~982. 자는 일장日章이다. 후한後漢과 후주後周에서 벼슬을 하다가 태조의 신하가 되었다. 태조의 아우인 태종이 즉위하기 전 개봉윤開封尹으로 있을 때, 판관判官으로서 태종을 보좌하였다. 당시 태종이 마련한 연회에서 두칭이 태종에게 아부하는 가염을 꾸짖자, 태종이 언짢게 여겨 태조에게 고하여 파직시키고 내쫓았다. 그러나 태종이 즉위한 후에 두칭을 중용하여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임명하였는데, 그해 겨울에 두칭이 죽자 태종은 직접 조문하여 통곡하고 공부상서工部尚書로 추증追贈하였다.

17 하송夏竦: 985~1051. 자는 자교子喬이다. 문장에 뛰어나고 관료로서 많은 치적治績을 이루었다. 왕흠약王欽若 등과 봉당을 이루어 자신의 정적들을 증상하다가 구양수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석개가 자기를 ‘대간大姦’이라고 지적인 것에 대해 앙심을 품어, 석개가 죽자 그의 묘를 파서 부관참시하려 하였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宋史』「石介傳」)

18 한기韓琦: 「독성효篤聖孝」 법조 24번 각주 참조.

19 범중엄范仲淹: 「독성효篤聖孝」 법조 22번 각주 참조.

20 석개石介: 자는 수도守道이다. 효자孝子로 유명하며 국자감직강國子監直講, 태자중윤太子中允 등을 역임하였다. 간신 등을 경계하기 위해 「당강당鑑」을 지었으며, 조래산徂徠山 아래에서 농사지으면서 「역」을 강론하여 ‘조래선생’이라 불렸다. (『宋史』「石介傳」)

21 왕흠약王欽若: 962~1025. 자는 정국定國이다. 진종眞宗 때 거란의 침입을 막고 화친을 성사시킨 구준寇準을 모함하여 진종이 그를 멀리하게 만들고, 진종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 뜻에 영합하여 승천문承天門과 태산泰山에서 천서天書를 얻은 것으로 조작하여 올렸다.

22 왕증王曾: 978~1038. 자는 효선孝先이며, 발해시發解試, 성시省試, 전시殿試에 차례로 장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문장에 뛰어나며 많은 치적을 쌓아 백성들이 생사生祠를 세워 그를 기렸다고 한다. 진종眞宗이 천서天書를 조작한 일과 옥청궁玉淸宮을 건립한 일에 대해 규간規諫한 적이 있으며, 인종仁宗이 즉위하자 정위丁謂 등 권신들을 몰아내었다.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임명되었고, 기국공沂國公에 봉해졌다. (『宋史』「王曾傳」)

23 정위丁謂: 966~1037. 자는 공언公言이다. 성품이 기만하고 도화圖畫, 박혁博奕, 음률音律 등에 모두 능통하였다고 한다. 진종眞宗 때 재상이었던 구준寇準에게 심하게 아첨하였는데, 중서성中書省의 회식 자리에서 구준의 수염에 국물이 묻자 정위가 일어나 닦아주었다. 이에 구준이 “참정參政은 나라의 대신인데 장관을 위하여 수염을 닦아주는구나.”라고 하자 정위는 매우 부끄러워하였고, 후에 구준을 참소하여 내쫓았다. 진국공晉國公에 봉해지고 재상까지 올랐으나, 인종仁宗이 즉위한 뒤 환관 뇌윤공雷允恭과 결탁하여 임금을 속인 죄상이 드러나 폄직되었다.

년陳彭年,²⁵ 유승규劉承珪²⁶와 매한가지로 간악하니, 지금 그들을 ‘다섯 귀신(五鬼)’이라 부릅니다. 그의 간사하고 거짓됨은 참으로 폐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북송 철종北宋哲宗 때의 일이다. 형서邢恕²⁷는 천성적으로 속임수와 거짓말을 일삼았다. 고공회高公繪²⁸에게 글을 올려 주 태비朱太妃²⁹를 높여줄 것을 청하였는데, 고씨 일족의 훗날을 위한 방책이었다. 태황태후太皇太后³⁰가 고공회에게 “누가 너에게 이러한 글을 쓰게 했느냐?”라고 묻자 고공회가 형서의 초고를 바치니, 태후가 노하여 형서를 지수주知隨州로 내쫓았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송렴宋濂³¹ 등에게 명하여 역대 간신의 행적을 모아 『변간록辨奸錄』을 만들게 하고, 태자와 제후왕諸侯王에게 반사頒賜하였다.

24 임특林特: 951~1023. 자는 사기士奇다. 진종眞宗의 신임을 받아 삼사三司, 곧 염철사鹽鐵司, 탁지사度支司, 호부사戶部司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면서 진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정위丁謂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진종에게 동료를 중상中傷하여 사람들이 그를 꺼렸다고 한다. (『續資治通鑑』 「宋紀」)

25 진팽년陳彭年: 961~1017. 자는 영년永年이다. 박식하고 근면하였으며 서적을 사들이는 데 가산을 탕진하였다고 한다. 진종眞宗의 명을 받아 구옹丘雍과 함께 『광운廣韻』을 증광增廣하여 『대송중수광운大宋重修廣韻』을 찬수撰修하였으며, 『옥편玉篇』을 중수重修하는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한림원에 있으면서 여러 문한文翰의 직임을 겸하여 사람들이 ‘일조빙一條冰’이라 불렀다고 한다. 진팽년은 천서天書를 조작하여 봉신封禪을 행할 때 모두 관여하였다.

26 유승규劉承珪: 949~1012. 환관으로, 자는 대방大方이다. 3명의 황제를 섬겼으며 깊은 신뢰를 받아 30년간 내장內藏을 관리하였고,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업적을 남겼다. 그가 죽자, 진종眞宗은 시종侍中으로 추증하고 ‘충숙忠肅’을 시호로 내렸으며, 태종太宗의 소상塑像 옆에 그의 소상을 두어 황제의 공신으로서 함께 제향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왕흠 왕欽若이 천서天書를 조작한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진종의 뜻에 영합한 적이 있다.

27 형서邢恕: 자는 화숙和叔이다. ‘형칠邢七’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본래 정호程顥의 제자로서 사마광司馬光, 여공저呂公著와 교유하면서 한때 명성을 얻었으나, 뒤에 스승 정호를 배반하고 장돈章惇을 따르다가 다시 배반하고 채경蔡京의 심복이 되었으며, 사마광, 정이程頤 등을 모함하여 궁지에 빠뜨렸다. 이로써 스승까지 배반하는 인물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宋史』 「姦臣傳」)

28 고공회高公繪: 북송 영종의 황후이자 철종의 조모祖母인 선인성렬황후宣仁聖烈皇后 고씨高氏의 조카이다.

29 주 태비朱太妃: 북송 신종北宋神宗의 덕비德妃이자 철종哲宗의 생모生母인 흥성황후興成皇后(1052~1102)를 가리킨다. 철종이 즉위한 뒤 흥성태후欽聖太后 상씨尙氏가 있었으므로 황태후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태비太妃에 봉해졌다. 철종 사후 즉위한 휘종徽宗이 황후皇后로 추존하였다.

30 태황태후太皇太后: 북송 철종의 조모祖母인 선인성렬황후宣仁聖烈皇后 고씨高氏(1032~1093)를 가리킨다. 아들 신종神宗이 즉위한 뒤 조정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신종이 황태후의 친척들을 위해 호화로운 저택을 내리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거편사去便私」 법조法條 11번 각주 참조.

31 송렴宋濂: 1310~1380. 자는 경령景濂, 호는 잠계潛齋이다. 원 말기 전란을 피해 용문산龍門山에 은거하여 저술에 전념하다가, 태조가 세력을 잡은 뒤에 부름을 받아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태조의 고문으로서 명의 의식儀式과 제도를 제정하는데 기여하였다. 유기劉基, 고계高啓와 더불어 명초시문삼대가明初詩文三大家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송학사전집宋學士全集』, 『포양인물기浦陽人物記』 등이 있다.

- || 명 성조明成祖 때, 태상소경太常少卿 주눌周訥이 상소하여 봉선封禪을 행하라고 청했었다. 인종仁宗 때에 이르러 그가 조회하러 오자, 인종이 “아침하는 사람은 먼 변방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교지승화지부交趾升華知府로 내쫓았다.
- || 명 선종明宣宗이 하원길夏原吉³² 등에게 말하였다. “거짓말을 일삼는 간특한 소인은 정말로 흰 것을 바꾸어 검은 것으로 만들고 바른 것을 무함하여 그릇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순임금은 참조하는 말을 막았고, 공자는 아침하는 이를 멀리한 것이다. 짐은 이러한 자들을 항상 엄격히 막아낼 것이다.”
- || 명 효종明孝宗이 만안萬安³³의 허물과 악행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루는 궁중에서 만안이 작성한 소疏가 담긴 상자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모두 방중술에 대한 글이었다. 효종이 만안에게 그것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대신이 할 짓인가.”라고 하자, 만안이 곧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걸하면서도 물리나려 하지 않았다. 태감 회은懷愼이 그가 걸고 있던 아패牙牌를 떼어 버리고서야 만안이 물러났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상 주왕商紂王 때의 일이다. 뇌개雷開라는 자는 타고난 아침꾼으로, 주왕에게 아부하는 말을 올리자 주왕이 금과 옥을 내리고 하전夏田을 봉지封地로 주었다.

32 하원길夏原吉: 1366~1430. 자는 유철維詰이다. 향천鄉薦으로 태학에 들어갔으며, 황제의 조령문을 필사하는 직책에 선발되어 태학생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다. 태조太祖가 그를 호부戶部의 주사主事로 임명하였는데, 번쇄한 업무를 조리 있게 잘 처리하여 인정을 받았다. 다섯 황제를 섬기면서 많은 치적을 쌓았고 중신重臣으로서 인종仁宗과 선종宣宗을 보좌하여 ‘인선지치仁宣之治’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였다. (『明史』「夏原吉傳」)

33 만안萬安: ?~1488. 자는 순길循吉이다. 당 현종唐憲宗이 도교에 빠지자 도사들과 결탁하여 많은 사람을 모함하고 귀양보냈다. 만안, 유후劉瑑, 유길劉吉 세 사람이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지호삼각로紙糊三關老’로 일컬어졌고, 현종의 말에 “만세”라고만 외쳤기에 ‘만세상공萬歲相公’으로 불렸다. 효종이 즉위한 후 만안이 치사致仕하자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고 한다.

- || 주 유왕周幽王³⁴ 때의 일이다. 궈석보虢石父는 아침을 잘하고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었다. 유왕이 그를 경공으로 삼자, 권력을 잡고 전횡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으니, 정치는 잘못된 것이 많고 왕실은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 안자晏子³⁵가 제 경공齊景公을 천대臺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자유子猶³⁶가 말을 달려 그곳에 이르렀다. 제 경공이 “거據【자유】만이 나와 맞다.”라고 하자 안자가 말하였다. “맞다는 것은 국을 끓이는 것과 같으니, 물과 불, 식초, 젓갈, 소금, 매실을 써서 생선과 고기를 익히고 간을 알맞게 조절하여 맛을 내면, 군자는 그것을 먹고서 마음을 화평하게 합니다. 군주와 신하 또한 그러하니, 군주가 옳다고 해도 그 중에 그른 점이 있으면 신하는 그 그른 점에 대해 말을 올려 옳은 것을 이루게 하고, 군주가 그르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옳은 점이 있으면 신하는 그 옳은 점에 대해 말을 올려 그른 것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저는 그렇지 않아서 군주가 옳다고 하면 저도 옳다고 말하고 군주가 그르다고 말하면 저도 그르다고 말하여 물에 물을 타는 듯하니, 누가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 위 사군衛嗣君³⁷이 말한 계책이 옳지 않은데도 못 신하들이 마치 하나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호응하니, 자사子思³⁸가 말하였다. “일의 시비를 살피지 않고서 남이 자기를 칭찬

34 주 유왕周幽王: 주周的 왕 희궁열姬宮涅이다. 『사기』에는 이름이 ‘궁생궁涅’으로 기록되어있다. 선왕宣王의 아들이다. 애첩 포사褒姒를 얻은 후 정사를 돌보지 않고 향락에 빠졌으며, 태자 의구宜臼와 신후申后를 폐하고 포사의 아들 백복伯服을 태자로 세웠다. 이로 인해 신후와 그녀의 부친인 신후申侯가 원한을 품고 견용犬戎과 함께 주의 수도 호경鎬京을 함락하고 유왕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사후 태자 의구가 즉위하여 낙읍洛邑에서 주의 명맥을 이었고, 이것이 이른 바 ‘춘추시대’의 시작이다. 이 무렵의 주를 이전 시기와 구분하여 ‘동주東周’라고도 부르며, 그 이전의 주를 ‘서주西周’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35 안자晏子: 「경사천敬事天」 법조 10번 각주 참조.

36 자유子猶: 춘추 시대 제齊의 대부로, 성은 양구梁丘, 이름은 거據이다. 경공景公의 뜻에 영합하여 총애를 받았으며, 경공이 노 정공魯定公과 회동할 때 참석했다고 한다.

37 위 사군衛嗣君: 문헌상 기원전 4세기의 위사군과 기원전 5세기의 자사子思는 활동 시기가 겹치지 않으므로 서로 대면했을 가능성이 낮다. 원문의 출전인 『자치통감』은 위衛에 머물렀던 자사子思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한데 모았지만, 당시의 군주를 특정하지 않고 ‘위후衛侯’나 ‘공소’로 표기하였다. 『정사회감』의 편저자 홍봉한이 자사와 대화한 군주를 위사군이라 단정한 근거가 지금으로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선 원문의 표기를 따랐음을 밝힌다.

38 자사子思: 전국 시대 공급孔伋의 자字이다. 공자의 손자로, 증자曾子의 제자가 되어 학맥을 계승하였으며, 『중용』이 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어리석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고, 사리事理가 어디 있는지 헤아리지 않고서 아첨하여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면 아첨하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군주가 말을 하고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경과 대부가 감히 그 잘못됨을 바로잡지 못하며, 경과 대부가 말을 하고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사와 서인이 감히 그 잘못됨을 바로잡지 못한다. 군주와 신하가 이미 스스로를 현명하다 여기면 아랫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현명하다고 하니, 현명하다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되어 복을 받고 바로잡아 주면 거역하는 것이 되어 화를 입기 때문이다. 이와 같다면 선물이 어디서 생겨날 수 있겠는가.”

|| 진秦의 승상 조고趙高³⁹가 진의 권력을 독차지하였는데 신하들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했다. 이에 우선 시험해 보기로 하여 사슴을 가져다 2세 황제에게 바치며 “말입니다.”라고 하였다. 2세 황제가 웃으면서 “승상이 착각한 것 같다. 사슴을 일러 말이라고 하다니.”라고 말하고 주위에 묻자, 어떤 이는 침묵했고, 어떤 이는 말이라고 하여 조고의 뜻에 따랐으며 어떤 이는 사슴이라고 말하였다. 조고가 이로 말미암아 자신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법을 이용해 음해하니, 이후 신하들이 조고를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잘못을 말하지 못했다. 조고는 자주 관동關東의 도적⁴⁰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장감章邯의 군대가 여러 번 패배하고 관동이 모두 배반함에 이르자, 조고는 2세 황제가 노할 것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그의 사위인 함양령咸陽令 염락閼樂과 모의하여 2세 황제를 망이궁望夷宮에서 시해하였다.

|| 후한 순제後漢順帝 때의 일이다. 두교杜喬, 주거周舉 등 팔사八使가 각각 주군州郡을 나누어 감찰하게 되었는데, 그 중 광록대부光祿大夫 장강張綱만이 그의 수레바퀴를 낙양의 도정都亭에 묻고서 “승냥이와 이리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찌 여우와 너구리를 문책하겠는가.”⁴¹라고 하였다. 이에 마침내 대장군 양기梁冀⁴²와 하남윤 양불의梁不疑⁴³가 외

39 조고趙高: 「목종친睦宗親」 계조 28번 각주 참조.

40 관동關東의 도적: 관동은 진秦의 수도 함양의 입구에 있는 함곡관函谷關 동쪽을 가리키는 말로, 당시 조고가 자신의 실책을 회피하고자 반란군들을 도적이라고 지칭하였다.

41 승냥이와 … 문책하겠는가: 지방을 감찰하는 일보다 중앙의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는 권신을 규찰하는 일이 우선임을 말한 것이다.

42 양기梁冀: 「어근습駭近習」 법조 23번 각주 참조.

척으로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을 탄핵하여 그들이 군주를 무시하는 마음에서 행한 15가지 일을 조목조목 써서 아뢰었다. 이에 경사京師의 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하였지만, 순제는 장강의 말대로 하지 못했다.

- || 북제 세조北齊世祖⁴⁴ 때의 일이다. 화사개和士開⁴⁵가 시중侍中이 되어 간사한 행동과 아침을 갖가지로 행하였는데, 일찍이 세조에게 말하였다. “예로부터 제왕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으니, 요순과 걸주가 끝내 무엇이 달랐습니까. 폐하께서는 응당 젊을 때 마음껏 즐기셔야 하니, 하루의 쾌락은 천년을 사는 것과 맞먹을 수 있습니다. 나랏일은 모두 대신에게 맡겨 두시면, 어찌 잘 다스리지 못할까 걱정하겠습니까.”
- || 북제北齊 후주後主 고위高緯가 풍숙비馮淑妃와 함께 천지天池에서 사냥하고 있을 때, 후주後周의 군대가 북제의 진주晉州를 포위하였다. 진주에서 급보를 알리는 자가 아침부터 정오까지 역말로 세 번이나 이르렀는데, 우승상 고나굉高那肱⁴⁶이 말하였다. “대가大家께서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변방의 소소한 교전交戰은 늘 있는 일인데, 뭐 그리 급히 아뢰는가.”
- || 수 양제隋煬帝 때의 일이다. 광록대부 곽연郭衍⁴⁷이 아침으로 총애를 받았다. 일찍이 양제에게 5일에 한 번 조회하길 권하면서, “고조高祖[문제文帝]께서 공연히 자신을 피곤하게

43 양불의梁不疑: 후한 순제의 황후 양씨梁氏의 오라비인 양기梁冀의 아우로, 하남윤河南尹이었던 양기가 대장군이 되자 하남윤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44 북제 세조北齊世祖: 537~568. 북제 제4대 군주 고담高湛으로, 재위 기간은 561년에서 565년이다. 시호는 무성제武成帝이다. 고환高歡의 아홉 번째 아들이다. 형인 효소제孝昭帝 고연高演이 고담을 황태제로 삼기로 하였으나 아들 고백년高百年을 황태자로 삼으면서 형제 사이가 나빠졌다. 효소제가 죽자 고담은 조카 고백년을 죽이고 제위에 올랐고, 화사개和士開에게 국정을 맡긴 후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 이후 8살인 태자 고위高緯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태상황제太上皇帝가 되어 권력을 누리다가 병이 들어 죽었다.

45 화사개和士開: 자는 언통彦通이다. 창을 잘 쓰고 비파 연주를 잘하여 세조世祖의 총애를 받았으며, 황후 호씨胡氏와 사통하였다. 세조에게 국사를 대신에게 맡기고 유희를 즐길 것을 권유하였으며, 태자에게 선양하도록 설득하였다. 이후 세조에게 내쫓겼다가 후주後주가 즉위하면서 조정에 복귀하였으나, 낭야왕瑤那王 고엄高儼에게 살해당하였다.

46 고나굉高那肱: 돌궐突厥 사람이다. 『북제서北齊書』에는 그의 이름을 ‘고아나광高阿那肱’으로 표기하였다. 많은 전공을 세워 세조世祖의 신임을 받았고, 후주後주가 즉위하자 목제파穆提婆, 한봉韓鳳과 함께 당시 조정을 장악하여 그들과 아울러 ‘삼귀귀’로 불렸다.

47 곽연郭衍: 554~611. 자는 언문彦文이다. 양제煬帝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아침을 하면서 잘 따랐다.

하신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양제가 더욱 충성스럽게 여겼다.

|| 수 양제가 시신侍臣들에게 도적에 대해 묻자,⁴⁸ 우문술宇文述⁴⁹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 양제가 소위蘇威⁵⁰에게 고구려를 치는 일에 대해 묻자, 소위는 양제가 세상에 도적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바라건대 병사를 징발하지 마십시오. 도적들을 사면하기만 하면 절로 수십만의 병사들을 얻게 될 것이니, 고구려를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배온裴蘊⁵¹이 상주上奏하여 “이는 몹시 불손한 말입니다. 세상 어디에 도적이 많단 말입니까?”라고 하니, 양제가 “노인네가 아주 간악해서 도적을 가지고 나를 헐박했구나.”라고 하였다. 우세기虞世基는 양제가 도적에 대해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장수들과 군현郡縣 중에 패배를 알리거나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표나 문서를 모두 물리치고 없애서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단지 “취새끼”, “개도둑”이라고만 말하여 양제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으니, 도적들이 군현을 함락하여도 양제는 전혀 몰랐다.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일이다. 양국충楊國忠이 선우중통鮮于仲通⁵²을 발탁하여 검남절도사劍南節度使로 삼았다. 중통이 남조南詔⁵³의 만왕蠻王 합라봉閣羅鳳을 토벌하러 갔다가 크게 패

48 도적에 대해 묻자: 당시 수 양제隋煬帝가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으므로, 이밀李密, 두건덕 竇建德, 왕세충王世充, 이연李淵 등 많은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49 우문술宇文述: 546~616. 선비鮮卑 계통의 사람이다. 본래 성은 파야두破野頭이고 자는 백통伯通이다. 양제煬帝는 태자가 되기 전부터 그를 총애하여 가까이하였는데, 그의 도움으로 태자가 될 수 있었다. 후에 양제가 문제의 후궁을 범하여 폐위될 위기에 처하자, 우문술은 문제를 시해하는 일에 가담하였고, 양제가 즉위한 뒤 최측근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50 소위蘇威: 542~623. 자는 무외無畏이다. 태자소보太子少保, 경조윤京兆尹, 어사대부御史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우문술宇文述, 배구裴矩, 배온裴蘊, 우세기虞世基와 함께 ‘오귀오귀’라 불렸다. 후에 양제煬帝를 살해한 우문화宇文化及을 섬겼고, 이밀李密의 반군 세력이 성할 때는 이밀을 섬겼으며, 왕세충王世充이 정鄭을 세우자 왕세충에게 귀순하였고, 이세민李世民이 왕세충을 멸하자 당조唐朝에 귀순하였다.

51 배온裴蘊: 소위蘇威, 우문술宇文述, 배구裴矩, 우세기虞世基와 함께 오귀오귀라 불렸다. 양제의 의중을 잘 파악해, 양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법을 무시한 채 사면하였고 양제가 싫어하면 죄가 없어도 처벌하였다. (『北史』「裴蘊傳」)

52 선우중통鮮于仲通: 693~755. 본명은 선우향鮮于向이고 자가 중통仲通이다. 검남 절도사劍南節度使 장구경장우兼瓊에게 양국충을 추천해주었으며, 이후 양국충이 득세하자 그의 비호를 받아 검남 절도사가 되었다. 후에 경조윤京兆尹에 올랐다가 양국충을 거슬러 쫓겨났다.

53 남조南詔: 7세기 무렵 몽사조蒙舍詔가 타이족이 세운 나라들을 병합하고 운남雲南 일대에 세운 나라 이름이다. 당 현종唐玄宗이 양국충楊國忠 등을 보내어 남조를 정벌하게 하자, 남조는 토번吐蕃과 동맹을 맺고 당에 저항하였다.

하여 죽은 사졸이 6만이였다. 그러나 양국충은 그가 패한 진상은 숨기고 전공만을 나열하였다.

- || 당 현종 때의 일이다. 이임보李林甫⁵⁴가 재상으로 있었는데, 온 천하의 거인擧인들이 서울로 몰려들자 이임보는 자기의 단점을 공격할까 염려하였다. 이에 그들을 시험해 볼 것을 청한 뒤 한 명도 뽑지 않고 곧 “재야에 버려진 현인이 없다野無遺賢”⁵⁵라고 경하하였다.
- || 당 현종 때의 일이다. 장마로 인해 농작물이 상했는데 양국충楊國忠이 상태가 좋은 벼만 가져다 바치면서 “비가 많이 내렸지만 농작물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부풍태수扶風太守 방관房瑄이 관할 지역의 수재水災에 대해 진언하자 양국충이 어사御史를 시켜 추국하니, 이 때문에 천하에 감히 재난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고력사高力士⁵⁶가 “폐하께서 권병權柄을 재상에게 내어준 탓에 상벌은 법도가 없고 음양은 질서를 잃었습니다.”라고 하자 현종이 침묵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당 덕종唐德宗이 신룡사神龍寺를 보수하려고 하였는데, 50척 길이의 소나무가 필요했으나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배연령裴延齡이 “신이 요사이 동주同州의 한 계곡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모두 80척은 될 만했습니다.”라고 하니, 덕종이 “개원開元과 천보天寶 연간에 근기近畿에서 훌륭한 목재를 찾았는데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와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배연령이 “하늘이 낸 진귀한 목재는 본디 성군聖君을 기다렸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원, 천보 연간에 무슨 수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54 이임보李林甫: ?~752. 자는 가노哥奴, 호는 월당月堂이다. 사람 됨됨이가 겉과 속이 달라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 불렸다. 19년 동안이나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모두 배척하고 도당을 만들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였다.

55 재야에 버려진 현인이 없다: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로, 뛰어난 인재들이 빠짐없이 조정에 출사하여 정사가 잘 다스려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56 고력사高力士: 684~762. 환관으로, 위씨韋氏의 난亂을 평정할 때 활약하여 당 현종唐玄宗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으므로, 숙종肅宗이 태자로 있을 때, 그를 형으로 섬겼다고 한다. 숙종 연간에 표기대장군驍騎大將軍에 임명되고, 제국공齊國公에 봉해졌다.

|| 당 덕종 때의 일이다. 육지陸贄⁵⁷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배연령은 취렴聚斂하는 것을 좋은 방책方策이라 여기며, 속이는 것을 훌륭한 지모智謀라 여기며,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원망을 모으는 것을 자신을 돌보지 않는 충성이라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참소를 행하는 것을 자신의 절의를 다한 것이라 여기니, 요임금 때의 공공共工⁵⁸이요, 노魯나라의 소묘少卯⁵⁹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연령이 동쪽의 것을 옮겨 서쪽으로 가져가고서 곧 ‘업적’이라 말하며, 이쪽 것을 가져다 저쪽에 이르게 하고서 ‘여유분’이라 말하니, 조정을 우롱하는 것이 어린아이 장난과도 같습니다. 옛날에 조고趙高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였습시다. 사슴과 말은 동물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기라도 했으니, 어찌 배연령이 있는 것을 감춰서 없는 것으로 만들고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고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글이 상주되자 덕종이 언짢아하였다.

|| 당 덕종이 이필李泌⁶⁰에게 “노기盧杞⁶¹는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강개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를 간사하다고 하지만 짐은 그러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자, 이필이 “사람들이 노기를 간사하다고 하는데 폐하만 알아차리지 못하시니, 이는 곧 노기가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알아차리셨다면, 어떻게 건중建中의 난⁶²이 있었겠습니까. 노기는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양염楊炎을 죽였고⁶³ 안진경顏真卿을 사지로 내몰았으며⁶⁴ 이희

57 육지陸贄: 「계충찰戒職察」 법조 21번 각주 참조.

58 공공共工: 순임금 때의 사흉四凶 중 하나로, 악행을 저질러 유주幽州에 유배되었다.

59 소묘少卯: 소정묘少正卯라고도 한다. 공자는 소정묘가 마음속으로 험악한 생각을 품었으며 편벽하게 행동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허위를 날조하거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인물이라고 지적하여 주벌하였다.

60 이필李泌: 「경사천敬事天」 계조戒條 38번 각주 참조.

61 노기盧杞: 자는 자량子良이다. 뛰어난 말재주로 당 덕종에게 신임을 받아 문하시랑門下侍郎,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に 발탁되었다.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시기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사지로 내몰았으며, 집의 간수에 따라 세를 거두는 간가법間架法和 물건을 매매할 때 거래량에 따라 세를 거두는 제맥법除陌法 등을 시행하여 천하에 원성이 자자하였다. 이희공李懷光의 탄핵을 받아 좌천되었다가 죽었다.

62 건중建中의 난: 당 덕종 건중 4년(783)에 경원 절도사涇原節度使 요영언姚誨가 반란을 일으켜 주자朱泚를 맹주로 추대하고 장안長安을 점령한 사건을 말한다. 이로 인해 덕종은 봉천奉天으로 피난해야했다.

63 양염楊炎을 죽였고: 양염(727~781)은 자는 공남公南이며 별호는 소양산인小楊山人이다. 조용조租庸調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에 관계없이 매년 2차례 세금을 징수하는 양세법兩稅法을 시행하였다. 평소 양염에게 괘시를 받던 노기가 원한을 품고 무함誣陷하였다. 이에 양염이 아주 자사崖州刺史로 좌천되어, 부임하는 길에 자살하였다.

64 안진경顏真卿을 사지로 내몰았으며: 안진경(709~785)은 당唐의 관리이자 서예가로, 자는 청신淸臣이다. 안사安史의 난 때 평원 태수平原太守로서 공을 세워 노군개국공魯郡開國公에 봉해졌으므로 ‘노공魯公’으로 불렸다. 덕종德宗 때 이희열李希烈이 반란을 일으켜 여주汝州를 함락시키자, 노기盧杞는 자신이 미워하던 안진경을 사자로 보내 이희열을 회유하도록 덕종을 설득하였다. 이에 안진경은 이희열에게 진영으로 갔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광李懷光을 자극하여 배반하게 하였으니⁶⁵, 폐하의 명철함 덕분에 알아채고 내쫓았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난이 어떻게 잠잠해졌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진종北宋眞宗⁶⁶ 때의 일이다. 왕흠약王欽若⁶⁷은 진종이 전쟁에 진저리가 났다는 것⁶⁸을 알고 진종에게 말했다. “봉선封禪⁶⁹만이 사해를 진압하여 북중시키고 위엄을 외국에 과시할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봉선은 마땅히 하늘의 상서로운 조짐을 얻고 난 후에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늘의 상서로운 조짐을 어떻게 마음대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 시대에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종이 이를 계기로 마음을 정하고, 천서天書가 내려와 『대중상부大中祥符』 세 편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말하고서 봉선에 대해 논의하게 하였다.

|| 북송 신종北宋神宗 때의 일이다. 왕안석王安石이 정사政事를 주관하자 책임자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대부가 많았지만, 여회呂誨는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큰 간사함은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큰 거짓말은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법입니다. 왕안석이 겉으로는 순박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간교하게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감추고서 교만하게 폐하를 업신여기고 은밀히 남을 해칩니다. 만약 폐하께서 그의 말재주에 만족하여 오랫동안

65 이회광李懷光을 자극하여 배반하게 하였으니: 이회광(729~785)은 말갈靺鞨 출신으로, 전공戰功을 세워 당唐에서 이씨씨 성을 하사받고, 절도사가 되었다. 주자朱泚의 반란군이 덕종이 피난해 있던 봉천奉天을 포위하자 반란군을 물리쳤는데, 노기의 무함으로 봉천성으로 들어와 덕종을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주자의 반란군에 가담하였다.

66 북송 진종北宋眞宗: 968~1022. 북송 제3대 황제 조항趙恒으로, 재위 기간은 997년부터 1022년이다. 태종의 셋째 아들로, 처음에 한왕韓王과 양왕襄王, 수왕壽王에 봉해졌다가 태자가 되었다. 즉위 후 유학을 장려하여 각지에 공자孔子의 사원을 세우게 하고 이항李沆을 재상으로 기용하여 ‘함평지치咸平之治’라 불리는 태평성세를 이룩하였다. 요遼가 남하하자 친정親征을 하였고, 오랜 전쟁 끝에 ‘형’인 송이 ‘아우’인 매년 은과 비단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전연瀋淵에서 강화를 맺었다.

67 왕흠약王欽若: 「변간사辨姦邪」 법조 21번 각주 참조.

68 진종이 … 것: 요 성종遼成宗이 대군을 이끌고 송을 공격하자 진종은 이를 막기 위해 직접 출전하였다. 그러나 승리하지 못하여 전연瀋淵에서 맹약을 맺었는데, 매년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냥을 세폐歲幣로 보내고 성종을 아우로 삼고 소태후蕭太后를 숙모라고 부르는 등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여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진종이 왕흠약 등을 시켜 천서天書를 위조하게 하고 태산에 봉선封禪하였다. (『宋史』 「王欽若傳」)

69 봉선封禪: 제왕이 천지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본래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 하늘의 공에 보답하는 것을 ‘봉’이라 하고, 태산 아래 양보산梁父山에서 제사를 지내 땅의 덕에 보답하는 것을 ‘선’이라 하였다.

안 의지하신다면, 천하 창생蒼生을 그르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 남송 도종南宋度宗⁷⁰의 일이다. 변방의 일을 진언하는 자가 있으면 번번이 가사도賈似道⁷¹가 배척하였다. 하루는 도종이 “양양襄陽이 포위된 것⁷²이 벌써 3년인데,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묻자, 가사도가 “북쪽 병사들은 이미 물러났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도종이 “마침 어느 여빈女嬪이 말해 주었다.”라고 하자 가사도가 그게 누구인지 캐묻고 다른 일로 무고하여 결국 사사賜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변방의 일은 하루가 급하더라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세종明世宗 때, 혜성이 세 번 남경南京에 나타났다.⁷³ 어사御史 풍은馮恩⁷⁴이 글을 올려 “장부경張孚敬⁷⁵은 뿌리의 혜성이고, 왕횡汪鉉⁷⁶은 뱃속의 혜성이고, 방헌부方獻夫⁷⁷는 집

70 남송 도종南宋度宗: 1240~1274. 남송의 제6대 황제 조기趙昀로, 재위 기간은 1264년부터 1274년이다. 이종理宗의 동생 영왕榮王 조여여趙與芮의 아들로, 이종에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후사로 들어가 충왕忠王에 봉해진 뒤 태자가 되었다. 정무를 돌볼 능력이 되지 않아 귀비貴妃인 가씨賈氏의 오라비 가사도賈似道에게 정사를 모두 맡겼다.

71 가사도賈似道: 1213~1275. 남송 이종南宋理宗의 귀비貴妃인 가씨賈氏의 오라비로, 자는 사헌師憲이다. 쿠빌라이의 몽골군이 악주鄂州를 포위하자 칭신稱臣하고 세폐歲幣를 바치겠다는 조건으로 밀약하여 그들을 돌려보낸 뒤, 이를 숨기고 자신이 물리쳤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다. 그 공으로 우상상右丞相이 되어 조정 정사를 농단하다가, 몇 년 뒤 다시 공격해온 몽골군에게 대패하고 귀양을 가다가 죽었다.

72 양양襄陽이 포위된 것: 양양은 장강長江의 종류에 위치하여 강남江南과 사천泗川을 이어주는 요충지이다. 당시 쿠빌라이[원 세조元世祖]의 몽골군은 양양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5년여간 집요하게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그로부터 2년 만에 남송의 수도 임안臨安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73 혜성이 … 나타났다: 고대에는 혜성을 큰 재앙의 조짐이라 여겼는데, 명 세종明世宗이 즉위한 후인 가정嘉靖 2년 6월, 가정 10년 윤6월, 가정 11년 8월에 각각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다. (『明史』)

74 풍은馮恩: 1496~1576. 자는 자인子仁이다. 가정嘉靖 11년(1532) 겨울에 장부경張孚敬, 방헌부方獻夫, 왕횡汪鉉 등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세종世宗의 노여움을 사서 투옥되었다. 자신이 탄핵한 왕횡이 심문하러 오자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의 죄상을 열거하며 저항하였는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풍은의 입과 무릎과 담과 뼈가 모두 강철처럼 강직하다는 뜻에서 그를 ‘사철어사西鐵御史’라고 불렀다.

75 장부경張孚敬: 1475~1539. 본명은 장충張璫이었으나 명 세종明世宗의 이름이 후충厚聰이었으므로 피휘하여 세종에게서 ‘부경孚敬’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세종이 자신의 생부生父를 추존하려 하자, 장부경은 앞장서서 세종의 뜻에 영합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조정의 수많은 신하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냈다.

76 왕횡汪鉉: 1466~1536. 자는 선지宜之이다. 이른바 ‘불랑기佛朗機’를 활용하여 포르투갈 군대를 물리친 공이 있으며, 명 세종明世宗의 총애를 받았던 장부경張孚敬과 계악桂嶽이 육친陸綽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자 그들의 뒤를 이어 중앙 권력을 차지했다. 명명 조정을 통틀어 유일하게 이부상서와 병부상서를 동시에 겸임한 적이 있으며,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77 방헌부方獻夫: 1485~1544. 자는 숙헌叔賢이다. 명 세종明世宗이 생부生父의 추존하려 하자, 이를 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소疏를 올려 세종의 신임을 받았다.

안의 혜성입니다. 세 혜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사들이 다스려지지 않고 비록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장부경, 왕횡, 방헌부는 적자嫡子이고, 신은 열자孽子이니,⁷⁸ 적자가 부모에게 패역을 저지르는데도 열자가 오히려 적자인 형을 공경하는 경우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세 간신을 죽여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은 죄를 바로잡으시고, 그 후에 신을 참하여 형을 공경하지 않은 죄를 사해주신다면, 옛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징후⁷⁹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세종이 노하여 그를 금의위錦衣衛에 내려 보냈다.

|| 명 세종 때의 일이다.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 양계성楊繼盛이 엄승嚴嵩⁸⁰에 대해 논란하는 상소를 올려 “신은 간적 엄승을 주벌하는 것이 오랑캐를 소탕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승은 죄악이 넘쳐 귀신과 사람이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학시徐學詩, 심련沈鍊, 왕종무王宗茂 등이 일찍이 그에 대해 탄핵한 적이 있습니다만, 엄승의 탐오貪汚와 같은 작은 것만을 말하였고 그 참절僞竊한 죄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10개의 대죄大罪를 진술하였다. 세종이 금의위의 감옥에 잡아 가두라고 명하였고, 결국 극형에 처했다.

|| 명 희종明熹宗 때의 일이다. 좌부도어사左副都御史 양련楊漣⁸¹은 소疏를 올려 위충현魏忠賢⁸²의 24가지 죄를 논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남경병부상서南京兵部尚書 진도형陳道

78 장부경 … 열자孽子이니: 장부경張孚敬 등이 세종世宗의 생부를 추존하는 일을 도운 것을 비난한 것이다. 세종은 종형從兄인 무종武宗이 후사 없이 죽자, 할아버지 효종孝宗의 양자로서 즉위하였는데, 즉위 후에 자신의 생부生父를 추존하려 하였다. 양정화楊廷和를 비롯한 기존의 권신들은 양부養父인 효종을 ‘황고호考’라 하고, 생부를 ‘황숙부皇叔父’라 해야 한다며 반대하였고, 장부경, 방헌부方獻夫, 계악桂萼 등은 세종이 효종의 대통을 이은 것이지 효종의 후사를 이은 것이 아니므로 생부를 ‘황고호考’라 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세종을 지지하였다. 3년여의 논쟁 끝에 결국 세종의 뜻대로 생부를 추존하여 묘호를 ‘예종睿宗’이라 하고 효종孝宗을 황백고皇伯考라 칭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대한 신하들은 모두 숙청당하고 찬성한 장부경 등은 득세하여 정치적 판도가 뒤바뀌는데, 이를 ‘대례의大禮議’라 부른다.

79 옛 … 징후: 옛 사람들은 혜성彗星이 꼬리를 길게 끌며 끌며 기존의 별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를 혜성이 별을 쓸어내려 새롭게 만든다고 보았다.

80 엄승嚴嵩: 1480~1567. 자는 분의분요이다. 도교의 제문祭文인 청사靑詞를 짓는데 능하여 도교에 심취했던 세종世宗의 환심을 사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므로 ‘청사재상靑詞宰相’이라 불렸다. 아들 엄세번嚴世蕃과 함께 권력을 전횡하여 자기와 의견이 달리는 사람들을 배척하여 죽였으며 매관매직을 일삼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81 양련楊漣: 「임현능任賢能」 계조 59번 각주 참조.

82 위충현魏忠賢: 「어근습駭近習」 법조 20번 각주 참조.

후는 부원部院의 구경九卿과 함께 상소하였는데, 지적하여 진술한 내용이 간절하였으나 소가 들어가자 희종의 엄한 질책을 받았다.

|| 명 의종明毅宗 때의 일이다. 마사영馬士英⁸³이 자신의 공적을 믿고서 방자하였다. 이부시랑吏部侍郎 여대기呂大器, 태학사太學士 고흥도高弘圖와 강왈광姜曰廣, 이부상서吏部尙書 서석기徐石麒, 예부상서禮部尙書 유종주劉宗周 등은 마사영과 완대성阮大鍼⁸⁴이 매관매직을 하며 기강을 어지럽히고 간인과 봉당을 이루어 나라를 그르치고 있다고 변갈아 논하였는데, 소疏는 들어갔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생각건대, 옛날의 소인은 알아보기 쉬웠는데 훗날의 소인은 알아보기 어려우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순박한 풍속이 다 사라지지 않고 간교한 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마음이 향하는 바를 대부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행을 감추는 데 서툴러서 자연히 드러났습니다. 훗날에는 세도世道가 날로 열어지고 사람의 기교는 날로 늘어서 마음에서 드러나는 바를 꾸미는 데 모든 신경을 썼으므로 악행을 저지름에 잘 꾸며서 쉽게 잡아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간사한 자들의 해악은 당唐이 한漢보다 심하였고 송宋이 당보다 심하였으며 명明에 이르러서는 송보다 더욱 심한 경우가 있으니, 오늘날 소인을 변별함에 어찌 옛날에 비해 더 엄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인주人主의 본심本心이 꼭 간사한 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윗사람이 마

83 마사영馬士英: ?~1646. 자는 요초瑤草이다. 이자성李自成이 북경北京을 함락하자, 당시 봉양총독鳳陽總督이었던 그는 남경南京으로 피신하여 신종神宗의 손자인 복왕福王을 옹립하고 조정을 수립하여 권력을 독점하였다. 자신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좌량옥左良玉과 권력을 다투는 와중에 청淸의 군대가 남경까지 공격해오자 끝까지 저항하다가 전사하였고, 그가 수립한 남명南明은 멸망당했다.

84 완대성阮大鍼: 1587~1646. 자는 집지集之이다. 희종僖宗 때 환관 위충현魏忠賢의 무리에 가담하였으나 위충현이 실각하자 남경南京에서 은거하였다. 이자성李自成의 난으로 북경이 함락되고 의종毅宗이 경산景山에서 자결하자, 마사영 등이 남경에 세운 남명南明 조정에 귀의하여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임명되었다. 이후 청淸의 군대에 남경이 함락되자 청에 항복하였다가 군중軍中에서 죽었다. 문학과 예술 방면에는 뛰어난 성취를 보였으나, 실제 관료로서 보낸 시기는 짧은데, 출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소인이자 간신으로 지탄을 받았다.

음 두고 있는 것을 저들이 교묘하게 엿보고 뒷사람이 속으로 바라는 것에 저들이 재빠르게 영합하니, 그들의 달콤한 말과 화려한 글은 감동을 주어 가까이 하게 만들며 허황된 칭찬과 거짓된 행동은 속여서 신임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군주의 희로喜怒를 빌미로 자기의 은원恩怨을 제멋대로 행하여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권력자는 반드시 온갖 방법으로 해치고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선량한 이는 기필코 한 번에 잡아내어 처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크게는 살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작게는 보복을 하게 만들다가 손쓰는 것을 점차 제멋대로 하여 위복威福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군주는 처음에는 그 아첨에 기빠하여 깨닫지 못하다가 끝내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여 제어하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이임보李林甫와 노기盧杞가 그들의 군주를 그릇되게 만들고 채경蔡京⁸⁵과 진회秦檜⁸⁶가 그들의 군주를 아둔하게 만들어 마침내 위망危亡에 이르게 한 뒤에야 멈추었던 이유입니다. 지사志士와 충신의 팔뚝질과 큰 한숨이 천 년 이래로 어찌 그칠 새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이전과 이후로 간사한 짓을 한 자는 한 둘이 아니지만, 유자광柳子光,⁸⁷ 임사홍任士洪,⁸⁸ 이이첨李爾瞻,⁸⁹ 정인홍鄭仁弘⁹⁰과 같은 자는 모두 그들의 군주가 사리에 어둡고 도리에 벗어남을 이용하여 당시의 해독害毒을 조성하였으니, 참으로 붓을 더럽

85 채경蔡京: 「송유학崇儒學」 계조 57번 각주 참조.

86 진회秦檜: 1090~1155. 남송 고종南宋高宗 때의 재상으로, 자는 회지會之이다. 금나라의 외교 정책에 있어 화평을 진행하고 강화를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전파인 악비岳飛, 한세충韓世忠과 같은 군벌을 탄압하고, 그 후에도 스스로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공포정치를 행하였다.

87 유자광柳子光: 1439~1512. 본관은 영광靈光, 자는 우후于後이다. 부윤府尹을 지낸 유규柳規의 열자孳子로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계기로 세조의 총애를 받아 정계에 진출하였다. 이후 김일손金弼孫의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실려 있었는데, 유자광이 이를 세조의 즉위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연산군에게 고하였고, 이로 인해 무오사화戊午士禍가 발생하였다.

88 임사홍任士洪: 1445~1506.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이의而毅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아들 보성군寶城君의 사위이며, 아들 임광재任光載와 임송재任崇載가 각각 예종睿宗과 성종成宗의 사위가 되어 왕실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유자광柳子光 등과 함께 파당을 만들어 횡포를 자행하고 조정의 기강을 흐리게 한 죄로 탄핵을 받아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고,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愼守勤과 함께 모의하여 연산군의 생모인 윤비尹妃가 폐위되고 사사된 내막을 연산군에게 밀고하여 갑자사화甲子士禍를 일으켰다. 중종의 반정 때 아버지와 함께 처형당했으며 이어 다시 부관참시되었다.

89 이이첨李爾瞻: 1560~1623.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득여得與, 호는 관송觀松 또는 쌍리雙里이다. 선조의 후사後嗣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북大北의 영수로서 정인홍鄭仁弘과 함께 광해군光海君의 옹립을 주장하였으며, 광해군이 즉위한 후 권세를 장악하고 계축옥사兇獄事를 일으켜 소북小北 일파를 숙청하였다. 강도죄로 잡힌 박응서朴應犀 등을 사주하여 김제남金梯男 등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고 무고하도록 하였으며,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을 발의하고 대비를 서궁西宮에 유폐하기도 하였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자 가족을 이끌고 영남 지방으로 도망가다가 관군에게 잡혀 처형되었다.

허가며 나열하여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 밖에 심정沈貞,⁹¹ 김안로金安老,⁹² 이기李堧,⁹³ 정순봉鄭順朋,⁹⁴ 심기원沈器遠,⁹⁵ 김자점金自點,⁹⁶ 민암閔黯,⁹⁷ 민종도閔宗道⁹⁸의 무리는 재주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고 속임수는 세상을 속이기에 충분하여 종사宗社에 난리를 일으키거나 사림士林에게 재앙을 전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성주聖主께서 한낱

- 90 정인홍鄭仁弘: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來庵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하여 영남 의병장으로서 왜군을 막아내며 많은 전공을 세웠다. 기축옥사己丑獄事를 계기로 동인이 남북으로 분리될 때 북인에 가담하여 영수가 되었고, 선조 말년에 후사後嗣 문제로 북인이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지자 이산해李山海, 이이첨李爾瞻과 함께 대북을 이끌며 광해군을 적극 지지하였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소북 일파를 내쫓고 대북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유성룡계의 남인과 서인세력도 추방하였다. 계축옥사 때 영창대군을 죽이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스승 조식曹植의 추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의 문묘중사를 반대하는 소를 올려 유생들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1623년(인조 즉위년) 인조의 반정 때 참형되었다.
- 91 심정沈貞: 1471~1531.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정지貞之, 호는 소요정逍遙亭이다. 중종中宗의 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으로 화천군花川君에 책봉되었다. 이조판서에 올랐으나 삼사의 탄핵으로 물러났고 형조판서의 물망에 올랐으나 조광조 등에 의해 소인으로 지목되어 임명되지 못하였다. 아들 심사손沈思遜도 조광조 등에 의해 탄핵을 받아 파직되자 그들에 대해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다. 1519년 조광조 등이 중종에게 위헌삭제僞勅削除를 요구하자 남근南峯 등과 함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켜 그들을 숙청하였다.
- 92 김안로金安老: 1481~1537.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이숙頤叔, 호는 희락당希樂堂, 용천龍泉이다. 아들 김희金禧가 중종中宗의 딸 효혜공주孝惠公主와 혼인한 뒤부터 외척으로서 권력을 장악하였고,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이들을 모함하고 숙청하였다. 문정왕후의 폐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정유년에 사사되었는데, 이 때 함께 사사된 허항許沆, 채무택蔡無擇과 아울러 정유삼흉丁酉三凶으로 불렸다.
- 93 이기李堧: 1476~1552.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문중文仲이다. 인종仁宗 때 대윤大尹 일파의 윤임尹任 등을 탄핵하다 좌천당하였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명종明宗이 즉위하여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을 하자 소윤小尹 일파의 윤원형尹元衡과 손을 잡고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윤임 등을 숙청하였다.
- 94 정순봉鄭順朋: 1484~1548.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이령耳齡이다. 명종明宗이 즉위하여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을 하자, 윤원형尹元衡, 이기李堧 등과 함께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귀양 보냈고, 임백령林百齡, 정언각鄭彦愨과 함께 을사삼간乙巳三奸으로 불렸다.
- 95 심기원沈器遠: 1587~1644.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수지遂之이다. 인조仁祖의 반정에 공을 세워 1등 공신이 되고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좌의정으로서 남한산성 수어사를 겸임하면서 요동遼東 수복을 추진하였으며, 인조를 폐위하고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을 임금으로 추대하려하였다. 대궐 호위군 속에 심복들을 심고 반역을 준비하다가 부하의 밀고로 체포되어 사형 당하였다.
- 96 김자점金自點: 1588~1651.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지成之, 호는 낙사洛西이다. 성혼成渾의 제자이다. 인조仁祖의 반정에 적극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이 되었다. 청나라 사신, 역관과 결탁하여 청나라의 후원을 기반으로 삼으며 권력을 장악하였는데, 효종 즉위 후 송준길宋浚吉 등의 탄핵으로 파직되자 조선의 북벌 계획과 명나라 연호 사용을 청나라에 고하였다. 이를 알게 된 효종은 그를 추격하고 역모죄로 사형에 처하였다.
- 97 민암閔黯: 1636~1693.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장유長濡, 호는 차호叉湖이다. 남인南人의 영수로 활약하였으며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실각하였다가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복귀한 뒤, 김수항金壽恒, 송시열宋時烈을 탄핵하고 처형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평持平, 함경도 관찰사咸境道觀察를 지냈다.
- 98 민종도閔宗道: 1633~1693.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여증汝曾이다. 민암閔黯의 조카이다.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오라비인 장희재張希載와 결탁하여 음모를 꾸미고 인현왕후仁顯王后의 폐위를 조장하였다. 예문관 대교藝文館待敎, 세자시강원 문학世子侍講院文學, 병조참지兵曹參知 등을 역임하였다.

의 태양과 같이 환히 군림하셔서 요사한 짓을 하는 무리들이 그 모습을 감출 수 없어서 대부분 왕의 법도에 복종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만났던 때가 우리 열성세聖께서 간사한 자들을 분별하시던 세상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저질렀을 재앙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 간신姦臣과 사신邪臣은 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부자朱夫子께서 “천지의 이치상 양陽은 반드시 강건하고 강건하면 반드시 밝으며, 음陰은 반드시 유약하고 유약하면 반드시 어둡다. 그러므로 흰하고 트여있는 자는 틀림없이 군자이며 꼬여있고 숨는 자는 틀림없이 소인이다. 이로써 사람을 살펴보면 샅됨과 바름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⁹⁹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군주가 간사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참으로 만세의 모범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진실로 인재를 얻거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 치밀하게 꾸미고 기회를 엿보는 자는 음험한 사람임을 알아차려서 엄하게 물리치지 못할까 염려하시며 아침을 잘하고 순종하는 자는 유약한 사람이라 간주하여 일찌감치 멀리하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알랑거리고 부정한 무리들을 모두 물리쳐내고 멀리하신다면, 조정은 저절로 깨끗해질 것이고 다스림은 저절로 윤택해질 것입니다. 아아! 소인이 초래하는 화는 은미한 데서 시작하여 커지니, 부정한 하나의 일은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용서하게 되면 마침내 온갖 일이 모두 무너지는 데 이르며, 물리쳐내지 않은 한 명의 소인은 큰 근심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이 자를 내버려두면 끝내 많은 소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신은 『주역』 곤괘坤卦의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¹⁰⁰와 구괘姤卦의 “파리한 암돼지가 머뭇거린다.”¹⁰¹는 경구警句를 이 편의 말미에 덧붙이겠습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99 천지의 … 것이다: 『회암집晦庵集』 「왕매계문집서대유공보작王梅溪文集序代劉共父作」의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100 서리를 … 것이다: 서리가 내리고 나면 차가운 얼음이 어는 시기가 온다는 말로,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경계하라는 말이다.

101 파리한 암돼지가 머뭇거린다: 기세를 잃은 소인들이 기회를 노리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중전선重銓選

전형銓衡을 신중히 하다

법조 法條

|| 초 혜왕楚惠王¹이 진陳을 공격하고자 하여 태사太師인 자곡子穀과 섭공葉公인 제량諸梁²에게 누구를 장수로 삼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자곡이 “우령右領인 차거差車와 좌사左史인 노老가 보낼 만합니다.”라고 하니, 자고子高가 “장수의 지위가 비천하면 백성들이 업신 여기니, 그의 명을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자곡이 말하였다. “관정보觀丁父는 약郡의 포로였지만, 무왕武王께서 그를 장수로 삼았기에 주州와 요蓼를 쳐서 이기고, 수隨와 당唐을 복종시키고, 여러 만족蠻族의 토지를 크게 개척하였습니다. 팽중상彭仲爽은 신申의 포로였지만, 문왕文王께서 그를 영윤으로 삼았기에 신申과 식息을 군현으로 만들고, 진陳과 채蔡를 조회하게 하고, 여수汝水까지 봉역을 넓혔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담당할 수 있는지를 보았을 뿐이니, 비천함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후한 명제後漢明帝 때의 일이다. 관도공주館陶公主³【광무제光武帝의 딸이다.】가 아들을 낭관郎官에 제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명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천만 냥을 하사하며, 여러

1 초 혜왕楚惠王: 춘추 시대 초의 군주로, 성은 미랴, 씨는 웅熊, 이름은 장후이다. 소왕昭王의 아들로, 자서子西, 자기子期, 자려子闞 등 현자들을 중용하여 정치를 개혁하였고, 민생을 살폈다. 진陳, 채蔡, 기杞를 병탄하여 초가 패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2 제량諸梁: 자는 자고子高이다. 섭葉에 봉해져 ‘섭공葉公’ 또는 ‘섭윤葉尹’으로 불리며, 공자孔子에게 정치에 대해 가르침을 청한 기록이 『논어』에 있다. 후에 백공伯公 승勝이 난을 일으켜 영윤尹 자서子西를 살해하고 혜왕을 위협하자, 이를 제압하고 혜왕을 복위시켰으며, 영윤과 사마司馬 직을 겸했다.

신하에게 “낭관은 위로는 하늘의 별자리에 상응하고 나가서는 백 리쯤 되는 지역을 주재하니, 만일 책임자가 아니면 백성들이 그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하였다.

|| 후한 장제後漢章帝 때, 공거貢舉⁴에 대해 의논하라는 조서를 내리자 대홍려大鴻臚 위표韋彪⁵가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가문에서 구해야 하니, 사람이 재능과 덕행을 함께 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맹공작孟公綽이 조씨趙氏와 위씨魏氏의 가노家老가 되기에는 충분하지만 등滕과 설薛의 대부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⁶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사람은 마음 씩씩이가 후덕한 편이고 법조문을 다루는 관리는 마음 씩씩이가 야박한 편이니, 선비의 선발은 마땅히 재능과 덕행을 우선해야 하고 순전히 문벌과 이력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 요점은 이천석二千石⁷의 녹봉을 받는 지방관을 선발함에 달려 있으니, 지방관이 어질면 공거가 모두 책임자를 얻을 것입니다.”

|| 위 문제魏文帝 때의 일이다. 상서尙書 진군陳群⁸이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이 인재를 망라할 수 없다 하여 마침내 구품九品으로 나누어 관리를 임용하는 제도를 확립하니, 주州와 군郡에 모두 중정관中正官을 두고 인물을 평가하여 그 고하의 차등을 두게 하였다.

|| 위 명제魏明帝가 끝만 번지르르한 선비들을 매우 싫어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 노육盧毓⁹에게 조서를 내려 “인재를 선발할 때 명성이 있는 자를 뽑지 말라.”라고 하니, 노육이 “교

3 관도공주館陶公主: ?~73.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의 딸이자 명제明帝의 누이인 유홍부劉紅夫人이다.

4 공거貢舉: 고대에 지방관이 천자에게 인재를 추천해 올린 제도이다. 동한東漢 때에는 현량방정賢良方正, 효렴孝廉, 수재秀才, 명경明經을 기준으로 인재를 천거하였으며, 수 양제隋煬帝 이후 각 지방에서 천거를 받은 후, 고사考試하여 합격자를 임용하면서 과거시험 제도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5 위표韋彪: ?~89. 자는 맹달孟達이다. 여러 차례 인재를 선발하면서 재능과 덕행을 우선시하고 별열黜黜을 배척했는데 황제가 이를 수용했다.

6 맹공작孟公綽이 ... 것입니다: 『논어』 「헌문憲問」에 보인다.

7 이천석二千石: 「임현능任賢能」 법조 16번 각주 참조.

8 진군陳群: ?~237. 자는 장문長文이다. 상서尙書가 되어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의 실시를 건의했고, 스스로 중정관中正官이 되어 인재를 등용했다. 군읍郡邑에는 소중정小中正, 주州에는 대중정大中正을 두고 인물 평가를 하여 구품으로 나눈 뒤 소중정에서 대중정으로 올리고, 대중정에서는 이를 다시 검사한 후 사도司徒에게 올리며, 사도는 또 이를 재심사해서 합격자를 상서尙書에 회부하여 선용하게 하였다. (『魏志』 「陳群傳」)

9 노육盧毓: 183~257. 자는 자기子家이다. 명제明帝 때, 법률 개정 문제를 놓고 자주 간언하였고,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승진하여 고과법考課法을 만들었으니, 덕행을 중요하게 여기고 재능과 기예는 뒤로 하였다. (『魏志』 「盧毓傳」)

회를 두려워하고 선행을 사모한 뒤에 명성이 있게 되는 법이니, 꺼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고과考課하는 법이 폐해져서 사람들의 비방이나 칭찬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가기에 진위가 뒤섞이고 허실이 뒤집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명제가 산기상시散騎常侍 유소劉邵¹⁰에게 고과하는 법을 만들라고 조서를 내렸다.

||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가 “세 번 고과考課하여 출척黜陟하는 제도는 쫓아내야 하는 자에게는 지나치게 더디고 승진시켜야 하는 자에게도 너무 느리다. 짐은 지금부터 3년에 한 번 고과함에 곧바로 출척을 시행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정에 나와 백관百官을 출척하고 좌승左丞 공손량公孫良과 우승右丞 곽복의수乞伏義受에게 “경들은 대벽형大辟刑에 해당하나 흰옷을 입고 본래의 관직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관복과 녹홀祿恤¹¹은 모두 삭탈할 것이다. 만일 3년 안에 성과가 있으면 본래의 직임을 되찾을 것이고, 성과가 없다면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이 위징魏徵¹²에게 “관직을 위하여 인재를 선택하는 것을 서둘러서는 안 되니, 한 명의 군자를 등용하면 여러 군자가 스스로 이르고 한 명의 소인을 등용하면 여러 소인이 다투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위징이 “그렇기는 하나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오로지 그의 재능만 취해야 할 것이요, 난이 안정된 뒤에는 재능과 덕행을 겸비한 자가 아니면 등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당 헌종唐憲宗 때의 일이다. 어떤 이가 “이강李絳¹³이 사사로이 그와 동년인 허계동許季同을 경조윤京兆尹이 되도록 하여 황제의 눈과 귀를 속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헌종이 이강에게 캐묻자, 이강이 “동년은 바로 온 천하의 사람들 가운데 우연히 같은 해에 급제

10 유소劉邵: 산기시랑散騎侍郎 하후혜夏侯惠의 추천으로 황제를 보필하였으며, 황제가 백관들의 근무평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염려하자, 조서를 받고 『군관고과郡官考課』 72편을 완성하였다.

11 녹홀祿恤: 친족들을 봉양하는 봉록을 말한다. 북위北魏의 관원들은 본래 관직의 봉록 이외에 친족들을 봉양하는 목적으로 지급받는 봉록이 있었다. (『資治通鑑全譯』注)

12 위징魏徵: 『경사천제事天』 법조 15번 각주 참조.

13 이강李絳: 764~830. 자는 심지深之이고, 시호는 정貞이다. 성품이 강직하여 직간하는 신하로 명성이 있었다. 벼슬이 상서우복야右僕射, 산남서도 절도사山南西道節度使에 이르렀으며, 저서에 『이심지문집李深之文集』이 있다.

한 자일 뿐이니, 어찌 사적인 정이 있겠습니까. 재상의 직책은 사람들의 재능을 헤아려 직임을 맡기는 것이니,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재능이 있다면 비록 형제와 자식과 조카의 관계에 있더라도 등용해야 하는데, 하물며 동년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혐의를 피하고자 재능있는 자를 버리는 것은 바로 일신을 편하게 하는 것이지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현종이 “좋다.”라고 하였다.

|| 당 대종^{唐代宗}¹⁴ 때의 일이다. 최우보^{崔祐甫}¹⁵가 재상이 되고 200일이 되지 않아 관직에 제수된 자가 800명이었다. 덕종^{德宗}이 최우보에게 “사람들은 경이 등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친척이나 친구라고 비방하는데, 어떠한가?”라고 하니, 최우보가 “만일 평소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의 재능과 덕행을 어떻게 알고서 등용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덕종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 당 선종^{唐宣宗}은 예복을 하사하기를 신중히 하여 유사들이 항상 붉은색과 자주색 관복 몇 벌을 갖춰 놓고 따라다니면서 하사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지만, 반년 동안 한 벌도 사용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또 선종은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우대하였지만, 반드시 재직 한 일수를 정확하게 따져 승진시켰으며, 근신^{近臣}들에게 관직을 사사로이 수여하지 않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 때의 일이다. 조보^{趙普}¹⁶가 아무개를 어떤 관직에 천거하였는데, 태조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조보가 다음 날 다시 주청하였으나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또 조보가 그 사람을 주청하자 태조가 크게 노하여 주청한 문서를 찢어버렸다. 그런 데도 조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꿇어앉아 찢어진 문서를 주워서 돌아갔다가 훗날

14 당 대종^{唐代宗}: 해당の記事는 덕종^{德宗}이 즉위한 해의 일이다. 『자치통감』에는 대종 때의 기사에 실려 있으니, 대종이 죽고 그해에 덕종이 즉위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흥봉한도 이에 따라 대종 때의 기사로 취급하여 ‘대종’이라 쓴 것으로 보인다.

15 최우보^{崔祐甫}: 721~780. 자는 이손^{貽孫}이다. 대종^{代宗}이 죽은 뒤 마음대로 상례를 바꾸어 국전^{國典}을 가볍게 의논하였다는 죄목으로 하남소윤^{河南少尹}으로 좌천되었다. 후에 덕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가 문하시랑동평장시^{門下侍郎同平章事}에 제수되어 1년도 되기 전에 800명이나 되는 인원을 관리로 제수하였는데, 대부분 적임자를 임명했다는 칭송을 받았다.

16 조보^{趙普}: 「임현능^{任賢能}」 법조 30번 각주 참조.

이전에 찢어졌던 문서를 붙여서 이전처럼 다시 주청하였다. 그제야 태조가 깨닫고 결국 그 사람을 등용하였다.

|| 송 인종宋仁宗 때의 일이다. 두연杜衍¹⁷이 추밀원樞密院에 있을 적에 요행을 제재하는 데 힘썼으니, 내강內降¹⁸이 내려올 때마다 모두 보류해 두고 처리하지 않다가 조서가 십여 건에 이르면 도로 황제에게 돌려보냈다. 그러자 인종이 구양수歐陽脩¹⁹에게 “바깥 사람들은 두연이 내강을 봉한 채로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짐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도 두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만둔 경우가 봉한 채로 돌아온 것보다 많다.” 라고 하였다.

|| 북송 철종北宋哲宗 때의 일이다. 사마광司馬光²⁰이 다음과 같이 상주上奏하였다. “사람의 재능은 이쪽 방면에 뛰어나면 저쪽 방면에 부족함이 있으니 어찌 다 갖춘 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행의行義가 순수하고 확고하여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절의와 지조가 방정하여 헌납獻納이 될 만한 자, 지혜와 용맹이 남보다 뛰어나서 장수가 될 만한 자, 공정하고 총명하여 감시監司가 될 만한 자, 경술經術에 정통하여 강독을 맡길 만한 자, 학문이 해박하여 고문顧問을 맡길 만한 자, 문장이 전아하고 아름다워 저술을 맡길 만한 자, 옥송獄訟을 잘 처리하고 공정을 다해 사건의 실상을 밝힐 수 있는 자, 재물과 부세를 잘 다스려서 공사公私를 다 같이 편리하게 할 만한 자, 법령을 익혀서 판결이 곤란한 사안을 결단할 만한 자를 뽑는 ‘십과거사법+科舉士法’을 설치하십시오.” 조서를 내려 사마광의 말을 따랐다.

|| 원 인종元仁宗 때의 일이다. 중서성中書省의 대신들이 “조종祖宗에서 관리 선발제도를 확립해 출척黜陟의 근거로 삼게 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뜻을 보이셨는데, 지금 관리들은

17 두연杜衍: 978~1057. 자는 세창世昌이다. 왕환王渙, 필세장畢世長, 주관朱貫, 풍평馮平과 함께 ‘오로五老’로 불렸다. 추밀사樞密使로 있으면서 범중엄范仲淹, 한기韓琦, 부필富弼과 함께 폐단을 혁파하는 데 힘썼으며, ‘경력신정慶曆新政’을 지지하였다. 후에 평장사平章事, 태자소사太子少師를 역임하였으며, 기국공祔國公에 봉해졌다.

18 내강內降: 황제가 중서성中書省의 의논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린 조서를 말한다.

19 구양수歐陽脩: 「임현능任賢能」 법조 36번 각주 참조.

20 사마광司馬光: 「임현능任賢能」 근안 110번 각주 참조.

제대로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이유 없이 교체되거나 등급을 뛰어넘어 승진하기도 합니다. 올봄 이후 내강(內降)으로 관직을 제수받은 사람만 해도 천여 명인데, 그중 거짓된 이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관리 선발제도가 무너진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인종이 “지금부터 내강하는 조지(詔旨)는 일절 시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계조 戒條

- || 현한(玄漢)²¹ 경시제(更始帝)가 조맹(趙萌)²²의 딸을 받아들여 황후로 삼고 조맹을 대사마(大司馬)로 삼아 정권을 맡기자, 조맹이 하인이나 요리사에게도 모두 관작을 남발하여 제수하였다. 장안(長安)의 사람들이 이를 두고 “부뚜막 요리사는 중랑장(中郎將), 양의 창자 삶는 놈은 기도위(騎都尉), 양의 머리 삶는 놈은 관내후(關內侯).”라고 하였다. 이에 군사장군(軍師將軍)이숙(李淑)이 글을 올려 간언하자, 경시제가 노하여 그를 가두었다.
- || 후한(後漢) 영제(靈帝) 때의 일이다. 최열(崔烈)²³이 유모를 통하여 500만 전을 바치고 사도(司徒)가 되었다. 그를 제수하는 날 영제가 전각에 임함에 백관(百官)들이 모여 있었는데, 영제가 가까이하는 자를 돌아보고 “조금 더 받아내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 천만 전에 이를 수 있었는데.”라고 하였다. 이에 최열이 아들에게 “외부의 논의는 어떻더냐?”라고 묻자, 아들이 “그저 돈 냄새를 싫어할 뿐입니다.”²⁴라고 하였다.

21 현한(玄漢): 경시제(更始帝) 유현(劉玄)이 왕망(王莽)의 신(新)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이다. 경시제의 이름인 현(玄)을 따서 '현한' 이라고 부른다. 경시제가 죽고 족제(族弟)인 유수(劉秀)가 후한(後漢)을 세우면서 멸망하였다.

22 조맹(趙萌): 경시제(更始帝)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전횡하였으며, 그의 건의에 따라 공신(功臣)들이 모두 왕에 봉해지기도 했다.

23 최열(崔烈): ?~192. 자는 위고(威考)이다. 영제(靈帝)가 흉도문(鴻都門)을 열고 매관매직을 일삼았는데, 이때 최열이 사도(司徒)에 올랐다. 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었고,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

24 그저 … 뿐입니다. 최열(崔烈)이 호분 장군(虎賁將軍)으로 있던 아들 최균(崔均)에게 자신이 삼공(三公)에 오른 데 대한 여론을 묻자, 최균이 “아버지께서는 젊어서부터 영민하다는 평판이 있었고 구경과 군수를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공이 되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공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까닭을 묻자, 아들이 “사람들이 구리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최열이 노하여 지팡이로 그를 때렸다. (『後漢書』「崔烈傳」)

|| 북위 선무제北魏宣武帝²⁵ 때의 일이다. 이부상서吏部尙書 원휘元暉²⁶가 관원을 임용할 때 모두 정해진 가격이 있었는데, 커다란 군郡은 3천 필이었고, 다음가는 등급의 군에서 하위 군으로 내려갈수록 반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관직도 각기 차등이 있었으니, 이를 ‘시장바닥[市曹]’이라고 불렀다.

|| 북위 경종北魏敬宗²⁷ 때의 일이다. 최량崔亮²⁸이 이부 상서吏部尙書가 되어 ‘격제格制’를 주창하였다. 관원의 어질고 어리석음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재직할 일수로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침체沈滯된 자들이 모두 최량이 유능하다고 칭찬하였다. 이에 낙양령洛陽令 설숙薛劼²⁹이 글을 올려 “이부吏部에서 관원을 선발할 때 오직 재직할 햇수를 기준으로 삼고 재능의 고하를 따지지 않으니, 의리가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와 매한가지며 순서가 물고기 껍미와 똑같습니다. 장부에 이름을 적고 부르는 것이 아전 한 사람으로 충분하니, 어찌 전형銓衡이라고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경종이 회답을 내리지 않았으니, 북위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책임자를 뽑지 못한 것이 최량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당 측천무후唐則天武后는 존무사存撫使³⁰가 천거한 이들을 인견한 후 현우賢愚를 따지지 않고 모두 등용하였다. 이에 당시 사람이 “보궐補闕은 수레에 줄지어 실어 보내고 습유拾遺는 말[馱]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라네. 갈퀴로 긁어모은 시어사侍御史, 찍어낸 사발 같은

25 북위 선무제北魏宣武帝: 483~515. 북위의 제8대 군주 원각원恪[탁발각원拓跋]으로, 재위 기간은 499년에서 515년이다. 모호는 세종世宗이다. 아버지 효문제의 한화漢化 정책을 계승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였으나, 국정을 측근이나 외척에게 맡기고 중실을 배척하여 국가 쇠락을 초래하였다.

26 원휘元暉: 465~519. 자는 경습景襲이다. 종친으로서 선무제宣武帝的 총애를 받아 매관매직을 일삼았으며, 효문제孝明帝 때는 관직이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이르렀다.

27 북위 경종元魏敬宗: 507~530. 북위 제10대 군주 원자유元子攸[탁발자유拓跋子攸]로, 재위 기간은 528년에서 531년이다. 시호는 효장제孝莊帝이다. 헌문제獻文帝的 손자로, 팽성왕彭城王 원협元勳의 셋째 아들이다. 효문제孝明帝가 죽은 뒤 육진六鎮의 난을 진압하고 대군벌로 성장한 흉노족 이주영爾朱榮에 의해 옹립되었다. 이주영이 자신의 딸을 황후로 세워 안팎으로 감시하고 압박하자 그를 숙여 주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를 빌미로 군사를 일으킨 이주조爾朱兆등에게 패하고 유폐당하여 살해당하였다.

28 최량崔亮: 459~521. 자는 경유敬儒이다. 10년 동안 전형銓衡을 맡았으며,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을 때 오로지 재직할 날수를 헤아려 승진시키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29 설숙薛劼: ?~550. 자는 담진曇珍이다. 낙양령洛陽令을 지내면서 효문제孝文帝가 천도한 이후 어지러웠던 낙양을 안정시켰다고 평가받았다.

30 존무사存撫使: 전쟁, 질병, 흉년 등으로 곤궁에 처한 지방민을 위우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는 임시 벼슬이다.

교서랑校書郎”이라고 하였다. 거인舉人인 심전교沈全交가 이어붙이기를 “마음에 풀칠한 존무사, 눈에 티가 들어간 측천무후.”라고 하였다.

- || 당 중종唐中宗 때의 일이다. 안락공주安樂公主와 장녕공주長寧公主 및 위 황후韋皇后의 누이인 성국부인鄭國夫人, 상관 첩여上官婕妤, 상관 첩여의 어머니 패국부인沛國夫人 정씨鄭氏, 상궁尙宮 시씨柴氏와 하루씨賀婁氏, 여무女巫인 제오영이第五英兒, 농서부인隴西夫人 조씨趙氏 등이 모두 권세를 믿고 전횡하였다. 청탁을 받고 뇌물을 거두어 비록 백정이나 술을 파는 자, 또는 노비라도 30만 전을 바치면 별도로 묵칙墨勅³¹을 내려 관직을 제수할 적에 비스듬히 봉하여 증서성中書省에 회부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사봉관斜封官이라 일컬었다.
-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일이다. 우선객牛仙客³²이 전에 하서河西에 있을 적에 비용을 절약하고 직임에 충실하여 창고가 가득 찼으며 병기가 정교하고 예리하였다. 현종이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 상서尙書로 삼고자 하였는데, 장구령張九齡³³이 “우선객은 본래 하황河隄 지역의 서리胥吏인데, 대뜸 청요직淸要職에 둔다면 조정에 수치가 될까 염려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현종이 “그렇다면 실봉實封³⁴해 주는 것은 괜찮겠는가?”라고 하자, “폐하께서 그의 근면함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금백金帛을 하사하시면 될 것이니, 땅을 떼어 작위를 봉해 주는 것은 마땅치 않을 듯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 || 당 덕종唐德宗이 피난 가는 길에 오이와 과일을 헌상獻上한 자가 있었다. 덕종이 그를 산시관散試官³⁵에 제수하고자 하여 육지陸贄³⁶에게 물으니, 육지가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31 묵칙墨勅: 천자의 친필 조서로, 외정外廷을 거치지 않고 금중禁中에서 직접 발부되며 주색朱色 인신을 찍지 않았다.

32 우선객牛仙客: 675~742. 자는 선객仙客이다. 하서 절도사河西節度使로 있을 적에 직무를 잘 수행하였으므로 현종玄宗이 장구령張九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서尙書로 삼았다. 재상이 된 후 제 몸만 잘 지키려는 마음에 일마다 찬성만 했다.

33 장구령張九齡: 673~740. 자는 자수子壽이다. 장열張說의 추천을 받아 증서사인中書舍人을 거쳐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이르렀다. 이임보李林甫의 모함을 받아 재상직에서 물러났으며, 안록산安祿山이 위험인물임을 간파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34 실봉實封: 실제로 하사한 봉호封戶를 가리키니, 중국 고대 봉건국가에서는 공신功臣이나 귀척貴戚에게 식읍을 하사하면서 명외의 빌려주거나 수여한 식읍의 수와 실제 봉해준 식읍의 수가 다르기도 하였다.

35 산시관散試官: 시산관試散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당 태종唐太宗 때부터 있던 산관散官과 측천무후則天武后 시기에 등장한 시관散官과는 다르다. 이는 당 후기에 출현한 신종의 관제로 허함虛銜이며, 그 지위가 훈관勳官과 산관散官에 비해 현격히 낮다. 이는 군공軍功으로 인해 주는 관직으로 보인다. (李錦綉 著, 『唐代制度史略論稿』,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8)

“병란이 일어난 이후로 병사들에게 하사할 만큼 재물이 풍족하지 못하여 관직을 상으로 주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푸른색과 붉은색의 인끈이 서리들 사이에 뒤섞이고 금어대金魚袋와 자의紫衣³⁷가 천역賤役에게도 마구 퍼졌습니다. 오늘날의 원외시관員外試官³⁸ 중에는 적의 날카로운 칼끝에 돌진하여 환난을 물리쳐 관직을 받은 자들도 있고, 근력을 다하여 공로를 세워 관직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이와 과일을 현상한 자에게도 시관을 제수한다면, 저들은 서로 ‘나는 목숨도 잊은 채 싸워서 관직을 얻었는데 저자는 오이와 과일을 진상하여 관직을 얻으니, 이는 곧 국가가 나의 목숨을 오이나 과일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 보기를 초목같이 본다면 누가 다시 국가를 위해 쓰이고자 하겠습니까.”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부附 석관방惜官方 관직을 아끼다

법조 法條

|| 전한 문제前漢文帝가 호랑이 우리에게 행차하여 상림위上林尉에게 그가 맡은 금수禽獸의 목록에 대해 물었다. 상림위가 대답하지 못하자 호랑이 우리의 색부畜夫가 상림위를 대신하여 대답하였는데 매우 상세하였다. 문제가 “관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

36 육지陸贄: 「계총찰戒聰察」 법조 21번 각주 참조.

37 금어대金魚袋와 자의紫衣: 당·송宋唐 때의 관복과 장신구로, 고관대작高官大爵의 대칭代稱으로 사용되었다. 원진元稹의 「증태보엄공행징贈太保嚴公行狀」에 “50년 동안 벼슬한 사이에 상서 한 번과 복야 세 번을 거치고, 여섯 번 대부를 겸하고, 다섯 번 사공을 맡고, 두 번 사도에 오르고, 세 번 보부에 있으면서 품계는 높은 금자에 올랐으며 관직은 최고의 국공까지 이르렀다.[仕五十年 一爲尚書 三歷僕射 六兼大夫 五任司空 再踐司徒 三居保傅 階崇金紫 爵極國公]”라는 구절이 있다.

38 원외시관員外試官: 정원 이외에 첨설添設한 시관을 가리킨다. 원외는 대부분 한직閑職으로, 위진시대魏晉時代에 설치되어 수당隋唐에 이어졌으며 당 중기부터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현종玄宗 때에 이들 원외관을 혁파하고 황족 및 전쟁에 공적이 있는 자들에게 부여하였다. 시관은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은 벼슬로,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존무사存撫使가 천거한 사람들을 인견해서 능력을 따지지 않고 시관에 제수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가.”라고 하고, 색부를 상림령上林令에 제수하려 하였다. 장석지張釋之³⁹가 앞으로 나아가 “주발周勃⁴⁰과 장상여張相如⁴¹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일에 대해 말할 때면 입에서 말을 제대로 낸 적이 없으니, 어찌 색부의 조잘대는 언변으로 민첩하게 대답하는 것을 본받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색부가 말주변이 있다 하여 등급을 뛰어넘어 제수하려⁴² 하시니, 신은 천하가 바람을 따라 쓸리듯이 다투어 언변만을 일삼고 그 실상이 없을까 염려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문제가 “좋다.”라고 하고 색부를 제수하지 않았다.

-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일이다. 유주절도사幽州節度使 장수규張守珪⁴³가 거란의 왕과 가돌간可突干⁴⁴을 죽이니, 현종이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재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장구령張九齡⁴⁵이 “재상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니, 공이 있다고 하여 상으로 내릴 수 있는 관직이 아닙니다.”라고 간언하였다. 현종이 “이름만 빌려주고 직무를 맡기지 않으면 괜찮겠는가?”라고 묻자, “명호와 기물⁴⁶은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장수규가 거란을 격파했다고 하여 재상으로 삼으려 하시니, 만일 해족奚族이나 돌궐을 멸망시킨다면 어떤 관직을 상으로 내리시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현종이 그 만두었다.

39 장석지張釋之: 자는 계후이다. 태자의 불경함을 탄핵한 일로 중대부中大夫에 임명되었다. 후에 정위廷尉가 되어 형벌 집행을 엄격히 한 것으로 유명하다.

40 주발周勃: 「대척완待威晚」 법조 4번 각주 참조.

41 장상여張相如: 기원전 229~기원전 165. 하간 군수河間郡守로서 진희陳豨를 공격한 공으로 동양후東陽侯가 되었으며, 대장군과 태자태부를 역임하였다.

42 등급을 뛰어넘어 제수하려: 상림원上林苑은 전한 문제前漢武帝 때의 원우園圃로, 그 주관主官은 상림령上林令, 차관次官은 상림위上林尉라고 하였으니, 문제가 색부를 곧바로 상림령에 제수하려 하였기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43 장수규張守珪: 684~740. 당唐의 장군으로, 자는 원보元寶이다. 토번吐蕃과 거란을 격파하고 과주瓜州를 평정하였다. 유주절도사幽州節度使 시절에 안녹산을 편장扁將으로 발탁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다.

44 거란의 왕과 가돌간可突干: 거란의 왕은 굴열屈烈을 가리키며, 가돌간(?~734)은 굴열을 옹립한 권신이다. 처음에 장수규張守珪에게 사로잡혔다가 거짓으로 항복하고 도망갔는데, 장수규와 내통한 아관牙官 이과절李過折에게 죽임을 당했다.

45 장구령張九齡: 「중전선重鈐選」 계조 33번 각주 참조.

46 명호와 기물: 원문의 “名器”를 풀이한 말이다. 해당 기사는 「춘추좌씨전」 성공成公 2년에 보이는데, 두여杜預의 주해에 “기”는 거복이고, ‘명’은 작호이다.[器車服名 爵號]”라고 하였다.

|| 당 문종唐文宗이 염철추관鹽鐵推官인 요육姚勣⁴⁷이 판결하기 어려운 옥사를 잘 심문한다고 하여 권지직방원외랑權知職方員外郎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우승右丞 위온韋溫⁴⁸이 “낭중郎中은 조정의 청요직清要職이니, 유능한 관리라고 하여 상으로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이에 문종이 요육을 검교예부낭중檢校禮部郎中에 임명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헌종明憲宗 때의 일이다. 이과급사중吏科給事中 왕서王瑞 등이 “관직과 은상恩賞은 천하의 공기公器이니, 공덕과 재능이 있는 자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행으로 관직을 얻을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은전恩典을 베풀어 내강內降하니, 마구간의 천부賤夫나 저잣거리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연줄을 타고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체 혁파하여 폐단을 끊어내십시오.”라고 하였다. 어사御史 장직張稷⁴⁹ 등도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근래에 말업未業에 종사하거나 천한 재주를 가진 자들이 공경公卿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개장수나 비단 장수들도 청요직清要職에 있으며, ‘정丁’자 하나도 모르는 자에게 문관文官을 남발하기도 하고, 화살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자에게 덮어 놓고 무관武官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정황을 자세히 살펴 죄상을 바로잡아 뒷날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징계하십시오.” 이에 헌종이 지금부터 유지諭旨를 통해 관직에 제수하라고 명하였으니, 복주覆奏한 것이 비로소 시행되었다.

|| 명 헌종 때의 일이다. 남경병부상서南京兵部尙書 왕서王恕⁵⁰가 다음과 같이 상주上奏하였다. “지금부터 문관은 진사進士나 감생監生⁵¹이나 이원吏員 출신이 아닌 자는 제수하지 말

47 요육姚勣: 785~853. 자는 사근斯勤이다. 재상이었던 이덕유李德裕의 추천으로 관직에 올랐으며, 행실이 청렴하고 치적이 있어 조정의 신임을 받았다.

48 위온韋溫: 788~845. 자는 광욱宏育이다. 성품이 강직하다고 일컬어졌으며, 관직은 상서우승尙書右丞과 병부시랑兵部侍郎에 이르렀다.

49 장직張稷: 1437~1483. 자는 세용世用이다. 태상박사太常博士, 광록시감光祿寺監, 감찰어사監察御史 등을 지냈으며, 성품이 강직하기로 유명했다.

50 왕서王恕: 1416~1508. 자는 종관宗貫, 호는 개암介庵 또는 석거石渠이다. 유대하劉大夏, 마문승馬文升과 더불어 ‘홍치삼군자弘治三君子’로 일컬어진다. 순무운남巡撫雲南, 병부兵部와 이부吏部의 상서尙書를 지냈으며,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유명했다.

51 감생監生: 국자감國子監의 생도를 일컫는데, 출신이나 입학한 경위에 따라 다시 10여 가지로 나뉘며, 공생貢生, 감생 이하로 시험의 단계에 따라 능생廩生, 증생增生, 부생附生, 정의생誥女生, 준수俊秀 등의 명칭이 있다.

고, 무관은 군공軍功을 세운 자가 아니라면 승진시키지 말아야 하며, 잡기雜技로 인해 선발된 자는 매월 쌀 한 섬[石]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며, 악무생樂舞生 출신은 태상시太常寺의 관원에, 천문생天文生 출신은 흠천감欽天監의 관원에, 의생醫生 출신은 태의원太醫院의 관원에, 장인匠人 출신은 공부工部 소속에 그치게 하신다면, 작호와 기물을 어지럽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현종이 이를 가상히 여겨 채납採納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근안 謹按

삼가 살펴보건대, 옛날부터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그 법규가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주周에서는 대비大比로, 한漢에서는 효렴孝廉으로, 위魏에서는 중정中正으로 하였으며, 당·송宋唐 이후에는 과거제도를 설치하고 아울러 문음門蔭의 제도도 두었는데, 인습하거나 변혁한 것, 덜거나 더한 것의 요체는 모두 공정하고 신중하게 선발하는 데 있었습니다. 치세와 난세, 쇠퇴와 융성도 절로 달랐으니, 대개 현능한 이를 등용함에 부류를 따지지 않는 시대⁵²에는 선발의 권병權柄을 주관하여 교화를 받들어 돕는 자가 마음을 정밀하고 명백하게 하지 않음이 없어, 크고 작은 주의注擬⁵³가 각기 마땅한 사람을 얻어 다스림이 밝고 깨끗해지고 은혜가 만민에게 미쳤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와 반대가 될 것입니다.

지난 전적의 잘잘못을 자세히 논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사적을 귀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엽 이전에는 오로지 재능만으로 선발하였으니, 대신으로는 맹사성孟思誠⁵⁴이 필호華戶⁵⁵에서 관직에 나오고, 정탁鄭琢⁵⁶이 교서관校書館에서 이름을 날렸으며, 재

52 현능한 … 시대: 『맹자』 「이루雜婁」에 “탕왕湯王은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 것이 없는 중도를 지켰으며, 현능한 인재를 등용함에 부류를 따지지 않았다.[湯執中 立賢無方]”라고 한 데서 비롯하였다.

53 주의注擬: 당대唐代에 관원을 선발할 때, 과거에 합격한 자를 명부에 올린 후, 다시 능력을 평가하여 어떤 관직에 임명할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에서는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려 낙점을 받았다.

54 맹사성孟思誠: 1360~1438. 본관은 신창新昌, 자는 자명自明 또는 성지誠之, 호는 동포東浦 또는 고불古佛이다. 조선 초의 문신으로, 세종世宗 때 이조판서로 예문관 대제학을 겸하고 좌의정에 이르렀다. 『태종실록』을 감수하고, 『팔도지리지八道地理誌』를 찬진撰進하였다.

55 필호華戶: 사리로 만든 문이라는 뜻으로, 가난하여 누추한 집을 이른다. 여기서는 급제하기 어려운 고려 출신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상으로는 구종직⁵⁷이 평민 중에서 수재로서 지위가 이상⁵⁸에 이르렀고, 윤효손⁵⁹이 녹사⁶⁰의 아들로 관직이 총재⁶¹에 있었으며, 그 밖에도 낮은 지위에서 청현직⁶²에 오른 자는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습니다. 열성⁶³께서 초야의 인재를 빠짐없이 찾아 고무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한미한 집안에서 등용된 자가 예전에 비해 점차 적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로지 당색 하나로 나누어 취사⁶⁴가 쉽게 치우치고, 고과⁶⁵가 엄격하지 않아서 출척⁶⁶이 정당하지 않으니,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가 어찌 경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능한 인재가 어찌 버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고대에 인재를 선발하는 법규를 지금 대변에 논할 수 없지만, 목전의 폐단을 구제할 방법은 재능에 따라 등용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대개 사람의 재능과 지모는 각기 장점이 있어 두루 다 갖추어 줄 수 있는 이가 드무니, 반드시 재능을 헤아려 직임을 준 뒤에야 사람들이 각기 재능을 다 펼칠 수 있게 되고, 서직⁶⁷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육관⁶⁸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재물을 관리하는 데 능한 자는 탁지⁶⁹에 위임해야 하고, 예를 다루는 데 익숙한 자는 종백⁷⁰에 제수해야 하며, 군대를 거느리는 데 능숙한 자는 중권⁷¹을 관장하도록 하고, 형벌을 엄명하고 합당하게 처리하는 자는 사사⁷²에 있도록 하여 오랫동안 임직하도록 정하고 자주 교체하지 않도록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관직을 이리저리 떠돌아 탁지에 부임하자마자 금세 중

56 정탁^{鄭琢}: 1526~1605.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 또는 백곡^{柏谷}이다. 조선 중기 재상으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이순신^{李舜臣}, 곽재우^{郭再祐}, 김덕령^{金德齡} 등 명장을 발탁했다.

57 구종직^{丘從直}: 1404~1477.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정보^{正甫}이다. 세종, 세조, 성종 때의 문신으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교서관^{校書館} 정자^{正字}로 있을 때, 세종 앞에서 『춘추』 한 권을 암송하여 부교리^{副校理}로 승진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58 이상^{貳相}: 삼정승^{三政丞} 다음가는 벼슬이란 뜻으로, 좌우찬성^{左右贊成}을 이르는 말이다.

59 윤효손^{尹孝孫}: 1431~1503.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유경^{有慶}, 호는 추계^{秋溪}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오례의^{五禮儀}』의 주註를 작성하고, 세자의 복식을 정하는 등 국가의 의전을 정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벼슬이 경상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다.

60 중권^{中權}: 병조판서의 역할을 일컫는 말로, '중중'은 삼군^{三軍} 가운데 주장^{主將}이 있는 중군^{中軍}을 가리키고, '권'은 책모^{策謀}를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춘추좌씨전』 선공^{宣公} 12년에 "중군^{中軍}에서는 대장이 있어 계책을 세우고, 후군^{後軍}에는 정병이 있어 강하다[中權後勁]"라는 기록이 있다.

61 사사^{士師}: 옥송^{獄訟}을 맡은 벼슬로, 『주례』 '추관^{秋官}』에 "사사의 직분은 다섯 금령^{禁令}을 관장하여 형벌에 관한 행정을 돕는 것이니, 첫 번째는 왕궁의 금령이고, 두 번째는 관아의 금령이고, 세 번째는 나라의 금령이고, 네 번째는 교외의 금령이고, 다섯 번째는 군영의 금령이다.[士師之職 掌國之五禁之法 以左右刑罰 一曰宮禁 二曰官禁 三曰國禁 四曰野禁 五曰軍禁]"라고 하였다.

백으로 옮겨가고, 중권을 부여받자마자 돌연 사사에 제수된다면, 집안의 일꾼 한 사람에게 왼손으로는 발갈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베를 짜게 하여 오늘은 가래를 잡고 내일은 베를 돌리도록 하는 것과 같으니, 발 갈고 베 짜는 일 어느 하나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군人君은 위에서 진중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아래에 있는 인재를 두루 잘 알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 비록 사람마다 스스로 택하고 일일이 직접 가려내고자 해도 마땅한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임하여 전담함은 오로지 대신에게 달려 있으니, 반드시 덕망이 높고 성대하며 식견이 통달하고 밝은 자를 구하여 대신으로 삼아서, 대신들 스스로 전관銓官을 발탁하고 전관 역시 여러 관원을 발탁할 수 있어야, 관직을 외람되이 받거나 구차하게 제수했다는 비판이 없고 각자 직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평하게 아래를 인도하는 근본은 오직 임금의 마음이 먼저 법규를 세우는 데에 달려 있으니, 미천한 사람을 기용하는⁶² 정성은 친소親疏를 따지지 말고 명분과 실재를 분명히 밝히는⁶³ 정사는 호오好惡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인재를 등용하거나 내치는 권병權柄은 반드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여 마치 저울에 오르내림이 없는 것처럼 한다면, 어찌 전형銓衡이 치우치거나 인재들이 버려질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아, 옛날 우리 성종께서 부왕父王의 영정을 모사한 공로로 화원畫員에게 산직散職을 제수하려 하였으나 대간臺諫이 쟁집爭執하자 눈물을 흘리며 그만두셨습니다.⁶⁴ 또 우리 현종께서 자전慈殿의 질환에 약을 처방한 공로로 의관醫官에게 정직正職을 더해주고자 하였으나 선정先正이 규간規諫하자 찬탄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비록 성대한 덕의 일부이지만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을 알 수 있으니, 조종조祖宗朝에서 관작을 신중히 내리던 가법家法은 더욱이 후대 왕들이 좇아 지켜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2 미천한 사람을 기용하는: 원문의 “軫揚側陋”를 풀이한 말이다. 『서경』 「요전堯典」에 “이미 현위顯位에 있는 자도 드러내어 밝히고, 숨어 있는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도 올려서 쓴다.明明 揚側陋”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귀천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널리 구하여 기용하는 것을 말한다.

63 명분과 실재를 분명히 밝히는: 원문의 “懋核名實”을 풀이한 말이다. 『한서』 「선제기宣帝紀」에 “효선제孝宣帝의 정치는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렸으며,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살펴서 명분과 실재를 분명히 밝혀, 정사와 문학과 법리를 맡은 선비들이 모두 그 능력을 정밀하게 발휘하였다.孝宣之治 信賞必罰 綜核名實 政事文學法理之士 咸精其能”라고 하였다.

64 우리 … 그만두셨습니다: 성종이 세조의 어용御容을 그린 별제別提 최경崔溥을 당상관에 제수하라고 명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였다. (『成宗實錄』 3년 5월 25일; 6월 4일)

엄과시嚴科試

과거科擧를 엄중히 하다

법조 法條

|| 당 태종唐太宗 때의 일이다. 기주冀州 진사進士 장창령張昌齡¹이 「취미궁송翠微宮頌」을 바쳤는데, 태종이 그 문장을 아꼈다. 장창령은 진사 왕공근王公瑾과 함께 글을 잘 지어 명성이 경사京師에 자자하였는데,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郎 왕사조王師朝²가 공거貢擧를 맡아 그들을 물리치고 등용하지 않았다. 급제한 자의 명단을 아뢴 때, 태종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따져 묻자, 왕사조가 “두 사람이 비록 문사文辭가 뛰어나지만, 그 문체文體가 경박하여 끝내 훌륭한 인물은 되지 못할 것이니, 만일 높은 등급에 둔다면 후진後進이 이를 본받아 폐하의 밝은 도를 해칠까 저어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태종이 그 말을 옳다 여겼다.

|| 당 현종唐玄宗이 다음과 같이 칙서를 내렸다. “진사進士는 성운聲韻만을 익혀 고금古今에 밝지 못한 이가 많고, 명경明經은 첩송帖誦³만 일삼아 그 종지宗旨를 궁구한 자가 드물다. 지금부터 명경은 대의大義 10여 조를 묻고 시무책時務策 3수首를 대답하게 하며, 진사는

1 장창령張昌齡: ?~666. 약관의 나이에 글재주로 이름이 났으며, 문예로 당 태종의 인정을 받았다. 「파노명월破廬明月」, 「평귀자平龜茲」, 「군서노포軍書露布」 등을 지었다.

2 왕사조王師朝: 본명은 왕사단王師旦인데,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즉위 후 이름인 ‘단부’ 과 같기에 피휘避諱하여 「정사취감」에서는 ‘조朝’로 표기하였다. 왕사조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3 첩송帖誦: 시험관이 경전 중의 한 단락을 임의로 뽑아 종이쪽지로 그중의 몇 글자, 혹은 몇 구절을 가린 후 응시자에게 그 전문全文을 답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10첩 가운데 여섯 개 이상 맞추면 합격이었다. (金諍, 『중국 과거 문화사』, 동아시사, 2003, 90쪽.)

대경大經⁴ 10첩帖을 시험하도록 하라.”

|| 당 현종 때의 일이다. 어사중승御史中丞 장의張倚⁵가 현종에게 새로 총애를 받으니, 송요宋遙와 묘진경苗晉卿이 그에게 붙고자 하였다. 두 사람이 과거시험을 주관하였는데, 장의의 아들 장석張奭이 수석을 차지하자 여론이 떠들썩하였다. 현종이 급제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면전에서 시험하였는데, 장석이 손에 시험지를 쥐고 온종일 한 글자도 쓰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예백曳白’⁶이라 불렀으며, 시험관들은 모두 폄직貶職되었다.

|| 당 대종唐代宗 때의 일이다. 예부 시랑 양관楊綰⁷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근세에 사인士人을 뽑을 때는 오로지 문장만을 중시합니다. 수 양제隋煬帝부터 처음으로 진사과進士科를 두었으나 여전히 책문으로 시험하였고, 고종高宗 때에 이르러 진사에게 잡문雜文을 시험하고 명경에 첩괄帖括을 가하기 시작하였는데,⁸ 이로부터 폐단이 쌓여 점차 풍속이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현령에게 효렴孝廉이나 경술經術에 적합한 자를 살펴서 주수에 천거하게 하여, 경의經義 20조와 대책對策 3도道⁹를 물어서 상제上第는 관직을 맡기고, 중제中第는 출신出身¹⁰하게 하고, 하제下第는 파하여 돌아가게 하십시오. 아울러 명경과 진사과를 중지하소서.” 대종이 관련 관사官司에 함께 의논하도록 명하고, 또 오경수재과五經秀才科를 두었다.

4 대경大經: 당·송 때 진사를 시험하던 경서로, 경문의 길이에 따라 대, 중, 소 3등급으로 나뉘었다. 당에서는 『예기』, 『춘추좌씨전』을 대경이라고 하였으며, 송에서는 『시』, 『예기』, 『주례』, 『춘추좌씨전』을 대경이라 하였다. (『新唐書』 「選舉志」)

5 장의張倚: 자는 한신翰宸이다. 고문에 능하여 이름이 났다. 어사중승으로 있었다가 아들 장석의 일로 현종의 노여움을 사 회양군 태수滄陽郡太守로 좌천되었다.

6 예백曳白: 시험 답안지를 백지로 냈다는 말로, 타백拖白이라고도 한다.

7 양관楊綰: ?~770. 자는 공권公權이다. 예부시랑으로서 진사 급제자들이 문장에만 능통하고 경사經史에 익숙지 않은 양태를 비판하며 진사과와 명경과를 폐지하고 효렴과孝廉科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新唐書』 「選舉志」)

8 고종高宗 …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명경과와 진사과는 경의經義와 시무時務에 대한 시책試策으로 선발하였는데, 오랫동안 시행되면서 점차 기존의 기출문제를 짜깁기하거나 표절하여 화려한 문체에 비해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폐단을 불러왔다. 이에 당 고종 때 고공랑考功郎 유사립劉思立이 명경에 첩경을 더하고, 진사과에 책시 외에도 첩경 몇 문제와 잡문 두 편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잡문은 시詩, 부賦, 잠箴, 명銘, 表表, 찬贊 등의 문체를 두루 가리키는 것으로, 응시자의 문학적 재능을 평가하였다. 이로써 진사과에도 잡문, 첩경, 책문 등 3차 시험제도가 생겨났으며, 명경은 경문의 암기 여부를 시험하는 첩경과 경문의 자구에 대해 간단하게 필답하는 목의墨義를 중시하게 되었다. (金諍, 『중국 과거 문화사』, 동아사이, 2003. 90~94쪽 참조)

9 대책對策 3도道: 국제國體, 인사人事, 직언直言에 관한 책문에 답하는 것을 말한다.

10 출신出身: 문과, 무과, 잡과에 급제하여 출사出仕할 자격을 갖쳤음을 말한다.

- || 당 목종唐穆宗 때의 일이다. 우보궐右補闕 양여사楊汝士와 예부 시랑 전휘錢徽가 공거貢舉를 주관하게 되자, 단문창段文昌¹¹과 이신李紳이 각기 전휘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과 친한 이를 진사에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합격 명단에 그들이 부탁한 사람이 들지 않았고, 정담鄭覃의 아우 정랑鄭朗, 배도裴度的 아들 배선裴讓, 이종민李宗閔의 사위 소소蘇巢, 양여사의 아우 양은사楊殷士가 급제하였다. 단문창이 목종에게 “올해 예부시랑이 펴 공정치 못해, 선발한 사인士人은 모두 권세가의 자제로 재주 없이 청탁으로 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언하였다. 목종이 여러 학사에게 묻자, 이덕유李德裕와 원진元稹, 이신李紳이 모두 “실로 문창의 말대로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목종은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명하고, 정랑 등의 합격을 취소하였으며, 관련된 사람들을 폄직하였다.
- || 당 문종唐文宗이 근세에 사람들이 경술에 어두움을 걱정하여 진사과에 대한 양관楊綰의 의견을 따라 논의論議를 시험하고 시부詩賦를 시험하지 않았다.
- || 후주 세종後周世宗이 현량방정직언극간과賢良方正直言極諫科와 경학우심가위사법과經學優深可爲師法科와 상한이리달어교화과詳閑吏理達於教化科¹² 등을 설치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송 태조宋太祖 원년에 공사貢士를 재시험하였다.¹³ 도곡陶穀¹⁴의 아들 도병陶郃이 6등으로 급제하자, 태조가 좌우에게 “듣자 하니 도곡은 아들을 가르치지 못했다던데 도병이 어

11 단문창段文昌: 773~835. 자는 목경墨卿이다. 목종이 즉위하면서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였는데, 1년이 되지 않아 사직을 청하여 서전절도사西川節度使로 부임하였다. 이후 병부상서兵部尚書, 형남 절도사荆南節度使 등을 역임하였고, 추평군공鄒平郡公에 봉해졌다. (『舊唐書』「錢徽傳」)

12 현량방정직언극간과賢良方正直言極諫科 … 상한이리달어교화과詳閑吏理達於教化科: ‘현량방정직언극간’은 현량하고 방정하여 직언하고 극간할 수 있는 자를, ‘경학우심가위사법’은 경학이 뛰어나 스승으로 본받을 만한 자를, ‘상한이리달어교화’는 행정에 품위가 있고 밝아 교화에 뛰어난 자를 의미한다. 이 3과는 모두 황제의 특별한 명령으로 시행하는 제과制科였다.

13 송 태조宋太祖 … 재시험하였다: 당대唐代의 과거시험은 지방 주현의 발해시發解試와 중앙 상서성 예부의 성시省試 2단계로 치러졌는데, 예부가 주관했기 때문에 황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송초 초기에는 이를 그대로 따랐는데, 태조는 합격자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과거시험을 직접 통제할 목적으로 공거 뒤에 또 한 차례의 시험을 추가하였다. 이것이 황제가 친히 주관하는 시험인 전시殿試의 기원이 되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 『과거 중국의 시험지목』, 역사비평사, 2016, 146~147쪽; 金諍, 『중국 과거 문화사』, 동아시사, 2003, 151~154쪽 참조.)

14 도곡陶穀: 903~970. 송 태조宋太祖 때의 문신으로, 자는 수실秀實이다. 예부, 형부, 호부의 상서尚書를 역임하였다.

떻게 급제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고는 돌연 중서성中書省에 명하여 재시험하게 하니 도병이 다시 합격하였다. 인하여 조서를 내려 “지금부터 거인舉人 가운데 녹을 먹는 집안과 관련된 자들은 중서성에서 재시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북송 태종北宋太宗이 공사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황제가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진작하고자 하여 근신에게 “내가 과장科場에서 뛰어난 인재를 널리 얻고자 하니, 감히 열에 다섯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단지 한둘이라도 얻는다면 정사를 이룩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북송 진종北宋眞宗이 ‘현량방정직언극간과’, ‘박통분전달어교화과博通墳典達於教化科’, ‘재식겸무명어체용과才識兼茂明於體用科’, ‘상명이리가사종정과詳明吏理可使從政科’, ‘지통도락운주결승과識洞翰略運籌決勝科’, ‘군모굉원재임변기과軍謀宏遠材任邊寄科’ 여섯 과목을 추가로 설치하였다.¹⁵ 여섯 과목은 중서문하中書門下에 조서를 내려 그 재능을 살펴 명단을 갖추어 아뢰면, 진종이 직접 나와서 시책試策하였다. 인종仁宗 때에 이르러 서관에 응시할 자를 위해 ‘서판발취과書判拔萃科’를 추가로 설치하고, 평민 출신으로서 추천받은 자를 위해 ‘고도구원과高蹈丘園科’와 ‘침윤초택과沈淪草澤科’와 ‘무재이등과茂才異等科’ 세 과목을 설치하였다.¹⁶

|| 북송 인종北宋仁宗 때의 일이다. 한림학사翰林學士 구양수歐陽脩¹⁷가 지공거知貢舉¹⁸를 맡았다. 이전에 진사들이 서로 기이하고 벽삽僻澁한 문체를 익혀 글귀를 어렵게 짓는 데 힘

15 북송 진종北宋眞宗 … 설치하였다: ‘현량방정직언극간과’는 현량 방정하여 곧은 말로 극간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시험, ‘박통분전달어교화과’는 많은 서적을 널리 섭렵하여 교화에 밝은 사람을 뽑는 시험, ‘재식겸무명어체용과’는 재능 학식을 겸하여 체와 용에 밝은 사람을 뽑는 시험, ‘상명이리가사종정과’는 행정에 밝아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 ‘지통도락운주결승과’는 지략에 능통하여 앉아서 승리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 ‘군모굉원재임변기과’는 군사의 모책이 원대하여 변방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을 말한다.

16 인종仁宗 … 설치하였다: ‘서판발취과’는 서법書法과 문리文理에 우수한 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며, ‘고도구원과’는 높은 지조로서 시골에 있는 자를 뽑는 시험, ‘침윤초택과’는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 ‘무재이등과’는 뛰어난 수재秀才를 뽑는 시험을 뜻한다.

17 구양수歐陽脩: 「임현능任賢能」 법조 36번 각주 참조.

18 지공거知貢舉: 당·송 때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관리의 명칭이다. 특명을 받아 과거시험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명망 있는 대신들이 임명되었다.

써 점차 혼순渾淳함을 잃었다. 구양수가 이것을 매우 질색하여 마침내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였으므로, 당시 문재文才가 있다고 칭찬받던 자들이 하나도 뽑히지 않았다. 문체가 이때부터 조금씩 변하여 가우嘉祐 연간¹⁹에 인재들이 많아졌다.

|| 원우태후元祐太后²⁰가 국정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사마광司馬光²¹이 “사인士人을 선발하는 방법은 응당 덕행을 우선하고 문학을 뒤로해야 하며, 문학을 가지고 말한다면 경술이 사장詞章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신종神宗 때 경의經義와 논論, 책策으로 사인을 선발했으니,²² 이는 바로 어떤 왕도 바꾸지 못할 대법大法입니다. 다만 왕안석王安石²³은 일가一家의 사사로운 학설로 선유先儒를 덮으려 하였습니다.²⁴ 율령律令의 경우는 담당관만 알면 되는데, 어찌 굳이 명법과明法科 하나만 두어²⁵ 각박함을 익히게 한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결국 왕안석이 만든 제도를 없애라 명하고 과거법을 세워 경의와 시부詩賦 두 과목을 두었다.

|| 남송 이종南宋理宗이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우리나라는 당唐의 구제舊制를 따라 진사과로 인재를 성대히 얻었다. 그러나 경전을 궁구하고 옛것을 배운 자는 혹 문장력이 부족하고, 덕을 심고 행실에 힘쓰는 자는 심오한 뜻을 궁구하지 못하며, 높은 재주와

19 가우嘉祐 연간: 북송 인종이 사용한 아홉 번째 연호(1056~1063)이다.

20 원우태후元祐太后: 영종의 황후이자 신종의 모후인 선인성렬황후宣仁聖烈皇后 고씨를 가리킨다. 신종 사후 철종을 즉위시킨 후 수렴정정을 하였다. 「거편사去便私」 법조 11번 각주 참조.

21 사마광司馬光: 「임현능任賢能」 근안 110번 각주 참조.

22 신종神宗 … 선발했으니: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변법變法을 시행하면서 과거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과거시험은 진사과 하나만 개설하고 명경, 학구學究 등의 제과諸科는 모두 폐지해 진사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진사과의 과목은 시부와 첨경, 목의 시험을 폐지하고 경의經義와 논, 책으로 대체하며, 전시에서는 ‘책’만 시험하되 글자 수를 1천자 이상으로 하였다. 경의와 논문 거의 비슷하지만, 경의는 유가 경전에서만 출제하였고 논문은 출제 범위가 경전에 한정되지 않았다. 과목의 순서는 경의가 논, 책의 앞에 놓였는데, 이는 과거시험에 대한 유학의 전면적인 지배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金諍, 『중국 과거 문화사』, 동아시아, 2003, 173~174쪽 참조.)

23 왕안석王安石: 「경사초敬事天」, 계조 45번 각주 참조.

24 일가一家의 …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학설을 과거에 적용하려 하였음을 말한다. 왕안석은 사상과 학술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경신의三經新義』, 곧 『모시의毛詩義』, 『상서의尙書義』, 『주관신의周官新義』를 저술하여 이것을 학관에 반포하고, 강경 시험을 볼 때 반드시 이를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5 율령律令의 … 두어: 법치를 중시한 왕안석은 과거시험에 새롭게 율령과 판결 등의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제과諸科를 폐지하고 ‘명법과’만 존치하였다. 또한 진사와 제과諸科에 합격한 사람들은 추가로 ‘율령 대의 혹은 판결 시안’에 대한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소준섭, 『중국사 인물열전』, 현대지성, 2018.)

큰 도량을 가졌어도 이따금 자질구레한 법도에 갇혀 버린다.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는 치도治道를 잘 알고 강령과 조목이 자세하고 분명하니, 삼성三省은 상세히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하라.”²⁶【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조서를 내려 “짐이 뜰에서 친히 과거시험을 보여 그 학식을 살피고 고하高下를 매기려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과거의 규제를 정하였는데, 초장初場에서는 본경의本經義 및 사서의四書義 각 1도道, 이장二場에서는 논論 1도, 삼장三場에서는 책 1도로 하였다.²⁷

|| 명 태조가 ‘과거정식科擧定式’을 반포하였다.²⁸ 3년마다 치르는 대비大比²⁹에는 거인擧人是 정원 수를 한정하지 않고, 향시鄕試와 회시會試 모두 삼장으로 하되, 반드시 성정이 돈후敦厚하고 문학을 갖춘 자를 응시하도록 하였다. 향시의 합격자는 관에서 양식을 지급하고 예부회시로 전송하였다. ‘명경행수經明行修’, ‘공습문사工習文詞’, ‘통효사서通曉四書’, ‘언유조리言有條理’, ‘효달치도曉達治道’, ‘감임간관堪任幹辦’을 육과六科로 삼고,³⁰ 합격한 자는 등급을 헤아려 관직에 제수하였다.

26 정호程顥와 … 하라: 남송 이종이 북송의 조여우趙汝愚가 편집한 『국조제신주의國朝諸臣奏議』를 읽고, 그 가운데 인재 선발 관련 내용으로는 정호와 정이의 주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삼성三省에서 그들의 주의 중 행할만한 것을 뽑아,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宋史』「理宗本紀」)

27 명 태조明太祖가 … 하였다: 명 태조는 명 왕조를 건립한 뒤, 홍무 3년(1370)에 과거시험을 열어 향시와 회시에서 각각 세 차례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향시는 8월에, 회시는 2월에 실시하였으며, 초9일에 초장을 열고, 3일 뒤에 이장, 다시 3일 뒤에 삼장을 열었다. 『명사』「선거지選舉志」에서는 초장에서는 경의 2도와 사서의 1도를 시험하였으며, 이장에서는 논 1도, 삼장에서는 책 1도를 시험하였다고 하였다.

28 명 태조가 … 반포하였다: ‘과거정식’은 ‘과거성식科擧成式’이라고도 한다. 태조는 홍무 17년(1387) 과거제도의 규정을 공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향시와 회시에서 각각 세 차례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즉, 초장은 경의시험으로서 사서문 3편, 오경의 4편을 시험하였는데, 능력이 못 미치는 이에게는 1편씩 감해주었다. 이장은 논 1편과 판어判語 5조, 그리고 조궤, 고궤, 표궤 가운데 1편을 골라 시험하였으며, 삼장은 책策 5편이었다. (『皇明實錄』「太祖實錄」)

29 3년마다 치르는 대비大比: 대비는 식년시式年試를 일컫는 말로, 『주례』「지관地官」에 “3년마다 대비를 시행하여 덕행과 기예를 살펴 현명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을 선발한다.[三年則大比 考其德行道藝 而興賢者能者]”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30 명경행수經明行修 … 삼고: ‘명경행수’는 경학에 밝고 행실이 바른 자, ‘공습문사’는 문사文詞를 정교하게 익힌 자, ‘통효사서’는 사서에 능통한 자, ‘언유조리’는 말에 조리가 있는 자, ‘효달치도’는 치도에 통달한 자, ‘감임간관’은 공사를 잘 처리하여 일을 맡길만한 자를 말한다. 모두 관리를 임명하는 기준이 되었다.

|| 명 성조明成祖가 고관考官 양사기楊士奇³¹와 김유자金幼孜³² 등에게 “여러 과로 사인士人을 뽑는 것은 옥석이 섞여 나음을 면치 못하니, 적당한 인물을 엄선하여 뽑는데 힘쓰라. 쓸모없는 재목 수백을 뽑는 것보다 훌륭한 재목 하나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니, 마침내 마탁馬鐸³³ 등 64인을 뽑았다.

|| 명 인종明仁宗 때, 심리정審理正 유정보俞廷輔가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현자를 진출하게 하는 길은 과거보다 중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향시鄉試에서는] 고금古속에 널리 통하고,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진중한 자를 뽑는 데 힘쓰십시오. 나이가 25세가 넘는 자는 시험에 들게 허락하시고, 문사가 전아典雅하고 의론이 절실한 자를 뽑는 데에 힘쓰십시오. 회시의 경우는 더욱 신중을 가하여 뽑아야 합니다.” 또 “근래 과거에서 북방인은 겨우 열에 하나가 시험에 합격하니, 이는 천하를 공정하게 다스리는 도가 아닙니다. 시권試券을 미봉彌封하고 곁에 ‘남’ 또는 ‘북’을 써서 만일 한 과科 100인 중에 남에서 6할을 뽑고 북에서 4할을 뽑는다면 남북의 사인들이 모두 등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인종이 “좋다.”라고 하였다. 의논이 마침내 정해졌지만, 선종宣宗 때가 되어서야 시행하였다.

|| 명 세종明世宗이 사인을 시책試策하자, 예부禮部에서 “근래에 문체는 날로 망가지고, 도덕과 학술은 날로 미약해지고 있으니, 응당 회시에서 순정하고 전아典雅한 자를 구해야 합니다. 어렵고 난잡한 문장은 모두 떨어뜨리고, 『장자莊子』와 『열자列子』를 인용한 자는 색출하여 제명除名하소서.”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그 말을 따랐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31 양사기楊士奇: 「거편사去偏私」 법조 16번 각주 참조.

32 김유자金幼孜: 1368~1432. 김선金善을 가리키며, 유자幼孜는 그의 자이다. 예부상서禮部尙書, 무영전대학사武英殿大學士를 역임하였다. 저서에 『북정록北征錄』과 『후북정록後北征錄』이 있다.

33 마탁馬鐸: 1366~1423. 자는 언성彦聲이다. 상인 출신으로, 진사과에 장원하여 한림원수찬翰林院修撰에 임명되고 성조의 신임을 받았다. 관직이 국자감재주國子監祭酒에 이르렀다.

계조 戒條

- || 당 고종唐高宗 때, 유효劉曉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인재를 선발할 때 오로지 문장만 따졌으므로, 아침에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다가 저녁에 죽을 죄에 빠지는 자가 있으니, 날마다 만언을 외운다 하더라도 다스리는 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문장이 칠보七步³⁴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 || 당 현종唐玄宗 때, 양국충楊國忠³⁵의 아들 양훤楊暄이 학업이 형편없이 부족해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부 시랑禮部侍郎 달해순達奚珣³⁶이 양국충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아들 달해무達奚撫를 보내 양국충이 입조할 때를 엿보게 하였다. 달해무가 달려가 말 아래에 이르자, 양국충은 자기 아들이 합격했으리라 생각하여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다. 달해무가 “제 아버지가 상공相公께, 아드님이 시험 본 것이 정식程式에는 맞지 않지만 감히 떨어뜨리지는 못했다고 전하라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양국충이 화를 내며 “내 아들이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무엇이라고 쥐새끼들에게 흥정거리가 되도록 하겠는가.”라고 하고는 말을 채찍질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달해무가 그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써 알렸다. “저 양국충은 권세를 믿고 남을 해칠 자이니 어찌 다시 함께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결국 양훤을 상등으로 합격시켰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 명 대종明代宗³⁷ 때, 태학사太學士 유엄劉儼³⁸과 시강侍講 황간黃諫³⁹이 고관考官을 맡았다. 이

34 칠보七步: 시문을 민첩하게 짓는 능력을 말한다. 삼국시대 위 문제魏文帝 조비曹조가 평소 시기해 오던 아우 동아왕東阿王 조식曹植에게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짓지 못하면 대역죄로 다스리겠다고 협박하였는데, 일곱 걸음 안에 완성하였으므로 그 시를 ‘칠보시七步詩’라 하였다. (『世說新語』)

35 양국충楊國忠: 「상검약尙儉約」 계조 25번 각주 참조.

36 달해순達奚珣: ?~758. 달해는 복성復姓, 자는 자미子美이다. 선비족鮮卑族으로 진사가 되어 가문을 일으켜 임청현 주부臨淸縣主簿가 되었고, 제과制科에 그 급제하여 하남 현위河南縣尉에 제수되었다. 하남윤河南尹, 상주국上柱國 등을 역임하였다. 안녹산安祿山이 난을 일으켜 연연을 세웠을 때, 강제로 그를 승상의 자리에 앉혔다.

37 명 대종明代宗: 1428~1457. 명 제7대 황제 주기옥朱祁鈺으로, 재위 기간은 1449년부터 1457년이다. 연호를 따라 ‘경태제景泰帝’로 불린다. 선종宣宗의 둘째 아들이자 영종英宗의 아우이다. 영종이 오이라트[瓦剌]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자 뒤를 이어 황위에 올랐다. 이후 영종이 귀환하자 그를 태상황으로 올리고 유폐하고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자신이 병을 앓아 누워 있는 동안 영종을 지지하는 일파가 정변을 일으켜 폐위당하였고, 한 달 후에 급사하였다.

때 내각內閣 진순陳循의 아들 진영陳瑛과 왕문王文⁴⁰의 아들 왕륜王倫이 모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니, 진순 등이 유엄과 황간 두 사람이 시권을 불공정하게 채점하였다고 탄핵하여 과거를 다시 열어 시험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고곡高穀⁴¹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대신大臣의 아들이 가난한 선비와 벼슬을 다투는 것이 이미 불가한데, 하물며 고관考官을 헐뜯고자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과급사중禮科給事中 장녕張寧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옛날 한억韓億⁴²이 재상이었을 때, 그의 아들이 진사과에 응시하였는데, 아버지가 집정執政이 되자 혐의를 피하여 정시廷試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진순, 왕문의 무리와 비교한다면 과연 어떠합니까. 심문통沈文通⁴³이 진사에 1등으로 급제하고 풍경馮景이 2등으로 급제하였을 때 귀족의 자제가 한미한 인물을 앞서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풍경을 올리고 심문통을 내렸습니다. 지금 시권이 이미 떨어졌는데 합격한 시권과 대조하기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어떠합니까.” 상소가 들어갔지만 답하지 않았다.

|| 명 무종明武宗 때, 회시 합격자들을 조정에서 책문으로 시험하니, 여남呂柟⁴⁴ 등은 진사 급제를 하였고 초황중焦黃中⁴⁵ 등은 진사 출신을 하였다.⁴⁶ 초황중은 초방焦芳의 아들이었다. 초방은 자기 아들이 장원으로 급제할 줄 알았는데 여남이 일등이 되자, 고관考官 고청顧淸⁴⁷ 등을 미워하여 유근劉瑾⁴⁸에게 말하여 고청 등을 부관部官으로 좌천시키고 자기의 아들을 검토檢討에 제수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38 유엄劉儼: 1394~1457. 자는 선화宣化, 호는 시우時雨이다. 명 영종明英宗 정통正統 연간에 장원으로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한림시강翰林侍講에 이르렀다.

39 황간黃諫: 1412~1471. 자는 정신廷臣이다. 명 영종明英宗 정통正統 연간에 진사로, 경연강관經筵講官, 시강侍講, 춘방서자春坊庶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서경집해書經集解』, 『종고고문從古古文』 등이 있다.

40 왕문王文: 1393~1457. 자는 천지千之, 본래 이름은 왕강王强, 직례直隸 속녹현東鹿縣 사람이다. 영락 연간에 진사가 되었다.

41 고곡高穀: 1391~1460. 자는 세용世用이다. 영락 연간에 진사로, 중서사인에 제수되었고 상서 겸 한림학사 등을 역임하였다. 영락永樂·홍희洪熙·선덕宣德·정통正統·경태景泰 연간에 다섯 황제를 섬겼다.

42 한억韓億: 972~1044. 자는 종위宗魏이다. 북송 진종北宋眞宗 때의 관리로, 영성지현永城知縣, 하북전운사河北轉運使, 참지정사參知政事, 태자소부太子少傅 등을 지냈다. (『宋史』 「韓億傳」)

43 심문통沈文通: 1025~1067. 이름은 구邁, 문통文通은 그의 자이다. 북송 인종北宋仁宗 때 진사에 합격한 후, 강녕부 통판江寧府通判, 집현교리集賢校理 등 요직을 역임하고, 월주越州, 항주杭州 등의 지주知州를 지내면서 크게 선정을 베풀며 명성이 중외에 자자하였다. 관직은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이르렀으며, 저서에 『서계집西溪集』이 있다. (『宋史』 「沈邁傳」)

44 여남呂柟: 1479~1542. 자는 대동大棟 또는 중목仲木이다. 경야선생涇野先生으로 불렸다. 정덕正德 연간에 장원으로 진사가 되어 수찬修撰에 올랐다. 설경지薛敬之에게 수학하였고, 정주程朱를 숭상했다. 저서에 『주역설의周易說翼』, 『상서설요尙書說要』, 『모시설서毛詩說序』, 『예문내외편禮問內外篇』, 『춘추설지春秋說志』 등이 있다.

근안 謹按

삼가 생각건대, 과목科目을 두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수隋·당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 주周는 학교에서 인재를 선발하고 한漢은 현량賢良을 천거하였으니,⁴⁹ 행의行誼를 우선시하고 문사文詞를 뒤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부정행위가 점차 늘어나, 인재를 선발하는 사이에 각각 그 사심을 따르게 되어 옛 도가 더 이상 행해지지 못하게 되었으니, 과거제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벼슬길에 나온 선비는 명경明經과 정문程文⁵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에서 인재를 발탁하는 것은 도리어 학문과 덕행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과장에서 시권을 거두어 취사取捨를 결정하는 일은 너무 구차하다 할 것이며, 만나질 만에 기예를 겨루어 당락을 따지는 것은 스스로 뽑내는 폐단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스승과 원로의 학자들이 자신이 쌓아 온 경륜을 펼치기에 충분하고, 뛰어난 문장가와 화려한 문사들이 나라의 성대함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당대의 명석名碩들이 모두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왔으니, 과거 한 가닥 길이 또한 인재를 선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인士人에게 있어서는 벼슬길에 올라 임금을 섬기는 첫걸음이 되니, 많이 쌓

45 초황중焦黃中: 대학자인 초방焦芳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권세로 인하여 전시에서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여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에 제수되었다.

46 회시 … 하였다: 전시殿試에서는 낙제자 없이 석차만을 결정하였는데, 최고 합격자인 장원壯元, 방안榜眼, 탐화探花 3인은 '1갑甲'으로 올려져 '진사급제'로 분류되었고, 그 밖에 '제2갑'은 '진사출신', '제3갑'은 '동진사출신同進士出身'이라고 하였다. 1갑은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 이하는 별다른 특전이 없었다. 1갑 진사 3인에게는 일반적으로 한림원수찬翰林院修撰, 편수編修 등과 같이 지위가 높으면서도 정무는 번잡하지 않은 직책을 제수하였다. 나머지 진사들은 보통 다시 선발 과정을 거친 후 전시에서의 석차와 합산하여 관직을 제수했고, 그중 우수한 자 역시 한림원에 배정되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역사비평사, 2016, 146~201쪽; 金諍, 『중국 과거 문화사』, 동아사이, 2003, 255~259쪽 참조.)

47 고청願淸: 1460~1528. 자는 사렴士廉이다. 홍치弘治 연간의 진사進士로, 가정嘉靖 초기에 남여부상서南禮部尙書로 치사致仕하였다. 저서에는 『송강부지松江府志』, 『방추정잡기榜秋亭雜記』 등이 있다.

48 유근劉瑾: 『어근습駭近習』, 계조 67번 각주 참조.

49 옛날 … 천거하였으니: 주대周代에는 학교學校에서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향대부鄉大夫가 지방의 소학小學에서 덕행과 학예學藝가 뛰어난 학생을 뽑아서 빈객으로 예우하여 국학國學으로 올려 보내니, 이를 '빈흥賓興'이라 하였다. (『周禮』 「地官·大司徒」) 한대漢代에는 지방 관료가 인재를 탐방하여 조정에 천거하는 방식인 찰거察舉가 제도화되었다. 현량賢良을 추천하는 제도는 전한 문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방 관료에게 현량하고 방정한 자를 천거하게 하여 천거된 사람을 임금이 친히 책문策問하여 선발하였다. (『漢書』 「文帝紀」)

50 정문程文: 과장科場에서 쓰는 일정한 법식의 문장으로, 과문科文을 말한다.

고 널리 발휘하여 요행으로 자리를 차지하였다는 비판이 추호도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에 있어서는 유능한 인재를 얻어 나라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되니, 공정하게 선발하고 신중하게 취하여 한 목소리로 빈흥賓興의 칭송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하니 과거를 설행하는 방법이 어찌 중하고도 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열성列聖께서 고려 말의 홍분방紅粉榜의 폐단⁵¹을 깊이 경계하시어 시법試法을 엄격하고 명백하게 하고 시습士習을 바로잡으시니, 이에 과방科榜에 인재가 성대해졌습니다. 설립한 제도는 강목綱目과 조목條目이 잘 갖춰져 있으니, 장막 밖에는 감찰하는 관리를 앉히고 문 안에는 금란禁亂하는 곳을 두었으며,⁵² 미봉彌封과 할봉割封⁵³으로 부정을 예방하였으며, 사동査同과 지동枝同⁵⁴으로 시권試券을 분명히 대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그 시험을 주관한 인물에 대해 말하자면, 태종 때에는 변계량卞季良,⁵⁵ 권근權近,⁵⁶ 서거정徐居正,⁵⁷ 김수온金守溫⁵⁸이 있었고, 성종, 중종, 명종, 선조 때에는 김안국金安國,⁵⁹ 노수신盧守愼,⁶⁰ 이

51 홍분방紅粉榜의 폐단: 나이가 어린 권문가의 자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을 비웃는 말로, 고려高麗 우왕禎王 때의 성균관시咸均館試에 시원試員 윤취尹就가 뽑은 99인 가운데 권문가의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많았던 까닭으로 생긴 말이다.

52 장막 … 두었으며: 과장에서 응시자들의 비리나 부정이 남발하자, 조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관監試官과 금난관禁亂官 등을 두었다. 감시관은 시관 외에 별도로 시험을 감독하는 관리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 2인이 1조로 구성되었다. 금난관은 나장羅將이나 사령使를 거느리고 시험장 밖을 순시하며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무자격 응시자나 관속官屬 등이 부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해 시험장에 출입하는 행위, 응시자와 결탁하고 서적을 반입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원창애 외, 『조선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8~39쪽 참조.)

53 미봉彌封과 할봉割封: 응시자들의 인적사항을 시험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응시자들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녹명소錄名所에서 시조단자四單單자와 보단자, 시험지를 제출하여 신청을 해야 했다. 시험지의 오른쪽에 성명, 본관, 거주지와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 등 4조의 성명, 관직, 본관을 기록하고, 관원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접어서 봉하였다. 이를 피봉皮封이라 하며, 관원들은 피봉의 상, 중, 하 세 군데에 '근봉謹封'이란 도장을 찍어서 답안지를 돌려주었다. 이를 봉미封彌 또는 미봉이라 한다. 할봉은 시권을 채점할 때, 미봉했던 것을 뜯어내는 것이다. (이남희, 『영조의 과거, 널리 인재를 구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151~152쪽 참조.)

54 사동査同과 지동枝同: 사동은 응시자가 제출한 시험 답안과 이를 서리가 옮겨 적은 답안과의 오류 유무를 조사하는 일을 말하며, 지동은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을 시詩, 부賦, 표表, 책策 등으로 각각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55 변계량卞季良: 1369~1430.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거경巨卿, 호는 춘정春亭이다. 1385년(우왕 11) 문과에 급제하여 전교시주부典校寺主簿 등을 역임하였고, 조선조에는 대제학, 의정부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춘정집春亭集』이 있다.

56 권근權近: 1352~1409. 본관은 안동,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이다. 여말선초麗末鮮初 성리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예문관대학사藝文館大學士, 중추원사中樞院事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양촌집陽村集』, 『입학도설入學圖說』 등이 있다.

57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본관은 달성達成, 자는 강중剛中, 호는 사가정四佳亭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천문, 지리, 의학에 정통했으며 특히 시에 능하였다. 예문관대제학을 거쳐 좌찬성을 지냈다.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동문선東文選』, 『신찬동국여지승람新撰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였으며, 저서에 『사가집四佳集』이 있다.

정귀李廷龜⁶¹가 있었고, 인조, 효종 이래로 또 신흠申欽,⁶² 이식李植,⁶³ 김진규金鎭圭⁶⁴가 있었으니, 모두 문단을 주도하고 아울러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밝으며 마음가짐이 공정하고 문장을 평가하는 것 또한 정미하여 과거 방목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광천廣川의 책문⁶⁵과 문산文山의 대책⁶⁶이 그 가운데 넘쳐나 임금의 계책을 환히 빛내고 문치文治를 드날렸습니다.

근래 들어 시험을 주관하는 자의 문망文望은 이미 전인만 못하고,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의 재예才藝도 지난날에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평가할 시간이 너무도 촉박하여 취사를 자세히 살피기 어렵고, 계해計偈⁶⁷가 너무 잦아 글공부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런 이

58 김수온金守溫: 1410~1481. 본관은 영동永東, 자는 문량文良이고, 호는 괴애乖崖이다. 고승 신미信眉의 아우로, 불경에 달통하고 제자백가諸子百家와 육경六經에 해박하여 뒤에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치평요람治平要覽』, 『의방유취醫方類聚』를 편찬하였으며, 저서에 『식우집拭疣集』이 있다.

59 김안국金安國: 1478~1543.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이다. 예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 대제학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의미를 중시한 학자였으나, 조광조趙光祖가 추진하려 했던 것과 같은 급격한 정치 개혁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장진방瘍疔方』 등을 편찬하였으며, 저서에 『모재집慕齋集』이 있다.

60 노수신盧守愼: 1515~1590.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과회寡梅, 호는 소재蘇齋이다. 1543년(중종 38)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대사헌, 이조판서, 대제학 등을 거쳐 영의정까지 역임했으나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저서에 『소재집蘇齋集』이 있다.

61 이정귀李廷龜: 1564~1653.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이다. 벼슬은 좌의정左議政에 이르렀다. 문장의 대가이며 글씨에도 뛰어나 신흠申欽, 장유張維, 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로 이름났다. 저서에 『월사집月沙集』이 있다.

62 신흠申欽: 1566~1628.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헌玄軒, 상촌象村, 현옹玄翁이다. 이정귀李廷龜, 장유張維, 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로 이름났다. 저서에 『상촌집象村集』, 『야언野言』 등이 있다.

63 이식李植: 1584~164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고汝固, 호는택당澤堂, 남궁외사南宮外史, 태극거사澤癯居士이다.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신흠申欽, 이정귀李廷龜, 장유張維와 함께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로 이름났다. 저서에 『택당집澤堂集』 등이 있다.

64 김진규金鎭圭: 1658~1716.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달보達甫, 호는 죽천竹泉이다. 대제학, 예조판서, 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문장에 뛰어났고 전서와 예서, 산수화, 인물화에 모두 능했다. 저서에 『죽천문집竹泉文集』, 글씨에 『강화중렬사비문江華忠烈祠碑文』, 『대헌심의검비문大憲沈義謙碑文』 등이 있다.

65 광천廣川의 책문: 광천은 동중서董仲舒의 출신지이다. 동중서가 현량과賢良科에 응시하여 전한 무제前漢武帝的 물음에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天人感應]'를 요지로 삼아서 대책을 세 번 올렸는데, 이 책문으로 무제의 인정을 받아 금마문金門에서 대조待詔하였다. (『漢書』「董仲舒傳」)

66 문산文山의 대책: 문산은 문천상文天祥의 호이다. 이종理宗 때에 문천상이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대책對策의 글이 1만여 자가 넘었다. 이종이 문천상을 친히 1등으로 뽑자 고시한 왕응린王應麟이 아뢰기를, "이 시권은 충성된 마음이 철석같습니다. 좋은 인재 얻은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하였다. (『宋史』「文天祥傳」)

67 계해計偈: 계리計偈를 따라간다는 말로, 서울에 올라와 회시會試에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계리는 각 지방 관서에서 해마다 회계 장부를 조정해 가지고 와서 업무를 보고하던 관리를 가리키는데, 옛날에 각 지방관들이 그 지방에서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뽑은 다음에 계리가 도성에 갈 때 함께 올려 보내 과거에 응시하도록 했다. 그래서 향시鄉試에 합격하고 나서 상경上京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계해, 혹은 수계隨計, 해계偈計라고 한다.

유로 점차 요행의 문을 열어 주어 간혹 근거 없는 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고도 되레 인재를 버리지 않고 다 취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법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일체를 혁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현량을 선발하는 일은 말세의 시속에서는 다시 시험할 수 없고 별기⁶⁸로 임용하는 일은 서직^{庶職}에 모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옛 제도를 따르되 그 시행을 조금 간편하게 하고 전에 내렸던 신칙을 되풀이하되 그 폐단을 제대로 정돈하는 것이 어찌 시속을 바로잡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바로잡는 요체는 오로지 기강^{紀綱}에 있으니, 뽑을 만한데 뽑지 않는 시관을 죄주고, 과장^{科場}을 반드시 엄격히 해야 함에도 엄격히 하지 못한 관원들을 함께 벌주어야 합니다. 시사^{試事}를 주관하면서 사심을 두고, 문사^{文詞}를 능멸하여 함부로 흠치는 자는 바로 무거운 벌로 처벌하고 영원히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막는다면, 과장의 기강이 엄격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절로 엄격해져 두려움이 없는 자가 두려움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이니, 인재를 길러내는 교화가 성세에 비길 만큼 융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과의 문란한 실태는 문과에 비해 더욱더 심한데도 지금 굳이 따로 거론하지 않는 것은 문과의 폐단이 사라진다면 무과의 폐단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8 별기^{別岐}로 임용하는 일: 문음^{門陰}이나 천거 등 과거 이외의 방법으로 관원을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